2025년도
정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국 가 보 훈 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
공 정 거 래 위 원 회
금 융 위 원 회
국 민 권 익 위 원 회
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

2024. 11

정 무 위 원 회

목 차

Ⅰ. 소관부처 회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1

Ⅱ. 심사경과 ····· 2

Ⅲ. 예산안 규모 및 증감내역 ····· 7

Ⅳ. 전문위원 검토보고: <붙 임> 참조 ····· 121

Ⅴ. 대체토론의 요지 ····· 121

Ⅵ.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122

Ⅶ. 찬반토론의 요지 ····· 125

Ⅷ. 심사결과 ····· 126

Ⅸ. 소수의견의 요지 ····· 127

Ⅹ. 부대의견 ····· 127

※ 첨부: 2025년도 정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조정내역 … 152

※ 붙임: 2025년도 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 ····· 247

2025년도 정무위원회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24. 11.
정무위원회

Ⅰ. 소관부처 회부 예산안

1. 국가보훈부 소관

가. 일반회계 : 세입 및 세출

나.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 세입 및 세출

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세입 및 세출

2.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가. 일반회계 : 세입 및 세출

나.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 세출

3.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가. 일반회계 : 세입 및 세출

4. 금융위원회 소관

가. 일반회계 : 세입 및 세출

5.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가. 일반회계 : 세입 및 세출

6.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소관

가. 일반회계 : 세입 및 세출

Ⅱ.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24년 9월 2일

2. 회부일자 : 2024년 9월 3일

3. 상정 및 의결일자

가. 국가보훈부 소관

○ 제418국회(정기회)

• 제7차 정무위원회(2024. 11. 12.)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 회부)

-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2024. 11. 14.)

(상정・심사)

- 제2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2024. 11. 15.)

(상정・심사)

- 제3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2024. 11. 18.)

(상정・심사)

- 제4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2024. 11. 19.)

(상정・심사)

• 제8차 정무위원회(2024. 11. 19.)

(상정・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

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 제410국회(정기회)

○ 제418국회(정기회)

• 제7차 정무위원회(2024. 11. 12.)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 회부)

-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2024. 11. 14.)

(상정・심사)

- 제2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2024. 11. 15.)

(상정・심사)

- 제3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2024. 11. 18.)

(상정・심사)

- 제4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2024. 11. 19.)

(상정・심사)

• 제8차 정무위원회(2024. 11. 19.)

(상정・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

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제418국회(정기회)

• 제7차 정무위원회(2024. 11. 12.)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 회부)

-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2024. 11. 14.)

(상정・심사)

- 제2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2024. 11. 15.)

(상정・심사)

- 제3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2024. 11. 18.)

(상정・심사)

- 제4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2024. 11. 19.)

(상정・심사)

• 제8차 정무위원회(2024. 11. 19.)

(상정・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

라. 금융위원회 소관

○ 제418국회(정기회)

• 제7차 정무위원회(2024. 11. 12.)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 회부)

-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2024. 11. 14.)

(상정・심사)

- 제2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2024. 11. 15.)

(상정・심사)

- 제3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2024. 11. 18.)

(상정・심사)

- 제4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2024. 11. 19.)

(상정・심사)

• 제8차 정무위원회(2024. 11. 19.)

(상정・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

마.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 제418국회(정기회)

• 제7차 정무위원회(2024. 11. 12.)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 회부)

-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2024. 11. 14.)

(상정・심사)

- 제2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2024. 11. 15.)

(상정・심사)

- 제3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2024. 11. 18.)

(상정・심사)

- 제4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2024. 11. 19.)

(상정・심사)

• 제8차 정무위원회(2024. 11. 19.)

(상정・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

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소관

○ 제418국회(정기회)

• 제7차 정무위원회(2024. 11. 12.)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 회부)

-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2024. 11. 14.)
  (상정・심사)
- 제2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2024. 11. 15.)
  (상정・심사)
- 제3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2024. 11. 18.)
  (상정・심사)
- 제4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2024. 11. 19.)
  (상정・심사)

• 제8차 정무위원회(2024. 11. 19.)
  (상정・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

Ⅲ. 예산안 규모 및 증감내역

【 국가보훈부 】

Ⅰ. 총 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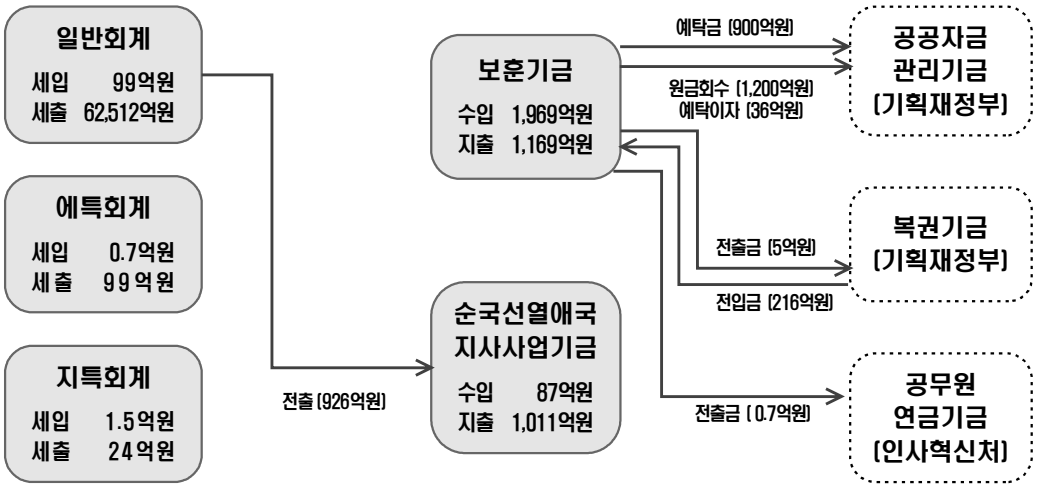
1. 국가보훈부 소관 재정규모

○ 국가보훈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일반회계와 2개의 특별회계(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개의 기금(보훈기금,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 국가보훈부 소관 2025년도 재정규모를 살펴보면, 총지출 규모는 6조 4,814억원으로 2024년도 대비 1.2% 증가함.

○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6조 2,512억원,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99억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4억원, 보훈기금 1,169억원,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1,011억원임.

< 총지출 6조 4,814억원 >



2. 2025년도 재정운용 방향

○ 2025년도에 국가보훈부는 보훈정책의 기본방향인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을 실현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중점과제를 추진할 계획임.

< 2025년도 중점과제 >

■ 희생·공헌에 합당한 보상 및 복지 강화
  ○ 보훈보상·취업(生), 요양(老), 보훈의료(病), 국립묘지 안장(死)
■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알리는 보훈문화 조성사업 추진
  ○ 독립·호국·민주정신을 국민적·역사적 자산으로 기억·보전
■ 국가안보에 헌신한 제대군인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사회복귀 지원
  ○ 제대군인 취·창업 역량 강화 및 존중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감사하며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보장

○ 2025년도 국가보훈부 성과계획서에 따르면 국가보훈부는 ①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체계 정립으로 공정한 보훈 실현, ② 의료·복지서비스 강화로 보훈가족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 ③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존중하고 예우, ④ 제대군인과 참전군인의 명예롭고 안정적인 삶 지원, 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신 분을 기억하는 보훈문화 조성을 핵심전략 목표로 추진할 계획임.

○ 국가보훈부 재원의 상당부분은 보훈보상금, 수당, 수시보상금 등 국가유공자의 희생·공헌에 대한 보상(80.8%)에 집중되어 있고 보훈가족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의료·복지서비스 강화(13.0%)를 위하여 국가유공자의 고령화에 대응한 첨단화된 의료 인프라 구축, 고품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적정 재원을 배분하였음.

또한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존중하고 예우(2.0%)하기 위하여 정부주도 국가유공자 발굴·포상, 수요자 중심 국립묘지 안장지원 등 예우시책을 지속 추진하고, 제대군인과 참전군인의 명예롭고 안정적인 삶 지원(0.6%)을 위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 및 참전군인에 대한 각종 명예선양 사업을 추진하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신 분을 기억하는 보훈문화를 조성(3.7%)하기 위해 국민 참여와 공감을 기반으로 하는 보훈문화 확산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임.

< 2025년도 전략목표별 재원배분 규모 >

(단위: 억원, %)

구 분	예산액	비중
□ 전략목표Ⅰ :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체계 정립으로 공정한 보훈을 실현한다	51,305	80.8
□ 전략목표Ⅱ : 의료·복지서비스 강화로 보훈가족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한다	8,239	13.0
□ 전략목표Ⅲ :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존중하고 예우한다	1,258	2.0
□ 전략목표Ⅳ : 제대군인과 참전군인의 명예롭고 안정적인 삶을 지원한다	382	0.6
□ 전략목표Ⅴ :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신 분을 기억하는 보훈문화를 조성한다	2,346	3.7
합 계	**63,530**	**100**

Ⅱ. 세입세출예산안

1. 일반회계

가. 세입예산안

○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 대비 0.1% 증가한 98억 6,100만원이 편성됨.

○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재산수입은 국립묘지 구내식당 임대료 등으로 2024년과 동일한 6억 7,000만원이고, 경상이전수입은 보상금 과오급금 회수금 등으로 2024년과 동일한 87억 9,100만원이며, 재화 및 용역 판매수입은 기념관 주차장 수입 등으로 2024년 대비 2.8% 증가한 3억 6,500만원이며, 관유물 매각대는 차량 매각대 등으로 2024년과 동일한 3,500만원이 편성됨.

<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증감률 (B-A)/A
합 계	9,851	9,861	10	0.1
□ 재산수입	670	670	-	-
- 토지대여료	65	65	-	-
- 건물대여료	94	94	-	-
- 기타재산이자수입	511	511	-	-
□ 경상이전수입	8,791	8,791	-	-
- 과태료	88	88	-	-
- 변상금	23	23	-	-
- 위약금	28	28	-	-

구 분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증감률 (B-A)/A
- 기타경상이전수입	8,652	8,652	-	-
□ 재화 및 용역 판매 수입	355	365	10	2.8
- 면허료 및 수수료	3	3	-	-
- 기타잡수입	352	362	10	2.8
□ 관유물 매각대	35	35	-	-
- 기타고정자산매각대	35	35	-	-

나. 세출예산안

(1) 총괄

○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4년 예산 대비 1.4% 증가한 6조 3,438억 1,800만원이 편성됨.

<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증감률 (B-A)/A
합 계	6,256,190	6,343,818	87,628	1.4
□ 국가보훈부 운영	6,163,539	6,251,235	87,696	1.4
- 인건비	98,008	106,652	8,644	8.8
- 기본경비	12,115	12,405	290	2.4
- 주요사업비	6,053,416	6,132,178	78,762	1.3
□ 내부거래(기금전출)	92,651	92,583	△68	△0.1

※ 총계기준

○ 2025년도 국가보훈부 운영 예산안은 내부거래를 제외한 6조 2,512억

3,500만원으로, 인건비와 기본경비는 2024년 대비 각각 86억 4,400만원(8.8%), 2억 9,000만원(2.4%) 증가하였고, 사업비는 787억 6,200만원(1.3%) 증액 편성되었으며, 내부거래 예산안은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등 지급을 위한 기금전출 예산으로 2024년 대비 6,800만원(△0.1%) 감액 편성되었음.

(2) 인건비

○ 2025년도 국가보훈부 소관 인건비 예산안은 2024년 예산 대비 86억 4,400만원(8.8%) 증가한 1,066억 5,200만원이 편성됨.

이는 본부 및 소속기관(보훈심사위원회,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5개 지방보훈청, 21개 보훈지청, 12개 국립묘지) 공무원 등 인건비임.

< 2025년도 인건비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증감률 (B-A)/A
합 계	98,008	106,652	8,644	8.8
□ 보수(110-01)	94,877	103,123	8,246	8.7
□ 기타직보수(110-02)	2,372	2,718	346	14.6
□ 연가보상비(110-05)	759	811	52	6.9

(3) 기본경비

○ 2025년도 국가보훈부 소관 기관운영 기본경비 예산안은 2024년 예산 대비 2억 9,000만원(2.4%) 증가한 124억 500만원이 편성됨.

< 2025년도 기본경비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증감률 (B-A)/A
합 계	12,115	12,405	290	2.4
□ 인건비(110)	189	184	△5	△2.6
□ 운영비(210)	9,356	9,157	△199	△2.1
□ 여비(220)	1,266	1,656	390	30.8
□ 업무추진비(240)	397	487	90	22.7
□ 직무수행경비(250)	793	812	19	2.4
□ 보전금(310)	31	29	△2	△6.5
□ 민간이전(320)	65	65	-	-
□ 유형자산(430)	18	15	△3	△16.7

(4) 주요사업비

○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편성된 주요사업비 예산안은 2024년 예산 대비 787억 6,200만원(1.3%) 증가한 6조 1,321억 7,800만원이 편성됨.

< 2025년도 주요사업비 프로그램별 총괄표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증감률 (B-A)/A
□ 사업비	6,053,416	6,132,178	78,762	1.3
○ 보훈심사및보상	5,025,545	5,117,384	91,839	1.8
○ 보훈단체지원	38,870	36,281	△2,589	△6.7
○ 보훈의료복지	676,108	671,765	△4,343	△0.6
○ 생활안정지원	29,002	28,952	△50	△0.2

구 분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증감률 (B-A)/A
○ 보훈문화	98,563	97,332	△1,231	△1.2
○ 보훈예우및국립묘지	106,389	125,773	19,384	18.2
○ 제대군인지원	59,188	35,460	△23,728	△40.1
○ 보훈행정	19,751	19,231	△520	△2.6

□ 보훈심사및보상(1100)

○ 보훈심사및보상 사업은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수당·수시보상금과 같은 보훈급여금과 등록·신체검사 등을 추진하는 사업 등으로, 2024년 대비 1.8% 증가한 5조 1,173억 8,400만원이 편성되었음.

○ 가장 비중이 큰 보상금은 물가상승률 등 사회경제 지표를 감안 5.0% 인상하고, 상이7급 보상은 격차 해소를 위해 추가 2.0% 인상하여 2024년 대비 3.2% 증가한 3조 5,807억 2,300만원이 편성됨.

○ 상시·수시개호가 필요한 중상이자 지원을 위한 간호수당은 단가를 5.0% 인상하고 인원 감소분(△6.0%)을 반영하여 2024년 대비 1.0% 감소한 545억 1,300만원임.

○ 생계곤란 국가유공자(유족) 등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은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생계지원금 인원 감소분(64.5%)을 반영하여 2024년 대비 5.3% 감소한 847억 5,400만원임.

○ 6·25자녀수당은 보상금 인상률과 연계, 단가를 5.0% 인상하고, 신규승계

유자녀는 격차 해소를 위해 8.3%를 추가 인상 반영하여 2024년 대비 6.3% 증가한 4,286억 9,300만원임.

○ 고엽제수당은 단가를 5.0% 인상하고 인원 감소분(△2.7%)을 반영하여 2024년 대비 2.1% 증가한 3,162억 6,700만원임.

○ 무공영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 4·19혁명공로수당은 월 지급액을 3만원 인상하고, 각각 인원 변동분(△15.1%, △12.5%, +0.8%)을 반영하여 2024년 대비 9.9% 감소한 461억 1,700만원, 6.2% 감소한 5,869억 6,600만원, 7.8% 증가한 14억 3,800만원임.

○ 유공자(유족) 사망 시 지급하는 사망일시금은 2024년과 동일한 96억 9,400만원이며, 의무경찰 또는 의무소방원 등이 복무 중 사망·상이 시 지급하는 재해보상금도 2024년과 동일한 1억 7,800만원임.

○ 보상금 지급관리는 보상금 지급업무 효율성 제고 및 사례연구 등 경비로 2024년 대비 10.0% 감소한 9,900만원임.

○ 보훈심사위원회운영은 공무직 등 인건비 인상을 반영하여 2024년 대비 1.6% 증가한 16억 3,600만원임.

○ 등록관리는 IC탑재 국가보훈등록증 교체발급사업 종료 등을 감안하여 2024년 대비 50.4% 감소한 33억 3,600만원임.

○ 고엽제환자 검진은 검진인원 및 집행 추이 등을 반영하여 2024년과 동일한 26억 6,700만원, 고엽제역학조사는 제7차 역학조사 3차 연도 소요를 반영하여 2024년과 동일한 3억 300만원임.

< 2025년도 보훈심사및보상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증감률 (B-A)/A
□ 보훈심사및보상	5,025,545	5,117,384	91,839	1.8
○ 보훈보상금	3,468,124	3,580,723	112,599	3.2
- 보상금	3,468,124	3,580,723	112,599	3.2
○ 수당	1,536,117	1,518,748	△17,369	△1.1
- 간호수당	55,045	54,513	△532	△1.0
- 생활조정수당	89,526	84,754	△4,772	△5.3
- 6·25자녀수당	403,289	428,693	25,404	6.3
- 고엽제수당	309,760	316,267	6,507	2.1
- 무공영예수당	51,170	46,117	△5,053	△9.9
- 참전명예수당	625,993	586,966	△39,027	△6.2
- 4·19혁명공로수당	1,334	1,438	104	7.8
○ 수시보상금	9,982	9,971	△11	△0.1
- 사망일시금	9,694	9,694	-	-
- 재해보상금	178	178	-	-
- 보상금지급관리	110	99	△11	△10.0
○ 보훈심사	1,620	1,636	16	1.0
- 보훈심사위원회운영	1,620	1,636	16	1.0
○ 등록심사	9,702	6,306	△3,396	△35.0
- 등록관리	6,732	3,336	△3,396	△50.4
- 고엽제환자검진	2,667	2,667	-	-
- 고엽제역학조사	303	303	-	-

□ 보훈단체지원(1200)

○ 보훈단체지원 사업은 보훈단체 인건비 등 운영비 및 지방보훈회관 건립을 지원하는 사업 등으로, 2024년 대비 6.7% 감소한 362억 8,100만원이 편성됨.

○ 보훈단체운영 및 선양활동 등은 보훈단체 선양활동 사업 등을 일부 감축하여 2024년 대비 2.4% 감소한 342억 8,100만원임.

○ 지방보훈회관 건립은 2024년 대비 46.7% 감소한 20억원임.

< 2025년도 보훈단체지원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증감률 (B-A)/A
□ 보훈단체지원	38,870	36,281	△2,589	△6.7
○ 보훈단체지원	38,870	36,281	△2,589	△6.7
- 보훈단체운영및선양활동등	35,120	34,281	△839	△2.4
- 지방보훈회관건립	3,750	2,000	△1,750	△46.7

□ 보훈의료복지(2100)

○ 보훈의료복지 사업은 국가유공자 의료·요양 등 복지서비스 사업으로, 보훈병원 재활센터 확충사업 종료를 감안하여 2024년 대비 0.6% 감소한 6,717억 6,500만원이 편성됨.

○ 국가유공상이자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시설 이용지원은 무인발매기 및 할인 발권 전산 연계시스템 개발이 완료되어 2024년 대비 5.3% 감소한 107억 2,900만원임.

○ 보훈병원 진료는 진료실적,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및 차세대보훈병원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반영하여 2024년 대비 0.1% 증가한 3,922억 9,600만원임.

○ 위탁병원 진료는 위탁병원 확대, 최근 진료실적을 감안하여 2024년 대비 2.8% 감소한 2,491억 1,300만원임.

○ 보철구 지급은 2024년과 동일한 60억 2,600만원임.

○ 제대군인 의료지원은 2024년과 동일한 23억 6,500만원임.

○ 종합재활체육센터 관리·운영은 온라인 매체 등을 활용한 일상생활 체육지원 프로그램 다각화로 인한 경비 절감으로 2024년 대비 16.9% 감소한 26억 7,800만원임.

○ 대구보훈병원 외래시설 개선은 서관동 증축 3년차 사업비를 반영하여 2024년 대비 562.8% 증가한 74억 9,000만원임.

○ 보훈병원 의료환경 개선은 중앙보훈병원 및 광주보훈병원 시설확충사업 잔여 설계비를 반영하여 2024년 대비 123.4% 증가한 10억 6,800만원임.

< 2025년도 보훈의료복지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예산(A)	2025년도 예산안(B)	증감 (B-A)	증감률 (B-A)/A
□ 보훈의료복지	676,108	671,765	△4,343	△0.6
○ 교통시설이용지원	11,329	10,729	△600	△5.3
- 교통시설이용지원	11,329	10,729	△600	△5.3
○ 의료지원	656,737	649,800	△6,937	△1.1
- 보훈병원진료	392,031	392,296	265	0.1
- 위탁병원진료	256,315	249,113	△7,202	△2.8
- 보철구지급	6,026	6,026	-	-
- 제대군인의료지원	2,365	2,365	-	-
○ 의료환경개선	8,042	11,236	3,194	39.7
- 종합재활체육시설관리운영	3,223	2,678	△545	△16.9
- 보훈병원재활센터 확충	3,211	-	△3,211	순감
- 대구보훈병원외래시설개선	1,130	7,490	6,360	562.8
- 보훈병원의료환경개선	478	1,068	590	123.4

□ 생활안정지원(2200)

○ 생활안정지원은 국가유공자의 자립능력과 생활안정 향상을 위한 교육·취업 지원 사업으로, 2024년 대비 0.2% 감소한 289억 5,200만원이 편성됨.

○ 보훈대상자 교육비지원 중 수업료면제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교육

지원 사업으로 학령인구 감소 등을 반영하여 2024년 대비 0.4% 감소한 248억 9,300만원이며, 학습보조비도 2024년과 동일한 12억 4,100만원임.

○ 취업지원은 직업상담사 인건비 증액에 따라 2024년 대비 1.9% 증가한 28억 1,800만원임.

< 2025년도 생활안정지원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증감률 (B-A)/A
□ 생활안정지원	29,002	28,952	△50	△0.2
○ 교육지원	26,237	26,134	△103	△0.4
- 보훈대상자교육비지원 (수업료면제)	24,996	24,893	△103	△0.4
- 보훈대상자교육비지원 (학습보조비 등)	1,241	1,241	-	-
○ 취업지원	2,765	2,818	53	1.9
- 취업지원	2,765	2,818	53	1.9

□ 보훈문화(3100) 및 회계기금간거래(8400)

○ 보훈문화 및 회계기금간거래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기억하는 보훈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2024년 대비 0.7% 감소한 1,899억 1,500만원이 편성됨.

○ 독립기념관 운영 및 활성화 사업은 한국 독립운동 인명사전 발간 등 종료사업 등을 감안하여 2024년 대비 2.5% 감소한 274억 7,900만원임.

○ 보훈문화 조성은 보훈문화 확산 진흥 및 국내외사적지탐방, 보훈문화관 건립 연차소요 등을 감안하여 2024년 대비 8.5% 감소한 141억 400만원임.

○ 보훈문화콘텐츠 제작 및 지원 사업은 AI 디지털 휴먼, 참여형 프로그램 사업 종료 등을 감안하여 2024년 대비 31.5% 감소한 67억 5,400만원임.

○ 현충시설 건립은 용성전승관 건립 등 종료 사업은 감액하고, 독립의 전당 건립 등 연차소요를 반영하여 2024년 대비 9.5% 증가한 77억 5,800만원임.

○ 현충시설 관리는 LA흥사단 본부 옛건물 리모델링 사업 연차소요 등을 반영하여 2024년 대비 41.3% 증가한 69억 4,400만원임.

○ 기념관 관리운영은 백범김구기념관 등 4개 국가관리기념관의 디지털전시관 조성사업 완료 등을 감안하여 2024년 대비 49.8% 감소한 77억 8,500만원임.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운영은 집행 실소요 등 감안하여 2024년 대비 6.0% 감소한 92억 2,400만원임.

○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 지원은 독도의용수비대원 및 유족 사망에 따른 인원 감소 등을 감안하여 2024년 대비 9.8% 감소한 7억 1,600만원임.

○ 보훈기념행사는 정부기념행사 거행, 순직경찰·소방공무원 추모행사 등 민간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과 동일한 39억 5,400만원임.

○ 호국보훈의달 행사는 소속기관 행사비 및 보훈의 상징 달기 감액 등을 반영하여 2024년 대비 10.0% 감소한 11억 3,000만원임.

○ 독립운동 관련 사업 등 지원은 집행 실소요 등을 감안하여 2024년 대비 3.9% 감소한 17억 4,500만원임.

○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범국민 감사캠페인, 국민통합 문화예술축제 등 6개 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97억 3,900만원임

○ 순애기금 전출금은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지급 등으로 2024년 대비 0.1% 감소한 925억 8,300만원임.

< 2025년도 보훈문화 사업 및 회계기금간거래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증감률 (B-A)/A
합 계	191,214	189,915	△1,299	△0.7
□ 보훈문화	98,563	97,332	△1,231	△1.2
○ 독립기념관	28,176	27,479	△697	△2.5
- 독립기념관운영및활성화	28,176	27,479	△697	△2.5
○ 보훈문화진흥	25,261	20,858	△4,403	△17.4
- 보훈문화조성	15,407	14,104	△1,303	△8.5
- 보훈문화콘텐츠제작및지원	9,854	6,754	△3,100	△31.5
○ 현충시설	37,307	31,711	△5,596	△15.0
- 현충시설건립	7,083	7,758	675	9.5
- 현충시설관리	4,916	6,944	2,028	41.3
- 기념관관리운영	15,493	7,785	△7,708	△49.8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운영	9,815	9,224	△591	△6.0
○ 기념사업	7,819	17,284	9,465	121.1

구 분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증감률 (B-A)/A
- 독도의용수비대 기념사업회지원	794	716	△78	△9.8
- 보훈기념행사	3,954	3,954	-	-
- 호국보훈의달행사	1,256	1,130	△126	△10.0
- 독립운동관련사업등지원	1,815	1,745	△70	△3.9
- 광복80주년기념사업	-	9,739	9,739	순증
□ 회계기금간거래	92,651	92,583	△68	△0.1
-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 전출금	92,651	92,583	△68	△0.1

□ 보훈예우 및 국립묘지(3200)

○ 보훈예우 및 국립묘지는 독립유공자 발굴포상 및 예우 지원, 12개 국립묘지 관리 및 3개 국립묘지 조성 사업 등으로, 2024년 대비 18.2% 증가한 1,257억 7,300만원이 편성됨.

○ 독립유공자 등 발굴포상은 전문사료발굴분석단 처우개선 등을 반영하여 2024년 대비 2.7% 증가한 17억 9,500만원임.

○ 독립유공자 등 자료수집 관리는 알려지지 않은 독립유공자 관련 연구용역 종료, 이달의 독립운동가 온·오프라인 홍보 증액 등을 감안하여 2024년 대비 11.8% 감소한 26억 7,800만원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은 국가유공자 등 사망 시 마지막 예우를 다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 대비 9.7% 감소한 64억 8,400만원임.

○ 국립묘지현충선양활동은 국립서울현충원 디지털 미디어월 설치 완료 등을 감안하여 2024년 대비 84.4% 감소한 9억 3,700만원임.

○ 국립서울현충원은 보훈부 이관 이후 더욱 품격 있는 안장·추모 서비스 제공, 최적의 참배환경 조성 등 연차소요를 반영하여 113억 3,300만원임.

○ 국립대전현충원은 후문 도로 주차장 공사 등 완료, 기와 보수공사 및 차량 차단기 설치 등을 감안하여 2024년 대비 30.4% 감소한 113억 5,200만원임.

○ 민주묘지(3개소)는 5·18묘지 개선 타당성 연구용역 종료, 경상경비 감액 등을 반영하여 2024년 대비 2.6% 감소한 26억 400만원임.

○ 국립호국원(6개소)은 묘역확충 마무리(영천·임실·이천)를 위한 연차사업비 및 완료(괴산·산청) 감안하여 2024년 대비 11.5% 감소한 497억 5,900만원임.

○ 국립신암선열공원은 공무직 등 인건비 공통 인상을 반영하여 2024년 대비 0.6% 증가한 7억 800만원임.

○ 국립묘지 조성은 연천현충원 및 횡성호국원 조성 연차소요 반영하여 2024년 대비 206.2% 증가한 381억 2,300만원임.

< 2025년도 보훈예우 및 국립묘지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증감률 (B-A)/A
□ 보훈예우 및 국립묘지	106,389	125,773	19,384	18.2
○ 공훈발굴 및 국가유공자등 예우	11,967	10,957	△1,010	△8.4

- 독립유공자등발굴포상	1,747	1,795	48	2.7
- 독립유공자등자료수집관리	3,038	2,678	△360	△11.8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	7,182	6,484	△698	△9.7
○ 국립묘지 조성 및 관리	**94,422**	**114,816**	**20,394**	**21.6**
- 국립묘지현충선양활동	6,022	937	△5,085	△84.4
- 국립서울현충원	-	11,333	11,333	순증
- 국립대전현충원	16,320	11,352	△4,968	△30.4
- 민주묘지(3개소)	2,673	2,604	△69	△2.6
- 국립호국원(6개소)	56,251	49,759	△6,492	△11.5
- 국립신암선열공원	704	708	4	0.6
- 국립묘지조성	12,452	38,123	25,671	206.2

□ 제대군인지원(4100)

○ 제대군인지원은 제대군인 취·창업지원, 국제교류협력, 참전 관련 기념사업 등으로 2024년 대비 40.1% 감소한 354억 6,000만원이 편성됨.

○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은 제복근무자 감사캠페인 감액 등 감안하여 2024년 대비 4.4% 감소한 179억 1,000만원임.

○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은 단가 인상 반영하여 2024년 대비 5.4% 증가한 73억 8,200만원임.

○ 국제보훈교류협력은 국외참전시설 및 현충시설 관련 앱개발 완료, 유엔참전국 교류사업 등 반영하여 2023년 대비 7.0% 감소한 87억 7,400만원임.

○ 국제보훈교류협력 사업은 인빅터스 유치 연구용역 종료, 집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2024년 대비 10.0% 감소한 79억 9,100만원임.

○ 참전기념행사는 참전유공자 명비 건립, 6·25전쟁 영웅 선양사업 종료를 감안하여 2024년 대비 18.7% 감소한 21억 7,700만원임.

< 2025년도 제대군인지원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증감률 (B-A)/A
□ 제대군인지원	59,188	35,460	△23,728	△40.1
○ 제대군인생활안정	25,748	25,292	△456	△1.8
- 제대군인사회복귀지원	18,743	17,910	△833	△4.4
- 제대군인전직지원금	7,005	7,382	377	5.4
○ 참전·제대군인 명예선양	33,440	10,168	△23,272	△69.6
- 국제보훈교류협력사업	8,874	7,991	△883	△10.0
- 참전기념행사	2,677	2,177	△500	△18.7
- 월남참전유공자제복증정 (60주년계기)	21,889	-	△21,889	순감

□ 보훈행정(7100)

○ 보훈행정은 청사 시설개선, 기관운영 등 일반행정, 정보화사업 등으로 2024년 대비 2.6% 감소한 192억 3,100만원이 편성됨.

○ 청사 유지보수, 사무 및 민원환경 개선, 청관사 임차는 공공부문 경비 절감을 감안하여 2024년 대비 4.9% 감소한 52억 3,600만원임.

○ 송무 지원은 의학자문, 패소사건 소송비용 등으로 2024년 대비 11.6% 감소한 3억 9,800만원임.

○ 행정효율성증진 및 능력개발은 청년인턴・2030자문단 운영 등을 포함하여 2024년 대비 1.3% 증가한 15억 300만원임.

○ 보훈정책개발은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3년 주기) 용역사업 완료를 감안하여 2024년 대비 38.5% 감소한 12억 7,800만원임.

○ 사회복무요원 운용은 국립서울현충원 이관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증원을 반영하여 2024년 대비 54.2% 증가한 8억 3,600만원임.

○ 보훈정책홍보는 정책 온・오프라인 홍보비 등으로 2024년 대비 27.1% 증가한 10억 9,200만원임.

○ 이동보훈팀 운영은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및 고용부담금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2024년 대비 3.1% 증가한 20억 4,400만원임.

○ 보훈상담센터 운영은 공공요금, 사무용품비 등 센터 운영경비 절감 등을 감안하여 2024년 대비 9.9% 감소한 2억 3,700백만원임.

○ 나라사랑신문발간은 나라사랑신문 발간 용역비, 우편료 등으로 2024년 대비 10.0% 감소한 21억 7,500만원임.

○ 정보화사업은 정보시스템·전산장비 유지관리, 통합보훈정보시스템 개선을 포함하여 2024년 대비 6.2% 증가한 44억 3,200만원임.

< 2025년도 보훈행정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증감률 (B-A)/A
□ 보훈행정	19,751	19,231	△520	△2.6
○ 청관사임차 및 시설개선	5,504	5,236	△268	△4.9
- 청사유지보수	1,447	1,302	△145	△10.0
- 사무및민원환경개선	835	752	△83	△9.9
- 관사임차	3,222	3,182	△40	△1.2
○ 일반행정	5,412	5,107	△305	△5.6
- 송무지원	450	398	△52	△11.6
- 행정효율성증진및능력개발	1,483	1,503	20	1.3
- 보훈정책개발	2,078	1,278	△800	△38.5
- 사회복무요원운용	542	836	294	54.2
- 보훈정책홍보	859	1,092	233	27.1
○ 보훈서비스지원	4,663	4,456	△207	△4.4
- 이동보훈팀운영	1,983	2,044	61	3.1
- 보훈상담센터운영	263	237	△26	△9.9
- 나라사랑신문발간	2,417	2,175	△242	△10.0
○ 정보화	4,172	4,432	260	6.2
- 정보화사업	4,172	4,432	260	6.2

2.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가. 세입예산안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주로 LPG 세금인상분 보조금 부당사용에 따른 국고보조금 환수금으로, 2025년도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2024년과 동일한 6,700만원이 편성됨.

< 2025년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증감률 (B-A)/A
합 계	67	67	-	-
ㅇ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28	28	-	-
- 기타재산이자외수입	28	28	-	-
ㅇ 기타경상이전수입	39	39	-	-
- 기타경상이전수입	39	39	-	-

나. 세출예산안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는 국가유공자 보철용차량 LPG감면, 친환경차량 지원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24년 대비 25.7% 감소한 98억 5,400만원임.

< 2025년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예산(B)	2025년 예산안(A)	증감 (B-A)	증감률 (B-A)/A
국가유공자등차량지원	13,259	9,854	△3,405	△25.7

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가. 세입예산안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국고보조금 정산 반환금으로 2024년 대비 41.3% 증가한 1억 5,400만원이 편성됨.

< 2025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증감률 (B-A)/A
ㅇ 기타경상이전수입	109	154	45	41.3
- 기타경상이전수입	109	154	45	41.3

나. 세출예산안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운영비로 인건비 증액 등을 감안하여 2024년 대비 3.0% 증가한 23억 8,400만원임.

< 2025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증감률 (B-A)/A
제주보훈업무지원	2,315	2,384	69	3.0

Ⅲ. 성과계획서

1. 임무와 비전

○ 국가보훈부는 2025년도 임무를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여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한다’로 설정하고,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을 실현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를 만든다’로 비전을 설정하였음.

2. 목표 및 과제 현황

○ 국가보훈부는 5가지 전략목표(①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체계 정립으로 공정한 보훈을 실현한다 ② 의료·복지서비스 강화로 보훈가족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한다 ③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존중하고 예우한다 ④ 제대군인과 참전군인의 명예롭고 안정적인 삶을 지원한다 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신 분을 기억하는 보훈문화를 조성한다)와 9개의 프로그램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12개 성과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 2025년도 국가보훈부 성과지표 현황 >

전략목표	프로그램 목표	프로그램 목표의 성과지표수	성과지표 성격				정량지표수 (비중)
			투입	과정	산출	결과	
5	9	12	1	-	1	10	6
		100%	8.3%	-	8.3%	83.3%	(50.0%)

< 2025년도 국가보훈부 성과지표 세부 현황 >

프로그램목표	성과지표			'25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지표명	가중치	성과 분야		정량/정성	성격	
전략목표Ⅰ.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체계 정립으로 공정한 보훈을 실현한다							
프로그램목표Ⅰ-1.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보상을 실시한다							
보훈심사및보상	①보훈급여금 적정 지급률	1.0	일반 재정	99.95 (%)	정량	투입	
프로그램목표Ⅰ-2. 보상체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효율적 행정환경을 조성한다							
보훈행정	①정보서비스 적기 처리율	0.5	정보화	87 (%)	정량	산출	
	②정보화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0.5	정보화	88 (점)	정성	결과	
전략목표Ⅱ. 의료·복지서비스 강화로 보훈가족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한다							
프로그램목표Ⅱ-1. 의료·복지 인프라 확충 및 품질 향상으로 보훈의료복지서비스 체계를 혁신한다							
보훈의료복지	①보훈복지서비스에 대한 국가보훈대상자 만족도	1.0	일반 재정	89.96 (점)	정성	결과	기관 대표 지표
프로그램목표Ⅱ-2. 88골프장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국가유공자 등 복지재원 마련에 기여한다							
기금증식	①자기자본 이익률	0.5	일반 재정	72.2 (%)	정량	결과	
	②골프장 1인 객단가	0.5	일반 재정	189.7 (천원)	정량	결과	
프로그램목표Ⅱ-3. 국가유공자의 취업·대부·교육지원으로							

프로그램목표	성과지표			'25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지표명	가중치	성과 분야		정량/정성	성격	
생활안정 기반을 향상시킨다							
생활안정지원	①신규 취업자 고용유지율	0.7	일반 재정	80.0 (%)	정량	결과	
	②대부지원 만족도	0.3	일반 재정	81.5 (점)	정성	결과	
전략목표Ⅲ.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존중하고 예우한다							
프로그램목표Ⅲ-1. 국가유공자 사망 시 예우체계를 확립하고, 정부 주도 국가유공자를 발굴하며 독립운동 유산을 보존·활용한다							
보훈예우 및 국립묘지	①국가유공자 예우에 대한 국민평가	1.0	일반 재정	81.25 (점)	정성	결과	
전략목표Ⅳ. 제대군인과 참전군인의 명예롭고 안정적인 삶을 지원한다							
프로그램목표Ⅳ-1.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참전군인의 명예를 선양한다							
제대군인지원	①제대군인 취·창업률	1.0	일반 재정	67.5 (%)	정량	결과	
전략목표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신 분을 기억하는 보훈문화를 조성한다							
프로그램목표Ⅴ-1. 국민참여와 공감을 기반으로 하는 보훈문화 활동을 활성화한다							
보훈문화	①보훈문화의식 개선도	1.0	일반 재정	72.6 (점)	정성	결과	기관 대표 지표
프로그램목표Ⅴ-2. 국민과 함께하는 보훈단체 선양활동을 추진한다							
보훈단체지원	①보훈단체에 대한 호감도	1.0	일반 재정	73.0 (점)	정성	결과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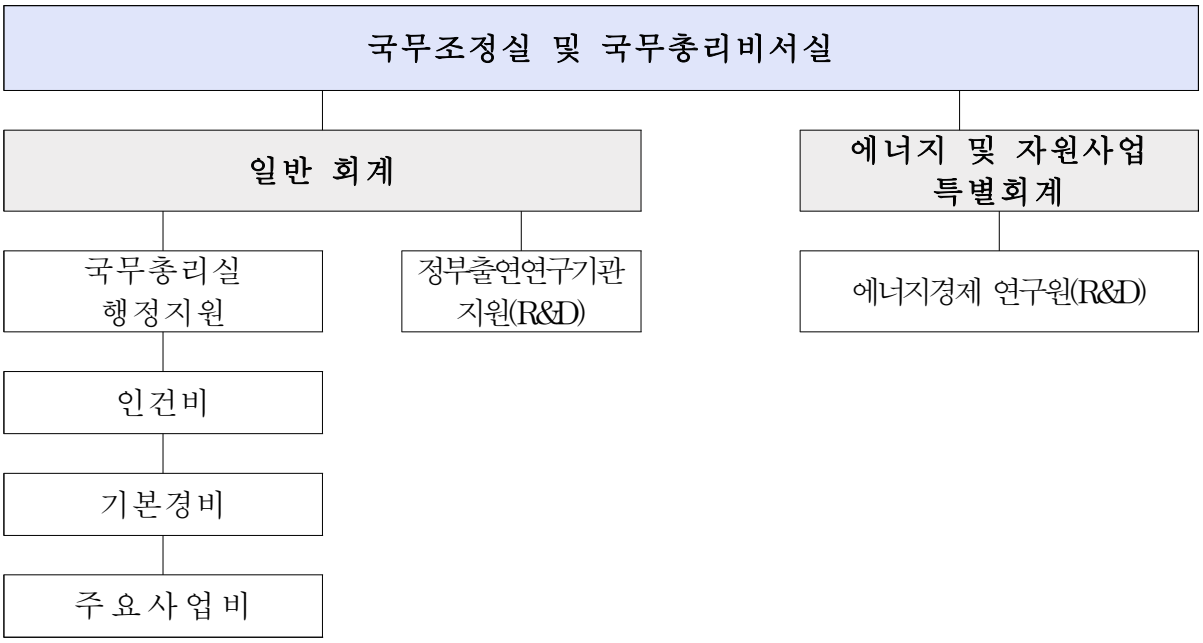
Ⅰ.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개 요

1. 총 괄

1)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1개의 특별회계(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재정구조도>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억 7,900만원,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6,625억 600만원,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123억 7,400만원이 편성됨.

<2025년도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과 목	2024년도 예산(A)	2025년도 예산안(B)	증 감 (B-A)	증 감 (B-A)/A
합 계	23	279	256	1,113
일반회계	23	279	256	1,113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	-	-	-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2025년도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예산(A)	2025년도 예산안(B)	증 감 (B-A)	증 감 (B-A)/A
합 계	660,550	674,880	14,330	2.2
일반회계	648,919	662,506	13,587	2.1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11,631	12,374	743	6.4

주) 총계기준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2) 2025년도 재정운용 방향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2025년도 정책의 기본방향을 '국무총리 보좌기관의 역량을 제고하여 국정 성과를 창출한다'로 두고, 협업·현장·국민 중심으로 국정과제 성과창출을 선도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5대 중점과제를 설정·추진한다는 계획임.

<2025년도 5대 중점과제>

1 국정운영 기획관리 및 평가
- ○ 국정과제의 체계적 관리 및 정부업무평가 강화 등을 통하여 국정성과에 대한 대국민 체감 제고

2 사회통합 및 안전관리 추진
- ○ 적극적·선제적 갈등관리를 통해 원활한 국정성과 창출을 도모하고, 대테러·미세먼지 대책 등의 조정 및 지원을 통해 국민의 안전 보호

3 규제개혁
- ○ 전방위적 규제개혁을 통해 민간의 자유와 창의가 최대한 발현되는 자유롭고 효율적인 시장경제 조성

4 국가적 중장기 추진과제 지원
- ○ 청년정책 조정 및 지원을 통해 청년의 삶을 개선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중장기 과제 이행 지원

5 대국민 및 정당과의 소통
- ○ 국무총리 국정활동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온라인 홍보와 양방향 소통을 추진하고, 국회·정당 및 시민사회와 정부 간의 협력 증진

(자료: 2025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성과계획서)

□ 2025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성과계획서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2025년도에 국무총리의 국정통할을 효율적으로 보좌하는 것을 핵심전략 목표로 추진할 계획임.

<2025년도 전략목표별 재원배분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비중
전략목표 1 : 국무총리의 국정통할을 효율적으로 보좌한다.	46,670	100.0
합 계	**46,670**	**100.0**

(출처: 2025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성과계획서)

2. 세입세출예산안

1) 일반회계

(1) 세입예산안

□ 2025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민간경상보조금 정산금 및 국고계좌 이자 세입조치 등 기타재산이자수입 200만원과 과오지급금 반납 및 정산금 등 기타경상이전수입 2억 7,700만원을 합하여 2억 7,900만원으로 2024년도 세입예산안 대비 1113% 증가한 규모임.

<2025년도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과 목	2024년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 감	
			(B-A)	(B-A)/A
합 계	23	279	256	1,113
○ 기타재산이자수입	1	2	1	100
○ 기타경상이전수입	22	277	255	1,159

(2) 세출예산안

□ 2025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6,625억 600만원으로 2024년도 예산대비 135억 8,700만원(2.1%)이 증액 편성됨.

○ 2024년도 예산 대비 인건비는 10억 5,200만원(1.8%) 증가하였고, 기

본경비는 3억 2,800만원(2.4%) 증가하였음. 주요사업비는 국제개발협력 총괄 조정 및 지원 사업에서 24억 2,400만원 증액되는 등 31억 9,100만원(6.2%) 증가하였고, 출연금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출연금이 33억 4,500만원, 국토연구원 출연금이 22억 200만원 증액되는 등 90억 1,600만원(1.7%) 증가함.

<2025년도 세출예산안 총괄>

(단위 : 백만원, %)

과 목	2024년도 예산(A)	2025년도 예산안(B)	증 감	
			(B-A)	(B-A)/A
합 계	**648,919**	**662,506**	**13,587**	**2.1**
인건비	59,222	60,274	1,052	1.8
기본경비	13,927	14,255	328	2.4
주요사업비	51,209	54,400	3,191	6.2
출연금	524,561	533,577	9,016	1.7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가. 인건비

□ 2025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인건비 예산안은 602억 7,400만원으로 2024년도 예산 대비 10억 5,200만원(1.8%) 증가함.

○ 보수 및 연가보상비는 공무원 처우개선 인상분 등 반영으로 인하여 2024년도 예산 대비 각각 16억 1,900만원, 2,100만원 증가함

<2025년도 인건비 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과 목	2024년도 예산(A)	2025년도 예산안(B)	증 감	
			(B-A)	(B-A)/A
합 계	59,222	60,274	1,052	1.8
○ 세목별	59,222	60,274	1,052	1.8
- 보수(110-01)	56,845	58,468	1,623	2.9
- 기타직보수(110-02)	1,931	1,343	△588	△30.5
- 연가보상비(110-05)	446	463	17	3.8
○ 기관별	59,222	60,274	1,052	1.8
- 국무조정실	38,169	38,485	316	0.8
- 국무총리비서실	9,443	9,546	103	1.1
- 조세심판원	11,610	12,243	633	5.5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나. 기본경비

□ 2025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기본경비 예산안은 142억 5,500만원으로 2024년도 예산 대비 3억 2,800만원(2.4%) 증가함.

○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예산안은 48억 3,500만원으로 2024년도 예산대비 1,000만원(0.2%) 증가하였으며,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 예산안은 94억 2,000만원으로 2024년도 예산대비 3억 1,800만원(3.5%) 증가함.

○ 2025년도 기본경비 예산안이 2024년도 예산 대비 증가한 것은 총액인건비 비대상 국무조정실 기본경비 예산에 5년주기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소요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 증액납부('24년도 대비 42백만원 증가) 등 특이소요 반영에 기인한 것임.

<2025년도 기본경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과 목	2024년도 예산(A)	2025년도 예산안(B)	증 감	
			(B-A)	(B-A)/A
합 계	13,927	14,255	328	2.4
○ 기본경비(총액)	4,825	4,835	10	0.2
- 국무조정실	2,955	2,950	△5	△0.2
- 국무총리비서실	1,155	1,170	15	1.3
- 조세심판원	715	715	0	0.0
○ 기본경비	9,102	9,420	318	3.5
- 국무조정실	6,365	6,540	175	2.7
- 국무총리비서실	1,395	1,440	45	3.2
- 조세심판원	1,342	1,440	98	7.3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다. 주요사업비

□ 2025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주요사업비 예산안은 544억원으로 2024년도 예산 대비 31억 9,100만원(6.2%)이 증가함.

○ 주요사업비가 2024년도 예산 대비 증가한 것은 ODA 통합정보포털 개편 및 ODA 협업예산 확대 등을 위해 ‘국제개발협력 총괄 조정 및 지원’ 세부사업의 2025년도 예산안이 2024년 예산 대비 24억 2,400만원 증가하였고, 노후장비 교체를 위해 ‘내부 정보화’ 세부사업의 2025년도 예산안이 2024년 예산 대비 8억 1,700만원 증가한 것 등에 기인함.

<2025년도 주요사업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예산(A)	2025년도 예산안(B)	증 감 (B-A)	(B-A)/A
합 계	51,209	54,400	3,191	6.2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	177	230	53	29.9
국정운영 정보화(정보화)	1,346	1,346	0	0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	2,724	2,845	121	4.4
전자통합평가 정보화(정보화)	1,242	1,242	0	0
국정현안 대응 및 정책조정	-	199	199	순증
공공기관 갈등관리	350	350	0	0
대테러센터 운영	674	710	36	5.3
인권보호관 지원	386	410	24	6.2
미세먼지개선기획단 운영	88	537	449	510.2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1,759	2,120	361	20.5
규제개혁 정보화(정보화)	2,237	2,528	291	13.0
규제혁신추진단 운영	5,154	4,443	△711	△13.8
주한미군기지지원단 운영	105	96	△9	△8.6
국제개발협력 총괄 조정 및 지원(ODA)	2,972	5,396	2,424	81.6
세월호피해지원단 운영	108	107	△1	△0.9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운영	159	144	△15	△9.4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지원(ODA)	3,410	3,460	50	1.5
청년정책총괄 조정 및 지원	8,984	7,034	△1,950	△21.7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운영	5,165	5,049	△116	△2.2
특별자치시·도지원단 운영	481	442	△39	△8.1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운영	729	628	△101	△13.9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 운영	169	-	△169	순감
마약류대책협의회 운영	183	83	△100	△54.6
청년정책통합플랫폼 구축(정보화)	3,473	3,446	△27	△0.8
납세자 권리보호 지원강화	-	192	192	순증
창의적 업무역량 강화	1,139	1,153	14	1.2
내부 정보화(정보화)	1,655	2,472	817	49.4
공직복무 관리	868	974	106	12.2
국무총리 공관관리	1,126	400	△726	△64.5
국무총리 국정활동수행	1,499	1,499	0	0
조세심판 정보화(정보화)	433	303	△130	△30.0
부패예방추진단 운영	709	712	3	0.4
광복80주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 운영	-	2,129	2,129	순증
뉴미디어 정책정보 서비스	567	570	3	0.5
국회·정당 및 시민사회 등과의 소통강화	984	934	△50	△5.1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전출	154	217	63	40.9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는 120대 국정과제에 대한 체계적 점검·관리 및 성과 공유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 대비 5,300만원(29.9%) 증액된 2억 3,000만원이 편성됨.

○ ‘국정운영 정보화’는 국무·차관회의 운영, 대통령 재가 및 국정과제 관리 등을 실시간 처리하는 국정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13억 4,600만원이 편성됨.

○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은 정부업무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 운영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성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대비 1억 2,100만원(4.4%) 증액된 28억 4,500만원이 편성됨.

○ ‘전자통합평가 정보화’는 중앙행정기관의 성과관리 및 정부업무평가를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자통합평가시스템의 운영 및 개선을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12억 4,200만원이 편성됨.

○ ‘국정현안 대응 및 정책조정’은 정책 현장에서 정부와 국민이 민생현안을 논의하는 현장방문형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1억 9,900만원이 신규 편성됨.

○ ‘공공기관 갈등관리’는 갈등관리 시스템 구축, 갈등관리 역량 강화

및 인프라 확충을 통해 중앙행정기관의 갈등관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3억 5,000만원이 편성됨

○ ‘대테러센터 운영’은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운영, 24시간 상황관리 및 사건 대응, 테러 대상시설·이용수단 관리, 교육·홍보·실전 훈련을 통한 대테러 대응 역량 강화 등 범국가적 테러 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 대비 3,600만원(5.3%) 증액된 7억 1,000만원이 편성됨.

○ ‘인권보호관 지원’은 관계 기관의 대테러 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 및 인권을 보호하고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업무수행 지원을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 대비 2,400만원(6.2%) 증액된 4억 1,000만원이 편성됨.

○ ‘미세먼지개선기획단 운영’은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한 미세먼지 정책 조정·수립, 계절관리제 실시,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및 국민건강 보호 방안 시행 관리를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 대비 4억 4,900만원(510.2%) 증액된 5억 3,700만원이 편성됨.

○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은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추가·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 대비 3억 6,100만원(20.5%) 증액된 21억 2,000만원이 편성됨.

○ ‘규제개혁 정보화’는 규제 관련 행정업무 처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규제정보시스템(내부)과 규제정보포털·규제개혁신문고(외부)를 구축·운영 및 관리 등을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 대비 2억 9,100만원(13.0%) 증액된 25억 2,800만원이 편성됨.

○ ‘규제혁신추진단 운영’은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개별 부처의 주도적 해결이 어려운 덩어리 규제개선을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 대비 7억 1,100만원(13.8%) 감액된 44억 4,300만원이 편성됨.

○ ‘주한미군기지지원단 운영’은 주한미군기지 이전·반환·공여사업 정책에 관한 범정부 차원의 협의·조정 등을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 대비 900만원(8.6%) 감액된 9,600만원이 편성됨.

○ ‘국제개발협력 총괄 조정 및 지원(ODA)’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중심의 ODA 전략·정책 수립 및 성과관리 등을 통해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ODA를 추진하고 원조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 대비 24억 2,400만원(81.6%) 증액된 53억 9,600만원이 편성됨.

○ ‘세월호피해지원단 운영’은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운영과 세월호 피해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 대비 100만원(0.9%) 감액된 1억 700만원이 편성됨.

○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운영’은 새만금사업 주요사항 심의·의결을 위한 새만금위원회 운영과 새만금사업 관련 정책의 통합·조정 등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 대비 1,500만원(9.4%) 감액된 1억 4,400만원이 편성됨.

○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지원(ODA)’은 대한민국을 비롯한 OECD 선진국의 제도나 경험을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전수 교육하여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 대비 5,000만원(1.5%) 증액된 34억 6,000만원이 편성됨.

○ ‘청년정책총괄 조정 및 지원’은 부처별로 산재된 청년정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통합하고, 청년과의 소통 및 청년의 참여를 통한 청년정책 개선·보완으로 청년이 체감하는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 대비 19억 5,000만원(21.7%) 감액된 70억 3,400만원이 편성됨.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운영’은 경제·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소외계층·

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 대비 1억 1,600만원(2.2%)이 감액된 50억 4,900만원이 편성됨.

○ ‘특별자치시·도지원단 운영’은 세종특별자치시·제주특별자치도·강원특별자치도 및 전북특별자치도의 추진 관련 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 등을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 대비 3,900만원(8.1%)이 감액된 4억 4,200만원이 편성됨.

○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운영’은 지속가능발전 위상 제고·추진체계 강화 등을 위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제정하면서,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됨에 따라, 위원회 운영 및 관련 정책 연구·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 대비 1억 100만원(13.9%)이 감액된 6억 2,800만원이 편성됨.

○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 운영’은 국내 미디어·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주관으로 설치된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활동 종료에 따라 25년도에 사업이 종료됨.

○ ‘마약류대책협의회 운영’은 범정부 마약류대책협의회 운영을 통해 중장기의 체계적인 마약류 관리 정책을 수립·조정하고, 정책 이행 상황 점검 및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

안은 2024년도 예산 대비 1억원(54.6%)이 감액된 8,300만원이 편성됨.

○ ‘청년정책통합플랫폼 구축’은 중앙부처·지자체의 청년정책 정보를 수집하여 청년 친화적인 방식으로 제공하는 ‘청년정책 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하여 청년의 청년정책 접근성·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 대비 2,700만원(0.8%)이 감액된 34억 4,600만원이 편성됨.

○ ‘납세자 권리보호 지원강화’는 납세자의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시 납세자의 권리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1억 9,200만원이 신규 편성됨.

○ ‘창의적 업무역량 강화’는 창의적 조직문화 조성과 직원의 역량 강화를 통해 능력 있고 솔선하는 총리실 조직문화 형성을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 대비 1,400만원(1.2%) 증액된 11억 5,300만원이 편성됨.

○ ‘내부 정보화’는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내부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사이버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등 정보서비스 제공과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 대비 8억 1,700만원(49.4%) 증액된 24억 7,200만원이 편성됨.

○ ‘공직복무관리’는 공직비위 상시점검을 통한 공직사회 기강확립, 부조리 예방 및 제도개선, 우수공무원 발굴·포상을 통한 공직자 사기

진작을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 대비 1억 600만원(12.2%) 증액된 9억 7,400만원이 편성됨.

○ ‘국무총리 공관관리’는 공관 시설물 및 부대시설의 적정한 유지·보수 및 환경개선을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 대비 7억 2,600만원(64.5%) 감액된 4억원이 편성됨.

○ ‘국무총리 국정활동수행’은 국무총리 내각통할 및 원활한 국정활동 수행 지원을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14억 9,900만원이 편성됨.

○ ‘조세심판 정보화’는 조세검색서비스 제공 및 사건접수, 배정, 발송, 통계작성 등 내부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 대비 1억 3,000만원(30.0%) 감액된 3억 300만원이 편성됨.

○ ‘부패예방추진단 운영’은 부패사각지대의 구조적·고질적 비리 예방을 위한 점검과 제도개선 추진 등 기존 반부패 기구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 대비 300만원(0.4%) 증액된 7억 1,200만원이 편성됨.

○ ‘광복80주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 운영’은 2025년 광복 80주년을 맞이하여 범국가적인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1억 2,900만원이 신규 편성됨.

○ ‘뉴미디어 정책정보 서비스’는 뉴미디어 채널 운영을 통해 국무총리 및 국무조정실 정책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형성 및 소통 강화를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 대비 300만원(0.5%) 증액된 5억 7,000만원이 편성됨.

○ ‘국회·정당 및 시민사회 등과의 소통 강화’는 국회·정당 및 시민사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 대비 5,000만원(5.1%) 감액된 9억 3,400만원이 편성됨.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전출’은 KDI 국제정책대학원 연금기금의 국가부담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 대비 6,300만원(40.9%) 증액된 2억 1,700만원이 편성됨.

2)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 2025년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안은 2024년도 대비 7억 4,300만원(6.4%) 증액된 123억 7,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 출연금임.

<2024년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과 목	2024년도 예산(A)	2025년도 예산안(B)	증 감	
			(B-A)	(B-A)/A
세입예산	-	-	-	-
세출예산	11,631	12,374	743	6.4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3. 성과계획서

1. 임무와 비전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2025년도 임무로 ‘중앙행정기관 행정의 지휘·감독, 정책조정 및 사회위험·갈등 관리, 정부업무평가 및 규제개혁, 제정당 및 국민과의 소통에 관해 국무총리를 충실히 보좌하여 국정운영 성과를 제고한다’를 기관 임무로 설정하고, ‘협업·현장·국민 중심으로 국정과제 성과창출을 선도’하는 것을 비전으로 설정하였음.

2. 목표 및 과제 현황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1가지 전략목표(‘국무총리의 국정통할을 효율적으로 보좌한다’)와 1개의 프로그램 목표(‘국무총리 보좌기관의 역량을 제고하여 국정 성과를 창출한다’)를 설정하였음.

□ 프로그램 목표별로 설정된 단위사업은 총 6개로 구성되어 있음.

<2025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성과 목표 및 관리과제 현황>

구분	전략목표	프로그램 목표	단위사업	세부사업
개수(개)	1	1	6	27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프로그램명	단위사업명	사업코드	비고
전략목표 I. 국무총리의 국정통할을 효율적으로 보좌한다.			
프로그램목표 I-1. 국무총리 보좌기관의 역량을 제고하여 국정 성과를 창출한다.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1) 국정운영 기획관리 및 평가	7000-7031	정보화 세부사업 포함
	(2) 사회통합 및 안전관리 추진	7000-7032	
	(3) 규제개혁	7000-7033	정보화 세부사업 포함
	(4) 국가적중장기 추진과제 지원	7000-7035	정보화 세부사업 포함
	(5) 행정지원	7000-7036	
	(6) 대국민 및 정당과의 소통	7000-7037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4. 성인지 예산[1)]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성인지 예산사업이 없음.

1) 성인지 예산서 : 사업(예산)이 성평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성별 수혜분석과 성과목표 설정을 통해 사업(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국가재정법」 제26조)

Ⅱ.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 출연금

Ⅰ. 개 요

1. 2025년도 예산안 규모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24개 출연연구기관의 2025년도 출연금 예산안 규모는 5,459억 5,100만원으로 2024년도의 5,361억 9,200만원에 비해 97억 5,900만원(1.8%)이 증가하였음.

<2025년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안 규모>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예산(A)	2025년도 예산안(B)	증 감	
			(B-A)	(B-A)/A
연구회 및 24개 연구기관	536,192	545,951	9,759	1.8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2. 비목별 예산안 내역

<비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예산(A)	2025년도 예산안(B)	증 감	
			(B-A)	%
합 계	536,192	545,951	9,759	1.8
기본사업비	440,382	455,058	14,676	3.3
○ 인건비	331,072	342,567	11,495	3.5
○ 경상운영비	54,467	56,150	1,683	3.1
○ 기관고유사업비	54,843	56,341	1,498	2.7
특수사업비	98,296	93,948	△4,348	△4.4
○ 일반사업비	90,574	92,632	2,058	2.3
○ 시설비	7,722	1,316	△6,406	△83.0
자체수입 출연금 대체	△2,486	△3,055	△569	22.9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 기본사업비는 4,550억 580만원으로 전년대비 3.3%인 146억 7,600만원이 증가함.

○ 인건비: 전년대비 114억 9,500만원(3.5%) 증가한 3,425억 6,700만원

- 2025년도 처우개선분(3.0%) 반영: 100억원

- 2024년도 신규인력 자연증가분(12명): 3억원

- 2025년도 신규인력(17명): 4억원

- 2022년 공공기관 혁신계획에 따른 정원 조정(4명): △2억원

○ 경상운영비: 전년대비 16억 8,300만원(3.1%) 증가한 561억 5,000만원

- 공공부문 비용절감을 위한 경상운영비 5% 감액(공통): △8억원

- 임차청사 임차료 및 관리비(14개 기관*): 8억원

  * 연구회, 과학, 대외, 산업, 통일, 교통, 노동, 보건, 육아, 여성, 직능원, 청소년, 형사, 환경

- 재산세 증감분(국토, 농촌, 대학원): △4억원

- 사무실 추가 임차(대학원, 환경): 7억원

- 노후시설 보수, 안전관리 등 기관별 소요 반영(15개 기관*): 14억원

  * 연구회, 국토, 대외, 에너지, 정보, KDI, 교육, 평가원, 농촌, 법제, 여성, 조세, 청소년, 해양, 행정

○ 기관고유사업비: 전년대비 14억 9,800만원(2.7%) 증가한 563억 4,100만원

- 클라우드 이용료,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부족분(공통): 8억원

- 연구기관 기본연구사업비 증액(법제, 청소년): 4억원

- 학회 등과의 연구네트워크 활성화(공통): 3억원

□ 특수사업비는 939억 4,800만원으로, 전년대비 △4.4%인 43억 4,800만원이 감소함.

○ 일반사업비: 전년대비 20억 5,800만원(2.3%) 증가한 926억 3,200만원

- 종료·감액 △197억(167건), 신규・증액 218억(82건): 20억원

○ 시설비: 전년대비 64억 600만원(△83.0%) 감소한 13억 1,600만원

- 노후장비 교체, 시설보수 등 공사비 지원(3개 기관*): 13억원

* 에너지, 대학원, 행정

- 세종글로벌리더연수센터 건립(대학원): △58억원

□ 자체수입 출연금 대체는 30억 5,500만원으로 전년대비 5억 6,900만원(22.9%)이 증가함.

○ 청사이전 계획 순연에 따른 청사이전비, 보증금 등(통일, 조세) : △31억원

3. 예산안 내역

<기관별 예산안 총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도 예산	2024년도 예산(A)	2025년도 예산안(B)	증 감	
				(B-A)	%
합 계	556,704	536,192	545,951	9,759	1.8
경제·인문사회연구회	39,291	18,777	22,122	3,345	17.8
1.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7,472	16,914	17,123	209	1.2
2. 국토연구원	21,783	22,185	24,387	2,202	9.9
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31,474	29,816	31,340	1,524	5.1
4. 산업연구원	22,408	24,965	23,973	△992	△4.0
5. 에너지경제연구원	11,930	11,631	12,374	743	6.4
6.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4,597	15,217	15,665	448	2.9
7. 통일연구원	10,298	10,926	9,267	△1,659	△15.2
8. 한국개발연구원	69,229	71,714	68,823	△2,891	△4.0
- 본원	44,520	46,106	47,416	1,310	2.8
- 국제정책대학원	24,709	25,608	21,407	△4,201	△16.4
9. 한국교육개발원	20,677	22,219	22,079	△140	△0.6
10.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5,809	25,327	26,154	827	3.3
11. 한국교통연구원	19,110	18,858	18,515	△343	△1.8
12. 한국노동연구원	16,286	15,849	16,244	395	2.5
1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7,566	17,285	17,071	△214	△1.2
14. 한국법제연구원	14,064	13,874	15,154	1,280	9.2
1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2,474	32,006	32,289	283	0.9
- 본원	24,484	23,871	23,786	△85	△0.4
- 육아정책연구소	7,990	8,135	8,503	368	4.5
1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6,039	16,087	16,933	846	5.3
1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7,982	37,818	38,278	460	1.2
18. 한국직업능력연구원	23,445	22,543	23,586	1,043	4.6
19.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0,365	9,959	10,350	391	3.9
20.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1,663	21,305	21,103	△202	△0.9
21. 한국행정연구원	14,556	13,906	14,292	386	2.8
22.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12,814	13,379	13,688	309	2.3
23. 한국환경연구원	23,380	21,745	22,900	1,155	5.3
24. 건축공간연구원	11,992	11,887	12,241	354	3.0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 주요 증감 내역(3억원 이상)

<주요 신규사업>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클라우드 네이티브 센터 운영 6억 9,000만원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글로벌 전략기술 인텔리전스 네트워크 구축 사업 3억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GTI 및 동북아 낙후지역 개발협력 강화를 위한 연구네트워크 사업 3억원

○ 산업연구원: 신통상규범 대응을 위한 순환경제 구축방안 연구 3억원
인구감소 시대의 미래 산업구조 전환 및 대응연구 3억원

○ 에너지경제연구원: 가스열펌프(GHP) 시설 교체 6억 8,800만원

○ 통일연구원: 북한총람 3억 7,000만원
미 新행정부 대외전략 및 한반도정책과 동북아 정세: 전망과 대책 3억 7,000만원

○ 한국개발연구원: 개발협력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OECD 공동연구 5억 5,000만원

○ KDI국제정책대학원: 노후 기숙사 누수 방지공사 4억 9,300만원

○ 한국교육개발원: 수요맞춤 고등교육 성과정보 관리체계 구축 연구 3억원

○ 한국교통연구원: 교통부문 3대 혁신전략 지원사업 3억 5,100만원

○ 한국노동연구원: 외국인·이민자 수요 및 영향 평가 연구 3억 5,000만원

○ 한국법제연구원: 법학기초교육연구 7억 5,000만원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인적자본기업패널조사 3억 3,000만원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운·물류 공급망 북중미 협력체계 구축사업 3억 2,600만원

○ 건축공간연구원: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건축 통계 개발 및 정보 활용 사업 3억원

<주요 증액사업>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사업 29억 7,500만원

사이버 보안관제 센터 운영 3억 3,800만원

○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지원센터 17억 7,000만원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데이터 기반 미래예측·정책지원사업 3억원

○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책시계열사업 7억원

○ KDI국제정책대학원: 공공외교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교육협력사업 5억 6,800만원

○ 한국법제연구원: 기후변화·ESG법제연구 3억 7,000만원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저출산대응 가족패널조사 사전연구 3억 5,000만원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미래물류기술 고도화 연구 3억 5,000만원

○ 한국행정연구원: 행정선진화 연구사업 3억 2,300만원

<주요 감액・완료사업>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출연연구기관 연구·행정효율화 추진 △3억 6,800만원

출연연 디지털플랫폼 구축사업 △3억 8,200만원

○ 산업연구원: 서비스업 통계 플랫폼 구축사업 △6억 3,200만원

한-인도네시아 산업혁신 연구협력사업 △15억 2,500만원

○ 한국개발연구원: 국가비전 및 전략 제시 사업 △4억 5,600만원

열린혁신 플랫폼을 통한 정책형성 방안 △3억 5,100만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개선 사업 △5억 1,500만원

○ KDI국제정책대학원: 세종글로벌리더연수센터 건립 △57억 5,500만원

기숙사 노후시설 및 안전설비 개선 △3억원

○ 한국교육개발원: 대학 진단·평가 정책지원 연구 및 사업 △11억 8,000만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년 가족과 출산조사 △12억 4,700만원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글로벌 혁신성장을 위한 국제물류 공급사슬 관리 정책 연구 △5억 7,700만원

【 공정거래위원회 】

1. 세입예산안

○ 2025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 대비 892억 6,400만원(19.8%) 증가한 5,394억 2,600만원임.

- 세부내역을 보면, 과징금·위약금·가산금·기타 경상이전수입으로 구성되는 경상이전수입이 5,394억 2,000만원으로 세입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재산이자로 6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예산 (A)	2025예산안 (B)	증감(△) (B-A)	(B-A)/A
재산수입	6	6	-	-
- 기타재산이자	6	6	-	-
경상이전수입	**450,155**	**539,420**	**89,264**	**19.8**
- 과징금 및 과태료	448,262	537,516	89,254	19.9
- 위약금	1	1	-	-
- 가산금	473	496	23	4.8
- 기타경상이전수입	1.420	1,407	△13	△1.0
합 계	**450,161**	**539,426**	**89,264**	**19.8**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 세출예산안

(1) 개 요

○ 2025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1,633억 9,200만원으로 2024년도 예산 대비 49억 6,300만원(3.1%)이 증가함.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예산 (A)	2025예산안 (B)	증감 (B-A)	(B-A)/A
□ 인 건 비	53,650	56,162	2,502	4.7
□ 기 본 경 비	8,921	8,949	28	0.3
□ 사 업 비	95,858	98,281	2,423	2.5
○ 계속사업	31,274	31,828	554	1.7
(조정원 출연)	11,742	12,757	1,015	8.6
(소비자원 출연)	52,842	53,696	854	1.6
○ 신규사업	-	-	-	-
○ 완료사업	-	-	-	-
합 계	158,429	163,392	4,963	3.1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가. 2025년 중점 투자 분야

□ 2025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예산안의 중점 투자방향을 살펴보면,

○ 쟁점이 복잡·다양한 소송사건들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 선임을 통해 처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패소로 인한 과징금 환급을 최소화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료를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 한국소비자원 출연예산으로 티몬-위메프 사태의 조속한 대응을 위한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및 소송 지원 예산 4억 4,800만원과 결혼서비스 분야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지원 예산 6억 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또한, 공정거래법 개정('27.2월 시행)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심의 문서의 법적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심의 문서를 전자적으로 제출·송달하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ISP) 예산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선불식할부거래상품(상조·적립식 여행 등)의 가입·대금납부·이용 등 전과정에서의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종합플랫폼 구축 예산 6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음.

나. 주요 예산구조 개편 사항

① 신규사업 : 해당 없음

② 사업명칭 변경 : 해당 없음

③ 사업 이동 : 해당 없음

(2) 인건비

○ 2025년도 인건비 예산안은 561억 5,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2024년 예산인 536억 6,500만원보다 25억 200만원(4.7%)이 증액된 수준임.

○ 인건비의 예산편성인원은 2024년의 652명 대비 4명이 감소한 649명으로, 직제상 정원 649명, 별도정원 86명, 기타직 공무원 11명(전문임기제 5명, 실무수습 6명)을 각각 반영하였음

- 2025년도 보수(110-01목) 예산안은 551억 5,700만 원으로 2024년 대비 4.4% 증액 편성되었음.

- 2025년도 기타직보수(110-02목) 예산안은 5억 7,200만원으로 2024년 대비 32.7% 증액 편성되었음.

- 2025년도 연가보상비(110-05목) 예산안은 4억 2,300만원으로 2024년 대비 6.0% 증액 편성되었음.

<2025년도 인건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4예산 (A)	'25예산안 (B)	증감 (B-A)	(B-A)/A
○ 인건비	**53,650**	**56,152**	**2,502**	**4.7**
- 보수(110-01)	52,820	55,157	2,337	4.4
- 기타직보수(110-02)	431	572	141	32.7
- 연가보상비(110-05)	399	423	24	6.0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3) 기본경비

○ 2025년도 기본경비 예산안은 2024년 대비 2,800만원(0.3%)이 증액된 89억 4,900만원이 편성됨.

<2025년도 기본경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4예산 (A)	'25예산안 (B)	증감 (B-A)	(B-A)/A
□ 기본경비 합계	8,921	8,949	28	0.3
- 인건비(110)	1,091	1,062	△29	△2.7
- 운영비(210)	3,687	3753	66	1.8
- 여비(220)	1,019	1028	9	0.9
- 업무추진비(240)	381	396	15	3.9
- 직무수행경비(250)	1,770	1770	0	0.0
- 보전금(310)	20	22	2	10.0
- 민간이전(320)	179	180	1	0.6
- 건설비(420)	454	311	△143	△31.5
- 유형자산(430)	320	156	△164	△51.3
- 무형자산(440)	0	271	271	순증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2025년 기본경비 예산안의 주요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음.

- 본부 조사실 환경개선을 위한 공사비 2억 4,5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음.

- 광주지방공정거래 사무소 신규 관사임차를 위한 무형자산 2억 7,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4) 세출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 결산	2024예산 (A)	2025예산안 (B)	증 감 (B-A)	%
합 계	158,366	158,429	163,392	4,963	3.1
【일반회계】	158,366	158,429	163,392	4,963	3.1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구분	2023 결산	2024예산		2025예산안		증 감	
		본예산	추경(A)	요구	조정(B)	(B-A)	%
총 계	**158,366**	**158,429**	**158,429**	**164,791**	**163,392**	**4,963**	**3.1**
7001 인건비	**51,419**	**53,650**	**53,650**	**56,152**	**56,152**	**2,502**	**4.7**
총액인건비성 인건비 (7001-100)	51,419	53,650	53,650	56,162	56,162	2,502	4.7
7011 기본경비	**9,341**	**8,921**	**8,921**	**8,949**	**8,949**	**28**	**0.3**
기관운영 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 (7011-200)	3,082	3,207	3,207	3,316	3,316	109	3.4
심판관리관실 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 (7011-201)	66	72	72	74	74	2	2.8
기획조정관실 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 (7011-202)	34	66	66	51	51	△15	△22.7
경쟁정책국 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 (7011-203)	19	26	26	26	26	0	0.0
조사관리관실 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 (7011-204)	10	17	17	20	20	3	17.6
소비자정책국 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 (7011-205)	18	20	20	20	20	0	0.0
시장감시국 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 (7011-206)	26	20	20	20	20	0	0.0
카르텔조사국 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 (7011-207)	72	83	83	85	85	2	2.4
기업협력정책관실 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 (7011-208)	20	23	23	23	23	0	0.0
서울사무소 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 (7011-209)	268	280	280	281	281	1	0.4
부산사무소 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 (7011-210)	111	90	90	92	92	2	2.2
광주사무소 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 (7011-211)	74	70	70	70	70	0	0.0
대전사무소 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 (7011-212)	66	59	59	59	59	0	0.0
대구사무소 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 (7011-213)	65	56	56	56	56	0	0.0

구분	2023 결산	2024예산		2025예산안		증 감	
		본예산	추경(A)	요구	조정(B)	(B-A)	%
기업집단감시국 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 (7011-214)	62	58	58	60	60	2	3.4
기업거래결합심사국 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 (7011-215)	27	27	27	27	27	0	0.0
기관운영 비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 (7011-250)	1,827	1,552	1,552	1,360	1,360	△192	△12.4
심판관리관실 비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 (7011-251)	438	514	514	325	325	△189	△36.8
기획조정관실 비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 (7011-252)	541	730	730	716	716	△14	△1.9
경쟁정책국 비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 (7011-253)	408	371	371	376	376	5	1.3
조사관리관실 비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 (7011-254)	70	175	175	198	198	23	13.1
소비자정책국 비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 (7011-255)	143	145	145	145	145	-	-
시장감시국 비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 (7011-256)	84	119	119	119	119	-	-
카르텔조사국 비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 (7011-257)	102	132	132	138	138	6	4.5
기업협력정책관 비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 (7011-258)	98	80	80	80	80	-	-
서울사무소 비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 (7011-259)	686	199	199	231	231	32	16.1
부산사무소 비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 (7011-260)	484	218	218	211	211	△7	△3.2
광주사무소 비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 (7011-261)	71	95	95	348	348	253	266.3
대전사무소 비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 (7011-262)	77	87	87	87	87	-	-
대구사무소 비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 (7011-263)	75	85	85	81	81	△4	△4.7
기업집단감시국 비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 (7011-264)	117	134	134	136	136	2	1.5
기업거래결합심사국 비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 (7011-265)	101	111	111	118	118	7	6.3
7031 행정지원	**6,380**	**6,829**	**6,829**	**7,284**	**7,109**	**280**	**4.1**
공정거래지원(7031-300)	811	1,389	1,389	1,181	1,157	△232	△16.7
행정소송수행(7031-301)	3,278	3,286	3,286	3,886	3,886	600	18.3
전산운영경비(7031-302)	2,291	2,154	2,154	2,217	2,066	△88	△4.1
7032 공정위정보화	**7,833**	**4,959**	**4,959**	**5,372**	**4,746**	**△213**	**△4.3**
정보화기반확충(7032-501)	2,658	3,472	3,472	3,717	3,259	△213	△6.1

구분	2023 결산	2024예산		2025예산안		증 감	
		본예산	추경(A)	요구	조정(B)	(B-A)	%
데이터포털 구축 및 운영(7032-503)	5,175	1,487	1,487	1,655	1,487	-	-
1231 선진 경쟁정책 추진	**2,234**	**1,790**	**1,790**	**2,329**	**1,955**	**165**	**9.2**
정책연구개발(1231-310)	359	349	349	349	289	△60	△17.2
대외활동 강화(1231-311)	445	394	394	700	626	232	58.9
개도국기술지원(1231-312)	64	78	78	79	79	1	1.3
디지털포렌식센터 운영(1231-503)	1,366	969	969	1,201	961	△8	△0.8
1241 카르텔대응강화	**767**	**741**	**741**	**842**	**842**	**101**	**13.6**
카르텔환경개선(1241-320)	767	741	741	842	842	101	13.6
1251 독과점시장 환경개선	**5,677**	**5,331**	**5,331**	**5,655**	**5,557**	**226**	**4.2**
독과점시장 감시체계 운영(1251-330)	3,695	3,320	3,320	3,470	3,470	150	4.5
사익편취 행태개선(1251-331)	360	370	370	417	402	32	8.6
기업집단포털시스템 운영(1251-332)	1,622	1,641	1,641	1,768	1,685	44	2.7
1261 시장구조개선	**536**	**642**	**642**	**675**	**629**	**△13**	**△2.0**
경쟁제한 규제개선(1261-340)	536	642	642	675	629	△13	△2.0
1271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출연	**11,657**	**11,742**	**11,742**	**12,757**	**12,757**	**1,015**	**8.6**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출연(1271-350)	11,657	11,742	11,742	12,757	12,757	1,015	8.6
1331 대·중소기업간 거래행태 개선 및 동반성장시책 추진	**2,435**	**3,313**	**3,313**	**3,227**	**3,219**	**△94**	**△2.8**
대·중소기업간 거래행태개선 및 동반성장시책 추진(1331-400)	1,461	2,326	2,326	1,726	1,718	△608	△26.1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1331-401)	974	987	987	1,501	1,501	514	52.1
1431 선진소비자정책 추진	**1,159**	**1,389**	**1,389**	**1,792**	**1,792**	**403**	**29.0**
선진소비자정책추진(1431-600)	1,159	1,389	1,389	1,792	1,792	403	29.0
1441 소비자 권익증진 지원	**2,748**	**1,234**	**1,234**	**1,234**	**1,234**	**-**	**-**
소비자권익증진 지원(1441-610)	2,748	1,234	1,234	1,234	1,234	-	-
1451 소비자보호인프라 운영	**5,327**	**5,046**	**5,046**	**4,827**	**4,755**	**△291**	**△5.8**
소비자상담센터 운영(1451-620)	3,561	3,628	3,628	3,527	3,527	△101	△2.8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1451-621)	1,766	1,418	1,418	1,300	1,228	△190	△13.4
1461 한국소비자원 출연	**50,853**	**52,842**	**52,842**	**53,696**	**53,696**	**854**	**1.6**
한국소비자원 출연(1461-630)	50,853	52,842	52,842	53,696	53,696	854	1.6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5) 성과계획서

가. 임무와 비전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도 임무로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설정하고, ‘민생·혁신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를 정책 비전으로 설정하였음.

나. 목표 및 과제 현황

○ 공정거래위원회는 3가지 전략목표(‘시장의 혁신경쟁을 촉진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기회를 보장한다’,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한다’)와 4개의 프로그램 목표를 설정하였음.

○ 프로그램 목표별로 설정된 단위사업은 총 12개로 일반재정 10개, 정보화 2개로 구성되어 있음.

<2025년 공정거래위원회 성과 목표 및 관리과제 현황>

구분	전략 목표	프로그램 목표	단위사업			
			소 계	일반재정	R&D	정보화
개수(개)	3	4	12	10	-	2
비율(%)	-	-	100	83.3	-	16.7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프로그램명	단위사업명	과제번호	비고
전략목표 Ⅰ. 시장의 혁신경쟁을 촉진한다			
프로그램목표 Ⅰ-1. 시장에서의 공정경쟁을 촉진하여 시장경제를 활성화한다			
경쟁촉진	(1) 선진 경쟁정책 추진	Ⅰ-1	세부사업으로 정보화 포함
	(2) 독과점시장 환경개선	Ⅰ-1	세부사업으로 정보화 포함
	(3)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출연	Ⅰ-1	
	(4) 카르텔대응강화	Ⅰ-1	
	(5) 시장구조개선	Ⅰ-1	
프로그램목표 Ⅰ-2. 효율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공정거래제도 확립에 기여한다			
공정거래 행정지원	(1) 행정지원	Ⅰ-2	
	(2) 공정위 정보화	Ⅰ-2	세부사업으로 정보화 포함
전략목표 Ⅱ.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기회를 보장한다			
프로그램목표 Ⅱ-1. 중소기업의 공정거래여건을 마련하여 공정한 기회를 보장한다.			
중소기업 경쟁여건 개선	(1) 대·중소기업간 거래행태개선 및 동반성장시책추진	Ⅱ-1	
전략목표 Ⅲ.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한다			
프로그램목표 Ⅲ-1. 선진적 소비자정책 추진을 통해 소비자 후생을 증진한다			
소비자후생 증진	(1) 선진 소비자정책 추진	Ⅲ-1	
	(2) 소비자권익증진 지원	Ⅲ-1	
	(3) 소비자보호 인프라 운용	Ⅲ-1	세부사업으로 정보화포함
	(4) 한국소비자원 출연	Ⅲ-1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6) 주요 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코드번호)	2024년도 예산		2025년도 예산(안)		증가율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합 계	63,009	63,009	65,887	65,813	4.4
<일반회계>	63,009	63,009	65,887	65,813	4.4
행정소송 수행 (7031-301)	3,286	3,286	3,886	3,886	18.2
대외활동강화 (1231-311)	394	394	700	626	58.8
카르텔환경개선 (1241-320)	791	791	842	842	6.4
독과점시장 감시체계 운영 (1251-330)	3,320	3,320	3,470	3,470	4.5
건전한유통거래 질서 확립 (1331-401)	987	987	1,501	1,501	52.1
선진소비자 정책추진 (1431-600)	1,389	1,389	1,792	1,792	29.0
한국소비자원 출연 (1461-630)	52,842	52,842	53,696	53,696	1.6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금융위원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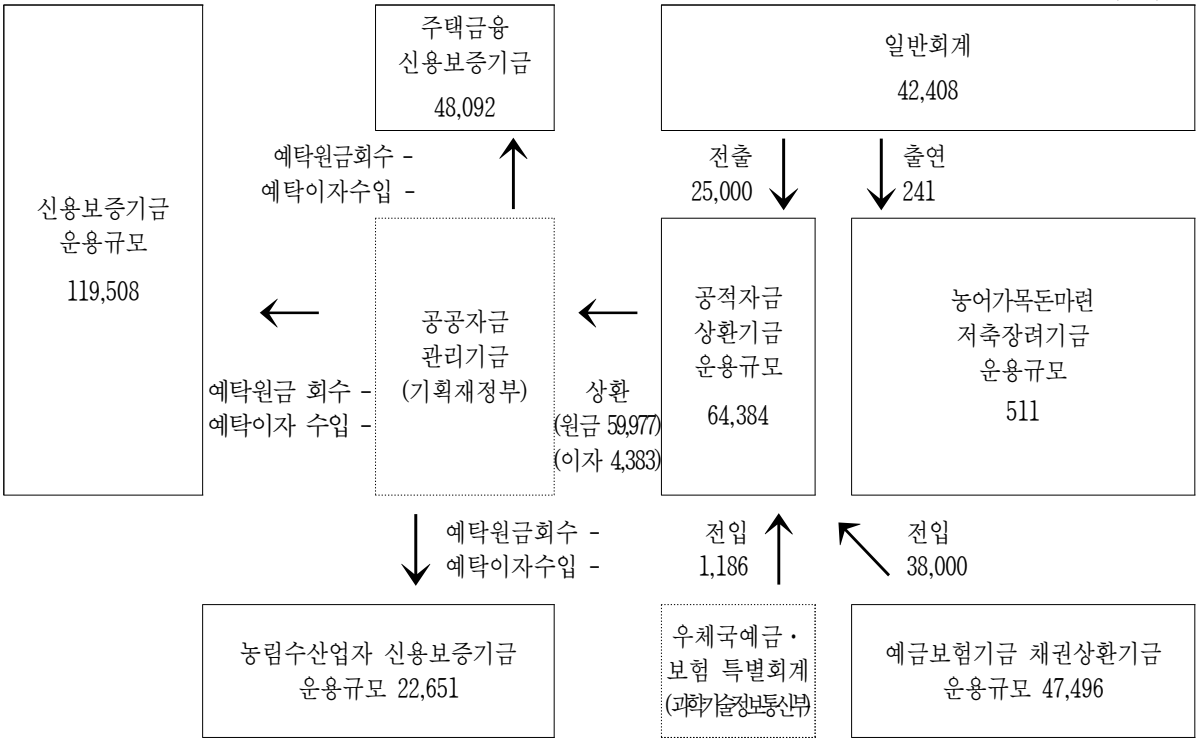
1. 총괄

□ 금융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일반회계와 6개 기금(공적자금상환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으로 구성됨.

○ 2025년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공적자금상환기금에 2조 5,000억원을 전출하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에 241억원을 출연함. 또한, 공적자금상환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5조 9,977억원의 예수원금과 4,383억원의 예수이자를 상환하며,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3조 8,000억원을 전출함.

<2025년 금융위원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흐름도>

(단위: 억원)



주) 총계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 2025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만 있으며, 2025년도 세입예산안은 2024년 최종예산 대비 115억원(12.8%) 증가한 1,011억원, 세출예산안은 2024년 예산 대비 2,378억원(5.9%) 증가한 4조 2,408억원임.

<2025년도 금융위원회 세입 · 세출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예산(A)	2025년도 예산안(B)	증감 (B-A)	(B-A)/A
□ 세입예산안	896	1,011	115	12.8
○ 일반회계	896	1,011	115	12.8
□ 세출예산안	40,030	42,408	2,378	5.9
○ 일반회계	40,030	42,408	2,378	5.9

(자료: 금융위원회)

□ 2025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2024년 대비 3조 7,173억원 감소한 30조 2,642억원으로,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은 2024년 대비 운용규모가 증가하였으나, 나머지 3개 기금은 2024년 대비 운용규모가 감소하였음.

<2025년도 금융위원회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		2025년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 기금운용계획안	339,815	339,815	302,642	△37,173	△10.9
○ 공적자금상환기금	108,893	108,893	64,384	△44,509	△40.9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641	641	511	△130	△20.3
○ 신용보증기금	114,703	114,703	119,508	4,805	4.2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20,196	20,196	22,651	2,455	12.2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48,972	48,972	48,092	△880	△1.8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46,410	46,410	47,496	1,086	2.3

(자료: 금융위원회)

□ 2025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총수입·총지출[2]은 일반회계 및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구성됨. 2025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총수입은 2024년 대비 4,497억원 감소(△10.3%)한 3조 9,209억원이며, 총지출은 2024년 대비 2,378억원 증가(15.8%)한 1조 7,409억원임.

2) 총수입·총지출은 회계·기금(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 제외)의 총계에서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 및 차입금·여유자금운용 등 보전거래를 차감하여 산출함.
* 금융위원회 소관 금융성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2025년도 금융위원회 총수입 · 총지출>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A)	2025년도 예산안(B)	증감 (B-A)	(B-A)/A
□ 총수입	43,706	39,209	△4,497	△10.3
○ 일반회계	896	1,011	115	12.8
○ 공적자금상환기금	42,810	38,198	△4,612	△10.8
□ 총지출	15,031	17,409	2,378	15.8
○ 일반회계	15,030	17,408	2,378	15.8
○ 공적자금상환기금	1	1	-	-

(자료: 금융위원회)

□ 2025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세부사업 중 예산규모가 큰 10대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3],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은 공적자금상환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상환으로 5조 9,977억원 규모임.

<금융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10대 세부사업>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		2025년도	증감	
	본예산 (당초)	추경(A) (수정)	예산안(B) (계획안)	(B-A)	(B-A)/A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상환(공자기)	97,894	97,894	59,977	△37,917	△38.7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예보)	42,500	42,500	38,000	△1,500	△10.6
비통화금융기관예치(신보)	29,269	29,269	35,069	5,800	19.8
일반보증대위변제(신보)	23,584	23,584	26,452	2,868	12.2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일반)	25,000	25,000	25,000	-	-
통화금융기관예치(신보)	29,957	29,957	24,381	△5,576	△18.6
통화금융기관예치(주신보)	21,132	19,042	20,021	979	5.1
통화금융기관예치(농신보)	16,074	16,074	17,139	1,065	6.6
대위변제(주신보)	6,694	8,700	13,364	4,664	53.6
비통화금융기관예치(예보)	-	-	9,438	9,438	순증

(자료: 금융위원회)

2. 세입예산안

3) 기관운영경비 및 내부거래 제외

□ 2025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011억 700만원으로 2024년 대비 114억 7,800만원(12.8%)이 증액 편성됨.

<2025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 결산	2024		2025년도 예산안(B)	증감 (B-A)	
		본예산	추경(A)			(B-A)/A
합 계	**77,381**	**89,629**	**89,629**	**101,107**	**11,478**	**12.8**
기타재산이자수입	99	-	-	58	58	순증
과태료	28,648	36,135	36,135	37,104	969	2.7
과징금	47,560	49,532	49,532	59,907	10,375	20.9
가산금	36	150	150	150	-	-
기타경상이전수입	1,037	3,812	3,812	3,888	76	2.0

(자료: 금융위원회)

○ 과태료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 수입으로, 2025년도에는 최근 3년간('20년~'22년) 과태료 수납액의 평균치 및 국가미수채권 회수 강화 노력분 반영 등에 따라 2024년도 예산대비 9억 6,900만원(2.7%)이 증가한 371억 400만원이 편성됨.

○ 과징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금융관련 법령 위반에 대하여 금전적 제재로서 부과되는 과징금 수입으로, 2025년도에는 최근 3년간('20년~'22년) 과징금 수납액의 평균치 및 국가미수채권 회수 강화 노력분 반영 등에 따라 2024년도 예산대비 103억 7,500만원(20.9%)이 증가한 599억 700만원이 편성됨.

○ 가산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위반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징금 및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부과되는 가산금 수입으로, 2025년도에는 최근 3년간('20년~'22년) 가산금 수납액의 평균치 등에 따라 2024년도 예산과 동일한 1억 5,000만원이 편성됨.

○ 기타경상이전수입은 금융성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국고보조사업 집행 잔액 반납금 및 명예퇴직수당 환수금, 소송비용 보전금 등 기타수입으로, 2025년도에는 2024년도 예산대비 7,600만원(2.0%)이 증가한 38억 8,800만원이 편성됨.

3. 세출예산안

1) 총 괄

□ 2025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조 2,408억 3,600만원으로 2024년도 예산 4조 30억 1,800만원 대비 2,378억 1,800만원(5.9%)이 증액 편성됨.

<2025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도 예산안(B)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합 계	1,733,066	4,003,018	4,003,018	4,240,836	237,818	5.9
□ 금융위원회 운영	1,429,206	1,503,108	1,503,108	1,740,836	237,728	15.8
○ 인건비	29,186	33,037	33,037	33,211	174	0.5
○ 기본경비	7,371	9,518	9,518	9,924	406	4.3
○ 주요사업비	1,392,649	1,460,553	1,460,553	1,697,971	237,148	16.2
□ 내부거래	303,860	2,500,000	2,500,000	2,500,000	-	-
○ 공적자금상환기금전출	303,860	2,500,000	2,500,000	2,500,000	-	-

(자료: 금융위원회)

○ 2025년도 금융위원회 운영 예산안은 1조 7,408억원으로, 인건비, 기본경비 및 사업비가 전년보다 증가하였으며 사업비는 2024년 예산 대비 2,371억 4,800만원(16.2%)이 증액 편성됨.

○ 2025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내부거래 예산안은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2조 5,000억원)로 전년과 동일한 규모로 편성됨.

□ 최근 5년간 금융위원회 일반회계의 프로그램별 세출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의 전출금(회계기금간거래)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왔으며, 2025년에는 산업은행 출자(반도체설비투자지원특별프로그램)·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는 산업금융지원 프로그램이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금융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프로그램별 예산 내역>

(단위: 억원, %)

프로그램명	2020년		2021년		2022년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융정책(1100)	199	179	184	184	146	145
서민금융지원(1200)	-	-	-	-	-	-
자금세탁방지시스템선진화(1300)	128	128	92	92	82	81
금융산업글로벌화(1400)	38	36	40	40	37	36
불법사금융 피해자 보호(1500)	12	12	6	6	-	-
금융의 날 행사 및 저축장려(1600)	340	340	342	342	-	-
금융소비자보호(1800)	2	2	2	2	488	968
산업금융지원(2400)	5,557	31,549	9,430	9,430	6,007	12,007
주택금융지원(2600)	-	-	500	500	500	1,590
금융행정효율화(7100)	457	450	456	456	741	737
회계기금간거래(8400)	21,000	21,000	26,000	26,000	26,000	26,000
합 계	**27,733**	**53,696**	**37,052**	**37,052**	**34,500**	**41,564**

프로그램명	2023년		2024년		2025년도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예산안
금융정책(1100)	140	140	123	123	129
서민금융지원(1200)	-	-	-	-	-
자금세탁방지시스템선진화(1300)	77	77	74	74	78
금융산업글로벌화(1400)	29	29	9	9	10
불법사금융 피해자 보호(1500)	-	-	-	-	-
금융의 날 행사 및 저축장려(1600)	-	-	-	-	-
금융소비자보호(1800)	7,570	7,570	6,813	6,813	6,280
산업금융지원(2400)	5,804	5,804	7,200	7,200	12,946
주택금융지원(2600)	1,668	1,668	-	-	-
금융행정효율화(7100)	750	750	810	810	821
회계기금간거래(8400)	21,600	21,600	25,000	25,000	25,000
합 계	**37,636**	**37,636**	**45,640**	**45,640**	**45,264**

(자료: 금융위원회)

<최근 5년 간 금융위원회 일반회계 예산의 프로그램별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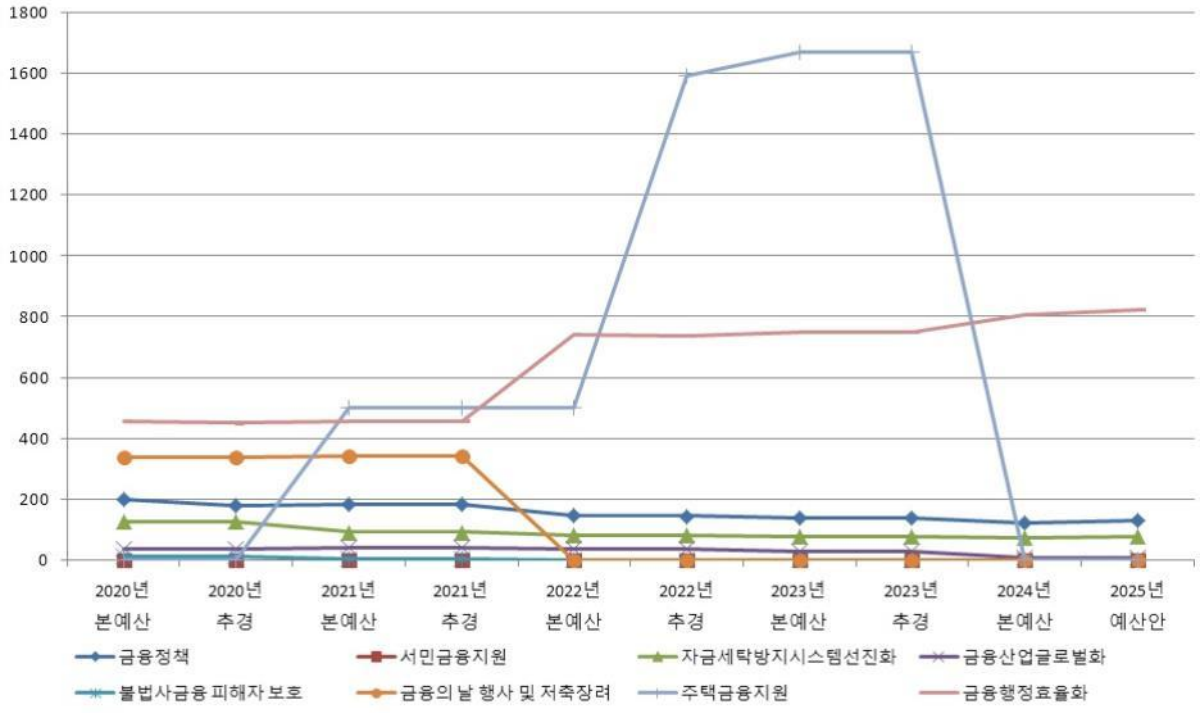
(단위: 억원)



(자료: 금융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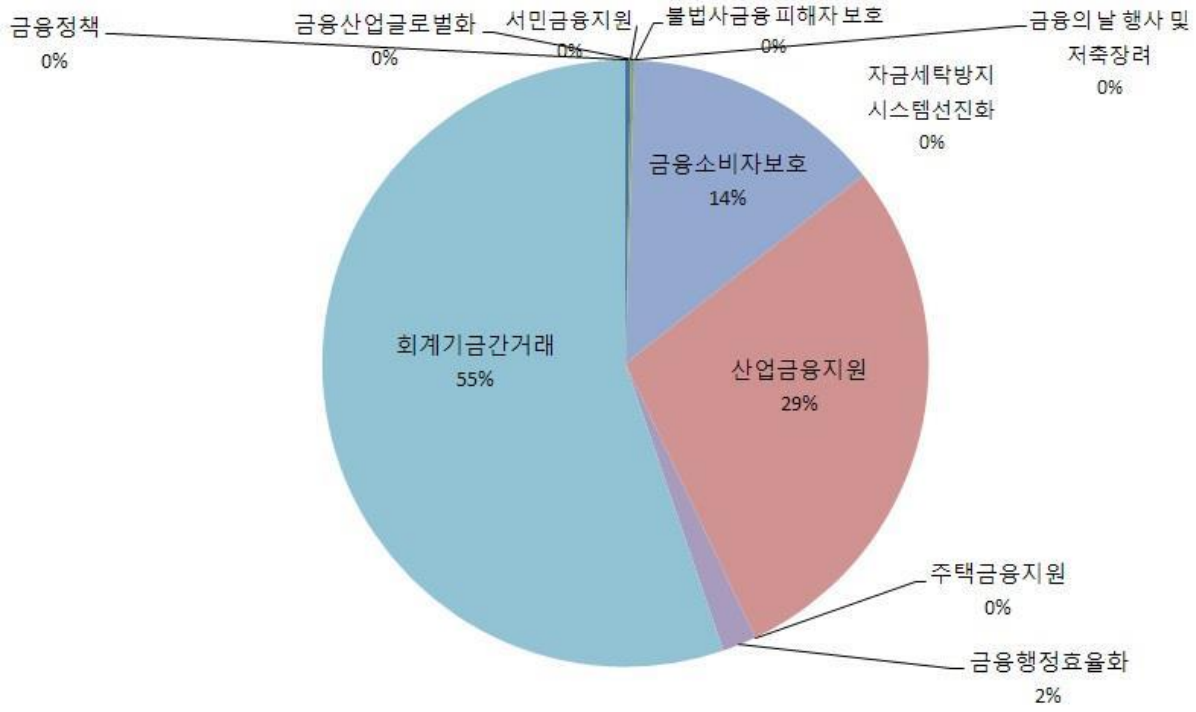
<기타 예산 세부 내역>

(단위: 억원)



(자료: 금융위원회)

<2025년도 금융위원회 일반회계 예산의 프로그램별 비중>



(자료: 금융위원회)

2) 인건비

□ 2025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인건비 예산안은 332억 1,100만원으로 2024년도 예산 330억 3,700만원 대비 1억 7,400만원(0.5%) 증가함.

<2025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인건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도 예산안(B)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인건비 합계	**29,186**	**33,037**	**33,037**	**33,211**	**174**	**0.5**
□ 세목별	29,186	33,037	33,037	33,211	174	0.5
○ 보수(110-01)	28,428	32,022	32,022	32,170	148	0.5
○ 기타직보수(110-02)	574	771	771	799	28	3.6
○ 연가보상비(110-05)	184	244	244	242	△2	△0.8
□ 기관별	29,186	33,037	33,037	33,211	174	0.5
○ 본부 인건비	23,930	26,747	26,747	26,818	71	0.3
○ FIU 인건비	5,256	6,290	6,290	6,393	103	1.6

(자료: 금융위원회)

○ 2025년도 인건비 예산이 증가한 것은 공무원 처우개선 인상분 등이 반영되었기 때문임.

3) 기본경비

□ 2025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기본경비 예산안은 99억 2,400만원으로 2024년 예산 대비 4억 600만원(4.3%)이 증가함.

<2025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기본경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본예산	2024년 추경(A)	2025년도 예산안(B)	증감 (B-A)	(B-A)/A
총액인건비 대상	본부	기획조정관실	2,620	3,100	3,100	3,222	122	3.9
		대변인실	7	8	8	8	-	-
		금융정책국	67	77	77	77	-	-
		자본시장국	-	59	59	115	56	94.9
		금융소비자국	67	35	35	37	2	5.7
		금융산업국	47	64	64	76	12	18.8
	소속기관	금융정보분석원	543	702	702	719	17	2.4
	소 계(A)		3,351	4,045	4,045	4,254	209	5.2
총액인건비 비대상	본부	기획조정관실	1,949	2,935	2,935	3,003	68	2.3
		대변인실	225	241	241	289	48	19.9
		금융정책국	533	672	672	712	40	6.0
		자본시장국	-	412	412	427	15	3.6
		금융소비자국	485	151	151	158	7	4.6
		금융산업국	251	318	318	386	68	21.4
	소속기관	금융정보분석원	577	650	650	695	45	6.9
	소 계(B)		4,020	5,379	5,379	5,670	291	5.4
합 계(A+B)			7,371	9,518	9,518	9,924	406	4.3

(자료: 금융위원회)

○ 2025년도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예산안은 42억 5,400만원으로 2024년도 예산대비 2억 900만원(5.2%)이 증가하였고,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 예산안은 56억 7,000만원으로 2024년도 예산대비 2억 9,100만원(5.4%)이 증가함.

4) 주요사업비

□ 2025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주요사업비 예산안은 1조 6,979억원으로 2024년 예산 대비 2,375억원(16.3%)이 증가함.

<2025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주요사업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도 예산안(B)	증감 (B-A)	
		본예산	추경(A)			(B-A)/A
합 계	**1,392,649**	**1,460,463**	**1,460,463**	**1,697,971**	**237,508**	**16.3**
핀테크 지원 사업	13,821	12,330	12,330	12,933	603	4.9
자금세탁방지추진	780	783	783	846	63	8.0
FATF 교육기구 운영 지원	2,220	1,998	1,998	2,018	20	1.0
FIU전산망구축운영(정보화)	4,640	4,635	4,635	4,947	312	6.7
금융관련 국제협력 및 금융중심지추진	1,001	937	937	981	44	4.7
금융소비자보호	98	101	101	101	-	-
금융그룹 통합감독 기반조성	38	38	38	35	△3	△7.9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청년희망적금)	360,168	165,738	165,738	-	△165,738	순감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28,000	56,000	56,000	56,000	-	-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청년도약계좌)	367,794	368,211	368,211	375,000	6,789	1.8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햇살론15)	-	90,000	90,000	90,000	-	-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886	1,255	1,255	1,205	△50	△4.0
산업은행 출자 (혁신성장펀드)	300,000	240,000	240,000	200,000	△40,000	△16.7
산업은행 출자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	100,000	100,000	100,000	-	-
산업은행 출자 (반도체생태계펀드)	-	-	30,000	30,000	30,000	순증
산업은행 출자 (반도체설비투자지원 특별프로그램)	-	-	-	250,000	250,000	순증
산업은행 출자 (원전산업성장펀드)	-	-	-	40,000	40,000	순증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도 예산안(B)	증감 (B-A)	
		본예산	추경(A)			(B-A)/A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280,000	330,000	330,000	500,000	170,000	51.5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기업구조혁신펀드)	-	50,000	50,000	-	△50,000	순감
금융위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1,360	1,058	1,058	3,012	1,954	184.7
금융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정보화)	1,600	1,585	1,585	1,461	△124	△7.8
자본시장조사단 운영(정보화)	537	323	323	286	△37	△11.5
금융위 대표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보수(정보화)	115	117	117	117	-	-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178	834	834	575	△259	△31.1
정책연구개발	722	665	665	599	△66	△9.9
금융정책알리기	839	844	844	885	41	4.9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251	407	407	450	43	10.6
회계의날	64	65	65	59	△6	△9.2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사업	-	200	200	200	-	-
금융의 날 행사	79	76	76	69	△7	△9.2
소송수행비용	425	800	800	900	100	12.5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인프라 구축	-	-	-	430	430	순증
금융복합지원 전담조직 운영	-	-	-	445	445	순증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장려기금 출연	27,033	31,463	31,463	24,417	△7,316	△23.3

(자료: 금융위원회)

5) 내부거래(회계기금간 거래)

□ 2025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내부거래(회계기금간 거래) 예산안은 2조 5,000억원으로 2024년과 동일한 규모임.

<2025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내부거래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도 예산안(B)	증감 (B-A)	
		본예산	추경(A)			(B-A)/A
합 계	303,860	2,500,000	2,500,000	2,500,000	-	-
공적자금상환기금전출	303,860	2,500,000	2,500,000	2,500,000	-	-

(자료: 금융위원회)

○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은 금융구조조정을 위하여 투입한 공적자금(예보채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 중 공적자금상환대책(2002년)에 따라 정부가 부담하기로 한 49조원을 2003~2006년에 걸쳐 국채로 전환하여 우선 상환하고 동 국채는 일반회계로부터 연간 2조원(2002년 현재가치 기준)을 출연 받아 2027년까지 상환하는 사업으로 2025년에는 2조 5,000억원이 편성됨.

4. 성과계획서

1) 임무와 비전

□ 금융위원회는 2025년도 임무를 ‘경제활력 뒷받침’, ‘금융산업혁신’, ‘소비자 중심 포용적 금융’, ‘공정성·투명성 강화’로 설정하고, ‘혁신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 으로 정책 비전을 설정하였음.

2) 목표 및 과제 현황

□ 금융위원회는 4가지 전략목표(‘일자리 창출을 위해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을 강화한다.’, ‘서민층의 금융부담 완화와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금융산업 선진화를 도모하고, 엄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한다.’, ‘금융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금융행정시스템을 구축한다.’)와 11개의 프로그램 목표를 설정하였음.

○ 프로그램 목표별로 설정된 단위사업은 총 21개로 구성되어 있음.

<2025년도 금융위원회 성과 목표 및 관리과제 현황>

구분	전략목표	프로그램 목표		
			단위사업	세부사업
개수	4	11	21	68

(자료: 금융위원회)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목표(Program Objectives)
전략목표Ⅰ.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을 강화한다.		
	Ⅰ-1 산업금융지원	산업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을 통해 국민경제를 활성화한다.
	Ⅰ-2 농림수산업금융지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하여 농어촌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한다.
	Ⅰ-3 신용보증금융지원	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하여 성장 잠재력이 높고 국민 경제에 기여도가 큰 중점정책부문의 기업이 필요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경제기반 강화 및 경제활력 제고를 도모한다.
전략목표Ⅱ. 서민층의 금융부담 완화와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Ⅱ-1 금융소비자보호	금융소비자를 보호 및 지원함으로써 서민층의 금융부담을 완화한다.
	Ⅱ-2 저축장려	농어민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함으로써 금융부담을 완화한다.
	Ⅱ-3 주택금융지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하여 서민층의 주거안정과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Ⅱ-4 복권기금운영 (취약계층지원)	금융소외계층에게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전략목표Ⅲ. 금융산업 선진화를 도모하고, 엄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한다.		
	Ⅲ-1 금융정책	핀테크 산업을 지원하여 금융혁신을 도모한다.
	Ⅲ-2 자금세탁방지시스템선진화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선진화한다.
	Ⅲ-3 금융산업글로벌화	금융산업 글로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전략목표Ⅳ. 금융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금융행정시스템을 구축한다.		
	Ⅳ-1 금융행정효율화	금융행정을 효율화한다.

(자료: 금융위원회)

5. 성인지 예산[4)]

□ 금융위원회는 성인지 예산사업이 없음.

4) 성인지 예산서: 사업(예산)이 성평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성별 수혜분석과 성과목표 설정을 통해 사업(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국가재정법」 제26조)

【 국민권익위원회 】

Ⅰ. 총 괄

1.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재정규모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만으로 구성되어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2025년도 재정규모를 살펴보면, 총지출 규모는 1,054억 3,700백만원으로 2024년도 대비 △5.5% 감소함.

2. 2025년도 재정운용 방향

○ 2025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고충처리, 행정심판, 제도개선 등의 기능 통합을 통해 '국민권익 증진'이라는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할 계획임.

< 기본 방향 >

◇ 현장중심의 국민고충 적극해소로 실질적 권익보호

◇ 불합리한 제도, 관행 및 규제 등에 대해 국민이 체감하도록 개선

◇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상식 확립으로 세계 20위권 청렴선진국 진입

< 세부 방향 >

□ 국민 고충의 적극적 해결

○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분야의 위법·부당, 소극행정 등에 대한 시정권고·의견표명을 강화하고, 악성민원에 따른 공직사회 불안·행정 비효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응방안 마련

○ ONE-STOP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을 위한 특별행정심판기관 통합 및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 통합 추진

○ 수요자 중심의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 온라인 행정심판 개선 등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심판

□ 국민의 목소리에 기반한 정책 개선

○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등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국민의 정책참여 활성화

○ 협업·개방을 통한 민원데이터 이용 활성화로 민원데이터 기반 정책개선 및 민원해소 지원

○ 국민고충·불편해소 및 구조적 부패관행·제도의 근원적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반부패 · 청렴정책 혁신 및 청렴문화 확산

○ 대한민국 국격에 걸맞은 청렴선진국 도약의 기틀 마련을 위해 국가청렴도(CPI) 지속 향상 추진

○ 각급기관의 청렴수준과 반부패 개선노력을 종합해 청렴도를 평가하고, 반부패정책 협력체계 및 공직자 의무교육 등을 통해 각급 기관 청렴역량 강화

○ 민-관 협력을 통한 반부패 거버넌스 확립 및 고위직, 미래세대 대상 청렴교육 확대로 사회전반의 청렴의식 확산

○ APEC 반부패 분야 국제회의 개최를 통해 한국의 반부패 성과를 공유하고 국제 반부패 협력사업 확대

□ 선제적 신고자 보호 및 부패현안에 적극 대응

○ 신고자 보호·지원 체계 일원화, 보상금 지급기준 개선, 적극적인 보호·보상 사건 처리 등을 통해 내실 있는 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 공정채용 상시 관리체계 운영 및 채용규정 컨설팅·전문교육 운영을 통한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

○ 공공재정 부정청구 취약분야 실태점검을 통한 공공재정 누수 방지 및 공공재정 운영의 투명성 제고

<2025년도 전략목표별 재원배분 규모>

(단위: 억원, %)

구 분	예산액	비중
□ 전략목표Ⅰ : 청렴한 국가 실현, 국민의 고충해결로 국민 권익을 증진한다.	452	100.0
합 계	452	100.0

Ⅱ. 세입세출예산안

1. 일반회계

가. 세입예산안

○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 대비 25.1% 증가한 11억 1,600만원이 편성됨.

○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는 이행강제금 수입 증가를 예상하여 2024년 대비 12.5% 증가한 1억 8,000만원이고, 기타경상이전수입은 보상금 지자체 상환액 및 보상금 과오납금 반환액 증가 등으로 2024년 대비 29.9% 증가한 8억 8,600만원이며, 기타잡수입은 청렴연수원 시설사용료 등으로 2024년과 동일한 5,000만원이 편성됨.

<2025년도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증감률 (B-A)/A
합 계	892	1,116	224	25.1
□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	160	180	20	12.5
- 과태료	160	180	20	12.5
□ 기타경상이전수입	682	886	204	29.9
- 기타경상이전수입	682	886	204	29.9
□ 잡수입	50	50	-	-
- 기타잡수입	50	50	-	-

나. 세출예산안

(1) 총괄

○ 2025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4년 대비 △5.5% 감소한 1,054억 3,700만원이 편성됨.

<2025년도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증감률 (B-A)/A
합 계	111,592	105,437	△6,155	△5.5
- 인건비	48,817	52,132	3,315	6.8
- 기본경비	7,847	8,148	301	3.8
- 주요사업비	54,928	45,157	△9,771	△17.8

※ 총계기준

○ 인건비와 기본경비는 2024년 대비 각각 33억 1,500만원(6.8%), 3억 100만원(3.8%) 증가하였고, 사업비는 97억 7,100만원(△17.8%) 감액 편성되었음.

(2) 인건비

○ 2025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인건비 예산안은 2024년 대비 33억 1,500만원(6.8%) 증가한 521억 3,200만원이 편성됨.

이는 본부 및 소속기관(정부합동민원센터, 청렴연수원) 공무원 등의 인건비임.

<2025년도 인건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증감률 (B-A)/A
합 계	48,817	52,132	3,315	6.8
□ 보수(110-01)	48,025	51,339	3,314	6.9
□ 기타직보수(110-02)	410	394	△16	△3.9
□ 연가보상비(110-05)	382	399	17	4.5

(3) 기본경비

○ 2025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기관운영 기본경비 예산안은 2024년 예산 대비 3억 100만원(3.8%) 증가한 81억 4,800만원이 편성됨.

<2025년도 기본경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증감률 (B-A)/A
합 계	7,847	8,148	301	3.8
□ 인건비(110)	746	1,056	310	41.6
□ 운영비(210)	4,122	4,072	△50	△1.2
□ 여비(220)	591	649	58	9.8
□ 업무추진비(240)	368	403	35	9.5
□ 직무수행경비(250)	1,012	961	△51	△5.0
□ 연구용역비(260)	401	385	△16	△4.0
□ 보전금(310)	114	110	△4	△3.5
□ 민간이전(320)	137	183	46	33.6
□ 건설비(420)	30	35	5	16.7
□ 유형자산(430)	200	285	85	42.5
□ 무형자산(440)	125	10	△115	△92.0

(4) 주요사업비

○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편성된 주요사업비 예산안은 1개의 프로그램, 7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4년 예산 대비 97억 7,100만원(△17.8%) 감소한 451억 5,700만원이 편성됨.

<2025년도 주요사업비 단위사업별 총괄표>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증감률 (B-A)/A
□ 주요사업비	54,928	45,157	△9,771	△17.8
○ 청렴권익문화확산	1,796	1,445	△351	△19.5
○ 청렴권익행정정보화	25,791	17,850	△7,941	△30.8
○ 청렴권익대내외협력강화	1,144	1,343	199	17.4
○ 부패·고충제도개선 및 국민소통활성화	12,002	9,609	△2,393	△19.9
○ 국민고충해소	1,324	1,680	356	26.9
○ 반부패청렴정책강화	11,694	11,687	△7	△0.1
○ 행정심판	1,177	1,543	366	31.1

○ 2025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예산안 내 통합콜센터시스템운영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반영되었으며, 67억 8,400만원이 편성됨.

○ 단위사업 청렴권익문화확산은 세부사업 청렴권익정책알리기 1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출 구조조정 및 사업 추진방식 개편에 따라 △19.5% 감액된 14억 4,500만원이 예산안으로 편성됨.

<2025년도 청렴권익문화확산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증감률 (B-A)/A
○ 청렴권익문화확산	1,796	1,445	△351	△19.5
- 청렴권익정책알리기	1,796	1,445	△351	△19.5

○ 청렴권익행정정보화 사업은 국민권익위원회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행정정보시스템, 국민신문고 등 대국민 소통창구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5년도에는 통합콜센터시스템운영 사업 예산 67억 8,400만원이 신규 반영되었으나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 구축 1단계 사업 완료로 148억 9,700만원이 감액되어 2024년 대비 △30.8% 감소한 178억 5,000만원이 편성됨.

<2025년도 청렴권익행정정보화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증감률 (B-A)/A
○ 청렴권익행정정보화	25,791	17,850	△7,941	△30.8
- 행정정보시스템운영	22,372	7,700	△14,672	△65.6
- 국민소통시스템구축및운영	3,419	3,366	△53	△1.6
- 통합콜센터시스템운영	-	6,784	6,784	순증

○ 청렴권익대내외협력강화는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반부패 제도·정책 등을 전수하고 국제사회와의 공조, 민간기업과의 협력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2025년 APEC 국제회의 개최가 예정됨에 따라 관련 예산이 반영되는 등 2024년 대비 17.4% 증가한 13억 4,300만원이 편성됨.

<2025년도 청렴권익대내외협력강화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증감률 (B-A)/A
○ 청렴권익대내외협력강화	1,144	1,343	199	17.4
- 반부패기술지원(ODA)	298	298	-	-
- 청렴권익국제교류	391	691	300	76.7
- 청렴권익민간협력	455	354	△101	△22.2

○ 부패·고충제도개선및국민소통활성화 사업은 불합리한 법령·제도 등을 발굴하여 개선대책을 마련·권고하는 제도개선 사업과 정부합동민원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종합상담창구운영 사업내 정보화예산이 통합콜센터시스템운영 사업으로 이관되어 2024년 대비 △19.9% 감액된 96억 900만원이 편성됨.

<2025년도 부패·고충제도개선및국민소통활성화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증감률 (B-A)/A
○ 부패·고충제도개선및국민소통활성화	12,002	9,609	△2,393	△19.9
- 부패·고충제도개선	92	83	△9	△9.8
- 종합상담창구운영	11,910	9,526	△2,384	△20.0

○ 국민고충해소 사업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국민이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 이를 적절히 해소하기 위해 각종 민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 예산안에는 특별(악성)민원 중점관리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는 등 2024년 대비 26.9% 증액된 16억 8,000만원이 편성됨.

<2025년도 국민고충해소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증감률 (B-A)/A
○ 국민고충해소	1,324	1,680	356	26.9
- 고충민원조사활동	1,324	1,680	356	26.9

○ 반부패청렴정책강화 단위사업은 8개의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신고자 보·포상금 예산 일원화를 위한 사업 통폐합이 있었고, 지출 구조조정 등을 반영하여 2024년 대비 △0.1% 감액된 116억 8,700만원이 편성됨.

<2025년도 반부패청렴정책강화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증감률 (B-A)/A
○ 반부패청렴정책강화	11,694	11,687	△7	△0.1
- 청렴도측정및부패영향평가	3,066	2,999	△67	△2.2

구 분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증감률 (B-A)/A
- 청렴교육및의식확산	2,239	2,428	189	8.4
- 공직자행동강령운영	89	78	△11	△12.4
- 신고자보호보상 및 공익신고제도운영	4,730	5,500	770	16.3
- 공공재정환수제도운영	991	206	△785	△79.2
- 청탁금지제도운영	244	166	△78	△32.0
- 이해충돌방지제도운영	226	210	△16	△7.1
-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운영	109	100	△9	△8.2

○ 행정심판 단위사업은 행정심판운영 1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지원 확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영상회의 시스템 개선, 중앙행정심판 및 특별행정심판 통합 등을 위한 국정과제 홍보비 등이 증액 반영되며 2024년 대비 31.1% 증액된 15억 4,300만원이 편성됨.

<2025년도 행정심판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증감률 (B-A)/A
○ 행정심판	**1,177**	**1,543**	**366**	**31.1**
- 행정심판운영	1,177	1,543	366	31.1

Ⅲ. 성과계획서

1. 임무와 비전

○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도 임무를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으로부터 국민권익을 보호하여 깨끗한 정부,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로 설정하고, ‘청렴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고 국민권익을 증진한다.’로 정책 비전을 설정하였음.

2. 목표 및 과제 현황

○ 국민권익위원회는 1가지 전략목표(‘청렴한 국가 실현, 국민의 고충해결로 국민권익을 증진한다.’)와 1개의 프로그램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1개의 성과지표로 구성되었음.

<2025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성과지표 현황>

전략목표	프로그램 목표	프로그램 목표의 성과지표수	성과지표 성격				정량지표수 (비중)
			투입	과정	산출	결과	
1	1	1	-	-	-	1	0 (0.0%)
		100%	-	-	-	100%	

프로그램목표	성과지표			'25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지표명	가중치	성과 분야		정량/정성	성격	
전략목표Ⅰ. 청렴한 국가 실현, 국민의 고충해결로 국민권익을 증진한다.							
프로그램목표Ⅰ-1. 국민권익증진을 위해 반부패·청렴 정책을 강화하고,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친다.							
국민권익 증진	①국가청렴도(CPI)	1.0	일반재정	64.0(점)	정성	결과	국제평가지수(TI)

Ⅳ. 성인지 예산

○ 2025년도 국민권익위원회의 반부패규범자문단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1개 세부사업이 구성되어 있으며, 총 예산액은 800만원이 편성됨.

<2025년도 성인지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증감률 (B-A)/A
합 계	16	8	△8	△50.0
□ 일반회계	16	8	△8	△50.0
○ 청탁금지제도 운영	16	8	△8	△50.0
- 청탁금지제도 운영 지원	16	8	△8	△50.0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Ⅰ. 총 괄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라 한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만으로 구성됨. 2025년도 세입예산안은 2024년 본예산 대비 1억 7,600만원(0.4%) 증가한 410억 1,0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안은 2024년 본예산 대비 7억 5,200만원(△1.2%) 감소한 646억 2,500만원임.

<2025년도 개인정보위 세입 ·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		2025년도 예산안(B)	증감 (B-A)	
	본예산	추경(A)			(B-A)/A
□ 세입예산안	40,834	40,834	41,010	176	0.4
○ 일반회계	40,834	40,834	41,010	176	0.4
□ 세출예산안	65,377	65,377	64,625	△752	△1.2
○ 일반회계	65,377	65,377	64,625	△752	△1.2

(자료: 개인정보위)

□ 2025년도에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안전활용을 촉진하여 데이터 경제를 선도하고 국민이 안심하는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구축하며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주요 추진과제를 설정·추진한다는 계획임.

<2025년도 주요 추진 과제>

□ 개인정보 안전활용 촉진을 통한 데이터 경제 선도

○ 마이데이터 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해 표준화 데이터를 활용한 시범서비스 및 인프라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마이데이터 지원플랫폼 구축을 지속

○ 가명정보 활용 확대를 위해 가명처리 및 결합을 지원하고,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개인정보 안심구역 운영 및 지원 시스템 기능개선 등 추진

○ 개인정보 핵심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해 기존 강화기술 연구개발 및 표준화는 확대 추진하되, 신규 분야 연구개발 과제의 발굴 추진

□ 국민이 안심하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기존 평가제·인증제, 실무자/전문가 대상 교육 등을 개선,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고 보호책임자 제도의 안착을 지원

○ 유노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조사정보 통합시스템을 운영, 개인정보 사고조사 포렌식 랩 구축을 추진

□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 국제 규범 및 규제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우리나라의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강화

(자료 : 2025년도 개인정보위 성과계획서)

Ⅱ. 세입세출예산안

1. 세입예산안

□ 2025년도 개인정보위 소관 세입예산안은 410억 1,000만원임.

<2025년도 개인정보위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도 예산안(B)	증감 (B-A)	
		본예산	추경(A)			(B-A)/A
합 계	123,505	40,834	40,834	41,010	176	0.4
기타재산이자수입	163	15	15	64	49	326.7
과태료	897	737	737	790	53	7.2
과징금	120,940	38,800	38,800	38,800	-	-
위약금	-	1	1	1	-	-
가산금	57	7	7	23	16	228.6
기타경상이전수입	1,448	1,272	1,272	1,330	58	4.6
면허료및수수료	-	1	1	1	-	-
기타잡수입	-	1	1	1	-	-

(자료 : 개인정보위)

○ 기타재산이자수입은 국고보조금, 출연금 등의 금융기관 예치에 따른 발생이자 반납금과 관련한 수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6,400만원이 편성됨.

○ 과태료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 수입으로, 2025년도에는 실제 세입 징수 여건 등을 감안하여 7억 9,000만원이 편성됨.

○ 과징금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하여 금전적 제재로서 부과되는 과징금 수입으로, 2025년도에는 실제 세입 징수 여건 등을 감안하여 388억원이 편성됨.

○ 위약금은 계약 의무 불이행시 발생하는 입찰보증금, 계약이행보증금, 지체상금 등과 관련한 수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100만원이 편성됨.

○ 가산금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징금 및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부과되는 가산금 수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300만원이 편성됨.

○ 기타경상이전수입은 과년도 지출반납, 국고보조금 등 집행잔액 반납, 소송비용 회수액 등과 관련한 수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13억 3,000만원이 편성됨.

○ 면허료및수수료는 증명발급에 수반하는 수수료 및 기타 수수료와 관련한 수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100만원이 편성됨.

○ 기타잡수입은 기타 재화 및 용역의 비기업적 판매에 따른 수입과 관련한 수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100만원이 편성됨.

2. 세출예산안

1) 총 괄

□ 2025년도 개인정보위 소관 세출예산안은 646억 2,500만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653억 7,700만원 대비 7억 5,200만원(△1.2%)이 감액 편성됨.

<2025년도 개인정보위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도 예산안(B)	증감 (B-A)	
		본예산	추경(A)			(B-A)/A
합 계	56,954	65,377	65,377	64,625	△752	△1.2
□ 인건비	13,489	14,544	14,544	14,592	48	0.3
□ 기본경비	2,033	2,295	2,295	2,418	124	5.4
□ 사업비	41,432	48,538	48,538	47,615	△923	△1.9

(자료 : 개인정보위)

2) 인건비

□ 2025년도 개인정보위 소관 인건비 예산안은 145억 9,200만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145억 4,400만원 대비 4,800만원(0.3%) 증가함.

○ 2025년도 인건비 예산이 증가한 것은 공무원 처우개선 인상분 및 직제상 정원 증가분 등을 반영한 데 따른 것임.

<2025년도 개인정보위 소관 인건비 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도 예산안(B)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인건비 합계	**13,489**	**14,544**	**14,544**	**14,592**	**48**	**0.3**
보수(110-01)	13,010	13,967	13,967	14,060	93	0.7
기타직보수(110-02)	406	468	468	422	△46	△9.8
연가보상비(110-05)	74	109	109	110	1	1.1

(자료 : 개인정보위)

3) 기본경비

□ 2025년도 개인정보위 소관 기본경비 예산안은 24억 1,800만원으로 2024년 본예산 22억 9,500만원 대비 1억 2,300만원(5.4%)이 증액 편성됨.

○ 2025년도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는 6개사업에 6억 4,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는 6개사업에 17억 6,900만원이 편성됨.

<2025년도 개인정보위 소관 기본경비 예산안>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도 예산안(B)	증감 (B-A)	
		본예산	추경(A)			(B-A)/A
기본경비 합계	2,033	2,295	2,295	2,418	123	5.4
위원회총액기본경비(기획조정관)	26	28	28	24	△4	△14.3
위원회총액기본경비(개인정보정책국)	15	16	16	16	-	-
위원회총액기본경비(조사조정국)	59	61	61	66	5	8.2
위원회총액기본경비(운영지원과)	10	10	10	12	2	20.0
위원회총액기본경비(대변인)	7	7	7	7	-	-
위원회총액기본경비(기관운영)	413	508	508	524	16	3.1
위원회기본경비(기획조정관)	307	296	296	285	△11	△3.7
위원회기본경비(개인정보정책국)	212	165	165	250	85	51.5
위원회기본경비(조사조정국)	219	166	166	226	60	36.1
위원회기본경비(운영지원과)	152	189	189	274	85	45.0
위원회기본경비(대변인)	86	110	110	143	33	30.0
위원회기본경비(기관운영)	528	739	739	591	△148	△20.0

(자료 : 개인정보위)

4) 주요사업비

□ 2025년도 개인정보위 소관 주요사업비 예산안은 476억 1,500만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9억 2,300만원(△1.9%)이 감소함.

<2025년도 개인정보위 소관 주요사업비 예산안>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도 예산안(B)	증감 (B-A)	
		본예산	추경(A)			(B-A)/A
주요사업비 합계	**41,432**	**48,538**	**48,538**	**47,615**	**△923**	**△1.9**
개인정보보호정책지원	2,133	2,043	2,043	1,943	△100	△4.9
개인정보보호 자율환경 조성	3,034	4,264	4,264	3,714	△550	△12.9
개인정보 교육 지원	1,828	1,268	1,268	1,068	△200	△15.8
개인정보보호 기술개발 지원 보급	630	531	531	531	-	-
개인정보보호 협력체계 구축	1,521	1,461	1,461	2,376	915	62.6
안전한 데이터 활용지원	4,992	3,328	3,328	3,564	236	7.1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	3,197	7,650	7,650	6,050	△1,600	△20.9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	7,546	7,546	6,045	△1,501	△19.9
개인정보보호강화기술연구개발(R&D)	5,995	5,883	5,883	5,188	△695	△11.8
개인정보기술표준개발지원(R&D)	1,500	1,228	1,228	2,000	772	62.9
신뢰기반의 AI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개발(R&D)	-	-	-	1,500	1,500	순증
개인정보침해방지	10,082	8,686	8,686	7,486	△1,200	△13.8
개인정보 사고조사 지원	-	-	-	1,628	1,628	순증
위원회운영지원	2,461	2,214	2,214	2,086	△128	△5.8
위원회법무지원	248	515	515	515	-	-
위원회정보화지원(정보화)	3,811	1,921	1,921	1,921	-	-

(자료 : 개인정보위)

○ ‘개인정보보호정책지원’ 사업은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법·제도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에는 전년대비 1억원(△4.9%) 감소한 19억원이 편성됨.

○ ‘개인정보보호 자율환경 조성’ 사업은 민간 사업자 등의 자발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지원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수준 평가, 개인정보 영향평가 등 공공 및 민간 영역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에는 전년대비 6억원(△12.9%) 감소한 37억원이 편성됨.

○ ‘개인정보 교육 지원’ 사업은 개인정보보호 업무 종사 인력 업무 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교육 운영과 개인정보보호에 특화된 전문인력을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에는 전년대비 2억원(△15.8%) 감소한 11억원이 편성됨

○ ‘개인정보보호 기술개발 지원 보급’ 사업은 개인정보 침해 위협에 대응 가능한 개인정보보호 혁신기술 발굴 및 상용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에는 전년과 동일한 5억원이 편성됨.

○ ‘개인정보보호 협력체계 구축’ 사업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국제기구·해외 감독기관 간 협력과 국외 개인정보보호 규제대응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에는 전년대비 9억원(62.6%) 증가한 24억원이 편성됨.

○ ‘안전한 데이터 활용지원’ 사업은 개인정보의 가명처리 기술지원 및 가명정보 제도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에는 전년대비 2억원(7.1%) 증가한 36억원이 편성됨.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 사업은 데이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보주체 동의에 기반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마이데이터 산업 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에는 전년대비 16억원(△20.9%) 감소한 61억원이 편성됨.

○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사업은 이종 산업·분야 간에도 데이터가 막힘없이 이동하기 위한 기본 인프라로서 개인정보 전송요구, 전송이력 확인 및 중단 요청, 서비스 검색 등 마이데이터 全 이용과정을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에는 전년대비 15억원(△19.9%) 감소한 60억원이 편성됨.

○ ‘개인정보보호강화 기술연구개발(R&D)’ 사업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및 정보주체 권리 보장 등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에는 전년대비 7억원(△11.8%) 감소한 52억원이 편성됨.

○ ‘개인정보기술표준개발지원(R&D)’ 사업은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핵심 신기술별 개인정보 분야 표준개발 및 국내·외 표준화 기반 구축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에는 전년대비 8억원(62.9%) 증가한 20억원이 편성됨.

○ ‘신뢰기반의 AI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개발(R&D)’ 사업은 AI 환경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 및 AI를 활용한 개인정보 침해 관련 데이터 분석 기술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에는 15억원이 신규 편성됨

○ ‘개인정보침해방지’ 사업은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사고를 예방·대응

하고, 노출된 개인정보 및 불법유통 게시물을 탐지·삭제하여 개인정보의 침해를 방지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에는 전년대비 12억원(△13.8%) 감소한 75억원이 편성됨.

○ ‘개인정보 사고조사 지원’ 사업은 신속·정확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원인 분석 및 법 집행을 위해 디지털포렌식 기반 조사 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에는 16억원이 신규 편성됨

○ ‘위원회운영지원’ 사업은 법령상 운영하는 회의체 운영, 개인정보보호 정책연구 및 포럼, 세미나 등 정책 혁신활동 행정지원인력 운영 등 위원회 업무 운영, 개인정보보호 정책 이해도 제고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홍보 활동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에는 전년대비 1억원(△5.8%) 감소한 21억원이 편성됨.

○ ‘위원회법무지원’ 사업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항에 부과한 과태료, 과징금 등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 쟁송 등 위원회 법무 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에는 전년과 동일한 5억원이 편성됨

○ ‘위원회정보화지원’ 사업은 개인정보위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정책·교육 등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에는 전년과 동일한 19억원이 편성됨

Ⅲ. 성과계획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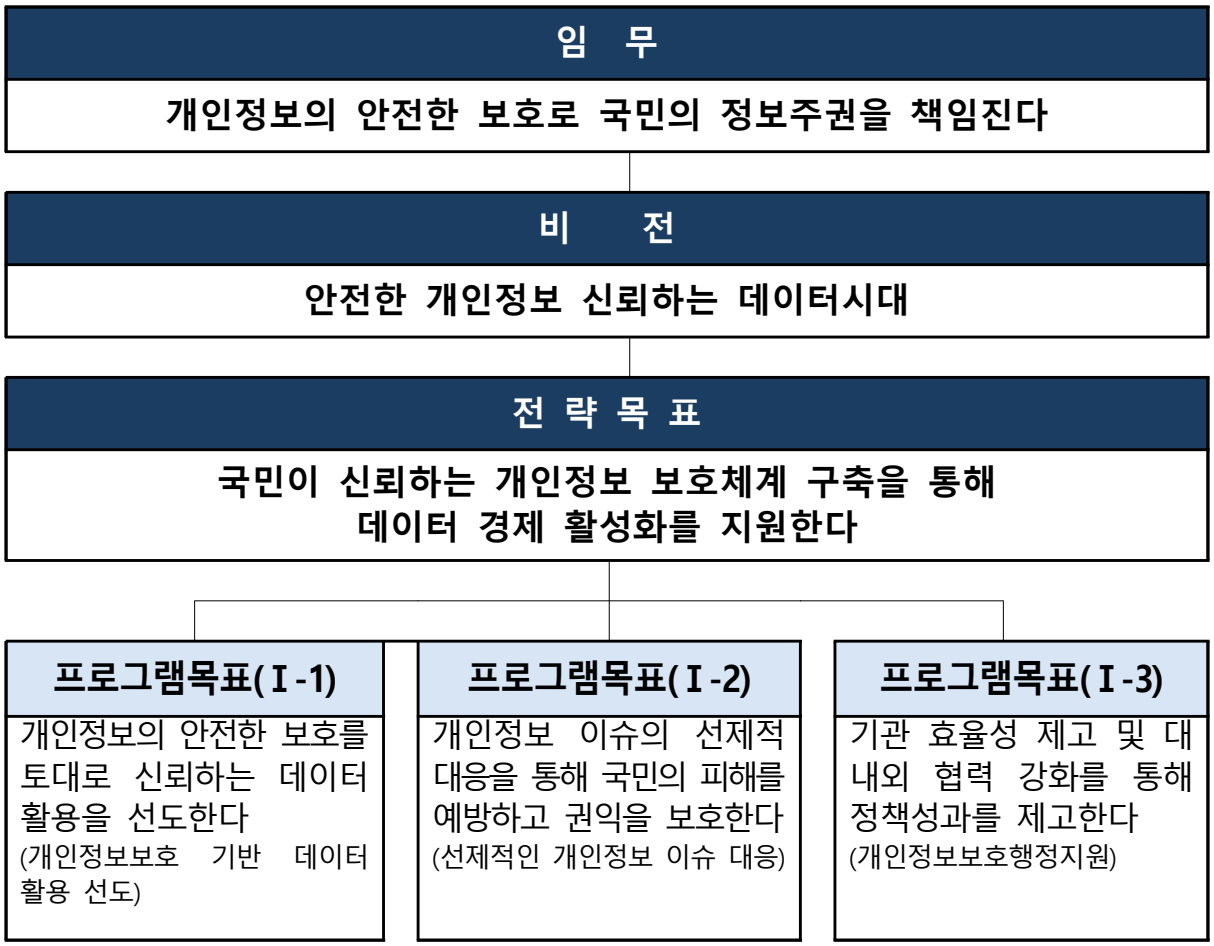
1. 임무와 비전

□ 개인정보위는 2025년도 임무를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로 국민의 정보주권을 책임진다’로 설정하였고, 비전을 ‘안전한 개인정보 신뢰하는 데이터 시대’로 설정하였음.

2. 목표 및 과제 현황

□ 개인정보위는 ‘국민이 신뢰하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을 통해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전략목표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를 토대로 신뢰하는 데이터 활용을 선도한다’, ‘개인정보 이슈의 선제적 대응을 통해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한다’, ‘기관 효율성 제고 및 대내외 협력 강화를 통해 정책성과를 제고한다’의 프로그램 목표를 설정하였음.

〈2025년도 개인정보위 성과계획 목표체계도〉



(자료: 개인정보위)

○ 프로그램 목표가 설정되어 있는 단위 사업은 5개임.

<2025년도 개인정보위 성과 목표 및 관리과제 현황>

전략목표 (Strategic Goal)	프로그램 목표		
		단위사업	세부사업
1	3	5	16

프로그램명	성과계획
	단위사업명
전략목표 Ⅰ. 국민이 신뢰하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을 통해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	
프로그램목표 Ⅰ-1.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를 토대로 신뢰하는 데이터 활용을 선도한다	
개인정보보호 기반 데이터 활용 선도	개인정보보호강화 (1031)
	개인정보활용지원 (1032)
	개인정보보호연구 (1033)
프로그램목표 Ⅰ-2 개인정보 이슈의 선제적 대응을 통해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한다	
선제적인 개인정보 이슈 대응	개인정보이슈대응 (2034)
프로그램목표 Ⅰ-3. 기관 효율성 제고 및 대내외 협력 강화를 통해 정책성과를 제고한다	
개인정보보호행정지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운영 (7041)

(자료: 개인정보위)

Ⅳ. 성인지 예산[5)]

□ 개인정보위는 성인지 예산사업이 없음.

5) 성인지 예산서: 사업(예산)이 성평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성별 수혜분석과 성과목표 설정을 통해 사업(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국가재정법」 제26조)

Ⅳ.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붙 임> 참조

(수석전문위원 : 최병권, 전문위원 : 황승기, 최기도)

Ⅴ. 대체토론의 요지

1. 국가보훈부 소관

○ 국내독립운동기념관(가칭) 건립 부지에 대한 다양한 대안 검토 필요

○ 국내독립운동기념관 건립 사업은 타당성이 없으므로 원점에서 재검토될 필요

○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은 2년 연속 본예산이 부족하여 보훈보상금으로부터 전용 받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예산 확보 노력 필요

2.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협동연구 추진 필요

○ 연구기관의 정직 중인 직원에 대한 임금 지급, 중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능률성과급 지급 중단 필요

3.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없 음

4. 금융위원회 소관

○ 신용보증기금과 관련하여 일부 기금들이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되어 국회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실시하기

어려우므로 제도개선 필요

○ 햇살론15를 중심으로 예산 증액을 검토할 필요

5.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 없 음

6.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소관

○ 없 음

Ⅵ.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이정문 위원장)

1. 국가보훈부 소관

○ 국가보훈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 보상금 사업 예산 179억 400만원과 광복80주년기념사업 예산 10억 5,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12개 사업에 대하여 350억 3,074만원을 감액하고,

- 보훈대상자의 보훈병원 진료비 지원을 위해 보훈병원 진료 사업 예산을 653억 증액하는 등 19개 사업에 대하여 1,182억 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 30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2.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출예산안은,

- 규제혁신추진단 활동 기한이 내년 7월 종료 예정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규제혁신추진단 운영사업 예산을 6억 4,800억원 감액하는 등 14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30억 1,300만원을 감액하였고,

- 2025년 1분기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해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추진단 운영비 사업 예산 3억 8,300만원을 신규로 증액하는 등 5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6억 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 15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26개 연구기관에 대한 출연금 예산안은

- 통일연구원 일반연구 사업의 유사·중복 문제 등을 고려하여 2억 5,241만원 감액하는 등 5개 기관에 대하여 5억 5,941만원 감액하고,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일반사업 중 협동연구지원사업에 국가핵심의제에 대한 통섭적 연구를 위해 5억원을 증액하는 등 4개 기관에 대하여 13억 6,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 26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3.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은,

- 대외활동강화 사업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실효성 논란을 감안하여 500만원을 감액하는 등 2개 세부사업에 대하

여 2,200만원을 감액하였고,

- 선진소비자정책추진 사업의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정보제공 플랫폼에 챗봇 서비스 도입 등을 위하여 2억 7,700만원을 증액하는 등 5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9억 2,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 29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4. 금융위원회 소관

○ 금융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 재정모펀드 회수액 규모를 고려하여 산업은행출자(혁신성장펀드)사업 예산 238억원을 감액하는 등 4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570억 7,000만원을 감액하였고,

- 저소득·저신용자 지원을 위해 2024년 보증공급규모를 담보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 출연(햇살론15) 사업 예산 550억원을 증액하는 등 6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984억 8,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 23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5.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안은,

- 기타경상이전수입의 평균 수납률을 고려하여 기타경상이전수입 예산을 2억 4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은,

- 반부패기술지원(ODA) 사업 중 카자흐스탄 정책 연수를 위한 예산 4,800만원을 감액하는 등, 11개 사업에 대하여 3억 4,723만원을 감액하고,

-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건수 및 보·포상금 지급액의 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신고자보호보상 및 공익신고 제도운영 사업 예산을 3억원 증액하였으며,

- 13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 위원회 법무지원 사업 중 고문변호사 법률자문료 지급을 위한 예산을 3,000만원 감액하는 등 4개 사업에서 7,700만원을 감액하고,

- 딥페이크 개인정보 보호 기술 개발을 위하여 신뢰기반의 AI 개인정보보호·활용 기술개발사업 예산을 20억원 증액하는 등 5개 사업에서 55억 2,200만원 증액하였으며,

- 17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Ⅶ. 찬반토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Ⅷ. 심사결과

1. 국가보훈부 소관

가. 일반회계 세입 : 원안의결

나. 일반회계 세출 : 수정의결

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 원안의결

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세출 : 원안의결

2.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가. 일반회계 세입 : 원안의결

나. 일반회계 세출 : 수정의결

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세출 : 원안의결

3.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가. 일반회계 세입 : 원안의결

나. 일반회계 세출 : 수정의결

4. 금융위원회 소관

가. 일반회계 세입 : 원안의결

나. 일반회계 세출 : 수정의결

5.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가. 일반회계 세입 : 수정의결

나. 일반회계 세출 : 수정의결

6.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소관

가. 일반회계 세입 : 원안의결

나. 일반회계 세출 : 수정의결

Ⅸ.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Ⅹ. 부대의견

1. 국가보훈부 소관

○ 국가보훈부는 보상금 이·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 국가보훈부는 생계지원금 사업에 적정 지급인원을 반영하고, 보훈급여금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 국가보훈부는 예산 편성 시 추계 정확성을 제고하여 참전명예수당 사업의 이·전용 규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한다.

○ 국가보훈부는 내역사업인 ‘검진비’의 집행 저조로 인하여 고엽제환자 등록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을 적극적으로 관리한다.

○ 국가보훈부는 ‘보훈단체운영및선양활동등’ 세부사업의 각 내역사업의 성과가 고루 측정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추가적으로 마련하고, 과거 실적보다 높은 성과목표를 설정한다.

○ 국가보훈부는 보훈단체 또는 지역사회와의 이견 조율 여부, 건립부지 타당성, 지방비 확보가능성 등 안정적인 사업추진 가능성을 면밀하게 점검한 후 보조금을 편성·교부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하는 한편, 보조금이 교부된 지자체의 보훈회관의 공정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함으로써 보훈회관 적기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한다.

○ 국가보훈부는 시내버스 이용요금 미보전액 누적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고 이를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한다.

○ 국가보훈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한 높은 수요를 반영하여 지속적인 예산 증액을 위하여 노력하고, 향후 사업 규모 확대 시 간호간병 인력 충원 등 병상 운영 한도 증설을 고려하여 추진하도록 한다.

○ 국가보훈부는 보훈병원 진료비 예산 부족으로 인한 이·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훈병원 진료비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 국가보훈부는 위탁병원 진료비 예산 부족으로 인한 이·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탁병원 진료비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보훈대상자가 한방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위탁병원을 확대하도록 한다.

○ 국가보훈부는 보철용 차량 개조지원 대상자에 대한 홍보 및 안내를 적극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집행률 및 사업효과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 국가보훈부는 보훈대상자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중학교

248,000원, 고등학고 372,000원, 대학교 472,000원, 특수교육 718,000원 수준으로 교육비 지원액을 단계적으로 증액하고 추후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인상하도록 한다.

○ 국가보훈부는 ‘2025 전국 청소년 국외역사 문화교류탐방’ 사업이 광복 80주년과 연관된 주제로 집행하고, 사업 집행 전 국무조정실에 유사·중복되는 사업이 없는지 확인한다.

○ 국가보훈부는 2026회계연도‘보보의 집 유지관리’예산은 국방부 및 행정안전부와 분담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한다.

○ 국가보훈부는 ‘광복80주년기념사업’에 대하여 적절한 성과지표를 설정한다.

○ 국가보훈부는 전담인력 증원과 후손찾기 전문위원 확대를 위해서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재외공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 국가보훈부는 국립5·18묘지 내 쉼터 공간 확장, 묘역 둘레길 휴게시설 조성, 노후화 시설 리모델링 및 묘역 배수 등 시설관리 사업의 신규 추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 국가보훈부는 연천현충원조성사업의 2년간 4:6 비율로 편성한 공사비를 3년간 3:4:3 비율로 변경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한다.

○ 국가보훈부는 청년들의 일 경험 및 국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청년의 다양한 시각을 정책 결정에 반영한다는 청년인턴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현재 인력이 부족한 독립유공자 묘소 조사 관련 인력으로 업무를 재조정하는 등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업무에 대한 계획을 수립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 국가보훈부는 2030 자문단의 투명한 활동을 전제로 예산을 집행한다.

○ 국가재정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업무추진비 삭감액(1,000만원)은 국가보훈부장관, 차관 및 1급 공무원에 한정하여 감액하도록 한다.

○ 국가보훈부는 88골프장 매각결정 취소를 통해 안정적인 수입을 창출하고 있는 88골프장을 존치하는 방안을 마련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 국가보훈부는 도서·벽지 지역 등에 대한 보훈복지서비스의 민간위탁 전환이 보훈복지의 위축 및 사각지대 확대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예산 배분의 합리성을 재검토하도록 한다.

○ 국가보훈부는 사실상 지급보증의 성격이 있는 민간은행 위탁대부 사고 채권 양수의 수행 방식과 소요 재원 규모에 대한 국회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별도의 지출사업으로 편성하고, 구분 편성 내역을 국회 예산안 심사 시 제출하도록 한다.

○ 국가보훈부는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의 안정적 사업 수행을 위해 자체수입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보유한 친일 재산 매각에 만전을 기한다.

○ 국가보훈부는 순국지를 QR코드, SNS 등의 수단을 통하여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 국가보훈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보훈수당의 지역 간 격차 문제 및 보훈급여금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소득평가액 포함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 국가보훈부는 각종 보상금 및 전직지원금 등을 계획대로 지급하고, 의료·복지분야와 같은 서비스예산을 확충하며, 보훈정책 방향 변경에 맞추어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 노력한다.

○ 국가보훈부는 성과지표의 달성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각 세부사업별로 적절한 지표를 마련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 국가보훈부는 향후 2개 이상의 실국 내역사업을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통합 관리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의 성격에 맞게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분리한다.

○ 국가보훈부는 각 세입항목의 수납율 추이, 최근 5년간 수납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세입 추계의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 ‘보훈단체 운영 및 선양활동 등’ 사업의 내내역사업인 ‘의학적재활과 관련한 상이군경회의 내내역사업’ 및 ‘국제보훈교류사업’의 ‘문화스포츠등국제교류활성화 내역사업’은 상호간에 보조사업자가 동일하고 사업 내용이 유사하므로 통폐합을 통해 사업 관리 효율성을 개선한다.

○ 국가보훈부는 (가칭) 광복80주년 특별관(제8관)은 독립기념관 내 부지를 확보해서 건립하도록 한다.

○ 국가보훈부는 독립기념관 내 설립되는 (가칭) 광복80주년 특별관(제8관)의 전시 구성내용의 경우 독립기념관의 운영 및 전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 국가보훈부는 (가칭) 광복80주년 특별관(제8관) 명칭을 국민의 의견

을 수렴하여 결정한다.

2.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 국무조정실과 조세심판원은 소액·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 강화를 위하여 국선심판청구대리인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홍보방안을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 국무조정실과 조세심판원은 기관 홍보 외에 과세처분 불복 절차 전반과 관련 제도 등에 대한 소개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 콘텐츠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보완한다.

○ 국무조정실은 시행기관의 개별 ODA사업 집행능력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기관역량진단 지표를 개선하는 한편, 기관역량진단 결과를 예산과 연계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실시하는 기관역량진단의 실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 국무조정실은 지역 청년센터 지정을 조속히 하고, 청년친화도시와 지역특화 청년사업과의 적절한 연계방안을 마련한다.

○ 국무조정실은 청년친화도시 선정에 있어 지역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한다.

○ 국무조정실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청년 DB 취지대로 운영하기 위해 홍보를 통한 모집 외에도 교육 등 청년 DB를 등록한 청년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한다.

○ 국무조정실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김포 교통문제 해결을 위하여 2025년도 예산안 편성과정 등에서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

처 및 서울특별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한다.

○ 국무조정실은 기획재정부와 협력하여 예산 수립과정에서 각 부처 간 사업영역, 역할 분담 원칙을 명확하게 수립하여 유사·중복사업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국무조정실은 기획재정부와 협력하여 서민과 약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세수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재원 집행 보류를 최소화하고, 세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세수추계의 모든 단계에서 국회와 전문기관 등이 참여하는 근본적인 개선안을 마련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 국무조정실은 교육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간의 업무 조정을 통하여 개인정보 보호 취약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 국무조정실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연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미군기지지원단은 동법에 따른 국고보조금 가산을 위해 정부 부처와 경기도의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한다.

○ 국무조정실은 청년정책통합플랫폼 1차 구축사업의 운용실적 및 미비점 등을 검증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26년도에 2차 구축사업을 위한 예산을 반영한다.

○ 국무조정실은 2025년 상반기에 부패예방추진단의 조직 운영 지속여부 및 중복 가능성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 국무조정실은 광복 80년 기념사업을 이념적으로 편향되지 않게 추진하고, 위원회 구성 및 세부 행사의 기획·집행 계획이 확정 되는대로

신속히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 국무조정실과 인구전략기획부설립추진단은 인구전략기획부가 독자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시 관계부처와 협력한다.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은 수시연구사업비가 연례적으로 과다하게 이월되고 있으므로, 수시연구사업비를 연내 집행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은 수시연구사업비 총액을 연내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재조정한다.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기본연구사업비 대비 수시연구사업비가 4.73%에 불과하므로, 수시연구사업 예산 비율을 늘려 정책현안을 적기에 연구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노동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총 12개 연구기관)은 정직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정직기간 중 임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KDI국제정책대학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노동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총 13개 연구기관)은 중징계처분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능률성과급 지급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 능률성과급 지급기준을 정비한다.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은 국회의 예산 확정 후 최종실행예산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예산 비목 등을 과도하게 변경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예산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 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예산 변경을 최소화한다.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은 기관운영을 위한 고정지출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비를 일반사업비에서 기관고유사업비로 이관하여 편성한다.

○ 출연연구기관은 안정적 사업수행이 필요한 국가승인통계 관련 예산을 일반사업비에서 기관고유사업비로 이관하여 편성한다.

○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협동연구지원'사업에 편성된 제13차 세계경제학자대회(세계계량경제학회·한국경제학회 주관) 지원 예산에 대하여 국고 지원액이 총사업비의 30% 한도내에서 편성되도록 하고, 국제행사개최계획서 제출 및 타당성 검토 등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절차를 준수한다.

○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협동연구사업 추진시 「협동연구사업 운영규정」을 준수하여 '연구기관 기획 협동연구'에 관한 공모를 실시하고, '연구회 기획 협동연구'의 과제기획을 직접 수행한다.

○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각 연구기관의 「경영목표 실천계획」이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 이후에 수립·제출된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국회에 예산을 제출하기 이전에 각 연구기관이 「경영목표 실천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연구기관 평가와 관련한 제도개선을 검토한다.

○ 국토연구원은 향후 국토연구원의 정관상 사업에 적합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한다.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연구보고서와 정책연구브리핑을 동시에 발간·공개함으로써 연구성과 홍보의 시의성을 제고한다.

○ 통일연구원은 당초의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북한 인권 연구 네트워크 구축’ 사업으로 변경한다.

○ 통일연구원은 당초의 ‘북한 인권증진 중장기 로드맵 연구’ 사업을 ‘북한 인권증진 이론적 토대 연구’ 사업으로 변경한다.

○ 통일연구원은 기본연구사업 중 ‘통일과 사회통합: 극단주의 정당의 부상과 자유민주주의 방어 방안 연구’는 통일연구원의 연구과제로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독일 통일 이후 사회통합 난관의 원인 분석에 집중하여, ‘독일 통일 이후 구동독지역 사회통합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변경하여 사업을 진행한다.

○ KDI국제정책대학원은 공공외교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미국 존스홉킨스대, 미국 조지워싱턴대, 독일 베를린자유대와 교육협력사업을 추진중인 바, 협력대학에 사회과학으로서의 한국학 연구와 발전에 필요한 강좌가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KDI국제정책대학원은 ‘재정정책 지식교류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나, 외교부가 신흥 중점 분야로 추진하고 있는 공급망·보건·기후변화 등에 대한 주제로 포럼 개최 계획을 마련한다.

○ 한국교육개발원은 서울 청사 매각 지연에 따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운영관리비, 감정평가비 등 부동산 유지 관리 비용으로 매년 9억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지출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여 매각 지연으로 인한 서울 청사 유지비용 문제를 조속히 해결한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품목별 작황 및 가격 예측 등 농업관측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농민들의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식량안보 위기 시나리오와 대응 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국내연구기관들과 협업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 안보 위협 및 대응 전략 연구를 효율적으로 추진한다.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국민의 납세의식과 납세순응을 제고하기 위해 초등학생·고등학생에 대한 조세교육에 더해 청년세대 대상의 조세교육을 기획하여 생애주기별 조세교육을 추진한다.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원 개인에게 지급하는 예산을 외부용역비 및 분담금 비목으로 편성하였으나 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관련 예산을 전문가활용비 등의 비목으로 변경하여 편성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 한국행정연구원은 정부가 재난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 및 회복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사회적 재난의 피해자 등에 대한 면접연구를 실시한다.

○ 한국행정연구원은 연구업무관리규칙에서 연구성과물을 홍보하도록 규정하는 취지에 따라 국정과제 정책만족도 조사결과를 공개한다.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법무 수요조사’결과를 반영한 세부 연구과제를 2025년 상반기 중 연구개발적립금, 수시연구사업비 등을 활용하여 최우선적으로 수행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공정거래위원회는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과태료 임의체납액 규모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과징금 수납률을 제고하여 임의체납액 규모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부과를 보다 신중히 결정하고, 행정소송 등으로 인한 과징금 환급이 증가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가산금 임의체납액 규모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책연구 성과점검 점수가 지속 하락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방안을 마련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연구과제 내용 중 비공개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영업비밀과 같이 비공개가 필요한 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공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연구과제를 최대한 공개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2030자문단이 공정거래위원회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 여론의 수렴 및 전달, 청년정책 과제 발굴 및 제안 등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명확한 사업목적에 기반한 다양한 활동계획을 수립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조업과 광업 산업 분야로 한정되어 있는 시장구조 조사 대상을 플랫폼 산업 등의 분야로 확장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광고 및 홍보 예산을 제도 시

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향후에는 하도급연동지원본부 예산으로 편성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공사와 민간공사의 표준하도급계약서 보급률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정보제공시스템 기능개선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등 관련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도록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적립식 여행 등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에서의 소비자 대상 정보의 통합제공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시스템 구축 완료 전까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시스템 운영을 위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정보 제공 플랫폼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성 제고 방안과 시스템을 통한 정보제공 확충 방안을 마련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책 수립과 추진에 있어 청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청년보좌역의 역할을 재정립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를 포함한 자율규제 추진에 있어 플랫폼 및 입점업체와의 개별면담을 통한 애로사항 확인, 상호 의견 교환 지원 등을 이행하고, 기업들의 자율규제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자율규제 추진에 있어 이해관계자 입장, 참여자 이탈 여부, 진행상황 등에 관한 국회 자료 요구에 협조하는 등 운영상 투명성을 제고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청년인턴에게 기록물 관리 등의 단순업무 보다는 경쟁정책에 관한 자료 수집 지원, 심결에 필요한 기초 사례 수집 지

원, 정책사례 수집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실질적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인턴의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일회성 홍보 사업을 지양하고, 기존의 외부위탁 전문교육 외에 공무원 역량 강화 사업을 추가 발굴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속 직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위법적 행위를 보이는 기업에 보다 빠른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학(원)생이 참여하는 모의공정위 경연대회 행사(예산 7,100만원)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므로, 더 많은 팀이 경연대회에 지원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등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위 처분에 대한 신뢰도 향상 및 독립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심의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 및 본사업 지연이 없도록 주의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심의-의결 과정에서 하나의 시스템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온라인 심의정보시스템(심의·의결단계)'과 '온라인 사건처리시스템(조사단계)'을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두낫콜) 운영 사업 예산(1억 8,500만원)을 관리용역비(210-15목)로 편성하였는데, 동 사업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국가가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운영비(1억 8,200만원)는 민간위탁사업비(320-02목)로 편성하고, 시스템 운영 관련 라이선스 갱신 비용 등(300만원)은 동 시스템이 국가 자산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자산취득비

(430-01목)로 편성하도록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국민 데이터포털 웹사이트 이용률 분석을 통해 웹사이트의 활용성·편리성 등을 확보하여 이에 기반한 대국민 데이터포털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공정트렌드’ 기능을 통해 수집된 기사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언론데이터 제공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제고한다.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분쟁조정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제시한 분쟁조정안이 균형잡힌 조정안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조정안 제시에 유의한다.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분쟁조정의 신속성 제고와 전문성 향상이라는 상임위원 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도록 1인의 상임위원이 여러 분야의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현재의 운영 방식을 재검토한다.

○ 한국소비자원은 대규모 피해자가 일시에 접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집단분쟁조정의 경우 분쟁조정시스템의 장애로 인해 접수기간 내 집단분쟁조정에 참가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단분쟁조정처리시스템 증설 사업을 철저히 하고, 사업관리에 유의하여 행정절차 지연을 방지한다.

○ 한국소비자원은 피해소비자에 대한 소송지원(1억원)을 자체 지침인 ‘소비자소송지원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수행하고 있으므로, 향후 법령에 국가재정을 통한 소송지원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한다.

○ 한국소비자원은 시기·품목별 가격 편차가 크고 업체별 가격이 상이한 결혼 서비스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비자 선택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결혼 서비스 가격조사·정보제공 범위를 철저히 설계한다.

○ 한국소비자원은 모바일 채팅상담 서비스의 운영 실적이 저조한 문제가 있으므로, 홍보 강화·이용자 의견 청취를 통한 시스템 개선 등 모바일 채팅상담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4. 금융위원회 소관

○ 금융위원회는 FATF TRAIN 운영비용의 세부 집행내역 및 계획을 제출받아 총액 기준이 아닌 항목별 실집행액에 근거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 조속히 MOU 개정을 추진하여 FATF TRAIN 운영비용의 회원국 간 공동부담 방안을 마련한다.

○ 금융위원회는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의 예상사업손실률 증가로 인해 연도 내 신규 보증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 금융위원회는 기존 협약기관이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공급을 연내 균등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별 월별 한도액을 제시하는 방안의 도입을 검토하고, 취급 금융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한다.

○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예산이 적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살피고, 유보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가입유지자 수 확보를 위한 개선방향을 지속적으로 마련한다.

○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사업의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고려하고, 기여금 지원 확대 적용여부 및 적용시기를 명확히 결정한다.

○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재원 확보 방안 등 연간 보증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지원정책을 가계부채 정책과 연계하여 총량관리 부분에서 장기계획을 수립해, 저소득·저신용 서민들이 제도권 금융의 혜택을 원활하게 누릴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 금융위원회는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제도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 금융위원회는 2025년 예산안에 반도체생태계펀드, 원전산업성장펀드가 새롭게 조성되므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 펀드가 사업목적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 금융위원회는 산업은행 경유 출자금이 자의적으로 운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매년 회수재원 규모, 회수재원 운용 및 투자 현황, 투자계획 등을 매년 9월말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은 지역활성화투자펀드의 자펀드 결성이 조속히 완료되어 지역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가 시작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하고, 자펀드 결성 및 투자 추이를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한다.

○ 정부는 원전 산업분야에 투자하는 신규 펀드를 조성하는 사업을 원전 분야 사업을 총괄하는 산업통산자원부 소관 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한다.

○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은 원전산업성장펀드의 주목적 투자비율(50%)이 재정 및 공공기관 출자비율(70%)에 비해 낮으므로, 주목적 투자비율을 60%로 상향한다.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높은 부채비율로 인해 당초 계획대로 캠코채 발행을 통한 자체재원 조달이 어려워 결과적으로 정부 재정출자분이 새출발기금의 주된 재원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금융위원회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계획대로 부실채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재원조달의 규모와 방식을 검토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새출발기금의 운영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실적 추이를 보아가며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 금융위원회는 청년인턴들이 제대로 된 업무 경험을 하지 못하고 단순 사무보조 업무만을 수행한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청년인턴 프로그램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제도를 개선하도록 한다.

○ 금융위원회는 2025년 증액된 홍보 목적의 일반용역비를 불법사금융 방지, 새출발기금 성과 제고, 채무자대리인 선임 활성화 등 민생 분야 홍보에 집중한다.

○ 금융위원회는 회계부정 신고가 확대될 수 있도록 과징금의 10~30%를 포상금으로 제공하는 미국의 제도 등을 검토하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현금공탁 대신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도록 하는 등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법 개정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광진지점 대수선 공사의 사업지연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연내 집행을 위한 면밀한 사업계획을 마련한다.

○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소상공인 위탁보증 관련 일반회계전입금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대환보증 예상 잔여재원 일부를 재원이 부족한 소상공인 위탁보증 사업으로 전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기금 건전성 제고 및 농림수산업자에 대한 안정적인 보증 공급을 위하여 채권 회수실적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등 구상권 관리를 철저히 한다.

○ 금융위원회는 2027년까지 공적자금의 상환을 완료하기 위해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의 전출금 예산(2조 5,000억원)이 증액될 필요와 함께 예수금을 최소화하거나 일반회계 전입금 등 기금 수입의 적극적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예금보험공사는 서울보증보험 경영효율화 등을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하여 상환기금 보유지분을 원활히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한화생명보험 잔여지분 매각과 관련하여 시장 변화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보유주식의 신속한 매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예금보험공사는 상환기금의 청산일이 2027년 12월이므로 KR&C에 대한 대출금 회수 노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 금융위원회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장려금 지급 대상을 저소득농어민으로 한정하여 이들의 재산형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장려금리를 제공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관계기관과 검

토하도록 한다.

○ 금융위원회는 핀테크지원사업의 자부담 비율을 20%에서 30%로 상향하고, 그에 따른 절감분(1억 8,700만원)은 수혜기업을 확대하는 데에 사용한다.

○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정산지연피해기업 유동성지원 프로그램 지원) 사업 수행후 금리 인하로 인한 추가 수요가 발생하면, 2026년 예산안 편성시 이를 고려한다.

○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은 원전산업성장펀드에 대한 민간출자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 국가재정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업무추진비 삭감액(3,500만원)은 금융위원장, 부위원장 및 1급 공무원에 한정하여 각 20% 이내의 범위에서 감액하도록 한다.

○ 기업구조개선펀드 회수액 167억원을 혁신성장펀드에 산입하여 운영하는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한다.

○ 대환보증 대위변제 사업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출연받은 금액(7,600억원)의 이자수익 600억원을 국고로 환수하는 것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한다.

5.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 국민권익위원회는 과태료의 실제 수납액을 기준으로 하여 수납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세입예산을 편성한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율을 낮추기 위해 직원

교육 등을 통해 법령 해석에 관한 절차를 강화하여 처분에 관한 국민의 신뢰성을 제고한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신고 보상금 납부 대상 공공기관에 대한 납부 안내 및 독촉 등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액의 상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이를 통하여 세입예산의 증대를 도모한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보상금 상환액의 상환율 제고를 위한 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에 편성된 부패신고 비실명 대리신고 수당 예산을 주요사업비로 편성·집행하고, 각 세부사업에 편성된 비실명 대리신고 관련 예산을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 국가재정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업무추진비 삭감액(1,200만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및 1급 공무원에 한정하여 감액하도록 한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관용차 사용규정을 강화하고, 2025년도 국외 출장 보고서를 차년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 구축’ 사업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25개 미동의 심판기관의 이용 동의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끌어내고 통합 제외 5개 기관과 연계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며, 향후 타 기관의 협조 또는 동의를 전제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기관 간 협조와 동의를 완료한 후 사업을 추진한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특정 국가에 대한 연수 프로그램을 큰 비중으로

편성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 검토하는 한편,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수원국의 다양화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특별민원 중점관리’ 내역사업 중 ‘특별민원 상담요원 운영’ 사업의 사업계획 및 운영방안 등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2030세대의 수요에 맞는 특화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심화된 교육과정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일반용역비를 증액하였는데, ‘초등학생 청렴캠프 운영’은 일반용역비 증액 사유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예산 배분의 효율성 및 사업 효과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보상 및 공익신고제도가 국민권익위원회의 필수사업에 해당하나 그동안 신고자 보호조치 조치 등이 미흡하였으므로 해당 사업의 집행현황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국선대리인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처분 당사자 등에게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에 대한 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심판통합추진’ 중 대국민 홍보비 예산 1억 4,000만원을 ‘청렴권익정책알리기’ 세부사업으로 통합·조정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6.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이관된 과태료 체납액 해소를 위한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징수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불납 결손 추진을 신속히 진행하는 등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향후 CPO(개인정보보호책임자) 협의회의 구체적인 활동계획과 정관, 기탁금 등에 대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세히 보고한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자율환경조성사업에서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상 컨설팅 지원을 지속하되, '자율규제 기업 지정을 위한 중소기업 대상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 컨설팅 사업(가칭)'을 신규 개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스마트 서비스 지원사업'의 '사전진단 컨설팅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실현'사업의 성과제고를 위해서는 아동·청소년과의 접촉 기회를 늘려야 하므로,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인성교육진흥사업'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CBPR 인증 활성화를 위해 심사에 필요한 인증 수수료(1,200만원)를 면제하고 이를 예산에서 지원하였으나, 현재 관련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인증심사 신규 신청 접수를 중단하고 갱신 심사만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인증 수수료를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징수하되 신규 인증을 조속히 재개하고 인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한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가명처리 적정성 검토 및 반출심사 소요비용 지원 대상을 중소·영세기업 등 지원이 필요한 기관으로 한정하되, 적정성 검토 및 반출심사 외에 전문가 조언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가명정보 제도와 정부 지원사업에 관한 인식 부족으로 산업현장에서의 활용도가 떨어졌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 활용도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서울 가명처리 지원센터에 인센티브 체계를 활용하여 사업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의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전반에 대해서도 사업 효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안심구역 사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데이터 안심구역 사업과 유사한 측면이 크므로, 이를 조정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추진하거나 이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디지털포렌식 관련 운영 지침 및 예규를 마련한다.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사고조사 지원사업에 대해 ‘디지털 증거분석 사례 비율’ 등 적절한 성과지표를 설정한다.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실적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분쟁 조정사건이 아닌 다른 기관 소관 사항에 해당될 경우 사건을 이관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청년인턴 대부분이 제대로된 업무를 경험하지 못하고 단순 사무보조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새로운 홍보 기획 없이 관례적으로 개인정보보호 홍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직접 사업을 늘릴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마이데이터 중계전문기관 운영 지원을 위한 예산은 민간 자율과금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연차적으로 지원 예산을 축소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사고조사지원을 위한 디지털포렌식 기반의 조사환경은 정부청사 내에 구축하도록 한다.

※ 첨부 : 2025년도 정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조정내역

【 첨부 】

2025년도 정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조정내역

2024.11

Ⅰ. 정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조정 총괄표

1. 세입예산안 예비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위원회명	소 관	회 계 명	수정의결		
			증 액	감 액	증 감
정무위원회	국가보훈부	일반회계	-	-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 포함)	일반회계	-	-	-
	공정거래위원회	일반회계	-	-	-
	금융위원회	일반회계	-	-	-
	국민권익위원회	일반회계	-	△204	△20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일반회계	-	-	-
	합 계		-	△204	△204

2. 세출예산안 예비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위원회명	소 관	회 계	수정의결		
			증 액	감 액	증 감
정무위원회	국가보훈부	일반회계	118,203	△35,030.74	83,172.26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경제·인무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 포함)	일반회계	1,971	△3,572.413	△1,601.413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	-
	공정거래위원회	일반회계	928	△22	906
	금융위원회	일반회계	98,485	△57,070	41,415
	국민권익위원회	일반회계	300	△347.23	△47.2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일반회계	5,522	△77	5,445
	합 계		225,409	△96,119.383	129,289.617

Ⅱ. 정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내역

가. 국가보훈부

1. 세입예산안 조정내역 - 없음

2. 세출예산안 조정내역

(1)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4 본예산	2025(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1	보상금 (1132-300)	3,468,124	3,580,723	3,562,819	△17,904	○ 동 사업은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보훈보상금을 지급하려는 것임 ○ 연례적으로 과도한 이·전용이 발생하고 있고, 2024년 역시 집행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179억 400만원 감액	
2	6·25자녀수당 (1133-303)	403,289	428,693	430,163	1,470	○ 동 사업은 6·25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성년자녀에 대하여 과거 미흡했던 보상의 보전차원에서 수당을 지급하려는 것임 ○ '제적자녀'에 대한 위로가산금(월 10만원) 월 2만원 인상하기 위해 14억 7,000만원 증액 ※ 14억 7,000만원(6,124명 × 2만원 ×12월)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4 본예산	2025(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3	보상금지급관리 (1137-311)	110	99	97	△2	○ 동 사업은 보상금 지급관리를 위한 사례연구 및 보상금 지급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것임 ○ 세부사업 중 '보상금 업무 발전 워크숍' 사업(1,000만원, 전년대비 동일)은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세수결손 해소를 위하여 외유성 의심 예산에 대한 감액조치가 필요하므로, 200만원 감액	
4	보훈심사위원회 운영 (1142-327)	1,620	1,636	1631.26	△4.74	○ 동 사업은 보훈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관련 연구자료의 수집·분석 등 심사지원 등을 하는 것임 ○ 내역사업인 '보훈심사운영' 내 '심사기준 워크숍'(2,974만원, 전년대비 동일)은 보훈심사위원회 심사기준 정립 설명을 위한 행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세수결손 해소를 위해 474만원 감액	
5	등록관리 (1143-328)	6,732	3,336	5,436	2,100	○ 내역사업인 '신체검사'(16억 9,700만원, 전년 대비 동일)는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자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상이등급 신체검사를 위해 전담 의사를 채용·운용 등을 하는 것임. ○ 신체검사 전담의사 추가 채용(12명, 16억 4,400만원) 및 현재 채용된 전담의사 급여 인상(4억 5,200만원)을 위해 21억원 증액 ※ 신체검사 전담의 추가 채용 12명×1억 3,700만원=16억 4,400만원 ※ 현재 채용된 전담의사 급여 인상: 8명×5,650만원=4억 5,200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4 본예산	2025(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6	보훈단체운영및 선양활동등 (1238-315)	35,120	34,281	36,191	1,310	○ 내역사업인 '보훈단체운영'(262억 2,800만원, 전년 대비 2억 2,600만원 증액)은 보훈단체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임 ○ '호국영웅보훈회관'(건물관리단체 6·25참전유공자회) 리모델링을 위해 13억 1,000만원 증액	
					600	○ 내역사업인 '보훈단체선양활동등'은 보훈단체별 애국선양활동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임 ○ '광복회 선양 행사'(4,800만원, 전년대비 6억원 감액) 중 독립운동사에 대한 학술연구를 목표로 하는 광복회학술원 사업 지원을 위해 6억원 증액	
7	지방보훈회관건립 (1238-321)	3,750	2,000	3,750	750	○ 동 사업은 지방보훈회관 건립 사업비 중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여 지방보훈회관 건립을 촉진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인천통합보훈회관 신규 건립을 위해 7억 5,000만원 증액	
					250	○ 상주시 통합보훈회관 신규 건립을 위해 2억 5,000만원 증액	
					250	○ 군위군 보훈회관 신규 건립을 위해 2억 5,000만원 증액	
					250	○ 광양시 보훈회관 신규 건립을 위해 2억 5,000만원 증액	
					250	○ 보은군 보훈회관 신규 건립을 위해 2억 5,000만원 증액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4 본예산	2025(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8	**교통시설 이용지원 (2139-318)**	11,329	10,729	11,229	500	○ 내역사업 '민영버스'(84억 8,400만원, 전년 대비 동일)는 교통시설이용지원 대상자의 시내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등 이용 운임을 지원하는 것임 ○ 교통복지카드 전국호환사업으로 교통이용 실적에 대한 명확한 정산이 가능하게 되어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감면 이용에 대한 지원이 용이해졌으므로 도시철도·광역철도 이용지원 협정체결 및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5억원 증액	
9	**보훈병원 진료 (2150-365)**	392,031	392,296	457,596	65,300	○ 내역사업인 '보훈병원 진료비'(3,852억 7,800만원, 전년 대비 18억 7,000만원 감액)는 보훈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것임 ○ 해마다 예산이 부족하여 대규모 이·전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653억원 증액	
10	**위탁병원 진료 (2150-366)**	256,315	249,113	281,455	32,342	○ 동 사업은 국가유공자 등의 진료를 국가에서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하고 이에 따라 발생한 진료비를 보전하는 것임 ○ 위탁병원 진료비 예산이 부족하여 대규모 이·전용이 연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323억 4,200만원 증액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4 본예산	2025(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11	제대군인의료지원 (2150-450)	2,365	2,365	4,065	1,700	○ 동 사업은 전·공상을 입고 전역하였으나 상이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진료비·보철구를 지원하는 것임 ○ 매년 예산을 과소계상함에 따라 예산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이·전용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진료비 예산 17억원 증액	
12	대구보훈병원 외래시설 개선 (2156-393)	1,130	7,490	4,490	△3,000	○ 동 사업은 건물 노후화, 환자 증가에 따른 진료공간 협소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대구보훈병원 서관동을 철거 후 재건축을 하는 것임 ○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을 고려할 때 실시설계 기간이 2개월 과소계상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집행 가능한 공사비 소요액 반영을 위해 30억원 감액	
13	보훈대상자 교육비지원 (학습보조비등) (2241-453)	1,241	1,241	1,491	250	○ 동 사업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학습에 필요한 부교재비 구입 등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임 ○ 보훈대상자 교육비 지원 지급 단가가 2016년부터 동결되어 연례적인 예산 부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2억 5,000만원 증액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4 본예산	2025(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14	**독립기념관운영 및 활성화 (3144-333)**	28,176	27,479	33,584	3,046	○ 동 사업은 독립기념관의 경상운영비와 전시·연구, 교육·문화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민간보조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임 ○ 독립기념관 수장고 건립 37년 경과로 인한 시설이 노후화 되었으므로, 노후 수장고 시설 개선 및 자료 보존·관리에 적합한 공간 구성을 위해 30억 4,600만원 증액	
					1,250	○ 독립기념관 노후 편의시설(승강기, 화장실) 개선을 위해 12억 5,000만원 증액	
					600	○ 독립기념관 소장자료 관리시스템이 노후화되어 독립기념관 소장자료 디지털아카이브 구축을 위해 6억원 증액	
					500	○ 온라인 매체를 통한 역사 왜곡에 노출되어 있는 교육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독립운동사 교원연수를 상시 운영할 수 있는 종합교육연수원 인가 및 연수 활성화 예산(신규) 5억원 증액	
					439	○ ‘현충시설 건립’(3146-405)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인 ‘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 예산안 4억 3,900만원을 동 세부사업으로 이관	※증감액 연계 (세부사업간)
					270	○ 독립기념관 독도학교 예산 2억 7,000만원 증액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4 본예산	2025(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15	**보훈문화조성 (3145-401)**	15,407	14,104	14,404	300	○ 동 사업은 청소년 등이 보훈선양 체험 활동, 국내외 사적지 탐방 등을 통해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감사하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하기 위한 것임 ○ 우리 청소년의 국외보훈사적지탐방을 통한 나라정신 함양, 다문화 다양성의 이해,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량 강화를 위해 내역사업인 국내외사적지탐방 사업(13억 300만원, 전년 대비 동일) 예산 3억원 증액	
16	**보훈문화콘텐츠 제작및지원 (3145-404)**	9,854	6,754	6,004	△500	○ 동 사업은 보훈콘텐츠 제작 및 지원, 보훈문화콘텐츠 제작, 보훈문화콘텐츠 활성화 등 일상 속 보훈문화 조성을 위해 보훈을 주제로 한 게임, 영화 등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임 ○ 내역사업인 '보훈문화콘텐츠제작'(45억원, 전년 대비 31억원 감액) 중 '보훈문화제'사업은 2023년 예산이 부적정하게 집행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으므로, 5억원 감액	
					△250	○ 내역사업인 '보훈문화콘텐츠제작'(45억원, 전년 대비 31억원 감액) 중 '국민참여형 체험프로그램'중 게임 개발 등에 소요되는 예산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 시비와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므로, 2억 5,000만원 감액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4 본예산	2025(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17	**현충시설 건립** **(3146-405)**	7,083	7,758	4,856	△3,002	○ 동 사업은 현충시설 건립을 통하여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의 공훈과 희생을 기리고 국민의 보훈의식을 함양하려는 것임 ○ 내역사업인 '독립의 전당'(70억 3,400만원, 전년 대비 28억 8,800만원 증액)은 2024년 배정된 공사비 및 감리비가 이월될 것을 고려하여 공사비 및 감리비 등 30억 200만원 감액	
					△439	○ 내역사업인 '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4억 3,900만원, 신규) 예산을 '독립기념관운영 및 활성화'(3144-333) 세부사업으로 이관	※증감액 연계 (세부사업간)
					100	○ 미국 윌로우즈 한인비행학교 매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10억원 증액	
18	**기념관관리운영** **(3146-407)**	15,493	7,785	8,094	213	○ 동 사업은 국가관리기념관, 백범김구기념관, 안중근의사기념관,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 등 각종 기념관 등을 관리·운영하는 것임 ○ 내역사업인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 사업(6억 5,800만원, 전년 대비 2억 1,300만원 감액) 예산을 2024년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해 2억 1,300만원 증액	
					96	○ 전시기획 및 교육사업 활성화를 위해 내역사업인 유엔평화기념관(16억 1,900만원, 전년 대비 4,500만원 감액)의 학예전문인력 인건비 9,600만원 증액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4 본예산	2025(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19	독도의용수비대 기념사업회지원 (3147-340)	794	716	818	52	○ 동 사업은 「독도의용수비대지원법」에 따라 독도의용수비대원과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지원하고 각종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것임 ○ 내역사업인 '기념사업'(2억 3,800만원, 전년 대비 5,200만원 감액) 예산을 2024년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하여 5,200만원 증액	
					50	○ 대원 및 유족을 위한 지원 사업 증액을 위하여 내역사업인 '대원/유족예우지원'(1억 2,500만원, 전년 대비 2,800만원 감액) 5,000만원 증액	
20	보훈기념행사 (3147-411)	3,954	3,954	4,430	476	○ 동 사업은 정부기념행사, 국경일행사 지원, 정부기념일 계기행사 지원 및 순직경찰·소방공무원 추모행사비 지원 등을 위한 것임 ○ 2023년 11월 '순직의무군경의 날'이 지정되었으나, 2024년 및 2025년 예산안에 순직의무군경의 날 정부기념식 예산이 미반영되었으므로 순직의무군경의 날 정부기념식을 위해 4억 7,600만원 증액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4 본예산	2025(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21	광복80주년 기념사업 (3147-419)	-	9,739	8,689	△250	○ 동 사업은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함께 참여하고, 사회적 통합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현재의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 내역사업인 '기억·감사 계기 행사'(31억 2,000만원) 內 '광복 80주년 계기 특별전' 사업은 독립운동과 무관한 6·25전쟁, 산업화, 자유민주주의를 목적으로 삼고 있으므로 2억 5,000만원 감액	
					△300	○ 내역사업인 '화합·평화 계기행사' 중 '빛으로 하나된 대한민국' 사업은 단발성 행사 예산으로 사업 효과도 일시적이므로 3억원 감액	
					△500	○ 내역사업인 '미래·희망 계기행사' 중 '광복80주년경축 드론쇼' 사업은 단발성 행사 예산으로 사업 효과도 일시적이므로 5억원 감액	
22	독립유공자등자료수집관리 (3248-3436)	3,038	2,678	2,976	298	○ 동 사업은 독립유공자에 대한 '공적 검증위원회', '독립유공자후손확인위원회'를 운영하고, 이달의 독립운동가를 선정·홍보하며, 독립운동 등 역사를 재조명하는 다양한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것임 ○ 국내외 독립유공자 후손찾기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담팀 및 국외 전문위원 활동비가 필요하므로 2억 9,800만원 증액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4 본예산	2025(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23	국립대전현충원 (3250-353)	16,320	11,352	11,563	211	○ 동 사업은 국립대전현충원의 안장·참배 기능 수행시설, 방문자 편의 시설 등을 개선하여 안장자의 명예선양과 국민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는 것임 ○ 노후된 보훈둘레길 시설 개선 및 안전시설물 설치를 위해 2억 1,100만원 증액	
24	국립4·19묘지 (3250-354)	616	622	1,144	522	○ 내역사업인 '시설관리'(2025년도 편성안 없음)는 안전하고 쾌적한 참배환경을 갖춘 국립묘지를 조성하는 사업임 ○ 참배 환경 조성 및 안전 개선을 위하여 시설관리 5억 2,200만원 증액	
25	국립묘지조성 (3250-364)	12,452	38,123	30,249	△8,074	○ 내역사업인 '연천연충원조성'(381억 1,100만원, 전년 대비 343억 1,400만원 증액)은 경기·강원권 안장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 연천 지역에 국립묘지를 조성하는 사업임 ○ 본공사를 위한 계약 체결이 지연되었음로 집행가능한 공사비 소요를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80억 7,400만원 감액	
					200	○ 충남권 보훈대상자의 예우 강화를 위해 충남권 국립호국원 설치 타당성 연구용역비 2억원 증액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4 본예산	2025(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26	**제대군인사회 복귀지원 (4160-390)**	18,743	17,910	17,310	△600	○ 동 사업은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직업교육훈련지원, 제대군인지원센터운영, 제대군인 수업료보조 등과 제복근무자를 예우하고 존경하는 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제복근무자 감사캠페인을 수행하는 것임 ○ 제대군인에 대한 직접적 지원이 아닌 '제복근무자' 홍보·행사를 위한 예산이므로, 6억원 감액	
27	**본부운영 (7112-270)**	3,844	4,119	4,089	△20	○ 동 사업은 국가보훈부 운영 기본경비 예산을 집행하는 것임 ○ 국가보훈부 7개 소속기관 기본 경비, 보훈단체 예산, 임시정부기념관 운영, 독립기념관 운영 예산은 각각 감액되었으나, 국가보훈부 운영 예산만 증액되었으므로 2,000 감액	
					△10	○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에 대한 국회 미제출 및 제대로 심의가 되지 않고 있는 점, 재정여력이 어려운 점에 비추어 불요불급한 관서업무추진비 1,000만원 감액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4 본예산	2025(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28	**행정효율성증진 및능력개발 (7167-421)**	1,483	1,503	1,340	△150	○ 동 사업은 불합리한 행정절차 및 제도 개선으로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고, 직원 창의역량 개발을 통한 업무개선 촉진 및 핵심향상을 강화하며, 2030 청년들의 국정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 내역사업인 '청년인턴 운영(10억 700만원, 전년 대비 1,500만원 증액)은 청년인턴에게 행정업무 보조, 보훈행사 지원 등 실효적인 업무가 부여되고 있지 않으므로, 1억 5,000만원 감액	
					△13	○ 내역사업인 '2030자문단 운영'(6,700만원, 전년 대비 동일)은 보훈부 사업에 청년들을 보여주기 식으로 동원하는 등 보훈정책에 청년 참여 확대라는 원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1,300만원 감액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4 본예산	2025(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29	보훈정책홍보 (7167-433)	859	1,092	1,080	△10	○ 동 사업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그분들에 대한 보훈정책 의미 등을 보훈가족 및 국민들에게 올바로 알리기 위해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실시하는 것임 ○ 무분별한 홍보사업은 지양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홍보사업에 대한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보이므로, '모두의 보훈'사업 예산 1,000만원 감액	
					△2	○ 내역사업인 '홍보추진 경비'(3,200만원, 전년 대비 200만원 증액)는 홍보예산이 산재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200만원 감액	
30	국가보훈부 정보화사업 (7169-501)	4,172	4,432	5,290	858	○ 동 사업은 정보시스템, 전산장비 유지관리와 공무원 정보화 교육, 보훈 빅데이터 활용 체계 구축 등을 위한 것임 ○ 주택 희망자가 수시로 주택 공급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주택 우선공급 대상을 '자동 도출'할 수 있는 보훈대상자 주택 우선공급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해 8억 5,800만원 증액	
31	재향군인회선양 활동 (신규)	-	-	1,400	1,400	○ 국내 최대 공법단체인 재향군인회의 선양사업에 대한 사업비 등을 타 보훈단체와 동일하게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14억원 증액	※증감액 연계 (일반회계-보훈기금간)

(2)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 없음
(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없음

3. 기타 특이사항(사업명 또는 비목 변경 등) - 없음

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실

1. 세입예산안 조정내역 - 없음

2. 세출예산안 조정내역

(1)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4 본예산	2025(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1	국무조정실 기본경비 (7011-250)	6,365	6,540	6,353	△15	○ 동 사업은 국무조정실의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국무조정실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임 ○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불요불급한 관서업무추진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관서업무추진비 1,500만원 감액	
					△172	○ 특수활동비는 공직복무 관리라는 사업비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기본경비에 편성하고 있으므로, 특수활동비 1억 7,200만원을 공직복무 관리(7036-303)으로 이관	※증감액연계 (세부사업간)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4 본예산	2025(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2	국무총리비서실 기본경비 (7011-250)	1,395	1,440	1,435	△5	○ 동 사업은 국무총리비서실의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국무조정실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임 ○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불요불급한 관서업무추진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관서업무추진비 500만원 감액	
3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 (7031-301)	177	230	197	△33	○ 동 사업은 120대 국정과제에 대한 체계적 점검·관리 및 성과의 공유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유도하는 것임 ○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이 전무한 상황에서 단순한 전시성 국정과제 성과보고회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에 맞지 않으므로, 국정과제 성과보고회 1회분 3,300만원 감액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4 본예산	2025(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4	**국정현안 대응 및 정책 조정** **(7031-301)**	-	199	139	△60	○ 동 사업은 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등을 운영하고, 민생현안과 관련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임 ○ 단순 행사 성격의 회의를 위한 예산의 편성은 부적절하고, 기본경비 등 기존 예산으로도 충당 가능하므로 6,000만원 감액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4 본예산	2025(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5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7135-322)**	1,759	2,120	1,989	△76	○ 내역사업인 '규제개혁위원회 운영'(13억 7,600만원, 전년 대비 1억 6,100만원 증액)은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임 ○ 동 사업에 편성된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및 안건검토수당이 증액(2억 7,300만원→3억 7,900만원)되었으나, 과거 집행률이 80% 미만으로 부진하였으므로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7,600만원 감액 ※ 집행률 : ('21) 71.0%, ('22) 74.8%, ('23) 71.1%	
					△55	○ 내역사업인 '규제혁신전략회의'(2억 7,300만원, 전년동)는 대통령·국무총리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 운영을 통해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사회갈등 등 핵심과제를 신속히 해결하는 것임 ○ 동 사업은 규제혁신추진단과 성격이 유사하고, 단발성 홍보 행사 성격이 짙으며, 선거공약 홍보의 장으로 악용된 전례를 감안하여 일반용역비 4,000만원, 일반수용비 1,500만원 등 총 5,500만원 감액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4 본예산	2025(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6	**마약류대책 협의회 운영 (7035-323)**	183	83	33	△50	○ 동 사업은 범정부 마약류대책협의회 운영, 마약류관리 기본계획(5년단위) 및 연도별 시행계획(1년단위)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마약류 관리 정책을 수립·조정하고 정책 이행상황 점검 등을 추진하는 것임 ○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이 마련되고,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도 진행된 상황에서 차년도 시행계획을 위한 별도 연구용역을 진행할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므로, '2026년도 마약류관리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5,000만원 감액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4 본예산	2025(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7	**규제혁신추진단 운영 (7033-305)**	5,154	4,443	3,799	△488	○ 내역사업인 '규제혁신추진단 운영'(38억 2,100만원, 전년 대비 4억 6,100만원 감액)은 각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규제혁신추진단을 운영하는 것임 ○ 규제혁신추진단의 활동이 내년 7월 종료 예정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사무실 임차료 4억 800만원, 워크숍 예산 8,000만원 등 4억 8,800만원 감액	
					△160	○ 내역사업인 '규제혁신추진단 홍보'(3억 1,800만원, 전년 대비 1억 6,000만원 증액)는 규제혁신추진단의 제도 활용도 및 규제혁신 체감도 제고를 위해 홍보하는 것임 ○ 규제혁신추진단의 활동이 내년 7월임에도 내년 홍보비를 증액편성한 것은 예산을 과다계상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고려하여 1억 6,00만원 감액	
					4	○ 내역사업인 '규제혁신추진단 운영'을 위한 행정실무원 봉급이 전년 수준으로 동결되었으므로 공무원 임금 인상률(3%)에 준하는 처우개선분 적용을 위해 400만원 증액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4 본예산	2025(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8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운영 (7035-319)	5,165	5,049	5,069	20	○ 동 사업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사무처 운영 등을 통하여 정부의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것임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민간위원장 직책수행경비 반영을 위해 2,000만원 증액	
9	특별자치시 · 도 지원단 운영 (7035-320)	481	442	467	25	○ 동 사업은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특별자치시·도 지원단을 운영하는 것임 ○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사업 추진 및 공론화, 행정수도 명문화를 위한 개헌 등의 과제가 산적한 상황을 감안하여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연구용역비 2,500만원 증액	
10	청년정책 통합플랫폼 구축 (정보화) (7035-320)	3,473	3,446	1,958	△1,488	○ 동 사업은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하는 청년정책 통합 플랫폼을 구축·운영하는 것임 ○ 청년정책통합플랫폼 1차 구축사업의 운용실적 및 미비점 등을 검증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26년도에 2차 구축 예산을 반영하기 위하여 14억 8,800만원 감액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4 본예산	2025(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11	납세자 권리보호 지원강화 (7035-325)	-	192	167	△25	○ 동 사업은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한 조세심판 시 납세자의 권리를 지원하기 위한 것임 ○ 조세심판원 설립 50주년 기념행사비는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성이 적으므로 백서제작비 2,000만원, 동영상 제작비 500만원 등 2,500만원 감액	
12	공직복무 관리 (7036-303)	868	974	1,126	△20	○ 동 사업은 국무총리의 행정 각부 지휘·통할을 보좌하고,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하여 행정부 내 공직기강 확립 업무를 수행하는 것임 ○ 윤석열 정부 2년차 일하는 분위기 조성 등 공직사회 기강 확립 필요성이라는 이유로 2023년 공직복무점검단을 11명 증원하였으나, 공무원에 대한 통제 강화 등의 악용 가능성이 있는바, 조직 확대에 따른 예산 2,000만원 감액	
					172	○ 특수활동비는 공직복무 관리라는 사업비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기본경비에 편성하고 있으므로, 특수활동비 1억 7,200만원을 기본경비로부터 이관	※증감액연계 (세부사업간)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4 본예산	2025(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13	국무총리 국정활동 수행 (7036-306)	1,499	1,499	1,400	△99	○ 동 사업은 국무총리의 원활한 국정활동 수행을 보좌·지원하기 위해 내각 통할 등 국정활동 수행에 소요되는 필수 경비를 지원하는 것임 ○ 80조원이 넘는 정부 세수결손으로 국가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추진비 6,900만원, 특수활동비 3,000만원 등 9,900만원 감액	
14	부패예방추진단 운영 (7036-311)	709	712	707	△5	○ 동 사업은 부패·부조리의 단발적인 적발·처벌·시정조치에 그치지 않고 실태 및 원인을 분석하여 부패유발요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정책적 관점의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임 ○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진 부패예방 및 부패 유발요인 근절에 대한 신뢰 저하로 우리나라의 국제부패인식지수 평가가 7년만에 하락하였고, 부패예방추진단의 역할이 국민권익위원회와 중복되는 점을 감안하여 500만원 감액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4 본예산	2025(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15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 기획단 운영 (7036-315)	-	2,129	1,949	△105	○ 내역사업인 '국민참여 기념사업'(7억 1,200만원, 신규)은 광복 80년 기념사업 기획·추진에 있어 민간의 자발적인 관심·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임 ○ 민간이 직접 사업의 추진 주체가 되는 사업을 격려·지원하는 '국민 참여 촉진 캠페인'은 구체적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1억 500만원 감액	
					△75	○ 내역사업인 '기념사업 홍보'(4억 3,200만원, 신규)은 2025년 광복 80년 및 광복 80년 기념사업을 국내외에 홍보하기 위한 것임 ○ 광복 80년 광고·홍보를 위한 포털 광고비(2억원)는 문화체육관광부에도 광복 80주년 기념 광고를 위한 예산이 반영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7,500만원 감액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4 본예산	2025(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16	국회·정당 및 시민사회 등과의 소통 강화 (7037-302)	984	934	852	△64	○ 내역사업인 '시민사회활성화 지원'(2억 1,300만원, 신규)은 시민사회와의 현장 소통, 의견 청취, 교육 등을 위한 것임 ○ 동 사업은 폐지된 시민사회위원회 운영사업과 내역이 대부분 동일하므로, 과거 시민사회위원회 운영사업의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6,400만원 감액	
					△18	○ 내역사업인 '당정협의체 운영'(8,300만원, 전년 동)은 당정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고위당정협의회 운영, 부처별 당정협의·정책설명 등 여·야 정당과의 소통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것임 ○ 동 사업은 올해 5차례 고위당정협의에서 야당과의 소통을 단 한차례도 진행한 바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1,800만원 감액	
17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추진단 운영비 (신규)	-	-	383	383	○ 동 사업은 인구전략기획부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제반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추진단을 운영하는 것임 ○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을 위한 「정부조직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으로, 2025년 1분기 인구전략기획부의 신설을 위해 추진단 운영비 3억 8,300만원 증액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4 본예산	2025(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18	**경제 · 인문사회 연구회** **(1531-301)**	18,777	22,122	22,622	500	○ '협동연구 지원사업'은 범국가적 정책과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미래전략, 글로벌 이슈 대응 등 多학제적 융·복합연구를 통해 정책대안을 개발·제시하고, 연구 성과를 확산·공유하는 사업임. ○ 기후·인구·통일·저출생 등 국가 핵심 의제에 대한 통섭적이고 실효성있는 협동연구 추진을 위해 5억원 증액	

<table>
<tr><th>연번</th><th>세부사업명
(0000-000)</th><th>2024
본예산</th><th>2025(안)
(A)</th><th>수정안
(B)</th><th>증감액
(B-A)</th><th>수정이유</th><th>비고</th></tr>
<tr><td>19</td><td>국토연구원
(1533-301)</td><td>22,185</td><td>24,387</td><td>24,323</td><td>△64</td><td>○ 동 사업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개발·보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기 위하여 ‘국토연구원’에 출연하는 사업임.

○ 부동산 보유세, 친환경 모빌리티 등의 연구주제는 다른 연구기관에서 이미 수행한 과제와 유사한 주제로서, 정관에 규정된 국토연구원의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다소 떨어지므로 관련 사업 예산 일부(6,400만원) 감액

※ 감액 대상 연구과제명 (단위: 백만원)
<table>
<tr><th>연구과제명</th><th>2025년
예산안</th></tr>
<tr><td>공정과세 실현을 위한 부동산 보유세 제도 개선 방향 연구</td><td>32</td></tr>
<tr><td>이용자 행태 기반 친환경 모빌리티 발전 방안 연구</td><td>32</td></tr>
<tr><td>합 계</td><td>64</td></tr>
</table>
* 기본사업비-기관고유사업비-기본연구사업</td><td></td></tr>
</table>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4 본예산	2025(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20	**통일연구원** **(1538-301)**	10,926	9,267	9,014.587	△60	○ 동 사업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제반 사항을 체계적으로 연구·분석하여 국가의 통일 및 대북정책 수립에 기여하기 위하여 '통일연구원'에 출연하는 사업임. ○ 기본사업비 결산시 불용액이 과다하고 연구자 1인당 연구실적이 1.45건으로 저조하므로, 경상비(1,500만원)와 기관고유사업비의 일부(4,500만원) 감액 - 기본연구사업 '북한의 반미연대와 대외전략' 2,500만원 전액 감액 - 연구지원사업 '통일정책연구협의회' 2,000만원 일부 감액	
					△70	○ '미 신행정부 대외전략 및 한반도정책과 동북아 정세: 전망과 대책'(3억 7,000만원, 신규)은 미 신행정부의 대외전략을 분석하고, 동북아 주요 관련국들의 반응 예측 및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하며, 한국의 대응 전략을 제시하는 사업임. ○ 수시연구과제를 통해 충분히 수행가능한 사업이므로 일부 감액 -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100만원) - 여비(△2,216만 3천원)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4 본예산	2025(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 전문가활용비(△1,540만원) - 회의비(△690만원) - 외부용역비 및 분담금 (△2,500만원)	
					△6	○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한 글로벌 중추국가의 통일외교 전략'(9,000만원, 전년 대비 3,000만원 감액)은 글로벌 및 지역 차원에서 전개되는 국가들의 국제질서 인식 및 전략을 파악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사업임. ○ 대만과 중국 대상의 현지조사를 위한 국외여비(1,600만 7천원)는 양안관계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므로 일부(600만원) 감액	
					△90	○ '북한·통일 전략정보체계 및 데이터 플랫폼 구축' (9,000만원, 전년 대비 3,000만원 감액)은 북한 정세 및 주요 핵심 안보 현안 분석에 필요한 전략정보 수집·분석 체계를 구축하려는 사업임. ○ 통일부의 '북한정보포털'사업과 유사·중복성이 있으므로 전액(9,000만원) 감액	
					△12.987	○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1억원, 전년대비 4,500만원 증액)은 북한인권 실상에 관한 국내외 관심 제고, 공감대 확대, 담론 생산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사업임. ○ 연구기관이 본연의 임무인 연구사업보다 네트워킹 사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4 본예산	2025(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업에 집중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미국북한인권포럼' 관련 예산 1,298만 7천원 감액 * 사업명 변경 (당초)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 (변경)북한 인권 연구 네트워크 구축	
					△6.933	○ '북한 인권증진 중장기 로드맵 연구'(2억 2,900만원, 전년대비 9,100만원 감액)는 장기적 관점에서 북한인권 개선 전략 및 로드맵을 모색, 방향성을 제시하는 사업임. ○ 북한인권 개선은 외교부, 통일부 등 범정부 차원에서 합동으로 추진해야할 과제이므로, 해외출장 관련 예산 693만 3천원 감액 * 사업명 변경 (당초)북한 인권증진 중장기 로드맵 연구 → (변경)북한 인권증진 이론적 토대 연구	
					△6.493	○ 'KINU 통일의식조사: 미국대통령 선거 이후의 한미관계'(8,000만원, 전년대비 1,500만원 감액)는 전 국민을 모집단으로 하는 대면면접조사를 실시하여 국민의 변화하는 통일인식과 북한인식, 그리고 주변국 인식을 조사하는 사업임. ○ 미국(워싱턴)을 방문하기 위한 국외 출장은 사업 취지에 맞지 아니하므로 관련 국외여비 649만 3천원 감액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4 본예산	2025(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21	**한국개발연구원** **(1539-301)**	68,540	**65,841**	65,741	△100	○ '개발협력 정책역량 및 기반 강화를 위한 OECD 공동연구'(5억 5,000만원, 신규)는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 동료검토 권고사항의 주요분야에 대해 이행방안을 제시하는 사업임. ○ 불요불급한 사업으로 볼 수 없으며 재정 악화 심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신규사업을 억제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사업인건비, 공공요금, 수용비,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연구정보활동비, 회의비 등 감액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4 본예산	2025(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22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1541-301)	25,327	26,154	26,021	△130	○ ‘수업 및 평가 역량 제고를 위한 시뮬레이션 기반 교사 역량 진단 시스템 구축’(2억 7,500만원, 신규)은 실제 상황에서의 교사의 수업 및 평가 역량을 진단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기반의 평가도구를 개발하는 사업임. ○ 교사의 역량 강화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협력하여 진행하여야 하므로 외부용역비(1억 3,000만원) 감액	
					△3	○ 동 사업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 및 교과서를 연구·개발하고 각종 교육평가를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실시하기 위하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출연하는 사업임. ○ 출판 실적이 저조하고 자격 미달의 인물이 편집자로 등재된 업체((주)한국학력평가원)를 검정역사교과서 집필 출판사로 선정하는 문제를 야기하였으므로 기관장 업무추진비(300만원) 감액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4 본예산	2025(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23	**한국교통연구원** **(1542-301)**	18,858	18,515	18,505	△10	○ '국가철도투자 지원 사업'(1억 4,000만원, 신규)은 철도투자의 확대에 맞추어 철도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사업 추진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이슈를 선점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려는 사업임. ○ 동 사업과 유사한 연구과제를 과거에 수행한 바 있고, 연구대상이 한국교통연구원의 2025년도 일반사업(교통부문 3대혁신 전략 지원사업)의 연구대상이 포함되므로 사업인건비(1,000만원) 감액	
24	**한국노동연구원** **(1543-301)**	15,849	16,244	16,459	215	○ 동 사업은 고용·노동과 관련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연구·분석하고, 이와 함께 고용·노동·사회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한국노동연구원'에 출연하는 사업임. ○ 한국의 고용구조와 노동수요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고용노동정책 수립의 근거 자료를 제공하는 사업체패널조사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하여 2억 1,500만원 증액 * 대상사업: 사업체패널조사(기본사업비-기관고유사업비-연구지원사업)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4 본예산	2025(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25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1546-301)	32,006	32,289	32,501	212	○ 동 사업은 국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인구·사회·경제 상황을 조사하고 연구·분석하며, 사회정책 및 사회보장제도를 수립·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출연하는 사업으로, 국가인적자원 육성을 위한 육아정책연구 등 육아정책 관련 업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부설기관으로 '육아정책연구소'를 두고 있음. ○ 육아정책연구소가 현재 임차 중인 서울지방우정청 포스트타워에서 2025년도 임차료 금액을 착오 안내함에 따라, 청사 임차료를 위한 기본사업비(경상운영비) 부족분 2억 1,200만원 증액	
26	한국해양수산 개발원 (1551-301)	21,305	21,103	21,543	440	○ 동 사업은 해양, 수산, 해운, 항만 및 그와 관련된 물류 산업의 발전과 이와 관련된 과제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연구·개발하고, 각종 동향과 정보를 신속히 수집·분석하여 이를 널리 보급·활용하기 위하여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출연하는 사업임. ○ 자율운항선박·친환경 선박 등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산업의 활성화 및 연관 산업의 미래인재 양성과 국제협력 네트워크 체계 구축을 위하여 '첨단 해양모빌리티 글로벌 미래인재 양성 기반 구축사업'을 신규로 편성하고자 특수사업비(일반사업비) 4억 4,000만원 증액	

(2)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 없음

3. 기타 특이사항(사업명 또는 비목 변경 등) - 없음

다. 공정거래위원회

1. 세입예산안 조정내역 - 없음

2. 세출예산안 조정내역

(1)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4 본예산	2025(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1	정책연구개발 사업 (1231-310)	349	289	389	100	○ 동 사업은 공정거래정책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전문적인 연구 수행을 통해 공정거래정책 개선방안 및 추진방향을 마련하려는 것임 ○ 「노무제공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 개정, 온라인 플랫폼 등 새로운 독과점 유형과 불공정 거래행위 등장에 따라 구체적인 위법성 유형·제도 개선 방안·해외사례 연구를 위한 정책연구비 1억원 증액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4 본예산	2025(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2	대외활동 강화 (1231-311)	394	626	618	△3	○ 내역사업인 '서울국제경쟁포럼'(2억 1,000만원, 전년 대비 2억 1,000만원 증액)은 해외 경쟁당국과 국제기구의 고위급 인사, 교수, 변호사 등 경쟁법 분야의 국내외 저명인사들이 참석하는 세계적인 규모의 회의를 국내에서 2년마다 개최하려는 것임 ○ 공정위는 ASEAN·CIS 경쟁당국 협의회와 서울국제경쟁포럼을 함께 진행할 예정으로 ASEAN·CIS 경쟁당국 협의회 예산을 4,900만원 감액하는 대신 당해 사업 예산을 2023년 대비 증액하였다는 설명이나 감액분(4,900만원)에 비해 증액분(8,000만원)이 더 크므로 300만원 예산 감액	
					△5	○ 내역사업인 'CP 제도 운영'(4,600만원, 전년 동)은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지키도록 노력하는 자율준수 문화 정착을 위해 자율준수프로그램(CP) 도입 확산을 유도하려는 것임 ○ 참여기업 전부에 고등급을 부여하는 등 기업의 자율적 규제의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CP 제도 운영' 예산 중 CP 포럼 위탁 일반용역비(400만원) 및 CP 제도 운영 간담회 업무추진비(100만원) 감액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4 본예산	2025(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3	선진소비자정책 추진 (1431-600)	1,389	1,792	2,109	277	○ 내역사업인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정보제공 플랫폼 구축'(6억 6,000만원, 전년 대비 6억 6,000만원 증액)은 상조·적립식 여행 등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에서 소비자 대상 정보제공을 강화하기 위한 통합 플랫폼 구축하여 소비자가 가입정보, 납입금액 등 계약 정보를 원스톱으로 조회할 수 있게 하고, 시장 현황·사업자 정보 등을 통합 공시하려는 것임 ○ 소비자의 개별 계약 정보 제공 및 등록 사업자의 종합적 정보 관리 기능을 제공하는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정보제공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하여 2억 7,700만원 증액	
					40	○ 정책연구, 정책위원회 활성화 등 실질적인 소비자 정책 추진을 위하여 예산 조정 필요로 소비자관련 법률 교육콘텐츠 제작비용을 1,000만원을 감액하고, 소비자정책 연구용역을 5,000만원 증액하여 총 4,000만원 증액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4 본예산	2025(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4	**공정거래지원 (7031-300)**	1,389	1,157	1,357	200	○ 내역사업인 '조사공무원 역량강화'(1억 1,600만원, 전년 대비 2억 4,000만원 감액)은 공정위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전문교육을 운영하여 경력 단계별·부서별 맞춤 교육을 제공하고, 공정위 사건 조사 품질 향상 및 조사 역량과 관련된 전문성 등 제고하려는 것임 ○ 플랫폼 경제 등에 대한 전문성 제고를 위한 공무원 역량강화가 필요하므로 '조사공무원 역량강화'에 2억원 증액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4 본예산	2025(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5	기관운영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7011-250)	1,552	1,360	1,346	△14	○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관서업무추진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므로, 관서업무추진비 1,400만원 감액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4 본예산	2025(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6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출연 (1271-350)**	11,742	12,757	12,897	140	○ 내역사업인 '분쟁조정'(7억 700만원, 전년 대비 7,000만원 증액)은 6개 분야에서 발생한 사업자 간 분쟁에 대해 분쟁조정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피해를 구제하고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려는 것임 ○ 분쟁조정 접수사건 급증에 따라 전문분야 계약직 변호사(2명)의 한시적 채용을 위하여 상용임금 1억 4,000만원 증액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4 본예산	2025(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7	**한국소비자원 출연 (1461-630)**	52,842	53,696	53,867	171	○ 내역사업인 '소비자안전 및 시험검사'(54억 7,000만원, 전년 대비 10억 6,400만원 감액)은 소비자 위해정보를 수집·분석·처리하고, 제품·시설에 대한 안전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건의하며, 신유형·신기술 및 국민다소비 제품의 품질·안전성을 시험평가하려는 것임 ○ 응급실 위해정보 제출병원 2개원 추가 지정 및 제출병원 수당 현실화(월245만원→ 월300만원)를 위해 1억 7,100만원 증액	

3. 기타 특이사항(사업명 또는 비목 변경 등) - 없음

라. 금융위원회

1. 세입예산안 조정내역 - 없음

2. 세출예산안 조정내역

(1)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4 본예산	2025(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1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1831-881)	56,000	56,000	93,000	37,000	○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최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상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것으로, 2024년과 동일한 공급목표를 담보할 수 있도록 370억원 증액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4 본예산	2025(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2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청년도약계좌) (1831-882)	368,211	375,000	347,015	△26,000	○ 내역사업인 '기여금 지원'(3,628억 400만원, 전년 대비 37억 6,100만원 증액)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본인 납입액에 비례하여 국가가 기여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임 ○ 최근 2년간 실집행률이 낮고 예상실적이 과다하게 추계되어 불용액이 불가피해 보인다는 점, 2023년 사업 신설 이후 출연금으로 인한 이자수익이 약 188억원 발생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260억원 감액	
					△1,985	○ 내역사업인 '인프라 구축'(116억 9,200만원, 전년 대비 30억 2,800만원 증액)은 청년도약계좌 소득심사센터, 가입자 지원 및 상담센터 운영 등 가입심사 지원과 가입자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것임 ○ 2025년부터 상담인력을 기존 200명에서 100명으로 감축하고, 이에 따라 콜센터 임차 공간 1개층 임대계약을 2025년 7월 종료할 예정 등을 고려하여 19억 8,500만원 감액	
3	서민금융진흥원 출연(햇살론15) (1831-884)	90,000	90,000	145,000	55,000	○ "햇살론15"상품을 운영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것으로, 대부업 등 고금리 대출에 내몰리고 있는 저소득·저신용자 지원을 위해 2024년 보증공급규모(1조 500억원)을 담보할 수 있도록 550억원 증액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4 본예산	2025(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4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1833-301)	1,255	1,205	1,305	100	○ 불법추심 등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채무자에게 채무자대리인 선임 및 관련 부수사건 소송대리를 무료로 지원하는 것으로,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건수를 확대하고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1억원 증액	
5	중소기업은행 출자 (정산지연 피해기업 유동성지원 프로그램 지원) (신규)	-	-	4,600	4,600	○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에 유동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중소기업은행에 출자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은행이 제공하는 기은-신보 특례보증 이자 감면을 위해 46억원 증액	
6	산업은행 출자 (혁신성장펀드) (2414-318)	240,000	200,000	176,200	△23,800	○ 혁신성장 분야 등 국가전략산업 분야에 투자하는 혁신산업펀드와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자금을 공급하는 성장지원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산업은행에 출자하는 것임 ○ 2024년 8월까지 재정모펀드 회수 확정액(238억원)을 감안하여 238억원 감액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4 본예산	2025(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7	산업은행 출자 (원전산업 성장펀드) (2414-323)	-	40,000	35,000	△5,000	○ 원전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한국산업은행에 재정을 출자하는 것임 ○ 원전산업성장펀드는 1,000억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나 재정출자비중(40%)이 다른 유사 사업에 비해 높게 설정되어 있어 이를 낮추기 위해 50억원 감액	
8	기획조정관실 기본경비 (비총액) (7111-251)	2,935	3,003	2,718	△250	○ 기획조정관실 일반수용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 관서 운영을 위한 경상경비를 지급하는 것임 ○ 불요불급한 예산 절감을 위하여 일반수용비(210-01) 5,000만원, 공사비(420-03) 5,000만원, 자산취득비(430-01) 1억 5,000만원 등 2억 5,000만원 감액	
					△35	○ 정무직(위원장, 부위원장) 및 1급(4명) 공무원의 관서업무추진비(240-02)를 20% 범위에서 삭감하기 위하여 3,500만원 감액	
9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7135-309)	407	450	1,150	700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당국의 회계부정 적발 등에 도움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2024년 11월 6일 기준 회계처리 위반으로 제재가 확정된 8건의 포상금 지급예상액과 2025년 지금예상액의 합계액(13.3억원)을 감안하여 7억원 증액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4 본예산	2025(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10	금융복합지원 전담조직 운영 (7135-325)(신규)	-	445	1,530	1,085	○ 서민·취약계층의 근본적인 경제적 자립 및 상환능력 제고를 위해 금융지원을 받는 서민·취약계층 대상 고용지원 및 복지지원 등을 기관 간 연계를 통해 강화하는 것으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전국 50개)에서의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복합지원 상담 인력 증원(단기계약직, 23명)을 위해 10억 8,500만원 증액	

마. 국민권익위원회

1. 세입예산안 조정내역

(1)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연번	목명 (000-00)	2024 본예산	2025(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1	기타경상 이전수입 (59-596)	682	886	682	△204	○ 수납실적을 고려했을 때 2024년 수준의 예산액이 적정하므로 2억 400만원 감액	

2. 세출예산안 조정내역

(1)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4 본예산	2025(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1	기관운영 기본경비(대상) (1111-200)	3,160	3,603	3,595.17	△7.83	○ 동 사업은 국민권익증진을 위한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예산집행임 ○ 세수 부족에 따라 예산 절감이 필요하므로 특정업무경비 783만원 감액	
2	기관운영 기본경비 (비대상) (1111-250)	4,687	4,545	4,533	△12	○ 동 사업은 국민권익증진을 위한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 예산집행임 ○ 국가재정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및 1급 공무원 업무추진비 1,200만원 감액	
3	청렴권익정책 알리기 (1131-300)	1,796	1,445	1,390	△55	○ 내역사업인 '권익증진 정책홍보'(4억 3,900만원, 전년대비 1억 8,000만원 감액)는 부패방지·고충처리·행정심판·제도개선 등 위원회의 주요 반부패·권익구제 기능과 정책을 알리기 위한 대언론·대국민 홍보를 추진하는 것임 ○ 동 사업의 전통적 방식의 오프라인 홍보예산은 감액하는 등 홍보비 예산 5,500만원 감액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4 본예산	2025(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4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1132-320)	22,372	7,700	7,665	△35	○ 내역사업인 '권익행정시스템 운영'(33억 3,000만원, 전년 대비 9억 8,700만원 증액)은 공통행정·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와 통신·보안 등 기관 인프라 운영·개선을 위한 것임 ○ 동 사업의 노후 pc 교체 예산 3,500만원 감액	
5	국민소통시스템 구축및운영 (정보화) (1132-321)	3,419	3,366	3,346	△20	○ 내역사업인 '국민소통시스템 운영'(28억 7,700만원, 전년 대비 600만원 감액)은 모든 행정기관(중앙·지자체·교육청)과 주요 공공기관의 민원, 제안, 토론 및 각종 신고 등 소통창구를 통합·연계한 범정부 온라인 국민참여 포털 '국민신문고' 운영 및 기능 개선을 위한 것임 ○ 불요불급한 예산은 줄일 필요가 있으므로, 동 사업예산 2,000만원 감액	
6	반부패기술지원 (ODA) (1133-331)	298	298	250	△48	○ 동 사업은 우리나라의 주요 반부패 정책 및 제도 전수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인적·제도적 반부패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연수과정 등을 운영하는 것임 ○ 특정 국가에 대한 연수 프로그램을 큰 비중으로 편성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으므로, 카자흐스탄 정책 연수 예산 4,800만원 감액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4 본예산	2025(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7	**청렴권익 국제교류 (1133-332)**	391	691	669.6	△12	○ 내역사업인 '국제회의 참석'(1억 6,200만원, 전년동)은 국제 반부패 규범 형성 및 이행관리 등 국제 반부패 논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제 반부패 공조에 적극 참여하려는 것임 ○ 동 사업의 국제회의 참석 인원 축소를 통한 국외여비 1,200만원 감액	
					△9.4	○ 내역사업인 '국제회의 개최'(3억 100만원, 순증)는 APEC 의장국 수임에 따른 APEC 반부패·투명성 실무협의단 총회 및 반부패 고위급 대회 개최를 통해 우리나라 정부의 반부패 정책 성과 및 계획 등을 공유하려는 것임 ○ APEC 국제회의 초청 인원 축소를 통한 예산 940만원 감액	
8	**청렴권익 민간협력 (1133-333)**	455	354	318	△36	○ 내역사업인 '기업 윤리경영 지원 및 협력'(7,700만원, 전년 대비 1,000만원 감액)은 기업의 윤리경영 문화 조성·정착 지원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발간·배포, 윤리경영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등을 위한 것임 ○ 동 사업의'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를 인쇄물이 아닌 웹진으로만 발행하여 예산을 절감할 필요가 있으므로, 브로슈어 인쇄·우편발송비 3,600만원 감액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4 본예산	2025(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9	고충민원 조사활동 (1135-350)	1,324	1,680	1,600	△80	○ 내역사업인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3억 7,000만원, 전년 대비 1억 3,100만원 증액)은 민원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 복지·주거 취약계층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대국민 민원서비스를 향상시키려는 것임 ○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상담차량을 차량 구입(자산취득비)에서 차량 렌트(임차료)로 변경함으로 인한 해당 사업 예산 8,000만원 감액	
10	청렴도측정 및 부패영향평가 (1136-360)	3,066	2,999	2,984	△15	○ 내역사업인 '기관협의 및 운영 등을 위한 경비'(1억 5,900만원, 전년 대비 2,100만원 증액)는 불요불급한 국외업무여비를 1,500만원 감액	
11	청렴교육 및 의식확산 (1136-361)	2,239	2,428	2,411	△15	○ 내역사업인 '반부패·청렴사례 공모전 운영'(2억원 전년 대비 동일)은 국민들이 청렴문화 확산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하는 것으로, 홍보비·시상식 비용 중 1,500만원 감액	
					△2	○ 내역사업인 '국민권익위원회 학술지 발간'(3,000만원, 전년 대비 동일)은 국민권익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학술지 발간을 통해 위원회 업무와 새로운 반부패·권익 구제 관련 이론 등을 공유함으로써 실무 활용도를 제고하려는 것으로, 학술지를 e-book 형태로 배포함으로써 인쇄비 200만원 감액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4 본예산	2025(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12	**신고자보호보상 및 공익신고 제도운영 (1136-364)**	4,730	5,500	5,800	300	○ 내역사업인 '신고자 보·포상금 등'(54억 2,500만원, 전년 대비 7억 7,200만원 증액)은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포상금·구조금을 지급하는 것임. ○ 공공재정 부정수급 신고 보·포상금 지급액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권익위에서 환수결정액이 제대로 환수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점검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부정청구 관련 실건수 및 보·포상금 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고자 보·포상금 예산 3억원 증액	

3. 기타 특이사항(사업명 또는 비목 변경 등)

(단위: 백만원)

연번	회계 또는 기금명	목명 또는 세부사업명 (00-000/0000-000)	2024		2025(안)	수정내용	수정이유
			본예산/ 당초	추경/ 수정			
1	일반회계	고충민원조사활동 (1135-350)	1,324	1,324	1,680	비목 변경	○ 내역사업인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3억 7,000만원, 전년 대비 1억 3,100만원 증액) 내 상담차량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430-01) 1억 2,000만원 중 8,000만원을 감액하고, 4,000만원에 대하여는 자산취득비를 임차료(210-07)로 비목을 변경함
2	일반회계	행정심판운영 (1137-370)	1,485	1,485	1,543	사업방식 변경	○ 내역사업인 '행정심판통합추진'(2억 1,200만원, 전년 대비 1억 4,000만원 증액)은 중앙행정심판 및 특별행정심판 통합 등을 통한 국민편의 중심의 행정심판 서비스를 구현하려는 것임 ○ 동 내역사업 내 '대국민 홍보비'내내역사업 중 뉴미디어 광고(5,800만원, 신규)를 2,000만원 감액하고, 옥외 광고(5,600만원)를 2,000만원 증액하는 방식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함

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 세입예산안 조정내역 - 없음

2. 세출예산안 조정내역

(1)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4 본예산	2025(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1	**개인정보보호 정책지원** **(1031-300)**	2,043	1,943	1,938	△5	○ 내역사업인 **'개인정보 정책성과 공유'**(1억 8,500만원, 전년 동일)은 개인정보보호 제도 개선사항 등에 대한 성과의 홍보 및 공유를 추진하기 위한 것임 ○ 개인정보보호 정책 공유 행사 예산(9,500만원)의 절감을 위하여 500만원 감액	
2	**개인정보보호 자율환경조성** **(1031-301)**	4,264	3,714	4,064	350	○ 내역사업인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활성화'**의 내내역사업인 **'아동·청소년 디지털 잇힐 권리 실현'** 은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정보주체로서 권리 행사에 한계가 있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하므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10억원)을 유지하기 위하여 3억 5,000만원 증액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4 본예산	2025(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3	신뢰기반의 AI 개인정보 보호 · 활용 기술개발(R&D) (1033-305)(신규)	-	1,500	3,500	2,000	○ 최근 딥페이크로 인한 성범죄가 사회적 이슈화되면서 사전적 차원의 딥페이크 개인정보 보호 기술을 개발하여 딥페이크 문제의 적기 대응을 할 필요가 있으므로, 기술개발을 위한 20억원 증액	
4	개인정보 침해방지 (2034-301)	8,686	7,486	9,486	2,000	○ 내역사업인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 대응'**은 비정형 기반 개인정보(이미지, 영상 등) 노출 대응, 다크웹 대상 감시·대응,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등을 위해 20억원 증액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4 본예산	2025(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5	**개인정보 사고조사 지원 (2034-302)**	-	1,628	1,596	△32	○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사업자 행정조사에 디지털포렌식 기술을 도입·적용하기 위하여 디지털포렌식 기반의 조사 환경을 구축하는 것임 ○ 사업 방식을 한국인터넷진흥원 출연에서 직접 수행으로 변경함에 따라 디지털포렌식룸을 정부서울청사 내 여유공간에 설치할 예정이므로, 공간 임차료 3,200만원 감액	
6	**위원회 법무지원 (7041-301)**	515	515	685	△30	○ 내역사업인 **'법률서비스 이용지원'**(9,500만원, 전년 동일)은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료와 민간 법률정보시스템 이용료를 지급하는 것임 ○ 사고문변호사 법률자문료 집행실적이 매년 부진한 점을 감안하여 3,000만원 감액	
					200	○ 내역사업인 **'국가송무수행지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제기된 행정쟁송에 대응하기 위한 소송수행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개인정보 유출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과징금 규모도 증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구글, 메타 등과의 소송이 다수 진행중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2억원 증액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4 본예산	2025(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7	**위원회 정보화지원 (7041-302)**	1,921	1,921	2,893	972	○ 내역사업인 **'정보화체계구축'**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정보, 온라인 교육, 내부업부관리 등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등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산시스템 H/W는 2010년 구축되어, 시스템 노후화로 인한 처리속도 지연과 장애가 발생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2024년부터 수행하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및 집단 분쟁조정 등 필수적 업무수행을 위한 기능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 예산 9억 7,200만원 증액	
11	**위원회기본경비 (기관운영) (7011-255)**	739	591	581	△10	○ 정무직(위원장, 부위원장) 및 사무처장의 관서업무추진비(240-02)를 삭감하기 위하여 1,000만원 감액	

2. 기타 특이사항(사업명 또는 비목 변경 등)

연번	회계 또는 기금명	목명 또는 세부사업명 (00-000/0000-000)	2024		2025(안)	수정내용	수정이유
			본예산/ 당초	추경/ 수정			
1	**일반회계**	개인정보보호 자율환경조성 (1031-301)	4,264	4,264	3,714	비목 변경	○ 내역사업인 **'개인정보 보호체계 평가'**의 내내역사업인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사업의 사업출연금 9억 6,000만원을 직접 수행하기 위해 비목 변경
2	**일반회계**	개인정보보호 기술개발 지원 보급 (1031-304)	531	531	531	비목 변경	○ 개인정보보호 기술개발지원 보급사업의 사업출연금 5억 3,100만원을 직접 수행하기 위해 비목 변경
3	**일반회계**	개인정보보호 협력체계 구축 (1031-305)	1,461	1,461	2,376	비목 변경	○ 내역사업인 **'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의 내내역사업인 **'국제컨퍼런스 운영'**사업 중 국제 컨퍼런스 운영을 위한 사업출연금 4,000만원을 직접 수행하기 위해 비목 변경
4	**일반회계**	개인정보 사고조사 지원 (2034-302)	-	-	1,628	비목 변경	○ 디지털포렌식 기반의 조사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출연금 16억 2,800만원 중 공간 임차료 감액 분 3,200만원을 제외한 15억 9,600만원을 직접 수행하기 위해 비목 변경

Ⅳ. 부대의견

가.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는 보상금 이·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 국가보훈부는 생계지원금 사업에 적정 지급인원을 반영하고, 보훈급여금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 국가보훈부는 예산 편성 시 추계 정확성을 제고하여 참전명예수당 사업의 이·전용 규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한다.

○ 국가보훈부는 내역사업인 '검진비'의 집행 저조로 인하여 고엽제환자 등록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을 적극적으로 관리한다.

○ 국가보훈부는 '보훈단체운영및선양활동등' 세부사업의 각 내역사업의 성과가 고루 측정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추가적으로 마련하고, 과거 실적보다 높은 성과목표를 설정한다.

○ 국가보훈부는 보훈단체 또는 지역사회와의 이견 조율 여부, 건립부지 타당성, 지방비 확보가능성 등 안정적인 사업추진 가능성을 면밀하게 점검한 후 보조금을 편성·교부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하는 한편,

보조금이 교부된 지자체의 보훈회관의 공정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함으로써 보훈회관 적기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한다.

○ 국가보훈부는 시내버스 이용요금 미보전액 누적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고 이를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한다.

○ 국가보훈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한 높은 수요를 반영하여 지속적인 예산 증액을 위하여 노력하고, 향후 사업 규모 확대 시 간호간병 인력 충원 등 병상 운영 한도 증설을 고려하여 추진하도록 한다.

○ 국가보훈부는 보훈병원 진료비 예산 부족으로 인한 이·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훈병원 진료비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 국가보훈부는 위탁병원 진료비 예산 부족으로 인한 이·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탁병원 진료비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보훈대상자가 한방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위탁병원을 확대하도록 한다.

○ 국가보훈부는 보철용 차량 개조지원 대상자에 대한 홍보 및 안내를 적극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집행률 및 사업효과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 국가보훈부는 보훈대상자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중학교 248,000원, 고등학교 372,000원, 대학교 472,000원, 특수교육 718,000원 수준으로 교육비 지원액을 단계적으로 증액하고 추후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인상하도록 한다.

○ 국가보훈부는 ‘2025 전국 청소년 국외역사 문화교류탐방’ 사업이 광복 80주년과 연관된 주제로 집행하고, 사업 집행 전 국무조정실에 유사·중복되는 사업이 없는지 확인한다.

○ 국가보훈부는 2026회계연도‘보보의 집 유지관리’예산은 국방부 및 행정안전부와 분담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한다.

○ 국가보훈부는 ‘광복80주년기념사업’에 대하여 적절한 성과지표를 설정한다.

○ 국가보훈부는 전담인력 증원과 후손찾기 전문위원 확대를 위해서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재외공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 국가보훈부는 국립5·18묘지 내 쉼터 공간 확장, 묘역 둘레길 휴게시설 조성, 노후화 시설 리모델링 및 묘역 배수 등 시설관리 사업의 신규 추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 국가보훈부는 연천현충원조성사업의 2년간 4:6 비율로 편성한 공사비를 3년간 3:4:3 비율로 변경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한다.

○ 국가보훈부는 청년들의 일 경험 및 국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청년의 다양한 시각을 정책 결정에 반영한다

는 청년인턴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현재 인력이 부족한 독립유공자 묘소 조사 관련 인력으로 업무를 재조정하는 등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업무에 대한 계획을 수립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 국가보훈부는 2030 자문단의 투명한 활동을 전제로 예산을 집행한다.

○ 국가재정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업무추진비 삭감액(1,000만원)은 국가보훈부장관, 차관 및 1급 공무원에 한정하여 감액하도록 한다.

○ 국가보훈부는 88골프장 매각결정 취소를 통해 안정적인 수입을 창출하고 있는 88골프장을 존치하는 방안을 마련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 국가보훈부는 도서·벽지 지역 등에 대한 보훈복지서비스의 민간위탁 전환이 보훈복지의 위축 및 사각지대 확대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예산 배분의 합리성을 재검토하도록 한다.

○ 국가보훈부는 사실상 지급보증의 성격이 있는 민간은행 위탁대부 사고 채권 양수의 수행 방식과 소요 재원 규모에 대한 국회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별도의 지출사업으로 편성하고, 구분 편성 내역을 국회 예산안 심사 시 제출하도록 한다.

○ 국가보훈부는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의 안정적 사업 수행을 위해 자체수입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보

유한 친일 재산 매각에 만전을 기한다.

○ 국가보훈부는 순국지를 QR코드, SNS 등의 수단을 통하여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 국가보훈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보훈수당의 지역 간 격차 문제 및 보훈급여금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소득평가액 포함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 국가보훈부는 각종 보상금 및 전직지원금 등을 계획대로 지급하고, 의료·복지분야와 같은 서비스예산을 확충하며, 보훈정책 방향 변경에 맞추어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 노력한다.

○ 국가보훈부는 성과지표의 달성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각 세부사업별로 적절한 지표를 마련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 국가보훈부는 향후 2개 이상의 실국 내역사업을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통합 관리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의 성격에 맞게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분리한다.

○ 국가보훈부는 각 세입항목의 수납율 추이, 최근 5년간 수납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세입 추계의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 ‘보훈단체 운영 및 선양활동 등’ 사업의 내내역사업인 ‘의학적재활과 관련한 상이군경회의 내내역사업’ 및 ‘국제보훈교류사업’의 ‘문화스포츠등국제교류활성화 내역사업’은 상호간에 보조사업자가 동일하고 사업 내용이 유사하므로 통폐합을 통해 사업 관리 효율성을 개선한다.

○ 국가보훈부는 (가칭) 광복80주년 특별관(제8관)은 독립기념관 내 부지를 확보해서 건립하도록 한다.

○ 국가보훈부는 독립기념관 내 설립되는 (가칭) 광복80주년 특별관(제8관)의 전시 구성내용의 경우 독립기념관의 운영 및 전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 국가보훈부는 (가칭) 광복80주년 특별관(제8관) 명칭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한다.

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 국무조정실과 조세심판원은 소액·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 강화를 위하여 국선심판청구대리인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홍보방안을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 국무조정실과 조세심판원은 기관 홍보 외에 과세처분 불복 절차 전반과 관련 제도 등에 대한 소개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 콘텐츠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보완한다.

○ 국무조정실은 시행기관의 개별 ODA사업 집행능력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기관역량진단 지표를 개선하는 한편, 기관역량진단 결과를 예산과 연계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실시하는 기관역량진단의 실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 국무조정실은 지역 청년센터 지정을 조속히 하고, 청년친화도시와 지역특화 청년사업과의 적절한 연계방안을 마련한다.

○ 국무조정실은 청년친화도시 선정에 있어 지역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한다.

○ 국무조정실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청년DB 취지대로 운영하기 위해 홍보를 통한 모집 외에도 교육 등 청년DB를 등록한 청년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한다.

○ 국무조정실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김포 교통문제 해결을 위하여 2025년도 예산안 편성과정 등에서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 및 서울특별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한다.

○ 국무조정실은 기획재정부와 협력하여 예산 수립과정에서 각 부처 간 사업영역, 역할 분담 원칙을 명확하게 수립하여 유사·중복사업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국무조정실은 기획재정부와 협력하여 서민과 약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세수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재원 집행 보류를 최소화하고, 세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세수추계의 모든 단계에서 국회와 전문기관 등이 참여하는 근본적인 개선안을 마련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 국무조정실은 교육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간의 업무 조정을 통하여 개인정보 보호 취약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 국무조정실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연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미군기지지원단은 동법에 따른 국고보조금 가산을 위해 정부 부처와 경기도의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한다.

○ 국무조정실은 청년정책통합플랫폼 1차 구축사업의 운용실적 및 미비점 등을 검증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26년도에 2차 구축사업을 위한 예산을 반영한다.

○ 국무조정실은 2025년 상반기에 부패예방추진단의 조직 운영 지속여부 및 중복 가능성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 국무조정실은 광복 80년 기념사업을 이념적으로 편향되지 않게 추진하고, 위원회 구성 및 세부 행사의 기획·집행 계획이 확정 되는대로 신속히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 국무조정실과 인구전략기획부설립추진단은 인구전략기획부가 독자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시 관계부처와 협력한다.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은 수시연구사업비가 연례적으로 과다하게 이월되고 있으므로, 수시연구사업비를 연내 집행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은 수시연구사업비 총액을 연내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재조정한다.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기본연구사업비 대비 수시연구사업비가 4.73%에 불과하므로, 수시연구사업 예산 비율을 늘려 정책현안을 적기에 연구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

국노동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총 12개 연구기관)은 정직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정직기간 중 임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KDI국제정책대학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노동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총 13개 연구기관)은 중징계처분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능률성과급 지급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 능률성과급 지급기준을 정비한다.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은 국회의 예산 확정 후 최종실행예산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예산 비목 등을 과도하게 변경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예산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 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예산 변경을 최소화한다.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은 기관운영을 위한 고정지출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비를 일반사업비에서 기관고유사업비로 이관하여 편성한다.

○ 출연연구기관은 안정적 사업수행이 필요한 국가승인통계 관련 예산을 일반사업비에서 기관고유사업비로 이관하여 편성한다.

○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협동연구지원’사업에 편성된 제13차 세계경제학자대회(세계계량경제학회·한국경제학회 주관) 지원 예산에 대하여 국고 지원액이 총사업비의 30% 한도내에서 편성되도록 하고, 국제행사개최계획서 제출 및 타당성 검토 등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절차를 준수한다.

○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협동연구사업 추진시 「협동연구사업 운영규정」을 준수하여 ‘연구기관 기획 협동연구’에 관한 공모를 실시하고, ‘연구회 기획 협동연구’의 과제기획을 직접 수행한다.

○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각 연구기관의 「경영목표 실천계획」이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 이후에 수립·제출된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국회에 예산을 제출하기 이전에 각 연구기관이 「경영목표 실천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연구기관 평가와 관련한 제도개선을 검토한다.

○ 국토연구원은 향후 국토연구원의 정관상 사업에 적합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한다.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연구보고서와 정책연구브리핑을 동시에 발간·공개함으로써 연구성과 홍보의 시의성을 제고한다.

○ 통일연구원은 당초의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북한 인권 연구 네트워크 구축’ 사업으로 변경한다.

○ 통일연구원은 당초의 ‘북한 인권증진 중장기 로드맵 연구’ 사업을 ‘북한 인권증진 이론적 토대 연구’ 사업으로 변경한다.

○ 통일연구원은 기본연구사업 중 ‘통일과 사회통합: 극단주의 정당의 부상과 자유민주주의 방어 방안 연구’는 통일연구원의 연구과제로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독일 통일 이후 사회통합 난관의 원인 분석에 집중하여, ‘독일 통일 이후 구동독지역 사회통합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변경하여 사업을 진행한다.

○ KDI국제정책대학원은 공공외교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미국 존스홉킨스대, 미국 조지워싱턴대, 독일 베를린자유대와 교육협력사업을 추진중인 바, 협력대학에 사회과학으로서의 한국학 연구와 발전에 필요한 강좌가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KDI국제정책대학원은 ‘재정정책 지식교류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나, 외교부가 신흥 중점 분야로 추진하고 있는 공급망·보건·기후변화 등에 대한 주제로 포럼 개최 계획을 마련한다.

○ 한국교육개발원은 서울 청사 매각 지연에 따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운영관리비, 감정평가비 등 부동산 유지 관리 비용으로 매년 9억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지출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여 매각 지연으로 인한 서울 청사 유지비용 문제를 조속히 해결한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품목별 작황 및 가격 예측 등 농업관측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농민들의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식량안보 위기 시나리오와 대응 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국내연구기관들과 협업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 안보 위협 및 대응 전략 연구를 효율적으로 추진한다.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국민의 납세의식과 납세순응을 제고하기 위해 초등학생·고등학생에 대한 조세교육에 더해 청년세대 대상의 조세교육을 기획하여 생애주기별 조세교육을 추진한다.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원 개인에게 지급하는 예산을 외부용역비 및 분담금 비목으로 편성하였으나 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관련 예산을 전문가활용비 등의 비목으로 변경하여 편성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 한국행정연구원은 정부가 재난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 및 회복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사회적 재난의 피해자 등에 대한 면접연구를 실시한다.

○ 한국행정연구원은 연구업무관리규칙에서 연구성과물을 홍보하도록 규정하는 취지에 따라 국정과제 정책만족도 조사결과를 공개한다.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법무 수요조사’결과를 반영한 세부 연구과제를 2025년 상반기 중 연구개발적립금, 수시연구사업비 등을 활용하여 최우선적으로 수행한다.

다.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는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과태료 임의체납액 규모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과징금 수납률을 제고하여 임의체납액 규모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부과를 보다 신중히 결정하고, 행정소송 등으로 인한 과징금 환급이 증가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가산금 임의체납액 규모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책연구 성과점검 점수가 지속 하락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방안을 마련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연구과제 내용 중 비공개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영업비밀과 같이 비공개가 필요한 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공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연구과제를 최대한 공개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2030자문단이 공정거래위원회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 여론의 수렴 및 전달, 청년정책 과제 발굴 및 제안 등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명확한 사업목적에 기반한 다양한 활동계획을 수립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조업과 광업 산업 분야로 한정되어 있는 시장구조 조사 대상을 플랫폼 산업 등의 분야

로 확장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광고 및 홍보 예산을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향후에는 하도급연동지원본부 예산으로 편성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공사와 민간공사의 표준하도급계약서 보급률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정보제공시스템 기능개선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등 관련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도록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적립식 여행 등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에서의 소비자 대상 정보의 통합제공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시스템 구축 완료 전까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시스템 운영을 위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정보 제공 플랫폼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성 제고 방안과 시스템을 통한 정보제공 확충 방안을 마련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책 수립과 추진에 있어 청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청년보좌역의 역할을 재정립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를 포함한 자율규제 추진에 있어 플랫폼 및 입점업체와의 개별면담

을 통한 애로사항 확인, 상호의견 교환 지원 등을 이행하고, 기업들의 자율규제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자율규제 추진에 있어 이해관계자 입장, 참여자 이탈 여부, 진행상황 등에 관한 국회 자료 요구에 협조하는 등 운영상 투명성을 제고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청년인턴에게 기록물 관리 등의 단순업무 보다는 경쟁정책에 관한 자료 수집 지원, 심결에 필요한 기초 사례 수집 지원, 정책사례 수집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실질적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인턴의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일회성 홍보 사업을 지양하고, 기존의 외부위탁 전문교육 외에 공무원 역량 강화 사업을 추가 발굴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속 직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위법적 행위를 보이는 기업에 보다 빠른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학(원)생이 참여하는 모의공정위 경연대회 행사(예산 7,100만원)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므로, 더 많은 팀이 경연대회에 지원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등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위 처분에 대한 신뢰도 향상 및 독립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심의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 및 본사업 지연이 없도록 주의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심의-의결 과정에서 하나의 시스템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온라인 심의정보시스템(심의·의결단계)’과 ‘온라인 사건처리시스템(조사단계)’을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두낫콜) 운영 사업 예산(1억 8,500만원)을 관리용역비(210-15목)로 편성하였는데, 동 사업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국가가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운영비(1억 8,200만원)는 민간위탁사업비(320-02목)로 편성하고, 시스템 운영 관련 라이선스 갱신 비용 등(300만원)은 동 시스템이 국가 자산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자산취득비(430-01목)로 편성하도록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국민 데이터포털 웹사이트 이용률 분석을 통해 웹사이트의 활용성·편리성 등을 확보하여 이에 기반한 대국민 데이터포털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공정트렌드’ 기능을 통해 수집된 기사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언론데이터 제공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제고한다.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분쟁조정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제시한 분쟁조정안이 균형 잡힌 조정안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조정안 제시에 유의한다.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분쟁조정의 신속성 제고와 전문성 향상이라는 상임위원 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도

록 1인의 상임위원이 여러 분야의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현재의 운영 방식을 재검토한다.

○ 한국소비자원은 대규모 피해자가 일시에 접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집단분쟁조정의 경우 분쟁조정시스템의 장애로 인해 접수기간 내 집단분쟁조정에 참가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단분쟁조정처리시스템 증설 사업을 철저히 하고, 사업관리에 유의하여 행정절차 지연을 방지한다.

○ 한국소비자원은 피해소비자에 대한 소송지원(1억원)을 자체 지침인 '소비자소송지원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수행하고 있으므로, 향후 법령에 국가재정을 통한 소송지원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한다.

○ 한국소비자원은 시기·품목별 가격 편차가 크고 업체별 가격이 상이한 결혼 서비스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비자 선택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결혼 서비스 가격조사·정보제공 범위를 철저히 설계한다.

○ 한국소비자원은 모바일 채팅상담 서비스의 운영 실적이 저조한 문제가 있으므로, 홍보 강화·이용자 의견 청취를 통한 시스템 개선 등 모바일 채팅상담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라.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FATF TRAIN 운영비용의 세부 집행내역 및 계획을 제출받아 총액 기준이 아닌 항목별 실집행액에 근거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 조속히 MOU 개정을 추진하여 FATF TRAIN 운영비용의 회원국 간 공동부담 방안을 마련한다.

○ 금융위원회는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의 예상사업손실률 증가로 인해 연도 내 신규 보증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 금융위원회는 기존 협약기관이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공급을 연내 균등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별 월별 한도액을 제시하는 방안의 도입을 검토하고, 취급 금융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한다.

○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예산이 적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살피고, 유보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가입유지자 수 확보를 위한 개선방향을 지속적으로 마련한다.

○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사업의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고려하고, 기여금 지원 확대 적용여부 및 적용시기를 명확히 결정한다.

○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재원 확보 방안 등 연간 보증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

책을 마련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지원정책을 가계부채 정책과 연계하여 총량관리 부분에서 장기계획을 수립해, 저소득·저신용 서민들이 제도권 금융의 혜택을 원활하게 누릴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 금융위원회는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제도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 금융위원회는 2025년 예산안에 반도체생태계펀드, 원전산업성장펀드가 새롭게 조성되므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 펀드가 사업목적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 금융위원회는 산업은행 경유 출자금이 자의적으로 운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매년 회수재원 규모, 회수재원 운용 및 투자 현황, 투자계획 등을 매년 9월말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은 지역활성화투자펀드의 자펀드 결성이 조속히 완료되어 지역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가 시작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하고, 자펀드 결성 및 투자 추이를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한다.

○ 정부는 원전 산업분야에 투자하는 신규 펀드를 조성하는 사업을 원전 분야 사업을 총괄하는 산업통산자원부 소관 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한다.

○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은 원전산업성장펀드의 주목적 투자비율(50%)이 재정 및 공공기관 출자비율(70%)에 비해 낮으므로, 주목적 투자비율을 60%로 상향한다.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높은 부채비율로 인해 당초 계획대로 캠코채 발행을 통한 자체재원 조달이 어려워 결과적으로 정부 재정출자분이 새출발기금의 주된 재원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금융위원회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계획대로 부실채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재원조달의 규모와 방식을 검토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새출발기금의 운영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실적 추이를 보아가며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 금융위원회는 청년인턴들이 제대로 된 업무 경험을 하지 못하고 단순 사무보조 업무만을 수행한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청년인턴 프로그램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제도를 개선하도록 한다.

○ 금융위원회는 2025년 증액된 홍보 목적의 일반용역비를 불법사금융 방지, 새출발기금 성과 제고, 채무자대리

인 선임 활성화 등 민생 분야 홍보에 집중한다.

○ 금융위원회는 회계부정 신고가 확대될 수 있도록 과징금의 10~30%를 포상금으로 제공하는 미국의 제도 등을 검토하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현금공탁 대신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도록 하는 등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법 개정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광진지점 대수선 공사의 사업지연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연내 집행을 위한 면밀한 사업계획을 마련한다.

○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소상공인 위탁보증 관련 일반회계전입금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대환보증 예상 잔여재원 일부를 재원이 부족한 소상공인 위탁보증 사업으로 전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기금 건전성 제고 및 농림수산업자에 대한 안정적인 보증 공급을 위하여 채권 회수실적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등 구상권 관리를 철저히 한다.

○ 금융위원회는 2027년까지 공적자금의 상환을 완료하기 위해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의 전출금 예산(2조 5,000억원)이 증액될 필요와 함께 예수금을 최소화하거나 일반회계 전입금 등 기금 수입의 적극적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예금보험공사는 서울보증보험 경영효율화 등을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하여 상환기금 보유지분을 원활히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한화생명보험 잔여지분 매각과 관련하여 시장 변화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보유주식의 신속한 매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예금보험공사는 상환기금의 청산일이 2027년 12월이므로 KR&C에 대한 대출금 회수 노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 금융위원회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장려금 지급대상을 저소득농어민으로 한정하여 이들의 재산형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장려금리를 제공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관계기관과 검토하도록 한다.

○ 금융위원회는 핀테크지원사업의 자부담 비율을 20%에서 30%로 상향하고, 그에 따른 절감분(1억 8,700만원)은 수혜기업을 확대하는 데에 사용한다.

○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정산지연피해기업 유동성지원 프로그램 지원)사업 수행후 금리 인하로 인한 추가 수

요가 발생하면, 2026년 예산안 편성시 이를 고려한다.

○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은 원전산업성장펀드에 대한 민간출자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 국가재정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업무추진비 삭감액(3,500만원)은 금융위원장, 부위원장 및 1급 공무원에 한정하여 각 20% 이내의 범위에서 감액하도록 한다.

○ 기업구조개선펀드 회수액 167억원을 혁신성장펀드에 산입하여 운영하는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한다.

○ 대환보증 대위변제 사업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출연받은 금액(7,600억원)의 이자수익 600억원을 국고로 환수하는 것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한다.

마.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는 과태료의 실제 수납액을 기준으로 하여 수납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세입예산을 편성한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율을 낮추기 위해 직원 교육 등을 통해 법령 해석에 관한 절차를 강화하여 처분에 관한 국민의 신뢰성을 제고한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신고 보상금 납부 대상 공공기관에 대한 납부 안내 및 독촉 등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액의 상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이를 통하여 세입예산의 증대를 도모한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보상금 상환액의 상환율 제고를 위한 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에 편성된 부패신고 비실명 대리신고 수당 예산을 주요사업비로 편성·집행하고, 각 세부사업에 편성된 비실명 대리신고 관련 예산을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 국가재정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업무추진비 삭감액(1,200만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및 1급 공무원에 한정하여 감액하도록 한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관용차 사용규정을 강화하고, 2025년도 국외 출장보고서를 차년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 구축’ 사업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25개 미동의 심판기관의 이용 동의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끌어내고 통합 제외 5개 기관과 연계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며, 향후 타 기관의 협조 또는 동의를 전제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기관 간 협조와 동의를 완료한 후 사업을 추진한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특정 국가에 대한 연수 프로그램을 큰 비중으로 편성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 검토하는 한편,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수원국의 다양화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특별민원 중점관리’ 내역사업 중 ‘특별민원 상담요원 운영’ 사업의 사업계획 및 운영방안 등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2030세대의 수요에 맞는 특화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심화된 교육과정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일반용역비를 증액하였는데, ‘초등학생 청렴캠프 운영’은 일반용역비 증액 사유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예산 배분의 효율성 및 사업 효과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보상 및 공익신고제도가 국민권익위원회의 필수사업에 해당하나 그동안 신고자 보호조

치 조치 등이 미흡하였으므로 해당 사업의 집행현황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국선대리인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처분 당사자 등에게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에 대한 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심판통합추진’ 중 대국민 홍보비 예산 1억 4,000만원을 ‘청렴권익정책알리기’ 세부사업으로 통합·조정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이관된 과태료 체납액 해소를 위한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징수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불납 결손 추진을 신속히 진행하는 등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향후 CPO(개인정보보호책임자) 협의회의 구체적인 활동계획과 정관, 기탁금 등에 대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세히 보고한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자율환경조성사업에서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상 컨설팅 지원을 지속하되, '자율규제 기업 지정을 위한 중소기업 대상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 컨설팅 사업(가칭)'을 신규 개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스마트 서비스 지원사업'의 '사전진단 컨설팅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실현'사업의 성과제고를 위해서는 아동·청소년과의 접촉 기회를 늘려야 하므로,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인성교육진흥사업'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CBPR 인증 활성화를 위해 심사에 필요한 인증 수수료(1,200만원)를 면제하고 이를 예산에서 지원하였으나, 현재 관련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인증심사 신규 신청 접수를 중단하고 갱신 심사만을 진

행하고 있으므로, 인증 수수료를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징수하되 신규 인증을 조속히 재개하고 인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한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가명처리 적정성 검토 및 반출심사 소요비용 지원 대상을 중소·영세기업 등 지원이 필요한 기관으로 한정하되, 적정성 검토 및 반출심사 외에 전문가 조언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가명정보 제도와 정부 지원사업에 관한 인식부족으로 산업현장에서의 활용도가 떨어졌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 활용도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서울 가명처리 지원센터에 인센티브 체계를 활용하여 사업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의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전반에 대해서도 사업 효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안심구역 사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데이터 안심구역 사업과 유사한 측면이 크므로, 이를 조정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추진하거나 이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디지털포렌식 관련 운영 지침 및 예규를 마련한다.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사고조사 지원사업에 대해 ‘디지털증거분석 사례 비율’ 등 적절한 성과지표를 설정한다.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실적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분쟁 조정사건이 아닌 다른 기관 소관 사항에 해당될 경우 사건을 이관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청년인턴 대부분이 제대로된 업무를 경험하지 못하고 단순 사무보조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새로운 홍보 기획 없이 관례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홍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직접 사업을 늘릴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마이데이터 중계전문기관 운영 지원을 위한 예산은 민간 자율과금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연차적으로 지원 예산을 축소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사고조사지원을 위한 디지털포렌식 기반의 조사환경은 정부청사 내에 구축하도록 한다.

【 첨부 】

2025년도 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

2024.11

【 국가보훈부 소관 】

1. 보훈분야 예산 확보 노력 필요 : 적극적인 신규사업 발굴 및 예산 확보 노력 필요

가. 보훈체계 현황[6)]

□ 우리나라 보훈 정책은 1950년 「군사원호법」과 「경찰원호법」 제정 이후, 1961년 6·25전쟁 전몰군경유족 및 전상군경 지원목적의 군사원호청이 발족됨으로써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음. 우리나라의 보훈 정책은 독립, 6·25전쟁, 베트남전쟁, 민주화 운동 등 근현대사에 굵직한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다양한 분야가 보훈 영역에 포함되어온 특징을 가지고 있음.[7)]

□ 상이 및 전사 군경에 대한 생계지원에서 출발했던 보훈 정책은 유공자들에 대한 자활시책 등의 물질적인 지원과 정신적인 예우를 실현하려는 방향으로 보훈정책이 변화하고 있음.

○ 1985년 시혜적 원호에서 희생·공헌에 대한 예우 업무로 전환(원호처 - 국가보훈처로 기관명칭이 변경되었으며, 1998년 제대군인지원 업무는 군인보험 지급, 일선장병 위문에서 취업·생활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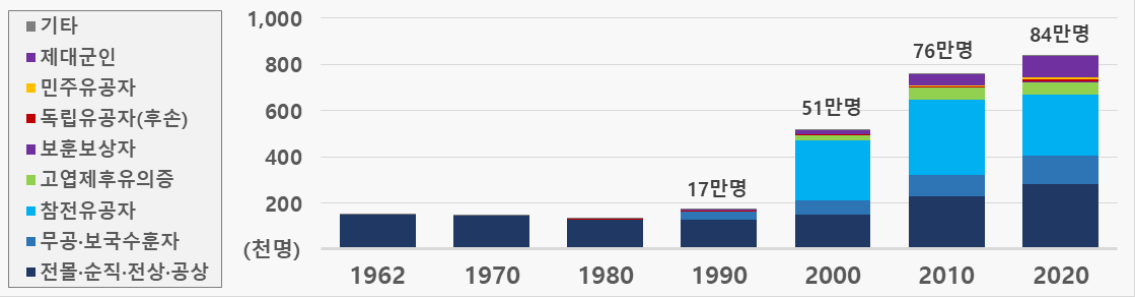
6) 홍익표, '보훈보상체계 개선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21-01 및 제4차 보훈발전기본계획에서 발췌·정리

7) - 60년대: 독립유공자, 4.19혁명 관련자
- 80년대: 순직.공상공무원, 무공.보국수훈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 90년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군인.제대군인
- 2000년대: 5·18 민주화 운동 관련자, 특수임무수행자

국립묘지 안장, 전직지원금까지 확대됨.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다양한 보훈대상자가 새로이 진입됨.

- 1993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1994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1998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2002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005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012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각각 제정됨.

《 보훈대상자 구성 및 규모 추이 》



자료: 국가보훈부

○ 2005년에는 「국가보훈기본법」을 제정하여,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법제화했으며,[8] 이를 통해 보훈 정책의 추진방향, 추진과제 및 방법, 보훈관련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등 필요한 사항들을 수립하도록 함.[9]

8) **「국가보훈기본법」 제8조(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11조에 따른 국가보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9) 현재는 제5차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2023-2027)

○ 2012년에는 50여 년 간 이어져온 보훈보상체계가 대폭 개편되었음.

-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국가유공자와 단순히 보상이 필요한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을 시작함.[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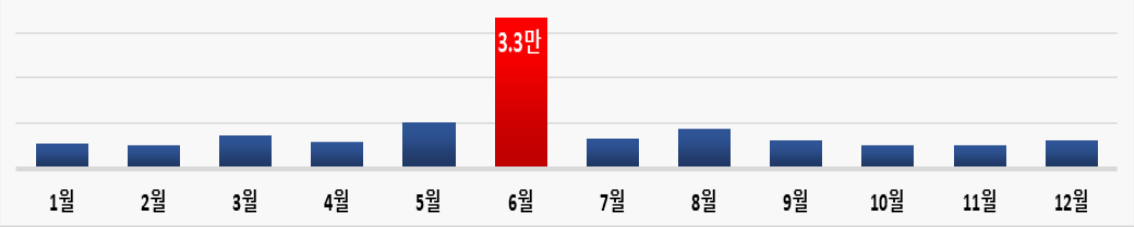
□ 그러나, 아직 보훈이 국민 일상 속 문화로 정착되지 못한 실정이며, 보훈대상자의 만족도와 자긍심은 아직 저조함.

○ 국민은 국가에 헌신한 분들을 존경하는 문화가 아직 부족하다고 인식함.

- 2022년 실시한 국민인식조사에서 '보훈대상자 존경 문화가 잘 정착되었다'는 응답은 31.9%로, '그렇지 않다' 42.1%보다 낮게 나타남.

○ 보훈이 일상 속 문화보다는 특정 시기의 이벤트로 인식되는 경향이 존재함.

《 SNS 등 소셜 빅데이터 분석 : 월별 "보훈" 키워드 언급량('17.~'21. 5년간) 》



자료: 국가보훈부

○ 지원 확대에도 불구, 정책 만족도는 낮은 수준에 정체된 실정이며,

10) 이는 보훈의 정체성 문제, 보훈과 복지의 경계 문제, 예우와 보상 분류 문제, 보훈 대상의 문제 등(한국법제연구원, 2009)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이에 대한 개선 및 보완책으로 변경을 하게 되었음

보훈대상자가 자신의 희생에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인식하고 보훈대상자로서의 자긍심이 저하된다고 답하고 있음.

- 보훈정책 만족도 : ('18.) 18% → ('21.) 18.2% / 3년간 0.2%p 상승
- 보훈대상자로서의 자긍심 : ('18.) 63% → ('21.) 51.7% / 3년간 △11.3%p 하락

* 자긍심을 못 느끼는 이유 :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해서" 1위(64.9%)

나. 보훈예산 현황

□ 보훈의 영역이 넓어지고, 다양한 보훈정책이 등장함에 따라, 보훈대상과 보훈예산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임.

○ 보훈대상은 1962년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4·19혁명유공자 등 15만명에 대한 지원을 시작으로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제대군인 지원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2013년에는 80만명, 2024년 83만명으로 3.75%가 증가했음.

□ 보훈예산 역시 해마다 증가하여, 2018년 5조원, 2023년 6조원을 각각 돌파하였음.

○ 국가보훈부 소관 2025년도 재정규모를 살펴보면, 총지출 규모는

6조 3,948억원으로 2024년도 대비 3.3% 증가하였는 바, 정부 예산안 677.4조원 중 0.94%를 차지하고 있음.

<우리나라 보훈예산과 정부예산에 대한 비율>

(단위: 억원, %)

구분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	2020년	2025년 예산안
정부예산(A)	58,040	226,894	864,740	2,012,835	3,014,172	6,774,374
보훈예산(B)	625	3,742	12,464	34,325	53,186	63,948
B/A	1.08	1.65	1.44	1.71	1.76	0.94

자료: 국가보훈부

○ 취업지원 현황을 보더라도 지원의 범위는 매년 넓어지고 있는 추세임. 2011년 약 10만 4천 명의 취업지원자(본인, 유가족)는 2023년 11만 6천 명까지 약 10%가 늘었음.

<보훈대상자 취업 지원 현황>

(단위: 명)

구분		2011	2013	2015	2017	2019	2021	2023
취업지원	취업지원	104,392	106,677	114,464	115,697	118,215	119,666	116,554
	본인	8,976	9,921	11,337	12,639	13,749	14,686	14,714
	유가족	95,416	96,756	103,127	103,058	104,466	104,980	101,840

자료: 국가보훈부

□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의 보훈예산의 정부예산 점유비율은 80년대 초 약 1.09%를 시작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에는 1.76%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주요 선진국의 정부예산 점유비율(미국 4.6%, 호주 1.2%, 캐나다

1.4%)과 비교해 보았을 때 그 규모가 많이 떨어지는 실정임.

□ 또한, 보훈예산 중 보상금 예산의 비율은 80.5%에 이르고 있음.

<보상금 예산규모>

구분	보훈예산	보훈급여금	구성비율(%)
1990	3,742억원	3,195억원	85.4
2000	1조2,464억원	1조284억원	82.5
2010	3조4,325억원	2조6,449억원	77.1
2020	5조5,078억원	4조3,715억원	79.4
2025(안)	6조3,438억원	5조1,093억원	80.5

자료: 국가보훈부

<보상금 지급현황>

(인원:명, 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보상금	191,866	3,059,336	192,964	3,197,518	190,606	3,325,248
간호수당	2,620	55,479	2,503	56,610	2,357	56,243
생활조정수당	9,097	29,798	16,473	42,027	21,365	55,899
6.25자녀수당	27,546	288,573	27,398	299,431	27,952	328,809
고엽제수당	37,273	305,634	35,115	298,384	34,614	310,694
무공영예수당	12,193	59,084	10,668	52,957	10,134	55,163
참전명예수당	162,637	664,623	144,756	608,794	138,010	646,292
4.19혁명공로수당	277	1,166	276	1,196	275	1,323
사망일시금	6,818	8,304	6,818	8,304	7,171	8,748
재해보상금	173	14,802	8	78	8	178

자료: 국가보훈부

다. 검토의견 : 적극적인 신규사업 발굴 및 예산 확보 노력 필요

2025년 예산안은 '보훈보상금'을 제외한 모든 단위사업 예산이 삭감되었고, 신규 세부사업은 사실상 없음. 또한, 정부예산 대비 보훈예산 비율은 최근 계속 하락추세이고, 보상금을 제외한 다른 분야 예산은 아직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

향후 국가보훈부는 각종 보상금 및 전직지원금 등을 계획대로 지급하고, 의료·복지분야와 같은 서비스예산을 확충하며, 보훈정책 방향 변경에 맞추어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① 2025년 예산안 : '보훈보상금'을 제외한 모든 단위사업 예산이 삭감

□ 2025년도 예산안을 프로그램사업과 단위사업 단위로 각각 살펴보면, 프로그램사업 기준으로는 8개 중 '보훈심사및보상'과 '보훈예우및국립묘지' 2개 사업을 제외한 6개 사업 예산이 삭감되었고, 단위사업 기준으로는 26개 중 '보훈보상금'과 '국립묘지조성및관리' 2개 사업을 제외한 24개의 단위사업 예산이 삭감됨. 그러나, 표면적으로 증액된 '보훈예우및국립묘지' 프로그램사업 내에 '국립묘지조성및관리' 단위사업은 국립현충원이 2024년 7월 국가보훈부로 이관됨에 따른 예산을 제외하고 비교하면 전년에 비해 감액되었음.

□ 국가보훈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6조 4,057억원 대비 757억원(1.2%) 증가한 6조 4,814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보훈보상금' 예산은 보상금 5% 증액을 위해 1,125억 9,900만원이 증액되었음. 단위사업 단위로 보면, 보훈보상금과 국립서울현충원(113억 3,300만원) 등 2개 사업에 1,239억 3,200만원이 증액되었고, 나머지 단위사업은 482억원 감액됨.

< 2025년도 주요사업비 프로그램별 총괄표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증감률 (B-A)/A
□ 사업비	6,053,416	6,132,178	78,762	1.3
○ 보훈심사및보상	5,025,545	5,117,384	91,839	1.8
○ 보훈단체지원	38,870	36,281	△2,589	△6.7
○ 보훈의료복지	676,108	671,765	△4,343	△0.6
○ 생활안정지원	29,002	28,952	△50	△0.2
○ 보훈문화	98,563	97,332	△1,231	△1.2
○ 보훈예우및국립묘지	106,389	125,773	19,384	18.2
○ 제대군인지원	59,188	35,460	△23,728	△40.1
○ 보훈행정	19,751	19,231	△520	△2.6

자료: 국가보훈부

< 2025년도 단위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증감률 (B-A)/A
○ 보훈보상금	3,468,124	3,580,723	112,599	3.2
○ 수당	1,536,117	1,518,748	△17,369	△1.1
○ 수시보상금	9,982	9,971	△11	△0.1
○ 보훈심사	1,620	1,636	16	1.0
○ 등록심사	9,702	6,306	△3,396	△35.0
○ 보훈단체지원	38,870	36,281	△2,589	△6.7
○ 교통시설이용지원	11,329	10,729	△600	△5.3
○ 의료지원	656,737	649,800	△6,937	△1.1
○ 의료환경개선	8,042	11,236	3,194	39.7
○ 교육지원	26,237	26,134	△103	△0.4
○ 취업지원	2,765	2,818	53	1.9
○ 독립기념관	28,176	27,479	△697	△2.5
○ 보훈문화진흥	25,261	20,858	△4,403	△17.4
○ 현충시설	37,307	31,711	△5,596	△15.0
○ 기념사업	7,819	17,284	9,465	121.1
○ 공훈발굴 및 국가유공자등 예우	11,967	10,957	△1,010	△8.4
○ 국립묘지 조성 및 관리	94,422	114,816	20,394	21.6
○ 제대군인생활안정	25,748	25,292	△456	△1.8
○ 참전·제대군인 명예선양	33,440	10,168	△23,272	△69.6
○ 청관사임차 및 시설개선	5,504	5,236	△268	△4.9
○ 일반행정	5,412	5,107	△305	△5.6
○ 보훈서비스지원	4,663	4,456	△207	△4.4
○ 정보화	4,172	4,432	260	6.2

자료: 국가보훈부

② 신규사업 발굴 필요

□ 2025년도 예산안 중 신규 세부사업은 ‘광복80주년 기념사업’과 ‘국립서울현충원’ 등 2개 사업임. 그러나,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은 10년마다 편성되는 사업이며, ‘국립서울현충원’ 사업은 국립현충원이 2024년 7월 국가보훈부로 이관됨에 따라 편성된 사업임을 고려할 때, 사실상 신규 세부사업은 없다고도 볼 수 있음. 2025년도 예산안은 국가보훈부로 승격한 후 사실상 첫 번째로 편성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쉬운 결과가 아닐 수 없음.

○ 정전 70주년 및 광복 80주년 등 주기적인 기념사업을 제외하고 2016년 예산부터 2025년 예산안까지 총 10년간 신규사업을 살펴보면, 단위사업과 세부사업 단위에서는 신규사업이 존재하지 않음. 이를 내역사업 단위로 확장해서 살펴보면, 내역사업조차 신규사업은 총 5개에 불과함.

<최근 10년간 신규 내역사업 목록>

연도	내역사업명	주요내용
2016	순직경찰 소방공무원 추모행사 지원	경찰 및 소방공무원으로서 공무수행 중 희생한 분들을 기리는 각종 추모제 행사에 대하여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경찰 및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풍토 조성
2018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생계곤란 독립유공자 (손)자녀 지원으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의 영예로운 생활보장

연도	내역사업명	주요내용
2018	국내 산재묘소 유지·관리 지원	국립묘지 외 전국에 산재한 독립유공자의 묘소를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독립유공자 사후 예우 강화
2022	유엔군 참전 및 정전 70주년 기념사업	기념사업 추진단 운영 및 기념사업 기획·대국민 홍보
2023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초청 위로행사	호국보훈의 달 및 광복절을 맞아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초청·격려

자료: 국가보훈부

③ 적극적인 신규사업 발굴 및 예산 확보 노력 필요

□ 앞서 살펴보았듯 정부예산 대비 보훈예산 비율은 2020년 1.76%를 정점으로 계속 하락추세에 놓여 있으며, 미국 4.6%, 캐나다 1.4% 등 주요 선진국의 비율보다 현저히 낮음.

□ 또한, 보상금을 제외한 다른 분야 예산은 아직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

○ 후술한 개별 사업의 검토 내용과 같이, 제대군인 전직지원금과 의료환경개선 관련 사업 등은 실제 소요예산보다 훨씬 적은 금액만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며, 부족한 예산은 보상금 등에서 이·전용 등을 통해 돌려막기 형식으로 충당해오고 있음.

□ 보훈보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의 예산 감액 및 신규사업 부재에 대해 국가보훈부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상과 예우 강화를 위해 재정당국과 여러 차례 예산안 협의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나, 정부의 건전재정기조 확립에 따라 예산 증액 및 신규 사업 반영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히고 있음.

□ 국가보훈부는 ‘국가보훈 기본계획’과 ‘2024년 국가보훈발전 과제별 실천계획’에서 밝힌 바와 같이, 부 승격에 맞추어 각종 보상금 및 전직지원금 등을 계획대로 지급하고, 의료·복지분야와 같은 서비스예산을 확충하며, 보훈정책 방향 변경에 맞추어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2.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 성과달성률 제고 필요

가. 사업 개요

□ 2007년 1월 「국가재정법」의 시행으로 각 중앙관서의 장은 기관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인 성과계획서와 계획 대비 실적을 측정하여 예산편성 등 재정운용에 활용하기 위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음.

각 중앙관서는 2010회계연도부터 인건비·기본경비가 반영된 비재정사업을 제외하고 주요 사업비 예산이 반영된 재정사업에 대해서 성과보고서를 작성해 오고 있으며, 기획재정부는 2022회계연도부터 재정사업의 거시적·전략적 성과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성과계획서 작성단위를 사업담당 실무자가 사업의 실적 및 집행을 관리하는 단위인 '단위사업'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 재정지출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단위인 '프로그램' 단위로 성과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음.

모든 중앙관서는 프로그램 목표가 추구하는 목적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목표에 대해 성과지표를 설정하여야 하며, 프로그램 목표의 성과지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궁극적 성과에 대한 정량·결과 지표로 설정하여야 함.

나. 검토의견

국가보훈부의 프로그램 목표의 성과지표 달성률을 살펴보면, 2023년도를 포함하여 최근 6년간 평균 달성률이 전체 부처평균보다 저조하므로, 성과지표의 달성률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국가보훈부에서 작성한 ‘2025년도 국가보훈부 성과계획서’에 따르면 기관의 임무를 ‘국가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여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한다’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임무-비전-전략목표(5개)-프로그램목표(9개)-성과지표(12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 국가보훈부 성과관리체계도 >

임무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여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한다.**	
비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을 실현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를 만든다.**	
전략목표 및 프로그램 목 표	**전략목표 Ⅰ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체계 정립으로 공정한 보훈을 실현한다.**	
		프로그램목표 1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보상을 실시한다.
		프로그램목표 2 효율적인 행정환경을 조성하여 안정된 보상기반을 구축한다.
	전략목표 Ⅱ 의료·복지서비스 강화로 보훈가족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한다.	
		프로그램목표 1 국가유공자의 의료.복지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킨다.

		프로그램목표 2 88골프장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국가유공자 등 복지재원 마련에 기여한다.
		프로그램목표 3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 기반을 향상시킨다.
	전략목표 Ⅲ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존중하고 예우한다.	
		프로그램목표 1 국립묘지 안장 등 사망 시 예우를 확대하고, 독립(국가)유공자 발굴 등 독립운동 유산의 보존·활용을 강화한다.
	전략목표 Ⅳ 제대군인과 참전군인의 명예롭고 안정적인 삶을 지원한다.	
		프로그램목표 1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참전군인의 명예를 선양한다.
	전략목표 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신 분을 기억하는 보훈문화를 조성한다.	
		프로그램목표 1 국민참여와 공감을 기반으로 하는 보훈문화 활동을 활성화한다.
		프로그램목표 2 단체별 특성에 맞는 선양활동과 민주적이고 투명한 단체운영을 통해 국민에게 존경받고 신뢰받는 보훈단체상을 정립한다.

자료: 국가보훈부

□ 한편 국가보훈부에서 위 성과계획서에 따른 2023년도 재정활동 성과를 측정하여 작성한 ‘2023년도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5개 전략목표의 달성도는 프로그램목표의 경우 75%임.

○ 58개 중앙관서가 재정사업에 대하여 작성한 2023회계연도 성과보고서를 살펴보면, 프로그램 목표의 성과지표 총 1,068개 중 819개(76.7%)가 달성되고 249개(23.3%)가 미달성되었는데, 국가보훈부는 전체 평균인 76.7%보다 낮은 75%를 기록함.

□ 2018년부터 2023년까지 평균 달성률 또한 73.1%로, 같은 기간 전체 부처평균인 75.6%보다 낮은 바, 국가보훈부는 성과지표의 달성률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프로그램 목표 달성 현황>

(단위: 개, %)

	전략 목표	프로그램 목표	성과 지표(A)	성과지표 목표달성 여부			
				달성(B)	미달성	달성률 (B/A)	전체부처평균
2023	5	9	20	15	5	75	76.9
2022	5	9	20	18	2	90	77.4
2021	5	9	12	10	2	83.3	76.6
2020	5	9	12	9	3	75	68.9
2019	5	9	13	7	6	53.8	76.4
2018	5	8	13	8	5	61.5	77.1
평균	5	9	15.4	11.8	3.6	73.10	75.6

자료: 국가보훈부

○ 최근 5년간 실국별로 개별 성과지표의 달성률을 살펴보면, 보상정책국(97.68%), 보훈문화정책관(98.98%), 제대군인국(99.95%)은 100%에 미달함.

<성과지표별·실국별 목표 달성 현황>

해당 실국	성과지표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균
보상 정책국	보훈대상자 요건심사해당률(%)	93.9					97.68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소요기간 단축(일)		106.7	102.0			
	신체검사 만족도(점)				100.1	100.2	
	등록관련 행정소송 패소율 (%)				100.0	84.3	
보훈단체 협력관	보훈단체 지원에 대한 국민호응도(점)	100.3	100.5	102.1			117.95
	보훈단체선양활동 언론보도실적(회)				152.8	117.4	
	지방보훈회관 이용자 만족도(점)				100.1	100.2	
	보훈단체선양활동 참가자수(명)				100.2	170.8	
복지 증진국	보훈병원 의료서비스 만족도(점)	94.7					101.84
	재가복지서비스 만족도(점)	100.1	101.9	101.2			
	보훈의료서비스 수혜율(%)		98.4	100.8	100.0	101.5	
	보훈복지서비스 만족도 (점)				100.2	99.9	
	교육지원 만족도(점)	99.3					
	대부지원 만족도(점)	93.0	105.6	106.3	103.1	101.6	
	취업지원 만족도(점)	105.1	103.4	101.1			
	국가유공자 취업목표 달성율(%)				90.0		
	신규취업자 고용유지율(%)					113.0	
	88CC고객만족도(점)	99.9	97.5	98.3			
	88골프장 내장객수(명)				104.9	98.9	
	자기자본 이익률(%)				110.6	85.1	
	이동보훈팀 지원 실적(건)				102.5	141.5	

해당 실국	성과지표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균
보훈문화 정책관	보훈선양 정책 인지도 조사(점)	100.0					98.98
	보훈선양 정책 공감도(점)		100.0	0.0			
	보훈정신계승 연수·체험활동 참가인원(천명)				100.6	180.7	
	보훈정신계승 연수·체험활동 참가자 추천도(점)				101.0	100.0	
	보훈문화활동 참여의향도(점)				107.4	100.0	
보훈예우 정책관	독립유공자 포상인원(명)	107.8	117.0	109.3	99.7		104.63
	국가유공자 예우에 대한 국민평가(점)				102.5	101.2	
	국립묘지 방문자 수(천명)					103.5	
제대 군인국	행사 참여자 한국인식개선도(점)	100.0					99.94
	제대군인 전직지원서비스 및 고용 만족도(점)	100.3					
	정부 주관 참전기념행사 참여자 만족도(점)		100.0	101.8			
	제대군인 전직지원서비스 만족도(점)		96.5	100.0			
	제대군인 취·창업률(%)				100.3	100.0	
	참전군인에 대한 존경도(점)				100.1	99.8	
정책 기획관	정보화사용자 만족도(점)	97.4	101.3	107.4			101.95
	통합보훈 정보시스템 개선요청 반영률(%)				103.0	100.8	

자료: 국가보훈부

3. 주요사업비 구조변경 필요 : 보훈단체운영및선양활동 등, 국제보훈교류협력사업 등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보훈단체운영및선양활동등(1238-315)’ 사업은 보훈단체에 인건비 및 복지회관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보훈단체 수익사업의 관리·감독을 수행하며 보훈단체의 각종 선양활동을 지원하는 보훈단체협력관 소관 사업으로,[11] 2025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8억 3,900만원(2.4%) 감액된 342억 8,100만원이 편성됨.

< 2025년도 보훈단체 운영 및 선양활동등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 감 (B-A)	(B-A)/A
보훈단체 운영 및 선양활동 등	34,718	35,120	34,281	△839	△2.4

자료: 국가보훈부

□ ‘국제보훈교류협력사업(4161-395)’은 유엔참전용사 재방한 초청을 비롯한 참전국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문화·스포츠 등 국제교류를 활성화 하려는 기획조정실 소관 사업으로,[12] 2025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8억 8,300만원(10.0%) 감액된 79억 9,100만원이 편성됨.

11) 세부사업: 보훈단체 운영 및 선양활동 등(1238-315)
12) 세부사업: 국제보훈교류협력사업(4161-395)

○ 동 사업은 ‘제대군인지원’ 프로그램(4100) 내의 ‘참전·제대군인명예선양’ 단위사업(4161)에 속한 세부사업이나, 8개의 내역사업 중 제대군인군 소관 사업은 1개에 불과함. 나머지 7개의 내역사업 중 6개는 기획조정실 소관이며, “문화스포츠등국제교류활성화’ 내역사업은 복지증진국 소관임.

< 2025년도 국제보훈교류협력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소관부서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 감 (B-A)	(B-A)/A
국제보훈 교류협력사업	기획조정실	9,135	8,874	7,991	△883	△10.0
유엔참전용사 등 재방한	기획조정실	3,174	2,302	2,303	-	-
현지참전 기념사업	기획조정실	1,010	1,382	1,121		
유엔참전용사 명예선양	기획조정실	1,146	1,183	963		
유엔참전국 후손사업	기획조정실	2,380	2,673	2,387		
참전국 교류협력강화	기획조정실	312	714	714	-	-
공무직등 인건비	기획조정실	60.4	64	66		
유엔참전 국내기념행사	제대군인국	208	207	187		
문화스포츠등 국제교류활성화	복지증진국	271	350	350	-	-

자료: 국가보훈부

나. 검토의견

‘보훈단체 운영 및 선양활동 등’ 사업의 ‘보훈단체선양활동등’의 내내역사업인 의학적재활과 관련한 상이군경회의 내내역사업 및 ‘국제보훈교류사업’의 ‘문화스포츠등국제교류활성화’ 내역사업은 상호간에 보조사업자가 동일하고 사업 내용이 유사하므로 통폐합을 통해 사업 관리 효율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1) 국고보조금 연장평가를 반영한 유사사업 통합 필요

□ 위의 두 세부사업은 민간경상보조(320-021)[13] 예산을 포함하고 있는데, 2025년 민간경상보조 예산안 규모는 ‘보훈단체 운영 및 선양활동등’ 사업에 342억 2,700만원, ‘국제보훈교류협력사업’에 4억 4,900만원임.

○ ‘보훈단체 운영 및 선양활동등’ 사업은 2024년 예산에 비해 8억 4,100만원 감소하였고, ‘국제보훈교류협력사업’은 2024년과 동일함.

< 각 세부사업별 민간경상보조 예산안 편성 현황 >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소관 실·국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	증감액
보훈단체 운영 및 선양활동 등	보훈단체운영	보훈단체협력관	26,002	26,228	226
	보훈단체선양활동등	보훈단체협력관	5,931	5,031	△900
	복지회관 등 운영	보훈단체협력관 복지증진국	3,135	2,968	△167
	소계		35,068	34,227	△841

13)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등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소관 실·국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	증감액
국제보훈 교류사업	유엔참전용사 등 재방한	기획조정실	-	-	-
	현지참전 기념사업		-	-	-
	유엔참전국 후손사업		81	81	-
	참전국 교류협력강화		290	290	-
	유엔참전용사 명예선양		60	60	-
	공무직등 인건비		-	-	-
	유엔참전 국내기념행사	제대군인국	18	18	-
	문화스포츠등 국제교류활성화	복지증진국	-	-	-
	소계		449	449	-

자료: 국가보훈부

□ ‘보훈단체 운영 및 선양활동 등’ 사업의 ‘보훈단체선양활동등’의 내내역사업인 의학적재활과 관련한 상이군경회의 내내역사업 및 ‘국제보훈교류사업’의 ‘문화스포츠등국제교류활성화’ 내역사업은 2023년까지는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편성되었으나, 2024년부터는 민간위탁사업으로 편성되기 시작함.

이러한 보조금 예산의 비목전환은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2023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일부 내역사업은 정부가 시행주체로서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임.[14)15)]

□ 그런데, 동 평가에서는 민간위탁사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은 각각의 내역사업[16]에 대해, 상호간에 보조사업자가 동일하고 사업 내용이 유사하므로 통폐합을 통해 사업 관리 효율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하였음.[17]

< 2023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중 사업 통폐합 필요성 지적 >

·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문제점(376p) - 보훈단체선양활동등 내역사업 중 의학적 재활과 관련된 사업은 국제보훈교류사업의 문화스포츠등 국제교류활성화 내역사업과 보조사업자가 동일하고 사업의 내용이 유사함 · 개선사항(377p) - 보훈단체선양활동등 내역사업 중 의학적재활과 관련한 상이군경회의 내내역 사업은 국제보훈교류사업의 문화스포츠등 국제교류활성화 내역사업과 통합하여 운영하고 민간위탁으로 비목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함

자료: 2023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보고서 중 발췌

14) 동 평가에서 '보훈단체 운영 및 선양활동 등' 사업의 '보훈단체선양활동등' 내역사업 중 의학적재활과 관련한 상이군경회의 내내역 사업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제44조 제1항에 의하여 국가보훈처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사업이며「국가유공자법」제44조 제2항에 따라「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가 대신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바, 보조금 비목을 민간위탁 비목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2023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 386p)

15) 같은 평가에서 '국제보훈교류사업'의 '문화스포츠등국제교류활성화' 내역사업도「국가유공자법」제44조 제1항에 의하여 국가보훈처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사업이며 동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가 대신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바, 보조금 비목을 민간위탁 비목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함께 제기되었음.(2023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 p.375)

16) '보훈단체 운영 및 선양활동 등' 사업의 '보훈단체선양활동등' 내역사업 중 의학적재활과 관련한 상이군경회의 내내역 사업 및 '국제보훈교류사업'의 '문화스포츠등국제교류활성화' 내역사업

17) 2023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보고서(p.376, p.377, p.381, p.386)

<통폐합 필요 지적 사업 비교>

세부사업	내역사업	주요 사업내용	수행주체	사업 수혜자	비고
보훈단체 운영 및 선양활동 등	보훈단체선양활동 중 의학적 재활과 관련된 사업	국내·외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	상이군경회	상이군경 등	민간위탁 사업 전환
국제보훈 교류사업	문화스포츠등 국제교류활성화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선수단의 세계상이군인체육대회 (인빅터스 게임, 워리어 게임) 출전 경비 지원	상이군경회	상이군경 등	민간위탁 사업 전환

자료: 국가보훈부

□ 기획재정부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각 사업의 통폐합 필요성을 제기한 것은 사업수행주체와 내용, 수혜자 등이 유사한 사업을 별개의 세부사업에서 진행함에 따른 중복 소지를 해소하고 재정 지출의 비효율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

○ 특히, 보조사업에서 민간위탁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입찰 발주 및 위탁계약, 수탁사업 구분계리, 위탁대상업무 편람작성 등 민간위탁사업비 집행·관리 절차[18]를 이행해야 함을 고려할 때, 별개 사업에서 각각 수행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점을 감안한 개선 요구로 볼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부 2025년 예산안은 2024년과 마찬가지로 사업구조 개편 없이 종전과 같이 각각의 세부사업에 해

18) 2023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p.198~p.200, 민간위탁사업비 비목별 지침

당 내역사업들을 별도로 편성하였는바,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 통합방안 및 적정 예산규모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주요사업비 구조변경 필요 : 국제보훈교류협력사업 등

국가보훈부는 국제보훈교류사업 뿐만 아니라 많은 사업들이 「국가재정법」에 따른 프로그램 예산편성 체계를 따르지 않고 있는 바, 향후 2개 이상의 실국 내역사업을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통합 관리하는 것을 지양하고 사업의 성격에 맞게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음

□ 「국가재정법」 제21조[19]는 세출예산을 중앙관서별로 구분한 후 그 내용을 기능별, 성질별 또는 기관별로 장 · 관 · 항으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음.

세출예산을 구분하는 이유는 1개의 프로그램에 1개의 '실' 또는 '국'이 포함되어 예산편성 및 집행의 책임성과 성과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임.

그러나 국가보훈부의 예산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위의 국제보훈교류사업 뿐만 아니라 많은 사업들이 「국가재정법」에 따른 프로그

19) **「국가재정법」 제21조(세입세출예산의 구분)** ①세입세출예산은 필요한 때에는 계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②세입세출예산은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의 소관별로 구분한 후 소관 내에서 일반회계·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③세입예산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성질별로 관·항으로 구분하고, 세출예산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기능별·성질별 또는 기관별로 장·관·항으로 구분한다.
④예산의 구체적인 분류기준 및 세항과 각 경비의 성질에 따른 목의 구분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램[20] 예산편성 체계를 따르지 않고 있음.

□ 국가보훈부의 2015년 예산의 경우 38개의 단위사업, 102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으나, 2025년 예산안의 경우 32개의 단위사업, 81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등 그동안 단위사업과 세부사업을 많이 통폐합하였음. 그러나 통폐합된 단위/세부사업의 예산안은 다른 세부/내역사업들이 추가됨으로 인해 증가된 금액으로 표시되어 해당 세부사업의 예산규모가 왜곡되어 전달되는 문제가 있음.

국가보훈부는 신규사업을 내역사업 또는 내내역사업으로 편성하는 경우가 많은데,[21] 이 경우에는 그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을 알기 어렵게 됨.

□ 또한, 각 세부사업으로 운영되던 사업들이 통·폐합되면서 각 사업들의 과거 예산투입규모, 결산내역, 사업추진 성과 등 사업이력의 추적이 어렵게 되고, 각 사업들의 사업목표가 다르므로 성과관리를 위한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의 설정도 어렵게 되는 문제가 있음.

---

20) 프로그램 예산편성 체계: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동일한 정책목표를 지향하는 사업들을 하나의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하는 제도(국가재정법에 따라 도입)

21) 2025년도 예산안에도 '현충시설건립세부사업'내에 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 건립, 러시아 이범진 공사 동상 건립, 뉴질랜드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 건립 등 3개 내역사업, '국가유공자등노후복지지원세부사업'내에 여가활동지원, 국가유공자 법률구조지원 등 2개 내역사업을 신규로 편성함.

□ 따라서, 국가보훈부는 향후 2개 이상의 실국 내역사업을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통합 관리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의 성격에 맞게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음.

Ⅱ. 일반회계

[세입]

1. 세입 총괄 : 연례적 세입예산 과다계상 부적정

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개요

□ 2025년도 국가보훈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편성규모는 98억 6,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00만원(0.1%) 증액되었음.

< 2025년도 국가보훈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분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 감 (B-A)	(B-A)/A
일반회계 세입	3,497	9,851	9,861		
관유물대여료	139	159	159	-	-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349	511	511	-	-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	23	88	88	-	-
변상금 및 위약금	-	51	51	-	-
기타경상이전수입	2,821	8,652	8,652	-	-
면허료 및 수수료	3	3	3	-	-
잡수입	158	352	362	10	2.8
고정자산매각대	4	35	35	-	-
토지및무형자산매각대	-	-	-	-	-

자료: 국가보훈부

□ 항목별로는 관유물대여료,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벌금·몰수금 및 과태료, 변상금 및 위약금, 기타경상이전수입, 면허료 및 수수료, 잡수입, 고정자산매각대 등 8개 목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기타경상이전수입이 86억 5,200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87.8%)을 차지함.

나. 검토의견

국가보훈부 일반회계 세입에서 해마다 약 30억원에서 60억원 규모의 세입결손이 발생하고 있으며, 2023년도는 최근 5년 중 수납률도 제일 낮고 세입예산 오차도 60억원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증액됨.

결산 실적을 예산안 편성에 반영하지 않고 전년도 결산액 또는 예산액을 기준으로 편성하거나 전년도 예산액에서 일정 비율을 기계적으로 증액하는 관행이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바, 앞으로 국가보훈부는 각 세입항목의 수납율 추이, 최근 5년간 수납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추계의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최근연도 국가보훈부 일반회계 세입 결산을 살펴보면, 2023년도 세입 수납액은 34억 9,800만원으로 예산액 95억 9,800만원 대비 수납률이 36.5%에 그쳤으며, 2019년부터 2022년까지도 수납률이 각각 38.3%, 55.9%, 45.6%, 67.7%에 불과함.

< 최근연도 국가보훈부 일반회계 세입 결산 >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A)	수납액(B)	예산 대비 수납률 (B/A)	세입예산 오차 (B-A)
2019년	7,948	3,041	38.3	△3,826
2020년	8,277	4,626	55.9	△3,651
2021년	8,820	4,019	45.6	△4,801
2022년	9,198	6,227	67.7	△2,971
2023년	9,573	3,498	36.5	△6,075

자료: 국가보훈부

□ 이처럼 국가보훈부 일반회계 세입에서 해마다 약 30억원에서 60억원 규모의 세입결손이 발생하고 있으며, 2023년도는 최근 5년 중 수납률도 제일 낮고 세입예산 오차도 60억원을 초과하였음.

□ 세입예산은 각 세입항목 수납액의 예상치로서,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에 있어서 전년도 수납실적 즉 결산액은 가장 우선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 있음.

□ 그런데 최근연도 국가보훈부 세입 결산 및 예산안 편성액을 비교해 보면, 전년도 결산액과 다음연도 예산안 규모의 차이가 36억원~63억원(58.2%~181.9%)에 달함.

< 최근연도 국가보훈부 결산 및 예산안 비교 >

(단위: 백만원, %)

전년도 결산(A)		다음연도 예산안(B)		증감	
				(B-A)	(B-A)/A
2019년	3,041	2021년	8,820	5,779	190.0
2020년	4,626	2022년	9,198	4,572	98.8
2021년	4,019	2023년	9,573	5,554	138.2
2022년	6,227	2024년	9,851	3,624	58.2
2023년	3,498	2025년	9,861	6,363	181.8

자료: 국가보훈부

□ 이러한 결산액과 예산안 간 괴리는 결산 실적을 예산안 편성에 반영하지 않고 전년도 예산액을 기준으로 편성하거나 전년도 예산액에서 일정 비율을 기계적으로 증액하는 관행이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2025년 세입예산 편성근거 >

(단위: 백만원, %)

연도	2023년 수납액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	2025년 편성근거
토지대여료	52	65	65	전년 수준
건물대여료	37	94	94	전년 수준
기타재산이자수입	178	511	511	전년 수준
과태료	2	88	88	전년 수준
변상금	0.3	23	23	전년 수준
위약금	-	28	28	전년 수준
기타경상이전수입	2,111	8,652	8,912	전년 대비 3% 증액
면허료 및 수수료	3	3	3	23년 결산 수준 반영
기타잡수입	137	352	362	전년 대비 3% 증액
기타고정자산매각대	-	35	35	전년 수준

자료: 국가보훈부

< 최근연도 국가보훈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 추이 >

(단위: 백만원,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안)
예산액	7,948	8,277	8,820	9,198	9,573	9,851	9,861
전년대비 증감률	+4.9	+4.1	+6.6	+4.3	+4.1	+2.9	+0.1

자료: 국가보훈부

□ 앞으로 국가보훈부는 단순히 전년도의 예산액 또는 전년 예산액 대비 3% 증액 등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보다는 각 세입 항목의 수납율 추이, 최근 5년간 수납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추계의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기타경상이전수입 : 수납 규모를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기타경상이전수입’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국고보조금 정산 반환금, 광복회관 임차보증금 반납금과 연납 등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억 6,000만원 증가(3.0%)한 89억 1,200만원이 편성됨.

<2025년도 기타경상이전수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기타경상이전수입	2,111	8,652	8,912	260	3.0

자료: 국가보훈부

나. 검토의견

기타경상이전수입 항목은 결산상 한 번도 달성하지 못한 규모의 예산 편성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바, 국가보훈부는 전년 대비 3% 증액한 금액을 관례적으로 편성하는 것을 지양하고, 연도별 실제 수납액 규모나 수납률을 고려하여 정확한 세입예산을 계상할 필요가 있음

□ 세입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타경상이전수입의 경우 해마다 수납액이 예산액의 절반 수준임에도 2025년까지 꾸준히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5년 예산안 89억 1200만원의 편성 근거도 '전년 대비 3% 증액 요구'로 제시하고 있음.

○ 이러한 관행에 따라 기타경상이전수입 항목은 결산상 한 번도 달성하지 못한 규모의 예산 편성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실정임.

<최근연도 기타경상이전수입 결산 및 예산>

(단위: 백만원,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안)
예산액	7,319	7,622	7,851	8,155	8,400	8,652	8,652
결산액	2,509	4,231	3,454	5,430	2,111	-	-
수납률	34.3	55.5	44.0	66.6	25.1	-	-
전년대비 예산 증감률	+3.4	+4.1	+3.0	+3.9	+3.0	+3.0	-

자료: 국가보훈부

<최근 5년간 일반회계 기타경상이전수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구분	징수결정액(B)	수납액(C)	수납율(C/B)	불납결손액(D)	불납결손율(D/B)	미수납액(E)
2023	보훈급여금 과오불	4,700	1,167	24.8	207	4.4	3,326
	국고보조금정산 반납금	925	875	94.6	0	-	50
	교육비지원과오불	133	127	95.5	0	-	6
	광복회관 임차보증금 반납금및이자	729	206	28.3	0	-	523
	의료지원비 과오불 등 기타	644	446	69.3	0	-	198
	계	7,131	2,821	39.6	207	2.9	4,102
2022	보훈급여금 과오불	5,854	1,381	23.6	139	2.4	4,334
	국고보조금정산 반납금	3,493	3,443	98.6	0	-	50
	교육비지원과오불	100	94	94.0	0	-	6
	광복회관 임차보증금 반납금및이자	915	214	23.4	0	-	701
	의료지원비 과오불 등 기타	702	297	42.3	17	2.4	388
	계	11,065	5,430	49.1	156	1.4	5,479

연도	구분	징수결정액(B)	수납액(C)	수납율(C/B)	불납결손액(D)	불납결손율(D/B)	미수납액(E)
2021	보훈급여금 과오불	5,879	1,187	20.2	189	3.2	4,503
	국고보조금정산 반납금	2,106	1,661	78.9	0	-	445
	교육비지원과오불	153	134	87.6	0	-	19
	광복회관 임차보증금 반납금	1,083	206	19.0	0	-	877
	의료지원비 과오불 등 기타	539	267	49.5	4	4	268
	계	9,760	3,454	35.4	194	2.0	6,112
2020	보훈급여금 과오불	3,048	626	20.5	30	1.0	2,393
	국고보조금정산 반납금	3,415	3,284	96.2	0	-	131
	교육비지원과오불	112	106	94.6	0	-	7
	광복회관 임차보증금 반납금	1,031	0	-	0	-	1,031
	의료지원비 과오불 등 기타	253	217	85.8	0	-	36
	계	7,859	4,232	53.9	30	0.4	3,598
2019	보훈급여금 과오불	3.506	1.031	29.4	226	6.4	2.249
	국고보조금정산 반납금	887	837	94.4	0	-	50
	교육비지원과오불	220	215	97.7	0	-	5
	광복회관 임차보증금 반납금	992	38	3.8	0	-	954
	의료지원비 과오불 등 기타	441	388	88.0	4	0.9	48
	계	6.046	2.509	41.5	230	3.8	3,307

자료: 국가보훈부

□ 한편, 기타경상이전수입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저조한 구체적 사유를 보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보훈급여금 과오급금의 경우 납부의무자가 고령·질병으로 생계가 곤란하여 몇 년에 걸쳐 소액 분할 납부하는 경우가 많으며, 광복회관 임차보증금의 경우 '21년도부터 '26년까지 연도별 일정금액(2억 600만원)을 분할납부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연도별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현황 >

(단위: 백만원, %)

연도별	징수 결정액 (A)	당해연도 신규발생액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2018년	3,893	729	760	2,772	361	19.5
2019년	3,506	874	1,031	2,249	226	29.4
2020년	3,048	632	626	2,392	30	20.5
2021년	5,879	3,514	1,187	4,503	189	20.2
2022년	5,854	2,423	1,381	4,334	139	23.6
2023년	4,700	1,520	1,167	3,326	207	24.8
2024.9월	4,161	1,127	728	3,295	137	17.5

자료: 국가보훈부

< 연도별 광복회관 임차보증금 과오급금 현황 >

(단위: 백만원, %)

연도별	징수 결정액(A)	당해연도 신규발생액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2018년	958	500	-	958	-	-
2019년	1,011	54	38	973	-	3.8
2020년	1,031	58	-	1,031	-	-
2021년	1,083	52	206	877	-	19.0
2022년	915	384	214	701	-	23.4
2023년	723	22	206	517		28.4
2024.8월	534	11	155	379	-	29.0

자료: 국가보훈부

○ 이와 같이 수납액의 규모나 수납률에 관계없이 세입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면 실제 세입 규모 측정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규모가 왜곡되어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국회에서 최근 매년 기타경상이전수입의 편성근거에 대해 지적을 받고 있으나,[22] 국가보훈부는 매년 '전년 대비 3% 증액'을 편성 근거로 제출하고 있음.

□ 따라서 국가보훈부는 전년 대비 3% 증액한 금액을 관례적으로 편성하는 것을 지양하고, 연도별 실제 수납액 규모나 수납률을 고려하여 정확한 세입예산을 계상할 필요가 있음.

.

22) 2022~2024년 정무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3년 예결위 예산안 검토보고서 등

[세출]

1. 생활조정수당 : 생계지원금 적정 편성인원 반영 및 추계정확성 제고 필요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생활조정수당’은 저소득 국가유공자 등에게 매월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려는 사업으로,[23] 2025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47억 7,200만원(△5.3%)이 감액된 847억 5,400만원이 편성됨.

< 2025년도 생활조정수당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생활조정수당	53,404	89,526	84,754	△4,772	△5.3
생계지원금	4,204	11,958	4,242	△7,716	△64.5

자료: 국가보훈부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생계지원금’은 보훈 관계 법률[24]에 근거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등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참전유공자 등의 생활 안정에

23) 세부사업: 생활조정수당(1133-302)

24)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10,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9조의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기여하려는 것으로, 2025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77억 1,600만원(△64.5%)이 감액된 42억 4,200만원이 편성됨.[25)]

< 생계지원금 사업 개요>

□ **지원 대상**

○ 80세 이상으로서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수당지급 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선순위 유족, 5·18민주유공자

○ 생활수준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지원 내용 : 매월 10만원 정액 지급(가구당 연 120만원)**

나. 검토의견

'생계지원금' 사업의 지급인원은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국가보훈부 고시) 개정에 따른 증가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과소 추계되었으므로, 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적정 지급인원이 반영될 필요가 있으며, 국가보훈부는 보훈급여금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다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생계지원금' 사업은 월 지원금액(지급단가)과 지급인원 추계를 기준으로 예산이 편성되는데, 2025년의 경우 지급단가는 월 1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함에도 지급인원을 전년 9,965명 대비 6,430명 감소한 3,535명으로 추계함으로써, 예산안이 전년 119억 5,800만원

25)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고시」 제8조의3(생계지원금)** ①「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의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10,「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9조의2,「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5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은 생활수준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아래 표의 기준금액의 50%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대비 77억 1,600만원 감소하게 되었음.

○ 이에 대하여, 국가보훈부는 2023년 국회 결산 심사과정에서 생계지원비 지급인원의 연례적 과다계상에 대하여 지적받은 바 있으므로,[26] 2025년 지급인원은 기존 지급실적을 반영하여 추계하였다는 의견임.

< '25년 생계지원금 지급인원 추계 >

(단위: 명, %)

구분	지급인원			'24년 예산편성 인원	'25년 추계인원 (24년 대비)	비고
	'22년	'23년	증감률			
생계 지원금	3,490	3,505	0.4	9,965	3,535 (△6430)	'22~'23년 증감률 반영하여 추계

자료: 국가보훈부

□ 동 사업은 2022년 신규 추진된 사업으로, 2022년과 2023년의 경우 편성인원을 과다 추계하여, 결국 각 회계연도의 집행실적이 저조하였음.

< '22년~'23년 생계지원금 사업 집행 실적 >

(단위: 명, 백만원)

구분	편성인원 (A)	지급인원 (B)	차이 (A-B)	예산액 (C)	집행액 (D)	차이 (C-D)	집행률 (D/C)
2022년	5,728	3,490	2,238	6,874	3,851	3,023	56%
2023년	6,770	3,505	3,265	8,124	4,204	3,920	51.7%

자료: 국가보훈부

□ 그러나, 2023년 10월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국가보

26)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

훈부 고시)이 개정(시행일 2024.1.1.)되어,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에는 과거 생계지원금 지급을 위해서 요구하던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을 것’(이하 “부양의무자 요건”이라 함)을 미적용하게 되었고,[27] 2024년 5월 개정에는 부양의무자 요건을 지급 요건에서 삭제하였음.[28]

○ 위 개정으로, 생계지원금 지급대상자인 참전유공자 등은 80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부양의무자 요건 충족 여부와 무관히 생계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으므로, 위 개정 시행일인 2024년 1월부터는 생계지원금 지급인원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 예상되었음.

○ 실제 2024년 생계지원금 지급인원은 7월 기준 6,329명으로, 전년 12월 대비 2,824명이 증가하였음.

---

27)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제3조(부양능력 등)** ③ 부양의무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선순위자(수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 및 제8조의3의 생활조정수당 및 생계지원금 지급 여부를 판단할 때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본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등록한 사람 중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3. 65세 이상 노인

28) < 2024년 5월 23일 개정 내용 >

2024. 5. 23. 개정 전	2024. 5. 23. 개정 후
제8조의3(생계지원금) ①「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의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10,「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9조의2,「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5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은 생활수준조사결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아래 표의 기준금액의 50% 이하)이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사람에게 지급한다. 1.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 2.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인정액이 수권자 기준금액의 100분의 40과 해당 부양의무자 기준금액을 더한 금액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제8조의3(생계지원금) ①「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의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10,「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9조의2,「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5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은 생활수준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아래 표의 기준금액의 50%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 생계지원금 지급인원 변화 >

(단위: 명, 백만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7월)	2025년 계획인원 (24년 지급인원 대비)
지급인원	3,490	3,505	6,329	3,535 (△2,794)
전년대비 증가분	-	15	2,824	

자료: 국가보훈부

□ 그럼에도, 동 내역사업의 2025년 지급인원 추계는, 2024년 지급대상자 증가를 전혀 고려할 수 없는 '22년과 '23년의 지급실적만을 고려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산출함으로써, 2025년 '생계지원금' 편성 인원은 실제 지급인원보다 작을 것으로 보임.

○ 과거 보훈급여금과 관련된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것을 수차례 지적받았음에도,[29] 이미 발생한 증가 요인을 2025년 지급인원 추계에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은 지급인원 추계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음.[30]

□ 따라서 생계지원금이 대상자에게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생계지원금' 사업에 적정 지급인원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보훈부는 추계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9) 2024년 예산(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년 결산(국회예산정책처), 2022년 결산(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30) 국가보훈부는 2024년 동 내역사업의 지급인원 추계 시에는 부양의무자 요건 변화를 고려하여 추계하였음에도, 2025년에는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음.
※ 24년 지급인원 추계 방식: 23년 편성인원에 부양의무자 요건 완화 인원 3,195명 가산

2. 고엽제환자검진 : 고엽제질병 등록 지연 방지를 위한 사업관리 적극 대응 필요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고엽제환자검진’의 내역사업인 ‘검진비’는 고엽제피해 질병 등록신청자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 또는 2세 환자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검진을 보훈병원에서 실시하고, 그 검진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31] 2025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26억 6,400만원이 편성됨.

< 2025년도 고엽제환자검진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고엽제환자검진	2,867	2,667	2,667	-	-
검진비	2,864	2,664	2,664	-	-

자료: 국가보훈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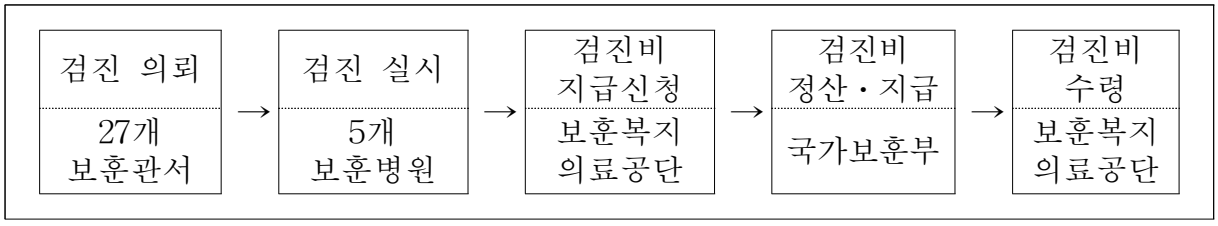
나. 검토의견

고엽제환자 등록을 위한 ‘검진비’ 사업의 2024년도 집행실적이 저조한 바, 국가보훈부는 고엽제환자의 등록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그 선행 절차인 ‘검진비’ 사업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31) 세부사업: 고엽제환자검진(1143-368)

□ ‘검진비’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록 신청인 중 각 보훈관서에서 신청 질병에 대하여 검진을 의뢰한 자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검진비용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청구하면, 그 검진비용을 국가보훈부가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임.

< 검진비 사업 집행절차 >



자료: 국가보훈부

□ 동 사업의 최근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2024년 7월말 기준 집행률이 33.9%로 저조한 편이고, 이는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코로나 전담병원 지정 등의 사유로 검진이 축소되었던 2020년~2022년보다 낮은 수치임.[32)]

< 최근 5개년 검진비 사업 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A)	이·전용등	예산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불용액
2020	2,990	△712	2,278	2,251	75.3	98.8	27
2021	2,990	-	2,990	2,386	79.8	79.8	604
2022	2,990	-	2,990	2,294	76.7	76.7	696
2023	2,664	200	2,864	2,864	107.5	100.0	-
2024(7월말)	2,664	-	2,664	902	33.9	33.9	-

자료: 국가보훈부

32) 2021년 7월말 기준 집행률 38.8%, 2022년 7월말 기준 집행률 36%임.

□ 국가보훈부는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에 대하여, 고엽제질병 특성상 만성·복합 질환 및 다수의 질병 신청으로 인하여 다양한 진단·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검사 결과 판독 등에도 다소 시일이 걸리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2023년과 비교하여도 집행실적이 저조하고, 검진 소요기간이 길어진 것에 비추어 볼 때,[33] 2024년의 집행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고엽제질병의 특수성이 아니라, 전공의 파업으로 보훈병원에 의료공백이 발생하였고,[34] 이로 인하여 입원 검진 및 고가의 정밀검사 시행이 전년 대비 부진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특히, 전체 고엽제 검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중앙보훈병원의 신경과 검진이 부진하였음.[35]

< 고엽제검진 소요기간 >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8월말)
검진 소요기간*	39.8일	39.3일	39.0일	39.8일	54.2일	42.3일	43.6일	43.1일	47일
					(코로나로 인한 검진 축소)				

*검진 소요기간: 검진신청일부터 검진일까지의 기간

자료: 국가보훈부

33) (7월 기준 집행률) 2023년 44% → 2024년 33.9% / (검진 소요기간) 2023년 43.1일 → 2024년 47일

34)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225_0002638536(보훈병원 전공의 66% 사직서 제출…유공자 진료 차질 우려, 2024.2.25.),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17128(보훈병원, 전공의 53명 임용 포기…"이탈률 95%", 2024. 3. 19.) 등

35) 국가보훈부는 중앙보훈병원과 협의하여 2024년 9월부터는 신경과 검진을 활성화할 예정이고, 다른 4개 지방보훈병원(부산, 대전, 대구, 광주)도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협의를 계속할 예정이라는 입장임.

< 주요 검진 항목별 '23년 및 '24년 검진 시행 건수[36] >

(단위: 건, %)

주요 질병	주요 검진 항목	2023년 (A)	2024년 8월 말 (B)	감소율 (A-B/A)	비고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초음파-심장-(단순)경흉부심초음파	99	39	60.6	고혈압
파킨슨병	MRI Brain 촬영료[테슬라3.0이상+품질관리적합]	185	69	62.7	뇌경색증 중추 신경장애
	MRI Brain 판독료	195	81	58.5	
	PACS영상저장및전송비용/MRI	209	83	60.3	
	뇌 PET CT	654	208	68.2	
	PACS영상저장및전송비용/PET	598	170	71.6	
	해동에프디자주사액(2-데옥사-2-플루오로-D-글루코스(18F)	98	9	90.8	
	듀캠바이오에프디자-20(2-데옥사-2플루오로-D-글루코스(18F)	68	23	66.2	
	피디뷰주사(FP-CIT 18F)	139	48	65.5	
뇌경색증	진단초음파-혈관-뇌혈류	546	213	61.0	파킨슨병 중추 신경장애
	DIGITAL 각성뇌파검사-18채널이상	310	77	75.2	
중추 신경장애	진단초음파-혈관-(경동맥)두개외 혈관 도플러	152	45	70.4	파킨슨병 뇌경색증
	CDR치매척도검사	306	99	67.6	
	MMSE간이정신진단검사	338	119	64.8	
말초 신경병	신경전도검사/감각 · 운동(상 · 하지,편측)	2,726	895	67.2	다발성 신경마비 등
	신경전도검사/감각 · 운동(상 · 하지,양측)	612	98	84.0	
	F파신경전도검사(상 · 하지 편측)	746	238	68.1	
	F파신경전도검사(상 · 하지 양측)	283	44	84.5	
	(RM)신경전도검사(하지)감각신경	546	186	65.9	
간질환	ALT (SGPT) [화학반응-장비측정]	189	101	46.6	고지혈증 당뇨병 등
	AST (SGOT) [화학반응-장비측정]	189	101	46.6	
	정밀면역검사-B형간염표면항원(정성)	121	66	45.5	
	정밀면역검사-C형간염항체	121	65	46.3	

자료: 국가보훈부

□ 그런데, 보훈병원 의료공백이 조기에 해결되지 못할 경우, 고엽제환자 검진 사업의 집행 부진은 2025년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임.

36) 2024년 8월말 기준 2023년 대비 검진횟수 감소율이 45%이상인 경우를 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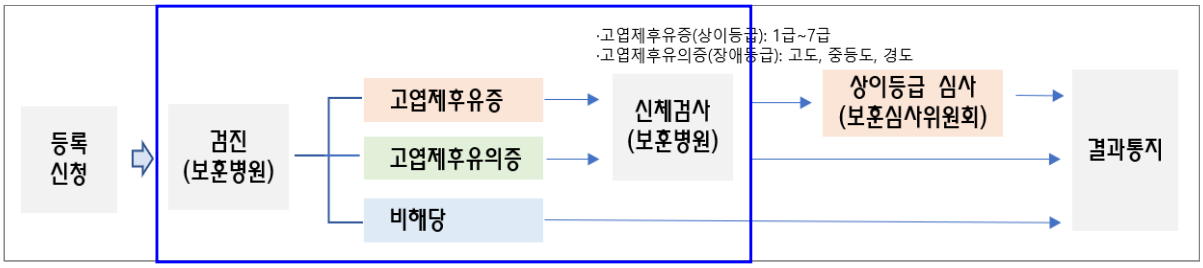
< ’24년 9월말 기준 보훈병원 전공의 정원 및 현원 >

구분	정원	현원	비고
서울중앙보훈병원	110	9	△101
부산보훈병원	26	5	△21
대전보훈병원	12	0	△12
대구보훈병원	12	1	△11
광주보훈병원	23	2	△21

*치과는 제외된 수치임
자료: 국가보훈부

□ 동 사업의 집행이 부진할 경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록을 신청한 사람에 대한 등록 절차가 지연될 수 밖에 없고, 이는 신청인들에 대한 보상 개시 지연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점에서, 사업의 집행 관리가 보다 철저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음.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록 절차 >



* 음영: 고엽제 질병 등록 절차 중 ‘고엽제 환자검진’ 사업으로 수행되는 절차
자료: 국가보훈부

□ 따라서, 국가보훈부는 동 사업의 집행 저조로 인하여 고엽제환자 등록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적극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 특히, 과거 코로나 담당병원 지정 등과 같은 환경적 요인으로 인하여 동 사업의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례가 있었음을 참고할 때, 예상되는 환경적 요인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3. 보훈단체 운영 및 선양활동 등 : 성과지표 추가·변경 필요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보훈단체 운영 및 선양활동 등(1238-315)’ 사업은 보훈단체에 인건비 및 복지회관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보훈단체 수익사업의 관리·감독을 수행하며 보훈단체의 각종 선양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37] 2025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8억 3,900만원(△2.4%) 감액된 341억 2,000만원이 편성됨.

< 2025년도 ‘보훈단체 운영 및 선양활동등’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 감 (B-A)	(B-A)/A
보훈단체 운영 및 선양활동 등	34,718	35,120	34,281	△839	△2.4

자료: 국가보훈부

37) 세부사업: 보훈단체 운영 및 선양활동 등(1238-315)

나. 검토의견

보훈단체선양활동 세부사업의 성과지표는 일부 내역사업의 성과만을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다른 내역사업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추가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과거 실적보다 낮은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는 바, 목표치를 보다 도전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운영되던 '보훈단체운영' 사업과 '보훈단체선양활동등' 사업은 2020년 보조사업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세부사업을 통폐합하여 1개의 사업으로 운영 중임.

□ 동 세부사업은 현재 성과지표로 '보훈단체 선양활동 참가자수'만을 측정하여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통합되기 전의 '보훈단체선양활동등'에서 활용하고 있던 성과지표임.

○ 통합 전 '보훈단체운영' 사업은 '보훈단체에 대한 인식도'와 '복지회관 이용자 만족도'를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활용되고 있지 못함.

- 세부사업을 통합한 2021년도에는 성과지표로 ① (총괄) 보훈단체선양활동 참가자 만족도, ② (보훈단체운영) 복지회관이용자 만족도, ③ (보훈단체선양활동등) 보훈선양활동 등 참가자수 등 세 가지의 지표를 활용하였으나, 국가보훈부는 2022년부터는 현

재처럼 ③ (보훈단체선양활동등) 보훈선양활동 등 참가자수만을 활용하고, ①번과 ②번 지표는 삭제함.

□ 2023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현 성과지표는 보훈단체선양활동등 내역사업의 성과에 치중되어 있어 보훈단체운영 내역사업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마련이 필요하며, 보훈단체가 단체별 특성에 맞는 선양활동을 수행하고 투명한 단체운영을 통해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성과지표 마련이 필요함”을 사유로 개선을 권고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

□ 현재 성과지표인 ‘보훈단체 선양활동 참가자수’는 22년 100.2%, 2023년 168.3%의 달성률을 기록하는 등 지표수치가 굉장히 양호함.

<2025년 보훈단체 운영 및 선양활동등 성과지표>

성과지표	구분	'21	'22	'23	'24	'25	‘25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또는 자료출처)
보훈단체 선양활동 참가자수 (단위: 점)	목표	미실시	18,462	19,000	19,500	20,000	'24년 목표치 감안 전년 대비 약 3%p 상향	보훈단체 주관 보훈선양활동 참가인원 합산	결과 보고서
	실적	미실시	18,499	31,984	-	-			
	달성률	-	100.2	168.3					

자료: 국가보훈부

○ 특히 2023년에는 목표인 19,000명보다 약 22,000명이 많은 31,984명이 참가하였음에도, 2025년 목표치로 20,000명만을 설정함.

○ 이를 종합하면, 국가보훈부는 과거 실적보다 낮은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세부사업 성과목표 달성률을 높이기 위해 달성하기 용이한 성과지표만을 남겨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 따라서, 국가보훈부는 동 세부사업 중 ‘보훈단체운영 내역사업’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추가적으로 마련하고, 기존 ‘보훈단체 선양활동 참가자수’의 실적을 감안하여 목표치를 보다 도전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4. 지방보훈회관건립 : 연례적 집행 부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 철저 필요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지방보훈회관 건립’ 사업은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친목도모와 여가선용을 위한 공간인 지방보훈회관 건립을 국가가 일부 지원함으로써 지방보훈회관의 건립을 촉진하려는 것으로,[38]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7억 5,000만원(△46.7%)이 감액된 20억원이 편성됨.

< 2025년도 지방보훈회관 건립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B)	증 감 (B-A)	
		본예산	추경(A)			(B-A)/A
지방보훈회관 건립	2,989	3,750	3,750	2,000	△1,750	△46.7

자료: 국가보훈부

□ 동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부지와 지방비를 확보할 경우 국고를 보조하는 매칭펀드 사업으로, 매칭비율은 광역시·도는 총사업비의 50%(15억원 한도 내), 시·군·구는 총사업비의 30%(5억원 한도 내)임.[39]

---

38) 세부사업 : 지방보훈회관 건립(1238-321)

39) 「지방보훈회관 건립사업 지원 지침」 제10조(보조금 지원) ① 지방보훈회관 건립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부지와 지방비를 확보할 경우 국고를 보조하는 매칭펀드 사업으로 한다.
② 매칭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매칭비율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재정형편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지부 15억 원 한도 내에서, 지회 5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부터 건립을 추진한 5개소(화순군, 인천 연수구, 고창군, 진안군, 대구 달서구)에 대한 보조금 12억 7,500만원과 2025년도 신규로 건립을 추진할 3개소[40]에 대한 보조금 7억 5,000만원으로 구성됨.

나. 검토의견

‘지방보훈회관 건립’ 사업은 사업수행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연례적인 집행 부진과 이월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집행실적 점검, 성과지표 변경 등을 고려하고,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2025년도 예산안 중 12억 7,500만원은 2024년부터 건립 추진(2025년 완공 계획) 중인 5개소에 대한 것으로, 위 5개소의 2024년 9월 말 기준 사업 진행 현황을 살펴보면, 9,200만원이 실집행된 진안군을 제외한 4개소는 실집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화순군을 제외한 4개소는 ‘24년 9월 이후에야 착공이 이루어졌으며, 그 중 진안군의 경우에는 ‘25년 5월이 되어서야 착공이 진행될 예정임.

---

1. 지부는 국가 50%, 지방자치단체 50%
2. 지회는 국가 30%, 지방자치단체 70%

40) 예산안 확정 시 순창군, 사천시, 이천시가 지원대상으로 임시 결정될 예정임.
*「지방보훈회관 건립사업 지원 지침」 제7조(지원대상 결정) 국가보훈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확보와 국고보조금 집행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대상을 결정한다.
1. 정부 예산안 확정시 부지와 지방비 확보 등 사업수행을 위한 사전 절차이행 여부를 파악 후 지원대상을 임시 결정한다.

< 2025년 지원 예정인 2024년 신규 건립 사업 진행 현황[41] >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			2025년	비고
	교부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예산안	
화순군	250	0	0	250	· 설계 용역('20.6.~'23.1.) · 착공 및 준공('23.2.~'25.3.) * 공정률 40%
인천 연수구	250	0	0	250	· 설계 용역('23.12.~'24.7.) · 착공 및 준공('24.9.~'25.12.) * 공정률 10.7%
고창군	250	0	0	250	· 설계 용역('23.7.~'24.8.) · 착공 및 준공('24.9.~'25.10.) * 공정률 6.5%
진안군	250	92	36.8	250	· 설계 용역('24.4.~'25.4.) · 착공 및 준공('25.5.~'26.6.) * 공정률 3.3%
대구 달서구	250	0	0	250	· 설계 용역('23.8.~'24.9.) · 착공 및 준공('24.10.~'25.12.) * 공정률 0%

자료: 국가보훈부

□ 한편, 2023년도부터 건립을 추진하여 2024년도 완공 계획인 7개소의 사업 진행 현황을 살펴보면, 용인시 등 3개소를 제외한 4개소에서 2023년도 예산을 이월하였고, 속초시, 진천군은 2025년도 하반기에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므로 2024년 예산도 상당 부분이 이월될 것으로 보임.

41) 24년도 신규 건립 사업이었던 서울 송파구는 지방비 미확보로 사업을 포기하였고, 동해시는 단년도 사업으로 2024년 전액(5억원) 지원되었으나, 실집행액 2억 2,000만원, 공정률 57%로 당초 계획('24년 9월)보다 준공이 지연되었음.

< 2023년 신규 건립 추진 중인 7개소 사업 진행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2023년				2024년				비고
	예산액	교부액	실집행액	이월액	예산액	교부액	예산현액	실집행액	
용인시	250	250	250	0	-	-	-	-	·설계 용역(' 21.1.~ '21.12.) ·착공 및 준공(' 22.7.~ '24.12.) * 공정률 80%
안동시	250	250	250	0	250	250	250	34	·설계 용역(' 23.3.~ '24.3.) ·착공 및 준공(' 23.12.~ '25.2.) * 공정률 57%
김포시	250	250	250	0	-	-	-	-	·설계 용역('22.3.~' 23.3.) ·착공 및 준공(' 24.3.~ '25.3.) * 공정률 35.8%
강진군	239	239	2	237	250	250	487	237	·설계 용역(' 22.12.~' 23.2.) ·착공 및 준공(' 24.5.~ '25.1.) * 공정률: 28.8%
속초시	250	250	0	250	250	250	500	286	·설계 용역(' 23.5.~' 23.7.) ·감사지적사항 절차 재이행 ·재착공 및 준공(' 24.8.~ '25.8.) * 공정율 15%
진천군	250	250	0	250	-	-	250	150	·설계 용역('23.12.~' 24.9) ·착공 및 준공('24.11.~' 25.11.) * 공정율 5.9%
대구 동구	250	250	0	250	-	-	250	0	· 사업계획 변경(구입⇒임차)으로 '23 국비 반납, '24 국비 포기 예정

자료: 국가보훈부

□ 이상을 종합하면, '지방보훈회관 건립' 사업은 지방비 확보 등 사전절차 이행 부족, 보훈단체와의 이견 등으로 인하여 당초 예정되었던 사업 기간의 지연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례적인 집행 부진이 발생하고 있음.

○ 한편, 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전년도 실집행실적, 연내 집행 가

능성, 이월금 보유현황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함에도,[42] 교부된 금액의 약 68%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월되고 있음.

< 최근 5개년 지방보훈회관 건립 사업 보조금 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분	국가보훈부		지방자치단체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A)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실집행액	이월액 (B)	이월률 (B/A)
2020년	2,250	2,000	2,000	1,234	3,234	1,670	1,564	78.2
2021년	1,955	1,955	1,955	1,564	3,519	1,629	915	46.8
2022년	2,605	2,250	2,250	915	3,165	1,649	1,516	67.4
2023년	3,344	2,989	2,989	1,516	4,505	1,980	2,280	76.3
2024년(9월)	3,750	2,500	2,500	2,280	4,780	1,781	-	-

자료: 국가보훈부

□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지방보훈회관 건립' 사업은 예산 편성 및 집행 단계에서 부지·지방비 확보 등 사업수행 여건 정도,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고, 집행실적을 관리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개발하는 등 동 사업의 집행 부진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구체적으로, 2024년도부터 계속 추진 중인 5개소에 대한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전년도 집행실적, 사업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42) **「국가보훈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18조(보조금 교부방법)** ②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 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실적 및 실집행 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연내 집행가능한 금액을 편성·교부할 필요가 있음.

○ 2025년도에 신규 추진할 3개소에 대해서는 부지 확보, 지방비 확보 등 사전절차 이행 정도를 면밀히 점검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할 필요가 있음.

○ 사업 전체적으로는, 집행 단계에서 사업계획에 따른 집행실적을 조기에 점검하고, 보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식을 고려하여 볼 수 있으며, 성과지표 자체를 실집행률, 공정률과 같은 기준으로 변경하여 사업 진행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43)44)]

□ 국가보훈부는 이상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지방보훈회관 건립' 사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연례적인 집행 부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할 것으로 보임.

43) '재정비촉진사업지원' 사업(국토교통부, 자치단체자본보조, 국고보조율 10~50%)은 전년도 교부금의 실집행률이 50% 미만인 경우 실집행률에 따라 교부금액을 삭감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고, '투자선도지구 기반시설지원' 사업(국토교통부, 자치단체자본보조, 국고보조율 50%)은 '연간 추진계획 대비 기반시설 공정률'을, '종교문화시설건립' 사업(문화체육관광부, 자치단체자본보조, 국고보조율 정액·30%)은 '당해년도 예산현액 대비 실집행액'을 각각 성과지표로 활용하고 있음.

44) 반면, 동 사업은 현재 '지방보훈회관 이용자 만족도'(건립지원지역 보훈회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자체 표본설문조사 활용)를 성과지표로 활용하고 있음.

5. 교통시설 이용지원 : 시내버스 이용 지원금 미보전액 처리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교통시설이용지원’은 애국지사와 상이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의 교통권 보장과 이동편의 제공을 위해 교통시설의 운임을 보전하는 사업으로,[45] 2025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6억원(5.3%) 감액된 107억 2,900만원이 편성됨.

<2025년도 교통시설이용지원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교통시설이용지원	10,793	11,329	10,729	△600	△5.3
· 민영버스	8,359	8,484	8,484	-	-
· 고속철도	2,163	2,163	2,163	-	-
· 내항여객선	82	82	82	-	-
· 교통이용실적 DB 등	74	-	-	-	-
· 무인발매기 개발 등	-	600	-	△600	순감

자료 : 국가보훈부

나. 검토의견

45) 세부사업: 교통시설이용지원(2139-318)

시내버스 이용요금을 대신 납부해 준 '교통복지카드 사업 수행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미보전액이 계속 누적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고 예산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이 사업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46] 등의 법률 및 「전상군경 등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지원 규정(국가보훈부 훈령)」에 근거하여 상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교통시설 이용요금을 지원하는 것임.

<교통시설이용지원 대상 및 지원내용(국가보훈부 훈령 별표)>

수송시설의 종류	이용지원 대상	지원내용
철 도	애국지사 상이 국가유공자 5.18민주부상자	연간 6회 무임 7회 이후 50% 할인 * 애국지사 및 1~2급상이(장해)자 동반보호자1인포함
지 하 철	애국지사 상이 국가유공자 5.18민주부상자	무임 * 애국지사 및 1급상이(장해)자 동반보호자1인포함
고속버스	애국지사, 상이1~5급, 1~7급 5·18부상자	50% * 애국지사 및 1급상이(장해)자 동반보호자1인포함
	상이6~7급, 8~14급 5·18부상자	30%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애국지사, 상이국가유공자, 5·18부상자	무임 * 애국지사 및 1급상이(장해)자 동반보호자1인포함

4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6조(수송시설의 이용지원)**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輸送施設)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1.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 활동이 어려운 경우 이들을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

② 국가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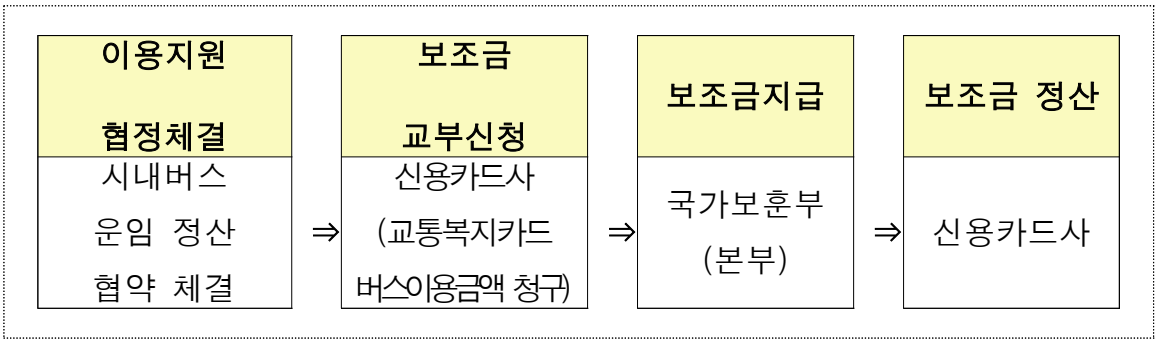
수송시설의 종류	이용지원 대상	지원내용
시외버스	애국지사, 상이1~5급, 1~7급 5·18부상자	70% * 애국지사 및 1급상이(장해)자 동반보호자1인포함
	상이 6~7급, 8~14급 5·18부상자	30%
내 항 여 객 선	애국지사, 상이국가유공자(1~5급) 5·18민주부상자 (장해1~7등급)	무임 * 애국지사 및 1급상이(장해)자 동반보호자1인포함
	상이국가유공자(6~7급) 5·18민주부상자 (장해 8~14등급)	50%
국 내 선 항 공 기	애국지사 상이 국가유공자 5·18민주부상자	50%
	기타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30%

□ 이 중 ‘민영버스’ 내역사업은 교통시설이용지원 대상자의 시내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등 이용 운임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 예산안은 전년과 같은 84억 8,400만원이 반영되었음.

□ 그런데, 시내버스 이용 지원금에 대한 미보전액이 계속 누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에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문제가 있음.

○ 국가보훈부는 2022년에 64억 2,800만원이 투입된 교통복지카드 전국호환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2023년부터는 교통복지카드 이용금액을 통해 지원 대상자의 시내버스 이용실적이 정확하게 파악되고 있음.

<시내버스 이용 사업 집행절차>



자료: 국가보훈부

○ 이에 따라 시내버스 이용요금을 대신 납부해 준 '교통복지카드 사업 수행자[47]'에 대해 국가보훈부가 대납액을 정산해 주어야 하는데, 국가보훈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시내버스 무임 탑승에 따른 대납액 111억 5,400만원 중 실제 보전이 이루어진 금액은 72억 6,200만원에 불과함.

<2023년 민영버스 요금 대납·할인액 및 보전액>

(단위: 백만원)

교통수단별	대납·할인액	예산편성액 (보전율)	실집행액 (보전율)	미보전 금액 처리 방안
시내버스	11,154	7,262 (65.1%)	7,137 (63.9%)	'24년 예산에서 집행
시외·고속버스	1,222	1,222 (100%)	1,222 (100%)	-
고속철도	6,217	2,163 (34.8%)	2,163 (34.8%)	예산의 범위 내 보조금 지급
내항여객선	197	82 (41.6%)	197 (100%)	-

주) 2023.1.1.부터 전국호환교통복지카드 사업 시행으로 시내버스 이용요금 실제 대납액 산출 가능

자료: 국가보훈부

47) 2024년 기준 사업 수행자는 신한카드(주)임.

○ 그리고 나머지 40억 1,700만원은 2024년 예산으로 2024년 6월 3일에 보전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4년에 이용한 시내버스 요금에 대한 지원금 예산 잔여액은 31억 8,300만원에 불과하여, 2024년 1분기 사용액(31억 2,000만원)만 정산하더라도 대부분 소진됨.

○ 따라서 2023년에 약 40억원 규모였던 미보전금액이 올해는 80억원 이상(2, 3, 4분기 요금 대납액 대부분 미보전 예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예산안대로라면 내년 말에는 120억원 이상 규모의 미보전액이 누적될 것으로 보임.

□ 이와 같이 전년도 사용분에 대해 보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차년도 또는 차차년도 예산으로 충당하는 집행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48]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추후 대규모 재정이 한꺼번에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을 유발한다는 점에서도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 따라서, '교통시설이용지원' 이용지원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시내버스 이용 지원금 미보전액 누적 문제에 대한 해결 대책을 논의하고, 이를 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8) **「국가재정법」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6. 보훈병원 진료: 보훈병원 진료비 적정 규모 편성 필요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보훈병원 진료’는 보훈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비를 국가가 지원하고 보훈병원정보시스템을 통합·재구축하는 사업으로,[49] 2025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억 6,500만원(0.1%) 증가한 3,922억 9,600만원이 편성됨.

<2025년도 보훈병원 진료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보훈병원 진료	429,261	392,031	392,296	265	0.1
· 보훈병원 진료비	429,080	387,148	385,278	△1,870	△0.4
· 차세대 보훈병원 정보시스템 구축	181	4,883	7,018	2,135	43.7

자료: 국가보훈부

나. 검토의견

보훈병원 진료비는 해마다 예산이 부족하여 대규모 이·전용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2025년 예산안은 올해 예산 대비 18억 7,000만원 감소한 금액이 편성되었는바,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49) 세부사업: 보훈병원 진료(2150-365)

□ ‘보훈병원 진료비’ 내역사업은 보훈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8억 7,000만원(0.4%) 감소한 3,852억 7,800만원이 편성됨.

□ 그런데, 최근연도 보훈병원 진료비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해마다 예산액 대비 집행액의 차이가 상당액 발생하여 대규모 이·전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2023년에는 당초 예산액 대비 초과 집행액(예산부족액)이 393억 8,500만원에 달했음.

<최근연도 보훈병원 진료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5개년 평균	2024년 (7월말)	2025 예산안
본예산 (A)	409,597	381,735	385,503	385,475	389,695	390,401	387,148	
예산현액	400,592	379,018	395,011	384,067	429,080	397,554	387,148	385,278
집행액 (B)	387,988	379,018	395,011	383,634	429,080	394,946	326,000	
과부족 (A-B)	21,609	2,717	△9,508	1,841	△39,385	△4,545	-	-

자료: 국가보훈부

□ 그런데, 2024년 예산은 직전 연도인 2023년 예산·결산 규모와 2019~2023년 5개년 평균 예산·결산 규모에 비해 낮은 수준인 3,871억 4,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7월말 기준으로 이미 3,260억원이 집행(집행률 84.2%)되어 2023년보다 더 큰 규모의 예산

이·전용이 불가피한 상황임.

<2023년 및 2024년 7월말 기준 집행 실적 비교>

(단위: 백만원)

구분	본예산	7월말 기준 집행액 및 집행률
2023년	389,695	236,500 (60.1%)
2024년	387,148	326,000 (84.2%)

자료: 국가보훈부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훈병원 진료비 2025년 예산안은 올해 예산 대비 18억 7,000만원 감소한 금액이 편성되었는바, 예산안 편성 규모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 한편, 본 사업에서는 올해 2회에 걸쳐 55억 9,600만원 규모의 예비비[50]를 배정받아 집행하고 있는데, 동 예비비는 보훈병원 전공의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인력 인건비 용도로 집행 중임.

<2024년 예비비 배정액 및 집행 용도>

(단위 : 백만원)

구분	배정액	용도
1차('24.3월)	3,085	▶ 보훈병원 전공의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인력 인건비 - 전공의 대신 투입되는 전문의 당직비 - 전공의를 대체할 의사, 의료행위를 보조할 간호사 인력 채용비
2차('24.5월)	2,511	
계	5,596	

자료: 국가보훈부

50)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보건복지부 2,003억 9,800만원, 국가보훈부 55억 9,600만원의 예비비가 배정됨.

□ 2024년 10월말 기준 예비비 집행액은 45억 5,700만원으로 3월 최초 배정 이후 8개월간 집행률은 81.4% 수준이며, 연말까지 집행기간이 10개월임을 감안할 때 연도 내에 예비비는 대부분 소진될 것으로 전망됨.

<2024년 예비비 배정액 및 집행 현황>

(2024.10월말 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A)	교부액(B)	실집행액(C)	집행률(C/A)
예비비	5,596	5,596	4,557	81.4%

자료: 국가보훈부

□ 따라서, 의료공백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예상된다면, 보훈병원 인력 공백 방지를 위한 예산을 면밀히 산출하여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7. 위탁병원 진료 : 적정 규모 예산 편성 필요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위탁병원 진료’는 국가유공자 등의 진료를 국가에서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하고 이에 따라 발생한 진료비를 보전하는 사업으로,[51] 2025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72억 200만원(2.8%) 감소한 2,491억 1,300만원이 편성됨.

<2025년도 위탁병원 진료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위탁병원 진료	275,385	256,315	249,113	△7,202	△2.8
· 위탁병원 진료	272,987	253,932	246,715	△7,217	△2.8
· 위탁진료관리비	2,383	2,383	2,383	-	-
· 우수위탁병원인증제	15	-	15	15	순증

자료: 국가보훈부

나. 검토의견

해마다 예산이 부족하여 대규모 이·전용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2025년 예산안은 올해 예산 대비 72억 200만원 감소한 금액이 편성되었는바,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최근연도 동 사업의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해마다 예산액 대비

51) 세부사업: 위탁병원 진료(2150-366)

집행액의 차이가 상당액 발생하여 대규모 이·전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예산액 대비 초과 집행액(예산부족액)이 연평균 107억 3,800만원에 달했음.

○ 이와 같이 예산 부족으로 인한 이·전용이 발생하여 다른 사업의 집행에도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반복됨에 따라, 국회는 정확한 추계를 바탕으로 적정 진료비를 편성하여 예산편성 목적에 맞는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결산 심사과정[52]에서 지속적으로 시정요구하였음.

<최근연도 위탁병원 진료 사업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5개년 평균	2024년 (7월말)	2025 예산안
본예산 (A)	247,893	226,806	234,985	252,556	267,441	245,936	256,315	249,113
예산현액	255,994	251,995	250,511	252,556	275,385	257,288	256,315	
집행액 (B)	255,994	251,995	250,511	249,484	275,385	256,674	193,666	
과부족 (A-B)	△8,101	△25,189	△15,526	3,072	△7,944	△10,738		-

자료: 국가보훈부

□ 그런데, 2024년 예산은 2023년 예산·결산 규모와 2019~2023년 5개년 평균 집행액보다 낮은 수준인 2,563억 1,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7월말 기준으로 이미 1,936억 6,600만원이 집행(집행률

52) 2019회계연도 결산, 2020회계연도 결산, 2021회계연도 결산

75.6%)되어 2023년보다 더 큰 규모의 예산 이·전용이 불가피한 상황임.

<2023년 및 2024년 7월말 기준 집행 실적 비교>

(단위: 백만원)

구분	본예산	7월말 기준 집행액 및 집행률
2023년	267,441	148,880(55.7%)
2024년	256,315	193,666(75.6%)

자료: 국가보훈부

□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탁병원 진료 사업의 2025년 예산안은 2024년보다도 대비 72억 200만원 감소한 2,491억 1,300만원이 편성되었는바, 예산안 편성 규모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8. 보철구 지급 : 보철용 차량 개조지원 사업 집행률 및 사업효과 제고 필요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보철구 지급’은 상이 국가유공자에게 손상된 신체부위를 보완해 주고 생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보철구 또는 차량 보조장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53] 2025년 예산안은 전년과 같은 60억 2,600만원이 편성됨.

<2025년도 보철구 지급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보철구 지급	6,064	6,026	6,026	-	-
· 보철구 지급 및 수리	5,997	5,845	5,845	-	-
· 보철구 담당자 교육	6	6	6	-	-
· 보철용 차량 개조지원	61	175	175	-	-

자료: 국가보훈부

나. 검토의견

보철용 차량 개조지원 사업의 집행 실적이 저조하므로, 대상자에 대한 홍보 및 안내를 적극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집행률 및 사업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53) 세부사업: 보철구 지급(2150-371)

□ ‘보철용 차량 개조지원’ 내역사업은 신체 장애가 있는 상이 국가유공자 등이 본인의 신체 조건에 맞는 보조장치 장착 등 보철용 차량을 개조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부터 신규로 편성되었음.

□ 그런데, 2023년 결산에 따르면 예산액 2억 5,000만원 중 6,164만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이 24.7%에 그쳤으며, 2024년에도 9월말까지 집행액이 4,737만원(예산액 1억 7,500만원의 27.1%)에 불과한 상황임.

<‘보철용 차량 개조지원’ 내역사업 연도별 편성·집행 현황>

(단위: 천원, %)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안)
예산액	250,000	175,000	175,000
집행액	61,640	47,370 (1~9월)	-
집행률	24.7	27.1	-

자료 : 국가보훈부

□ 2024년 9월까지의 월평균 집행액(526만원)을 적용하여 연말까지의 집행액을 예상해 보면, 2024년 집행 예상액은 약 6,316만원(집행률 36.1%), 불용액은 약 1억 1,184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2024년 ‘보철용 차량 개조지원’ 내역사업 집행 실적 예상>

(단위: 천원, %)

연도	9월까지 월평균 집행액(A)	예상 집행액 (A×12)	예상 불용액	예상 집행률
2024년	5,263	63,160	111,840	36.1

자료 : 국가보훈부

□ 이와 같이 내역사업 신규 추진 이후 예산액에 크게 못미치는 집행실적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부는 동 내역사업의 2025년 예산안을 전년과 같은 1억 7,5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바, 이는 합리적인 예산 편성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특히, 국가보훈부는 예산안에 대한 산출근거를 1,500만원×12명으로 제시하였는데,[54] 건당 집행액이 2023년의 경우 294만원, 2024년의 경우 249만원으로 나타났음에도 지나치게 높은 금액으로 건당 지원금액을 설정하였음.

<‘보철용 차량 개조지원’ 내역사업 집행액 및 집행건수>

(단위: 천원, 건)

구분	2023년	2024년(9월말 기준)
집행액(A)	61,640	47,370
집행건수(B)	21	19
건당 집행액(A/B)	2,935	2,493

자료 : 국가보훈부

54) 2024년 예산의 경우에도 동일한 산출식을 적용함.

□ 따라서, ‘보철구 지급’ 세부사업의 2025년 예산안에 대해서는 ‘보철용 차량 개조지원’ 내역사업에서 최근 집행 추세에 비해 과다하게 산출된 부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후, 이를 로봇의족·의수 등 첨단 보철구 지급 및 품질 개선 추진을 위한 예산[55]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겠음.

○ 내역사업을 새롭게 추진한지 이제 3년차를 맞이하는 시점임을 감안하여, 상이 국가유공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대상자에 대한 홍보 및 안내를 적극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집행률 및 사업효과를 제고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55) 국가보훈부는 동 세부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자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요구자료)에 “로봇의족·의수 등 첨단 보철구 지급 및 품질 개선 추진을 위한 예산 반영”을 부처 건의사항으로 제시함(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 P.270.)

9. 제대군인의료지원 : 적정 예산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필요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제대군인 의료지원’ 사업은 전·공상을 입고 전역하였으나 상이등급 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진료비·보철구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23억 6,500만원이 편성됨.

<2025년도 제대군인의료지원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 감 (B-A)	(B-A)/A
제대군인의료지원	4,649	2,365	2,365	-	-

자료: 국가보훈부

나. 검토의견

제대군인 의료지원 사업은 2018년 이래 매년 과소계상으로 인한 부족분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국가보훈부는 예산 편성과정에서 관행적으로 동일한 예산규모와 추계방식을 고수하여 예산 편성 시 동일한 금액을 계상하고 있음.

향후 국가보훈부는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강화하는 등 국회 지적사항을 조속히 수행하여 적정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제대군인 의료지원 사업은 2018년 이래 매년 과소계상으로 인한

부족분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예산 편성 시 동일한 금액을 계상하고 있음.

○ 2018년부터 6년간 보훈병원 진료사업에서 내역변경을 3번하였고, 나머지는 각각 고엽제수당 세부사업/보상금 세부사업/참전명예수당 세부사업에서 1번씩 이용하는 등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에서 이·전용 등이 반복되고 있음.

○ 2024년 또한 7월 기준 집행액이 18억 800만원으로, 2024년도 부족분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부족분은 타 사업에서 이·전용 등으로 충당해야 할 것으로 예상됨.

<연도별 제대군인 의료지원 사업 예산액 및 부족분 발생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A)	집행액(B)	부족분(B-A)	이·전용 등
2018	2,365	5,316	2,951	보훈병원 진료사업에서 내역변경 2,951
2019	2,365	3,269	904	보훈병원 진료사업에서 내역변경 904
2020	2,365	3,275	910	고엽제수당 세부사업에서 이용 910
2021	2,365	3,649	1,284	보상금 세부사업에서 이용 1,284
2022	2,365	3,773	1,408	보훈병원 진료 세부사업에서 내역 변경 1,408
2023	2,365	4,649	2,284	참전명예수당 세부사업에서 이용 2,284
2024.7	2,365	1,808		

자료: 국가보훈부

□ 최근 5년간(2020-2024년) 본예산 산출내역을 보면, 매년 실적단

가의 반영 비율을 임의로 조정하여 총액을 동일한 금액(23억 6,500만원)으로 산출하고 있으며, 이는 2025년도 예산안도 마찬가지임.

○ 국가보훈부는 2023년부터 보훈병원 진료비는 최근 3년간 평균액을 반영한 반면, 위탁병원 진료비는 예산액 23억 6,500만원 중 보훈병원 진료비와 보철구 지급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편성하고 있음.

<2020-2025년 예산규모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본예산	산출내역
2020	2,365	▶보훈·위탁병원 진료비 2,299 - 2018년 실적단가에 최근 3년 진료단가 평균증감율 반영 (단, 위탁병원 약제비 인원은 7.3%만 반영)
2021	2,365	▶보훈·위탁병원 진료비 2,300 - 2019년 실적단가 반영(단, 위탁병원 약제비 인원은 25.2%만 반영)
2022	2,365	▶보훈·위탁병원 진료비 2,301 - 2019년 실적단가 반영(단, 위탁병원 약제비 인원은 25.2%만 반영)
2023	2,365	▶보훈·위탁병원 진료비 2,301 - 2019~2021년 실적단가의 평균값(단, 위탁병원 단가는 53% 수준 반영)
2024	2,365	▶보훈·위탁병원 진료비 2,301 - 2020~2022년 실적단가의 평균값(단, 위탁병원 단가는 53% 수준 반영)
2025	2,365	▶보훈·위탁병원 진료비 2,301 - 2021~2023년 실적단가의 평균값(단, 위탁병원 단가는 45% 수준 반영)

자료: 국가보훈부

<2025년 예산안 산출근거>

(1) 보훈병원 진료 : 1,062백만원(전년 대비 +61백만원, +6.1%)

○ 보훈병원 진료비 소요액 : 1,062백만원

- 2021~2023년 결산인원 및 단가의 평균값 적용

구분	인원(명)				단가(원)				①×②
	2021	2022	2023	① 2025인원	2021	2022	2023	② 2025단가	2025예산 (백만원)
계	6,801	6,619	7,307	**6,909**	154,001	141,798	164,142	**153,745**	1,062
입원	636	320	839	**598**	378,620	337,683	316,867	**344,390**	206
외래	6,165	6,299	6,468	**6,311**	130,829	131,847	144,331	**135,669**	856

(2) 위탁병원 진료 : 1,239백만원(전년 대비 △61백만원, △4.7%)

○ 위탁병원 진료비 소요액 : 1,239백만원

- 2021~2023년 결산인원 및 단가의 평균값을 적용하되,
인원을 실소요의 일부만 반영(입원/외래인원은 45%, 약제비 인원은 41.2%)

구분	인원(명)				단가(원)				①×②
	2021	2022	2023	① 2025인원	2021	2022	2023	② 2025단가	2025예산 (백만원)
계	25,572	27,813	32,965	**12,953**	99,196	99,601	102,715	**95,656**	1,239
입원	3,864	4,212	5,436	**2,027**	101,507	101,674	78,855	**94,012**	190
외래	21,708	23,601	27,529	**10,926**	31,566	30,973	35,673	**32,737**	358
약제	21,708	23,601	27,529	**10,000**	67,218	68,258	71,754	**69,077**	691

(3) 보철구 지급 : 64백만원(전년 동일)

자료: 국가보훈부

<최근 3년 간 위탁병원 진료 내역사업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연도	예산액 (A)	내역	집행액 (B)	집행률 (B/A)
2021	1,237	▸'19년 진료인원 및 단가 반영 * 단, 약제비 인원은 외래인원의 25.2%만 반영	2,537	205.1%
2022	1,237	▸'19년 진료인원 및 단가 반영 * 단, 약제비 인원은 외래인원의 25.2%만 반영	2,770	223.9%
2023	1,186	▸'19~'21년 진료인원 및 단가의 평균값으로 반영 * 단, 단가는 53% 수준으로 반영	3,386	285.5%
2024	1,300	▸'20~'22년 진료인원 및 단가의 평균값으로 반영 * 단, 입원 및 외래단가는 66.3% 수준, 약제비 단가는 40.7% 수준으로 반영		

자료: 국가보훈부

□ 매년 같은 금액이 예산에 계상되기 시작한 2018년 이래 국회는 2019·2020·2021·2022 및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를 통해 매년 동사업 예산추계의 부정확성을 시정·개선할 것을 요구하였음. 이에 국가보훈부는 조치사항으로 “대상별 진료인원 및 단가 등 진료실적의 추이 및 과거 진료비 결산치 등을 고려하여 적정 진료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매년 밝히고 있으나, 몇 년째 개선되고 있지 않음.

○ 국가보훈부는 예산 편성과정에서 관행적으로 동일한 예산규모와 추계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매년 동 사업 예산이 부족함에도 이·전용 등으로 충당이 가능하다는 것은, 국가보훈부의 단위사업별/세부사업별 예산안 편성이 촘촘하지 않고 엉성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함.

○ 부족분을 지급하기 위해 타 사업예산을 이용 또는 전용하는 것은 적정하게 편성된 타 사업의 목적 달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할 수 있음.

□ 향후 국가보훈부는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강화하는 등 국회 지적사항을 조속히 수행하여 적정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동 사업 외에도 전체 사업 전반에 관하여 적정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검토하여 단위/세부사업별로 예산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10. 현충시설 건립 : (가칭)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 사업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현충시설건립 세부사업의 내역사업 중 하나인 “(가칭)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 건립사업은 광복 80주년을 계기로 모든 독립운동이 균형감 있게 계승될 수 있도록 독립운동계열 중심으로 기념관을 조성하여 독립운동에 대한 공감·소통의 장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4억 3,9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됨.

○ 국가보훈부는 동 기념관의 추진배경으로 광복 80주년 계기, 국내에서 일어난 교육·문화·계몽·학생운동 등 다양한 독립운동을 선양·홍보하여 국내 독립운동의 활동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미래세대의 보훈의식을 고취시켜 일상 속 보훈문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밝힘.

<2025년도 (가칭)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 감 (B-A)	(B-A)/A
현충시설건립	12,458	7,083	7,758	675	9.5
(가칭)국내민족 독립운동기념관	-	-	439	439	순증

자료 : 국가보훈부

< 사업개요 >

○ 사업위치 : 수도권 등
○ 사업기간 : '25~27년(3년)
○ 소요예산 : 245억원
○ 사업규모 : 지하 1층 ~ 지상 2층(연면적 5,000㎡)
○ 사업내용 : 다목적교육장, 전시실, 회의실 등

자료 : 국가보훈부

○ 동 사업의 총 예산은 245억원으로, 이 중 2025년도 예산안은 기본조사설계비 3억 9,900만원과 시설부대비 4,000만원 등 총 4억 3,900만원으로 편성됨.

< 연도별 투자계획 >

(단위: 백만원)

구 분		'25년	'26년	'27년
설계비	1,330	399	931	-
공사비	20,600	-	6,180	14,420
감리비	2,370	-	711	1,659
시설부대비	200	40	40	120
합 계	24,500	439	7,862	16,199

자료 : 국가보훈부

< 사업비 세부산출내역 >

구분	세부산출기준
총사업비	**24,500백만원**
설계비	○ **설계비 : 1,330백만원** - 총공사비 20,600백만원×0.0451 ≒ **930백만원** - 보상비, 인·허가 용역비 등 = **400백만원** * 공사비×건설부문요율 * '25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세부지침(실시설계요율) <추가비용> ① 설계공모 보상비: 200백만원 ② 인허가 등 비용 : 200백만원
공사비	○ **공사비 : 20,600백만원** - 건립공사: 3,118,522원/㎡ × 5,000㎡ ≒ **15,600백만원** * <조달청 유형별(전시시설)공사비 현황> ① 호남호국기념관 건립: 연면적 4,898.62㎡, 공사비 135억원(2,743,749원/㎡) ② 해양생태과학관 건립: 연면적 7,776.83㎡, 공사비 211억원(2,707,495원/㎡) ③ 한국가스안전공사 체험교육관 건립: 연면적 2,153.8㎡, 공사비 346억원(3,456,770원/㎡) ④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 연면적 17,318.88㎡, 공사비 618억원(3,566,071원/㎡) → **단위면적당 공사비 평균값 적용 : 3,118,522원/㎡** ※ 현재 공사비는 낙찰률이 적용된 금액임 - 전시공사: 500평(1,650㎡) × 10백만원 = **5,000백만원** * 평당 단가 기준 :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전시관 구성 단가(10백만원)
감리비	○ **감리비 : 2,370백만원** - 총공사비 20,600백만원×0.0897 ≒ **1,849백만원** - 조달청 맞춤형 서비스 수수료 = **521백만원** * 공사비×건설부문요율 * '25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세부지침(감리비 요율) * 기획·설계관리 맞춤형서비스 수수료 : 214,200,000원 40,000,000,000 * 0.0042 = 168,000,000 10,000,000,000 * 0.00462 = 46,200,000 * 시공관리 맞춤형서비스 수수료 : 306,900,000원 40,000,000,000 * 0.00598 = 239,200,000 10,000,000,000 * 0.00677 = 67,700,000
시설부대비	○ **시설부대비 : 200백만원** - 총공사비 20,600백만원×0.0023 ≒ **50백만원** - 토지측량, 개관식, 착공식 등 기타 비용 = **150백만원**

자료: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는 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가칭) 건립 배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음.[56)]

○ 동 사업은 2025년 광복 80주년을 계기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이전에도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계기 사업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을 추진한 바 있음. 또한, 기존 기념관들은 독립운동가(인물) 중심으로 되어 있어, 다양한 분야의 독립운동 활동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데에는 다소 미흡하다는 문제제기와 독립운동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독립기념관과의 관람을 연계시킴으로써 더 많은 국민들이 찾을 수 있도록 동 기념관 건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 이에, 특정 독립운동가(인물) 중심이 아닌 국내에서 일어난 교육, 문화, 계몽 및 학생운동 등 다양한 독립운동 분야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후대에 계승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으며, 전시 내용은 독립운동 분야별로 국민들이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체험 프로그램 위주로 구성할 계획임.

○ 사업부지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으며, 현재 다양한 후보지를 검토 중에 있음.

다. 검토의견

56) '보훈부 "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가칭) 건립은 다양한 분야의 독립운동 알리기 위한 것"',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2024.9.30

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가칭)의 건립공사비는 과소계상된 측면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건립공사비가 증가하게 되면 총공사비에 연동되어 설계비와 감리비도 증가하게 되는바, 국가보훈부는 총사업비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국가보훈부는 사업부지가 확정되지 않는 등 사업 추진 여건이 충분히 성숙되지 못한 상황에서 현충시설 건립 추진을 최대한 지양할 필요가 있음

① 총사업비 관리 철저

□ 국가보훈부는 동 기념관의 건립공사비를 산출하기 위해 호남호국기념관, 해양생태과학관, 한국가스안전공사 수소 가스안전 체험교육관, 국립인천 해양박물관 등 4개 전시시설의 단위면적당 공사비 평균값인 ㎡당 3,118,521원을 적용함.

<국가보훈부 공사비 산출근거 전시시설>

공사명	발주년월	연면적	㎡당 공사비
호남호국기념관	2017.10	4,898.62㎡,	2,743,749
해양생태과학관	2022.03	7,776.83㎡	2,707,495
한국가스안전공사 수소 가스안전 체험교육관	2021.08	2,153.8㎡	3,456,770
국립인천 해양박물관	2021.07	17,318.88㎡	3,566,071
평균			3,118,521

자료: 조달청 공사비 정보광장

□ 그러나 국가보훈부가 적용한 4개 기관 중 호남호국기념관은 2017년 10월, 국립인천 해양박물관은 2021년 7월, 한국가스안전공사 수소 가스안전 체험교육관은 2021년 8월에 각각 발주되었고 연면적 또한 2,153.8㎡~17,318.88㎡으로, 그동안의 공사비 상승 및 연면적에 따라 평균 금액이 상이함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실제로 2022년부터 2024년 9월까지 발주한 박물관 및 기념관의 ㎡당 건립공사비를 살펴보면, 2022년 4개 시설 평균 3,615,486원, 2023년 3개 시설 평균 4,369,475원, 2024년 1개 시설 3,740,663원으로, 8개 시설의 전체 평균 ㎡당 공사비는 3,913,879원으로 나타남.[57]

<2022~2024년 박물관·기념관 공사비 현황>

연도	공사명	발주년월	연면적	㎡당 공사비(원)
2024	국립충주박물관	2024.04	8,964.51㎡	3,740,663
2023	국립소방박물관	2023.10	4,772.29㎡	4,042,584
	진주 실크박물관	2023.04	2,932.31㎡	4,829,161
	국토녹화 50주년 기념관	2023.03	3,841.23㎡	4,236,680
	2023년 평균			**4,369,475**
2022	국립광주박물관 도자문화관	2022.12	7,137.15㎡	3,386,313
	국립나주박물관 디지털 복합문화관	2022.10	4,392.57㎡	4,222,225
	임당유적전시관	2022.09	4,942.25㎡	3,679,034
	달성 화석박물관	2022.04	5,915.68㎡	3,174,370
	2022년 평균			**3,615,486**
전체 평균				**3,913,879**

자료: 조달청 공사비 정보광장

57) 연면적이 4,000~5,999㎡인 4개 전시시설의 평균 ㎡당 공사비는 3,779,553원임.

□ 한편, 동 기념관의 후보지인 수도권 중 서울시의 「2022년 공공건축물 건립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연면적 5,000㎡의 전시·박물관을 신축하는 경우 면적당 공사비는 460만원/㎡임.[58] 경기도는 서울시의 가이드라인과 조달청 공사비 정보광장의 유형별 예상공사비(2022~2024년 평균 ㎡당 공사비 3,779,553원)를 참고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2022년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전시·박물관)>

(단위: 천원/m2)

구분	신축	증축(수평)	증축(수직)	비고
3,000m2 미만	4,811	4,571	4,137	전시물 및 전시대 설치비 제외
3,000m2~5,000m2	4,646	4,454	-	
5,000m2~10,000m2	4,578	4,363	-	
10,000m2초과	4,519	4,293	-	
평균	4,598	4,366	-	

자료: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2022년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제 동 기념관의 건립공사비는 과소 계상된 측면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건립공사비가 증가하게 되면 총공사비에 연동되어 설계비와 감리비도 증가하게 되는바, 국가보훈부는 총사업비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 건립공사비 외에도, 국가보훈부는 토지매입비는 계상하고 있지 않은

58) 서울시 가이드라인 또한 2022년에 작성된 것으로, 2025년 실제 건립공사비와는 괴리가 있을 수 있음.

바, 토지매입비 비용도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함.

② 사업 지연 우려

□ 국가보훈부는 2025년 1월~2월에 공모 계획 수립 및 사전 절차(건축심의 등) 이행을 완료하고, 2025년 3월~7월에 설계 공모 및 계약을 완료한 후 2025년 8월부터 11개월간 기념관 설계 및 인허가 절차를 수행하며, 2026년 7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기념관 공사 및 준공을 할 계획이라고 밝힘.

< 추진계획 >

○ ('25.1~2월) 공모 계획 수립 및 사전 절차(건축심의 등) 이행
○ ('25.3~7월) 설계 공모 및 계약
○ ('25.8~26.6월) 기념관 설계 및 인허가 절차 수행
○ ('26.7~27.12월) 기념관 공사 및 준공

자료 : 국가보훈부

□ 현재 국가보훈부는 사업부지는 확정된 바 없으며, 현재 다양한 후보지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힘.

그러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세부지침」 및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대가기준」에 따르면, 사업부지가 확정되지 않으면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대가기준」에 따른 기획업무[59]가 완료될 수 없음. 기

획업무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본조사설계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2025년도에 계상된 기본조사설계비의 집행이 가능할지에 대해 의문이 존재함.

○ 국가보훈부는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 사업, ‘독립의 전당 건립’ 사업 및 ‘양산시 보훈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할 때에도 건립 부지를 확정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세 사업 모두 첫 해 예산이 거의 집행되지 못함.

-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 사업은 건립 부지 미확보로 인해 2016년에 예산 10억원 중 2,000만원만을 집행(집행률 2.0%)하였고, 2017년에는 예산 10억원 전액을 불용하였으며, 2018년에는 예산 66억 3,000만원 중 3억 9,200만원만을 집행(집행률 5.9%)함. 설계 공모는 2018년 2월 5일에야 완료되었고, 이후 공사 진행도 계획보다 지연되어 2022년이 되어서야 개관함.

- ‘독립의 전당 건립’ 사업 또한 2016년부터 추진하였으나, 건립 부지 문제[60]로 인해 2016년 10억원 및 2017년 20억원이 전액 불용되었고,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바 있음.

- ‘양산시 보훈공원 조성’ 사업은 예산이 편성된 2017년 부지 미확정

59) 기획업무는 건축물의 규모 검토, 현장조사, 설계지침 등 건축설계 발주에 필요하여 발주자가 사전에 요구하는 설계업무로서 공간계획(법규검토, 개략배치도, 대지종횡단면도, 개략평면도, 개략단면도), 현장조사(대지 및 주변현황 확인, 대지 및 주변현황 분석, 사용자 조사, 기존 시설물 분석), 설계지침서, 프로젝트 공정표, 기존 유사건물조사 비교 등의 내용이 포함됨.

60) 부지가 문화유산보호구역·공원 내에 위치하여 문화유산현상변경 승인 및 도시계획변경 승인을 받아야 함에 따라 건립이 지연됨.

으로 인해 수시배정사업으로 지정되어 예산액 2억원 중 2,700만원만 집행(집행률 13.5%)됨.[61]

□ 국가보훈부는 향후 사업부지가 확정되지 않았거나, 건립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는 등 사업 추진 여건이 충분히 성숙되지 못한 상황에서 현충시설 건립 추진을 최대한 지양할 필요가 있음.

61) 집행액도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것임.

11. 현충시설 건립 : 독립의 전당 2025년 예산 집행가능성 검토 필요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현충시설건립’사업은 현충시설 건립을 통하여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의 공훈과 희생을 기리고 국민의 보훈의식을 함양하려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보다 6억 7,500만원(9.5%) 증가한 77억 5,800만원이 편성됨.

○ 동 세부사업의 내역사업 중 하나인 “독립의 전당” 건립사업은 독립을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들의 정신을 기릴 위패봉안관을 건립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8억 8,800만원이 증액된 70억 3,400만원이 편성됨.

<2025년도 현충시설건립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 감 (B-A)	(B-A)/A
현충시설건립	12,458	7,083	7,758	675	9.5
독립의 전당	421	4,146	7,034	2,888	70.0

자료 : 국가보훈부

□ 독립의 전당 건립 사업은 2008년 기존 서대문독립공원 내 독립관의 ‘순국선열 위패봉안관’이 협소하고 시설이 노후하여 순국선열에 대한 예우에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추진된 사업으로, 2015년

광복 70주년 기념사업으로 선정된 후 2016년 예산에 사업예산이 최초로 반영되었음.

그러나 당초 선정한 부지가 문화유산보호구역·공원 내에 위치하여 문화유산현상변경 승인 및 도시계획변경 승인을 받아야 함에 따라 건립이 지연되었고, 이로 인해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편성된 예산 10억원과 20억원은 전액 불용되었음.

2018년부터는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있다가, 2022년부터 다시 예산이 편성되어 2025년에 시설이 완공될 예정임.

<독립의 전당 사업 개요>

○ 사업시행주체 : 국가보훈부 ○ 사업위치 : 서대문독립공원 내(서대문구 현저동 101번지) ○ 사업기간: 2022~2025년(4년) ○ 사업규모: 지하1층, 지상1층, 연면적 2,552㎡ ○ 주요시설 : 위패봉안실, 체험 교육장, 사무실, 편의시설 등 ○ 총사업비 : 11,900백만원(전액 국비)

자료: 국가보훈부

<독립의 전당 연도별 편성 집행 내역>

(단위 : 백만원)

연 도	2022		2023		2024	
구 분	예 산	집 행	예 산	집 행	예 산	집 행
금 액	226	152	494	373	4,146	-

자료: 국가보훈부

□ 2025년도 예산안 70억 3,400만원은 잔여 공사비(2년차) 60억 5,600

만원, 감리비 9억 5,800만원, 시설부대비 2,000만원으로 구성됨.

<2025년 독립의 전당 내역사업 예산안 편성 내역>

○ 독립의 전당 건립 : 70억 3,400만원 - (공사비) 공사비 배분(4:6)에 따른 2년차 공사비 60억 5,600만원 - (감리비) 건설사업관리를 위한 2년차 감리비 9억 5,800만원 - (시설부대비) 조달수수료 등 2,000만원

자료: 국가보훈부

나. 검토의견

독립의 전당 건립 사업은 주요 인·허가 심의에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당초 계획 대비 사업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국가보훈부는 동 사업의 지연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해야할 것으로 보이며, 2025년 예산의 집행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독립의 전당 사업은 2024년 9월말 기준 예산현액 41억 9,500만원 중 40만원이 집행(집행률 0.02%)되었음. 집행액은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관련 조경 분야 자문 수당'임.

집행 부진 사유에 대해 국가보훈부는 독립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의 공원조성계획 심의에 기간이 소요되어 집행실적이 부진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2022~2024.9. 독립의 전당 사업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2022	226	-	-	226	152	69	5	67.3
2023	494	69	-	562	421	49	93	74.9
2024.9.	4,146	49	-	4,195	1	-	-	0.02

자료: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는 2024년 9월 문화유산위원회 허가사항에 대해 변경 허가가 결정되었고, 독립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관련 주요 인·허가 협의가 완료된 상황이므로 2024년 11월까지 인·허가 관련 최종 조치 의견을 실시설계에 반영한 후, 공사 관련 계약을 2024년 12월에 실시할 계획이라는 입장임.

이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2024년 예산액 41억 4,600만원 중 14억 6,800만원을 연내 집행하고, 21억 7,300만원은 이월하며 5억 500만원을 불용할 예정이라고 밝힘. 또한, 연내 착공 및 선금 지급 검토 등을 통해 이월액을 최소화하고 2025년의 경우 연차계약 2년차에 대한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 집행을 완료하겠다고 설명함.

<2024년 예산액 집행예상액 및 이월·불용예상액>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집행예상액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공사비(420-03목)	3,404	1,191	1,788	425
감리비(420-04목)	638	223	335	80
시설부대비(420-05목)	104	54	50	-
계	4,146	1,468	2,173	505

자료: 국가보훈부

□ 그러나, 실시설계 완료 후 공사 입찰공고의 기간을 고려하면 연내에 공사 관련 계약 체결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임.

○ 실시설계 완료 후 공사 입찰공고를 거쳐 낙찰자를 선정·계약하고 착공해야 하는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62]에 의하면 입찰공고만 최소 5~40일이 소요됨. 입찰공고 기간 외에 조달청에 입찰을 협의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낙찰자 선정 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11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한다고 가정해도 연내에 공사 관련 계약 체결은 시간이 촉박함.

□ 당초 국가보훈부는 2023년 실시설계 완료를 전제로 2024년 상반기 이후 공사 착공을 감안하여 공사비를 2개년에 결쳐 편성함.

6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①~③ (생 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2020. 5. 1.>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1의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⑤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제43조의3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독립의 전당 건립 사업 공사비 및 감리비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4	2025	합계
공사비	3,404	6,056	9,460
감리비	638	958	1,596

자료: 국가보훈부

<독립의 전당 건립 추진계획 대비 집행현황>

구분	계획	현황
실시설계 착수	2022.12.	2022.12.
국가유산청 협의	2023.3. ~ 2023.6.	2023.3. ~ 2023.6.
도시공원위원회 협의	2023.10. ~ 2023.12.	2023.10. ~ 2024.8.
실시설계 완료	2023.12.	2024.11. 목표
공사 계약	2024. 상반기	2024.12. 목표
착공	2024. 상반기	2024.12. 목표
완공	2025. 하반기	미정

자료: 국가보훈부

□ 이를 종합하면, 동 사업은 2024년 내에 공사비 집행이 어려워 이월액이 큰 규모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국가보훈부는 동 사업의 지연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해야할 것으로 보이며, 사업 지연을 감안하여 2025년 예산의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12. 광복 80주년 기념사업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은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함께 참여하고, 사회적 통합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현재의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데 기여하려는 신규 세부사업으로,[63] 2025년도 예산은 97억 3,900만원이 편성됨.

○ 동 사업은 ① 분야별 독립운동의 가치 및 순국선열의 희생·헌신을 전국민이 기억·감사하는 ‘기억·감사 계기행사’사업, ② 숭고한 정신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 갈등을 넘어 국민통합을 이루어낼 수 있는 ‘화합·평화 계기행사’사업, ③ 분야별 독립운동의 가치 및 순국선열의 희생·헌신이 미래세대에게 전승될 수 있는 ‘미래·희망 계기행사’사업 등 총 3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2025년도 광복 80주년 기념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 감 (B-A)	(B-A)/A
광복80주년 기념사업	-	-	9,739	9,739	순증

자료: 국가보훈부

나. 검토의견

63) 세부사업: 광복80주년기념사업(3147-419)

(1) 계속 사업과 연계한 종합추진계획 마련 필요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은 전국 단위의 행사 위주인 대규모 선양사업으로 기획·구성된 바, 독립운동 수집사료 분석, 학술연구 활성화 등 계속사업과 체계적으로 연계한 종합 추진 계획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국가보훈부는 구체적인 사업예산 편성에 대해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은 대국민 제안 공모 등을 통해 보훈부가 기 추진 중인 계속사업과 차별화되는 전국 단위의 대규모 선양사업으로 기획하고 구성”하였다고 밝힘.

<광복 80주년 기념사업 예산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명	사업 예산	주요사업 산출내역
기억·감사 계기행사	독립운동가 및 순국선열 감사캠페인	2,220	▶· 공익광고 등 제작·홍보: 1,214백만원, TV 프로그램 제작·편성 : 1,000백만원
	광복 80주년 계기 특별전	900	▶ 독립기념관 내 특별기획전: 290백만원, 5개 대도시 특별기획전 : 584백만원
화합·평화 계기행사	‘광복 2025 국민통합 문화예술축제	1,380	▶공연단체 섭외 700백만원, 행사 운영 674백만원
	빛으로 하나 된 대한민국	2,339	▶대형 태극기 등 제작·설치(17개 시·도) : 504백만원, 미디어 파사드 전시 및 불빛쇼 1,800백만원
미래·희망 계기행사	광복 80주년 경축 드론쇼	2,530	▶행사장 구성비(드론, 무대 등) : 1,250백만원, 프로그램 운영 : 750백만원, 기타운영(홍보 등) : 524백만원
	광복 80주년 기념 키트 및 타임캡슐 제작	370	▶키트 제작 : 120백만원, 타임캡슐 제작 지원 : 224백만원

자료: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는 지난 2월 5일부터 3월 8일까지 약 한 달간 국민제안을 공모함. 대국민 공모는 ▲기억·감사 ▲국민통합 ▲미래비전 등 세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됐고, 총 246건이 접수됨. 기억·감사는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이를 계승·발전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국민통합은 우리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함양하고 일상에서 보훈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사업으로, 미래비전은 광복 100주년의 비전과 대한민국이 나아갈 좌표를 제시하는 내용으로 아이디어가 모임.

□ 그러나, 동 사업 예산 97억 3,900만원 중 광복 2025 국민통합 문화예술축제(13억 8,000만원), 빛으로 하나 된 대한민국(23억 3,900만원), 광복 80주년 경축 드론쇼(25억 3,000만원) 등의 사업은 “우리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함양하고 일상에서 보훈문화를 조성하고, 광복 100주년의 비전과 대한민국이 나아갈 좌표를 제시”하는 목적을 위한 최선의 수단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존재함.

2019년에 편성된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총 예산 50억원)’ 및 ‘광복 70주년 기념사업(총 예산 63억 3,200만원)’과 비교해보면, 이는 더 극명히 대비됨.

○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은 항일독립운동의 핵심적인 입증자료인 일제강점기 수형기록 조사, 독립운동 e-아카이브 구축, 국제 학술포럼, 교육홍보자료 제작 등의 사업을 수행함.

○ ‘광복 70주년 기념사업’은 남북공동 사료발굴 전시, 학술회의 3회 개최(미・중 지역 항일독립운동 재조명, 남북공동 학술회의, 한인 독립운동과 러시아), 남북공동 안중근의사 생가복원·기념관 건립, 생존애국지사 구술채록 자료집 발간, 해외 수집 독립운동 사료 전시회, 한·중 항일투쟁 역사 기록물 등 특별 교류전, 독립운동가 인명사전 편찬 등 행사 위주가 아닌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함.

<2019년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예산내역>

(단위: 백만원)

내역 사업명	예산액	사업내용
합 계	5,000	
・기념사업추진위원회	1,345	’18년 1월 출범 예정인 ‘3·1운동 및 임정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임차·시설비 등
・3·1운동관련 지역별 수형기록 발굴수집	258	항일독립운동의 핵심적인 입증자료인 일제강점기 수형기록을 전수 조사・수집・분석하여 포상대상 발굴
・독립운동 e-아카이브 구축	402	독립기념관, 국사편찬위원회, 국가기록원 등에 산재되어 있는 독립운동 및 독립운동가들의 관련 자료를 3・1운동 100주년을 계기로 손쉽게 검색, 활용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이버 공간 마련
・인류역사에 길이 남을 3·1운동 100주년 국제 학술포럼	400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포럼
・100주년 관련 교육홍보자료 제작	195	3·1절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에 대한 역사적 의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 과정, 활약상 등을 IT기술과 접목된 VR(가상현실) 콘텐츠를 제작하여 청소년들과 국민들의 관심 제고
・100주년 기념음악 제작 발표 ‘위대한 유산’	1,000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순국선열·애국지사의 희생과 공헌에 감사하는 헌정음악을 제작하고, 콘서트 개최 및 방송 프로그램 편성을 통해 국민과 공유
・대한민국 독립의 역사를 담은 문화콘텐츠 제작	500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역사적 의미를 알리기 위한 다큐멘터리 제작
・천만 릴레이 3·1 만세운동 재연행사 ‘독립의 횃불’	800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3·1독립만세운동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구성하여 애국 선열의 정신을 전 국민에 확산
・애국선열 추모 대국민 온라인 캠페인	100	애국선열에 대한 감사와 추모에 전 국민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캠페인 추진

자료: 국가보훈부

<광복 70주년 기념사업 예산내역>

사업명	예산액	사업내용
합 계	6,332	
독립 명예의 전당 건립	-	독립유공자 2만여명의 위패를 모시는 독립의 전당 건립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
독립운동가 인명사전 편찬	700	독립운동가의 생애와 활동, 발자취 등을 정리·보존
상해·중경 임시정부청사 재개관	467	노후화된 상해(9월), 중경(11월) 임시청사 리노베이션, 재개관
한·중 항일투쟁 역사 기록물 등 특별 교류전	331	'독립기념관'과 '광동혁명역사박물관'이 항일운동 공동 역사 기록물에 대한 공동 교류전 개최
창작 오페라 「박상진」 공연	149	대한광복회(100주년) 설립자이자 독립운동가인 박상진 의사의 삶을 오페라를 통해 재조명
광화문 광장 내 대형 태극기 구현	400	광화문 광장에 유명 설치 작가와 함께 '태극기'를 새롭게 해석하는 조형물 구현 및 기념행사 실시
무명 애국자의 삶 공모전	100	국민공모를 통해 70개의 무명애국자의 삶과 광복 관련 스토리를 테드엑스(TEDx)화 추진 등
대한민국 70일간의 여정 프로젝트	662	현충일, 6.25, 정전기념일(7.27), 광복절 등 계기행사로 선열들에 대한 존경·감사, 평화 그리고 통일의 꿈을 보여주는 행사
광복절 해외 경축행사 지원	661	해외 독립운동 관련 지역에서 열리는 기념식을 통해 한민족의 하나됨을 과시, 정부대표단 파견
광복70년 경축음악회	325	광복70년을 맞아 독립기념관에서 국내 3대 소프라노(조수미, 신영옥, 홍혜경)가 협연하는 품격있는 연주회 개최
2030세대 독립과 미래창조 순례단	120	2030세대들의 애국심·자긍심 고양을 위해 日동경, 美서부·동부의 외교 독립운동 유적지를 순례
한·중 청년 자전거 대장정	402	언론(조선일보)과 함께 한·중 청년 20명을 공모하여 독립운동의 현장인 중경 → 상해까지 자전거 대장정(1,881㎞)
청년세대 분단극복 프로젝트	400	분단 미극복 원인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국제포럼 개최, 독일 현장방문·청년교류를 통해 통일 한반도를 현장체험한 후 전 과정을 KBS 다큐로 방영

사업명	예산액	사업내용
청소년 나라사랑 탐방단	500	청소년과 함께하는 中동북3성·러시아·국내지역 독립운동 사적지 탐방과 광복 페스티발을 통해 청소년의 역사의식과 나라사랑 정신 고취
한인독립운동과 러시아 (학술대회)	45	잘 알려지지 않은 러시아 지역에서의 한인독립운동 재조명
미·중 지역 항일독립운동 재조명 (학술대회)	150	미·중 지역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 고찰
대학생 통일희망 캠퍼스	150	주요 대학의 정규과정을 활용, '분단극복 우리 힘으로'를 주제로 대학생들이 직접 통일관련 콘텐츠 제작·기획 * 한양·숙명·청주대 등 10개 학교
국외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행사	130	국외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후손(6개국 25명)을 초청하여 광복절 경축식 참여 및 현충원, 독립기념관 등 방문
해외 수집 독립운동 사료 전시회	30	미국, 프랑스 등에서 수집한 공개되지 않은 사료 전시회 실시 (광화문,독립기념관)
생존애국지사 구술채록 자료집 발간	110	생존 애국지사의 삶을 직접 구술 채록하여 가치있는 자료로 제작 및 발간 (11명 대상)
남북공동 안중근의사 생가복원· 기념관 건립	-	안중근 의사 고향인 황해도에 안중근의사 생가복원 및 기념관 건립 사업 실시('15~'19년) * (총리실) '16년부터 예산 반영
남북공동 학술 회의·사료발굴	500	남북 함께 독립운동 사료발굴 및 교류전시, 학술회의 개최

□ 국가보훈부는 지난 3월 19일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대통령 업무보고)' 및 4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계승 방안'을 발표하면서 무장, 외교, 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독립운동 수집 사료를 분석하고 학술연구를 활성

화해 학문적 기반을 구축함과 동시에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 공적을 재평가하고 추가 발굴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 전국 단위의 대규모 선양사업인 광복 80주년 기념사업만으로는 “우리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함양하고 일상에서 보훈문화를 조성하고, 광복 100주년의 비전과 대한민국이 나아갈 좌표를 제시”하는 목적 달성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국가보훈부는 광복 80주년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독립운동 수집사료 분석, 학술연구 활성화 등 계속사업과의 체계적인 연계를 고려한 종합 계획 수립·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성과 측정을 위한 성과지표 설정 필요

□ 국가보훈부는 동 세부사업에 대해 별도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지 않았음.

□ 그러나 동 사업은 예산액이 약 1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의 행사사업인 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여부를 지속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국가보훈부는 참가자 만족도 등 동 사업의 추진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별도로 설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13. 국립묘지조성 : 국립연천현충원 착공 지연에 따른 적정 공사비 편성 필요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국립묘지조성’ 사업은 국가유공자의 고령화에 따른 안장수요 증가로 국립묘지 안장 여력이 부족해짐에 따라 국립묘지를 추가 조성하여 안장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64]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56억 7,100만원(206.2%) 증가한 381억 2,300만원이 편성됨.

< 2025년도 국립묘지조성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B)	증 감 (B-A)	
		본예산	추경(A)			(B-A)/A
국립묘지조성	16,687	12,452	12,452	38,123	25,671	206.2
연천현충원조성	3,702	3,797	3,797	38,111	34,314	903.7

자료: 국가보훈부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연천현충원조성’ 사업은 50,000기 규모의 봉안시설 및 부대시설을 확충하고자 2019년 시행되었고, 당초 2025년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2023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실시하게 되어, 사업 기간이 연장되어 2026년 공사가 완료될 예정임.

64) 세부사업 : 국립묘지조성(3250-364)

< 국립연천현충원 조성사업 개요 >

○ 사업시행주체 : 국가보훈부 ○ 사업부지 :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산 120번지 외 939,200㎡(28.4만평) ○ 연면적 : 12,917㎡(지하 1층, 지상 3층) ○ 사업기간 : 2019년 ~ 2026년(7년) ○ 주요시설 : 50,000기 규모 봉안시설 및 부대시설(봉안당 2만5천기, 봉안담 2만기, 자연장 5천기) ○ 총사업비 : 1,263억원(2019년 980억원 → 2022년 1,020억원 → 2024년 1,263억원)

자료: 국가보훈부

나. 검토의견

국립연천현충원 조성사업은 당초 공사 계획 대비 실제 추진 일정이 지연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공사 일정 및 계획 대비 추진 가능성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적정 공사비를 산정할 필요가 있음.

□ ‘연천현충원조성’ 사업의 초기부터 2022년까지의 공사 추진 일정은 2023년 공사를 착공하여 2025년 완공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공사비는 총공사비를 3개년에 2:4:4의 비율로 배분한 금액이었음.

< 연천현충원조성 사업 초기 공사 계획 >

(단위: 백만원)

연도	공사기간	총사업비 중 공사비 부분				비고
		합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19년 ~ 2022년	23-25	74,216 (배분비율)	14,844 (0.2)	29,686 (0.4)	29,686 (0.4)	

자료: 국가보훈부

□ 그런데, 동 사업은 2023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실시하게 되면서 설계용역이 중지되어, 2023년 공사비로 편성되었던 예산 112억 3,200만원 중 1억 1,800만원을 제외한 111억 1,400만원을 불용하게 되었고, 2024년 공사비는 연내 착공이 불가능하여 36억 1,100만원의 예산만을 공사비로 편성[65]하였으나, 2024년 9월 기준 이월액 1억 1,800만원만을 집행하였음.[66]

< 연천현충원조성 사업 공사 계획 변동 현황 >

(단위: 백만원)

연도	공사기간	총사업비 중 공사비 부분						
		합계	2023년	2024년(9월 기준)			2025년	2026년
			기투자액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예산안	계획
2024년	24-26	98,696	118 (이월)	3,611	3,729	118	36,023	58,944

자료: 국가보훈부

□ 한편, 동 내역사업의 2024년 공사의 계획 대비 추진 실적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국가보훈부의 2024년도 국가보훈발전 과제별 실천계획(2024. 1.)은, 국립연천현충원 조성공사를 '24년도 착공하여 '26년도 완공하는 것으로, '24년도 각 분기 세부 추진 일정은 1/4분기 계약요청, 2/4분기 용역계약, 3/4분기 공사 착공, 4/4분기 공사 진행으로 계획되어 있었음.

65) 국가보훈부 2024년 확정예산 설명자료에 따르면, 2023년 공사비 이월분 112억 3,200만원을 감안하여 2:5:3의 비율로 배분한 금액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2023년 이월금액은 36억 1,100만원임.

66) 1억 1,800만원은 연천현충원 진입도로 공사로 집행되었고, 2024년 예산 36억 1,100만원은 공사 계약 선금으로 집행할 예정이라고 함(국가보훈부).

○ 그러나, 2024년도 3월 입찰공고가 유찰(6월)되어 6월 20일 재공고가 이루어짐에 따라(개찰일시 10월 22일), 조성공사 계약은 계획 대비 최소 5개월이 도과한 '24년도 11월 말이 되어서야 체결될 예정임.

< 국립연천현충원 조성사업 계획 대비 추진 현황 >

내역사업	시기	계획	실제 추진 현황
국립연천현충원 조성사업	계약 요청 (입찰공고)	'24년 1분기	'24년 3월(유찰)
			'24년 6월 21일
	계약 체결	'24년 2분기	'24년 11월 말 ('24년 10월 22일 개찰)
	착공	'24년 9월	-
	완공	'26년 12월	-

자료: 국가보훈부

□ 또한, 「공사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67]에 따르면,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최소 20일의 착공 준비기간이 부여되어야 하므로 국립연천현충원 조성공사의 착공은 '25년도 1

67)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80호)** 제17조(착공 및 공정보고)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규모·난이도·성격을 고려하여 착공일을 결정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일자 이전의 날짜로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재해복구 등 긴급하게 착공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공사계약 및 장기계속공사의 1차 계약 이후 연차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호에서 정한 일자 이전의 시점으로 착공일을 결정할 수 있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20일

월이 되어서야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입찰공고서상 공사기간[68]을 고려할 때, 완공은 '27년도 4월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즉, 국립연천현충원 조성 공사는 계획 대비 계약 체결과 착공 지연, 관련 규정 및 공사기간 등을 고려할 때, 2025년도 기준 잔여기간이 3년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이상을 종합하면, 연천현충원조성 공사는 사업 초기부터 공사기간을 3개년으로 계획하여 진행되었고,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이행 및 입찰계약 지연으로 인하여 2023년 및 2024년 공사 착공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상황이므로 공사기간을 2027년까지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 그런데, 동 내역사업의 2025년도 공사비 예산은, 2026년 완공을 전제로 공사비 잔액을 4:6의 비율로 2개년 배분한 금액으로 산출된 금액을 편성하였음.

< 국립연천현충원 조성사업 2025년도 공사비 산출 근거 >

- (공사비) 공사진행에 따른 공사비 잔액 2개년 배분(4:6) * 공사비: 36,023백만원=98,696 × 36.5%

자료: 국가보훈부

68) 입찰공고서 1. 공사개요 1.5. 공사기간: 착공일부터 840일

□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잔여기간이 2년인 경우 공사비를 연차별 5:5로 배분하되, 소규모 건축사업(공사기간 2년)은 4:6의 비율로 배분하도록 하고 있으나, 잔여기간이 3년인 경우에는 3:4:3의 비율로 배분하도록 하고 있음.

< 공사비 연차별 투자배분 기준 >

잔여기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1년	100						
2년	50	50					
3년	30	40	30				
4년	20	20	30	30			
5년	15	15	20	30	20		
6년	10	10	15	20	25	20	
7년	10	10	10	15	15	20	20

* 소규모 건축사업(공사기간 2년)은 잔사업비 40:60으로 배분

자료: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277

□ 따라서 국가보훈부는 동 내역사업의 실질적인 공사 착공이 '25년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당초 계획보다 착공이 지연된 연천현충원 조성사업의 추진계획 및 공사기간을 면밀히 점검하고, 계획 대비 추진 가능성에 따른 적정 공사비 금액을 산정할 필요가 있음.

14. 제대군인전직지원금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제대군인전직지원금’은 국토방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 안정 도모와 취·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구직급여 명목으로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69]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억 7,700만원(5.4%) 증가한 73억 8,200만원이 편성됨.

<2025년도 제대군인전직지원금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 감 (B-A)	(B-A)/A
제대군인전직지원금	9,135	7,005	7,382	377	5.4

자료: 국가보훈부

□ 동 사업 예산안의 세부 내역을 보면, 중기복무자 전직지원금은 1인당 월 지급액이 전년 대비 3만원 증가한 58만원으로, 장기복무자 전직지원금의 경우 1인당 월 지급액은 전년 대비 4만원 증가한 81만원이 편성되었고, 그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음.[70]

<2025년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예산안 세부내역>

69) 세부사업: 제대군인전직지원금(4160-391)

70) "장기복무 제대군인"이란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말하고, "중기복무 제대군인"이란 5년 이상 10년 미만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말함.

구 분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
합 계	**70억 500만원**	**73억 8,200만원**
중기복무자	**55만원** X 6개월 X 1,705명 X91.5%= 51억 4,800만원	**58만원** X 6개월 X 1,705명 X91.5%= 54억 2,900만원
장기복무자	**77만원** X 6개월 X 454명 X88.5% = 18억 5,600만원	**81만원** X 6개월 X 454명 X88.5%= 19억 5,300만원

자료: 2024년 및 202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재구성

나. 검토의견

(1) 전직지원금 인상 필요

제대군인 전직지원금과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간 지원금액 및 지원일 수 등에 차이가 존재함에 따라 전직지원금과 고용보험 구직급여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구직급여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을 적정수준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음

□ 연도별 보훈대상자 현황을 살펴볼 때, 참전유공자는 고령화로 인하여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고엽제 관련자,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등은 더 이상 대상자가 큰 폭으로 확대될 여지가 적어 추후 보훈대상자의 증가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부분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되므로,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역량이 강화

될 필요가 있음.

<연도별 중기, 장기 제대군인 현황>

연도	계	중기복무 제대군인	장기복무 제대군인
2018	6,392	2,851	3,541
2019	5,681	2,704	2,977
2020	5,664	2,132	3,532
2021	7,278	2,840	4,438
2022	8,701	2,830	5,871
2023	9,420	3,256	6,164
2024.9월	9,715	3,197	6,518

자료: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는 제대군인의 성공적인 사회복귀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제대군인사회복귀지원' 사업 및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중·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군 인사체계의 특수성으로 비자발적 조기전역을 해야 하나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에서 제외되고 있으므로,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 및 직업능력개발 등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전직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음.[71]

7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전직지원금)** ① 국가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

전직지원금은 제대군인에게 구직급여일액의 최고액에 30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월별로 지급하되, 전직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수급 기간 중에 취업이나 창업을 한 경우에는 그 다음 달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 지급액의 100분의 50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그런데 장기복무자 전직지원금은 2008년 구직급여(상한액 월 120만원)의 41.7% 수준인 50만원에서 지급을 시작하였으나 2022년에 이르러서야 70만원으로 인상된 후 2024년 77만원까지 인상되었고, 중기복무자 전직지원금의 경우도 2014년부터 25만원이 지급되었으나 2021년까지 지급단가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어오다 2022년에 50만원으로 인상된 후 2024년에 55만원으로 인상되었음. 반면, 고용노동부의 구직급여는 2008년 월 120만원에서 2018년부터는 65% 인상된 월 198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현재 장기복무자의 1개월 전직지원금은 구직급여 월 상한액의 38.9%, 중기복무자의 전직지원금은 구직급여 월 상한액의 27.8%에 불과함.

고 취업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직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중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전직지원금은「고용보험법」제46조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의 최고액에 30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월별로 지급하되, 전직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수급 기간 중에 취업이나 창업을 한 경우에는 그 다음 달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 지급액의 100분의 50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 ⑥ (생 략)

<전직지원금과 구직급여 비교>

구 분	국가보훈부 전직지원금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관련규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고용보험법」 제4조
대상자	비연금 중장기복무자 중 미취업자 ※ 중기자 평균연령 29.1세	180일 이상 근무 후 실직자
지급신청 기간	전역후 6개월 이내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
지급액	중기 : 55만원(구직급여 27.8%) 장기 : 77만원(구직급여 38.9%)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 상한액 월1,980천원
지급 상한기간	미취업기간 6개월	연령 및 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
중도취업자 지원	일시금 : 잔여지급액의 1/2	조기재취업수당 : 잔여급여일수 1/2이상자의 잔여지급액 1/2
고용보험가입여부	미가입	가입

자료: 국가보훈부

< 고용부 구직급여 상한액 (천원) >

구분		'08~13	'14	'15	'17	'18	'19	'20	'21	'22	'23	24
전직 지원금 월지급액	중기복무자	-	250	250	250	250	250	250	250	500	500	550
	장기복무자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700	700	770
구직 급여	월 상한액	1,200	1,200	1,290	1,500	1,800	1,980	1,980	1,980	1,980	1,980	1,980
	증가율(%)	-	-	7.5	16.3	20	10	-				-

자료: 국가보훈부

○ 특히, 중기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평균연령은 31세로 장기간 사회와의 격리 등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취업·교육·의료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는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달리 직업훈련 및 취업 알선을 지원하는 데 그쳐 그 지원이 미흡한 실정임.

<중·장기복무자 제대군인 지원 비교>

구분	지원분야	지 원 내 용
중기복무 제대군인 (5년~9년)	채용시험응시 상한연령연장	▌2년 이상 복무 : 3세 ▌1~2년 복무 : 2세 ▌1년 미만 복무 : 1세
	군경력 인정	▌호봉, 임금결정시 군복무 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 * 취업지원실시기관 권장사항
	의 료 지 원	▌군복무중 부상(질병)으로 신체검사 등급미달 판정을 받은 경상이자 대상으로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진료(상이처에 한함)
	취 업 알 선	▌진로지도·직업상담, 취업알선, 구인·구직 만남의 행사
	직 업 훈 련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사이버교육 실시,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지급
	취 업 알 선	▌진로지도·직업상담, 취업알선, 구인·구직 만남의 행사
	법률구조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변호사비용, 인지액, 송달료 등 소송비용 지원 (군인연금 대상자 제외)
	전직지원금 지급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자로 전역 후 6개월 이내 신청 ▌중기(월 55만원), 장기(월 77만원) 최장 6개월간 지급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취 업 지 원	▌국가기관, 공기업, 기업체 등에 보훈특별고용 추진 ▌일반직공무원 등 특별채용
	교 육 지 원	▌본인 : 대학 입학금·수업료의 50%까지 감면 * 전역 후 3년 이내자

구분	지원분야	지 원 내 용
		▌자녀 : 고교 재학 자녀 수업료 전액 보조 ＊ 생활수준 조사결과 기준 이하자
	의료지원	▌보훈병원(본인부담 진료비의 50% 감면) ▌군병원 : 응급처치 및 외래진료(본인부담 진료비의 50% 감면)
	대부지원	▌주택구입, 아파트분양, 임차, 사업, 농토구입, 생활안정, 학자금 - 금액 : 300~8,000만원, 상환기간 : 3~20년(연리3.5~4.5%)
	주택분양	▌「공공주택 우선공급」대상에 무주택 장기복무 제대군인 포함('07.8월, 주택공급규칙 개정)
	공공시설의 이용	▌고궁 및 공원 등 공공시설 감면(무료) 이용 - 전쟁기념관(무료), 고궁·능원·국립민속박물관(50% 감면)
	안 장 지 원	▌국립호국원 안장(10년 이상)
		▌국립현충원 안장(20년 이상)

자료: 국가보훈부

□ 한편,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지급하는 구직급여의 경우 지급 수준이 낮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이에 '구직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2019. 10. 1. 시행)으로 구직급여 지급기간이 90일~240일에서 120일~270일로 확대되고, 지급 수준도 평균임금의 50%에서 평균임금의 60%로 상향되었음. 따라서 50세 미만 중 피보험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자가 실업을 한 경우 1일 하한액(60,120원)을 기준으로 하여도 약 721만원의 구직급여를 받게 됨.

< 구직급여의 급여일수 >

구분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이직일 현재 연령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자료: 국가보훈부

□ 위와 같이 전직지원금과 구직급여간 지원금액 및 지원일 수 등에 차이가 존재함에 따라 전직지원금과 고용보험 구직급여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따라서 국가보훈부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을 적정한 수준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음.

(2) 추계 오류 및 형식적인 예산편성 지양 필요

전직지원금이 인상된 2022년도부터 매년 예산이 부족함에 따라 이·전용등을 통해 부족분을 충당하고 있으며, 전직지원금을 신청한 중기 및 장기복무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에도 국가보훈부는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시 신청인원을 '2021~2023년 3년 평균 신청자 수'가 아닌 '2020~2022년 3년 평균 신청자 수'를 기준으로 예산을 과소 편성함. 향후 국가보훈부는 전직지원금 지급 대상자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그에 맞는 적정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국가보훈부는 전직지원금이 인상된 2022년도부터 매년 예산이 부족함에 따라 2022년과 2023년에는 '보상금'에서 각각 9억 1,500만원과 30억원을 이용하여 부족분을 충당함. 2024년에도 9월말 기준 이미 예산현액을 초과 집행하였고,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이미 42억 8,300만원을 이·전용 증액함.

< 2022년~2024년 전직지원금 예산액 및 부족분 발생현황 >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A)	집행액(B)	부족분(B-A)	이·전용 등
2018	2,407	3,529		1,125
2019	3,314	3,313	-	
2020	3,314	3,314	-	
2021	3,314	3,314	-	-
2022	6,172	7,087	915	915
2023	6,172	9,135	2,963	3,000
2024.9	7,005	8,712	1,707	4,283

자료: 국가보훈부

(단위: 명, %, 백만원)

연도	중기 및 장기 전역자(신청대상)		신청자	신청률	예산액
2019	중기	3,563	1,764	49.5	3,314
	장기	1,039	360	34.6	
2020	중기	3,121	1,631	52.3	3,314
	장기	1,147	403	35.1	
2021	중기	2,821	1,569	55.6	3,314
	장기	834	399	47.8	
2022	중기	2,999	1,916	63.9	6,172
	장기	1,103	559	50.7	
2023	중기	4,061	2,536	62.4	6,172
	장기	1,266	712	56.2	
2024.9	중기	3,969	2,506	63.1	7,005
	장기	1,677	801	47.8	

자료: 국가보훈부

□ 위와 같이 전직지원금을 신청한 중기 및 장기복무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부는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시 신청인원을 '2021~2023년 3년 평균 신청자 수'가 아닌 '2020~2022년 3년 평균 신청자 수'만을 적용하는 등 과소계상하여 2025년 집행시에도 이·전용등으로 충당할 것이 우려됨.

□ 국가보훈부는 2024년 2월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업무계획」을 통하여 "국가 미래를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보훈으로 패러다임 전환"의 목적으로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보상 강화'를 명시하고 있으며, 2027년까지 전직지원금을 구직급여(198만원)의 50% 수준(99만원)으로 인상하고, 지급기간도 상응하게 조정(중

기복무자 : 6개월 →7개월 / 장기복무자 : 6개월→8개월)하겠다고 밝힘. 또한 지난 3월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보상 강화' 및 '취업 경쟁력을 높이고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직지원금을 인상하겠다고 한 바 있음.

□ 전직지원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국가보훈부는 지원액 상향에 앞서 현재 기준으로도 매년 과소계상되어 예산부족분이 발생하는 문제를 시정하는 노력부터 경주해야 할 것임.

□ 또한. 전직지원금은「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의무지출로, 부족분을 지급하기 위해 타 사업 예산을 이용 또는 전용하는 것은 적정하게 편성된 타 사업의 목적 달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국가보훈부는 전직지원금 지급 대상자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그에 맞는 적정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15. 국제보훈교류협력사업 : 미래평화학술회의 사업 예산 재검토 필요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국제보훈교류협력사업(4161-395)’은 유엔참전용사 재방한 초청을 비롯한 참전국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문화·스포츠 등 국제교류를 활성화 하려는 사업으로,[72] 2025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8억 8,300만원(10.0%) 감액된 79억 9,100만원이 편성됨.

○ 동 사업은 8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8개 내역 사업 중 하나인 ‘참전국 교류협력 사업’은 ① 국제보훈컨퍼런스, ② 미래평화학술회의, ③ 주한참전국대사관워크숍 등 3개의 내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 중 ‘미래평화학술회의 사업’은 한미동맹 세미나 지원 등을 통하여 참전국과의 미래 동맹관계를 강화하고 상호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내내역사업으로, 2025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2억 9,000만원이 편성됨.

< 2025년도 ‘국제보훈교류협력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 감 (B-A)	(B-A)/A
국제보훈 교류협력사업	9,135	8,874	7,991	△883	△10.0
미래평화학술 회의 사업	290	290	290	-	-

자료: 국가보훈부

72) 세부사업: 국제보훈교류협력사업(4161-395)

나. 검토의견

‘미래평화학술회의 사업’은 기존 한미동맹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해오던 한미동맹 컨텐츠 사업에 보훈 관련 컨텐츠를 추가한 것으로, 사업의 주제 및 참석 대상이 기존 한미동맹재단에서 수행한 사업과 유사하며, 보조사업 연장 평가 결과에서 지적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조사업자의 자부담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미래평화학술회의 사업’은 2021년에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인 한미동맹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해오던 한미동맹 컨텐츠에 보훈 관련 컨텐츠를 추가하여 민간경상보조(320-01)로 지원하고 있음.

○ 미래평화학술회의 사업은 기존에 비영리단체에서 회비(기부금)로 운영하던 사업에 대해 2021년부터 보조금을 지급하여 운영하고 있음. 2021년에는 3억 9,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2023년부터는 2억 9,000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2021년 예산 편성 전에도 한미동맹재단에서는 한반도 안보와 평화유지에 기여한 주한미군장병을 격려하고 한미동맹의 가치와 중요성을 전파하기 위하여 서울과 워싱턴에서 세미나를 개최하여 왔음. 예산 편성 전의 세미나 내역을 살펴보면, 2019년에 SCM/MCM 한미대표, 주한미대사, 역대 연합사령관 등 한미주요 직위자, 한미 모범장병, 카투사 대표, 후원사 대표 등 400여명을 초청한 바 있음.

- 한미동맹재단의 수입은 대체로 회비(기부금)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예산이 지원되기 전인 2019년의 경우 서울과 워싱턴에서 세미나 개최에 8,900만원을 지출함.

< 2019 한미동맹재단 서울/워싱턴 세미나 집행 내역 >

(단위: 천원)

구분	집행내역	참석인원	비고
세미나 및 만찬 (11.14. 서울)	59,436	대통령 축전, 이낙연 국무총리 축사, SCM/MCM 한미대표, 주한미대사, 역대 연합사령관 등 한미주요 직위자, 한미 모범장병, 카투사 대표, 후원사 대표 등 400여명	집행내역은 행사비용으로 국외 참여자 여비 제외(국외 참여자 여비는 주한미군전우회에서 지출)
세미나 및 만찬 (12.4. 워싱턴)	29,455	미 국방부, 국무부, 합참 등 주요 직위자 참여 (재단이사장, 회장 등 4명 출장)	참석인원 통계 없음 집행내역은 국내 출장자 여비로 행사비 제외(행사비는 주한미군전우회에서 지출)

자료: 한미동맹재단

□ 2019년 '한미동맹재단의 서울/워싱턴 세미나 집행내역'과 2025년 '미래평화학술회의 사업의 국제학술평화세미나'의 예산 편성 내역

을 비교해보면, 2019년 한미동맹재단의 경우 세미나 행사비로 서울에서는 약 5,900만원을, 워싱턴에서는 약 2,900만원을 지출하였으나, 2025년 국가보훈부의 국제학술평화세미나에서는 국내의 경우 약 1억 2,000만원을 편성하고, 국외(미국)의 경우 약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여 한미동맹재단에서 편성해오던 예산보다 확대하였음을 알 수 있음.

< 2025 국제학술평화세미나 편성 내역 >

(단위: 천원)

구분	예산	참석인원	비고
서울	120,000	300명 예상	국고보조사업으로 연초 공모과정을 통해 사업자가 선정
미국	170,000	200명 예상	

자료: 한미동맹재단

< 세미나(1회) 예산 비교 >

(단위: 천원)

구분	한미동맹재단	국가보훈부
서울	59,436	120,000
워싱턴	29,455	170,000

자료: 한미동맹재단 및 국가보훈부

□ 예산 편성 당시 기존부터 사업을 수행해오던 한미동맹재단에 비용만 지원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 국가보훈부는 기존 한미동맹재단에서 해오던 사업과는 주제, 참석대상, 개최 기간 등을 차별화하여 개최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그러나,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세미나의 제목이 '한미동맹 컨퍼런스'로 동일하는 등 기존의 한미동맹 컨텐츠가 사업의 주요내용으로 계속 포함되어 있으며, 참석대상도 기존의 한미동맹 컨퍼런스와 유사하는 등 차별점을 찾기가 어려움.

< 2021~2023년도 추진실적 >

구분	기간(장소)	주제	참석자
(2021년) 한미동맹 컨퍼런스	1차 : '21. 7. 28.(수)(워싱턴D.C.), 2차: '21. 11. 30.(화)(서울), 3차: '21. 12. 15.(수)(하와이)	한반도 평화정착 및 동맹발전 방안, 한미 외교·국방 협력 방안	美 국무부 차관보, 전 연합사령관, 전현직 유엔사 및 주한미군 복무장병, 양국 학계 전문가 등
(2022년) 한미동맹 컨퍼런스	1차 : '22. 7. 25.(월) ~ 7. 29.(금)(워싱턴D.C.) 2차 : '22. 10. 25.(화)(서울)	보훈외교 및 한미동맹 지원 방안, 유엔사 및 주한미군 복무장병 예우	美 국방부 산하 DPAA 국장, 전 연합사령관, 전현직 유엔사 및 주한미군 복무장병, 양국 학계 전문가 등

구분	기간(장소)	주제	참석자
(2023년) 한미동맹 컨퍼런스	1차: ’23. 10. 6.(금) ~ 10. 7.(토)(조지아), 2차 : ’23. 10. 13.(금)(서울)	한미동맹 강화 및 보훈외교 발전방안, 유엔참전용사의 유산을 잇는 유엔사 복무장병	전 연합사령관, 전현직 유엔사 및 주한미군 복무장병, 양국 학계 전문가 등

자료: 국가보훈부

○ 동 사업은 ‘2023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도 “이전에는 보조사업자인 한미동맹재단의 재원으로 사업의 운영이 충분했던 사업이며, 보조금사업으로 전환 이후에도 한미동맹재단 기존의 한미동맹 컨텐츠도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 계속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에 대한 보조사업자의 자부담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2025년도 예산안 편성 기조로 강도 높은 재정 정상화를 통한 재정체질 개선에 중점을 두고 보조사업 정비를 추진하였으며, 보조사업의 재정비 기준으로 ①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및 외부 지적 등을 반영, ② 유사중복이나 집행부진 사업,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적합한 사업 등은 전달체계를 재구조화, ③ 부정수급 또는 회계관리 미흡 등 부적절하게 집행된 사업 구조조정 등을 제시하였음. 이에 의하면, 동 사업은 “①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및 외부 지적 등을 반영”에 해당함.

□ 이를 종합하면, 2025년 “미래평화학술회의” 예산은 기존에 비영리재단법인인 한미동맹재단에서 자체 회비로 해오던 사업이고, 사업의 주제 및 참석 대상이 한미동맹재단에서 수행하던 사업과 유사하며,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에서 지적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조사업자의 자부담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민간보조사업은 ‘자체수입 및 수익자부담원칙 적용으로 충당이 가능한지 여부’를 고려하여 예산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음.

- 동 사업은 2020년까지 한미동맹재단에서 자체수입으로 충분히 운영하고 있던 세미나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Ⅲ.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1. 국가유공자 등 차량지원 : 지원 대상 감소 추이의 합리적 반영을 통한 적정 예산 편성 필요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국가유공자 등 차량지원’은 상이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LPG 차량에 대한 LPG 연료의 개별소비세 인상분과 친환경차량(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및 충전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73] 2025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4억 500만원(△25.7%) 감소한 98억 5,400만원이 편성됨.[74]

<2025년도 국가유공자 등 차량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국가유공자 등 차량지원	9,520	13,259	9,854	△3,405	△25.7
·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8,964	12,525	9,120	△3,405	△27.2
· 친환경차량지원	556	734	734	-	-

자료: 국가보훈부

73) 세부사업: 국가유공자 등 차량지원(2158-380)

74) 2024년 예산은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2158-380)’, ‘친환경차량지원(2158-381)’ 등 2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는데, 2025년 예산안은 이를 ‘국가유공자 등 차량지원’ 사업으로 통합하였음. 예산안 규모의 전년 대비 비교는 2024년 2개 세부사업 합산 금액 기준임.

나. 검토의견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내역사업은 해마다 대규모의 예산이 불용되고 있으므로, 지원 대상 차량 수를 보다 합리적으로 재산출하여 적정 예산 규모로 조정·편성할 필요가 있음.

□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내역사업은 2001년 7월부터 유종간 가격구조 형평성 제고를 위해 LPG 개별소비세가 대폭 인상됨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세금부담 완화 방안으로 세금인상분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보다 34억 500만원(27.2%) 감소한 91억 2,000만원임.

□ 국가보훈부는 2009년 9월부터는 월 300ℓ[75]를 사용한도로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리터당 지원액은 세제 변화를 반영하여 변동되며 2024년 7월부터는 리터당 160원씩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음.

<LPG차량 세금 인상분 리터당 지원액 변화 추이>

기간	’09.1.1. ~’18.11.5.	’18.11.6. ~’19.5.6.	’19.5.7. ~’19.8.31.	’19.9.1. ~’21.11.11.	’21.11.12 ~’22.4.30.	’22.5.1. ~6.30.	’22.5.1. ~’24.6.30.	’24.7.1. ~10.31.	’24.11.1. ~
지원액	220원	190원	200원	220원	180원	160원	150원	160원	170원

자료: 국가보훈부

□ 동 사업의 최근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수혜자의 고령화와 친환경 차량으로의 대체 등 요인으로 지원 차량 수 및 1대당 연간 LPG

75) 추가 승인 시 350ℓ까지 지원

충전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간 집행액은 매년 감소하는 추이를 보임.

<최근연도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대상 및 집행 현황>

(단위: 대, ℓ, 백만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월평균 지원 차량 수 (실지원 인원)	51,819	48,759	45,821	43,295	39,913
대당 연간 LPG 충전량	1,792	1,584	1,559	1,534	1,501
집행액	18,725	17,085	15,303	11,130	9,520

자료: 국가보훈부

□ 이러한 집행액 감소 추세에 따라 해마다 대규모의 예산이 불용되었으며, 국가보훈부의 추산에 따르면 2022년 이후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70% 미만의 집행률 및 50억원 내외의 불용액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최근연도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편성·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추정)
예산액(A)	20,831	19,789	17,860	16,990	15,531	12,525
집행액(B)	18,725	17,085	15,303	11,130	9,520	8,110
불용액(A-B)	2,106	2,704	2,557	5,860	6,011	4,415
집행률(B/A)	89.9	86.3	85.7	65.5	61.3	64.7

주: 예산액은 본예산 기준, 2024년 집행액, 불용액, 집행률은 9월말까지의 집행액(57억 6,500만원)을 기초로 국가보훈부가 추정

자료: 국가보훈부

□ 이에 따라 2024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도 수혜자 규모는 매년 감소하는데 보조금 지원액 축소는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아 실집행률이 낮으므로, 수혜자 규모와 수혜액을 정밀하게 추계하여 예산 규모를 타당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음.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2024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결과보고서 675p」

○ 대상자의 고연령 등으로 수혜자 규모는 매년 감소하는데, 보조금 지원액 축소는 이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여 실집행률이 낮음.

- 수혜자 규모와 수혜액을 좀 더 정밀하게 추계함으로써 보조사업 예산 규모를 좀 더 타당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

□ 그런데 국가보훈부의 2025년 예산안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전년도 예산에 비해 상당액(34억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긴 하였으나 지원 대상 규모의 감소 추세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국가보훈부는 내년도에 지원할 차량 대수를 38,000대로 산정하면서 그 근거로 최근 3년 평균 감소율(6.7%)을 적용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2023년 지원 대수인 39,913대에 6.7%의 감소율을 반영하면 37,239대로 국가보훈부가 산출한 것보다 761대 더 낮은 수치가 도출됨.

○ 뿐만 아니라, 국가보훈부는 2023년 지원 차량 대수에 연평균 감소율을 1회 적용하였으나, 2024년이 아닌 2025년 지원 차량 대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연평균 감소율을 2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76]

<2025년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백만원, %)

구분		산출식
예산안(91억 2,000만원)		38,000대 × 1,500ℓ × 160원
	지원 차량대수(38,000대)	**최근 3년 LPG차량 평균 감소율(△6.7%) 수준** **('21) 45,821대, ('22) 43,295대, ('23) 39,913대(연평균 △6.7%)**
	대당 연간 LPG 충전량(1,500ℓ)	'23년 수준 ('21) 1,559ℓ, ('22) 1,534ℓ, ('23) 1,501ℓ(연평균 △1.9%)
	리터당 세금지원액(160원)	'24년 8월 기준 리터당 지원액

자료: 국가보훈부

□ 따라서, '국가유공자 등 차량지원' 세부사업의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내역사업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 차량 수를 보다 합리적으로 재산출하여 적정 예산 규모로 조정 편성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77]

76) 2023년 지원 대수인 39,913대에 국가보훈부가 제시한 연평균 감소율 6.7%를 2회 적용하면, 34,744대가 도출되어 국가보훈부가 제시한 38,000대와 3,256대의 차이가 발생함.

77) LPG 차량대수 감소 추세를 가급적 정확하게 반영하되, 유류세 조정으로 인한 리터당 세금 지원액(단가)이 상향될 가능성도 함께 고려할 필요성은 있음.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

1. 조세심판원 기본경비[78], 납세자 권리보호 지원강화[79]: 국선대리인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조세심판원 기본경비”는 조세심판원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 기본경비를 집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9,800만원(7.3%)이 증가한 14억 4,000만원임.

<2025년도 조세심판원 기본경비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조세심판원 기본경비	3,595	1,342	1,342	1,440	98	7.3

(자료: 조세심판원)

□ “납세자 권리보호 지원강화”는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한 조세심판 시 납세자의 권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 1억 9,2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2025년도 납세자 권리보호 지원강화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납세자 권리보호 지원강화	-	-	-	192	192	순증

78) 세부사업: 조세심판원 기본경비(7011-252)
79) 세부사업: 납세자 권리보호 지원강화(7035-325)

(자료: 조세심판원)

2) 검토의견: 국선대리인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국무조정실과 조세심판원은 소액·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국선심판청구대리인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효율적 홍보 방안을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조세심판원은 세법지식 부족, 전문가의 조력 부재 등으로 권리구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소액·영세납세자가 사건조사 및 심리단계에서 무료로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와 같은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국선심판청구대리인제도를 운영 중임.

- 「국세기본법」 제59조의2는 일정 요건[80]에 해당하는 심판청구인이 조세심판원에 대하여 국선대리인을 선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조세심판원은 이에 응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81]

---

80) 국선대리인 선정요건

1. 개인 :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의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서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자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2. 법인 : 청구세액이 5천만원 이하의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법인으로서 수입금액이 3억원 이하이고, 자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3. 공통 :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지방세, 관세 제외

81) 「국세기본법」 제59조의2(국선대리인) ①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심판청구인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은 재결청(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이하 "국선대리인"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이의신청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개인인 경우: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의 가액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종합소득 5천만원, 소유재산 5억원 이하**)
 나. 법인인 경우: 수입금액과 자산가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과 자산을 말한다)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수입 3억원, 자산 5억원 이하**)
2. 삭제

□ 조세심판원은 “조세심판원 기본경비” 사업에 매년 국선심판청구대리인제도 운영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2024년도에는 대리인 수당(3천만원)과 제도 홍보(1천만원)를 위하여 총 4천만원을 편성하였음.

□ 그런데, 국선심판청구대리인제도의 연도별 운영 실적을 살펴보면, 조세심판원의 사건 접수건수[82]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국선대리인 운영 횟수는 연례적으로 저조한 상태이며, 국선대리인 수당 및 홍보비 집행 실적 역시 부진한 상태임.

<국선심판청구대리인제도 연도별 운영 실적 및 예산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9.
국선대리인 운영 횟수		**33회**	**17회**	**36회**	**15회**	**31회**	**27회**
예산액		25,000	25,000	25,000	25,000	25,000	40,000
집행	대리인수당	4,650	1,650	1,800	1,950	5,850	3,750
	홍보비	1,771	-	-	2,717	2,717	-
	합 계	6,421	1,650	1,800	4,667	8,567	3,750

(자료: 조세심판원)

□ 조세심판원은 국선대리인제도 운영 부진과 관련하여, 제도 홍보를 위해 팜플렛을 제작해 전국 세무관서 등에 비치하고 있지만 충분한 홍보 효과를 얻지 못하였다고 설명함. 또한, 최근 「국세기본법 시행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신청 또는 청구일 것 (5천만원 이하)
4.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신청 또는 청구일 것
② 재결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국선대리인을 선정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등과 국선대리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82) 사건 접수 건수: 2019년 8,658건 → 2021년 13,025건 → 2023년 16,781건

령」 개정을 통해 ① 심판청구 가능 세액을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2023.2.시행)하여 요건을 완화하고, ② 국선대리인 신청 자격을 ‘개인’ 뿐만 아니라 영세 법인도 가능(2024.7.시행)하도록 제도개선을 하였다고 밝힘.

□ 그러나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조세심판원 국선대리인 운영 실적이 총 27회 수준으로 나타나, 아직까지는 제도개선의 효과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임.

□ 연도별 조세심판 청구사건의 청구대리인 유·무에 관한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청구대리인 없는 사건의 비율은 2019년 26.3%에서 2023년 15.6%로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그러나, 2023년 기준 총 1만 6,781건의 청구사건 중 2,626건(15.6%)은 청구대리인 없이 납세자 본인이 심판을 청구한 사건이므로, 향후 국선대리인 운영을 활성화한다면 납세자 권리보호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연도별 조세심판 청구사건의 청구대리인 유·무〉

(단위: 건, %)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총 청구 건수	8,658	12,795	13,025	10,373	16,781
대리인 있는 청구	6,377	9,367	8,973	8,509	14,155
대리인 없는 청구	**2,281**	**3,428**	**4,052**	**1,864**	**2,626**
(비율)	26.3	26.8	31.1	18.0	15.6

(자료:「2023 조세심판통계연보」 재구성)

□ 한편, 조세심판원은 2025년도 예산안에 “납세자 권리보호 지원강화”(7035-325) 사업을 신설하여 1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조세심판원 개원 50주년 기념사업에 1억원, 포탈 및 언론사를 통한 조세심판원 홍보사업에 9,200만원을 배정할 예정임.

<2025년도 납세자 권리보호 지원강화(7035-325)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2025년 예산안	추진 예정 사업	
192	1 **포탈 및 언론사를 통한 조세심판원 홍보사업** - 홈페이지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 전자심판, 우선처리제도 등 조세심판원 제도 홍보	**92**
	2 **조세심판원 개원 50주년 기념사업** - 50주년 기념 백서 및 홍보 동영상 제작 - 50주년 기념 심포지엄 및 기념행사 개최	**100**

(자료: 조세심판원)

□ 현재 조세심판원은 국선심판청구대리인제도 홍보를 위해 “조세심판원 기본경비(7011-252)” 사업에 1천만원을 편성하고 있지만 2024년 9월까지 집행 실적이 전혀 없는 등 해당 예산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데, 국선대리인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 그런데, 소규모 홍보사업을 개별 사업별로 편성할 경우 별도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음.

-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은 신문·방

송 등 광고비는 유사한 사업의 통합 실시 등을 전제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조세심판원은 홍보사업을 “납세자 권리보호 지원강화” 사업으로 일원화하여 집행하고 조세심판원 홍보에 국선대리인제도 홍보를 통합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임.

□ 국선대리인제도는 권리구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소액·영세납세자가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국무조정실과 조세심판원은 국선심판청구대리인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홍보 방안을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2. 규제개혁위원회 운영[83]: 규제개혁위원회의 회의실적을 고려한 수당 편성 필요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사업은 대통령 소속의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추가·신설 억제를 통해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 및 국가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억 6,100만원(20.5%) 증가한 21억 2,000만원이 편성됨.

<2025년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1,313	1,759	1,759	2,120	361	20.5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963**	**1,215**	**1,215**	**1,376**	**161**	**13.3**
규제혁신전략회의 운영	192	273	273	273	-	0.0
국제협력	41	48	48	248	200	416.7
범정부 규제혁신 국민소통	117	223	223	223	-	0.0

(자료: 국무조정실)

83) 세부사업: 규제개혁위원회 운영(7033-301)

2) 검토의견 : 집행실적이 부진한 규제개혁위원회 수당 감액 필요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및 안건검토수당의 집행실적이 연례적으로 부진함에도 내년도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으므로, 규제개혁위원회의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예산을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음.

□ 내역사업인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사업'은 「행정규제기본법」[84]에 따라 규제정책의 심의·조정,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구성된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억 6,100만원(13.3%) 증가한 13억 7,600만원이 편성됨.

□ 국무조정실은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85]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등에게 참석수당 및 안건검토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2025년도 예산안에는 전년 대비 1억 5백만원(38.7%) 증가한 3억 7,900만원의 수당을 반영하였음.

---

84)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설치)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둔다.

제2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 것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85)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8조(수당 등) ①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과 전문위원·조사요원·이해관계인·참고인 및 관계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간사인 위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여비 기타 경비외에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국무조정실은 2024년부터 수당의 지급기준을 상향[86]하여 집행 중이며, 2025년도의 예산 증액은 주로 상향된 지급기준 적용에 따른 것임.

<2025년도 규제개혁위원회 수당 편성내역>

(단위: 천원, %)

구분		2024년도 예산		2025년도 예산안		증감	
		편성근거	금액(A)	편성근거	금액(B)	(B-A)	(B-A)/A
참석수당	본회의	17명×150천원×24회	61,200	17명×200천원×24회	81,600	20,400	33.3
	분과위	16명×150천원×18회	43,200	16명×200천원×26회	83,200	40,000	92.6
안건검토수당	본회의	(1명×500천원+16명×100천원)×24회	50,400	(1명×600천원+16명×100천원)×24회	52,800	2,400	4.8
	분과위	(3명×150천원+13명×80천원)×26회	26,820	(2명×200천원+14명×100천원)×26회	46,800	19,980	74.5
	예비검토	17명×100천원×54회	91,800	17명×130천원×52회	114,920	23,120	25.2
합 계			273,420		379,320	105,900	38.7

(자료: 국무조정실)

□ 그런데, 최근 규제개혁위원회 수당의 집행이 연례적으로 부진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내년도 예산안 증액편성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86)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 수당·사례금 등 지급기준 개정(안)」(2024.1.)

현 행		
예심	10만원/회	
본심사 * 본회의 분과위	참석	15만원/회
	안건검토·심사	위원장: 50만원/회 분과위원장: 15만원/회 위원: 8만원/회

➡

개 정		
예심	13만원/회	
본심사 * 본회의 분과위	참석	20만원/회
	안건검토·심사	위원장: 60만원/회 분과위원장: 20만원/회 위원: 10만원/회

○ 최근 3년(2021년~2023년) 간의 규제개혁위원회 수당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매년 회의개최 수 또는 지급대상자[87] 수가 편성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75% 미만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동안 예산 규모 산정 시 회의개최 수 등을 과다하게 계상한 것으로 보임.

○ 2024년에는 종전 단가를 기준으로 편성된 예산을 재원으로 하여 인상된 단가를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9월 기준 집행률[88]이 43.9% 수준임으로 고려할 때, 내년도 정부 예산 편성액을 전액 반영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됨.

<2021~2024년 규제개혁위원회 수당 집행실적>

(단위: 천원, %)

구분		2021			2022			2023			2024		
		예산	집행	집행률	예산	집행	집행률	예산	집행	집행률	예산	집행	집행률
참석수당	본회의	61,200	56,100	91.7	61,200	53,550	87.5	61,200	45,300	74.0	61,200	25,200	41.2
	분과위	28,800	900	3.1	28,800	0	0.0	28,800	12,750	44.3	43,200	8,600	19.9
안건검토수당	본회의	50,400	46,200	91.7	50,400	84,000	116.7	50,400	40,800	80.9	50,400	17,600	34.9
	분과위	17,040	550	3.2	17,040	0	0.0	17,040	21,440	125.8	26,820	23,150	86.3
	예비검토	114,920	89,637	78.0	114,920	66,170	57.6	114,920	73,270	63.8	91,800	45,470	49.5
합 계		272,360	193,387	**71.0**	272,360	203,720	**74.8**	272,360	193,560	**71.1**	273,420	120,020	**43.9**

주: 2024년 9월말 기준(7월분까지 집행)

(자료: 국무조정실)

□ 따라서, 규제개혁위원회의 참석수당 및 안건검토수당은 과거의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87) 회의 참석자, 안건 검토자

88)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2024년 9월 기준으로 7월까지의 회의에 대한 수당을 집행하였음.

3. 규제혁신추진단 운영[89]: 규제혁신추진단의 활동기한을 고려한 예산의 편성 필요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규제혁신추진단 운영” 사업은 각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다양한 전문가(전직공무원, 연구기관, 민간)가 참여하는 규제혁신추진단을 운영하여 덩어리 규제[90]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7억 1,100만원(13.8%) 감소한 44억 4,300만원이 편성됨.

○ 이 사업은 ① 규제개혁추진단 운영 사업, ② 덩어리 규제발굴 사업, ③ 발굴규제 검토·조정·개선 사업, ④ 규제혁신추진단 홍보 사업 등 4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2025년도 규제혁신추진단 운영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본예산	2024년 추경(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증감 (B-A)/A
규제혁신추진단 운영	4,960	5,154	5,154	4,443	△711	△13.8
규제혁신추진단 운영	**3,952**	**4,282**	**4,282**	**3,821**	**△461**	**△10.8**
덩어리 규제발굴	410	402	402	187	△215	△53.5
발굴 규제 검토·개선·조정	196	312	312	117	△195	△62.5
규제혁신추진단홍보	**402**	**158**	**158**	**318**	**160**	**101.3**

(자료: 국무조정실)

89) 세부사업: 규제혁신추진단 운영(7033-305)
90) 다수 부처와 법령이 관련되거나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규제

2) 검토의견

(1) 규제혁신추진단 운영비의 감액 필요

규제혁신추진단의 활동이 내년 7월에 종료 예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규제혁신추진단 운영 사업에 편성된 사무실등 임차료 및 워크숍 개최 목적의 일반용역비가 과다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감액조정할 필요가 있음.

□ 국무조정실은 중복·복합 규제의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덩어리 규제의 집중 발굴 및 개선을 위해 각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규제혁신추진단을 설립(2022.8.1.)하였음.[91]

○ 규제혁신추진단은 「규제혁신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에 따라 2022년 8월에 설치된 3년 한시조직으로, 2024년 8월 기준 경제·사회분과 등 2개 분과별 전문위원(전직공무원 등 90명, 경제단체·연구기관 등 33명)과 지원국(부처 파견 인력 등 20명 내외) 등 총 140여명의 인력으로 구성됨.[9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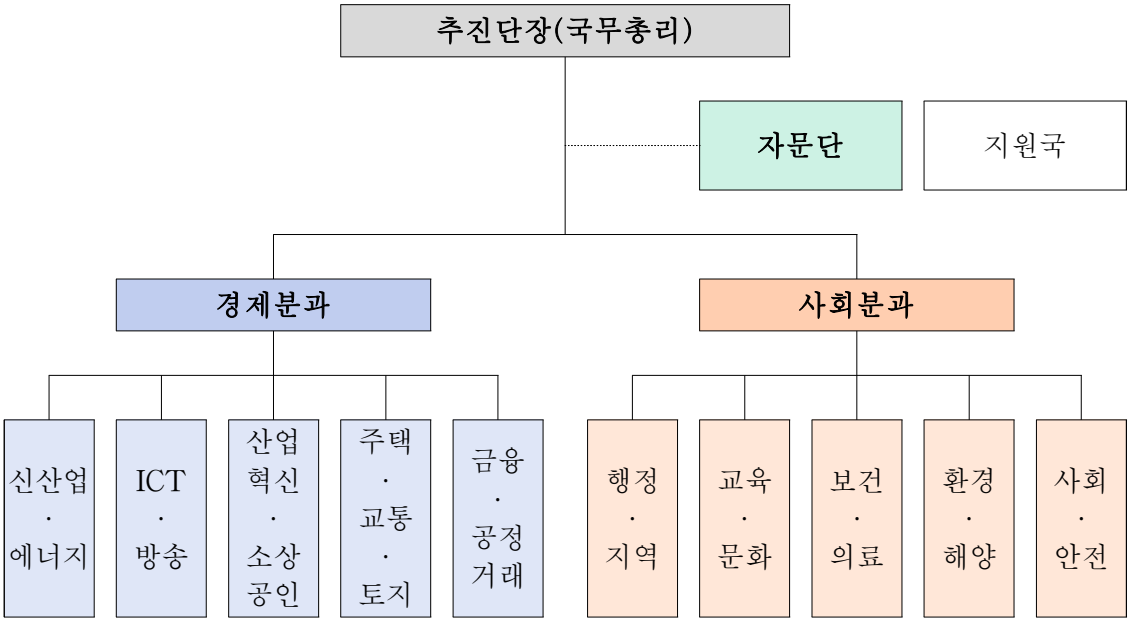
91) 경제·사회 2개 분과별 전문위원(전직공무원 75명, 경제단체·연구기관 34명)과 지원국(부처 파견 인력 등 20명 내외) 등 총 130여 명으로 구성됨.

92) **「규제혁신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한 발굴·검토·개선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규제혁신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1. 다수 부처의 권한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규제
2.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규제
3. 신산업 분야 또는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제품 분야의 규제
4. 기업활동 또는 경제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규제로서 기업활동 또는 경제활동 개선을 위해 국무총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규제

<규제혁신추진단 조직도>



(자료: 국무조정실)

□ 내역사업인 '규제혁신추진단 운영사업'은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추진단원 임금 및 추진단 운영경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무조정실은 규제혁신추진단의 활동기한이 내년 7월말인 점을 고려하여 2025년도 예산안을 전년 대비 4억 6,100만원(10.8%) 감소한 38억 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음.

제3조(구성) ① 추진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추진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국무총리가 되고, 추진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다음 각 목의 사람 중 예산의 범위에서 계약직원으로 채용된 사람
가.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정무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재직하였다가 퇴직한 사람
나. 규제혁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기관·단체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서 국무총리가 파견을 요청하여 파견된 사람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다. 경제단체 및 사회단체
라. 그 밖에 추진단의 소관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국무총리가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2025년도 규제혁신추진단 운영사업(내역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증감사유
○ 추진단원 임금(110-03목)	2,708	1,628	△1,080	△39.9	활동기간 12→7개월
○ 추진단 운영경비	319	285	△34	△10.7	
-일반수용비(210-01목)	117	68	△49	△41.9	활동기간 12→7개월
-공공요금및제세(210-02목)	96	56	△40	△41.7	활동기간 12→7개월
-특근매식비(210-목)	19	11	△8	△42.1	활동기간 12→7개월
-복리후생비(210-목)	3	2	△1	△33.3	활동기간 12→7개월
-일반용역비(210-목)	**40**	**120**	**80**	**200.0**	**워크숍 1회→3회**
-관리용역비(210-목)	34	22	△12	△35.3	활동기간 12→7개월
-기타운영비(210-목)	10	6	△4	△40.0	활동기간 12→7개월
○ 사무실등 임차료(210-07목)	**1,139**	**1,139**	**0**	**0.0**	**-**
○ 업무추진비(240-02목)	24	14	△10	△41.7	활동기간 12→7개월
○ 고용부담금(250-02목)	2	696	694	34,700.0	퇴직금 소요 발생
○ 자산취득비(430-01목)	63	43	△20	△31.7	활동기간 12→7개월
○ 직무수행경비(250-02목)	27	16	△11	△40.7	활동기간 12→7개월
합 계	**4,282**	**3,821**	**△461**	**△10.8**	

(자료: 국무조정실)

□ 그런데, 예산안 상세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규제혁신추진단의 워크숍 개최를 위해 편성된 일반용역비의는 워크숍 횟수의 증가(1회→3회)를 사유로 증액되었으며, 사무실 등 임차료의 경우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되었음.

○ 먼저, 일반용역비의 경우 3회 워크숍 개최를 감안하여 2024년 1회

워크숍 예산액 4,000만원의 3배 수준인 1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규제혁신추진단의 활동이 내년 7월말에 종료된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집행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바, 금년 수준인 4,000만원 수준으로 감액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음으로, 2025년 임차료 예산은 2024년 규제혁신추진단의 사무실, 냉온수기, 공기청정기 임차료 예산 11억 3,800만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이 되었으나, 규제혁신추진단의 활동 종료되는 시점에서 추가 임차소요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임차사무실 유지관리비 상승에 따른 증액소요[93]를 감안하더라도 4억 6,000만원의 감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2025년도 규제혁신추진단 운영 임차료 예산안>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A)	2025년 실소요 예산(B)	과다편성액 (B-A)
사무실	1,133,340 (94,445천원×12개월)	1,135,660 (96,570천원[1)]×1.68×7개월)	67,5990 (96,570천원×7개월)	459,670
냉온수기	2,880 (60천원×4대×12개월)	1,680 (60천원×4대×7개월)	1,680 (60천원×4대×7개월)	-
공기청정기	2,400 (50천원×4대×12개월)	1,400 (50천원×4대×7개월)	1,400 (50천원×4대×7개월)	-
합 계	**1,138,620**	**1,138,620**	**679,070**	**459,670**

주1) 2025년도 임차 사무실 유지관리비 상승(3%)에 따른 임차료 단가 상승

(자료: 국무조정실)

93) 국무조정실은 임차 사무실 유지관리비 상승(3%)에 따라 2025년도 임차료 단가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입장임.

□ 따라서, 이 사업은 규제혁신추진단의 활동 종료시점을 감안하여 일반용역비 8,000만원, 임차료 4억 6,000만원 등 총 5억 4,000만원의 감액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2) 활동 종료 예정인 규제혁신추진단의 홍보예산 감액조정 필요

규제혁신추진단의 활동종료 시점에 홍보비 예산을 대폭 증액한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홍보비 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감액조정할 필요가 있음.

□ 규제혁신추진단 홍보 사업은 규제혁신추진단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고 규제혁신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한 홍보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억 6,000만원(101.3%) 증가한 3억 1,8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인포그래픽·카드뉴스 등 콘텐츠 제작, 모바일 홍보, 포털 배너 광고, 국민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등을 위한 일반수용비의 경우 2024년 대비 1억 1,000만원이 증가한 2억 1,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홍보 콘텐츠 제작을 위한 일반용역비의 경우 2024년 대비 5,000만원이 증가한 1억원이 편성되었음.

- 구체적인 증액내역을 살펴보면, ① 인포그래픽·카드뉴스 등 콘텐츠 제작비용은 2배 이상의 단가(800만원→1,800만원)를 적용하였으며, ② 포털·모바일 홍보비용은 홍보 횟수(포털·모바일 총 1식→포털 1식,

모바일 4식) 및 단가(포털·모바일 총 6,000만원→포털 3,400만원, 모바일 7,000만원)를 대폭 확대하였고, ③ 홍보콘텐츠 제작의 경우 횟수를 2배로 확대하였음.

<2025년도 규제혁신추진단 홍보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
일반수용비 (210-01목)	108 -인포그래픽·카드뉴스 등 콘텐츠 제작: 8 ※ **8백만원**×1식 -**포털·모바일(네이버, 유튜브 등) 홍보: 60** ※ **60백만원**×1식 -국민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40 ※ 10백만원×4회	218 -인포그래픽, 카드뉴스 등 콘텐츠 제작: 11 ※ (**18백만원**×1식)/12×7 -**모바일(유튜브·인스타그램) 홍보: 163** ※ (**70백만원**×**4식**)/12×7 -**포털(네이버, 다음) 배너 광고: 20** ※ (**34백만원**×1식)/12×7 -국민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 23 ※ (10백만원×4회)/12×7
일반용역비 (210-14목)	50 -**홍보콘텐츠 제작: 50** ※ 50백만원×**1식**	100 -**홍보콘텐츠 제작: 100** ※ 50백만원×**2식**
합 계	158	318

(자료: 국무조정실)

□ 국무조정실은 규제혁신추진단 활동기간(2022.8.~2025.7.) 동안의 추진 성과에 대한 홍보 강화를 통하여 덩어리 규제 개선사항을 전파·확산함으로써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지장을 주는 규제 개선사항을 국민들이 인지하고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규제혁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홍보비를 증액 편성하였다는 입장임.

□ 그러나, 규제개혁추진단의 홍보비 증액편성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첫째, 규제혁신추진단은 매년 덩어리 규제개선 사례를 국민에게 전파하고 규제혁신추진단 활동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 중[94]이나, 사업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바 내년도 예산안 증액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예를 들어, 규제혁신단은 2024년 홍보 영상물 제작 사업을 통하여 10월말 기준 총 7편의 영상물를 제작하여 유튜브에 게시 중이나, 조회수가 1,000건을 넘는 게시물이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민이 규제혁신의 내용을 인지하고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사업목표를 충분히 달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내년도 홍보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것이 적절한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94) 2022~2024년 규제혁신추진단 홍보 사업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연 도	본예산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등	예비비	예산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2022	-	-	-	228	228	-	-	-
2023	358	49	-	-	407	402	112.3	98.8
2024	158	-	-	-	158	5	3.2	3.2

주: 2024년 7월말 기준

(자료: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홍보 영상물 조회수 현황>

(단위: 건)

게시일	제목	구분	채널별 조회수		
			추진단	총리실TV	합계
'24.1.2	투덜이가 꼽은 우수규제혁신 5탄 -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2-1	Full	33	252	729
		Shorts	62	382	
'24.8.27	충청북도 규제혁신 현장토론회	Full	-	-	389
		Shorts	59	330	
'24.9.4	규제혁신추진단 2주년 성과와 계획	Full	716	-	716
		Shorts	-	-	
'24.9.23	지방소멸 위기대응 은퇴자(베이비부머) 지원 규제개선	Full	138	-	138
		Shorts	-	-	
'24.9.19	국가대표 투덜이 -EP.4 인증규제편-	Full	117	-	117
		Shorts	-	-	
'24.10.28	민법상 비영리법인 설립·운영 규제혁신 방안 세미나	Full	-	-	104
		Shorts	104	-	
'24.10.31	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Full	351	-	351
		Shorts	-	-	

주1 유튜브 조회수는 2024년 11월 4일 16시 기준
주2 게시일은 추진단 채널과 총리실TV 채널 게시일 중 우선하는 날로 작성
(자료: 국무조정실 자료 및 YouTube(추진단·총리실TV 채널) 조회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둘째, 규제혁신추진단의 활동기한이 내년 7월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증액 편성된 홍보 예산의 집행가능성 및 관련 부서의 부재에 따른 사업관리 부실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규제혁신추진단 홍보콘텐츠 제작 용역의 경우 2023년과 2024년에 4월~5월에 입찰공고가 개시되어 6월에 계약체결이 완료되었으며, 납기일는 11월말 또는 12월말이었음.

〈규제혁신추진단 홍보 영상물 제작 계약내역〉

연 도	계약명	공고일	개찰일	계약일	납기일
2023	규제혁신추진단 홍보 영상물 제작	2023.05.12.	2023.05.16.	2023.06.13.	2023.12.31.
2024	규제혁신추진단 홍보영상물 제작	2024.04.15.	2024.04.30.	2024.06.05.	2024.11.30.

(자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이를 고려할 때, 내년도에도 사업계획의 수립, 입찰공고, 계약체결, 홍보물 제작 등의 사전절차를 거쳐야 하는 이 사업의 특성상 규제혁신추진단 존속기한까지 완료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규제혁신추진단이 해산 예정인 7월말 이후에는 사업의 관리부서가 이관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다른 부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경우 규제혁신추진단 활동의 이해도 부족, 해산된 조직의 업무에 대한 상대적 무관심 등으로 사업관리가 부실하게 이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홍보사업의 확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이를 종합할 때, 규제혁신추진단의 활동종료 시점에서 홍보비 예산을 대폭 증액한 것은 예산의 효율성 및 효과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예산안 심의 시 홍보비 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음.

4. 국제개발협력 총괄 조정 및 지원(ODA)[95]: 기관역량진단 결과를 예산과 연계하여 평가의 실효성 제고 필요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국제개발협력 총괄 조정 및 지원”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중심의 통합적 ODA 추진체계 공고화, 체계적·실효적인 ODA 전략·정책 마련 및 유·무상 연계 등 사업 심사·조정, 유·무상 및 양·다자 사업 연계, 평가 등을 통해 ODA 통합·조정 강화 및 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4억 2,400만원(81.6%)이 증가한 53억 9,600만원임.

- 주요 증액 사업은 ‘ODA 통합정보포털 고도화’, ‘ODA협업 연구용역’ 등이며, 각각 19억 7,400만원, 2억 7,0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음.

□ 내역사업인 “ODA 심사·평가 및 현안연구”는 내실있는 ODA 추진을 위해 ODA 전략수립, 정책 및 사업을 심사·평가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억 3,000만원(19.2%)이 증가한 14억 2,500만원임.

95) 세부사업: 국제개발협력 총괄 조정 및 지원(ODA)(7035-306)

<2025회계연도 국제개발협력 총괄 조정 및 지원(ODA)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본예산	추경(A)			(B-A)/A
국제개발협력 총괄 조정 및 지원(ODA)	2,741	2,972	2,972	5,396	2,424	81.6
- ODA 심사·평가 및 현안연구	1,081	1,195	1,195	1,425	230	19.2

(자료: 국무조정실)

□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사업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총괄·조정기관-주관기관-시행기관의 3단 구조로 구성됨.

- '총괄·조정기관'으로서 국제개발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최고 정책기구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고, 기획재정부와 외교부는 각각 유상원조와 무상원조의 '주관기관'이며, ODA 사업을 직접 실시하는 기관은 '시행기관'이라고 함.

□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2025년도 사업 추진을 위해 총 41개 시행기관(지방자치단체 7개 포함) 관련 6조 7,972억원의 예산을 요구하였는데, 이는 2024년도 예산 6조 2,629억원 대비 5,343억원(8.5%) 증가한 수치임.[96]

96) 제50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2024. 6. 26.) 의결안건(제50-1호), 「'25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요구액 기준)」

2) 검토의견: 기관역량진단을 예산과 연계하여 평가의 실효성 제고 필요

국무조정실은 기관역량진단 지표를 개선하는 한편, 기관역량진단 결과를 예산과 연계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실시하는 기관역량진단의 실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임.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6조[97]는 국제개발협력 사업 성과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사업 시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ODA 총괄·조정기관인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가 관련 ODA사업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위원회의 평가 결과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다음 종합시행계획 심사·의결 시에 고려되어야 하며,[98] 종합시행계획에는 해당 연도에 추진되는 사업 개요 등과 함께 시행기관, 사업명, 해당연도 예산요구액 등이 반영되는데,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연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 이 종합시행계획을 존중하여야 함.[99]

- 또한,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1-2025)」은 추진과제로서 성과관리 강화 및 평가 실효성 제고를 규정하고, 위원회의 사업

97)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6조(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 ① 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성과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국제개발협력 사업 시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 및 사업을 평가한다.

98)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6조(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 ① 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성과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국제개발협력 사업 시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 및 사업을 평가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정책 및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및 제2항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를 다음 종합기본계획 및 종합시행계획을 심사·의결할 때 고려하여야 한다.

99)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4조(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의 수립 등)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5항에 따라 의결된 종합시행계획을 존중하여야 한다.

조정 및 연도별 시행계획 심사 과정에서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예산과 연계'하도록 하였음.[100]

□ 위원회는 시행기관의 성과관리 역량 강화를 위하여 2022년도부터 기관역량진단을 실시하고 있음. 이 역량진단은 중위 규모(10억원) 이상 시행기관을 대상으로 2년 주기로 시행되는데,[101] 2021년부터 2024년 9월까지 기관역량진단 및 컨설팅을 위해 집행한 용역비는 총 5억 2,745만원임.

<기관역량진단 관련 일반연구비(260-01) 계약현황>

(단위: 천원)

구분	연구용역 주제	계약금액
2021년	ODA시행기관에 대한 역량진단 모델 개발 시행기관 성과관리 역량 강화 지원	178,181
2022년	ODA시행기관 역량진단 및 컨설팅	124,727
2023년	ODA시행기관 역량진단 및 컨설팅	133,636
2024년9월	ODA시행기관 역량진단 및 컨설팅 (사업 진행 중)	90,909
합 계		**527,453**

(자료: 국무조정실 제공자료 재구성)

□ 위원회가 실시하는 기관역량진단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두가지 사항을 재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음.

□ 첫째, 기관역량진단 결과와 시행기관 예산요구액 간의 연계성을 높일

100) 제3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제36-1호), 2021.1.20., p.22

101) 2022년도에는 13개 기관, 2023년도에는 12개 기관에 대하여 기관역량진단을 실시하였음.

2022년도 기관역량진단(13개 기관)	2023년도 기관역량진단(12개 기관)
산업부, 농진청, 과기부, 국토부, 교육부, 해수부, 복지부, 기상청, 문체부, 관세청, 고용부, 국가유산청, 법무부	기재부(EDCF), 외교부(KOICA), 국조실, 산림청, 경찰청, 행안부, 농식품부, 환경부, 여가부, 특허청, 통계청, 식약처

필요성이 있음.

○ 2022년도에 실시된 기관역량진단은 산업통상자원부 등 13개 기관에 대하여 실시되었는데, 성과관리역량[102]과 자체평가역량[103]을 진단하여 A등급 3개기관, B등급 7개기관, C등급 3개기관으로 평가하였음.

- 그런데, 2022년도에 실시된 기관역량진단 결과와 2024년도 및 2025년도 종합시행계획 상의 예산요구액[104]을 비교해보면, 기관역량진단에 따른 평가 결과가 시행기관별 예산요구액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보임.

〈2022년도 기관역량진단 결과 및 2024년·2025년 예산요구액 증감〉

기관명	등급	2023예산액 대비 2024예산요구액 증감	2024예산액 대비 2025예산요구액 증감
산업통상자원부	A	112.5%	47.8%
○○○	A	21.0%	△11.1%
○○○	A	12.2%	△16.0%
○○○	B	△5.4%	33.4%
○○○	B	20.1%	23.1%
○○○	B	83.0%	22.6%
○○○	B	11.1%	36.8%
○○○	**B**	**△0.9%**	**△1.8%**
○○○	B	△11.6%	15.6%
○○○	B	42.5%	△12.8%

102) 소항목: 사업기획/ 사업관리/ 사후관리 노력
103) 소항목: 자체평가 수행기반 / 자체평가 관리 / 자체평가 결과의 활용
104) 국회에 대한 예산 요구안을 말함. 국회에서 이 예산 요구안을 심의·의결하면, 위원회는 확정된 예산을 기준으로 종합시행계획을 수정하게 됨.

○○○	C	△0.8%	7.9%
○○○	**C**	**315.7%**	**18.8%**
○○○	C	4.5	2.8

(자료: 국무조정실 제공자료 재구성)

- 2022년도 진단 결과, 가장 낮은 C등급을 받은 시행기관 중 하나는 2024년도 예산요구 시에 전년 대비 315.7% 증액 요구하였고, 2025년도에도 전년 대비 18.8%를 증액 요구하였음.

- 반면, B등급을 받은 시행기관 중 하나는 2024년도와 2025년도 예산요구액 모두 전년 대비 감액 조정되는 등 기관역량진단 결과와 시행기관의 사업예산 간의 연관성이 나타나지 아니함.

○ 2024년 실시된 「OECD 개발협력 동료검토」[105]에서도 “기관역량진단 결과 등을 참고하여 ODA 재원 배분 시에 높은 역량을 갖춘 시행기관에 대해 우선순위를 부여할 것”을 권고하였는데,[106] 이는 양적으로 확대된 ODA 예산[107]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라는 취지로 이해됨.

□ 둘째, 기관역량진단을 위한 진단지표를 재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음.

○ 감사원의 2023년 8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추진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자원부의 보조사업자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국무조정실로부터 중단 통보를 받은 ODA 사업임에도 예산을 집행해 관련 기

105)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은 매년 4 ~ 5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ODA 정책 및 집행에 대한 회원국 상호 검토를 진행함.

106) 외교부 공동보도자료, 2024.5.21.

107)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1-2025)」 기간 동안, (2021년) 3.71조원 → (2022년) 3.94조원 → (2023년) 4.78조원 → (2024년) 6.26조원 → (2025년요구액) 6.79조원으로 ODA 규모 확대

자재를 구입하는 등 부당하게 사업을 추진하였고, 협의의사록[108] 체결 및 실질적인 사업 착수 이전에 미리 구입한 기자재를 사업 중단 등으로 인해 창고에 장기간 방치한 사례가 발생하였음.

- 이로 인하여 관리·감독 주체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감사원으로부터 수원국과의 협의의사록 체결 전에 보조금을 관련 기관에 전액 교부하는 관행을 시정하도록 제도개선 요구를 받았음.

- 이러한 사례로 볼 때, 산업통상자원부는 개별 ODA사업을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원회의 2022년도 기관역량진단 결과에서는 오히려 가장 높은 A 등급을 받아 ODA 사업 추진을 위한 충분한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았음.

○ 이는 현재의 기관역량진단이 시행기관의 개별 ODA 사업 집행능력을 평가하기 보다는 ODA 사업 관련 인적·구조적 자원 구비 여부에 초점을 두고 평가하기 때문으로 보임.

- 기관역량진단 지표를 살펴보면, 전략 부합성, 계획수립의 충실성, 사업관리 지침 보유 여부, 자체평가[109]의 충실성 등으로 구성되고, 시행기관이 실시하는 개별 사업에 대한 평가 항목은 보이지 아니함.

---

108) 수원국과 ODA사업의 목적 및 기간, 대상분야, 공여국측 지원사항, 협력대상국측 부담사항 등 협력 내용에 대하여 합의한 사항을 정리하고 서명한 문서

109) ODA 사업 시행기관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평가

〈기관역량진단의 진단지표〉

2022년·2023년 진단지표	2024년 진단지표
▫ 기관 사업의 전략 부합성 ▫ 계획 수립의 충실성 ▫ 수행체계의 명확성 ▫ 사업관리의 체계성 ▫ 사업 간의 연계 및 협업 노력 ▫ 사후관리 이행 노력 ▫ 사업성과 유지 노력	▫ 수원국 개발전략 고려 여부 ▫ 사업추진 타당성 검토 여부 ▫ 성과목표와 지표의 적절성 ▫ 전략 부합성 검토 ▫ 전담조직 등 업무 분담의 명확성 ▫ 사업관리 및 사후관리 지침 보유 ▫ 절차에 따른 충실한 사업 이행 ▫ 사업진행 상황의 분기별 점검·보고 ▫ 사업간 연계 실적 ▫ 해외 공관과 수원국과의 협업 ▫ 사후관리 계획 수립 및 이행 여부
▫ 자체평가 제도 구비 실태 ▫ 자체평가 계획의 명확성 ▫ 자체평가 과정의 신뢰성 ▫ 자체평가 결과의 충실성 ▫ 자체평가 품질 개선 노력 ▫ 자체평가 개선과제 도출의 적극성 ▫ 자체평가 결과 환류의 충실성	▫ 자체평가 지침 및 매뉴얼 구비 여부 ▫ 자체평가 외부전문가 등 참여 여부 ▫ 자체평가 계획의 명확성 ▫ 자체평가 과제선정의 대표성과 적극성 ▫ 자체평가 보고서 품질 ▫ 자체평가 결과의 활용·공개 수준

(자료: 국무조정실 제공자료 재구성)

□ 국무조정실은 향후 시행기관의 개별 ODA사업 집행능력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기관역량진단 지표를 개선하는 한편, 기관역량진단 결과를 예산과 연계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실시하는 기관역량진단의 실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임.

5. 청년정책총괄 조정 및 지원[110]: 청년친화도시 사업 지원액 감액조정 필요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청년정책총괄 조정 및 지원”은 청년 관련 정책의 총괄·조정, 청년정책의 분석 및 이행상황 점검·평가, 청년과의 소통 활성화 및 청년참여 확대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9억 5,000만원(△21.7%) 감액된 70억 3,400만원이 편성됨.

<2025년도 청년정책총괄 조정 및 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본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청년정책총괄 조정 및 지원	7,323	8,984	7,034	△1,950	△21.7

(자료: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총괄 조정 및 지원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A)	2025년도 예산안(B)	증감 (B-A)	(B-A)/A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및 청년정책책임관협의회 운영	219	219	-	0.0
청년참여 확대	1,274	1,205	△69	△5.4
청년의 날 기념 및 주간행사 개최	530	500	△30	△5.7
청년정책 연구사업	100	300	200	200.0
청년정책 홍보	682	642	△40	△5.9
시행계획 점검 및 추진실적 분석·평가	300	250	△50	△16.7
청년통합지원체계 구축	**2,270**	**2,770**	**500**	**22.0**
청년친화도시 지정 및 운영	198	1,148	950	479.8
계	8,984	7,034	△1,950	△21.7

(자료: 국무조정실)

110) 세부사업: 청년정책총괄 조정 및 지원(7035-316)

2) 검토의견: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1차년도 지자체 보조금 조정 필요

청년친화도시 지정 및 운영 사업은 청년친화도시가 연말에 지정될 예정임에 따라 사업계획 및 소요액이 내년에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 사업시행 첫 해임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검토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및 자치단체보조사업에 대해 별도로 규정한 예산안 편성지침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1년차 보조금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청년친화도시 지정 및 운영 사업은 청년친화도시 지정·평가, 성과관리 방안 등 연구 등을 수행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9억 5,000만원(479.8%) 증액된 11억 4,8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청년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발전,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으로, 2023년 3월 「청년기본법」 개정으로 국무총리의 청년친화도시 지정 및 지원의 근거가 마련[111]되었음.

---

111)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청년친화도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발전,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청년친화도시”라 한다)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무총리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를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청년친화도시의 지정 기준·절차, 지원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8(청년친화도시의 지정) ① 법 제24조의6제1항에 따른 청년친화도시(이하 “청년친화도시”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기반을 갖추고 있을 것
2. 청년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3. 청년참여, 청년발전, 청년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과 관련한 업무 실적이 있을 것
4. 그 밖에 국무총리가 청년친화도시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② 법 제24조의6제2항에 따라 청년친화도시의 지정을 받으려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무총리에게 제출해야 한다.

○ 국무조정실은 매년 3개의 지자체를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할 계획으로, 지정기간은 5년이며 그중 최초 2년간 지역 특성이 반영된 청년친화적 정책 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지자체당 5억원씩 지원할 예정임. 연도별로 국비 2억 5,000만원이 지원되고, 보조율 50%를 적용하여 국비에 대응한 지방비를 2억 5,000만원 이상 매칭하고자 함. 이에 따라 2025년도 예산안에는 3개의 지자체에 대한 2억 5,000만원의 지원액이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목)로 7억 5,000만원 반영되었음.

<청년친화도시 지정 및 운영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청년친화도시 지정 및 운영: 11억 4,800만원 **① 청년친화도시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목) 7억 5,000만원 (2억 5,000만원 × 3개 지역)** ② 청년친화도시 지정 및 운영 용역: 일반용역비(210-14목) 1억 5,000만원 ③ 청년친화도시 성과관리 방안 등 연구: 일반연구비(260-01목) 2억원 ④ 운영비용: 일반수용비(210-01목) 3,300만원, 국내여비(220-01목) 500만원, 사업추진비(240-01목) 1,000만원

(자료: 국무조정실)

□ 해당 보조금은 각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기획·추진한 지역 맞춤형 청년친화 사업에 집행될 계획인데, 국무조정실은 청년친화도시는 2024년 연말에나 지정될 예정[112]으로 지자체별 사업 내용은 차년도 1분기

---

1. 제1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친화도시 조성계획에 관한 서류
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청년발전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방안
다. 해당 지방자치단체 청년의 권익 증진 방안
③ 국무총리는 법 제24조의6제2항에 따라 청년친화도시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④ 청년친화도시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년친화도시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무총리가 정한다.

이후에 구체화될 것으로 설명하여 2024년 10월 기준 지자체당 보조금 2억 5,0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음.

□ 아울러 국무조정실은 사업 구성요소[113], 사업비 운용방식 및 사업 성과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사업 운영지침을 연말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하나,

청년친화도시의 경우 연말까지 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지자체를 알 수 없어 지자체 차원에서 지방비 확보가 지연됨에 따라 사업추진이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 지자체가 청년친화도시 지정 신청 시(10월말 기한) 국무조정실에 제출한 청년친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내년이 사업시행 첫 해임을 감안할 때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사업계획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이르면 내년도 2분기 중에 사업이 본격적으로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예산안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112) 2024년 8월 지정계획 공고 후 10월 말까지 지자체로부터 신청을 받고 있고, 11월부터 12월까지 지정평가 후 12월 중 청년친화도시가 지정될 예정임.

113) <청년친화도시 사업 구성요소(안)>

구성요소	세부내용
브랜드化	○ 청년정책 분야별 연계를 통해 지역을 대표할만한 도시 브랜드를 창출하고, 지역 내 청년정책을 종합적·구조화하여 차별화된 사업모델 제시
청년선호	○ 청년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 맞춤형 콘텐츠와 접목하여 청년들이 원하는 복지·문화 등과 연계된 프로젝트 수립
청년지지	○ 청년 일자리 및 창업 기회 확대, 청년 주거 지원 등을 통해 청년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실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및 시스템 마련
지역확산	○ 청년들의 적극적 참여, 공공·민간 등 다양한 주체와의 네트워크 강화 확대

(자료: 국무조정실)

○ 참고로, 자치단체보조사업에 대하여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은 중앙관서의 장은 자치단체의 예산계상 신청을 한 사업에 한하여 국고보조금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고, 부지확보·사전절차이행 등 보조사업 수행여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며, 사업 추진단계, 단계별 소요기간 등을 감안하여 자치단체가 당해 연도 내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6. 공직복무 관리[114]: 기본경비에 편성된 특수활동비 이관 필요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공직복무 관리” 사업은 국무총리의 행정 각부 지휘·통할을 보좌하고,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하여 행정부 내 공직기강 확립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억 600만원(12.2%) 증가한 9억 7,400만원임.

<2025년도 공직복무 관리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공직복무 관리	842	868	868	974	106	12.2

(자료: 국무조정실)

2) 검토의견: 기본경비에 편성된 특수활동비 이관 필요

국무조정실은 공직복무 관리 목적의 특수활동비를 기본경비에 관행적으로 편성하고 있으므로, 이를 기본경비에서 공직복무 관리사업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음.

□ 국무조정실은 윤석열 정부 2년차 일하는 분위기 조성 등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 필요성이 대두되어 2023년초에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이하 “점검단”) 인력을 36명에서 47명으로 11명 증원(+32%)하였음.

114) 세부사업: 공직복무 관리(7036-303)

○ 구체적으로, 2023년 1~2월 법무부 5명, 경찰청 4명, 국세청 2명 등 총 11명의 직원을 비별도 정원으로 증원하였으며, 2023년 2월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통해 11명 중 5명을 별도정원으로 변경하였음.

□ 한편, 2024년 예산안에는 점검단 인력 증원분을 반영하여 업무용 휴대전화 이용요금, 차량 임차료 및 유류비, 여비, 사업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음.

○ 이 중, 특정업무경비(250-03목)[115]는 인력 11인 증원에 따라 1인당 월 30만원[116]씩 연간 총 3,960만원의 증액 소요가 있는 것으로 보아,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음.

<점검단 증원에 따른 예산 증액 내역>

(단위: 천원)

예산과목	증액예산	내용	비고
공공요금 및 제세	11,106	업무용 휴대전화	35대→46대
임차료	52,079	공직복무 점검활동 차량 임차	15대→26대
유류비	20,815	임차 차량 유류비	15대→26대
국내여비	57,000	공직복무 점검활동 여비	30명→41명
사업추진비	11,000	공직복무 점검활동 업무추진비	80회→105회
특정업무경비	39,600	조사 및 점검 활동 소요경비	37명→48명
합 계	152,000		

(자료: 국무조정실)

□ 그런데, 2024년 당시 특정업무경비 증액 예산을 이 사업이 아닌 '국무조정실 기본경비(총액)'[117]에 공직복무 관리 활동비라는 명목

115) 각 기관의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

116) 「예산집행지침」에서 규정하는 특정업무경비 월 정액 지급 한도금액

으로 반영하였는바, 이는 사업 집행 목적의 경비를 사업 예산이 아닌 기본경비에 잘못 편성한 것이며, 이에 2025년도 예산안에는 기본경비에 편성되어 있던 특정업무경비를 이 사업으로 이관함으로써 2024년도 예산 편성의 오류를 시정하였음.

□ 다만, 국무조정실은 특정업무경비를 기본경비에 잘못 편성했던 2024년의 사례와 유사하게 공직복무 관리 목적의 특수활동비(230-00목)를 매년 '국무조정실 기본경비'[118]에 편성하고 있음.

○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은 기본경비의 적용대상을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 경비 및 지속적인 소규모 운영경비"로 명시[119]하고 있으나, 해당 특수활동비는 공직복무관리관실의 공직비위 정보수집과 조사 및 관련 제보자 접촉 등 공직기강 확립업무 추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편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비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함.

---

117) 세부사업 : 국무조정실 기본경비(총액)(7011-200)
118) 세부사업 : 국무조정실 기본경비(7011-250)
119)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 기본경비

1. 적용대상
□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 경비 및 지속적인 소규모 운영경비
① 기본행정경비
- 실·국·과 단위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여비, 자산취득비 등 경상적 경비
- 인원·직제 등에 따라 공통적으로 편성되는 직책수행경비, 과운영비, 급식비 등 기준성 경비
- 공무원교육훈련에 소요되는 교육훈련 경비
- 맞춤형 복지 시행에 따른 경비

② 소규모 전산운영경비
- 전산소모품, 임차료, 회선사용료 등 전산장비의 유지운영
- PC 교체 등 소규모 전산경비

③ 사회복무요원 운영비
- 사회복무요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피복비, 교통비

□ 이에 대하여 국무조정실은 특수활동비에 대한 관리·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집행부서의 사업비가 아닌 회계부서 관할의 기본경비로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나, 현재에도 「국고금 관리법」에 근거하여 회계부서의 지출관이 사업부서의 출납공무원에게 특수활동비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집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수활동비를 기본경비에 편성하는 실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120]

□ 따라서, 국무조정실 기본경비에 편성되어 있는 특수활동비 1억 7,200만원을 공직복무 관리 사업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음.

<특수활동비의 이관 관련 수정안>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25년 예산안	조정	
		조정액	조정내역
국무조정실 기본경비(7011-250)	6,540	△172	·특수활동비 이관에 따른 감액
공직복무 관리(7036-303)	974	172	·특수활동비 이관에 따른 증액

120) **「국고금 관리법」**
제24조(관서운영경비의 지급)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관서를 운영하는 데 드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제22조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지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이하 "관서운영경비"라 한다)는 필요한 자금을 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7.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 운영[121]: 국민참여 촉진 캠페인 및 포털 광고비의 감액조정 필요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 운영”은 2025년 광복 80년을 맞이하여 범국가적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국민참여 기념사업 등을 추진하려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1억 2,9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2025년도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 운영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본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기획단 운영	-	-	2,129	2,129	순증
- 위원회·추진단 운영경비	-	-	915	915	순증
- 국민참여 기념사업	-	-	712	712	순증
- 기념사업 홍보	-	-	432	432	순증
- 기념사업 성과관리	-	-	70	70	순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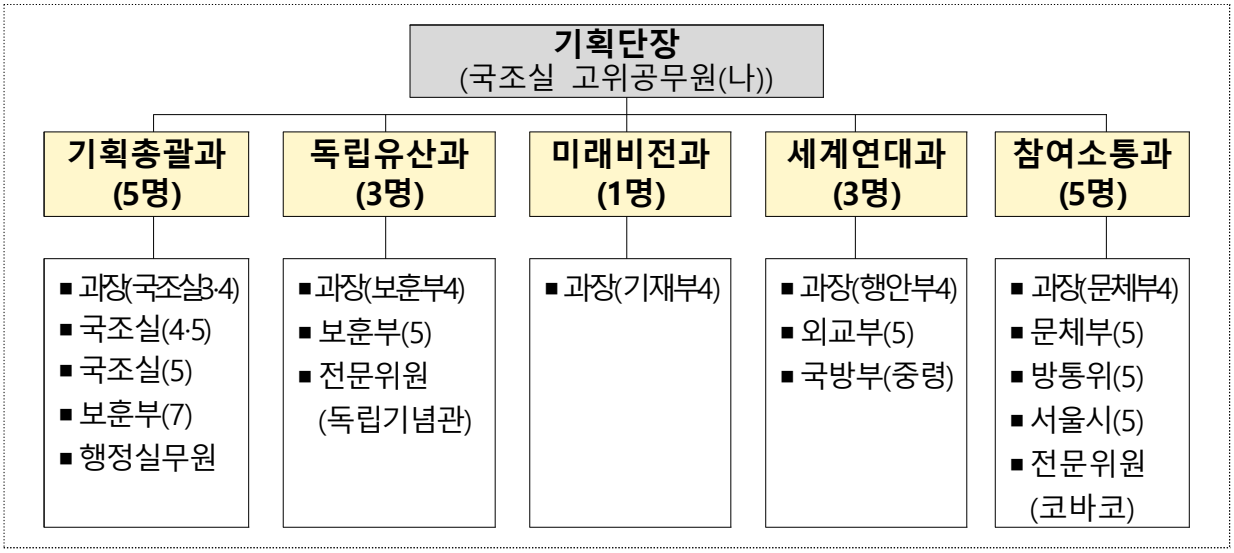
(자료: 국무조정실)

□ 2024년 7월 23일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제정됨에 따라, 같은 해 8월 국무조정실은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을 구성하였음. 기념사업추진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80명 이내의 위원으로 연내 구성할 계획이며,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은 국무

121) 세부사업: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 운영(7036-315)

조정실·국가보훈부·기획재정부·문화체육관광부 등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 조직도〉



주: 2024년 9월 20일 기준

(자료: 국무조정실)

○ 동 사업의 내역사업으로는 위원회·추진단 운영경비 9억 1,500만원, 국민참여 기념사업 7억 1,200만원, 기념사업 홍보비 4억 3,200만원, 기념사업 성과관리 7,000만원이 편성되었음.

2) 검토의견

(1) 국민참여 촉진 캠페인의 집행가능성 및 예산 조정 검토 필요

국민참여 촉진 캠페인은 10월말 기준 구체적 사업계획이 미비하고, 민간의 참여 정도가 편성 근거로 부족한 측면이 있으므로 집행가능성 및 예산의 조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내역사업인 '국민참여 기념사업'은 광복 80년 기념사업 기획·추진 시 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모·포상 등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국민참여 촉진 캠페인'에 3억원, '국민의 소소한 아이디어 실현 공모'에 3억원, '광복 80년 서포터즈 운영사업'에 1억 1,200만원 등 총 7억 1,200만원이 편성되었음.

<국민참여 기념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① 국민참여 촉진 캠페인 3억원
- 일반수용비(210-01목): 2억 8,000만원 = 80팀 × 3.5백만원
- 임차료(210-07목): 행사장(발표식) 2,000만원

② 국민의 소소한 아이디어 실현 공모 3억원
- 일반수용비(210-01목): 3억원 = 위원회 기념사업(50개)×사업당 12개×아이디어 구현비 50만원

③ 광복 80년 서포터즈 운영사업 1억 1,200만원
- 일반수용비(210-01목) 1억 1,200만원 = 80명×SNS 활동비 등 20만원×7개월

(자료: 국무조정실)

□ 그런데, 광복 80년 기업사업이 모든 국민의 참여로 이루어지도록 민간사업을 지원·독려하는 '국민참여 촉진 캠페인'은 10월말 기준까지 사업계획과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음.

○ 당초 정부안 편성 당시 이 사업의 일반수용비(210-01목)는 국민이 기획·활동한 광복 80년 기념사업 중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시상하기 위해 편성되었는데, 대상 8팀에 대하여 각각 2,000만원을, 장려상 등 80팀에 대하여 100만원의 시상금을 전제로 편성하였음.[122)]

○ 한편, 예산안 제출 이후에는 이 사업의 계획을 국민이 직접 기획한 사업에 사업지원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수정하였으나, 실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2024년 10월말 현재까지 구성되지 않은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구성 이후 다시 변경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음.

□ 또한, '국민참여 촉진 캠페인'은 80팀에 대한 지원을 전제로 편성하였으나, 해당 사업에 대한 참여수요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집행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종합하면, 이 사업은 아직까지 구체적 사업계획이 미비하고, 민간의 참여 정도가 편성 근거로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집행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예산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122) 2억 8,000만원 = 대상 1억 6,000만원(2,000만원×8팀) + 장려상 등 8,000만원(100만원×80팀)

(2) 광복 80년 포털 광고비의 중복편성 고려한 감액 필요

기념사업 홍보 사업 중 '광복 80년 광고·홍보'를 위해 편성된 포털 광고비(2억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광복 80주년 기념 광고를 위한 예산이 반영되었다는 점을 고려해 감액할 필요가 있음.

□ 내역사업인 '기념사업 홍보'는 광복 80년 광고·홍보를 위한 포털 광고비 2억원, 슬로건·로고 디자인 등 광복 80년 디자인 사업에 1억 3,200만원, 홈페이지 구축·운영에 1억원으로 총 4억 3,200만원이 편성되었음.

○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그중 포털 광고비로 편성된 '광복 80년 광고·홍보' 예산 2억원은 광복 80년 기념사업 전반을 홍보하기 위한 예산임.

<기념사업 홍보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① 광복 80년 광고·홍보: 포털 광고비 2억원
- 2,500만원×4개 포털×2월 = 2억원

② 광복 80년 디자인 사업 1억 3,200만원
- 슬로건·로고 디자인 1억원 + 현수막·백드롭 등 3,200만원

③ 홈페이지 구축·운영 1억원
- 홈페이지에 IT기술(메타버스, 디지털 트윈, 챗봇, AI 등)을 활용한 콘텐츠를 연계하기 위한 개편·디자인

(자료: 국무조정실)

□ 그런데 매년 방송, 온라인, 옥외광고, 인쇄 등의 매체를 활용한 정부의 주요정책 광고비 및 정책광고 운영비 등이 편성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매체활용 정책홍보' 사업의 경우, 2025년도 예산안에 광복 80주년 기념 광고를 위해 12억 1,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를 활용하

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광복 80주년 관련 광고를 추진할 계획임.[123]

□ 그럼에도 국무조정실에서 광복 80년 광고를 위한 포털 광고비로 2억원이 반영된 것은 동일한 사항에 대한 광고비가 부처 간 중복편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문화체육관광부가 국정에 대한 홍보에 관한 사무를 관장[124]하므로 보다 효율적·체계적 홍보가 가능하다는 점,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은 광고비는 유사한 사업의 통합실시 등을 전제로 절감편성하도록 규정[125]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국무조정실 소관 기념사업 홍보 예산 2억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음.

123) 문화체육관광부 일반회계 '매체활용 정책홍보' 사업(사업코드 1932-301)

<2025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국가 주요정책 광고 : 22,015백만원(△1,633, △6.9%)
- 정부 4년 차 개혁추진과제 등 핵심 정책과제 중점 홍보, 광복 80주년 등 국가 중요행사 홍보를 통해 정책성과 등에 대한 국민 체감도상승과 인식 제고
· 주요정책 광고 16,048백만원(△2,848, △15.1%)
▲방 송 : 6,048백만원
▲온라인 : 6,800백만원
▲옥 외 : 2,300백만원
▲인 쇄 : 900백만원
· 국가 기본정책 장기 캠페인 4,700백만원(전년동)
· 광복 80주년 기념 광고 1,215백만원(순증)
· 정책광고 운영 등 52백만원(전년동)

○ 정책간행물 발간 : 4,833백만원(전년동)
-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소통 활성화를 위해 정책간행물(정기, 수시) 발간, 디지털 확산
· 정책간행물 발간 4,283백만원(전년동)
▲ 정기 및 수시간행물 발간 4,283백만원
· 정책간행물 디지털 확산 550백만원(전년동)
▲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확산 350백만원, ▲ 누리집 운영 및 개선 200백만원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124) **「정부조직법」 제36조(문화체육관광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관광,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25) 기획재정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217.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 출연금】

1. 연구기관 공통: 수시연구사업 활성화 필요

□ ‘수시연구사업’은 사업연도 중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연구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유관부처 등의 요청에 의해 기관 내부의 적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비 총액만을 승인하는 예비 연구과제를 의미함.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기본연구사업 관리 및 운영규정」 제13조제1항은 기본연구사업비 총액의 10~30% 범위 내에서 수시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함[126]. 2025년 각 연구기관의 수시연구사업 예산 편성 내역을 살피면 평균적으로 기본연구사업비 총액의 11.05%를 수시연구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규정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파악됨.[127]

□ 그러나 수시연구사업비가 편성된 25개 연구기관 중 15개 연구기관의 기본연구사업비 대비 수시연구사업비 예산이 10%대에 머무르고, 조세재정연구원의 경우 기본연구사업비 대비 수시연구사업비 예산이 4.73%에 머무르는 등 「기본연구사업 관리 및 운영규정」 제13조제1항의 수시연구사업비 편성 기준은 수시연구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126) 「기본연구사업 관리 및 운영규정」 제13조(수시연구과제 선정) ① 연구기관은 정책연구의 시의성 및 대응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본연구사업비 총액의 10-30% 범위 내에서 당해 연도에 수시로 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이월 사업 등)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통하여 수시연구과제비를 변경할 수 있다.

127) 2024년 기본연구사업비 총액 대비 수시연구사업비는 평균 9.07%였음.

보다는 수시연구사업비 편성에 있어 사실상의 하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됨.

<2025년도 연구기관별 수시연구사업비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기관명	수시연구과제 예산(A)	기본연구사업비 예산(B)	비율(A/B)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16	596	19.46
국토연구원	100	992	10.0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33	1329	10.01
산업연구원	180	1800	10.00
에너지경제연구원	80	792	10.10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9	186	10.22
통일연구원	100	580	17.24
한국개발연구원(KDI)	68	680	10.00
KDI국제정책대학원	-	-	-
한국교육개발원	165	1298	12.7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59	1587	10.02
한국교통연구원	72	414	17.39
한국노동연구원	116	780	14.8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17	1168	10.02
한국법제연구원	109	999	10.9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18	1166	10.12
육아정책연구소	123	764	16.1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75	741	10.1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65	1375	4.73
한국직업능력연구원	101	1003	10.07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0	530	11.32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01	733	13.78
한국행정연구원	93	823	11.30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62	613	10.11
한국환경연구원	125	1250	10.00
건축공간연구원	65	620	10.48
합 계	**2,522**	**22,819**	**11.05**

□ 또한, 각 연구기관의 수시연구사업에 대한 2023년 결산을 통해서는 수시연구사업의 집행 부진 문제를 파악할 수 있음. 2023년 연구기관의 수시연구사업 예산현액은 2023년 수시연구사업 예산액 32억 4,300만원에 전년도 이월 18억 1,000만원을 더한 50억 5,300만원이며, 이 중 77%에 해당하는 38억 8,900만원은 연내 집행되었으나, 23%에 해당하는 11억 6,500만원은 연내 집행되지 못하고 2024년도로 이월되었음.

<2023년 수시연구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기관명	2023년				예산현액대비 집행액(%)	예산현액대비 이월액(%)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연구회	-	-	-	-	-	-
과학	110	152	115	37	76	24
국토	125	216	205	11	95	5
대외	142	358	289	69	81	19
산업	271	407	244	163	60	40
에너지	155	207	152	55	73	27
정보통신	29	29	25	4	86	13
통일	85	97	85	12	88	12
KDI	71	92	20	72	22	78
KDI대학원	-	-	-	-	-	-
교육	239	301	245	56	81	18
평가원	245	679	318	361	47	53
교통	51	84	84	0	100	0
노동	96	229	165	65	72	28
농촌	147	278	224	54	81	19
법제	101	171	142	29	83	17
보건	123	177	147	30	83	17
육아	124	184	176	8	96	4
여성	113	183	138	45	75	25
조세	103	83	64	19	77	23

직업	169	238	238	0	100	0
청소년	69	75	61	14	81	19
해양	154	154	154	0	100	0
행정	124	188	176	12	94	6
형사·법무	134	149	122	27	82	18
환경	195	230	217	13	94	6
건축	68	92	83	9	90	10
합 계	3,243	5,053	3,889	1,165	77	23

□ 특히,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3년 수시연구사업의 예산현액 9,200만원 중 7,200만원(78%)를 이월하여 수시연구사업 수행이 상당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4년도에는 1억 4,500만원의 예산액 중 5,600만원을 기본연구사업비 내 계획된 다른 연구과제로 옮겨 집행하고, 나머지 예산현액 8,900만원 중 2024년 10월까지 1,374만원(14.4%)만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남.

□ 수시연구사업의 집행 부진은 국회가 심의·확정한 수시연구사업 예산 규모를 준수하지 못하는 것으로 국회 예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며, 정책현안에 대응하는 시의성 높은 정책연구의 가능성을 저해함.

□ 따라서 각 연구기관은 수시연구과제 발굴·수행에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고 이 과정에서 정부의 수시 연구수행 요청이 부족한 경우에는 자체 연구과제 선정절차를 통해 수시연구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128)]

128) 「기본연구사업 관리 및 운영규정」
제13조(수시연구과제 선정) ② 수시연구과제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선정·수행 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의 수시 연구수행 요청이 있는 경우

2. 연구기관 공통: 협동연구 추진체계 개선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협동연구사업은 연구기관, 대학, 산업계, 학회 등의 국내외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연구 또는 세미나 등 국내외 학술행사로서 연구기관 또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가 기획하는 사업임[129].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130]는 연구기관 간의 협동연구를 위한 지원을 연구회의 사업 중 하나로 열거하고 있음. 협동연구는 “연구기관 기획 협동연구”와 “연구회 기획 협동연구”로 구분됨.

□ 2025년도 연구기관 기획 협동연구사업은 9개 기관에서 16개 연구과제를 수행할 예정이며, 관련 예산은 총 26억 9,400만원이 편성되었음. 한편, 2025년 연구회 기획 협동연구사업은 17개 연구과제 수

---

2. 정책연구(실무)협의회에서 수시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한 경우
3. 연구기관이 정책현안에 대한 시급한 대안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각 연구기관의 과제선정 절차에 따라 선정된 경우
4. 기타 연구기관이 수시연구과제의 수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129) **「협동연구사업 운영규정」 제2조(정의)** 「협동연구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 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동연구사업”이라 함은 연구기관, 대학, 산업계, 학회 등의 국내외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연구 또는 세미나 등 국내외 학술행사로서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가 기획하는 것을 말한다.

130) 제21조(사업) 연구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연구 기획과 연구기관의 발전 방향의 기획
2. 연구기관의 기능 조정 및 정비(연구기관의 신설·통합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에 대한 평가
4. 연구기관 간의 협동연구를 위한 지원
5. 연구기관의 연구성과 제고와 성과 확산을 위한 지원
6. 그 밖에 연구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행을 위해 총 44억 7,500만원이 편성되었음.

<연구기관 및 연구회 기획 협동연구사업 운영 현황>

(단위: 백만원, %)

연구회 기획 협동연구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예산	9,500	10,200	6,930	1,500	4,475
과제수	69	50	32	16	17
연구기관 기획 협동연구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예산	5,356	6,216	4,445	4,170	2,694
과제수	69	50	32	16	16
기관수	13	13	11	12	9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 검토의견

□ 연구회의 「협동연구사업 운영규정」 제4조는 “연구기관 기획 협동연구”를 연구회 산하 연구기관이 연구회의 공모를 통해 수행하도록 정하고, 「협동연구사업 운영규정」 제23조의2는 “연구회 기획 협동연구”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연구회가 주관연구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도록 정함.

□ 그런데 연구회 및 연구기관은 「협동연구사업 운영규정」에 정해진 사업수행방식을 준수하지 않고 협동연구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함.

□ 첫째, “연구기관 기획 협동연구”에 관하여 「협동연구사업 운영규정」은 연구회의 공모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연구회에 따르면 “연구기관 기획 협동연구”에 관한 연구회 공모는 최근 5년간 한차례도 수행된 바 없음. 또한 연구회에 따르면 연구회는 “연구기관 기획 협동연구”에 대하여 예산 심의 및 성과관리만을 수행할 뿐 과제 및 협력기관에 관한 공모는 연구기관 주도로 기획·수행되고 있음.

□ 「협동연구사업 운영규정」은 “연구기관 기획 협동연구”에 대하여 연구회의 공모를 거치도록 함에 더하여 연구기관이 작성한 협동연구사업 사업계획서를 연구내용 및 범위의 적설성, 유사·중복 여부, 시의성 및 필요성 등을 기준으로 연구회가 심의하도록 함[131]. 이는 “연구기관 기획 협동연구”에 대하여 연구회가 예산편성의 측면뿐 아니라 각 연구과제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협동연구사업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기 위함임.

□ 따라서 연구회는 “연구기관 기획 협동연구”에 관한 공모절차를 규정에 정해진 바와 같이 운용하고 연구기관 기획 협동연구 사업계획서에 관한 실질적 심의를 통해, 범국가적 정책과제·중장기 미래전략 등의

131) 「협동연구사업 운영규정」 제6조(사업계획서의 심의) ① 연구기관 기획 협동연구 사업계획서는 연구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 승인을 얻어 선정한다.
② 사업계획서에 대한 심사기준은 연구내용 및 범위의 적절성, 유사·중복 여부, 시의성 및 필요성, 예산편성의 적절성 등으로 한다.

학제적 융·복합 연구가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연구회 기획 협동연구”에 관하여 「협동연구사업 운영규정」은 연구회에 협동연구에 대한 사업개요·추진목적·추진방법·향후계획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연구회 기획 협동연구의 주관연구기관은 연구회의 기본계획서를 기초로 연구내용 등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며, 연구회는 주관연구기관장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여 “연구회 기획 협동연구”의 과제기획과 사전검토 등을 연구회의 권한과 임무로 정하고 있음[132]. 그러나, 연구회에 설명에 따르면 2023년부터 “연구회 기획 협동연구”에 대한 과제기획을 연구회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있으며, 협동연구에 관한 중점연구기관을 선정하고 해당기관에서 기획하여 제출한 종합기획보고서에 기반하여 과제기획을 수행하고 있다는 설명임.

□ “연구회 기획 협동연구”의 과제기획을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경우

132) 「협동연구사업 운영규정」 제23조의2(사업의 수행 방식 등) ① 연구회 기획 협동연구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연구회가 주관연구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한다. 단, 수시연구과제 등은 필요에 따라 연구회가 주관연구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② 연구회는 주관연구기관을 지정할 경우 사전에 협동연구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서에는 사업개요, 추진목적, 추진방법, 향후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연구회 기획 협동연구는 이사장이 자문위원회 또는 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24조(사업계획서 제출 등) ① 연구회 기획 협동연구의 주관연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를 연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는 연구회의 기본계획서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며, 주요 연구내용(대주제, 총괄연구과제, 세부연구과제 등), 연구진 구성 및 연구추진방법(워크숍, 세미나 등의 추진일정 등), 연구예산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연구회는 주관연구기관장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별 연구기관의 범위를 넘어서는 저출산, 지역소멸, 디지털전환 등과 같은 융·복합 사회적 난제(wicked problem)에 관한 협동연구가 수행되기 어렵게 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연구회는「협동연구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연구회 기획 협동연구의 과제기획을 직접 수행할 필요가 있음. 나아가 연구회는 “연구기관 기획 협동연구”와 “연구회 기획 협동연구”의 연구과제 기획을 연계하여 수행하는 등 협동연구사업의 추진체계 일원화를 통해 협동연구사업이 사업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참고자료: 2025년 연구기관 기획 협동연구 과제(안)

기관명	과제명	2025 예산
대외	중국종합연구	370
	세계지역 전략연구	460
산업	중국종합연구	58
에너지	녹색에너지협동연구: 국제 산업부문 재생에너지 전환 지원정책 및 규제동향 분석	110
교육	데이터기반 대학교육혁신 모니터링 연구(Ⅱ)	130
농촌	현장 중심의 농촌재생 모델 개발 실증연구	126
	저출생·초고령화에 대응한 농촌정책의 전환	110
	K-푸드 플러스(K-Food+) 수출 확대 방안	100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식품시장 대응과제	90
육아	어린이집과 유치원 장애위험 영유아 조기발견 및 발달지원 종합 대책 방안(Ⅳ) : 통합지원체계 모델 시범 적용	80
	영유아·임산부 건강 분야 국제지식공유사업 모형 개발 및 실행 방안	230
청소년	청년 친화적인 지역인재양성 및 일자리 창출 방안Ⅰ	60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청소년보호정책 개선방안 연구Ⅰ: 청소년 사이버도박	40
형사	교원의 교육활동 피해 실태조사 및 법·정책적 개선방안(II)	383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범죄변화 대응방안 연구(II)	160
환경	녹색경제협동연구	187
계 : 18건		2,694

3. 연구기관 공통 : 예산변경 관련 제도개선 필요

□ 연구기관 사업은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각 연구기관에서 차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을 연구회에 제출하고 연구회는 12월 말에 그 내용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하고 있음[133].

그 후 각 연구기관은 매년 3월 말까지 이월금 및 결산잉여금 처분에 관한 예산을 더한 최종 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집행하고 있음[134].

□ 연구기관 사업 중 일반사업은 전액 정부출연금으로 수행되고, 예산 편성 시 개별 연구과제마다 그 타당성을 심의받고 있는데, 국

---

13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예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 등) ⑥ 연구기관은 국가의 예산이 성립되었을 때에는 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예산 및 사업계획을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연구기관은 제6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예산 또는 사업계획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예산 또는 사업계획을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⑧ 연구회는 제6항에 따라 승인한 예산 및 사업계획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⑨ 제8항에 따른 연구회 예산 및 사업계획의 제출기한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연구기관 예산 및 사업계획의 제출기한) 연구회는 법 제13조제8항에 따라 승인한 연구기관의 예산 및 사업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기관의 예산 또는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관」
제36조(예산 및 사업계획의 제출) ① 연구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31일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예산 및 사업계획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 및 사업계획에는 사업의 목표, 주요내용 및 소요예산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예산 또는 사업계획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한 예산 및 사업계획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연구기관의 예산 및 사업계획의 제출) ① 연구회는 국가의 예산이 성립된 때에 연구기관으로부터 차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31일까지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 및 사업계획에는 사업의 목표, 주요내용 및 소요예산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예산 또는 사업계획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4) 「2024년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운용지침」 p. 62
□ 각 연구기관은 동 지침에 따라 2024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2023년도 말까지 이사회 의결을 통해 확정한다(단, 이월금 및 결산잉여금 처분에 관한 예산 편성은 2024년 3월말까지 확정).

회에서 확정된 예산의 일부가 변경되어 12월 이사회에서 의결되는 사례가 있음.

<2024년도 기관별 대표적인 예산 변동 사업 내역>

(단위: 백만원)

기관명	연구사업명	국회 확정 예산액	이사회 확정 예산액 (전년도 12월)	이월 및 조정액	이사회 확정 예산액 (3월)	조정액	예산 현액	집행액 (8월 말 기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지원사업(계속)	1,500	1,500	801	2,301	-	2,301	1,439
	사업인건비	76	76	119	195	△119	76	-
	공공요금	1	1	7	8	△6	2	-
	수용비	20	21	12	33	67	100	17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2	1	21	22	△5	17	1
	여비	25	38	38	76	34	110	5
	연구정보활동비	1	1	2	3	△2	1	-
	전문가활용비	90	74	16	90	81	171	68
	회의비	31	34	48	82	19	101	13
	외부용역비 및 분담금	1,254	1,254	538	1,792	△69	1,723	1,335
한국개발연구원	국가비전·전략 제시 관련 사업(신규)	780	780	-	780	-	780	258
	사업인건비	71	145	-	145	2	147	80
	공공요금	2	2	-	2	-	2	0
	수용비	45	45	-	45	10	55	26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11	11	-	11	20	31	19
	여비	134	60	-	60	78	138	48
	연구정보활동비	2	2	-	2	2	4	1
	전문가활용비	71	71	-	71	△1	70	15
	회의비	9	9	-	9	29	38	23
	외부용역비 및 분담금	435	435	-	435	△140	295	46
한국노동연구원	고령자 고용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연구('23~'26)	162	162	1	163	-	163	101
	사업인건비	36	36	-	36	-	36	21
	공공요금	2	2	-	2	-	2	2
	수용비	12	12	-	12	4	16	16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4	4	-	4	9	13	12

기관명	연구사업명	국회 확정 예산액	이사회 확정 예산액 (전년도 12월)	이월 및 조정액	이사회 확정 예산액 (3월)	조정액	예산 현액	집행액 (8월 말 기준)
	여비	8	14	-	14	△6	8	4
	연구정보활동비	3	3	-	3	4	7	6
	전문가활용비	21	17	2	19	△6	13	8
	회의비	11	10	△3	7	△1	6	4
	외부용역비 및 분담금	65	65	2	67	△5	62	2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푸드 플러스(K-Food+) 수출 확대 방안(신규)	110	110	-	110	-	110	56
	사업인건비	12	12	-	12	-	12	-
	공공요금	2	2	-	2	-	2	-
	수용비	8	8	-	8	-	8	1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	-	-	-	-	-	-
	여비	26	18	-	18	△3	15	6
	연구정보활동비	5	5	-	5	△2	3	1
	전문가활용비	8	8	-	8	3	11	8
	회의비	3	3	-	3	2	5	3
	외부용역비 및 분담금	35	43	-	43	-	43	37
	협동연구사업 성과인센티브	11	11	-	11	-	11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 SDGs 이행 지원체계 구축사업	171	171	18	189	-	189	58
	사업인건비	24	24	-	24	-	24	10
	공공요금	1	1	-	1	1	2	-
	수용비	18	25	-	25	1	26	5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8	10	4	14	5	19	3
	여비	37	37	△1	36	3	39	19
	연구정보활동비	5	5	-	5	12	17	8
	전문가활용비	30	30	3	33	△2	31	4
	회의비	6	5	14	19	2	21	7
	외부용역비 및 분담금	42	34	△2	32	△22	10	2
한국행정연구원	사회·기술 변화 대응 위험 거버넌스 연구사업(신규)	800	800	-	800	-	800	254
	사업인건비	190	182	-	182	△5	177	94
	공공요금	1	1	-	1	-	1	-
	수용비	82	82	-	82	28	110	28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26	26	-	26	10	36	15
	여비	44	44	-	44	△11	33	15
	연구정보활동비	16	16	-	16	△10	6	2

기관명	연구사업명	국회 확정 예산액	이사회 확정 예산액 (전년도 12월)	이월 및 조정액	이사회 확정 예산액 (3월)	조정액	예산 현액	집행액 (8월 말 기준)
	전문가활용비	301	307	-	307	△68	239	45
	회의비	79	81	-	81	△9	72	43
	외부용역비 및 분담금	61	61	-	61	65	126	12
한국 형사·법무 정책연구원	정보시스템 및 전산망 유지보수(계속)	132	132	5	137	-	137	45
	수용비	-	-	-	-	2	2	1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54	13	-	13	5	18	-
	여비	-	-	-	-	2	2	1
	연구정보활동비	-	-	-	-	2	2	-
	전문가활용비	-	-	5	5	-	5	3
	회의비	-	-	-	-	2	2	1
	외부용역비 및 분담금	78	119	-	119	△13	106	39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 또한, 이월금까지 포함하여 3월에 최종예산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또는 그 이후에도 많은 비목간 예산 변동으로 실제 변경·집행내역은 당초 계획과는 과도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 12월 이사회에서 변경 의결한 금액에서 당초 국회 확정 예산액으로 다시 변경된 사례, 유사한 형태의 변경이 연례적으로 일어나는 사례[135]도 확인됨.

- 또한, 이월금이 동일 사업 내 동일 비목으로의 이월이 아닌 동일 사업 내 이월로 반영되다보니[136], 전년도 계획에 따라 집행되고

135)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해양 SDGs 이행 지원체계 구축사업'의 경우를 살펴보면,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와 '회의비' 비목은 예산 확정 단계에서 적게 편성했다가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늘리고,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비목은 반대의 상황이 3년 연속 발생하였음.

136) 「2024년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운용지침」 p. 25
□ 직전연도 사업비 집행잔액(이월금)은 당해연도 동일항목의 사업(기본연구 →기본연구 / 연구지원 → 연

남은 금액은 해당 비목이 아닌 타 비목으로 편성되기도 함[137].

<2024년도 기관별 대표적인 예산 변동 사업 내역>

(단위: 백만원)

기관명	연구사업명	국회 확정 예산액	이사회 확정 예산액 (전년도 12월)	이월 및 조정액	이사회 확정 예산액 (3월)	조정액	예산 현액	집행액 (8월 말 기준)
경제·인문 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지원사업(계속)	1,500	1,500	801	2,301	-	2,301	1,439
	사업인건비	76	76	119	195	△119	76	-
	공공요금	1	1	7	8	△6	2	-
	수용비	20	21	12	33	67	100	17

구지원 / 일반사업 → 일반사업)에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단, 기타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137) 이월및조정액을 비목별로 전년도 집행잔액과 비교해보면 아래와 같이 조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기관명	연구사업명	이사회 확정 예산액 (전년도12월)	이월 및 조정액			이사회 확정 예산액 (3월)
			전년도 집행잔액	조정액		
한국노동 연구원	고령자 고용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연구('23~'26)	162	1		1	163
	사업인건비	36	1	△1	-	36
	공공요금	2	-	-	-	2
	수용비	12	-	-	-	12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4	-	-	-	4
	여비	14	1	△1	-	14
	연구정보활동비	3	-	-	-	3
	전문가활용비	17	1	1	2	19
	회의비	10	-	△3	△3	7
	외부용역비 및 분담금	65	-	2	2	67
한국해양 수산개발원	해양 SDGs 이행 지원체계 구축사업	171	18		18	189
	사업인건비	24	2	△2	-	24
	공공요금	1	-	-	-	1
	수용비	25	2	△2	-	25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10	-	4	4	14
	여비	37	6	△7	△1	36
	연구정보활동비	5	-	-	-	5
	전문가활용비	30	4	△1	3	33
	회의비	5	1	13	14	19
	외부용역비 및 분담금	34	3	△5	△2	32
한국형사 법무정책 연구원	정보시스템 및 전산망 유지보수(계속)	132	5		5	137
	수용비	-	-	-	-	-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13	3	△3	-	13
	여비	-	1	△1	-	-
	연구정보활동비	-	1	△1	-	-
	전문가활용비	-	-	5	5	5
	회의비	-	-	-	-	-
	외부용역비 및 분담금	119	-	-	-	119

기관명	연구사업명	국회 확정 예산액	이사회 확정 예산액 (전년도 12월)	이월 및 조정액	이사회 확정 예산액 (3월)	조정액	예산 현액	집행액 (8월 말 기준)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2	1	21	22	△5	17	1
	여비	25	38	38	76	34	110	5
	연구정보활동비	1	1	2	3	△2	1	-
	전문가활용비	90	74	16	90	81	171	68
	회의비	31	34	48	82	19	101	13
	외부용역비 및 분담금	1,254	1,254	538	1,792	△69	1,723	1,335
한국개발연구원	국가비전·전략 제시 관련 사업(신규)	780	780	-	780	-	780	258
	사업인건비	71	145	-	145	2	147	80
	공공요금	2	2	-	2	-	2	0
	수용비	45	45	-	45	10	55	26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11	11	-	11	20	31	19
	여비	134	60	-	60	78	138	48
	연구정보활동비	2	2	-	2	2	4	1
	전문가활용비	71	71	-	71	△1	70	15
	회의비	9	9	-	9	29	38	23
	외부용역비 및 분담금	435	435	-	435	△140	295	46
한국노동연구원	고령자 고용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연구('23~'26)	162	162	1	163	-	163	101
	사업인건비	36	36	-	36	-	36	21
	공공요금	2	2	-	2	-	2	2
	수용비	12	12	-	12	4	16	16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4	4	-	4	9	13	12
	여비	8	14	-	14	△6	8	4
	연구정보활동비	3	3	-	3	4	7	6
	전문가활용비	21	17	2	19	△6	13	8
	회의비	11	10	△3	7	△1	6	4
	외부용역비 및 분담금	65	65	2	67	△5	62	2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푸드 플러스(K-Food+) 수출 확대 방안(신규)	110	110	-	110	-	110	56
	사업인건비	12	12	-	12	-	12	-
	공공요금	2	2	-	2	-	2	-
	수용비	8	8	-	8	-	8	1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	-	-	-	-	-	-
	여비	26	18	-	18	△3	15	6
	연구정보활동비	5	5	-	5	△2	3	1
	전문가활용비	8	8	-	8	3	11	8

기관명	연구사업명	국회 확정 예산액	이사회 확정 예산액 (전년도 12월)	이월 및 조정액	이사회 확정 예산액 (3월)	조정액	예산 현액	집행액 (8월 말 기준)
	회의비	3	3	-	3	2	5	3
	외부용역비 및 분담금	35	43	-	43	-	43	37
	협동연구사업 성과인센티브	11	11	-	11	-	11	-
한국해양 수산개발원	해양 SDGs 이행 지원체계 구축사업	171	171	18	189	-	189	58
	사업인건비	24	24	-	24	-	24	10
	공공요금	1	1	-	1	1	2	-
	수용비	18	25	-	25	1	26	5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8	10	4	14	5	19	3
	여비	37	37	△1	36	3	39	19
	연구정보활동비	5	5	-	5	12	17	8
	전문가활용비	30	30	3	33	△2	31	4
	회의비	6	5	14	19	2	21	7
	외부용역비 및 분담금	42	34	△2	32	△22	10	2
한국행정 연구원	사회·기술 변화 대응 위험 거버넌스 연구사업(신규)	800	800	-	800	-	800	254
	사업인건비	190	182	-	182	△5	177	94
	공공요금	1	1	-	1	-	1	-
	수용비	82	82	-	82	28	110	28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26	26	-	26	10	36	15
	여비	44	44	-	44	△11	33	15
	연구정보활동비	16	16	-	16	△10	6	2
	전문가활용비	301	307	-	307	△68	239	45
	회의비	79	81	-	81	△9	72	43
	외부용역비 및 분담금	61	61	-	61	65	126	12
한국 형사·법무 정책연구원	정보시스템 및 전산망 유지보수(계속)	132	132	5	137	-	137	45
	수용비	-	-	-	-	2	2	1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54	13	-	13	5	18	-
	여비	-	-	-	-	2	2	1
	연구정보활동비	-	-	-	-	2	2	-
	전문가활용비	-	-	5	5	-	5	3
	회의비	-	-	-	-	2	2	1
	외부용역비 및 분담금	78	119	-	119	△13	106	39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 이에 대하여 연구회는 연구과제 특성상 정책현안이 변경되어 일부 연구주제 등이 당초 국회 심의 내용과 달라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회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정부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적된 내용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사항이 정부나 국회 심의내용과 배치되지 않도록 편성·승인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사업계획 변경기준>

구분	내용	변경권자	변경 절차
연구비 변경	- 연구비 총액 변경, 세부비목 변경	이사장	- 당초 연구비(7천만원 이상 과제) 대비 ±30% 초과 증감 과제 * 연구관련사업 및 연구지원사업은 당초 연구비(10천만원 이상 과제) 대비 ±30% 이상 증감 과제 - 과제폐지 및 신설절차와 동일
		원장	- 당초 연구비(7천만원 이상 과제) 대비 ±30% 이내 증감 과제(연구비 총액변경), 당초 연구비 7천만원 미만 과제 * 연구관련사업 및 연구지원사업은 당초 연구비(10천만원 이상 과제) 대비 ±30% 미만 증감 과제 - 연구기관 내부규정 적용 * 당초계획, 변경계획, 변경사유 등을 명시하여 공문으로 연구회에 통보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국회가 예산을 확정한 후 전년도 이월액을 반영하여 재편성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의 예산 편성 상의 특성, 연도 중 발생하는 사정변경에 대한 대응 및 연구수행의 자율성 확보 측면 등을 고려하면, 전년도에 확정된 예산과 실제 변경·집행내역

간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일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과도한 예산 계획 변경은 당초 면밀한 사업계획의 수립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이사회 또는 원장의 승인만으로도 예산 변경이 제한 없이 가능하다는 점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사회 의결 등을 통한 한도가 없는 계획 변경은 당초 국회의 심사 취지가 반영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함.

□ 따라서 연구회는 면밀한 연구사업 계획 수립을 통하여 예산변경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고, 예산 관리를 철저히 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4. 연구기관 공통

1) 정보시스템 관련 사업을 일반사업에서 기관고유사업으로 변경 필요

□ 현재 연구회와 각 연구기관들은 모두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2025년도 예산안에는 정보시스템과 관련하여 119억 6,200만원이 일반사업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음.

<정보시스템 관련 일반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기관	일반사업명	사업시작연도	2025 예산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가정책연구포털 운영·서비스 사업	2010	302
	출연연 통합 업무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2016	1,250
	출연연 사이버보안 관제센터 운영 사업	2017	1,266
	출연연 디지털 플랫폼 구축 사업	2022	800
	출연연 클라우드 네이티브 센터 구축 및 운영	2025	690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사업	2010	240
	정보시스템 및 노후 전산장비 교체·확충사업	2016	101
국토연구원	전산자원 통합유지보수 사업	2017	38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사업	2007	350
산업연구원	정보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유지보수	2016	260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2015	200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ISDI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2017	183
통일연구원	정보보안및네트워크 운영・유지	2010	59
한국개발연구원	KDI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2016	458
KDI국제정책대학원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료	2024	285
	교육인프라 유지보수 및 시스템개발	2006	121
한국교육개발원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2003	824
한국교육과정평가원	KICE 통합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2004	100

기관	일반사업명	사업시작 연도	2025 예산안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구축	2011	74
	수능 성적제공 등 보안 인프라 구축	2021	70
	교육데이터 공유 선순환을 위한 KICE 지능형 플랫폼 구축	2023	150
	공공기관 정보화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운영	2024	344
한국교통연구원	전산인프라 유지보수 사업	2019	85
	개인정보 침해 및 사이버사고 대응을 위한 보안체계 구축사업(3단계)	2022	69
한국노동연구원	통합유지보수사업	2019	18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산·보안 인프라 운영 사업	2019	145
한국법제연구원	정보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유지관리사업	2013	34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정보보호 인프라 개선	2011	257
육아정책연구소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2005	135
	전산실 운영사업	2005	5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정보화 시스템 인프라 기능 개선 및 관리·운영	2011	27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보관리시스템 개발사업	2003	294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정보시스템 인프라개선 기간계시스템 운영 지원	2013	144
	사이버 보안관리를 위한 유지관리 체계 운영	2017	90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통합유지보수 사업	2011	217
	정보자원 인프라 확대 및 정보보안 강화 사업	2017	109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정보보안시스템 및 전산망 운영유지 보수	2015	210
한국행정연구원	E-KIPA지식행정포털시스템 유지보수	2008	256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정보시스템 및 전산망 유지보수	2011	169
	정보보안시스템 고도화	2011	96
한국환경연구원	KEI 정보 인프라시스템 유지보수	2016	135
	KEI 백업시스템 등 정보보안 인프라 확충	2016	64
건축공간연구원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2012	135
합계			**11,962**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연구회의 「2024년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르면, 연구사업 중 일반사업은 한시성 사업, 연구기관 기획 협동연구사업, 정부출연금 편성 시 특정 목적(정부대행사업)으로 편성된 사업을 말함.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사업 정의>

구 분	내 용
1. **기관고유사업**	**정관에 규정된 기관설립목적**에 따른 고유사업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
1) 기본연구사업	기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고유 연구사업
2) 연구지원사업	순수연구가 아닌 연구사업 전반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2. **일반사업**	**주로 한시적 사업, 연구기관 기획 협동연구사업 등, 정부출연금 편성 시 특정 목적**으로 편성된 사업
3. 수탁용역사업	부처 또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연구기관이 수주한 사업으로 학술용역계약에 따라 수행
4. 정부대행사업	정부업무 대행 성격으로 법률 등에 사업추진근거가 있는 사업(부처출연사업, 기금사업 등을 포함)

○ 그런데, 연구회와 각 연구기관들이 일반사업으로 편성한 정보시스템 사업의 예산은 시스템 운영, 보안관리 체계 운영, 클라우드 비용을 위한 것으로, 한시성 사업이 아닌 연구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계속해서 운영하는 필수적인 사업이라는 점에서 일반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특히, 예산 편성과정에서 사업 전체로 심의를 받는 기관고유사업과 달리 일반사업은 매년 개별 연구과제마다 그 타당성을 심의받는 사업이고, 정부 출연금으로만 진행한다는 점에서 재량지출

10% 이상 감축하도록 하는 정부 지침[138][139]에 따라 매년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정보화사업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관고유사업으로 편성·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또한, 대부분의 연구기관들은 일반사업으로 편성된 정보시스템 사업과는 별개로 기관고유사업으로 전산운영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양쪽 사업의 주요 지출내역이 기관운영을 위한 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 및 개선, 각종 라이선스·소프트웨어·장비 구입 등임을 감안하면 이를 분리하여 운영할 필요성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2023년, 2024년 기관별 정보시스템·전산 관련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기관	기관고유사업비		일반사업비	
	사업명	주요 지출내역	사업명	주요 지출내역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전산지원사업	- 각종 업무용 라이선스 계약 - PC 개인정보 보호 프로그램 라이선스 계약 - PC유지보수비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사업	- 전산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정보시스템 및 노후 전산장비 교체·확충사업	- 바이러스 백신 및 내 PC자킴이 라이선스 계약 - 노후 네트워크 방화벽 교체 - 대표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비
국토연구원	정보기술비	- 전산자원통합 유지보수 - 각종 업무용 라이선스 계약 - 행정시스템 기능 개선	전산자원 통합유지보수 사업	- 전산자원통합 유지보수

138)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p.13
(재량지출 10% 이상 감축) 국정과제 등 필수소요를 제외한 모든 재량지출에 대해 10% 이상 구조조정 추진
139)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안 작성 지침에서도 재량지출 10% 감축 포함

기관	기관고유사업비		일반사업비	
	사업명	주요 지출내역	사업명	주요 지출내역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정보전산운영 사업	- 통합도서관시스템 유지보수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사업	-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산업연구원	2023 전산 운영	-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보안서버(mOTP) 구입 - 각종 업무용 라이선스 계약	정보 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유지보수	- 그룹웨어시스템 유지관리 - 정보보호시스템 유지보수추진
에너지경제 연구원	에너지·자원 전산 NETWORK 운영	- 성과확산시스템 고도화 마스터 플랜(ISMP) 수립 - 통합정보시스템 기능고도화 사업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 정보화시스템 통합유지보수 - 기록물생산관리시스템 기능개선 사업 - 통합정보시스템 (KEEI-ERP) 웹표준화 및 호환성사업
정보통신정책 연구원	전산개발 운영	- KISDI 홈페이지, 서버 가상화 시스템 등 유지보수 - 홈페이지 클라우드 이용료 - 백신사용료	KISDI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 서버 및 스토리지, 차세대 방화벽 및 네트워크 등 유지보수 - 웹메일 보안 SMS 서비스
통일연구원	전산시스템 운영・유지	- 각종 업무용 라이선스 구매 -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비 - 항온항습기 및 UPS유지보수비	정보보안 및 네트워크 운영・유지	- 노후내부망 자료전송 서버구입 -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비
한국개발 연구원	전산개발 및 운용관리	- 하드웨어 구입 - 소프트웨어 사용료 - 경제정보센터 웹시스템 유지보수 - 포탈시스템 및 MIS 기능 고도화 - 경제정보센터 홈페이지 개편	KDI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 백신 및 보안, 통계 소프트웨어 사용료 - 포탈, 서버, 방화벽, VDI 등 각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한국교육 개발원	정보자료· 전산운영	- 각종 업무용 라이선스 구매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기관 시스템 통합유지보수

기관	기관고유사업비		일반사업비	
	사업명	주요 지출내역	사업명	주요 지출내역
한국교통연구원	전산개발사업	- 신규 웹사이트 보안 약점 점검 및 모의 침투훈련 사업 - 인사노무 전자시스템 유지 및 기능개선 용역	전산인프라 유지보수 사업	- 연구 및 행정업무 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위한 기능개선 사업 - 문서중앙화 솔루션 유지관리를 위한 에이전트 기능개선 사업
			개인정보 침해 및 사이버사고 대응을 위한 보안체계 구축사업	- 보안솔루션 구매비
한국노동연구원	정보자료(전산) 운영	- 업무용 전산기기 임차료 - 근로시간 관리 기능 개선사업	통합유지보수 사업	- 업무용 전산기기 임차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산·정보시스템 운영	- IT인프라, 정보시스템, 정보보호시스템, 공간정보 분석용 소프트웨어 통합유지보수 - 각종 소프트웨어 구입	전산·보안 인프라 운영 사업	- 홈페이지 및 CRM 유지보수 - 노후 DB서버 교체 - 침입탐지시스템 도입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정보사업	- 각종 업무용 라이선스 구매 - 연구원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고도화	정보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유지관리사업	- 각종 라이선스 및 백신 구입 - 정보보호 시스템 등 통합 유지보수 - 통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고도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산운영	- 각종 업무용 라이선스 구매 - 연구원 국영문 홈페이지, 그룹웨어 및 업무포털시스템, 원내 서버(MIS, CAPI 등) 유지보수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정보보호 인프라 개선	- 각종 업무용 라이선스 구매 - 그룹웨어 및 업무포털시스템 기능개발 및 유지관리

기관	기관고유사업비		일반사업비	
	사업명	주요 지출내역	사업명	주요 지출내역
육아정책 연구소	연구지원 전산운영	- 정보보인감사용 PC렌탈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통합유지보수대금
			전산실 운영사업	- 전산실 인터넷 전용선, 전기 사용료
한국여성정책 연구원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 기관홈페이지 유지보수 - 각종 업무용 라이선스 구매	정보화 시스템 인프라 기능 개선 및 관리·운영	- 정보화시스템 통합유지관리 - 패스워드관리 솔루션 구축
한국조세 재정연구원	전산운영부문 운영사업	- 각종 업무용 라이선스 계약 - PC 개인정보 보호 프로그램 라이선스 계약 - PC유지보수비	정보관리 시스템 개발사업	- 전산시스템 통합유지보수 - 정보 보안 관련 라이선스 계약
한국직업능력 연구원	평생직업교육 훈련 정보화사업	- 각종 업무용 라이선스 구매 - 정보시스템 유지운영	정보시스템 인프라개선 기간계시스템 운영 지원	- 네트워크 장비 교체 및 서버 변경사업 - 정보시스템 아웃소싱
	HRD웹정보 서비스 생성·운영사업	- 리포지터리 유지보수 및 정보시스템 아웃소싱 등	사이버 보안관리를 위한 유지관리 체계 운영	- 정보시스템 아웃소싱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전산·정보시스템 관리 및 운영	- 웹메일 및 메신저 유지보수 - 전자도서관 솔루션유지보수 - 원대표홈페이지 기능수정 개선	통합유지보수 사업	- 전산장비유지보수 - H/W 통합 유지보수
			정보자원 인프라 확대 및 정보보안 강화 사업	- 각종 업무용 라이선스 구매 - 소프트웨어 구매
한국해양수산 개발원	전산개발 및 운영	- 각종 업무용 라이선스 구매	정보보안시스템 및 전산망 운영유지 보수	- KMI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한국행정 연구원	전산운영	- 각종 업무용 라이선스 구매	E-KIPA지식 행정포털시스템 유지보수	- 홈페이지, 정보보호시스템,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기관	기관고유사업비		일반사업비	
	사업명	주요 지출내역	사업명	주요 지출내역
한국환경연구원	전산운영	- KEI 연구 업무 시스템 서버 SSD교체 및 윈도우 서버 라이센스	KEI 정보 인프라시스템 유지보수	- KEINS 시스템 통합유지보수
			KEI 백업시스템 등 정보보안 인프라 확충	- KEI 정보자산 보호를 위한 정보보안 인프라 확충 용역
건축공간연구원	정보시스템 기반구축 사업	- 보안 소프트웨어 임차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 정보전산자원 통합유지보수 - 업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 기관고유사업비와 일반사업비에 모두 사업이 있는 기관만 대상으로 작성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 따라서, 2025년 예산안에 편성된 각 연구기관의 정보화사업은 기관 운영을 위한 고정적 사업에 해당하므로 일반사업에서 기관고유사업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음.

2) 국가승인통계조사 관련 사업을 일반사업에서 기관고유사업으로 변경 필요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 17개 기관은 33개의 국가승인통계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의 국가승인통계 현황>

(단위: 개)

기관명	통계수	종류별		작성방법별		
		지정	일반	조사	보고	가공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	0	2	2	0	0
국토연구원	1	0	1	1	0	0
산업연구원	1	0	1	1	0	0
에너지경제연구원	2	0	2	1	1	0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	0	1	1	0	0
한국교육개발원	5	1	4	1	3	1
한국교통연구원	2	0	2	1	0	1
한국노동연구원	2	0	2	2	0	0
한국법제연구원	1	0	1	1	0	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1	2	3	0	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	0	2	2	0	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	0	1	1	0	0
한국직업능력연구원	3	0	3	3	0	0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3	0	3	3	0	0
한국행정연구원	2	0	2	2	0	0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1	0	1	1	0	0
건축공간연구원	1	0	1	1	0	0
합 계	**33**	**2**	**31**	**27**	**4**	**2**

(자료: 통계청 홈페이지)

○ 국가승인통계는 통계작성기관이 정부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경제·사회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산업·물가·인구·주택·문화·환경 등 특정의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작성한 수량적 정보[140]로서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은 것[141]을 말함.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의 국가승인통계 내역>

(단위: 백만원)

기관명	통계명	승인번호	종류	작성형태	작성주기	승인일자	예산	
							2025년 예산안	구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기업혁신조사	395001	일반	조사	1년	2003-07-25	140	고유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소비자심리조사	390002	일반	조사	월	2011-07-11	1,120	일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미디어패널조사	405001	일반	조사	1년	2010-09-15	635	일반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조사	336003	일반	조사	2년	2006-04-18	147	고유
한국법제연구원	국민법의식실태조사	456001	일반	조사	2년	2019-08-08	180	일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331009	일반	조사	1년	2006-10-16	1,080	일반
	한국의료패널조사	920012	일반	조사	1년	2007-09-07	1,710	일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관리자패널조사	154010	일반	조사	1년	2008-08-21	382	일반
	여성가족패널조사	338001	일반	조사	2년	2007-08-08	703	일반
한국조세	재정패널조사	341001	일반	조사	1년	2008-04-24	1,762	일반

---

140) 「통계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계”란 통계작성기관이 정부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경제·사회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산업·물가·인구·주택·문화·환경 등 특정의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직접 또는 다른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에 위임·위탁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를 말한다. 다만, 통계작성기관이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적 정보는 제외한다.

141)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 종류, 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통계표 서식, 조사사항의 성별구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승인을 받은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제20조에 따른 협의를 거치기 전에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의 작성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미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판단을 통계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③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이미 승인을 받은 다른 통계와 조사 또는 보고의 대상·목적 및 방법 등 그 내용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표본규모가 지나치게 작거나 검증된 통계작성기법을 사용하지 아니하여 통계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조사 또는 보고의 대상 또는 목적 등이 특정 이익집단 또는 특정부문에 편중되거나 영리적인 목적으로 작성되는 등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작성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④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을 한 통계의 명칭,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등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관명	통계명	승인번호	종류	작성형태	작성주기	승인일자	예산	
							2025년 예산안	구분
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389002	일반	조사	1년	2004-02-27	887	일반
	인적자본기업패널조사	389003	일반	조사	2년	2005-05-19	330	일반
	국내신규박사학위취득자조사	920009	일반	조사	반기	2013-07-26	50	일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402001	일반	조사	1년	2009-06-24	155	일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402002	일반	조사	1년	2010-09-30	717	일반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402003	일반	조사	1년	2013-04-18	493	일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417001	일반	조사	1년	2013-07-09	292	일반
	공직생활실태조사	417002	일반	조사	1년	2017-07-26	192	일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403001	일반	조사	2년	2009-08-19	453	일반
건축공간연구원	건축서비스산업실태조사	462001	일반	조사	1년	2022-05-30	54	일반

* 출연금이 아닌 정부 수탁 등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제외

(자료: 통계청 홈페이지 및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 국가승인통계는 정부 정책의 수립·평가 등에 기초자료로 사용되고, 사회·경제적인 변화를 모니터링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므로 안정적인 업무 수행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2025년도 연구기관의 국가승인통계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현황을 보면, 일반사업에 18건이 편성되어 있음.

○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일반사업은 주로 한시성 사업에 편성되고 매년 그 타당성을 심의받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국가승인통계를 수행하는 사업은 기관고유사업으로 편성하여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특히, 작성주기가 2년인 4건을 제외한 14건은 매년 수행하는 통계

라는 점에서 계속적인 예산 확보의 필요성도 있다고 보임.

□ 따라서 국가승인통계 작성을 수행하는 사업 중 일반연구비로 편성되어 있는 사업은 기관고유사업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음.

5. 연구기관 공통: 정직기간 중 임금 지급 중단 필요

□ 2022년 5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유관단체 징계처분의 실효성 강화」 제도개선안을 의결하여 공직유관단체장 등에게 정직 처분을 받고 직무에서 배제된 직원에 대한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음.

□ 「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3항[142]은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의 표준 취업규칙 및 행정해석[143]에서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정직 시 임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142) 「국가공무원법」 제80조(징계의 효력) ③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143) 근로개선정책과-3105(2011.9.30.)

◆ 정직기간 중 임금지급 관련

<질 의>

❍ 출근 의무를 부여하는 '정직(停職)'의 징계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출근 의무를 부여한 본건 정직 처분의 경우, 기본급의 50%(금 100만원)만 지급하도록 한 인사규정이 적법한지 여부

<회 시>

❍ 귀 질의 "출근의무(본사 총무부 대기)를 부여하는 정직의 징계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하여

-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직은 근로관계를 존속시키면서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일정한 기간 동안 금지시키는 것으로서, 정직기간 중 '본사 총무부 대기' 인사명령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인사명령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 귀 질의 "출근의무를 부여한 정직 처분의 경우, 기본급의 50%만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업규칙이 문제는 없는지"에 대하여

-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직은 통상적으로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의 임금 지급의무가 없고, 출근의무를 부여한 경우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는 한 임금 지급의무는 없음.
- 다만,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면 될 것으로 귀 사 취업규칙에 기본급의 50%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으로 사료됨.

【근로개선정책과-3105, 2011.9.20.】

<고용노동부 표준 취업 규칙>

제66조(징계의 종류) 사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견책: 해당 사원에 대하여 경위서를 받고 문서로 견책한다.
2. 감봉(감급): 1회에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은 월 급여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을 감액한다.
3. 정직: 중대 징계사유 발생 자에 대하여 3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에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해고: 근로계약을 해지한다.

□ 이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연구기관(부설기관 포함) 중 15개 기관[144]은 「인사규정」 등의 내부규정 개정을 통해 정직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였음.

□ 그러나 나머지 12개 연구기관(부설기관 포함)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가 있은지 2년이 경과한 2024년 현재까지도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파악됨.[145]

---

144)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145) 이에 대하여 각 연구기관은 「근로기준법」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사측과 노동조합이 합의중에 있다는 의견임.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제도개선 미이행 기관 현황>

기관명	관련규정
과학기술 정책연구원	「징계지침」 제8조의2(징계의 효력) 징계의 효력은 다음 각호와 같다. 3. 정직 :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를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하고 그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로 한다.
국토연구원	「보수규정」 제10조(징계처분기간 중의 보수) ①정직처분을 받은 자에게는 보수의 3분의 2를 빼고 지급한다.
에너지경제 연구원	「인사규정」 제26조(징계의 효력) ③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매월 기본연봉월액의 2/3를 감한다.
정보통신정책 연구원	「인사관리규정」 제36조(징계의 종류와 효력) ② 징계의 효력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정직: 월 급여의 3분의 2를 감급하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로 한다.
통일연구원	정직: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직원으로서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정직기간 중에는 보수의 3분의2를 감한다.
한국 교육과정평가원	「보수규정」 **제15조(징계처분기간 중의 연봉)** ①정직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 기간 중 지급될 금액의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한국 노동연구원	제54조 (징계의 종류 및 효력) 3. 정직: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며, 그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정직기간에는 보수의 3분의 2를 감하여 지급한다.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기관명	관련규정
육아정책연구소	「인사관리규정」 제49조(징계의 효력) ②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기간 중 직원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한국 여성정책 연구원	「인사관리규정」 제38조 (징계의 종류와 효력) 징계는 다음에 의하여 행한다. 3. 정직 :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며, 그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월 보수의 3분의 2를 감하고 지급한다.
한국 조세재정 연구원	「인사관리규정」 제41조(징계의 종류와 효력) ① 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행한다. 2. 정직 :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연봉월액의 3분의 2를 감액하여 지급하고, 그 기간은 1월 이상 3월 이하로 한다.
한국해양 수산개발원	제37조(징계의 종류와 효력)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정직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기간 중 직원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빼고 지급한다.
한국 형사·법무 정책연구원	「인사규정」 제42조(징계의 효력) ④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 제도개선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관의 인사·징계관련 내부규정을 살피면, 대체적으로 정직기간에는 보수의 3분의 2를 감하여 지급하도록 정하는데 이는 2015년 12월 법률 제13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공무원법」 제80조제3항을 따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됨.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3288호)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3618호) 2015. 12. 24, 일부개정
제80조(징계의 효력) ③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제80조(징계의 효력)③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 각 연구기관이 인사·징계관련 내부규정의 원형으로 참고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이 정직처분을 받은 자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개정된지 오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지체하고 있는 현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징계처분자에 대한 불필요한 임금의 지급과 인건비를 포함하는 국가예산의 낭비를 초래함.

□ 실제로 「국가공무원법」이 정직처분을 받은자의 보수를 전액 감하도록 개정된 이후인 2016년부터 현재까지 19개 연구기관에서 총 2억 996만원의 임금이 정직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지급된 것으로 파악됨.

<2016년 이후 정직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한 임금지급현황>

기관명	지급대상(명)	지급금액(천원)	기관명	지급대상(명)	지급금액(천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	5,352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	6,243
국토연구원	1	97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	1,966
에너지경제연구원	3	9,567	한국직업능력연구원	1	7,773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	2,587	한국해양수산개발원	3	9,541
한국교육개발원	3	12,817	한국행정연구원	1	12,096
한국교육과정평가원	8	43,088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	3,592
한국교통연구원	1	12,282	한국환경연구원	2	11,225
한국노동연구원	2	5,360	KDI국제정책대학원	2	6,100
한국법제연구원	2	7,577	육아정책연구소	1	3,45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	48,374	합 계	41	209,962

□ 따라서 제도개선을 이행하지 아니한 12개 연구기관은 정직 기간 중 임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내부규정을 조속히 개정하여 예산이 불필요하게 집행되지 아니하도로 조치할 필요가 있음.

6. 연구기관 공통: 능률성과급 지급 제외 대상 등 규정 개정 필요

□ 능률성과급은 연구 생산성 제고를 목적으로 인건비 예산 외에 초과 수입에 따른 결산잉여금을 재원으로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성과급을 의미함.

○ 각 연구기관은 자체수입 초과달성, 경상운영비 비용절감 등의 경영개선으로 결산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① 퇴직급여충당금 부족분에 우선 적립하고, ② 남은 결산잉여금의 50% 이상을 연구개발적립금으로 적립한 후 ③ 그 잔여재원을 능률성과급으로 사용할 수 있음[146].

<2023년도 기관별 결산잉여금 처분 현황>

(단위: 백만원)

기관	결산잉여금 처분				
	소계 (A+B+C+D)	퇴직 충당금(A)	연구개발 적립금(B)	능률 성과급(C)	기타* (D)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129	-	764	365	-
국토연구원	3,967	-	2,501	1,247	21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53	-	153	-	-
산업연구원	1,706	-	1,020	621	65
에너지경제연구원	1,306	-	967	339	-

146)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 208
「2024년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운용지침」 중 예산총칙
제6조(결산잉여금의 사용) ① 제5조에 따른 자체수입 초과달성, 경상운영비 비용절감 등 경영개선으로 결산잉여 금이 발생한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부족분 적립, 연구개발적립금, 능률성과급 및 이사회 승인을 거친 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제①항에 따른 결산잉여금의 집행은 정부의 당해 연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른다.
제5조(초과수입금의 사용 및 수입대응지출) 연구기관의 경영효율화 및 능률제고를 위하여 자체수입이 당초 수입예산에 편성된 금액을 초과하여 초과수입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초과수입금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직접경비로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직접경비는 수입금액과의 연관성이 인정될 때에 한해 집행할 수 있으며, 인건비성 경비 및 경직성 경상비 목적으로는 집행할 수 없다.

기관	결산잉여금 처분				
	소계 (A+B+C+D)	퇴직 충당금(A)	연구개발 적립금(B)	능률 성과급(C)	기타* (D)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426	-	1,163	263	-
통일연구원	27	-	27	-	-
한국개발연구원	3,517	-	1,961	1,556	-
KDI국제정책대학원	1,822	-	1,231	591	-
한국교육개발원	3,557	-	2,111	1,446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5,718	-	3,590	2,128	-
한국교통연구원	7,009	-	5,663	989	357
한국노동연구원	478	-	300	178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37	-	762	575	-
한국법제연구원	1,876	-	1,256	620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15	-	1,045	870	-
육아정책연구소	57	-	55	2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58	-	82	76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11	-	211	-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2,000	-	1,111	889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896	-	472	424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3,262	-	1,889	1,373	-
한국행정연구원	381	61	236	84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115	-	101	14	-
한국환경연구원	3,321	-	1,944	1,377	-
건축공간연구원	1,277	-	701	576	-
합계	**48,621**	**61**	**31,316**	**16,603**	**641**

* 감사원 및 이사회 후속조치(인건비 부당집행)에 따른 기관고유사업비 적립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최근 3년간(2021~2023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출연연구기관의 능률성과급 지급 현황을 보면, 2021년 24개 기관에서 142억 5,600만원, 2022년 21개 기관에서 141억 1,500만원, 2023년 20개 기관에서 152억 7,600만원을 지급하였음(2024년 10월 현재 기준)[147].

147) 한국교통연구원은 2024년 11월, 한국노동연구원은 2024년 12월에 지급할 예정으로 기관별 능률성과급 지급 현황(표)의 내용은 계획 내용임. 또한 육아정책연구소도 2024년 12월에 지급할 예정이나 현재 계획된 내용 없음.

<기관별 능률성과급 지급 현황>

(단위: 명, 천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지급액	497,517	295,221	364,592
	지급인원	175	171	174
국토연구원	지급액	1,258,809	1,102,964	1,240,844
	지급인원	324	332	33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급액	108,745	-	-
	지급인원	212	-	-
산업연구원	지급액	265,847	737,924	609,788
	지급인원	217	219	215
에너지경제연구원	지급액	204,000	-	338,600
	지급인원	194	-	193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지급액	736,943	485,477	263,000
	지급인원	209	200	205
통일연구원	지급액	-	-	-
	지급인원	-	-	-
한국개발연구원	지급액	593,255	603,583	1,514,867
	지급인원	445	470	477
KDI국제정책대학원	지급액	546,353	480,987	591,477
	지급인원	158	161	168
한국교육개발원	지급액	793,444	881,203	1,446,247
	지급인원	464	464	476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지급액	1,909,276	2,047,088	2,128,477
	지급인원	426	451	478
한국교통연구원	지급액	817,174	859,912	989,375
	지급인원	253	251	260
한국노동연구원	지급액	202,782	304,421	177,858
	지급인원	146	142	14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지급액	440,421	497,153	575,334
	지급인원	298	301	298
한국법제연구원	지급액	640,314	515,752	620,109
	지급인원	150	155	15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지급액	365,000	560,000	870,000
	지급인원	256	267	259
육아정책연구소	지급액	33,551	32,999	-
	지급인원	57	63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지급액	74,000	322,582	71,252
	지급인원	117	126	117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지급액	98,161	-	-
	지급인원	323	-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지급액	639,975	593,487	887,172
	지급인원	204	210	210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지급액	507,000	432,000	424,000
	지급인원	135	123	127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지급액	1,253,979	1,354,925	1,318,229
	지급인원	307	323	305
한국행정연구원	지급액	237,000	146,000	84,000
	지급인원	117	125	129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지급액	-	-	13,811
	지급인원	-	-	89
한국환경연구원	지급액	1,520,000	1,326,900	1,377,000
	지급인원	312	317	303
건축공간연구원	지급액	513,270	534,460	537,279
	지급인원	129	137	130
지급액 합계		14,256,816	14,115,038	16,443,311

* 2023년의 경우 지급한 기관은 지급액을, 연말 지급 등으로 지급 계획만 있는 경우에는 계획기준으로 작성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그런데 각 연구기관별 능률성과급 관련 지침 등을 살펴보면, 국토연구원 등 14개 기관은 지급대상기간 중 중징계 처분을 받은 자[148] 등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능률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해놓았지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 13개 기관은 관련 규정이 없음.

<기관별 능률성과급 지급 제외 대상 규정 현황>

기관	지급제외 대상	비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148) ① 지급대상기간 중 중징계 처분(파면, 해임, 정직)을 받은 자, ② 금품수수, 향응수수, 횡령에 따른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에 대한 징계 처분을 받은 자, ③ 성폭력 범죄에 대한 징계 처분을 받은 자, ④ 성매매에 대한 징계 처분을 받은 자, ⑤ 성희롱에 대한 징계 처분을 받은 자, ⑥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처분을 받은 자

기관	지급제외 대상	비고
국토연구원	① 지급대상기간 중 중징계 처분(파면, 해임, 정직)을 받은 자, ②「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금품수수, 향응수수, 횡령)에 따른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③「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추행, 간음 등)에 따른 성폭력 범죄, ④「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업무 등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등이 그 직위를 이용해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등), ⑥「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에 따른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처분을 받은 자	20. 12. 11. 제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산업연구원	국토연구원과 동일	22. 3. 13. 신설
에너지경제연구원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통일연구원	-	
한국개발연구원	-	
KDI국제정책대학원	-	
한국교육개발원	국토연구원과 동일	20. 11. 30. 신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한국교통연구원	국토연구원과 동일	20. 12. 19. 신설
한국노동연구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토연구원과 동일	21. 5. 19. 개정
한국법제연구원	국토연구원과 동일	21. 3. 8. 개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금품 및 향응 수수·공금의 횡령,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중징계 사유 및 기타 징계사유로 중징계를 받은 자	21. 8. 3. 개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중징계 처분을 받거나 금품·향응수수, 횡령,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스토킹에 대해 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	24. 4. 2. 신설
육아정책연구소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중징계 처분을 받거나 금품·향응수수, 횡령,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에 대해 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	22. 12. 26. 개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과 동일	21. 5. 31. 신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한국행정연구원	국토연구원과 동일	21. 4. 2.

기관	지급제외 대상	비고
		신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한국환경연구원	중징계처분을 받은 자	22. 10. 4. 제정
건축공간연구원	국토연구원과 동일	21. 5. 4. 신설

○ 최근 5년간 중징계 처분을 받은 자에게 총 4,400만원(10개 기관, 17명)의 능률성과급이 지급되었는데, 개인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성과급을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자에게 지급되는 것은 성과급을 지급하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최근 5년간 중징계 처분을 받은 자에게 지급된 능률성과급 현황>

(단위: 천원)

기관	구분	성명	징계일자	징계유형	차년도 성과급	비고
한국개발연구원	공무직	○○○	2022.08.12.	정직	385	정직기간 제외 후 산정하여 지급
KDI국제정책대학원	행정직	○○○	2022.4.25.	정직	2,428	정직기간 제외 후 산정하여 지급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직	○○○	2019.08.01.	정직	6,354	정직기간 제외 후 산정하여 지급
	행정직	○○○	2023.04.01.	정직	6,822	
	행정직	○○○	2023.10.01.	정직	6,648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직	○○○	2020.02.11.	해임	275	규정 개정 이전('21. 3. 8.) 지급
	연구직	○○○	2021.04.15.	정직	5,971	연도 중간에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여 능률성과급 전액 미지급시 법적으로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법률자문의견이 있어, 규정이 개정된 해에는 정직기간을 제외 후 산정하여 지급하였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직	○○○	2019.06.01	정직	1,929	규정 개정 이전('21. 8. 3.) 지급
	연구직	○○○	2020.03.11	정직	1,042	
	연구직	○○○	2020.05.01	정직	1,035	
	연구직	○○○	2020.06.16	정직	1,601	
육아정책	연구직	○○○	2020.12.02.	정직	371	

기관	구분	성명	징계일자	징계 유형	차년도 성과급	비고
연구소						
한국조세 재정연구원	연구직	○○○	2020.05.25.	정직	1,289	
한국행정 연구원	행정직	○○○	2019.12.02.	정직	428	규정 개정 이전('21. 4. 2.) 지급
한국형사·법무정책 연구원	연구직	○○○	2023.09.11	정직	165	
한국환경 연구원	행정직	○○○	2018.05.09	정직	1,864	규정 개정 이전('22. 10. 4.) 지급
	연구직	○○○	2019.01.15	정직	5,851	
합 계					44,458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국민권익위원회도 2020년 10월에 지급대상기간 중 중징계 처분(파면, 해임, 강등, 정직)을 받은 자 등에 대하여 능률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음[149].

○ 참고로 공무원의 경우에도 평가 대상 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과연봉(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150].

---

149) 공직유관단체의 성과급·명예퇴직수당 지급관행 개선(대상기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공직유관단체 1,227개) 참고로, 유사한 내용으로 권익위는 2022년 테크노파크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운영 투명성 제고(대상기관: 10개 테크노파크) 관련 제도개선 권고에서도 징계자 등에 대한 지급 제외 규정을 마련하라고 한 바 있음.

150) 「공무원보수규정」

제39조(성과연봉의 지급)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업무실적 평가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 경우 그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성과상여금 등) ⑬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평가 대상 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 경우 그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2024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p.226, 499

○ 소속장관은 평가대상기간 중「국가공무원법」제79조 등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성과연봉(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다만,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인해 견책처분을 받은 자로서, 견책처분에도 불구하고 성과연봉(성과상여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속장관은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외적으로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또한, 국토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통연구원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능률성과급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151], 성과급 지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부정한 시도를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다른 연구기관도 환수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통일연구원의 경우 「능률성과급지급규칙」에서 능률성과급의 지급재원[152]으로 예산의 인건비로 편성된 능률성과급과 이자수

※ 단, 이 경우에도 징계사유가「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과연봉(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없음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징계의 감경)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
1의2.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2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7.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극행정(이하 이 조에서 “소극행정”이라 한다)
7의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소극행정은 제외한다)
8.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9. 성 관련 비위 또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0.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비위행위를 한 경우
1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
1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13.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14.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151) 공무원의 경우에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환수 규정을 두고 있음.
제7조의2(성과상여금 등) ⑪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지급받은 성과상여금을 다시 배분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성과상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52) 제3조(지급재원) 능률성과급의 지급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의 인건비로 편성된 능률성과급
2.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발생한 자체수입 초과분

입, 잡수익 등 자체수입 초과분을 명시하고 있는데[153], 2011년 이전까지 관리하던 인건비 내 능률성과급이 성과연봉제 표준지침에 따라 인건비의 성과연봉에 산입됨에 따라 2011년 이후에는 인건비 내 능률성과급 항목이 존재하지 않고[154], 이자수입 등의 초과분은 경영개선 등으로 인한 것이 아닐뿐만 아니라 능률성과급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155][156] 이에 대한 개정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157].

□ 따라서, 각 연구기관은 중징계 처분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능률성과급의 지급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 능률성과급 지급기준을 정비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성과 체계의 공정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3. 이자수입, 잡수익 등 자체수입 초과분
4. 비용절감 등으로 발생한 예산잔액

153) 다만, 통일연구원은 동 지급규칙을 제정한 이후로 능률성과급을 지급한 사례없음.

154) 「2024년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운용지침」p.207

155)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 207

> 이자수입은 인건비, 사업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경상경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경상경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행잔액이 발생하더라도 능률성과급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다.

156)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 10개 기관은 지급 재원으로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발생한 자체수입 초과분을 규정하면서 이자수입 및 잡수익(기타수입) 초과분은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157) 이에 대하여 통일연구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능률성과급 지급기준 권고안(2017. 10. 30.)에 따라 조속히 규정 개정하여 현행화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하고 있음.

7.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158]: 연구기관 성과평가 추진체계 개선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원·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가의 연구사업 정책의 지원 및 지식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2025년 예산은 전년대비 33억 4,500만원(17.8%) 증가한 221억 2,200만원이 편성됨.

<2025년도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경제·인문사회연구회	38,504	18,777	22,122	3,345	17.8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 검토의견

□ ‘연구기관 인센티브’는 연구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배정함으로써 우수한 연구성과에 대한 보상시스템을 정착시키고 연구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관고유사업의 일종임. 2025년 예산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인 8억 8,200만원이 편성됨.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연구기관 인센티브	882	882	882	-	-

158) 세부사업: 경제인문사회연구회(1531-301)

<2024년 연구기관 인센티브 지급내역>

(단위: 천원)

기관명	평가등급	기준액	최종 산출금액1)
국토연구원	A	100,000	98,50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B	50,000	48,500
에너지경제연구원	B	50,000	48,500
통일연구원	B	50,000	48,500
한국개발연구원	B	50,000	48,50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A	100,000	98,50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A	100,000	98,50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A	100,000	98,500
한국직업능력연구원	B	50,000	48,500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	100,000	98,500
한국행정연구원	B	50,000	48,500
건축공간연구원	A	100,000	98,500
합 계		900,000	882,000

주1) 평가등급별 기준금액에 따라 배분 후 잔액은 배정기관의 수로 균등 배분(기관별 -1,500천원)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원)

□ '연구기관 인센티브' 지급의 근거가 되는 연구기관 평가는 연구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한 중점추진사업에 대하여, 중점추진사업을 구성하는 실천과제별 성과목표 달성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목표의 타당성, 이행 노력, 목표 달성도, 사업효과 및 정책 기여도의 4개 평가지표로 구성됨.159)

159)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연구기관의 국가싱크탱크로서의 연구역량 집중과 중장기적 연구 성과관리 체계로의 제도 개편을 위해 기존 연구과정·성과관리 전반에 대한 공통 기준을 적용하여 실시하던 연구기관 평가의 체계를 연구기관별 중점추진사업의 성과 및 사업효과 등을 평가하는 체계로 개선하였음(2023년 6월)

◇ (기존) 연구과정·성과관리 전반에 대한 공통 기준 적용
→ (개편) 연구기관별 중점추진사업(3~5개)의 성과 및 사업효과 등을 평가

현행

구분	평가지표	배점
연구 분야	(연구과정 및 성과관리) ●연구과정관리 ●국정과제 및 긴급연구 기여도 ●연구과제의 정책화 기여도 ●정책 집행사업 기여도 (연구보고서 우수성) ●기초·정책 연구보고서 우수성 ●협동연구보고서 우수성	800 (정성/정량)

개선

구분	평가지표 및 항목	배점
연구 분야	(중점추진사업 실천과제별) ●목표의 타당성 ●이행 노력 ●목표 달성도 ●사업우수성 및 정책 기여도 ※ 중점추진사업 3~5개, 중점추진사업별 실천과제 1~3개	800 (정성/정량)

<평가지표 및 배점 기준표>

평가지표	내 용	배점 비중
목표의 타당성	○ 경영목표 실천계획을 고려한 추진전략-실천과제 -성과목표-성과지표 간 적정성 ○ 성과목표와 개별사업 간 적합성 ○ 성과목표와 성과지표의 혁신적 및 도전적 성격	30%
이행 노력	○ 경영목표 실천계획에 대한 수행여부 및 수행 충실성 ○ 환경변화 및 정책수요 대응성 ○ 성과지표 이행의 적극성·혁신성	10%~20%
목표 달성도	○ 사전에 설정된 성과목표 대비 달성도	10%~20%
사업효과 및 정책기여도	○ 사업효과 : 국정과제 기여도, 단기·중장기적 시각에서 정부 의사결정상 영향력, 학술적 기여도, 사회적 영향력, 결과의 양적실적 및 질적 수준 등 ○ 정책기여도 ① 연구사업 정책기여도 : 정책대안 제시 및 정책화 실적, 부처 등 대상 정책 만족도 조사 등 ② 정책 집행사업 정책기여도 : 사업집행의 효과성, 환류 및 사업개선의 적정성, 해외사무소 평가 등)	40% 이상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한편, 연구기관 평가는 평가대상연도(N년)를 기준으로 ①「경영목표 실천계획」을 제출하고(~N년 3월), ②「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N+1년 1월), ③ 이에 대한 평가를 실시(N+1년 1월~4월)하는 절차를 거쳐 수행되는데 2023년도의 경우「경영목표 실천계획」이 2023년 8월에 제출되었다는 점, 2024년도의 경우에도「경영목표 실천계획」이 2024년 8월에 재접수되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연구기관 평가 절차>

단계	(N년, ~3월*) **경영목표 실천계획 제출·승인**	⇨	(N+1년, 1월) **실적보고서 제출**	⇨	(N+1년, 1월~4월) **평가 실시**
단계별 주요 내용	-'경영목표→추진전략 →실천과제' 단계별 추진전략 수립 -실천과제(1~3개) 임무유형 매칭 -성과목표·성과지표 설정 -'추진전략' 중, 중점추진사업 3~5개 자율 선정 -중점추진사업의 중요도에 따라 기관 자율배점 부여 (150~300점, 50점 단위)		-중점추진사업 및 실천과제 실적 작성·제출		-중점추진사업별 해당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종합결과 산출

□ 이에 대하여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2023년도의 경우 2023년 6월 평가지표 등에 관한 제도변경이 발생하여 「경영목표 실천계획」 접수가 늦어졌으며, 2024년도의 경우 2024년 3월 「경영목표 실천계획」을 접수하였으나, 2023년도 연구기관 평가 시 연구기관이 평이하고 보수적인 수준의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연구기관 평가단의 의견에 따라 3월 접수한 「경영목표 실천계획」에 대한 전문가 검토 및 수정·보완을 거쳐 2024년 8월 「경영목표 실천계획」을 재접수하였다는 입장임.

□ 그러나, 연구기관 평가 절차의 첫 단계인 「경영목표 실천계획」을 평가대상연도의 8월에 접수하게 되면, 경영목표에 포함된 성과목표와 연구기관이 「경영목표 실천계획」 수립 전 실시한 각 연구과

제간 괴리가 발생하여 연중 업무수행의 효과성과 지속성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제도도입 및 정립시기에 해당하는 2023년 및 2024년의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연구기관 평가절차에 따르면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제출·승인이 평가대상연도 3월까지 실시된다는 점에서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합리적인 수립과 연구기관 평가의 타당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 국회는 연구기관의 기관고유사업(기본연구사업) 및 일반사업과 이에 포함된 각각의 연구과제에 대한 심의를 통해 각 연구기관의 출연금 예산을 심의·확정하고 있으나, 연구기관의 「경영목표 실천계획」이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 이후인 그 다음해 3월에 수립된다면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시 각 연구기관의 사업은 「경영목표 실천계획」이 부재한 상태에서 수립된 것에 해당함. 이는 국회의 연구기관 출연금 예산 심의를 형해화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경영목표 실천계획」을 국회에 예산을 제출하기 이전에 각 연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이를 통한 각 연구과제 및 사업의 체계적 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제도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8. KDI국제정책대학원[160]: 교육협력 및 지식교류포럼 내실화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KDI국제정책대학원'은 개발 및 공공정책, 공공관리 분야 국내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기관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부설기관임. 2025년 예산은 전년대비 42억 100만원(16.4%) 감소한 214억 700만원이 편성됨.

<2025년도 KDI국제정책대학원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KDI국제정책대학원	23,260	25,608	21,407	△4,201	△16.4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 검토의견

□ '공공외교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교육협력사업' 은 미국과 유럽의 정치 중심지인 워싱턴 DC와 베를린 소재 유수 대학과의 교육협력 사업을 통해 한·미, 한·유럽 관계 발전에 기여할 전문인력 양성하고, 외교·안보, 경제·통상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지식 교류 사업 추진을 통한 지한(知韓)인력 양성 및 인적 네트워크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 예산은 전년대비 5억 6,800만원(64.5%) 증가한 14억 4,800만원이 편성됨.

160) 세부사업: 한국개발연구원(1539-301)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공공외교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교육협력사업	1,866	880	1,448	568	64.5

<공공외교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교육협력사업 예산편성 세부내역>

2024년	2025년
○ 교육협력: 8억 8,000만원 - 존스홉킨스대: 1억원 - 조지워싱턴대: 2억 9,500만원 - 베를린자유대: 4억 8,500만원	○ 교육협력: 10억 7,000만원 - 존스홉킨스대: 1억원 - 조지워싱턴대: 4억 8,500만원 - 베를린자유대: 4억 8,500만원 ○ 지식교류포럼: 3억 7,800만원 - 재정정책 지식교류포럼: 3억 4,660만원 - 국외여비: 3,140만원

□ KDI국제정책대학원은 '교육협력'을 위해 미국 존스홉킨스대(1억원), 미국 조지워싱턴대(4억 8,500만원), 독일 베를린자유대(4억 8,500만원)를 대상으로 분담금 명목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계획이며, 당해 분담금은 각 학교에서 장학금 지급이나 한국학 프로그램 관련 인건비 및 사업비로 사용되고 있음. KDI국제정책대학원에 따르면 2025년에는 3개 학교에서 총 20명 가량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임.

□ KDI국제정책대학원은 협력대학 한국학 프로그램 지원에 있어 한국학 강의 개설 등에 보다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KDI국제정책대학원에 따르면 협력대학 세 곳 중 존스홉킨스대에

만 유일하게 교육협력사업을 통해 강좌가 개설되고 있으며, 조지워싱턴대와 베를린자유대의 경우 교육협력사업을 통한 강좌 개설 계획은 없음[161]. 또한 존스홉킨스대에서 개설된 강좌 대부분이 한국어 강좌라는 점에서 사회과학으로서의 한국학 연구와 발전에 필요한 강좌의 개설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됨[162].

<2025년도 존스홉킨스대 SAIS 개설 강좌명>

◦ North Korea Policymaker Primer	◦ Korean Intermediate Mid I
◦ Korean Novice	◦ Korean Intermediate Mid II
◦ Korean Novice High	◦ Korean Intermediate High
◦ Korean Intermediate Low	◦ Korean Advanced High III

□ 한편, KDI국제정책대학원은 '지식교류포럼'을 위해 3억 7,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KDI국제정책대학원은 우리 정부의 재정정책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신뢰를 확보하는 "정책공공외교"를 수행하는 한편, 국제 재정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 전문가들과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재정정책 지식교류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라는 입장임.

□ 그러나, 외교부의 「제2차 공공외교 기본계획(2023-2027)」은 중점협력국가 및 지역 대상 정책 소통 강화 부문에 있어 미국의 경우 "정책공공외교"영역을 기존 안보 분야에서 공급망·보건·기후변화

161) 협력학교 자체의 한국학 강의는 개설·운용중에 있음.
162) 한국학 관련 존스홉킨스대 SAIS 개설 강좌 현황 : (2022 봄) 3개 → (2022 가을) 3개 → (2023 봄) 2개 → (2023 가을) 3개 → (2024 봄) 1개 → (2025 봄) 1개

등 신흥 이슈 분야로 확대하고,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에 따라 자유민주주의 가치, 신흥 이슈(신기술, 글로벌 공급망, 우주, 사이버, 원자력 등) 분야로 협력을 심화하도록 정함[163]. 또한 외교부의 「2024년 공공외교 종합시행계획」에서는 「제2차 공공외교 기본계획」은 「제1차 공공외교 기본계획」 대비 자유민주주의·평화·인권·환경 등 글로벌 가치 실현에 기여하는 정책공공외교가 강화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음.

□ 특히 「제2차 공공외교 기본계획(2023-2027)」은 '글로벌 가치 실현에 기여하는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 ① 국제사회 평화·인권·자유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공감대 형성, ②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등 경제안보 협력 기여국 이미지 제고, ③ 기후변화·탄소중립 등 환경·에너지 분야 글로벌 리더십 인식 확산 등의 세부과제를 정하고 있으므로[164],

163) 「제2차 공공외교 기본계획(2023-2027)」 중 발췌

[1-2] 중점 협력국가 및 지역 대상 정책 소통 강화

1-2-① 주요국 대상 우리 정책에 대한 이해도 제고
(전부처, 지자체)

○ **(미국)** 정책공공외교 영역을 기존 안보 분야에서 공급망, 보건, 기후변화 등 신흥 이슈 분야로 확대

※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에 따라 자유민주주의 가치, 신흥 이슈(신기술, 글로벌 공급망, 우주, 사이버, 원자력 등) 분야로 협력 확대 및 심화

- △對미 권역별 정책공공외교 △미 주요 싱크탱크와의 공동 세미나 개최 (KF-CSIS 한미전략포럼, Atlantic Council 포럼, KNDA-USIP 한미 양자 대화, KNDA-CEIP-JIIA 한미일 3자 1.5트랙 대화 등) △對의회 정책공공외교 사업 △한미 공공외교 포럼 △KF 한미 미래비전 네트워크 사업 등

※ KF '한미 미래센터'를 중심으로 공급망, 경제, 기술 등 신흥 이슈 논의 활성화 및 학계외 다양한 공공외교 파트너 발굴을 통한 현지 밀착형 네트워킹 강화

- '23년 한미동맹 70주년 계기, △주요 싱크탱크 인사 초청 국제학술세미나 개최 △한미동맹 70년사 발간 등을 통한 우리 정책에 대한 이해도 제고

164) 「제2차 공공외교 기본계획(2023-2027)」 중 발췌

이와 관련한 지식교류포럼을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정부의 전략적 정책공공외교 수행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중점과제 1-3 글로벌 가치 실현에 기여하는 국가 이미지 제고		
	1-3-[1] 국제사회 평화, 인권, 자유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공감대 형성	외교부, 국방부 여가부, 교육부, 보훈처, 지자체
	1-3-[2]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등 경제안보 협력 기여국 이미지 제고	외교부 산업부, 지자체
	1-3-[3] 기후변화, 탄소중립 등 환경·에너지 분야 글로벌 리더십 인식 확산	외교부, 산업부 환경부, 농림부 지자체

9. 한국조세재정연구원[165]: 청년 대상 조세교육 필요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조세·재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조사·연구·분석함으로써 국가의 조세·재정·공공기관의 운영 관련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2025년 예산은 전년대비 4억 6,000만원(1.2%) 증가한 382억 7,800만원이 편성됨.

<2025년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5,132	37,818	38,278	460	1.2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 검토의견

□ ‘조세교육 운영사업’은 조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고, 올바른 납세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조세에 대한 체계적 교육을 실시하려는 사업임. ‘조세교육 운영사업’은 2023년 신설되었으며, 2025년 예산은 전년대비 2억 5,000만원(83.3%) 증가한 5억 5,000만원이 편성됨.

165) 세부사업: 한국조세재정연구원(1548-301)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조세교육 운영사업	279	300	550	250	83.3

□ ‘조세교육 운영사업’은 초등 조세교육사업, 고등 조세교육사업, 다문화 조세교육사업 등으로 구성됨.

<조세교육 운영사업 예산편성 세부내역>

2024년	2025년
◦ 초등 조세교육사업 : 2억 2,225만원 ◦ 고등 조세교육사업 : 6,185만원 ◦ 기타 행정비용 : 1,590만원	◦ 초등 조세교육사업 : 4억 1,830만원 ◦ 고등 조세교육사업 : 9,480만원 ◦ 다문화 조세교육사업 : 2,100만원 ◦ 기타 행정비용 : 1,590만원

□ 초등 조세교육사업은 초등학생 대상 세심교실을 운영하고 참여 교사 연수 및 교재·교구 개정 및 보완 등을 수행하는 사업임. 세심교실이란 초등 5·6학년을 대상으로 교실 속에서 학생들이 직접 소득 및 소비, 세금 납부활동 등에 참여하면서 조세의 필요성을 체득할 수 있도록 기획한 학생 참여형 조세교육 프로그램임. 2023년도에는 세종·충청권 37개학급을 대상으로 세심교실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전국 178개 학급으로 세심교실을 확대운영하였음. 2025년도에는 300학급으로 세심교실을 확대할 계획임.

□ 고등 조세교육사업의 경우 2024년 현재 교재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5년도에는 세종 인근 고등학교에서 시범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다문화(이민자, 탈북자) 조세교육사업의 경우에는 2025년 교재 개발을 우선 추진하고 이후 시범교육을 실시할 예정임.

□ 다만, 조세교육의 효과성을 증진하기 위하여는 교육대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됨.

□ 특히,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국민을 의미하는 청년세대[166]는 사회에 진출하는 세대로서 소득세 등의 각종 세금을 처음으로 납부하게 되는 시기를 맞이게 된다는 점에서 세금에 대한 이해·절세방법·재테크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청년세대에 제공하여 경제인으로서 사회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청년 대상의 조세교육을 신설함으로써 초등-고등-청년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조세교육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 참고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 2023년 1월 전국 25~64세 성인 남녀 2,400명을 대상으로 납세의식을 조사(우리나라 국민의 납세의식 조사)한 결과 20대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9.4%가 각종 세금에 대해 “잘 모르는 편”이라고 답변하는 등[167] 청년세대의 조세 인식이 낮은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당해 조사결과보고서는 20대의 조세 이해도가 다른 연령에 비해 낮다는 조사결과를 지적하며, 미래의 납세자인 초·중등 학생부터 조

166)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167) 김재진. "조세교육, 왜 필요한가." 재정포럼 331 (2024): 2-5.

세교육을 우선 실시하고,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맞춤형 교육을 수행하여 납세의식과 납세순응을 제고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음.[168]

<연령별 조세이해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39.2	49.1	48.5	48.8	47.1
(조세이해도 관련 설문 문항의 구성) - 세금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부가가치세율, 현금영수증 발금 최저금액, 소득세 최고세율				

168) 홍범교, "우리나라 국민의 납세의식 조사", 조세재정Brief

※ 참고자료: 세심교실

함께하는 세심(稅心)교실이란?

✧ 함께하는 세심교실은 초등 5, 6학년을 대상으로 교실 속 작은 정부를 세우고 학생들이 직접 소득 및 소비, 세금 납부활동 등에 참여하면서 조세의 필요성을 체득할 수 있도록 기획한 **학생 참여형 조세교육 프로그램**
*** 세심(稅心)은 "조세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심다"를 의미**

✧ 학생들의 학급 내 직업과 소득, 납세내역 등을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반응형 웹페이지는 물론, '세금왕게임' 등 보드게임 형태로 제작된 교구와 활동키트로 쉽고 재미있게 조세에 대해 접할 수 있음

✧ **세심교실**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민주주의의 근간인 세금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체득하여 성숙한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 교사연수를 통해 교사에게 세심교실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세심교실 활동에 필요한 물품 일체를 제공하여 **교사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함**

✧ 초등학생 대상 함께하는 세심교실 교재 구성

차시	주제	주요 내용 및 활동
0	세심교실을 만들어요!	우리 반 국가(세심나라) 만들기
1	우리 모두를 위한 세금이 필요해!	세금의 필요성 알아보기
2	세금을 어떻게 정할까?	세심회의로 첫 세금을 정하다!
3	세금, 공평하게 내려면?	세법 정하기!
4	세금, 어디에 쓰일까요?	세금이 어디에 얼마나 필요할까?
5	물건을 살 때도 세금을 내요!	새로운 세금을 만들어 보아요!
6	회사도 세금을 낸다고?	법인세 내기 어렵지 않아요!
7	집을 살 때, 갖고 있을 때 내는 세금	취득세와 재산세를 정해봅시다.
8	세금을 안 내려 한다고?	성실 납세자가 되어보기!
9	한 해동안 쓴 세금을 결산해요	리멤버 세금교실!
10	안녕! 진짜 세금 내는 세상!	굿바이 세심교실!

✧ 함께하는 세심교실 추진 현황

'23. 2. 27.	'23. 9월 ~ 11월	'24. 1월 ~ 현재	'24년 하반기
연구원 내 전담조직 신설 및 교재·교육과정 개발 착수	세종/충청권역 초등학교 5·6학년 37개 학급 대상 「함께하는 세심교실」 시범사업 실시	전국 단위(제주포함) 178개 학급(4,279여명) 대상 「함께하는 세심교실」 확대 운영	'24년 하반기 다문화 / 작은 학급 대상 찾아가는 세심교실 운영

10. 대외경제정책연구원[169]: 연구성과 홍보 효과성 제고 필요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대외경제정책 및 세계경제와 관련된 문제를 조사·연구·분석함으로써 국가의 대외경제 비전과 정책 수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2025년 예산은 전년대비 15억 2,400만원(5.1%) 증가한 313억 4,000만원이 편성됨.

<2025년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대외경제정책연구원	30,630	29,816	31,340	1,524	5.1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 검토의견

□ ‘정책연구브리핑’은 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시사점을 정리한 요약 리포트로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기본연구사업으로 실시된 연구과제에 대하여 연구보고서 이외에 정책연구브리핑을 발간하도록 하여 연구결과에 대한 대국민 이해를 제고하고 연구결과가 정책수립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고 있음.

169) 세부사업: 대외경제정책연구원(1534-301)

□ ‘정책연구브리핑’은 연구성과의 이해 및 활용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연구보고서만을 제공하는 타 연구기관에도 도입·운영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는 제도라고 생각됨.

□ 다만, ‘정책연구브리핑’의 연구성과 홍보 목적을 한층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책연구브리핑’ 발간 시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대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2023년도 연구기관 평가결과」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023년 12월 종료된 연구를 2024년 4월 정책연구브리핑을 통해 홍보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바, 연구종료와 동시에 연구결과를 홍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음.

□ 위와 같은 지적을 토대로 2023년 정책연구브리핑 발간 내역을 살피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5건의 2023년도 기본연구사업에 대하여 정책연구브리핑을 발간하였는데 당초 계획과 같이 2024년 4월 정책연구브리핑을 발간한 연구과제는 4건에 불과하며, 3건의 연구과제는 2024년 5월에, 6건의 연구과제는 2024년 6월에, 4건의 연구과제는 2024년 7월에, 8건의 연구과제는 2024년 8월에 정책연구브리핑을 발간하였음.

<2023년 기본연구보고서에 대한 정책연구브리핑 발간월 현황>

2024년 4월	2024년 5월	2024년 6월	2024년 7월	2024년 8월	합계
4건	3건	6건	4건	8건	25건

□ ‘정책연구브리핑’은 방대한 분량의 연구보고서를 요약하여 제공함으로써 연구결과물의 활용을 제고하기 위한 장치로서 그 시의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됨. 그러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연구보고서를 전년도 12월에 발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연구브리핑은 연구보고서 발간 후 최소 4개월 최대 8개월이 지난 후에 발간함으로써 연구성과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생각됨. 따라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연구보고서 발간과 동시에 정책연구브리핑을 발간·공개할 필요가 있음.

※ 참고자료: 2023년 기본연구보고서 및 정책연구브리핑 발간일 상세 내역

과제명	기본연구보고서 발간일	정책연구브리핑 발간일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변화와 한국의 대응	‘23.12.29	‘24.08.01
일본의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관리와 한·일간 협력방안 연구	‘23.12.29	‘24.06.03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EU의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확대에 미친 영향: 에너지 전환, 인적 교류, 안보 통합을 중심으로	‘23.12.30	‘24.05.23
수출규제의 경제적 함의와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3.12.30	‘24.08.09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해외직접투자가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23.12.29	‘24.08.01
순대외금융자산이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국제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23.12.29	‘24.06.14
대외 충격의 파급효과와 국가 간 자본유출입	‘23.12.29	‘24.08.09
빅데이터 기반의 국제거시경제 전망모형 개발 연구	‘23.12.29	‘24.04.05
디지털 통상규범의 경제적 효과 추정에 관한 연구	‘23.12.29	‘24.08.05
기후클럽 형성에 대한 통상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23.12.30	‘24.08.01
기업결합과 혁신 : 미국 디지털플랫폼과 경쟁정책을 중심으로	‘23.12.29	‘24.04.09
대외전략과 연계성 제고를 위한 전략적 ODA 추진방안 연구	‘23.12.29	‘24.07.31
팬데믹 이후 국제사회의 불평등 현황과 한국의 개발 협력 과제	‘23.12.29	‘24.07.30
에너지안보 강화와 탄소중립을 위한 한국의 대응방안	‘23.12.29	‘24.07.29

디지털금융을 통한 아프리카 금융포용성 개선 방안 연구	‘23.12.30	‘24.05.09
주요국의 산업별 디지털 전환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23.12.29	‘24.06.11
미중 기술경쟁 시대 중국의 강소기업 육성전략과 시사점	‘23.12.29	‘24.07.12
시진핑 시기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 강화 전략 평가와 시사점	‘23.12.29	‘24.08.09
중남미 국가의 서비스시장 개방이 GVC 참여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23.12.29	‘24.06.04
아세안 경제통합의 진행상황 평가와 한국의 대응 방향: TBT와 SPS를 중심으로	‘23.12.29	‘24.04.17
인도태평양 시대 한·인도 경제협력의 방향과 과제	‘23.12.29	‘24.06.05
인도 서비스 산업 구조 분석과 한-인도 산업 협력 확대 방안	‘23.12.29	‘24.06.10
MENA 지역 에너지 보조금 정책 개혁에 따른 사회적 영향과 시사점	‘23.12.29	‘24.05.23
대러 경제 제재가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한-러 경제협력 안정화 방안	‘23.12.29	‘24.08.01
북한의 관세 및 무역제도 분석과 국제사회 편입에 대한 시사점	‘23.12.29	‘24.04.15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1. 한국형사 · 법무정책연구원[170]: 법무수요조사결과 환류 필요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범죄의 실태와 원인 및 그 대책을 분석·연구함으로써 국가의 형사정책수립과 범죄방지에 이바지하고, 법무분야에 대한 실증적·종합적인 분석·연구를 통해 법무정책의 수립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2025년 예산은 전년 대비 3억 900만원(2.3%)이 증가한 136억 8,800만원이 편성됨.

<2025년도 한국형사 · 법무정책연구원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12,814	13,379	13,688	309	2.3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 검토의견

□ ‘법무정책조사·연구사업’은 기존의 법제도 및 법률 중심의 비교법 연구가 아닌 실증조사 등을 통해 증거에 기반한 법무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 예산은 전년대비 1억 5,000만원(17.5%)이 증가한 10억 500만원이 편성됨.

170) 세부사업: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1553-301)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법무정책조사·연구사업	900	855	1,005	150	17.5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2025년 '법무정책조사·연구사업'을 통해 11개의 세부 연구과제를 수행할 계획임.

<법무정책조사 · 연구사업 세부 연구과제 현황>

2024년		2025년	
①	법무 수요조사(2)	①	2025 법무 수요조사
②	외국인 정책 선진화를 위한 거버넌스 재구축(Ⅱ)	②	외국인 정책 선진화를 위한 거버넌스 재구축(Ⅲ): 이민정책 거버넌스 구축
③	디지털자산 산업의 책임있는 성장을 위한 법무정책 연구(Ⅰ)	③	디지털자산 산업의 책임있는 성장을 위한 법무정책 연구(Ⅱ)
④	첨단기술 트렌드에 대응하는 정책 연구(Ⅰ) - 초거대 인공지능	④	첨단기술 트렌드에 대응하는 형사·법무정책 연구(Ⅱ) - 바이오 기술
⑤	부동산 전자계약에 관한 실증적 연구	⑤	부동산 직거래 현황과 안전 거래 확보 방안
⑥	미래 사회 대비 보조생식기술을 통해 출생한 아동의 친자관계 결정 기준 정비	⑥	헤이그부양협약에 관한 연구
⑦	메타버스 시대의 새로운 메커니즘에 따른 법제도적 대응방안(Ⅱ)	⑦	비대면 의료의 도입에 따른 법·정책적 대응방안: 신의료기술을 중심으로
⑧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체계 수립에 관한 연구	⑧	FTA상 독립전문가 규정에 대한 고찰: 한국의 대(對)아세안 이민정책의 함의를 중심으로
⑨	리걸테크에 대한 법조계 인식조사 및 교육방안 연구	⑨	난민절차 진행에 따른 행정·사법 절차 소요비용 분석
		⑩	민사소송절차 선진화에 관한 연구
		⑪	국민과 외국인의 사회통합지수 측정을 위한 기초연구(Ⅰ)

□ 11개의 세부 연구과제 중 '법무 수요조사'는 2023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연구사업으로 사법전문가나 국가기관의 관점이 아니라 문제를 직면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사람들에게 발생하는 문제의 경험을 파악하여, 법적 서비스 경험과 필요에 대한 이해를 통해 법적 영역 뿐 아니라 효과적인 공공 정책을 수립하고 제공하는 데 기여하려는 사업임.

□ ‘법무 수요조사’를 위한 2025년 예산은 2억 9,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2024년 예산에 비해 7,026만원 증액되었음. 증액분은 주로 설문조사용역비(외부용역비 및 분담금) 증액에 해당함.

<법무 수요조사 예산 세부내역>

(단위: 만원)

2024 법무 수요조사		2025 법무 수요조사	
사업인건비	6,384	사업인건비	5,320
공공요금	94	공공요금	94
수용비	900	수용비	921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188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140
여 비	2,148	여 비	2,690
연구정보활동비	1,030	연구정보활동비	890
전문가활용비	1,780	전문가활용비	1,690
회의비	850	회의비	355
외부용역비 및 분담금	9,100	외부용역비 및 분담금	17,400
합 계	22,474	합 계	29,500

(자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제공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법무 수요조사’ 사업을 5개년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각 연도별 중점 조사주제를 선정하여 주제별 실제 국민이 겪는 문제 경험을 파악하고자 함.

<법무 수요조사 세부계획>

2023년(1차연도)	법무 수요 일반 및 법무 지원
2024년(2차연도)	토지 및 주택
2025년(3차연도)	가족 및 소비자
2026년(4차연도)	공공서비스 및 금융
2027년(5차연도)	고용 및 인권

□ 다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법무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세부연구과제를 선정하는 등의 환류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연구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 2023년 수행된 법무수요조사 결과보고서는 “주민의 수요에 따른 법교육 프로그램 및 지원기관에 대한 홍보방안 마련”, “법무 취약집단에 대한 맞춤형 정보 제공 기관 설립”을 정책제언으로 제시하였으나, 이와 관련한 세부연구과제를 2024년 및 2025년 ‘법무정책조사·연구사업’ 계획에서 발견할 수 없음.

□ 위와 같이 ‘법무 수요조사’의 결과에 기초한 세부연구과제가 수립되지 않는 경우 ‘법무 수요조사’는 단순히 현황파악을 위한 수요조사에 그칠 뿐 수요조사에 따른 구체적 정책수립에의 기여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 특히, 국회는 2021년「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명칭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으로 변경한 바 있는데, 이는 연구원이 그간에 수행해 왔던 범죄의 실태와 원인 그 대책에 관한 연구에 더해 법무분야에 대한 실증적·종합적 분석·연구를 통해 비(非)형사법적 법령과 관련된 정책연구수요에 대응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위와 같은 법개정 취지에 따라 법무정책에 관한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법무정책조사·연구사업'의 세부 연구과제 선정에 있어 '법무 수요조사'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참고 : 기관 명칭 변경에 따른 정관상 사업범위 변경>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정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정관
1. 범죄의 동향과 원인 등에 대한 조사·분석과 그 대책에 관한 연구 2. 형사관계법령 및 형사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조사·연구 3.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형사정책 등에 관한 공동연구 4. 국내외 연구기관 및 전문가에 대한 연구용역의 위탁 5. 정부, 국내외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로부터의 연구용역의 수탁 6. 범죄문제에 대한 국민계도 및 연수 7. 북한의 범죄와 형사관계법령 및 통일대비 형사정책연구 8. 범죄방지를 위한 국제교류 및 협력증진 9. 제1호 내지 제8호의 부대사업 기타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1. 범죄의 동향과 원인 등에 대한 조사·분석과 그 대책에 관한 연구·사업 2. 형사관계법령 및 형사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사업 3. 민·상사, 송무, 국제법무, 인권법무, 출입국법무, 법조인력정책 등 법무관계법령 및 법무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연구 또는 사업에 관련된 조사, 교육·연수, 성과확산, 출판, 공동연구, 국내·외 교류협력, 위·수탁, 통계정보 관리·제공 등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부대사업 기타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12. 한국행정연구원[171]: 국정과제 정책만족도 조사결과 공개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한국행정연구원’은 행정체제의 발전과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관련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정책 수립과 행정분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2025년 예산은 전년 대비 3억 8,600만원(2.8%)이 증가한 142억 9,200만원이 편성됨.

<2025년도 한국행정연구원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한국행정연구원	14,369	13,906	14,292	386	2.8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 검토의견

□ ‘국정과제 정책만족도 조사사업’은 국정과제에 대한 정책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환류함으로써 국정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 예산은 4억 6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임.

171) 세부사업: 한국행정연구원(1552-301)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국정과제 정책만족도 조사사업	389	406	406	-	-

□ 한국행정연구원은 일반국민과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상·하반기(연 2회) 국정과제에 대한 정책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2024년도 상반기에는 일반국민 9,6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24년도 하반기에는 일반국민 9,600명 및 정책수요자 9,6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2025년도에는 2024년도와 유사한 규모의 정책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 국정과제 정책만족도 조사결과는 2021년까지 국무조정실의 정부업무평가(특정평가)에 반영되었으나 2022년 이후로는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의 국정과제 이행점검 및 관리에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음.

<국정과제 정책만족도 조사 대상>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시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표본	일반국민	10,400명	5,400명	5,400명	9,600명	9,600명
	정책 수요자	7,800명	-	5,400명	-	9,600명

□ 한국행정연구원은 '국정과제 정책만족도 조사사업'을 수행함에 있

어 그 조사결과를 정부(국무조정실)에만 제공하고, 이를 타 기관 연구자·전문가 및 국민 일반에 공개하지 아니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 한국행정연구원의 「연구업무관리규칙」 제39조[172]는 사업이 완료된 연구성과물에 대하여 연구성과 홍보·확산 계획을 수립하고 연구성과물 배포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홍보하도록 정하므로 그 취지에 따라 국정과제 정책만족도 조사결과를 공개할 필요가 있음.

□ 국정과제 정책만족도 조사결과의 공개는 각 국정만족도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관심을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추이 분석 등을 통해 새로운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참고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협동연구 총서 「국정과제 관리 개선방안 보고서」(2022년)는 국정과제 정책만족도 조사결과가 포함된 국정과제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하였으며, 한국행정연구원의 「정부업무평가 국민만족도 활용제고 방안」 연구보고서(2016년)는 정부업무평가 국민만족도 조사가 그 중요성

172) 제39조(연구성과 확산) 홍보팀장은 사업이 완료된 연구성과물에 대하여 연구성과 홍보·확산 계획을 수립하고 원장의 결재를 득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이용하여 홍보한다. 단, 수탁연구사업과 관련된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연구성과물 배포(연구보고서, 기타 연구자료, 홈페이지 등)
2. 연구성과 최종보고회 및 정책간담회 개최
3. 보도자료 배포
4. 전자출판물(뉴스레터 등) 제작 및 배포 등

에 비해 결과 활용이 높은 편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며 조사결과의 공개를 통해 국민만족도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여 각 부처의 국민만족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

※ 참고자료: 국정과제 목록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국정과제 (주관부처)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15개)		**[약속01] 상식과 공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1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중기부)
	2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질병청)
	3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산업부)
	4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 (법무부)
	5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 정상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 (기재부)
	6	미디어의 공정성·공공성 확립 및 국민 신뢰 회복 (방통위)
		[약속02]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습니다.
	7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국토부)
	8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세제 정상화 (기재부)
	9	대출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 (금융위)
	10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 (국토부)
		[약속03] 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11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과기정통부·행안부·개인정보위)
	12	국정운영 방식의 대전환, 자율·책임·소통의 정부 (국조실)
	13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행안부·권익위·법제처)
	14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 (인사처)
	15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기재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26개)		**[약속04] 경제체질을 선진화하여 혁신성장의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16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국조실)
	17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 (산업부)
	18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 (기재부·금융위)
	19	거시경제 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기재부)
	20	산업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新산업통상전략 (산업부)
	21	에너지안보 확립 및 에너지 新산업·新시장 창출 (산업부)
	22	수요자 지향 산업기술 R&D 혁신 및 지식재산 보호 강화 (산업부)
		[약속05] 핵심전략산업 육성으로 경제 재도약을 견인하겠습니다.
	23	제조업 등 주력산업 고도화로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산업부)
	24	반도체·AI·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산업부)
	25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복지부)
	26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서비스 경제 전환 촉진 (기재부)
	27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방통위·과기정통부)
	28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 및 국토교통산업의 미래 전략산업화 (국토부)
		[약속06]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29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 (공정위)
	30	공정거래 법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 강화 (공정위)
	31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주도 혁신성장 관점에서 재설계 (중기부)
	32	예비 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 (중기부)
	33	불공정거래, 기술탈취 근절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 (중기부)
		[약속07] 디지털 변환기의 혁신금융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34	미래 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혁신 (금융위)
	35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 (금융위)
	36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 (금융위)
	37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향상 (금융위)
		[약속08] 하늘·땅·바다를 잇는 성장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38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 (국토부)
	39	빠르고 편리한 교통 혁신 (국토부)
	40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교통물류체계 구축 (해수부)
	41	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 (해수부·해경청)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32개)		**[약속09]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42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개혁 (복지부)
	43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복지부)
	44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 (복지부)
	45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체계 강화 (복지부)
	46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복지부)
	47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없는 사회 실현 (복지부)
	48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여가부·법무부·농식품부)
		[약속10]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49	산업재해 예방 강화 및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고용부)
	50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고용부)
	51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고용부)
	52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고용서비스 고도화(고용부)
	53	고용안전망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고용부)
	54	전 국민 생애단계별 직업능력개발과 일터학습 지원 (고용부)
	55	중소기업·자영업자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 강화 (고용부)
		[약속11] 국민과 함께하는 일류 문화매력국가를 만들겠습니다.
	56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문체부)
	57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 (문체부)
	58	K-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 (문체부)
	59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 (방통위)
	60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 (문체부)

국정과제 (주관부처)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32개)	61	여행으로 행복한 국민, 관광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 (문체부)
	62	전통문화유산을 미래 문화자산으로 보존 및 가치 제고 (문화재청)
		[약속12] 국민의 안전과 건강, 최우선으로 챙기겠습니다.
	63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법무부·여가부·금융위)
	64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 (법무부·방통위·여가부)
	65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행안부·소방청)
	66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 (복지부)
	67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복지부)
	68	안심 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 (환경부·식약처)
	69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 (국토부·경찰청)
		[약속13]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
	70	농산촌 지원 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농식품부)
	71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농식품부)
	72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 (농식품부)
	73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 (해수부)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19개)		**[약속14]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74	국가혁신을 위한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 (과기정통부)
	75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으로 과학기술 G5 도약 (과기정통부)
	76	자율과 창의 중심의 기초연구 지원 및 인재양성 (과기정통부)
	77	민·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과기정통부)
	78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구축 및 디지털 혁신 가속화 (과기정통부)
	79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 (과기정통부)
	80	지방 과학기술주권 확보로 지역 주도 혁신성장 실현 (과기정통부)
		[약속15]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
	81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교육부)
	82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교육부)
	83	더 큰 대학 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 (교육부)
	84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교육부)
	85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교육부)
		[약속16]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86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으로 녹색경제 전환 (환경부·국조실)
	87	기후위기에 강한 물 환경과 자연 생태계 조성 (환경부)
	88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 (환경부)
	89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 (환경부)
		[약속17]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놓겠습니다.
	90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 (국조실·국토부·고용부·중기부·교육부)
	91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국조실·고용부·권익위·금융위·복지부)
	92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 (국조실·법제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18개)		**[약속18]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
	93	북한 비핵화 추진 (외교부)
	94	남북관계 정상화,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 (통일부)
	95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 (통일부)
		[약속19]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지구촌 번영에 기여하겠습니다.
	96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전개 (외교부)
	97	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외교부)
	98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추진 (외교부)
	99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외교부)
	100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 (외교부)
	101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 (국정원·과기정통부·국방부·외교부)
	102	2030 세계 박람회 유치 및 성공적 개최 추진 (외교부·산업부)
		[약속20]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고, 영웅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103	제2창군 수준의 「국방혁신 4.0」 추진으로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국방부)
	104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의 획기적 보강 (국방부)
	105	한·미 군사동맹 강화 및 국방과학기술 협력 확대 (국방부)
	106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 (국방부·산업부)
	107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및 장병 정신전력 강화 (국방부)
	108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 (국방부)
	109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보훈처)
	110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 (보훈처)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10개)		**[약속21]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를 열겠습니다.**
	111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행안부)
	112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행안부·기재부)
	113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교육부)
	114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소통·협력 강화(행안부)
		[약속22] 혁신성장 기반 강화 통해 지역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115	기업의 지방 이전 및 지방투자 촉진(산업부)
	116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성장거점 육성(국토부)
	117	지역 맞춤형 창업·혁신 생태계 조성(중기부)
		[약속23]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18	지역특화형 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산업부)
	119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중기부·행안부)
	120	지방소멸방지, 균형발전 추진체계 강화(산업부·행안부)

13. 한국교육개발원[173]: 서울청사 매각 지연 개선 필요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한국교육개발원’은 한국 교육이 당면한 제반 문제 해결과 미래 교육을 위한 종합적·과학적 연구를 수행하고 혁신적 교육체제를 개발함으로써 교육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제고와 국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2025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1억 4,000만원(△0.6%)이 감소한 220억 7,900만원이 편성됨.

<2025년도 한국교육개발원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한국교육개발원	19,777	22,219	22,079	△140	△0.6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 검토의견

□ 한국교육개발원은 2017년 2월 충북혁신도시(충북 진천군)으로 이전을 완료하였으나, 기존의 서울청사(서울특별시 우면동) 매각이 지연됨에 따라 서울청사와 진천청사에 대한 재산세를 포함하여 종합부동산세, 운영관리비, 감정평가비 등 부동산 유지관리 비용으로 매년 9억 이상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출하고 있음.

173) 세부사업: 한국교육개발원(1540-301)

<한국교육개발원 부동산 유지관리 비용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안)*
재산세	서울청사	308,004	330,299	342,386	271,281	270,651
	진천청사	43,499	64,627	92,939	84,533	86,855
	관사	302	315	455	416	392
종합부동산세		299,082	369,211	429,323	323,665	323,665
소 계(A)		650,887	764,452	865,103	679,895	681,563
운영관리비(B)		144,101	149,740	139,221	145,977	145,977
감정평가비(C)		-	-	101,080	94,211	94,211
합 계(A+B+C/D+E+F)		**794,988**	**914,192**	**1,105,404**	**920,083**	**921,751**
출연금(D)		249,600	249,600	656,600	656,600	656,600
자체수입(E)		384,388	504,592	360,304	169,272	265,151
연구개발적립금(F)		161,000	160,000	88,500	94,211	-

* '24년 종합부동산세, 운영관리비, 감정평가비는 추정치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 2025년도 유지관리 비용 관련 예산으로는 재산세 3억 6,660만원, 종합부동산세 3억 4,000만원 포함한 9억 5,660만원이 편성됨.

<2025년도 부동산 유지관리 비용 관련 예산 요구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요구액
재산세	366,600
종합부동산세	340,000
소 계(A)	**706,600**
운영관리비(B)	150,000
감정평가비(C)	100,000
합 계(A+B+C)	**956,600**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 서울청사 소재지는 개발제한구역(전체면적의 약 80%)과 비오톱 1등급(전체면적의 약 48%)[174],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전체면적의 약 87%) 등 토지규제를 받는 지역으로, 그 용도와 개발이 제한적이라는 이유로 2010년부터 지금까지 서울청사 매각이 지연되었음.

○ 한국교육개발원은 서울청사 매각을 위하여 2010년부터 총 42회에 걸쳐 매각 입찰을 진행하였으나 유찰, 계약체결 후 중도 해지 등으로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

<한국교육개발원 서울청사 매각 추진 경과>

기 간	주요내용	비 고
2010.12. ~ 2019.3.	◦ 입찰공고 30회 유찰 ◦ 2회 계약체결 후 중도해지 - 2013.1.8.(한국방송예술진흥원) - 2017.1.5.(서희건설 자회사)	이사장 개인사유로 중도급 미납 서울시 인·허가 불허
2019.3.	◦ KEDI-SH 매각 양해각서 체결	
2020.7.	◦ KEDI-SH 토지거래계약허가 공동 신청	서초구 인·허가 불허
2022.2.	◦ SH측, KEDI 부집 매입의사 회신: 부지매입 어려움	
2022.5.~6.	◦매각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실시	감정평가 금액: 913.8억원
2022.6.~8.	◦ KEDI 종전부동산 1~3차 매각 입찰공고 실시(유찰)	
2022.10.	◦ 매각 예정가격 감액(안) 이사회 승인	913.8억원 → 822.5억원
2022.11.~ 2023.7.	◦ KEDI 종전부동산 4~9차 매각 입찰공고 실시(유찰)	
2023.8.~10.	직전 감정평가금액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감정평가 실시 및 완료	
2023.10.~현재	정부 주관 관계기관과 종전부동산 매입 협의 중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 그러나, 진천청사 이전 이후 7년 이상 서울청사 매각이 지연됨에

174) “비오톱”이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4조 관련 별표 1에 따라 특정한 식물과 동물이 하나의 생활공동체를 이루어 다른 곳과 명확히 구분되는 생물서식지를 말하며, 도시생태현황 조사결과 비오톱유형평가 1등급이고 개별비오톱평가 1등급인 토지는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보전하여야 하므로 개발행위가 제한됨.(출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부동산 소식)

따라 한국교육개발원은 매각이 원활히 진행되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부동산 유지관리 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구원의 경영상 부담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 지방으로 이전한 청사 차입금 627억 9,000만원으로 인해 약 52억 여원(2024년 4월 말 기준 누적이자)의 이자가 발생하였음.

○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서울청사, 진천청사 보유로 인하여 이중으로 발생하는바, 한국교육개발원은 2023년에 서울청사 재산세 2억 7,065만원, 진천청사 재산세 8,685만원, 종합부동산세 3억 2,366만원을 포함하여 총 6억 7,989만원의 세금을 납부하였음.

□ 또한 서울청사 재산세, 운영관리비, 감정평가비 납부를 위해 매년 일정 금액의 출연금이 사용되고 있어 국가 재원의 효율적 사용이 저해되고 있으며, 연구개발적립금의 사용으로 한국교육개발원이 수행해야 할 교육 정책에 관해 종합적인 연구와 개발이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임.

□ 한국교육개발원은 서울 청사의 민간 매각이 어려움에 따라 정부 주관 관계기관과 매각 협의 중이라는 입장이나 2023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매각이 진행되지 않아 2025년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이 불가피한바, 관계기관 매각 외에도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는 등 서울청사 매각 지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4. 국토연구원[175]: 연구기관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본연구과제 추진 필요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국토연구원’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개발·보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2025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22억 200만원(9.9%)이 증액된 243억 8,700만원이 편성됨.

<2025년도 국토연구원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국토연구원	20,919	22,185	24,387	2,202	9.9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 검토의견

□ 국토연구원의 2025년 기본연구사업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9억 9,2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175) 세부사업: 국토연구원(1533-301)

<2025년도 기본연구사업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기본연구사업비	1.332	992	992	-	-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기본연구사업비는 20개의 기본연구과제 예산 8억 9,200만원, 수시연구사업 1억원이 편성됨.

<2025년도 기본연구사업 예산안 세부현황>

(단위: 백만원)

기관명	사업명	연구과제	2025 예산안	연구 기간	비고 (기초, 정책 과제)
국토 연구원	기본연구 사업	대전환 시대의 지역발전 전략:대규모 개발의 한계와 대안 모색	80	1.1.~12.31.	기초
		지방중소도시를 위한 새로운 토지이용관리제도 도입방안	81	1.1.~12.31.	정책
		저출생·대축소시대, 건설·부동산 시장의 미래와 대응 전략	80	1.1.~12.31.	기초
		개인탄소발자국 기반 지역 탄소중립 대응 방안 연구: 데이터와 방법론을 중심으로	**51**	**1.1.~12.31.**	**기초**
		저출생시대의 지속가능한 균형발전 실천전략	32	1.1.~10.31.	정책
		지역특성 기반의 생활인구 제도 확대 방안 연구	32	1.1.~10.31.	정책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산업입지 정책방향 연구	31	1.1.~10.31.	정책
		저출생시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통합적 지원방안	32	1.1.~10.31.	정책
		지방소멸시대, 세대별 다지역거주 정책의 수용성과 추진 전략	32	1.1.~10.31.	정책

기관명	사업명	연구과제	2025 예산안	연구 기간	비고 (기초, 정책 과제)
		메가시티 공간전략 실현을 위한 광역도시계획 기능 제고 방안	62	1.1.~10.31.	정책
		베이비부모 세대의 여가공간 이용 특성과 도시정책 과제	32	1.1.~10.31.	정책
		스마트도시 확산을 위한 성과관리체계 구축 방안 연구	31	1.1.~10.31.	정책
		철도 및 도로 지화화를 통한 미래 도시공간 혁신방안 연구	32	1.1.~10.31.	정책
		비아파트 소유 기피 현상과 주거정책 과제: 청년 주거 안정을 중심으로	32	1.1.~10.31.	정책
		공정과세 실현을 위한 부동산 보유세 제도 개선 방향 연구	**32**	**1.1.~10.31.**	**정책**
		건설산업 선제적 위기 대비/대응을 위한 조기경보시스템(EWS) 구축 연구. 분야별 위기 유형화 및 AI활용 위기 감지 지표 발굴	32	1.1.~10.31.	기초
		디지털 전환을 통한 지방도로의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62**	**1.1.~10.31.**	**정책**
		이용자 행태 기반 친환경 모빌리티 발전 방안 연구	**32**	**1.1.~10.31.**	**정책**
		공간구조 모니터링을 위한 관심지점(POI) 빅테이터 활용방안: 중심지 기능 및 계층구조 분석을 중심으로	62	1.1.~10.31.	정책
		국토 도시부문 분쟁취약국 대상 전후복구 및 재건 협력 방안 연구	32	1.1.~12.31.	기초
		수시연구사업	100	1.1.~12.31.	
		합 계	992		

□ 국토연구원은 2025년 기본연구사업으로 ‘개인탄소발자국 기반 지역 탄소중립 대응 방안 연구: 데이터와 방법론을 중심으로’, ‘공정과세 실현을 위한 부동산 보유세 제도 개선 방향 연구’, ‘디지털 전환을 통한 지방도로의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이용자 행태 기반 친환경 모빌리

티 발전 방안 연구’ 등을 기초 연구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할 예정임.

□ 그러나 탄소중립과 부동산 보유세, 지방도로 운영, 친환경 모빌리티 관련 연구는 각각 한국환경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에서 각각 수행한 바 있음.

<관련 연구 현황>

연구과제명	선행연구	기관명
개인탄소발자국 기반 지역 탄소중립 대응 방안 연구: 데이터와 방법론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생활계 온실가스 배출과 인식 조사 연구	한국환경연구원
	주거 부문 탄소발자국 결정요인 분석 : 1인가구와 다인가구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환경연구원
공정과세 실현을 위한 부동산 보유세 제도 개선 방향 연구	부동산 보유세의 개선방향 :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디지털 전환을 통한 지방도로의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도시지역 생활도로의 개선 공동 연구	한국교통연구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로인프라 정비 및 활용방안	한국교통연구원
이용자 행태 기반 친환경 모빌리티 발전 방안 연구	E-mobility 성장에 따른 석유·전력·신재생에너지 산업 대응 전략 연구(신재생에너지)	에너지경제연구원

(자료: NKIS 국가정책연구포털)

□ 여러 기관에서 유사한 연구주제를 수행하는 것은 재정의 효율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연구원 별로 기관설립목적에 따른 고유한 연구 자료를 축적하고 있으므로 각 기관에서 이전의 연구내용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업무의 효과성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또한 「2024년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운용지침」[176]에 따르면 연구원의 기본연구사업은 정관에 규정된 기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고유 연구사업으로, 연구기관의 고유업무 및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편성·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탄소중립과 부동산 보유세, 지방도로 운영, 친환경 모빌리티 등의 연구주제는 정관에 규정된 국토연구원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다소 떨어지는 측면이 있음.

□ 특히,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평가·대응 관련 환경정책 및 기법 개방은 한국환경연구원의 고유사업으로, 조세 및 재정분야의 제도·행정·정책에 관한 종합연구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고유사업으로 정관에 규정되어 있음을 감안했을 때, 각 연구과제를 조정하거나 타 연구원과의 협력을 통해 수행하는 것이 더욱 적절할 것으로 보임.

<각 연구원 정관>

기관명	정관 상 사업
국토연구원	1. 국토 전역의 발전구상, 균형발전, 국가경쟁력 강화 및 초국경 협력 등에 관한 연구 2. 국토·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보전·관리, 안전국토 조성 등에 관한 연구 3. 도시의 지속가능하고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도시정책, 계획, 관리, 재생 등에 관한 연구 4. 토지, 주택 및 주거복지, 부동산시장 및 관련 산업 등에 관한 연구 5.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관리 및 이용, 국내외 건설산업 육성 및 관리, 건설경제 등에 관한 연구 6. 국가공간정보정책, 스마트도시·공간, 위성정보 활용, 국토모니터링 등에 관한 연구

176)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4년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운용지침」 36p.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연구 또는 사업에 관련된 조사, 교육·연수, 연구 성과 확산, 공동연구, 수탁, 글로벌 협력 등에 관한 사항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부대사업 또는 기타 연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한국환경연구원	1.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정책과 관리기법의 연구·개발, 환경관리 계획의 수립 및 환경정책 운용성과의 평가 2. 자연생태계 보전 및 환경안정성 확보를 위한 정책 및 기법 개발 3.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평가·대응 관련 환경정책 및 기법 개발 4. 환경영향평가서의 전문적 검토, 환경영향재평가 실시, 환경영향평가 관련 연구 및 기법 개발·보급 5. 지구·지역환경문제, 환경 관련 국제협약 및 무역에 관한 연구 6. 환경기술과 녹색기술 확산을 위한 정책연구 및 기법 개발 7. 환경정보 생산·제공과 환경정책 교육·훈련·홍보 및 환경전문인력 육성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연구 또는 사업과 관련된 기획·조정·평가, 정보 생산·제공, 성과확산, 공동연구, 수탁 등에 관한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부대사업 및 기타 연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 조세 및 재정분야의 제도·행정·정책에 관한 종합연구 2. 정부회계 및 재정통계에 관한 연구 3.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정책 연구 4. 재정사업 평가 등에 관한 조사·연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연구 또는 사업에 관련된 조사, 교육·연수, 연구 성과 확산, 공동연구, 수탁 등에 관한 사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부대사업 또는 기타 연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15. 한국교통연구원[177]: 국가철도투자 지원 사업의 차별화 필요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한국교통연구원’은 교통·물류 정책과 기술에 관한 종합적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교통 정보 및 데이터를 수집·분석·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2025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3억 4,300만원(△1.8%)이 감소한 185억 1,500만원이 편성됨.

<2025년도 한국교통연구원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한국교통연구원	18,991	18,858	18,515	△343	△1.8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 검토의견

□ ‘국가철도투자 지원 사업’은 철도투자의 확대에 맞추어 철도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사업 추진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이슈를 선점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며, 철도 개통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화 측정을 통하여 철도투자 효과를 분석하여 정부 철도투자 정책의 신뢰성 확립을 지원하며,

177) 세부사업: 한국교통연구원(1542-301)

추진 예정인 철도사업의 투자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지자체에서 구상한 정책효과에 대한 검토 및 신규 효과들이 발굴되도록 지원하기 위한 3개년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 신규로 1억 4,000만원이 편성됨.

<2025년 국가철도투자 지원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세부 내용	2025년 예산안
합 계		**140,000**
사업인건비	자료정리비	27,095
공공요금	우편통신비	1,200
수용비	사무용품비, 복사비, 인쇄비	9,449
연구기자재/임차료	회의실 임차료, 차량 임차료, 프로그램 라이센스 갱신	9,900
국내여비	국내출장 여비	6,556
연구정보활동비	학회참가비, DB 플랫폼 구독	19,700
전문가활용비	자문회의수당, 검독료	15,300
회의비	연구진과 내외부전문가 회의경비	10,800
외부용역비/부담금	이용자 설문조사, 분석자료 시각화	40,000

□ 동 사업의 주요 연구내용은 ①국가철도투자 및 서비스 지수 개발, ②철도사업 개통에 따른 철도투자효과 모니터링, ③철도투자 정책지원으로서 철도투자의 개통 효과 및 지역발전 효과 제시로 철도사업의 정책성을 입증하려는 것임.

<국가철도투자 지원 사업 주요내용>

주 요 내 용	세 부 내 용
국가철도투자 및 서비스 지수 개발	· 국가철도투자 지수 개발(국가, 지역별로 구분) · 철도투자효과 측정 지표 개발
철도사업 개통에 따른 철도투자효과 모니터링	· 신규 개통된 철도사업에 대한 사회·경제적 효과 조사 및 분석 - 서해선(홍성역~송산역), 중부내륙선(충주시~문경시) 등 주요 철도노선 개통 효과 · GTX-A 단계별 개통에 따른 교통체계 변화 조사 및 분석 * 2024년 운정~서울, 수서~동탄 분리 운영, 2026년 운정~동탄 운영(삼성 미정차) 등에 대한 연단위 조사·분석
철도투자 정책지원	· 지방권 광역급행철도 접근성 조사 및 지역간 격차 변화 분석 · 1기, 2기 GTX 사업추진 관련 정책이슈 대응 방안 · 지방권 광역급행철도 및 도시철도망 효율적 확충 방안 · 철도사업의 정책성 분석 지원

(자료: 한국교통연구원 제출자료 재구성)

□ 그런데 한국교통연구원은 이전에 동 연구과제와 유사한 주제로 2022년도에 '철도투자의 사회적 가치 추정과 활용방안', 2023년도에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국가철도정책 지원사업', 2024년도에 '초광역권 실현을 위한 광역급행철도 추진방안' 등의 연구과제를 수행한 바 있으므로 관련 성과가 연계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연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의 연구과제와 유사한 선행연구 사례>

연도	과제명	주요 연구내용
2022	철도투자의 사회적 가치 추정과 활용방안	· 철도투자의 사회적 가치 정의 · 해외 교통시설 투자평가체계 검토 · 생산성, 형평성, 유발수요 발생효과를 고려한 사회적 가치 추정방안 제시 ·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정책효과 추정 가이드라인 제시

2023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국가철도정책 지원사업	・지방 철도사업 추진 타당성 확보 방안 제시 ・객관적이고 계량화 가능한 정책적 분석 및 철도의 영향 분석 ・국내 철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 제시 ・철도사업의 정책효과 및 분석 방법 제시
2024	초광역권 실현을 위한 광역급행철도 추진방안	・우리나라 사회경제적 환경을 고려하여 초광역경제권 발전 효과를 정량적으로 수치화하고, 광역급행철도 사업으로 인하여 향상된 초광역경제권 발전 효과를 증명하여 이를 기초로 한 초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한 대도시권 광역급행철도의 전략적인 추진방안 제시

(자료: 한국교통연구원 제출자료 재구성)

□ 또한 한국교통연구원의 2025년도 특수사업인 ‘교통부문 3대혁신 전략 지원사업’은 현 정부의 교통부문 중장기 중점추진 정책으로서 교통분야 3대 혁신분야 중 하나인 GTX와 관련하여 연차별 수도권, 지방권 광역급행철도 접근성 조사 및 지역간 격차 분석 및 투자재원 마련을 위한 타당성 확보방안 및 법령개정안 마련 등의 연구를 계획하고 있는데 동 사업 역시 국가철도투자 지원 사업의 연구대상에 포함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중복 연구로 인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분야를 면밀히 설계할 필요가 있음.

<교통부문 3대혁신 전략 지원사업 연차별 주요내용>

연도	세 부 내 용
1차년도 (2025년)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접근성 조사 및 지역간 격차 변화 분석 · 1기 신도시 주민의 주거이동·일자리 입지분석 및 접근성 분석 · 도로 입체적 확장·지화화 유형별 계획수립 관련 평가지표 개발, 정책지원 · 철도지화화 사업지원을 위한 사례 분석 및 영향권 특성조사, DB구축 · 국내외 교통SOC 투자재원 현황 및 사례조사
2차년도 (2026년)	· 지방권 광역급행철도 접근성 조사 및 지역간 격차 변화 분석 · 2기 신도시 주민의 주거이동·일자리 입지분석 및 접근성 분석 · 도로 입체적 확장·지화화 유형별 교통혼잡 최소화 운영방안 마련 · 철도시설 지화화 통합역사 기준 마련 및 영향권 특성조사, DB구축 · 도로·철도시설 상부개발을 통한 민자수익성 확보 사례조사 및 타당성 확보방안
3차년도 (2027년)	· 지방권 광역급행철도 접근성 조사 및 지역간 격차 변화 분석 · 3기 신도시 주민의 주거이동·일자리 입지분석 및 접근성 분석 · 도로 입체적 확장 및 지화화 유형별 법제도 정비 및 정책지원 · 철도지화화통합개발 지역사회 영향 분석 및 영향권 특성조사, DB구축 · 3대 혁신전략 투자재원 마련 위한 타당성 확보방안 및 법령개정안 마련

(자료: 한국교통연구원 제출자료 재구성)

16.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178]: 지침에 부합하는 외부용역비 비목 편성 필요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의 올바른 인성 함양과 잠재력 계발, 청소년의 디지털·글로벌 역량 강화, 청소년 인권과 참여를 위한 사회 환경 개선, 소외계층 청소년 복지·지원 등의 정책 개발에 필요한 기초연구와 정책연구를 통하여 미래사회의 새로운 국가발전 동력 창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2025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3억 9,100만원(3.9%)이 증액된 103억 5,000만원이 편성됨.

<2025년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0,259	9,959	10,350	391	3.9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2025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기관 내부 연구진이 아닌 외부연구진이 수행하는 공동연구에 대한 위탁비용

178) 세부사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1550-301)

을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으로 편성하였음.

<2025년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편성내역>

(단위: 천원)

구분		개인 (외부연구진)	외부기관
기관 고유 사업	기본연구사업 8과제, 수시제외	29,000	226,150
	연구지원사업 6과제	-	12,000
일반 사업	청년의 성인기 이행 경로 연구Ⅰ	8,000	196,200
	이주배경 청년 사회통합방안 연구	8,000	34,500
	2025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4,000	653,500
	2025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7,000	428,400
	통합유지보수 사업	-	189,085
	정보자원 인프라 확대 및 정보보안 강화 사업	-	75,000
	아동·청소년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한국아동·청소년인권실태	10,000	117,697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청소년 보호정책 개선방안 연구Ⅱ	4,000	13,800
	청년 친화적인 지역인재양성 및 일자리 창출 방안Ⅱ	8,000	16,000
합계		78,000	1,962,332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2024년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운용지침」[179]에 따르면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은 기관에서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과제를 외부기관에 위탁한 경우 지급하는 용역비로서 기관 내규 및 「국가계약

179) "외부기관에 위탁 용역을 의뢰하는 경우 일반적인 원고 위탁 및 외부용역 등은 지양하도록 하고, 기관이 수행할 수 없는 대규모 설문조사, 행사 대행과 외부용역 사항이 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외부용역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4년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운용지침」 36p.

법」 등에 따라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서류 구비 후 집행하여야 함.

□ 그런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비목을 공동연구를 위탁하는 연구원 개인에게 지급하는 예산으로 편성한바, 이는 「국가계약법」 등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보임.

□ 국가계약의 계약상대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180] 및 동법 시행규칙[181]에 따라 소득세법 제168조.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사업자로서 개인은 해당되지 않음.

□ 따라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공동연구원의 보고서 집필 등 업무위탁에 대하여는 사업비 중 검토수당, 회의수당, 원고료, 강사료 등의 대가로 지급하도록 되어있는 전문가활용비 등의 예산 비목으로 변경하여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180)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1. 삭제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3. 보안측정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4.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181)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①영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이란 「소득세법」 제168조·「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를 말한다.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1. 세입: 과태료, 과징금, 가산금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한 임의 체납액 축소 필요

가. 세입내역 및 예산안 개요

□ ‘과태료’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을 위반한 사업자 및 조사방해, 거짓자료를 제출한 사업자 등에게 부과하는 금원이고, ‘과징금’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위법 행위에 대한 제재와 그로 인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취지에서 부과되는 금원으로, 과태료과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서 발부일로부터 60일 이내임.

○ ‘가산금’은 과태료 및 과징금 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하는 행정벌상의 제재적 성격을 지는 금전부담임.

○ 2025년 과태료 세입 예산안은 2024년도 편성예산인 27억 500만원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2025년도 과징금 세입 예산안은 2024년도 편성예산인 4,455억 5,700만원 대비 892억 5,400만원(19.9%) 증액한 5,348억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25년도 가산금 세입 예산안은 2024년도 편성예산인 4억 7,300만원 대비 2,300만원(4.8%) 증액한 4억 9,600만원 편성함.

<2025년도 과태료, 과징금, 가산금 세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과태료	2,165	2,705	2,705	-	-
과징금	552,104	445,557	534,811	89,254	19.9
가산금	326	473	496	23	4.8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예산안 공통요구자료 Ⅱ-1)

□ 과징금 예산안은 '최근 5개년도 수납액 중 최고/최저를 제외한 3개년도 평균 수납액'에서 '최근 5개년도 환급액 중 최고/최저 수납액을 제외한 3개년도 평균 환급액'을 제외하고 예산조정 증가분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과태료와 가산금 예산안은 최근 3개년도 평균 수납액에 예산조정 증가분을 고려하여 결정함.

□ 최근 4년간 결산 내역을 보면, 과태료의 미수납액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고, 2023년에 줄어들었던 과징금의 미수납액은 2024년에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2024년 8월 기준 수납률은 과태료, 과징금, 가산금 각각 17.3%, 15.4%, 0.5%에 불과함[182].

<최근 4년간 과태료, 과징금, 가산금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과태료	'21	2,877	2,877	5,150	3,474	120.8	67.5	1,676	-
	'22	1,887	1,887	3,733	1,976	104.7	52.9	1,757	-
	'23	2,665	2,665	4,031	2,165	81.2	53.7	1,866	-
	'24.8.	2,705	2,705	2,401	416	15.3	17.3	1,985	-

182) 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의 경우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로 인한 미수납금액이 총 4,347억원으로 전체 미수납액의 82.2%를 차지하여 수납률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구분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과징금	’21	394,884	394,884	1,313,976	785,931	199.0	59.8	527,683	361
	’22	387,907	387,907	1,203,120	669,885	172.7	55.7	533,030	204
	’23	417,067	417,067	837,557	552,104	132.4	65.9	285,151	302
	’24.8.	445,557	445,557	719,050	110,980	24.9	15.4	608,069	-
가산금	’21	4,015	4,015	10,194	193	4.9	1.9	10,001	-
	’22	391	391	10,645	653	167	6.1	9,992	-
	’23	415	415	10,245	326	78.5	3.2	9,919	-
	’24.8.	473	473	9,963	53	11.2	0.5	9,909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과태료, 과징금의 미수납액의 추세와 별개로 임의체납액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임의체납액은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납기 미도래나 집행정지 인용 등으로 징수를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징수유예와 달리 정당한 미수납 사유 없이 징수되지 않고 있는 것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징수 활동에 따라 감소시킬 수 있는 부분임.

<과태료 미수납 현황>

(단위: 백만원, 건)

구분		미수납액/미수납건	주요 미수납 사유		
			납기미도래	징수유예	임의체납
2021	금액	1,676	231	-	1,445
	건수	532	34	-	497
2022	금액	1,757	121	-	1,635
	건수	579	31	-	548
2023	금액	1,865	116	-	1,749
	건수	596	6	-	590
2024. 8.	금액	1,985	18	-	1,967
	건수	716	5	-	711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미수납 현황>

(단위: 백만원, 건)

구분		미수납액/미수납 건	주요 미수납 사유		
			납기미도래	징수유예	임의체납
2021	금액	527,682	475,644	8,370	43,668
	건수	487	290	14	183
2022	금액	533,030	431,013	37,263	64,754
	건수	555	271	65	219
2023	금액	285,151	177,679	29,465	78,006
	건수	532	269	31	232
2024. 8.	금액	608,070	341,427	185,128	81,515
	건수	748	407	100	241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가산금 미수납 현황>

(단위: 백만원, 건)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8월
수납액	193	653	326	53
미수납액*	10,001	9,992	9,919	9,909

* 미수납액은 누적 금액이며, 과징금·과태료 체납액(현재 미납) 관련 금액이 대부분임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는 임의체납의 주된 사유로 2024년 10월 말 기준 과징금 체납자 122개사 중 104개사(85.2%)는 폐업, 해산, 청산 중이며, 사업을 영위하고 있더라도 금리 인상, 원자재가 상승 및 경기 악화에 따른 경영난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다만, 은닉재산을 통한 납부의무의 회피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유관기관 협조를 통한 체납자 은닉재산 파악과 징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전자압류시스템[183]을 통해 예

183) 금융기관 계좌 압류 및 추심을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함

금을 추심하는 등 징수율 제고를 위해 다방면으로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과징금 채권은 국세 또는 지방세와 달리 우선징수권[184]이 인정되지 않는 일반채권인 점을 감안하면 체납액 축소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음. 그러나 장기 체납의 비중도 적지 않은 상황[185]이므로,

---

184)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①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징수를 할 때 그 체납처분 또는 강제징수 금액 중에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또는 강제징수비
2.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든 비용
3. 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 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재산이 국세의 강제징수 또는 경매 절차 등을 통하여 매각(제3호의2에 해당하는 재산의 매각은 제외한다)되어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권리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이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사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한다.
   가.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
   다. 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代物辨濟)의 예약에 따라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가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마친 가등기 담보권

3의2.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전세권등”이라 한다)가 설정된 재산이 양도, 상속 또는 증여된 후 해당 재산이 국세의 강제징수 또는 경매 절차 등을 통하여 매각되어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재산에 설정된 전세권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다만, 해당 재산의 직전 보유자가 전세권등의 설정 당시 체납하고 있었던 국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는 국세(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전세권등의 설정일보다 빠른 국세로 한정한다)를 우선하여 징수한다.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 또는 건물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 금액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따라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채권
5.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推尋)할 때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8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국세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지방세기본법」

제71조(지방세의 우선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우선 징수하지 아니한다.

185) 2024년 8월 기준으로 체납기간이 5년을 경과한 과태료의 체납액은 전체의 45% 이상(과징금의 경우는 30% 이상)임.

공정거래위원회는 징수실적 개선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임의체납액의 규모를 줄일 필요가 있음.

<2024년 8월 기준 과징금 및 과태료 체납액의 체납기간별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체납기간							계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과징금	15,680	15,908	14,105	6,326	2,313	20,247	6,936	81,515
과태료	262	141	120	224	332	830	58	1,967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과태료 징수활동 및 징수실적>

(단위: 백만원, 건)

연도	징수활동(건)					징수실적	
	납부 독촉 등	재산 조회	징수 조사	압류	계	건수	수납액
2021	122	21	-	20	163	21	140
2022	134	320	-	27	481	33	55
2023	80	2,010	73	75	2,238	49	61
2024. 8.	144	1,699	15	17	1,731	23	28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징수활동 및 징수실적>

(단위: 백만원, 건)

연도	징수활동(건)					징수실적	
	납부 독촉 등	재산 조회	징수 조사	압류	계	건수	수납액
2021	284	308	65	70	727	129	9,556
2022	387	352	30	55	824	160	27,631
2023	129	939	20	41	1,129	169	8,742
2024. 8.	25	496	10	26	557	143	6,441

* 가산금은 과징금·과태료 체납액 납부가 완료되어야 확정되는 금액으로, 이에 대한 징수활동은 과징금·과태료 체납액에 대한 징수활동과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음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 대 · 중소기업간 거래행태개선 및 동반성장시책추진(1331-400)

: 법령에 부합하는 예산 편성 필요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대·중소기업간 거래행태개선 및 동반성장시책추진'은 하도급 분야의 거래행태를 개선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기반을 마련하려는 사업으로, 2025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6억 800만원(△26.1%) 감소한 17억 1,800만원이 편성됨.

<2025년도 '대·중소기업간 거래행태개선 및 동반성장시책추진'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대·중소기업간 거래행태개선 및 동반성장시책추진	1,461	2,326	1,718	△608	△26.1
· 하도급분야 거래행태 개선	1,299	1,652	1,551	△101	△6.1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시책 추진	62	574	62	△512	△89.2
· 공시위탁 운영	100	100	105	5	5.0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예산안 공통요구자료 Ⅱ-1)

나. 검토의견

□ ‘하도급분야 거래행태 개선’ 내역사업 예산안은 전년 대비 1억 100만원(6.1%) 감소한 15억 5,1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중 ‘하도급대금 연동제 지원’을 위한 예산은 전년 대비 1,600만원 증액된 3억 5,000만원 편성됨.

□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한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186] 개정에 따라 2023년 10월 4일부터 시행 중에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도 예산안에 하도급대금 연동제 지원을 위하여 가이드북 발간, 발표회 및 간담회 실시, 광고·홍보 등에 1억 2,600만원, 연동지원본부[187] 운영 지원에 2억 2,400만원 등 총

---

18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⑯ 이 법에서 “주요 원재료”란 하도급거래에서 목적물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한다.
⑰ 이 법에서 “하도급대금 연동”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187) 현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2023년 10월 연동지원본부로 지정되어 있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7(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의 확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 본부(이하 “연동지원본부”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7(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② 연동지원본부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지

3억 5,000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증가한 1,600만원은 연동제 광고를 위한 것임.

<2025년 '하도급대금 연동제 지원' 예산 편성 세부내역>

(단위: 천원)

예산과목	금액	상세 내역
· 일반수용비	27,820	- 우수사례발표집 2,720 - 연동 가이드북 4,600 - 발표회 및 간담회 참석수당 4,500 - 연동제 광고 16,000
· 임차료	22,500	- 간담회 회의실 임차 22,500
· 일반용역비	73,000	- 연동제 홍보 73,000
· 국내여비	2,523	- 기업간담회 여비 2,523
· 법정민간대행사업비	224,000	- 연동지원본부 운영 224,000
합 계	349,843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에 홍보영상물 등의 제작부터 광고까지 모든 과정을 외주용역을 주는 방식으로 유튜브, 라디오, 택시·버스 광고를 진행하였고, 2025년에는 유튜브, 라디오, 지하철 옥외광고는 2024년과 동일하게 외주용역 방식으로 진행하되, 택시·버스 광고는 자체 제작한 영상을 광고 게재하는 것에만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음.

정 기준을 갖춰야 한다.
1. 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6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갖출 것.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일부에 대하여 지정받는 경우에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전담인력을 갖춰야 한다.
3. 사업을 수행하는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공간을 갖출 것.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일부에 대하여 지정받는 경우에는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의 사무공간을 갖춰야 한다.

□ 그런데, 「하도급법」 제3조의7[188] 및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의7제5항에 따르면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홍보 사업은 하도급연동지원본부(이하 “연동지원본부”)의 사업임.

<연동지원본부 현황>

1. 개요

□ 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23.10.4.)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공정위로부터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로 지정('23. 10. 20.)

- 조정원은 연동지원본부로서 상담서비스 제공, 연동제 설명 및 교육 등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한 활동 전개

2. 구성현황

□ 하도급대금연동지원팀 설립을 통해 연동지원본부 업무를 담당(관리자 1인, 실무인력 5인)

3. 주요 업무내용

□ 교육

- (설명회) 주요 원사업자·개별 원사업자 및 협력사·사업자단체 회원사 대상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 (간담회) 공정위-조정원 합동 건설업계 연동제 간담회 개최

---

18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7(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의 확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 본부(이하 “연동지원본부”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연동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원재료 가격 및 주요 물가지수 정보 제공
2. 하도급대금 연동의 도입 및 조정 실적 확인
3.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교육 및 컨설팅
4. 그 밖에 하도급대금 연동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7(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⑤ 법 제3조의7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우수 사례의 발굴 및 홍보
2.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통계 작성 및 관리
3.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운영 성과분석 및 만족도 조사
4.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기업의 원가분석 지원
5.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개발 지원
6. 그 밖에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상담) 연동제 개념, 적용 대상, 연동제 해당 여부, 연동계약 체결방법 등 연동제 전반에 대한 유·무선 상담서비스 상시 제공

□ 하도급대금 연동제 원가확인·컨설팅 지원사업

- 외부 전문 가격조사기관과 협약체결 후 컨설팅 지원사업 진행

□ 연동제 전용 홈페이지 구축

- '하도급대금 연동제'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연동제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확인 가능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동 법령에 따르면, 하도급연동지원본부가 원재료 가격 및 주요 물가지수 정보 제공, 하도급대금 연동의 도입 및 조정 실적 확인,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교육 및 컨설팅,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우수 사례의 발굴 및 홍보 등의 사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홍보 사업은 연동지원본부의 운영비 산출 내역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수행하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음.

<2025년 연동지원본부 운영비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세부내용	금 액
연동제 관련 상담 및 교육 전문인력(변호사) 상용임금	50
연동제 상담 사례집 발간	5
법무법인 연계 연동제 자문 의견서 의뢰	10
연동제 설명회 및 간담회 등 개최 업무추진비	4
연동제 관련 업무(설명회, 교육, 간담회 등) 출장비용	7
연동제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작	10
연동제 원가 정보 제공 홈페이지 구축	30
외부 전문 가격조사기관 연계 기준지표 컨설팅 지원	28
연동제 도입 및 운영실태 연구보고서 발간	12

세부내용	금 액
연동제 관련 교육 및 전문상담실 임차료	30
연동제 관련 교육 및 전문상담실 관리용역비	18
합 계	204
부가가치세(10%)	20
총 계	224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 초기인 만큼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제도의 조기안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직접 홍보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 하지만 법령에서 연동지원본부의 사업으로 명시하고 있는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수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법령의 내용과 일치하게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고, 해당 예산은 법령에 따라 연동지원본부의 운영비로 조정할 필요가 있겠음.

3.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1331-401)

: 가맹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사업의 철저한 사전준비 필요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은 가맹·유통·대리점분야의 거래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5억 1,400만원(52.1%) 증가한 15억 100만원이 편성됨.

<2025년도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	974	987	1,501	514	52.1
·가맹·유통·대리점 분야 거래행태개선	673	678	1,192	514	75.8
·대리점분야 환경 개선	302	305	305	-	-
·해외상생협력사례 조사	-	4	4	-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예산안 공통요구자료 Ⅱ-1)

나. 검토의견

□ ‘가맹·유통·대리점분야 거래행태개선’ 내역사업 예산안은 전년 대비 5억 1,400만원 증액된 11억 9,2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중 ‘가맹정보시스템 기능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4억 5,9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가맹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사업의 편성 내역>

□ 가맹정보제공시스템 기능개선: 3억 8,800만원(일반연구비)
□ 가맹정보제공시스템 웹 기안기: 7,100만원(자산취득비)

(자료: 공정거래위원회(2025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공통요구자료 Ⅱ-1)

□ 가맹정보시스템은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가맹점사업자)간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8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의 개정으로 정보공개서 등록제도가 시행되면서 구축된 시스템임.

○ 이후 정보공개서의 등록·심사업무는 2012년, 2018년 「가맹사업법」의 개정으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2024년 10월 현재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4개 시·도(서울, 경기, 인천, 부산)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189].

18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에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만 사용해온 가맹정보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시스템과 연계되지 않고 단순 반복적인 업무로 인하여 담당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됨[190].

<가맹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연혁>

연도	고도화 사업 내용	소요예산(천원)
2008	□ 시스템 최초 구축	51,000
2016	□ 가맹정보제공시스템 재구축 및 시스템 안정화 ○ 정보공개서 온라인 등록 및 심사 시스템 구축 ○ 등록된 정보공개서 이력 및 현황 조회 ○ 가맹희망+(플러스) 플랫폼 개발 - 정보공개서 업종별·가맹본부별·브랜드별 비교 정보 - 가맹사업 수준평가정보*, 상권분석시스템정보* 제공 ○ 장비 이중화 (서버 추가 설치)	500,000
2019	□ 가맹정보제공시스템 일부 기능개선 ○ 정보공개서 등록 심사 업무를 지자체에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편	50,350
2020	□ 가맹정보제공시스템 기능개선 ○ 온라인 서면실태조사 기능 도입 ○ 시스템 보안수준 강화	450,000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39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②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나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의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6조의2 및 제6조의3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 등록 거부 및 공개 등에 관한 업무

190) 예를 들면 변경등록 신청 시 정보공개서 주요 내용 입력 단계에서 이미 심사가 완료된 정보도 수기로 재입력하고 있고(최근 3년간 가맹점 수 등을 입력할 때 기 심사된 데이터도 수기로 재입력), 현 시스템에서는 통계 도출 기능이 없어서 심사 담당자가 직접 통계를 수작업으로 추출·관리하고 있음.

□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정보제공시스템과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시스템의 기능을 연결·연계[191]하여 담당자의 업무 가중을 해소하고, 국민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가맹정보제공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설명하고 있음.

<가맹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사업 주요 기능>

(1) 정보공개서 등록신청 단계
- 데이터 불러오기 기능 구축: 정보공개서 주요 내용 입력 시 전년도에 심사가 완료된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도록 기능 구현

(2) 정보공개서 등록 심사 단계
- 연계기안 시스템 구축: 등록 실무 처리 시스템과 지자체 전자결재 시스템 연계
- 웹 기안기 설치: 시스템 업무를 Non-ActiveX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 전자 통지 시스템 구축: 등록 관련 통지문을 시스템 상에서 전자문서로 발송할 수 있도록 기능 구현

(3) 정보공개서 등록 관리 단계
- 정보공개서 관련 과태료 관리 기능 구축
- 정보공개서 통계 관리 기능 구축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 다만, 「가맹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정보공개서와 관련하여 가맹본부에 공개하는 내용과 방법을 서면으로 공개일 10일 전까지 통지하도록 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거나 개인정보 또는 영업비밀이 있을 경우 이를 정정 또는 비공개를 서면으로 요구할

191) 공정거래위원회는 등록 실무 처리가 완료되면 온나라 연계기안을 자동 생성하고, 결재 결과가 실무 처리 시스템에 반영되는 연계기안 시스템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음(현재는 등록 실무 처리 시스템과 지자체 전자결재 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아, 정보공개서 보완요청, 심사불필요, 등록취소, 등록거부, 등록완료, 정보공개서 공개 통지 시 실무 처리와 결재가 별도로 이루어짐)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데[192)193)], 관련 통지문을 전자문서로 발송할 경우 상대방에게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로 등록 알림을 보내는 등 통지의 전산화 과정에서 확인 누락이 발생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194)].

또한, 법령에서 서면으로 알리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적용상의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자문서도 서면에 포함됨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임[195)].

---

19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③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변경등록하거나 신고한 정보공개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은 제외한다.

④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공개하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공개하는 내용과 방법을 미리 통지하여야 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4(정보공개서의 공개 등) ②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정보공개서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공개일 10일 전까지 가맹본부에 이를 미리 알려야 한다.

1. 공개 목적과 공개 기간
2. 공개 내용
3. 공개 방법
4. 가맹본부의 정정 또는 비공개 요구 방법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가맹본부는 공개하는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거나 법 제6조의2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서면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그 내용의 정정 또는 비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가맹본부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정보공개서의 공개 내용을 변경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93)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정보공개서 등록 관련 통지문을 심사 담당자가 우편으로 직접 발송하고 있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우편이 도달하는 기간동안 심사가 추가로 지연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194)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르면, 수신자가 전자문서를 수신할 정보처리시스템을 지정한 경우 지정된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때 수신한 것으로 추정함

제6조(송신·수신의 시기 및 장소) ② 전자문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수신된 것으로 추정한다.

1. 수신자가 전자문서를 수신할 정보처리시스템을 지정한 경우: 지정된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때. 다만, 전자문서가 지정된 정보처리시스템이 아닌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경우에는 수신자가 이를 검색 또는 출력한 때를 말한다.

195) 법령상 서면에 전자문서도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하는 입법례 다수 존재함

「개인정보 보호법」

□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정보시스템의 개선하는 기능들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등 관련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의 동의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

4. 선진소비자정책 추진(1431-600)

: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 플랫폼 안정적 운영을 위한 법령상 근거 마련 필요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선진소비자정책 추진” 사업은 사업은 소비자정책의 수립 및 집행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날 행사 개최, 소비자정책 연구용역, 소비자법 집행감시요원 운영, SNS 부당광고 상시모니터링 등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 예산안은 2024년 편성예산 13억 8,900만원 대비 4억 300만원(29.0%) 증액된 17억 9,2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예산안에는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정보 제공 플랫폼 구축 사업 예산 6억 6,000만원이 신규 반영되었으며, 소비자보호제도 운영 예산이 소비자의 날 30주년 행사 등에 따라 2024년도보다 4,000만원 증액된 8,300만원이 반영되었음.

<2025년도 선진소비자정책 추진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소비자권익증진 지원	1,159	1,389	1,792	403	29.0
· 소비자의날 행사	45	43	83	40	93.0
· 소비자정책 종합세미나	10	11	11	0	0.0
· 소비자정책사업 운영지원	39	40	41	1	2.5
· 특수ㆍ전자거래 인식개선	40	40	40	0	0.0
· 소비자중심경영 활성화	151	150	150	0	0.0
· 소비자정책 연구용역	40	160	40	△120	△75.0
· 표준약관 교육	11	11	11	0	0.0
·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	23	29	29	0	0.0
· 소비자정책 추진 및 추진실적 평가	180	181	181	0	0.0
· 전자상거래분야 거래환경개선	45	50	50	0	0.0
·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90	100	-	-	순감
· 중점대응과제 직권조사	60	61	61	0	0.0
· 광고의 부당성 판단을 위한 자문 및 의견수렴	25	25	25	0	0.0
· 소비자 법집행 감시요원 운영	20	40	40	0	0.0
· SNS 부당광고 상시모니터링	187	189	189	0	0.0
· 소비자 위해제품 감시 및 시정	51	56	56	0	0.0
· 소비자정책 국제협력	58	154	76	△78	△50.6
· 소비자관련 법률 교육콘텐츠 제작	75	40	40	0	0.0
· 후원방문판매업자 주요정보 공개 데이터분석 고도화	9	9	9	0	0.0
·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정보 제공 플랫폼 구축	-	-	660	660	순증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예산안 공통요구자료 Ⅱ-1)

나. 검토의견

□ 내역사업인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정보 제공 플랫폼 구축’ 사업은 상조·적립식 여행 등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에서 소비자 대상 정보제공을 강화하기 위한 통합 플랫폼 구축하여 소비자가 가입정보, 납입금액 등 계약 정보를 원스톱으로 조회할 수 있게 하고, 시장 현황·사업자 정보 등을 통합 공시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 예산안에 6억 6,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 선불식 할부거래는 장례, 결혼 및 적립식 여행 등을 위하여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서비스 및 재화 등을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받기로 하는 계약으로서 가입자 수 및 가입자가 미리 납부한 금액인 선수금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선불식 할부거래업 현황>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등록업체 수	92개	84개	75개	73개	79개
가입자 수	560만명	636만명	684만명	729만명	833만명
선수금	52,664억원	58,838억원	66,649억원	74,761억원	83,890억원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그런데 선불식 할부거래는 소비자의 선수금 납입과 서비스 제공 사이에 시차가 존재하여 소비자가 계약 내용 등을 기억하지 못해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최근에는 업체 폐업 등으로 소비자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연도별 폐업 상조업체 수>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6월	합계
폐업업체 수	16개사	41개사	8개사	0개사	3개사	3개사	1개사	72개사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 이에 동 사업은 상조·적립식 여행 등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등록 사업자에 대한 종합적·객관적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계약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일반연구비 6억 6,000만원이 편성됨.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도에 일반연구비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여 동 사업의 ISP를 완료하였음.

□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의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소비자의 가입상품 계약정보 조회, 상속인의 사망자 가입여부 조회 등을 주요 기능으로 제시하고 있음.

<해당 플랫폼 사용자별 주요 기능 (안)>

소비자	사업자	정부(공정위·지자체)
○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여부 확인 ○ 가입상품 계약정보 조회 ○ 상속인의 사망자 가입여부 조회 ○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 신청 ○ 시장상황·사업자 관련 통계 조회	○ 경영·재무정보 제출·관리 ○ 외부회계감사보고서 제출·관리 ○ 선수금 등 정보 제출·관리	○ 시장 현황·통계 관리 ○ 법 위반내역 관리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 그러나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정보 플랫폼의 주요 기능과 관련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의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이 선행돼야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제21대 국회에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강민국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3872호)이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으며,

현행법은 제18조제6항에 따른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등록사항, 자본금,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 증명 등의 정보,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선불식할부거래업자의 외부 회계감사보고서 및 제36조에 따른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결과 등의 정보만을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 사업의 핵심은 선불식 할부거래에서 소비자의 선택 및 피해예방과 구제를 위한 정보의 제공으로서 소비자가 납부한 선수금 또는 예치금의 정보와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개별 계약 관련

정보 등이 필수적인 정보이므로 법률에 정보 수집근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함.

○ 현재 소비자가 본인이 가입한 상조상품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선불식 할부거래 공제조합에서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www.mysangjo.or.kr)를 운영하고 있으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계약 관련 정보는 공제조합을 통한 계약만을 대상으로 하여 전체의 약 50%에 불과하며, 그 외의 선불식 할부거래 계약 관련 정보는 사업자, 은행 등을 통해 산발적으로 제공되고 있음.

□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의 통합제공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시스템 구축 완료 전까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 법령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5. 공정거래지원(7031-300)

: 조사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체계화 필요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공정거래지원’은 공정거래정책 알리기, 변화관리 및 능력개발, 조사공무원 역량강화, 모의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 청년인턴 운영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2억 3,200만원(16.7%) 감소한 11억 5,700만원이 편성됨.

<2024년도 ‘공정거래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공정거래지원	811	1,389	1,157	△232	△16.7%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
○ 기능별 분류(합계)	811	1,389	1,157
· 공정거래정책 알리기	537	543	548
· 변화관리 및 능력개발	155	159	158
· 조사공무원 역량강화	-	356	116
· 모의공정위 경연대회	69	71	71
· 청년인턴 운영	-	260	264
· 회의록 작성용역	50	-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예산안 공통요구자료 Ⅱ-1)

나. 검토의견

□ ‘조사공무원 역량강화’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및 사건조사 품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경력별·부서별 맞춤형 조사 교육을 개발·운영하기 위하여 2024년 신설된 사업임. 2024년에는 당해 사업에 총 3억 5,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2025년에는 1억 1,580만원이 편성되어 2억 4,020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음. 감액된 예산은 주로 단년도 사업에 해당하는 ‘조사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컨텐츠 제작’에 관한 일반용역비(2억 4,000만원)임.

<조사공무원 역량강화 예산 세부내용>

(단위: 만원)

구분	2024년	2025년
예산	35,600	11,580
세부내용	○ 일반수용비(210-01) : 10,500 가. 전문교육 운영 - 10회×1,050=10,500	○ 일반수용비(210-01) : 10,500 가. 전문교육 운영 - 1,050×10회
	○ 일반용역비(210-14) : 24,000 가. 조사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컨텐츠 제작 - 3,000×8개=24,000	
	○ 국내여비(220-01) : 1,100 가. 교육출장여비 - 25,000원×40명×7회=700 나. 기타 업무협의 출장 - 72,000원×7명×8회=400	○ 국내여비(220-01) : 1,080 가. 외부위탁 전문교육 출장여비 - 90,000원×12명×10회

□ ‘조사공무원 역량강화’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시정조치 등 처

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을 내리는데 필요한 실제적인 역량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진술면담에 관한 외부전문가를 섭외하여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해당 교육을 입문·일반·고급의 세 단계로 나누어 특정시기(4·5월)에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임.[196]

□ 다만, 고급과정의 교육은 2회의 교육만이 예정되어 중기 이상의 경력을 가진 조사공무원에 대한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교육일정을 특정시기에 집중하기 보다는 분기·반기 단위로 교육을 제공하여 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교육내용 및 일정(안)>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입문				3 회								
일반				2 회	3 회							
고급					2 회							

❶ 입문과정 – 조사대상자 및 팀원간 소통 능력, 기본적인 조사기법

1 일 차	진술조사의 이해	의사소통의 이해	피조사자 파악하기
2 일 차	의사소통 기법	조사준비	조사프로세스와 협동
3 일 차	질문유형과 기법	조사시나리오 실습	
4 일 차	사례분석	화이트칼라 범죄 수사 사례	

196) 2024년도에는 10월~11월 중 교육을 집중하여 실시하고 있음.

❷ 일반과정 – 조사기법 적용·활용, 진술 진위 파악 역량 교육

1 일 차	인지면담 프로토콜	사례분석 실습	성격 프로파일링
2 일 차	면담기법	면담기법 실습	
3 일 차	기억과 진술	진위판단	진술조사
4 일 차	사례학습	경찰수사 사례 및 노하우	

❸ 고급과정 – 조사 통솔·전략제시, 조사대상 이해 및 협상·갈등 조정 역량 교육

1 일 차	인지면담 프로토콜	진술조사 체계 및 절차	
2 일 차	협상기법	협상기법 실습	
3 일 차	성격프로파일링	소통과 갈등관리	사례학습
4 일 차	사례분석	경찰수사 사례 및 노하우	

□ 특히, 영국의 글로벌 경쟁 리뷰(Global Competition Review, GCR)는 2024년 국제 경쟁당국 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5점 만점에 4.5점의 높은 점수를 부여하면서도 카르텔 사건에 대한 조사기간이 22.3개월, 독과점 사건에 대한 조사기간이 56개월에 이르러 이에 대한 불만이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197]하고 있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기간 단축을 위한 효율적인 조사기법 등에 대하여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공무원의 전문성을 향상하여 효율적인 사건 조사·처리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조사공무원 자격제 등을 검토할 필요도 있는 것으로 생각됨. 국세청은 「국세청 인사관리규정」[198]을 통해 국세공무원의 필수자격으로 회계실무(2급)과 일반조사

197) https://globalcompetitionreview.com/survey/rating-enforcement/2024/article/koreas-fair-trade-commission

요원 자격을 지정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회계실무능력 검정시험 및 일반조사요원 자격시험 과목>

구분	회계실무능력 검정시험	일반조사요원 자격시험
과목	재무회계	법령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법인세법 ·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
	원가관리회계	실무 (종합소득세 경정·신고실무, 조정계산서, 법인세결의서, 조사사무처리규정)

198)「국세청 인사관리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세공무원"이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모든 공무원을 말한다.
제49조(국세공무원의 필수자격) ① 국세공무원의 자질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회계실무 2급과 일반조사요원을 국세공무원의 필수자격으로 지정하며, 이는 세무직 공무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의 필수자격은 국세공무원 임용일 또는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전입일로부터 회계실무 2급은 3년, 일반조사요원은 6년(출산휴가와 연계한 3월 이상의 육아휴직, 6월 이상의 휴직 또는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외 파견 근무기간은 제외) 이내에 취득하여야 한다.

6. 공정거래지원(7031-300)

: 모의공정위 경연대회 홍보 강화 및 참여 확대 방안 강구 필요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공정거래지원’은 혁신적 조직문화 활성화 및 직원 역량 제고, 공정거래정책 홍보, 모의공정위 경연대회 개최, 청년인턴 운영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억 3,200만원(16.7%) 감소한 11억 5,700만원이 편성됨.

<2025년도 ‘공정거래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공정거래지원	811	1,389	1,157	△232	△16.7
·공정거래정책 알리기	537	543	548	5	0.9
·변화관리 및 능력개발	155	159	158	△1	△0.6
·조사공무원 역량강화	-	356	116	△240	△67.4
·모의공정위 경연대회	69	71	71	-	-
·청년인턴 운영	-	260	264	4	1.5
·회의록 작성	50	-	-	-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예산안 공통요구자료 Ⅱ-1)

나. 검토의견

□ ‘모의공정위경연대회’는 대학(원)생들의 경연대회를 통해 공정거래법 및 제도에 관한 이론과 실제 경제현상을 접목하여 시장경제원리와 공정거래에 대한 이해를 돕고, 공정거래법 및 제도에 대한 연구 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시장경제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려는 사업임.

○ 모의공정위경연대회는 2020년을 제외(코로나19로 미개최)하고 2002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매년 개최되었는데,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7,100만원이 편성되었음.

<최근 10년간 사업 예산 및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예산	75	75	35	35	34	75	72	73	71	71
집행	71	74	34	35	34	-	71	73	69	69

*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미개최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동 사업의 세부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올해 편성되었던 입상팀 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행사 진행 및 운영을 위한 관련 비용을 올해 대비 2배 이상 편성(2,000만원 → 5,500만원)하였음.

<2025년 모의공정위 경연대회 예산 산출내역>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
□ 일반용역비(210-14) : 71,000천원 ○ 심사위원 사례금: 4,000천원 ○ 입상팀 상금: 35,000천원(입상순위별로 차등지급) ○ 인건비, 자료 유인비 및 행사용품 구입 등: **8,000천원** ○ 행사장·숙소 및 장비 임차료: **8,000천원** ○ 참가자 숙소, 중식 등: **4,000천원** ○ 대행료: 6,000천원 ○ 부가세 등: 6,000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71,000천원 ○ 심사위원 사례금: 4,000천원 ○ 인건비, 자료 유인비 및 행사용품 구입 등: **17,000천원** ○ 행사장·숙소 및 장비 임차료: **18,000천원** ○ 참가자 숙소, 중식 등: **20,000천원** ○ 대행료: 6,000천원 ○ 부가세 등: 6,000천원

(자료: 공정거래위원회(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공통요구자료 Ⅱ-1)

□ 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모의 공정위 지원 팀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하루 개최에 따른 시간 제약으로 본선 참가 팀 수의 제한이 있어 2025년도 모의공정위 경연대회는 입상팀 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해당 예산을 활용하여 대회를 이틀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음.

<2024년 모의공정위 경연대회 행사 개요>

□ (개요) 모의공정위는 대학(원)생들이 가상으로 공정거래법 등의 위반 사건을 구성하고, 실제 공정위 심의절차에 따라 위법성 여부를 다투어 보는 경연대회로서, 경연은 실제 공정위 심의와 유사하게 법위반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 행정제재를 요구하는 심사관측과 그 혐의를 부인하는 피심인측이 공방을 펼치는 방식으로 진행

□ (대회 개최) 2024. 8. 23.(금), 양재 AT 센터 그랜드홀에서 개최

□ (참가팀) 역대 최다인 31개팀이 참여하였으며, 특히 지방 소재 대학팀이 14팀으로 그동안 서울 중심에서 전국으로 확대

□ (수상 현황) 1차 심사를 통과한 13개 팀으로 경연대회를 진행하였으며, 대상은 한동대학교 팀이, 우수상은 서울대학교 및 경희대학교 팀이 수상하였음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최근 10년간의 지원 및 본선 참여 현황을 살펴보면, 코로나 이후 지원팀의 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므로, 행사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은 타당한 측면이 있음.

<최근 10년간 모의공정위 경연대회 참여 현황>

(단위: 팀)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지원팀 수	9	10	8	7	7		15	10	17	31
본선참가팀 수	9	10	8	7	7	-	10	9	13	13
입상팀 수	8	6	6	7	7		10	9	13	13

*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미개최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하지만 내년에는 입상팀에게 상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올해보다 참여 유인이 적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보다 면밀한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특히,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동 내역사업의 예산을 일반용역비(210-14)로 일괄 편성하여 용역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고 있는데,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가 대회 참가를 위한 접수보다 먼저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지원팀의 수가 예상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가 발생할 것으로 보임.

<모의공정위 경연대회 관련 주요 일정>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업체 입찰공고*	3. 30.	3. 18	3. 10.	2. 7.
참가신청서 접수	6. 25.	5. 31.	5. 26.	5. 23.
1차 경연대회 자료 제출	7. 23.	7. 8.	7. 7.	7. 19.
2차 본선대회 참가팀 발표	7. 28.	7. 15.	7. 12.	7. 26.
본선대회 참가팀 자료 제출	8. 20.	8. 17.	7. 28.	8. 6.
경연대회 개최	8. 27.	8. 27.	8. 18.	8. 23.

* 최초 공고일 기준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모의공정위 경연대회의 행사 규모 확대에 따라 더 많은 팀이 지원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7. 정보화 기반확충(정보화)(7032-501)

: 온라인심의정보시스템 조기구축 필요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정보화 기반확충’은 공정거래 사건 관련 정보의 디지털화 및 정보시스템의 기능개선·운영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2억 1,300만원(6.1%) 감소한 32억 5,900만원이 편성됨.

<2025년도 ‘정보화 기반확충’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정보화 기반확충	2,658	3,472	3,259	△213	△6.1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
○ 기능별 분류(합계)	2,658	3,472	3,259
· 온라인심의정보시스템 구축 ISP	-	-	150
·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768	1,033	675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1,700	2,249	2,249
·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두낫콜) 운영	190	190	185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예산안 공통요구자료 Ⅱ-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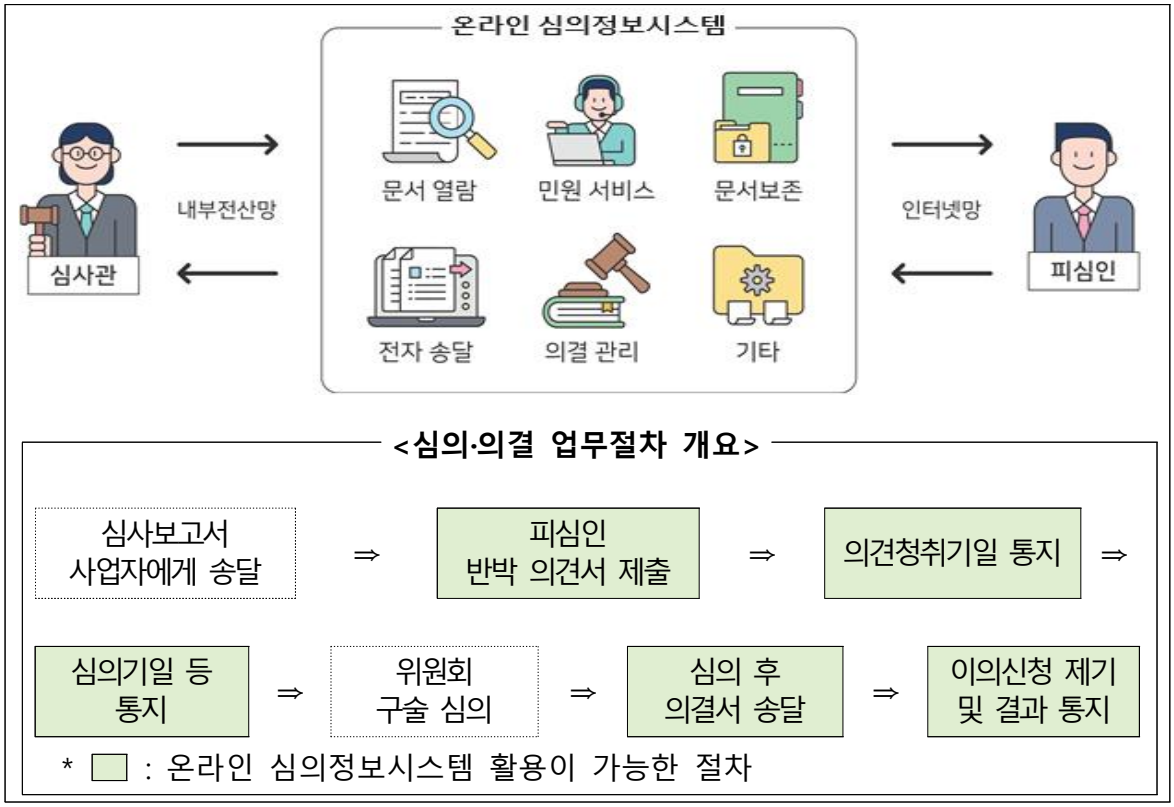
나. 검토의견

□ 국회는 2024년 1월 25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문서를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제출·송달할 수 있도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8조의2[199] 등을 신설하고, 해당 조항 시행일을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2027년 2월 7일)로 지정하였음.

□ 정부는 위 법 개정사항 시행에 필요한 '온라인 심의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예산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음.

<온라인 심의정보시스템 기본 개요도>

19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8조의2(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문서의 제출 및 송달) ① 당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당사자등"이라 한다)는 이 법에 따른 심의에 필요한 문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전자문서화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조직(이 법에 따른 심의에 필요한 전자문서를 작성·제출·송달할 수 있도록 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요소 등을 결합하여 구축한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전자적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는 그 문서를 제출한 당사자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정보처리조직에서 제공하는 접수번호를 확인하였을 때 전자정보처리조직에 기록된 내용으로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사자등에게 전자정보처리조직과 그와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결서 및 재결서와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심의에 필요한 문서를 송달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등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의 방법으로 문서를 송달하는 경우 해당 문서를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 등재한 후 그 등재 사실을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방법에 따른 문서의 송달은 당사자등이 제4항에 따라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하였을 때 전자정보처리조직에 기록된 내용으로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4항에 따라 등재 사실이 통지된 날부터 2주 이내(의결서 및 재결서 외의 서류는 7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등재 사실이 통지된 날부터 2주가 지난 날(의결서 및 재결서 외의 서류는 7일이 지난 날)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⑥ 전자정보처리조직의 장애로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자가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은 제5항 단서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의 계산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심의정보시스템 구축 ISP 수립을 위해 작성한 사업계획에서도 드러나듯이 ISP를 거쳐 심의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시스템 구축까지의 예상 소요시간이 최소 2년에 해당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심의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 지연 및 본사업 지연이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 특히, 공공정보화 사업의 유찰율은 2019년 31.4%에서 2021년 47.7%로 상승[200]하는 등 정보화사업은 사업지연의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데이터포털 구

200) 공공소프트웨어사업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자료집),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2023.12.14.

축[201] 사업의 지연에 따라 2023년도 예산을 감액(3,200만원) 한 바 있음.

□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사건조사(사무처)와 심의·의결(위원회)이 서로 구분되는 행정과정이기 때문에 '온라인 사건처리 시스템'과 '온라인 심의정보 시스템'을 별도의 시스템으로 운영할 계획이나, 피심인(처분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조사-심의-의결로 이어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과정에 관하여 하나의 시스템을 통해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점에서 대국민 서비스의 차원에서 두 시스템을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온라인 사건처리 시스템 및 온라인 심의정보 시스템 기능 비교>

온라인 사건처리 시스템	온라인 심의정보 시스템
○ 사건신고 / 진행 - 온라인 사건신고 - 신고사건 진행현황 조회(신고인) - 나의 사건 진행현황 조회(피조사업체) ○ 사건처리정보 열람 - 심의안건 - 의결서 - 심사관전결경고서 - 심의속기록 - 법위반사실조회 - 과징금 처분 현황	○ 문서 제출 등 - 의결서, 재결서, 피심인 의견서 등의 전자적 제출·관리·송달·열람 ○ 심의 정보 안내 - 의견청취기일, 심의기일 통지 등

201) 데이터포털 구축 및 운영(7032-503)

8. 데이터포털 구축 및 운영(정보화)(7032-503)

: 데이터포털 외부 활용 제고 필요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데이터포털 구축 및 운영’은 공정거래 데이터포털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대국민 정보 접근성 및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은 전년과 같은 수준인 14억 8,700만원이 편성됨.

<2025년도 ‘데이터포털 구축 및 운영’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데이터포털 구축 및 운영	5,176	1,487	1,487	-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예산안 공통요구자료 Ⅱ-1)

나. 검토의견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부터 ‘데이터포털 구축 및 운영’사업을 시작하였음.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총 137억 3,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데이터포털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2024년 3월부터는 구축 완료된 데이터포털 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예산이 투입되기 시작하였음. 2024년에는 데이터포털 운영을 위해 14억 8,700만원이 편성·집행되었으며, 2025년에도 14억 8,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데이터포털 구축 · 운영 관련 투입 예산>

(단위: 백만원)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사업비	4,000	4,516	5,176	1,487	1,487

□ 당해 사업은 크게 두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음. 첫째 정책목표는 공정거래위원회 내부 직원에게 빅데이터 분석·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과학적 행정업무환경을 제공하여 업무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며, 둘째 정책목표는 국민에게 데이터 개방·지능형 검색 등 다양한 데이터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이 자유롭고 효율적으로 공정거래 관련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임.

□ 그런데, 두 번째 정책목표인 대국민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는 데이터포털의 활용도를 점검하고 서비스 기능을 향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대국민 데이터포털 주요 기능 및 서비스>

기능	서비스 내용
통합검색	검색키워드와 유사한 민원사례, 사건데이터 등 정보를 제공하고, 법령관련 키워드에 해당하는 법령의 조문 탐색
데이터	공정거래 관련 공공데이터 개방(파일데이터 52종, 오픈API 361종)
데이터소통	공정거래 관련 공공데이터 활용신청 및 제안·소통 서비스

기능	서비스 내용
통계	통계정보를 주제별통계, 국가통계, 통계연보로 구분하여 제공 ※ 주제별통계, 통계연보는 통계표에 해당하는 시각화 정보 제공
공정트랜드	공정거래 관련 이슈·트랜드 키워드와 해당 키워드에 매칭되는 언론기사 제공
민원추천 서비스	민원내용을 50자 이상 입력하면 내용과 관련성이 높은 접수기관, 신고서식, 관련 법령(법조문), 유사민원(우수민원)을 추천

□ 우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국민 데이터포털(www.fairdata.go.kr)에 관한 이용률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는 웹사이트 운영과 서비스 현황 등을 점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당해 가이드 '붙임 4'는 웹사이트 이용률 분석방법을 제시[202]하고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국민 데이터포털 서비스 개시 후 웹사이트 가이드에 따른 이용률 분석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실제 국민이 어느 정도로 당해 서비스를 사용하는지 분석하고 있지 아니함.

□ 참고로, 네이버(NAVER)나 다음(DAUM)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을 통해 대국민 데이터포털 접근이 사실상 불가[203]하다는 점에서 일반 국민의 대국민 데이터포털 이용률은 현저히 낮을 것으로 추정됨.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는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정보시스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누리집 모음 설정' 기능을 제

202) Piwik 분석 툴, OWA 분석 툴, 네이버 애널리틱스, 구글 애널리틱스 등의 웹사이트 이용률 분석 방법을 제시하고 있음.

203) 2024년 11월 1일 현재 검색어 'fairdata'로는 대국민 데이터포털 접속이 가능하나, '공정거래 데이터포털', '공정 데이터포털', '데이터포털'등의 검색어로는 대국민 데이터포털 접속이 불가함.

공하고 있으나 대국민 데이터포털은 '누리집 모음 설정' 기능에서 제외되어 있는 등 국민이 데이터포털에 접근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생각됨.

□ 공정거래위원회는 웹사이트 이용률 분석을 통해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활용성 및 웹사이트 이용의 용이성·편리성 등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고 이에 기반한 대국민 데이터포털 운영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누리집 모음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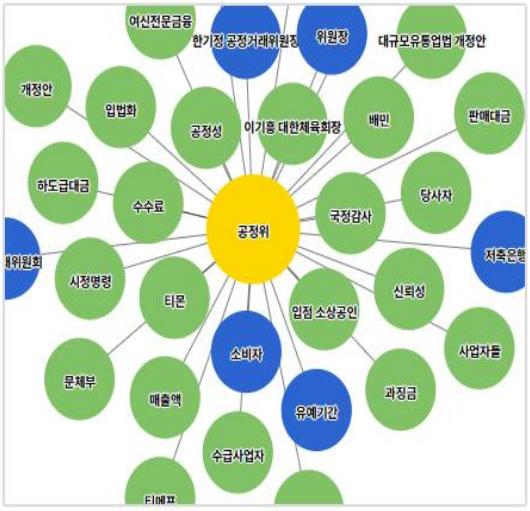
□ 한편, 언론데이터를 이용하여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뉴스를 수집·제공하고 언론데이터를 활용하여 공정거래와 관련이 있는 사회적 이슈를 분석하는 「공정트렌드」 기능의 경우 '공정위' 등과 같은 키워드를 포착하여 자동으로 기사와 분석을 제공하는데, 공정거래위원회와 무관한 '스포츠공정위' 등이 포함된 기사까지 제공되는 문

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수집된 기사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언론데이터 제공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언론데이터 활용 상세페이지>

2024년 10월 23일 17시 35분 검색결과

공정위연관어 분석



공정위연관 기사

이기흥 체육회장, 정몽규 '접대 골프 의혹'에 청탁금지법 ...
| KBS | 2024-1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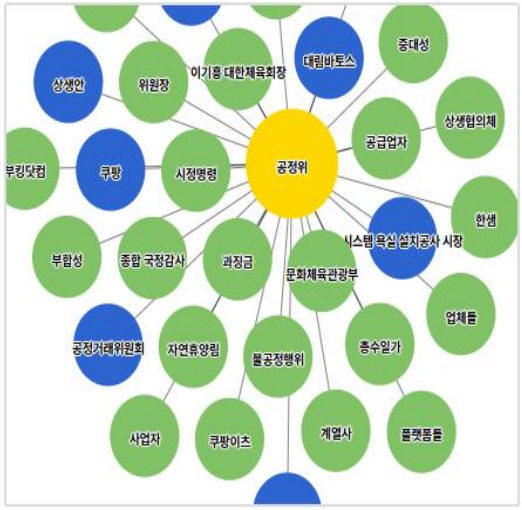
[국감] 체육회 공정위원장, '축구협 접대골프 의혹' 뭇매
| 뉴스핌 | 2024-10-22

박창범 전 이사, 내년 대한체육회장 출마 | 경북매일신문
| 2024-10-22

"가상자산 '1거래소·1은행 체제'가 독점 구조 고착화"
| 경향신문 | 2024-10-22

2024년 11월 1일 16시 05분 검색결과

공정위연관어 분석



공정위연관 기사

당당한(?) 김택규 배드민턴협회장 "누가 저를 해임할 수 ...
| KBS | 2024-10-31

축구협 노조 "대의원총회 탄핵만이 정몽규 4선 저지 유...
| 뉴스핌 | 2024-10-31

축구협회 노조 "정몽규 4선 막으려면 탄핵 말고는 답이 ...
| 매일신문 | 2024-10-31

"체육계 사유화 한 이기흥, 당장 3선 연임 행보 멈춰야"
| 대구신문 | 2024-10-31

9. 공정거래위원회 청년관련 제도 내실화 필요

(1) 공정거래지원(7031-300)
: 청년인턴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할당 필요

□ ‘공정거래지원’은 공정거래정책 알리기, 변화관리 및 능력개발, 조사공무원 역량강화, 모의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 청년인턴 운영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2억 3,200만원(16.7%) 감소한 11억 5,700만원이 편성됨.

<2025년도 ‘공정거래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공정거래지원	811	1,389	1,157	△232	△16.7%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
○ 기능별 분류(합계)	811	1,389	1,157
· 공정거래정책 알리기	537	543	548
· 변화관리 및 능력개발	155	159	158
· 조사공무원 역량강화	-	356	116
· 모의공정위 경연대회	69	71	71
· 청년인턴 운영	-	260	264
· 회의록 작성용역	50	-	-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예산안 공통요구자료 Ⅱ-1)

□ 내역사업 ‘청년인턴 운영’ 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2억 6,400만원으로 2024년도 예산 2억 6,000만원에 비해 400만원 증액되었음. 최저임금 증액(시간당 9,860원 → 10,030원)에 따른 단가상승을 반영한 증액에 해당함.

□ 청년인턴제는 청년층의 의견을 공공부문에 반영하는 동시에 청년에게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기획재정부의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공공기관 청년인턴으로 채용된 직원이 단순업무 등에 활용되지 않고, 인턴 개개인의 역량제고와 기관업무 효율이 동시에 달성되는 방안을 강구하며, 특히 정책과정에 참여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운영하도록 정함.

□ 그러나, 2024년 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고한 “공정거래위원회 청년인턴 채용 공고”를 살피면 총 20명의 선발예정인원 중 8명의 담당 예정 업무가 기록물 관리지원에 해당하는 등 청년인턴으로 채용된 직원이 단순업무에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채용 분야	선발 인원	담당 업무
행정·법무(세종)	11명	· 소관부서 행정업무 지원(법 제도관련 모니터링, 자료조사 및 업무지원 등 행정업무)
외국어·국제(세종)	1명	· 해외자료·동향 조사, 국제협력 업무·행사지원 등 업무지원

채용 분야	선발 인원	담당 업무
기록물 관리(세종)	1명	· 기록물 관리 지원(사건·행정 기록물 이관·편철 보조, 기록물 관리, 기록정보 보존 및 소관부서 업무지원 등)
기록물 관리(서울)	2명	
기록물 관리(부산)	2명	
기록물 관리(광주)	1명	
기록물 관리(대전)	1명	
기록물 관리(대구)	1명	

□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에 관한 사안을 심의·의결함으로써 시장경쟁질서를 보호하고 경제활동의 기본질서를 확립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청년인턴은 기록물 관리 등의 단순업무 보다는 경쟁정책에 관한 자료 수집 지원, 심결에 필요한 기초 사례 수집 지원, 해 정책사례 수집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실질적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계, 학계, 법조계 등과 밀접히 관련된 일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청년인턴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최근의 우려[204]를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04) 「“그냥 앉아만 있다가 퇴근하세요”...세금으로 월급 뿌렸다」, 한국경제, 이광식기자, 2024.10.13.

(2) 대외활동 강화(1231-311)
: 2030자문단 역할 정립 필요

□ ‘대외활동 강화’는 학계·경제계·법조계 등 공정거래 커뮤니티와의 협력 강화 및 해외 경쟁당국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경쟁정책의 선진화 및 정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2억 3,200만원(58.8%) 증가한 6억 2,600만원이 편성됨.

<2025년도 ‘대외활동 강화’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대외활동 강화	445	394	626	232	58.8%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
○ 기능별 분류(합계)	445	394	626
· 경쟁관 해외 파견	69	-	86
· 최신 국내외 경쟁 정책정보 번역	60	59	46
· CP제도 운영	46	46	46
· 서울국제경쟁포럼	122	-	210
· ICN 부담금	4	4	4
· ASEAN 및 CIS권역 경쟁당국 협의회	68	74	25
· 공정거래정책 학술심포지엄	76	80	80
· 경쟁당국수장간회의	-	64	62
· 2030자문단 운영	-	67	67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예산안 공통요구자료 Ⅱ-1)

□ 내역사업 ‘2030자문단 운영’은 2024년 신설된 사업으로 공정거래정책과 관련한 청년세대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사업임. 2025년도 예산은 6,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2024년과 동일한 수준임.

□ 공정거래위원회 2030자문단은 현재 총 19명[205]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쟁분과 7명, 기업거래분과 5명, 소비자분과 7명으로 분과를 구분하여 운영중임.

<2024년 2030자문단 제안에 따른 정책과제 목록>

제목	정책과제
청년 소비자 경제역량 함양	청년층의 이용·분쟁발생 빈도가 높은 품목(헬스장·필라테스)에 초점을 맞추어 유튜브·인스타 등을 통한 홍보물 제작
청년사업자를 위한 가맹사업법 등 제도 홍보	청년 창업자 등의 접근성이 높은 유튜브 채널(공다방)을 통해 가맹본부·가맹점 창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 제공
온라인 분쟁조정 통합시스템 개선	대리인도 해당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편 추진
SNS 뒷광고 점검 분야 확대 및 제도개선	▲주요 플랫폼 중 하나인 ‘틱톡’을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 ▲블로그상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위치’ 개선(하단→최상단)
대리점 계약기간 보장 법제화	본사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전속대리점 관련 실태조사 등 실시 후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
기술침해 중소기업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개선	공정위 조치 사건 관련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된 경우 관련 자료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시장경쟁 활성화를 위한 정부 규제 개선	▲반려동물 등록방법 간소화(예: 비문, 홍채 등) ▲의료기기 수리업자 중요부품 사용규제 개선추진
웨딩산업 피해사례 조사 및 대책 마련	자문단 피해사례 조사결과(4.26) 등을 참고하여 연구용역 실시 후 결혼준비대행업 표준약관 마련

205) 최초 구성시 21명이었으나, 2명이 사임하였음.

□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 2030자문단 제안에 따른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 첫째, 청년과 관련한 정책과제(청년 소비자 경제역량 함양, 청년사업자를 위한 가맹사업법 등 제도 홍보) 보다는 '온라인 분쟁조정 통합시스템 개선', 'SNS 뒷광고 점검 분야 확대 및 제도개선', '대리점 계약기간 보장 법제화' 등 일반 공정거래 정책과 관련한 사항이 많아 청년정책[206] 과제 발굴 및 제안이 다소 부족함.

□ 둘째, '기술침해 중소기업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개선', '시장경쟁 활성화를 위한 정부 규제 개선'은 2024년 2월 발표된 공정거래위원회의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이미 반영된 사안에 해당함. 또한 '웨딩산업 피해사례 조사 및 대책 마련'은 2024년 3월 발표된 정부의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207]에 반영된 사안으로, 2030자문단이 그 설립 목적 및 역할[208]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됨.

---

206)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
4. "청년정책"이란 청년발전을 주된 목표로 하는 것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207) 기획재정부, 「청년 고용 및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산업 육성」, 2024.3.13.

208) 「공정거래위원회 2030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2030자문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역할) ① 공정거래위원회 내에 공정거래위원회 2030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자문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거래위원회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 여론의 수렴 및 전달
2. 공정거래위원회 청년정책 과제 발굴 및 제안
3. 공정거래위원회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제안
4. 그 밖에 단장이 제안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30자문단이 공정거래위원회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 여론의 수렴 및 전달, 공정거래위원회 청년정책 과제 발굴 및 제안 등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명확한 사업목적에 기반한 다양한 활동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과제 수립에 있어서도 정량적 성과에 집중하기 보다는 청년발전을 위한 실효적인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2030자문단의 활동 체계 및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3) 총액인건비성 인건비(7001-100)

: 청년보좌역 역할 정립 필요

□ ‘총액인건비성 인건비’는 기관운영을 위한 정규직원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5억 200만원(4.7%) 증가한 561억 5,200만원이 편성됨.

<2025년도 ‘대외활동 강화’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총액인건비성 인건비	51,419	53,650	56,152	2,502	4.7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
○ 비목별 분류(합계)	51,419	53,650	56,152
· 보수(110-01)	50,654	52,820	55,157
· 기타직보수(110-02)	419	431	572
· 연가보상비(110-05)	346	399	423

□ ‘기타직보수(110-02)’는 전문임기제공무원 등에 대한 인건비에 해당하는 비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2[209]에 근거하여 전문임기제공무원(청년보좌역)을 채용하여 운영함.

---

209) 「청년기본법 시행령」제21조의2(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의 채용)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정책에 관한 청년의 인식 및 태도 파악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정책 추진에 관한 청년의 의견 수렴 및 참여 촉진
3. 청년정책과 관련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검토
4.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청년 관련 정책자문기구의 운영 지원

□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각호는 청년보좌역의 업무를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정책에 관한 청년의 인식 및 태도 파악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정책 추진에 관한 청년의 의견 수렴 및 참여 촉진 ③ 청년정책과 관련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검토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청년 관련 정책자문기구의 운영 지원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청년보좌역 채용을 위해 공고한 경력경쟁채용시험계획 공고에는 청년보좌역의 담당예정업무로 청년세대의 인식과 요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음.

채용분야	담당예정업무
청년보좌역	ㅇ 간부회의, 소속 부처의 정책관련 정부위원회 등에 참석하여 청년세대의 인식과 요구 전달 ㅇ 자문단 전체회의 및 분과회의 운영, 청년 대상 정책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청년세대 의견 수렴 및 정책 발굴

□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청년보좌역 활동결과보고”에 따르면 공정위 주요정책 등에 대한 “홍보”가 청년보좌역의 주요 활동으로 소개되고 있어, 청년보좌역이 청년세대의 인식과 요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하기 보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도와 정책을 청년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준하는 것으로서 청년의 정책 참여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은 청년 중에서 채용한다

□ 즉, 청년보좌역의 주요 역할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을 청년에 알려 정책인지도를 상향하는 산출(Output)의 측면이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정책 수립과 추진에 있어 청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투입(Input)의 측면과 연관성이 높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음.

10. 한국소비자원 출연(1461-630)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한국소비자원은 지출예산 총액에서 기관 운영으로 발생하는 자체수입 예산을 차감한 나머지 부분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출연금으로 지원받는 수지차보전기관으로, 2025년도 수입예산은 정부출연금, 자체수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지출예산은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예비비로 편성됨.

□ 2025년도 수입 예산안은 정부출연금 536억 9,600만원과 자체수입 30억 4,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0.9% 증가한 567억 4,000만원이고, 지출예산안은 인건비 379억 5,000만원, 사업비 128억 8,500만원, 운영비 45억 1,700만원, 예비비 13억 8,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0.9% 증가한 567억 4,000만원이며, 지출 예산안의 주요 증액요인은 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액 및 결혼서비스 시장 가격조사 및 소비자시장평가지표 생산에 따른 사업비 증액 등임.

<2025년도 한국소비자원 출연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 수 입	53,499	56,259	56,740	481	0.9
정부출연금	50,853	52,842	53,696	854	1.6
자체수입	2,646	3,417	3,044	△373	△10.9
□ 지 출	52,892	56,259	56,740	481	0.9
인건비	37,236	36,559	37,950	1,391	3.8
사업비	10,384	13,840	12,885	△955	△6.9
운영비	5,272	4,509	4,517	8	0.2
예비비	-	1,351	1,388	37	2.7

(자료: 한국소비자원 예산안 설명자료)

2) 검토의견

(1) 결혼 서비스 가격조사 및 정보제공 사업의 면밀한 계획 수립 필요

□ 정책연구·조사 및 대외협력 사업은 정부와 지자체의 소비자정책(시책) 추진을 지원하고, 법령과 제도의 소비자 지향성을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 취약분야에서의 부당한 거래관행을 개선하며, 기업의 소비자 권익증진 업무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소비자이슈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 예산안은 결혼 서비스 가격조사 및 정보제공 등의 사유로 전년 대비 5억 2,600만원이 증액된 16억원으로 편성되었음.

<2025년도 정책연구·조사 및 대외협력 사업비>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2025년		증감 (B-A)	
		요구안	조정(B)		(B-A)/A
▪ 정책연구·조사 및 대외협력	1,074	1,600	1,600	526	49.0
- 정책연구	569	637	637	68	12.0
- 거래조사	321	802	802	481	149.8
- 대외협력	184	161	161	△23	△12.5

(자료: 한국소비자원 예산안 설명자료)

□ 정부는 최근 물가상승 영향 및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인한 혼인율·출산율 부진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혼인 문제 개선책을 포함한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을 수립하였으며, 한국소비자원은 발전방안의 일환으로 결혼서비스 가격정보 제공 및 소비자시장평가지표 생산을 추진하기로 함.

○ 이는 결혼 상품 구성, 가격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과도한 추가 요금 요구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결혼관련 품목·서비스에 대한 가격정보를 공개하고, 결혼 서비스 시장의 소비자 체감 가격, 선택 다양성, 신뢰성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하여 결혼 서비스 분야의 소비자 만족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 – 웹 콘텐츠 창작·웨딩뷰티 서비스>

정책 방향	취·창업 활성화	소비자 만족 제고	성장 기반 마련
웨딩 뷰티	교육훈련 강화 · 뷰티 창업교육 확대 · 뷰티 창업정보 제공 강화 · 웨딩분야 자격체계 마련	**공정거래 확립** **· 결혼 가격정보 공개 강화 (소비자원)** **· 결혼준비대행서비스 표준약관 마련(공정위)**	법·제도 정비 · 결혼 진흥·발전 법률 제정 · 결혼 정기 실태조사 실시 · 뷰티 통계 세분화
	창업부담 완화 · 공유미용실 제도화 · 피부·네일 간이과세 적용 · 웨딩 1인 창조기업 지원	공공예식 활성화 · 미술관·박물관 등을 예식 공간으로 개방 · 공공예식장 모델 다양화	방한 관광 확대 · K-뷰티 체험·홍보관 확충 · 코리아 뷰티 페스티벌 개최

(자료: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웹 콘텐츠 창작·웨딩뷰티 서비스)

□ 한국소비자원은 결혼서비스 가격정보 제공 및 소비자시장평가지표 생산 예산으로 거래조사(세항) 사업에 결혼서비스 실태조사 및 가격정보 제공을 위하여 5억 2,800만원을, 정책연구(세항) 사업에 결혼서비스 정책 추진방안 연구를 위하여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음.

□ 거래조사 사업의 결혼서비스 실태조사 및 가격 정보제공 예산안을 살펴보면 결혼 서비스 분야 용역조사 4억 800만원, 가격정보포털 시스템 기능 개선 1억 2,0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음.

<결혼서비스 실태조사 및 가격정보 제공 편성 내용>

사업	세부 편성 내용
결혼서비스 분야 용역조사	○4억800만원 - 현장 조사원 수당: 3억 5,200만원(176명×0.5백만원×4분기) - 조사원 대상 교육 : 600만원(200만원×3회) - 조사 컨설팅 및 자문비 : 2,000만원(1,000만원×2회)
가격정보포털 시스템 기능 개선	○ 1억 2,000만원 - 결혼 서비스 분야 가격정보 제공 시스템 구현 : 5,000만원 - 모바일 기기 최적화를 위한 반응형 웹페이지로 개선 : 7,000만원

□ 동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소비자원은 2019년에 서울 및 6대 광역시 172개 예식장 업체의 거래조건을 조사·분석하고, 서비스 이용자 790명을 대상으로 결혼준비대행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결혼서비스 소비자문제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음.

□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은 2025년도에 유사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면서 범위를 확대하여 전국 예식서비스 412개 업체 및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업체 200개를 대상으로 분기별 현장 조사를 수행하기로 계획 중으로, 시기별 예식서비스 가격의 차이를 고려했을 때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가격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가격조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결혼서비스 소비자문제 실태조사('19) 및 가격 모니터링('25) 비교>

구분	결혼서비스 소비자문제 실태조사('19년)	결혼서비스 가격 모니터링('25년 예정)
편성 예산	85백만원	408백만원
조사 방법	▪ 소비자설문조사, 온라인 모니터링	▪ 현장 조사원을 파견해 가격정보를 수집(176명 이상 규모) ▪ 소비자, 사업자, 업계·학계 설문조사
조사 대상	▪ 서울 및 6대 광역시 예식장 홈페이지	▪ 전국 예식서비스 업체 412곳 및 결혼준비 대행서비스 업체 200곳
조사 주기	▪ 일회성	▪ 분기별 정기 조사
조사 범위	▪ 예식서비스 분야(표준약관, 거래조건)	▪ 예식서비스 분야(대관비·식대 등 서비스 정가, 견적가, 부당거래 조건) ▪ 스드메분야(드레스·메이크업 등의 패키지 견적가, 부당거래 조건)
내용	▪ (소비자피해 실태) 피해 유형 분석 ▪ (홈페이지 정보제공 실태) 사업자 기본 정보, 상품 구성 등 홈페이지 모니터링 ▪ (소비자 만족도 조사) 예식서비스 이용, 피해경험 등 만족도 조사	▪ (결혼정보 가격 데이터 수집) 예식서비스 및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가격 분석 ▪ (데이터 검증) 조사원이 수집한 데이터를 자체·교차 검증 수행 ▪ (조사 품목 정비) 서비스 항목마다 추가되는 옵션 가격, 할인율 등 실태조사

□ 정부의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을 살펴보면 기획재정부는 결혼서비스 제공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가격표시 대상, 항목 방법 등을 규정·의무화하는 '가격표시제' 도입방안을 2024년 내 마련하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 역시 2026년도 부터결혼 서비스 산업 현황, 서비스 이용 비용, 소비 피해사례 등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웨딩·뷰티 분야 주요과제 추진일정 >

분야	정책 과제	부처	추진시기
웨딩·뷰티	· '참가격' 플랫폼에 결혼 관련 품목·서비스 가격 게시	공정위 등	'25~
	· 결혼 서비스 체감가격, 선택 다양성 등 정기 조사·공개	공정위	'25~
	· 결혼 서비스 가격표시제 도입방안 마련	기재부	'24.4Q
	· 결혼준비대행 서비스 표준약관 마련 실태조사 실시	공정위	'24.3Q
	· 결혼 서비스 소비자피해 예방 가이드라인 마련	공정위	'24.2Q
	· 결혼 서비스 분야 실태조사 정기 실시	여가부	'26~

(자료: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웹 콘텐츠 창작·웨딩뷰티 서비스)

□ 동 사업의 최종적 목적은 결혼서비스 분야 가격정보 공개 강화를 통한 공정거래 확립인바, 가격표시제 추진과 관련하여 동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는지와 결혼서비스 가격정보 및 거래조건이 정확히 제공되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한편, 현재 참가격[210]에서 제공하고 있는 개인서비스 가격정보는 지역별 세탁, 숙박, 이용, 미용, 목욕 품목의 지역별 평균금액에 불과한데 결혼 서비스 예식서비스 분야의 경우 예식일, 보증인원 등에 따라 가격의 변동범위가 크며, 스드메(스튜디오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분야의 경우 품목별 결합 여부, 품질, 선택사항 등에 따라 가격 편차가 크고, 업체별 가격이 상이한 특성이 있음.

□ 한국소비자원은 결혼서비스 가격정보 제공을 위하여 참가격 내 전

210)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정보서비스 홈페이지(www.price.go.kr), 500여개 판매점의 가격정보 데이터를 격주 조사하여 곡물가공품 19개, 과자·빙과류 14개, 가사용품 16개, 차·음료·주류 18개, 채소류 18개 등 158개 품목, 540개 상품의 판매가격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공공요금, 외식비, 개인서비스요금)와 시 · 도 교육청(학원/교습소비), 건강보험심사평가원(비급여 진료비)의 서비스 가격정보를 연계받아 제공하고 있음.

용메뉴를 신설하고 표준형, 고급형, 실속형으로 구분하여 가격 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나, 결혼 서비스 분야의 특성을 고려할 때 결혼 서비스 가격정보 비교 및 소비자 선택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가격조사·정보제공 범위를 더욱 철저히 설계할 필요가 있음.

(2) 모바일 채팅상담 서비스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소비자역량강화 및 정보제공 사업은 소비자정보 및 교육을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생활 및 선택권을 보장하고, 정보화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소비자에게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기관 사업의 대국민 전달력을 높여 국민의 알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 예산안은 AI기반 민원처리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의 종료로 전년 대비 9억 9,900만원이 감액된 25억 6,8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2025년도 소비자역량강화 및 정보제공 사업비>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2025년		증감 (B-A)	
		요구안	조정(B)		(B-A)/A
▪ 소비자역량강화 및 정보제공	3,567	2,568	2,568	△999	△28.0
- 소비자정보 및 역량강화	636	940	940	304	47.8
- 소비자원 정보화	2,861	1,523	1,523	△1,338	△46.8
- 소비자홍보	70	105	105	35	50

(자료: 한국소비자원 예산안 설명자료)

□ 한국소비자원은 모바일·웹을 통한 쌍방향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 편의성 및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2022년부터 3개년 사업으로 채팅상담 시스템(소망챗 1:1 상담)을 구축하였으며 2024년 7월에 서비스를 개시하여 운영 중임.

<채팅상담 시스템 구축 단계별 추진 내용>

[1단계] ~2022.12. 사업 선정 및 시스템 구축		[2단계] ~2023.6. 시스템의 지능화 및 테스트 운영		[3단계] ~2024.12. 시스템의 고도화 및 운영 개시
▸국민 참여예산 우수사업 선정 ▸인공지능 기반 소비자 민원 처리 통합플랫폼 구축 ISP 추진 계획 수립 ▸소비자 맞춤형 채팅 상담 시스템 구축	▶	▸우수기관 벤치마킹 ▸지식DB 확대 (표준답변, 사용어구 등) ▸모의채팅 실시(3회) - KCA국민소통단 등 82명 ▸서비스 시연회	▶	▸서비스 개시(7.3.) - 보도자료 배포 ▸상담자 증원(4명→7명) ▸매뉴얼 제작 및 배포 ▸DB 확대

(자료: 한국소비자원 채팅상담 서비스 연간 운영 결과)

<채팅상담 시스템 구축 단계별 예산 편성 및 집행액>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년 (시스템 구축)		2023년		2024년 (시스템 유지보수)		2025년 (시스템 유지보수)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모바일 채팅 상담 서비스	200	200	-	-	20	20	20

(자료: 한국소비자원)

※ '22년도 '모바일 채팅상담 서비스 사업(200백만원)'은 '인공지능 기반 민원처리 통합 플랫폼 구축(1,056백만원)' 사업의 일부 과업

□ 모바일 채팅상담 서비스 구축은 2022년도에 완료되어 2025년도 예산은 시스템 유지보수비인 2,000만원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고, 모바일 채팅상담 홍보 예산으로는 2023년도에 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25년도 별도 예산액은 편성되지 않았음.

□ 채팅상담 서비스는 평일 09:30부터 17:00동안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보험분야 2명, 자동차분야 2명, 일반분야 3명 총 7명의 담당자가 소비

자 개인별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서비스 운영 및 답변 관리를 위하여 2명의 팀장이 서비스 사업 인력으로 편성되어 있음.

□ 그런데 채팅상담 서비스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채팅상담 접수건수 및 담당자 1인당 상담건수가 분기별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1인당 상담건수는 2024년도에 분야별 상담인원 1인씩, 총 3인이 증원되어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남.

<모바일 채팅상담 접수 건수>

(단위: 건, (%))

구 분	23년 3분기	23년 4분기	24년 1분기	24년 2분기	합계
총 건수(비율)	1,850(26.3)	1,783(25.4)	1,718(24.5)	1,669(23.8)	7,020(100.0)
전월 대비 증감율	-	▼3.6 (0.9%p)	▼3.6 (0.9%p)	▼2.9 (0.7%p)	-

(자료: 한국소비자원 채팅상담 서비스 연간 운영 결과)

<모바일 채팅상담 1인당 1일평균 상담 건수>

(단위: 건, %)

구 분	23년 3분기	23년 4분기	24년 1분기	24년 2분기	일평균
건수	7.5	7.0	4.0	3.9	5.6
전월 대비 증감율	-	▼6.7	▼42.9	▼2.5	-

(자료: 한국소비자원 채팅상담 서비스 연간 운영 결과)

□ 상담시간의 경우 분야별로 1건당 자동차 13.9분, 일반 12.3분, 금융·보험 11.5분이 소요되며 채팅 상담 후 상담장 정리 및 저장까지 고려하면 실제 상담에 소요되는 평균시간은 1건당 약 15~20분으로서 담당자 1인당 채팅 서비스 상담시간은 하루 최대 78분에 불

과한 것으로 보임.

<모바일 채팅상담 1건당 평균 상담시간>

(단위: 분)

구 분	23년 3분기	23년 4분기	24년 1분기	24년 2분기	평균 상담시간
일반	12.4	11.5	12.8	12.3	**12.3**
금융·보험	10.8	11.0	11.7	12.6	**11.5**
자동차	14.1	13.6	12.3	15.5	**13.9**
평균	**12.4**	**11.5**	**12.8**	**12.4**	**12.3**

(자료: 한국소비자원 채팅상담 서비스 연간 운영 결과)

□ 소비자 상담에서의 소비자 편의성 및 만족도 제고라는 목적 및 투입 예산의 효과성을 고려했을 때 구축된 채팅상담 시스템을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한 이용 확대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한국소비자원은 채팅상담 서비스의 홍보 강화, 채팅상담 이용자의 의견청취를 통한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모바일 채팅상담 서비스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11.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출연(1271-350)

: 분쟁조정협의회 상임위원 제도 도입 관련 검토 필요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지출예산 총액에서 기관 운영으로 발생하는 자체수입 예산을 차감한 나머지 부분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출연금으로 지원받는 수지차보전기관으로, 2025년도 수입예산은 정부출연금, 기타수입, 수탁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으며 지출예산은 인건비, 기관운영비, 사업비, 수탁사업비로 편성됨.

□ 2025년도 수입 예산안은 정부출연금 127억 5,700만원과 자체수입 6억 900만원, 수탁사업비 12억 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4% 증가한 145억 7,200만원이고, 지출 예산안은 인건비 85억 400만원, 운영비 26억9,800만원, 사업비 21억 6,400만원, 수탁사업비 12억 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4% 증가한 145억 7,200만원이며, 지출 예산안의 주요 증액요인은 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액 등임.

<2025년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출연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 수 입	12,631	14,233	14,572	339	2.4
정부출연금	11,657	11,742	12,757	1,015	8.6
자체수입	974	2,491	1,815	△676	△27.1
□ 지 출	12,479	14,233	14,572	339	2.4
인건비	7,032	7,622	8,504	882	11.6
운영비	2,531	2,591	2,698	107	4.1
사업비	2,146	2,798	2,164	△634	△22.7
수탁사업비	770	1,222	1,206	△16	△1.3

(자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예산안 설명자료)

□ 분쟁조정 사업은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유통업거래, 약관, 대리점 6개 분야에서 발생한 사업자 간 분쟁에 대해 분쟁조정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피해를 구제하고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 사건증가에 따른 공공요금 등 소요경비 증가 등의 사유로 전년 대비 7,000만원이 증액된 7억 7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2025년도 분쟁조정 사업비>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2025년		증감 (B-A)	(B-A)/A
		요구안	조정(B)		
▪ 분쟁조정	637	637	707	70	11.0

(자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예산안 설명자료)

<2025년도 증액 예산액 산출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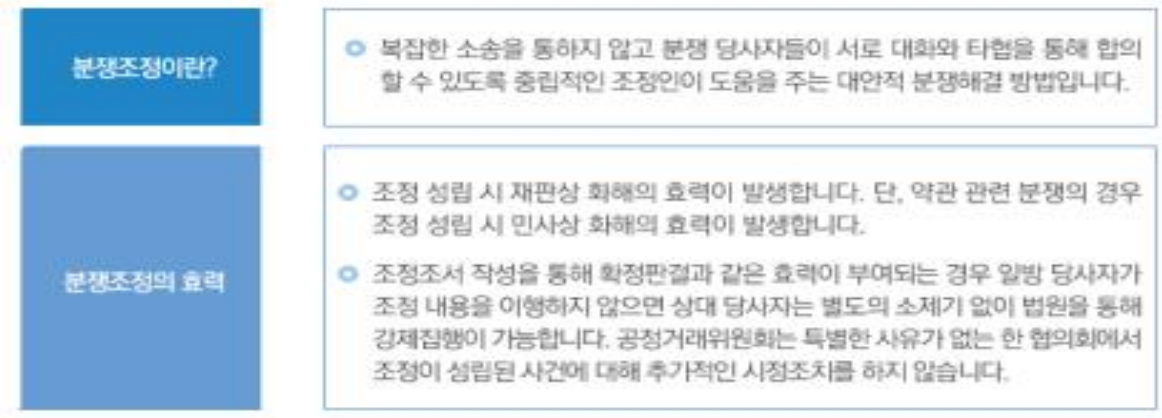
ㅇ 사건증가(최근 3년간 연평균 24%)에 따른 공공요금 등 소요경비 48백만원 ㅇ 상임위원 도입에 따른 소요경비 14백만원 ㅇ 조사인력 증원에 따른 소요경비 8백만원

(자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예산안 설명자료)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분쟁조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6개 법률[211]에 따라 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하여 사업자 간 분쟁을 조정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피해를 구제하고 있음.

○ 분쟁조정은 소송을 통하지 않고, 분쟁 당사자의 신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정의뢰에 대하여 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을 결정하는 것으로 양 당사자가 조정 결정을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함.

<분쟁조정의 목적 및 효력>



(자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예산안 설명자료)

2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6개분야 분쟁조정협의회 현황>

구분	근거법률	조정대상	분쟁유형
공정거래 분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위반 관련 사업자 분쟁 예) 대기업과 중소기업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거래강제, 거래상 지위 남용, 구속조건부 거래, 사업활동 방해 등
가맹사업 거래 분쟁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간 분쟁 예) 프랜차이즈 본부와 점주	허위과장정보제공, 정보공개서미제공, 가맹금반환청구, 계약이행청구, 부당한 계약해지/종료, 영업지역 침해 등
하도급거래 분쟁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분쟁 예)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	하도급대금 미지급, 부당한 대금감액, 부당한 발주취소, 부당반품, 설계변경에 따른 증액대금 미지급 등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 사이의 분쟁 예) 백화점, 대형마트 등과 납품업자 또는 입점업체	부당한 대금감액, 부당한 수령거부/지체, 부당한 반품, 판촉비 부담전가, 부당한 계약조건 변경 등
약관 분쟁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법 제17조를 위반한 약관 및 이와 비슷한 유형의 불공정 약관 관련 분쟁 예) 대리점 및 프랜차이즈약관 등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의 약관, 부당한 계약해지 또는 해제권 제한,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위험을 전가시키는 약관 등
대리점 분쟁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분쟁 예) 대리점 본사와 대리점	계약서 미작성/미교부, 구입강제,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대리점 경영활동 간섭 등

(자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예산안 설명자료)

□ 분쟁조정협의회를 규정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개정(2023. 8. 8.)으로 2024년부터 분쟁조정협의회 상임위원 제도가 도입되었음.

<분쟁조정협의회 상임위원 규정>

구분	내용
공정거래 (공정거래법 제73조제2항)	② 협의회는 협의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협의회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가맹사업 거래 (가맹사업법 제17조제4항)	④조정원 협의회의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고, 시·도 협의회의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조정원 협의회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하도급 거래 (하도급법 제24조제3항)	③ 조정원에 설치하는 협의회(이하 “조정원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원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수급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각각 같은 수가 되도록 하고, 조정원 협의회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대규모유통업 거래 (대규모유통업법 제20조제2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약관 (약관법 제24조제2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대리점 (대리점법 제14조제4항)	④ 조정원 협의회의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고, 시·도 협의회의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조정원 협의회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 상임위원 제도 도입 이후 현재 1인의 상임위원이 공정거래, 대규모유통업거래, 약관 분야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상임위원 1명이 추가로 증원되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으로 위촉된 후 해당 상임위원이 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을 겸임할 예정임.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법 시행 시기에 맞춰 위원장 1명이 타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을 겸임하게 되었다고 설명함.

<분야별 분쟁조정협의회 상임위원 도입 시기>

구 분	공정거래	대규모 유통	약관	하도급	대리점	가맹
시행 시기	'24. 2. 9.	'24. 3. 1.	'24. 9. 12.	'25. 7. 1.	'25. 12. 23.	'26. 11. 9.
적용 기준	(공정거래)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 (대규모유통·약관·하도급·대리점·가맹)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 새로 구성되는 협의회부터					

(자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그러나 분쟁조정협의회 관련 6개 법률에는 협의회 위원의 겸임 조항이 없으며, 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수, 임기, 선임 방식, 자격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각각 상이하다는 점에서 상임위원의 겸임은 바람직한 운영 방식으로 보기 어려움.

<분야별 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자격 요건>

구분	자격요건
공정거래 (공정거래법 제73조제4항)	○ 4급 이상의 공무원(「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7년 이상 있었던 사람 ○ 법률·경제·경영 또는 소비자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7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었던 사람 ○ 기업경영, 소비자보호활동 및 분쟁조정활동에 7년 기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맹사업 거래 (가맹사업법 제17조제3항)	○ 대학에서 법률학·경제학·경영학을 전공한 자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 판사·검사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 가맹사업거래 및 분쟁조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하도급 거래 (하도급법 제24조제7항)	○ 대학에서 법률학·경제학 또는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판사·검사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 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하도급거래 및 분쟁조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대규모유통업 거래 (대규모유통업법 제20조제4항)	○ 대학에서 법률학·경제학·경영학 또는 유통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판사·검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그 밖에 대규모유통업 분야의 거래 및 분쟁조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약관 (약관법 제24조제5항)	○ 공정거래 및 소비자보호 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판사·검사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대학에서 법률학·경제학·경영학 또는 소비자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그 밖에 기업경영, 소비자권익 및 분쟁조정과 관련된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대리점 (대리점법 제14조제3항)	○ 대학에서 법률학·경제학·경영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판사·검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그 밖에 대리점거래 및 분쟁조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또한 6개 분쟁조정협의회는 연간 약 3,000건 이상의 분쟁조정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2023년도 공정거래, 대규모유통, 약관 분야의 분쟁조정사건의 처리건수는 1,571건으로 1명의 상임위원이 처리하기에는 조정사건이 과중하여 적시성 있고 심도깊은 안건 검토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임.

<최근 3년간 분쟁조정사건 처리현황>

(단위: 건, %)

구 분		처리현황 및 유형					성립률 [A/(A+B)]
		계 [A+B+C]	증가율	성립[212] [A]	불성립[213] [B]	종결[214] [C]	
2022년	소계	2,868	△2	1,202	339	1,327	78
	공정	1,119	6	423	148	548	74
	가맹	513	6	230	54	229	81
	하도급	853	△1	361	95	397	79
	유통	34	36	21	1	12	95
	약관	271	△37	141	27	103	84
	대리점	78	△7	26	14	38	65
2023년	소계	3,151	10	1,278	350	1,523	79
	공정	1,267	13	475	135	657	78
	가맹	575	12	263	62	250	81
	하도급	929	9	354	100	475	78
	유통	26	△24	13	1	12	93
	약관	278	3	137	48	93	74
	대리점	76	△3	36	4	36	90
2024년 9월	소계	2,941	24	1,107	363	1,471	75
	공정	1,192	22	463	113	616	80
	가맹	460	12	197	75	188	72
	하도급	885	25	305	89	491	77
	유통	20	11	12	3	5	80
	약관	321	74	103	76	142	58
	대리점	63	△7	27	7	29	79

(자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분쟁조정의 신속성과 전문성 향상이라는 상임위원 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도록 현행 운영 방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212) 당사자가 협의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에 대하여 수락하거나, 스스로 합의하여 조정절차 종료를 원하는 경우

213) 협의회가 제시한 조정안에 대하여 당사자가 수락을 거부하거나 분쟁 조정절차를 거부하는 경우

214) 각하, 신청취하, 폐업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없거나 조정절차의 실익이 없는 경우 등 성립 및 불성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금융위원회 소관 】

1. 핀테크 지원 사업[215]: 유사사업 등을 고려해 자부담률 인상 필요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핀테크 지원 사업”은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및 핀테크 확산 촉진을 위하여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 개발·사업화 등을 지원하고, 핀테크 관련 국제협력 강화, 핀테크 박람회 개최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6억 300만원(4.9%) 증가한 129억 3,300만원이 편성됨.

<2025년도 핀테크 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본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핀테크 지원 사업	13,821	12,330	12,933	603	4.9
-디지털 금융혁신 지원	7,119	7,042	6,950	△92	△1.3
-핀테크기업 육성지원	2,135	2,374	3,019	645	27.2
-핀테크 기반구축	1,631	1,744	1,694	△50	△2.9
-전자지급 결제대행 업무 선진화	-	-	100	100	순증
-사업 운영 지원	1,192	1,170	1,170	-	0.0

(자료: 금융위원회)

215) 세부사업: 핀테크 지원 사업(1134-301)

2) 검토의견

핀테크 지원 사업은 예산안 편성지침,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및 중소벤처기업부 유사사업의 보조율을 고려하여 디지털 금융기술 내재화, 해외진출 특화 프로그램 및 핀테크 체험 박람회 사업 수혜기업의 자부담을 인상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할 필요성이 있음.

□ 내역사업인 “핀테크기업 육성지원”은 핀테크 기업의 다양한 사업 모델과 성장단계를 반영하여 멘토링, 사업화, 해외진출 등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6억 4,500만원(27.2%) 증가한 30억 1,900만원이 편성되었음.

○ 그 중 “디지털 금융기술 내재화” 사업은 핀테크 분야 초기 창업기업에 대하여 디지털 금융기술 내재화 자금 및 핀테크 특화 보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2023년에 신규로 반영되었으며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10억 2,400만원이 편성되었음.

<디지털 금융기술 내재화 사업개요>

구분	개요
사업목적	핀테크 분야 우수 아이템을 보유한 초기창업기업의 성장 가속화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내 핀테크 기업
모집 분야	금융과 IT 기술이 융합하여 핀테크 산업으로 인정되는 모든 영역 * 지급결제, 자금중개 및 자산거래, 인슈어테크, 자산관리, 디지털자산, 인공지능, 블록체인, 클라우드, 데이터분석, 보안인증, API, 레그테크, 금융 소프트웨어, 기타 서비스 및 기술
지원 내용	1) 디지털 금융기술 내재화 자금 ○ 인건비, 기술 보호비, 기술 이전비, 개발 교육비 등 디지털 금융기술 내재화 자금 지원(최대 1억원, 평균 0.7억원)*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예정 ○ 총 사업비 구성: 디지털 금융기술 내재화 자금 80%+창업기업 대응자금 20%
	2) 핀테크 특화 육성 프로그램 ○ 기업진단, 투자 종합 컨설팅, 1:1 전문가 멘토링 등

(자료: 한국핀테크지원센터, "2024년 디지털 금융기술 내재화 사업 수혜기업 모집공고", 2024.2.2.)

○ 또한, "해외진출 특화 프로그램" 사업은 해외진출 프로그램,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 참가지원, 교육·컨설팅 등 핀테크 특화 해외진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 10억 1,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음.

<해외진출 특화 프로그램 사업개요>

구분	개요
사업목적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
지원대상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중소* 핀테크 기업 *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핀테크 기업
지원 내용	1) 해외진출 프로그램 5억 7,000만원 ○ 현지 투자자 대상 해외 Demo Day 및 투자자 네트워킹 등 프로그램 운영 ○ 현지화 바우처 지원(1천만원 규모의 바우처)
	2)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 참가 지원 3억 6,000만원 ○ 2~3개 박람회 공동관 또는 개별부스 참여 지원
	3) 역량강화 프로그램(해외 현지 전문가의 교육 및 컨설팅) 8,000만원

(자료: 한국핀테크지원센터, "2024년 디지털 금융기술 내재화 사업 수혜기업 모집공고", 2024.2.2.)

□ 또 다른 내역사업인 “핀테크 기반구축” 중 “핀테크 체험 박람회(코리아 핀테크 위크)” 사업은 핀테크 기업의 네트워킹 지원 및 디지털 금융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제고 등을 위해 정책설명회, 전시관과 세미나, 부대 및 체험행사 등을 약 3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5,000만원(△3.7%) 감소한 12억 9,500만원이 편성되었음.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4 추진계획>

구분	개요
행사명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4
일시・장소	8.27(화)~8.29(목)(3일간) /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개최목적	최신 디지털 금융 동향 및 지식 공유, 핀테크 기업의 국내·외 네트워킹 지원, 디지털 금융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제고
참석자	국내외 금융당국, 금융 유관기관, 국내외 전문가,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 글로벌 기업, VC, AC, 학생, 일반인 등
주요 프로그램	○ (개막행사, 세미나) 핀테크 정책의 성과를 공유하고, 디지털 금융 혁신에 대한 정책 방향과 최신 지식 정보를 제공 ○ (부스)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 글로벌 기업 등이 체험형 프로그램 운영 ○ (부대행사) 투자 유치, 채용, 네트워킹 기회 등 제공

(자료: 한국핀테크지원센터, “2024년도 핀테크 지원 사업 사업계획서”, 2024.1.16.)

□ 한편, 민간보조사업과 관련하여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은 보조율 조정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하면서, 자체수입이 있거나 자부담(참가비, 수수료 등)이 가능한 인증・평가, 박람회 참가지원 사업 등은 보조율을 인하하고, 유사사업 보조율과 비교하여 보조율이 높게 설정된 경우 유사사업 보조율 평균치로 보조율을 인하하도록 규정[216]하고 있음.

216) 기획재정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107.

○ 또한, 전년 대비 2025년 세부지침의 주요 개정사항으로 민간보조사업의 자부담 비율을 최소 10% 이상으로 하도록 권고하는 지침이 추가되는 등 민간보조사업자의 책임성 강화, 예산 낭비 방지 등을 위해 자부담률 인상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음.

○ 아울러 핀테크 지원 사업은 2024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2024.9.) 결과 “사업방식 변경” 판정을 받았는데, 구체적으로 해외진출 지원, 핀테크 박람회 지원, 입주공간 지원 등의 수혜자인 핀테크 기업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자부담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가 있었음.

□ 그런데 핀테크 지원 사업 중 디지털 금융기술 내재화, 해외진출 특화 프로그램 및 핀테크 체험 박람회 사업의 경우, 사업 수혜자인 핀테크 기업에 대하여 자부담이 부과되어 있지 않거나 유사사업에 비해 자부담률이 낮음.

○ 구체적으로, 디지털 금융기술 내재화 사업은 창업 후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에 대하여 사업화자금 및 창업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초기창업패키지”와 유사한데, 자부담률이 20%로 초기창업패키지의 자부담률(30%)에 비해 낮게 설정되어 있음.[217)]

217) 금융위원회는 디지털 금융기술 내재화 사업이 극초기 핀테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나, 금융위원회 사업과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모두 창업 3년 이내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을 통해서도 핀테크 분야 기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두 사업을 달리 취급할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임.

〈디지털 금융기술 내재화 사업과 초기창업패키지의 총사업비 구성 비교〉

구분	총 사업비[1]	정부지원 사업비	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	
			현금	현물
디지털 금융기술 내재화	100%	총 사업비의 80% 이하	총 사업비의 10% 이상	총 사업비의 10% 이하
	1억원	8,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초기창업패키지	100%	총 사업비의 70% 이하	총 사업비의 10% 이상	총 사업비의 20% 이하
	1억원	7,0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주 1) 기재된 금액은 사업비 지원 예시임.
(자료: 한국핀테크지원센터, "2024년 디지털 금융기술 내재화 사업 수혜기업 모집공고", 2024.2.2. 및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도 초기창업패키지 창업기업 모집 공고", 2024.1.30.)

○ 또한, 해외진출 특화 프로그램은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진출 프로그램,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등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의 "글로벌 액셀러레이팅"과 유사한데, 동 사업의 경우에도 자부담률이 20%로 글로벌 액셀러레이팅의 자부담률(30%)에 비해 낮게 설정되어 있음.[218]

〈해외진출 특화 프로그램과 글로벌 액셀러레이팅의 총사업비 구성 비교〉

구분	총 사업비[1]	정부지원 사업비	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	
			현금	현물
해외진출 특화 프로그램	100%	총 사업비의 80% 이하	총 사업비의 20% 이상	-
	1,250만원	1,000만원	250만원	-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100%	총 사업비의 70% 이하	총 사업비의 10% 이상	총 사업비의 20% 이하
	2,857만원	2,000만원	286만원	571만원

주 1) 기재된 금액은 사업비 지원 예시임.
(자료: 금융위원회 제출자료 재구성 및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도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 창업기업 모집 공고", 2024.4.29.)

218)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사업에 비해 해외진출 특화 프로그램의 현금 비중이 더 높다는 입장이나, 총 사업비 중 현금과 현물 부담을 더한 금액을 자기부담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은 업력 7년 이내의 창업기업(신산업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은 업력 10년 이내)만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금융위원회 사업은 업력 기준이 없다는 점에서 오히려 자부담률을 높게 설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 아울러, 핀테크 체험 박람회 사업은 현재 참가기업에 대하여 참가비 및 부스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지 아니함.[219)220)]

□ 이처럼 예산안 편성지침 및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에도 불구하고 핀테크 지원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유사사업에 비해 자부담률이 낮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 금융위원회는 디지털 금융기술 내재화, 해외진출 특화 프로그램 및 핀테크 체험 박람회 사업 수혜기업의 자부담률을 인상하여 예산을 절감할 필요성이 있음.

219) 부스 디자인 및 설치비, 인터넷 사용료, 기자재 대여비 등은 개별 부담

220) 금융위원회는 2025년부터 중소기업 외의 국내 금융회사 및 대기업, 국내 사업장이 없는 해외기업에 대해 부스 사용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함.

2. FATF 교육기구 운영 지원[221]: 실집행에 근거한 예산 편성 및 회원국 간 공동부담 방안 마련 필요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FATF 교육기구 운영 지원” 은 FATF 교육기구(FATF TRAIN) 운영의 효과적인 추진을 통한 자금세탁방지 분야의 국제적 리더십 강화 및 영향력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000만원(1.0%) 증가한 20억 1,800만원이 편성됨.

<2025년도 FATF 교육기구 운영 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본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FATF 교육기구 운영 지원	2,220	1,998	2,018	20	1.0

(자료: 금융위원회)

□ 동 사업은 2016년 금융정보분석원(FIU) - FATF(OECD) - 부산시 3자간 양해각서(MOU)에 따라 설치된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교육기구(FATF TRAIN: Financial Action Task Force TRAining INstitute, 부산광역시 소재)의 운영 지원을 위한 인건비·운영비 예산으로, 우리 정부는 국제부담금(340-02목)으로 이를 부담하고 있음.[222]

221) 세부사업: FATF 교육기구 운영 지원(1331-304)

222) 2016년 출범 당시 교육·연구기구로 출범하였으나, 2020년 4월 MOU 개정을 통해 연구기능을 삭제하고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교육전담기구로 변경하였음.

2) 검토의견

금융위원회는 FATF TRAIN 운영비용의 세부 집행내역 및 계획을 제출받아 총액 기준이 아닌 항목별 실집행액에 근거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 조속히 MOU 개정을 추진하여 FATF TRAIN 운영비용의 회원국 간 공동부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FATF 교육기구 운영 지원 사업의 2025년도 예산안 산출내역을 보면, FATF TRAIN 원장 및 전문인력 등에 대한 인건비 12억 3,000만원, 교육프로그램 및 사무실·행정비용인 운영비 7억 8,800만원으로 구성되어 총 20억 1,8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예산안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내용	예산안
인건비		FATF TRAIN 원장 및 전문인력 등에 대한 인건비	1,230
운영비	프로그램 비용	외부강사 및 ODA 참가자 등 여비	370
		프로그램 준비 및 집행비 등 교육 운영비	
	사무실·행정비용	사무실 운영을 위한 간접비 및 IT 비용 등 기타 운영비	418
계			2,018

(자료: 금융위원회)

□ 2024년 및 2025년도 예산(안)의 FATF TRAIN 예산부담 구조를 보면, MOU 체결 당사자인 3자 중 금융정보분석원이 2024년과 2025년도 예산안에 각각 19억 9,800만원과 20억 1,800만원을, 부산시가 임차료 및 관리비 등에 매년 5억 4,500만원씩 부담하고 있고, FATF는 일부 교육 시 투입되는 객원 강사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예산 부담 의무가 없음.

<2024·2025년도 예산(안) FATF TRAIN 예산부담 구조>

구분	2024년도 예산		현물·인력
금융정보분석원	19억 9,800만원		없음
부산시	관리비	1억 6,200만원(월 1,400만원)	행정인력으로 1명 파견[2]
	임차료	3억 7,200만원(월 3,100만원)	
	통신비[1]	1,100만원(월 90만원)	
FATF	없음		없음
구분	**2025년도 예산안**		**현물·인력**
금융정보분석원	20억 1,800만원		없음
부산시	관리비	1억 6,200만원(월 1,400만원)	행정인력으로 1명 파견[2]
	임차료	3억 7,200만원(월 3,100만원)	
	통신비[1]	1,100만원(월 90만원)	
FATF	없음		없음

주 1) 통신비: 사무실 전화기, 업무용 휴대폰 기기값 및 통신료
주 2) OECD 직원으로 파견 계약

(자료: 금융위원회)

□ 금융정보분석원의 FATF TRAIN의 운영 지원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예산은 매년 자발적 부담금 성격의 국제부담금(340-02목) 비목으로 편성·집행되고 있음.

○ 국제부담금과 관련하여,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은 자발적 부담금은 협력사업의 타당성, 분담금 납부를 통한 성과 등을 분석·검토하여 필요 최소한도로 반영하도록 하고, 사업 연장에 따라 분담금을 계속 납부하게 되는 경우는 사업 연장의 타당성을 엄격히 검토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분담금 납부 현황을 전면 재검토하여 연례적·답습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분담금 편성은 지양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동 사업과 관련하여 국회는 2022회계연도 결산, 2022·2024년도 예산안 등 심사 시 국제부담금의 적정 수준 조정, 예산안 산출의 정확성 제고 등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음에도, 금융위원회는 2025년도 예산안에서도 전년과 유사한 수준의 인건비 및 운영비를 편성하는 등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2023~2025년도 예산(안) 내역별 세부 산출근거>

(단위: 백만원)

구분		내용	2023년		2024년	2025년
			예산·결산	실집행	예산액	예산안
인건비		FATF TRAIN 원장 및 전문인력 등에 대한 인건비	1,210	968	1,210	1,230
운영비	프로그램 비용	외부강사 및 ODA 참가자 등 여비	570	479	250	370*
		프로그램 준비 및 집행비 등 교육 운영비	150	119	250	
	사무실·행정비용	사무실 운영을 위한 간접비 및 IT 비용 등 기타 운영비	290	382	288	418*
계			2,220	1,949	1,998	2,018

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간접비용(보험.법률 자문 등)을 2024년까지는 프로그램 비용에 편입했으나, 2025년부터 이를 행정비용으로 분류함에 따라 전년 대비 차이가 나타남.

(자료: 금융위원회)

○ 이는 금융위원회가 OECD FATF의 결산 이후 FATF로부터 각 항목별 집행총액만을 통보[223]받고, 차년도 사업계획의 경우 예산안이 확정된 이후 연초에 FATF에서 수립한 계획을 통보받고 있기 때문

223)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통상 차년도 5~6월에 OECD FATF로부터 집행총액을 통보받고 있음.

으로,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프로그램별 소요비용이나 FATF 인건비의 집행내역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예산편성·결산 방식을 통해서는 납부한 분담금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없고, 차년도 예산안 편성 시에도 실집행 및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근거한 예산산출이 어려움.

□ 또한, FATF TRAIN 교육 프로그램에는 자금세탁방지 관련 다수의 국제기구가 참여하고 있음[224]에도 운영비를 한국 정부만 부담하고 있다는 점에서 FATF 회원국 간 FATF TRAIN 운영비의 공동부담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225]

224) <2023년 FATF TRAIN 교육 프로그램 현황>

구분	기간	교육대상	교육 인원(명)
STC 19	2월 13~17일	CFATF	37
STC 20	3월 5~16일	MENAFATF	39
STC 21	4월 10~14일	GIABA/GABAC	32
STC 22	5월 29~6월 2일	MONEYVAL	34
STC 23	7월 17~21	FATF	33
STC 24	9월 11~15	LE Framework	38
STC 25	11월 6~10	APG	39
STC-TtT	11월 27~12월 1일	Train the Trainers	47

(자료: 금융위원회)

225) 2020회계연도 결산심사 시 FATF 교육연구기구의 운영비용을 회원국의 하나인 대한민국 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FATF TRAIN에 납부하는 국제부담금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시정요구사항이 의결된 바 있음.

구분	2020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명	(20)코로나19에 대응한 사업계획 수립 및 국제부담금 재조정 필요
지적사항	○ 2020년 예산 실집행률은 13.3%에 불과하여 실적이 저조하였음. ○ 그 동안 국회 예·결산 심사과정에서 FATF 교육연구기구에 납부하는 국제부담금 수준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시정요구가 있었으며, 운영비용을 회원국의 하나인 대한민국 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시정요구사항	○ 금융위원회는 FATF TRAIN이 코로나19에 대응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분야의 교육을 철저하게 실시하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FATF TRAIN에 납부하는 국제부담금을 재조정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주의)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한국의 재정부담을 축소하고 회원국 부담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 입장이나, 2024년 10월 현재까지 회원국 간 실질적인 공동부담과 관련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226]

○ 이는 구체적인 사업 타당성 및 성과에 대한 분석·검토 없이 MOU에 따라 연례적으로 FATF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편성하여 국제부담금으로 납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므로, 금융위원회가 MOU 개정에 관한 제안 또는 의견 제시에 그치는 것이 아닌, 본격적인 MOU 개정을 통해 회원국 간 비용분담 및 예산편성·결산 방식의 개선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227]

□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FATF TRAIN 운영비용의 세부 집행내역 및 계획을 제출받아 총액 기준이 아닌 항목별 실집행액에 근거하여 예산안을 편성하는 등 사업 타당성 및 분담금 납부의 성과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검토를 실시하고, 조속히 MOU 개정을 추진하여 FATF TRAIN 운영비용의 회원국 간 공동부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26) 금융위원회는 FATF 총회 시마다 타 회원국에 자발적 기여를 요청하고 있으나 이를 강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FATF TRAIN의 교육에 필요한 객원 강사의 인건비 등은 다른 회원국과 FATF 본부에서 부담하는 경우가 있으며, FATF TRAIN 시설에서 다른 회원국과 FATF 본부의 재원으로 FATF의 다른 교육 프로그램(ICRG 평가자 교육 등)도 실시되고 있다고 설명함.

227) FATF 교육기구와 관련하여 2020년 MOU를 개정한 바 있으나, 회원국 간 비용부담 구조 관련 변경사항은 없었음.
-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MOU의 개정 주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으나, MOU의 효력은 서명한 날의 다음 달 초일부터 3년으로 MOU 개정이나 효력 정지에 대해 고려하지 않는 경우 3년 단위로 추가 연장되며 양측이 상호 합의 시 서면으로 수정이 가능하도록 규정(MOU 제11조)하고 있음.

3.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228]: 이용자의 상환 의지 유지 방안 마련을 통한 사업 효율성 및 성과 제고 필요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은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최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상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함)에 출연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560억원이 편성됨.

<2025년도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최저신용자 한시특례보증)	28,000	56,000	56,000	-	-

(자료: 금융위원회)

□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은 연체경험 등으로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마저도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의 대부업 등 고금리대출 피해 예방을 위해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480억원의 재원을 마련하여 2022년 9월 출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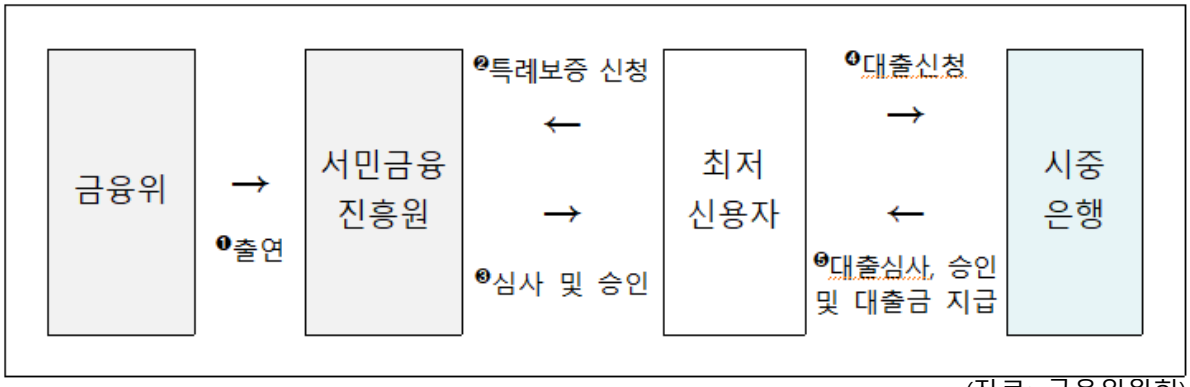
○ 지원 대상은 연체경험 등의 사유로 햇살론15 보증이 거절된 자로서

228) 세부사업: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1831-881)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 이하[229]이고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자임. 대출한도는 최초 이용 시 최대 500만원 이내이고, 6개월 이상 정상이용 시 추가대출 1회(500만원 한도) 이용자격을 부여하여 최대 총 1,000만원 이내임.

○ 대출을 원하는 최저신용자가 진흥원에 특례보증을 신청하여 심사결과 승인되면, 최저신용자는 이를 근거로 시중은행에 대출을 신청하고,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심사하여 이를 승인하면 대출금을 지급하는 절차로 진행됨.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지원구조>



(자료: 금융위원회)

□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이 출시된 이후 2022년에는 재원 480억원 중 200억원을 활용하여 3.4만건, 1,002억원 규모를 공급하였고, 2023년에는 2022년 예산 중 미활용 분 280억원 및 본예산 280억원 등 총 560억원을 활용해 11.2만건, 2,924억원 규모를 공급하였음.

229) 2024년 4월 기준 KCB 675점 또는 NICE 724점 이하에 해당

○ 2024년의 경우 56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9월말 기준 4.6만건, 1,219억원 규모를 공급하였음.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공급 현황>

(단위: 명, 억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9월말)
예산액	480[1)]	280[2)]	560
지원인원	33,717	98,015	46,606
보증공급액	1,002	2,924	1,219

주1) 예산액 480억원 중 200억원만 활용
주2) 본예산 280억원과 2022년 미활용 분 280억원을 합산한 총 560억원 활용

(자료: 금융위원회)

2) 검토의견

금융위원회는 보증 제공 이후에도 이용자가 지속적인 상환 의지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상품의 건전성을 높이고 사업의 효율성과 성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금융위원회와 진흥원은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공급 규모를 당해 연도에 편성된 예산액을 보증비율과 예상사업손실률로 각각 나누어 산출되는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음.

○ 2024년의 경우 예산액은 560억원으로 보증비율 100%와 예상사업손실률 20%를 각각 나눈 2,800억원이 연간 보증공급금액에 해당함.

<2024년도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연간 보증공급금액 산출내역>

연간 보증공급금액 2,800억원 × 0.2 (예상사업손실률 20%) × 1 (보증비율 100%) = 예산액 560억원

(자료: 금융위원회)

□ 2025년 예산안의 경우 2024년과 동일하게 예산안에는 560억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예상사업손실률을 33%로 예상하여 2025년 중 보증공급금액 예상 규모는 2024년 대비 1,100억원 감소한 1,700억원 규모로 산출하였음.

○ 금융위원회는 2022년부터 금리인상·경제상황 악화 등으로 금융회사가 건전성 관리를 위해 최저신용자 금융지원을 배제하고 있어 부실위험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고, 저신용·저소득자는 경기악화 시 상환 능력이 저하되어 부실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2024년 이후 예상 사업손실율이 증가하였다는 입장임.

<2025년도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연간 보증공급금액 산출내역>

연간 보증공급금액 1,700억원 × 0.33 (예상사업손실률 33%) × 1 (보증비율 100%) = 예산액 560억원

(자료: 금융위원회)

□ 구체적으로 보면, 금융위원회는 예상사업손실률을 예상되는 대위변제율에 구상채권회수 비율, 보증료 수입 비율, 사업운영비 등을 반영하여 산출하고 있음.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당초에는 대위변제율을 40%로 예상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 2025년도 예산안에서는

예상 대위변제율을 53%로 설정하여 예상사업손실률을 산출하였다는 입장임.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예상사업손실률 산출 근거>

· (2024년 이전) **예상사업손실률 20%** = 대위변제율 40% - 구상채권회수 10% - 보증료 수입 12% + 사업운영비 3% · (2025년 예산안) **예상사업손실률 33%** = 대위변제율 53% - 구상채권회수 11% - 보증료 수입 12% + 사업운영비 3%

(자료: 금융위원회)

○ 실제 진흥원의 대위변제액 지출 현황을 보면, 2023년 575억원, 2024년(9월말 기준) 805억원으로 총 1,380억원을 지출함. 이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금융위원회가 진흥원에 출연한 1,320억원 대비 104.5%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2024년 9월 기준 누적 대위변제율[230]은 26.2%에 달하고 있음.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대위변제율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9월말
연도중 공급액	1,002	2,924	1,219
누적 공급액(A)	1,002	3,926	5,145
대위변제발생액	0.1	575	805
누적 대위변제발생액(B)	0.1	575	1,380
누적 대위변제회수액(C)	-	4	31
누적대위변제율[(B-C)/A]	0.01	14.5	26.2

(자료: 금융위원회)

230) 누적 대위변제율 = (누적 대위변제발생액 - 누적 대위변제회수액) / 누적 보증공급액

○ 이용자 측면에서 보면,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이용자 수 대비 대위변제발생 건수는 2023년 대비 2024년에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추가대출 이용 인원 비중은 같은 기간 대비 급락하는 등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상품의 건전성이 크게 낮아지고 있는 실정임.

- 참고로,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은 3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대위변제가 이루어짐. 한편 대출 이후 6개월 이상 정상이용 시 500만원 범위에서 추가대출을 이용할 수 있음.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이용자 현황>

(단위: 명, 건,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9월말
이용자 수	33,717	98,015	46,606
대위변제발생 건수[1)] (이용자수 대비 비율)	3 (-)	21,904 (22.3)	30,931 (66.4)
추가대출 이용 인원[2)] (이용자수 대비 비율)	-[3)] (-)	22,511 (23.0)	9,633 (20.7)

주1) 각 기간 중 발생한 대위변제발생 건수
주2) 6개월 간 성실납부로 추가대출을 이용한 인원을 의미
주3)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22.9월에 출시하여, 6개월 이상 성실납부자는 '23.3월부터 발생함

(자료: 금융위원회)

○ 아울러, 대위변제 회수액의 경우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한 대위변제액 회수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짐을 감안하더라도 유사한 상품인 햇살론15와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햇살론15 대위변제 회수액 비교>

(단위: 억원,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특례	햇살론	특례	햇살론	특례	햇살론	특례[1)]	햇살론[1)]
대위변제 발생액(A)	-	2,802	0.1	2,874	575	5,544	805	3,104
대위변제 회수액(B)	-	109	-	306	4	495	31	359
비율(B/A)	-	3.89%	-	10.65%	0.70%	8.93%	3.85	11.57%

주1: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은 9월말, 햇살론15는 6월말 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이 처음 도입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당시에도, 정책 대상자의 특성, 도덕적 해이 문제 및 유사 정책서민금융상품의 부실률 사례 등을 감안할 때 예상사업손실률이 20%보다 더 높게 나타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231)]이 있었음.

○ 특히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상품은 이와 유사한 햇살론15와 달리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록 경험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신청 당시 연체사유가 해소된 경우면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부실률이 높아질 여지가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상품이 출시된 이후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상품의 대위변제율과 이용자 중 3개월 이상 연체한 비율이 급증하는 등 건전성이 악화되어 동일한 재

23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보고서(국회예산정책처)

원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상품 공급 규모가 축소되고 있음. 이로 인해,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최저신용자에 대한 여신 공급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임.

○ 2024년 9월말 기준으로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공급액은 1,219억원으로, 당초 계획한 공급액 2,800억원 대비 43.5%를 공급하는데 그쳤는데, 금융위원회는 안정적 재원관리와 지속가능한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위해 2023년 12월부터 상환능력 심사 시 신용정보, 비금융정보 등을 활용하는 등 심사기준을 일부 조정하여 운영하였기 때문이라는 입장임.

○ 2025년의 경우 앞서 살펴본대로 공급 예정 금액은 2024년 대비 1,100억원(39.3%) 감소한 1,700억원에 불과하는 등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공급 규모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임.

□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상품은 연체경험 등의 사유로 정책서민금융상품(햇살론15 등)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가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지원하려는 것이나, 대위변제율 및 연체율 증가로 인해 동일한 재원 하에서 공급규모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낮추고 사업 성과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함.

○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상환능력 심사 강화 등 대출 이용 전 부당한 목적이나 상환의지가 낮은 이용자에 대한 보증을 제한하는 것 뿐만

아니라 보증 제공 이후에도 지속적인 상환 의지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하여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상품의 건전성을 높이고 사업의 효율성과 성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대위변제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대위변제 지급액을 적극적으로 회수하는 노력도 함께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임.

4.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232]: 기여금 지원 예산 적정수준 감액 필요 등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은 청년의 자산형성지원을 위해 청년의 본인납입액에 비례하여 국가가 기여금을 지급하는 상품인 “청년도약계좌”를 운영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진흥원에 출연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67억 8,900만원(1.8%) 증가한 3,750억원이 편성됨.

<2025년도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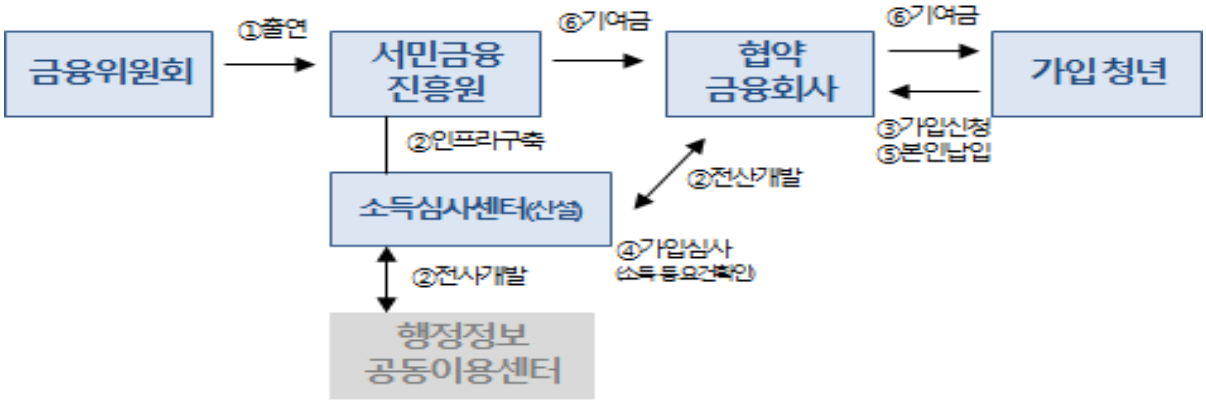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청년도약계좌)	367,794	368,211	375,000	6,789	1.8
- 기여금 지원	344,037	359,043	362,804	3,761	1.0
- 인프라 구축	23,610	8,664	11,692	3,028	34.9
- 청년도약계좌 운영 지원	147	504	504	-	-

(자료: 금융위원회)

□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 출시된 상품으로,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해 납입금을 납입(월 70만원 한도)하면, 은행에서 지급하는 이자에 더해 금융위원회로부터 출연을 받은 진흥원이 매월 본인 납입액의 3.0%~6.0%의 기여금을 지급하는 상품임.

232) 세부사업: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1831-882)

〈청년도약계좌 사업 세부절차〉



(자료: 금융위원회)

□ 청년도약계좌는 2022년 2월 출시되어 2024년 초 종료된 청년희망적금 사업과 사업목적 및 사업방식 등에 있어 유사성이 있으며, 가구소득 기준, 기여금률, 만기, 납입한도, 기여금 지급방식 등에 있어서는 일부 차이가 있음.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 비교〉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청년희망적금</th><th colspan="4">청년도약계좌</th></tr>
<tr><td rowspan="2">가입 기준</td><td>개인소득</td><td>총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td><td colspan="4">총급여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td></tr>
<tr><td>가구소득</td><td>없음</td><td colspan="4">중위소득 250% 이하</td></tr>
<tr><td rowspan="6">기여금</td><td rowspan="6">1년차 2% 2년차 4%</td><td colspan="2">개인소득</td><td>산출식</td><td>기여금</td></tr>
<tr><td>총급여</td><td>종합소득</td><td>(매칭한도×비율)</td><td>한도</td></tr>
<tr><td>2,400만</td><td>1,600만</td><td>월40만원×6.0%</td><td>2.4만원</td></tr>
<tr><td>3,600만</td><td>2,600만</td><td>월50만원×4.6%</td><td>2.3만원</td></tr>
<tr><td>4,800만</td><td>3,600만</td><td>월60만원×3.7%</td><td>2.2만원</td></tr>
<tr><td>6,000만</td><td>4,800만</td><td>월70만원×3.0%</td><td>2.1만원</td></tr>
<tr><td>7,500만</td><td>6,300만</td><td colspan="2">기여금×, 비과세만</td></tr>
<tr><td rowspan="3">특징</td><td>만기</td><td>2년</td><td colspan="4">5년</td></tr>
<tr><td>납입한도</td><td>월 50만원</td><td colspan="4">월 70만원</td></tr>
<tr><td>기여금 지급</td><td>만기 시</td><td colspan="4">매월</td></tr>
</table>

주: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 확대 방안(2024.8.29.)에 따라 매칭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70만원 한도)에 대해서는 3.0% 기여금 지급 예정

(자료: 금융위원회)

2) 검토의견

(1) 기여금 지원 예산 적정 수준 감액 필요

2025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기여금 지원 예산 은 지난 2년 간 예상 지출 규모 대비 집행 실적 추이를 감안할 때 그 규모가 과다한 측면이 있다고 보이므로, 적정수준으로 감액될 필요가 있음.

□ 기여금 지원 예산은 청년도약계좌 가입 청년이 납입한 금액에 개인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기여금을 매칭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는 3,628억 4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2023년 신규 출시된 것으로, 기여금 지원 예산은 2023년도에 3,440억 3,700만원, 2024년도에 3,590억 4,3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음.

○ 2023년도에 편성된 기여금 지원 예산은 전액 진흥원에 출연금으로 교부되었으며, 2024년도에 편성된 예산은 8월말 기준 3,003억 3,600만원이 출연금으로 교부되어 총 6,443억 7,300만원이 진흥원으로 출연되었음.

<기여금 지원 예산(출연금) 교부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3년	2024년 (8월말)	2025년 (예산안)	합계
예산액(안)	344,037	359,043	362,804	1,065,884
교부액	344,037	300,336	-	644,373
집행률	100%	83.6%	-	-

(자료: 금융위원회)

□ 다만, 이러한 출연금은 진흥원에 교부된 이후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에 맞춰 실제 지급되는 구조이며, 이에 따른 실집행액은 2023년 432억 2,200만원, 2024년(9월말 기준) 2,138억 4,700만원 등 총 2,570억 6,900만원으로 교부된 출연금 대비 39.9%에 불과함.

<기여금 지원 예산(출연금)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3년	2024년 (9월말)	합계
교부액	344,037	300,336	644,373
실집행액	43,222	213,847	257,069
집행률	12.5	71.2	39.9

(자료: 금융위원회)

○ 이러한 저조한 실집행률은 금융위원회가 예산안 편성 당시 예측한 가입자 수가 실제 가입자 수에 비해 과도하게 설정되어, 금융위원회가 사업방식을 중간에 변경함에 따라 기여금 집행액이 일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 대비 기여금 지급액이 적었기 때문으로 보임.

□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금융위원회가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당시 예

측한 기여금 지급 규모에 비해 실제 지급 규모가 크게 저조하였음.

○ 금융위원회는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심사 당시 2023년 6월 청년도약계좌 출시 이후 연말까지 306만명이 가입하여 3,440억원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였음. 그러나 2023년말 기준 실제 가입자 수는 51.1만명으로, 이들에 대한 기여금 지원액은 총 432억원 2,200만원만 집행되어 당초 예상에 비해 크게 저조한 실적을 보인 바 있음.

<2023년 청년도약계좌 사업 예산·실집행 비교>

구분	예산(예측치)	실집행
가입자 수	306만명 (100%)	51.1만명 (16.7%)
총 기여금 지급액	3,440억 3,700만원 (100%)	432억 2,200만원 (12.6%)

(자료: 금융위원회)

□ 둘째, 2024년도 예산안의 경우 정부가 제출한 이후 및 국회가 이를 심의하여 확정한 이후에 사업방식을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기여금을 지급한 규모는 당초 예상한 규모에 미치지 못하였음.

○ 2024년도의 경우, 정부가 2023년 9월 1일 국회에 제출한 2024년 예산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023년 가입자 및 2024년 신규 가입자의 기여금 지급을 위해 4,890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음.

- 그런데 이 과정에서,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출시 당시[233] 청년희망적금 가입자가 청년도약계좌에 중복 가입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예산안 제출 이후인 2023년 10월 청년희망적금 만기환급금에

233)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청년도약계좌 6.15일부터 운영개시”, 2023. 6. 14.

대해서는 월 70만원의 납입한도를 넘어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할 수 있도록 하고, 납입금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지급하도록 사업방식을 변경하였음.

- 이에 따라 2023년말 가입자를 60만명으로 추산하여 이들에 대한 기여금 1,292억원, 2024년 중 신규 가입자를 97.5만명으로 추산하여 이들에 대한 1,273억원,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중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를 143만명으로 추산하여 이들에 대한 5,261억원 등 총 7,826억원을 2024년도에 지급할 예정[234]이라고 밝힌 바 있음.

<2023년~2024년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급소요 산정내역>

구분		세부내용	
예상 가입자수		301만명	
	2023년	60만명	(7~8월) 평균 19만명
			(9~12월) 평균 5.6만명
	2024년	241만명	(신규 및 재가입자) 평균 8.1만명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143만명
1인당 월 기여금		22,100원	
확보예산		8,330억원 ('23년 잔여예산 3,440억원+ '24년 4,890억원)	
	2023년 지급규모	473억원	2023년 가입자 60만명 x 6개월분 가중평균 = 473억원
	2024년 지급규모	7,826억원	2023년 가입자 60만명 x 12개월분 = 1,292억원
			2024년 가입자 97.5만명 x 12개월분 가중평균 = 1,273억원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143만명 x 17개월분 = 5,261억원 *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선납분에 대한 정부기여금 일시 지급 반영

주: 2024년 예산안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를 인용함.

(자료: 금융위원회)

- 다만, 2024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최종 심의 과정에서 가입자 규모 등 수요 예측이 과다하다는 지적에 따라 1,300억원이 감액된 3,590억 4,300만원으로 확정되었음[235].

234) 2024년도 예산안 정무위원회 예비심사검토보고서

○ 2024년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도 금융위원회는 ‘2024년도 예산 부대의견’[236]에 따라 ‘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방안’(2024.3.12.),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 확대 방안’(2024.8.29.)를 발표하는 등 청년도약계좌 운영 방식을 추가적으로 변경한 바 있음.

- ‘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방안’(2024.3.12.)은 ① 가구소득 요건을 완화(기존 중위소득 180% → 250% 이하)하는 등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② 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한 후 중도해지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고 정부기여금도 일부 지급하는 내용임.
-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 확대 방안’(2024.8.29.)은 모든 소득구간에서 매칭한도를 납입한도까지 확대하여 기존 월 최대 2.4만원, 5년간 최대 144만원 수준인 기여금 지원 규모를 향후 월 최대 3.3만원, 5년간 최대 198만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임.
- 이러한 사업방식 변경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에 실제 집행된 내역을 살펴보면, 9월말 기준 가입자는 당초 예상에 미치지 못하는 146만명에 불과하고, 실집행액은 2024년도 예산액 대비 71.2%에 해당하는 2,138억 4,700만원[237]임.

---

235) 이에따라 2024년 예산이 확정된 이후 기여금 지급 가능 규모는 2023년도 출연된 기여금 지원 예산 중 잔액인 3,008억원, 2024년 확정 예산 3,590억원을 합한 약 6,598억원임.

236) 정부는 청년도약계좌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정 예산 하에서 청년들의 수요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필요시 지원대상 확대, 상품구조 조정 등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한다.

237) 아울러, 2023년도 진흥원에 출연되었으나 집행되지 못한 약 3,008억원은 2024년에 집행되지 못하고 진흥원에 유보되어 있는 상황임.

□ 이와 같이 기여금 지원 예산이 연례적이고 구조적으로 과다 편성된 결과 실제 집행되지 않은 예산은 진흥원에 유보되어 있거나, 다른 세부사업의 부족분으로 내역변경되는 등 당초 국회의 예산안 심의 취지와 다르게 운용되고 있음.

○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 확대 방안’(2024.8.29.)에 따라 월평균 기여금이 기존 2.1만원에서 2.55만원으로 증가하고, 2024년 말까지 총 160만명이 가입할 것을 전제로 2024년말 기준 진흥원에 유보되어 있는 잔여예산을 총 2,843억원 규모로 예상하고 있음.

- 다만, 기여금 지원 확대방안 적용 시기와 범위가 관계부처 협의를 이유로 2024년 10월 기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238], 2023년부터 교부된 정부 출연금에 대한 이자수익이 약 169.4억원 발생하였으며,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일시납입이 종료된 2024년 4월말 이후에는 월평균 정부기여금 지급액이 200억원 이하인 추세를 감안할 때, 2024년 연말 기준 약 3,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실제로 집행되지 못하고 진흥원에 유보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됨.

238)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 확대 방안’(2024.8.29.) 발표 당시 세부추진방안(적용시기, 범위 등)을 관계부처·기관 등과 협의하여 연내 조속히 안내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2024년도 기여금 지원 예산(출연금) 월별 실집행 현황>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소계
가입자수(계좌개설)(천건)	39	154	355	167	78	21	75	38	21	948
월평균납입액(천원)	565	2,213	2,180	1,022	637	581	581	583	584	8,946
정부기여금 지급액(억원)	94	455	636	307	198	181	194	196	198	2,459
일시납입자 기여금 지급액(억원)	-	351	490	139	19	-	-	-	-	1,000

주: 청년희망적금 만기자의 청년도약계좌 일시금 납입 기간은 2024년 2월부터 4월까지임(다만, 일시납입자 계좌개설 기간 중 5월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서 5월에 일시납입자에게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었음).

(자료: 금융위원회)

○ 한편, 금융위원회는 2024년 4월 기여금 지원 예산 3,590억 4,300만원 중 561억원을 청년희망적금 사업으로 내역변경하였음.

- 금융위원회는 2024년 2~3월에 청년희망적금 가입유지자 전원의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예산 지급규모가 최종 확정[239]되었고, 그 결과 예산 부족분이 발생하여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내역변경[240]하였다는 입장임.

239) 청년희망적금은 기여금을 만기 시에 일시 지급하는 형식임.

240) 내역변경이란 단위사업 내에서 동일목을 세부사업 간에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사안의 경우 동일한 '금융소비자보호' 단위사업 내에서 세부사업 간 동일목(사업출연금 350-02)을 변경한 것으로 내역변경에 해당함.

<2024년 청년도약계좌 및 청년희망적금 사업 내역변경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세부사업명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희망적금) (2024년 종료 사업)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
사업코드	1831-880	1831-882
국회 확정 예산	165,783	368,211 (기여금 지원: 359,043)
내역변경	+56,050	△56,050 (기여금 지원: △56,050)
예산 현액	221,788	312,161 (기여금 지원: 302,993)

(자료: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2024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청년도약계좌 예산안의 원안 유지를 주장[241]하였으나, 최종적으로 1,300억원이 감액되어 확정된 이후, 561억원을 추가로 다른 세부사업으로 내역변경하였다는 점을 볼 때, 연례적이고 구조적인 기여금 예산의 과다 추계 및 편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금융위원회는 2025년도 예산안에서도 기여금 지원을 위해 3,628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올해 말 예상되는 기 출연 잔액 약 3,000억원을 감안할 경우 예산안이 원안대로 확정되면 2025년에 약 6,600억원을 기여금 지급 재원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됨.

○ 금융위원회는 2025년도에 예상 지원대상 인원 230만명, 월평균 기여금 2.55만원으로 추산하여 2025년에 지급필요액이 4,763억원에서

241) 제21대국회 제410회임시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회의록 참조

5,584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2024년도말 예산 잔여액 및 금리 인하 등 시장여건 변동에 따른 지급준비금[242]을 감안하여 총 3,628억 400만원을 편성하였다는 입장임.

<2025년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급소요 산정내역>

구분	세부내용
예상 가입자수	· 2025년 예상 지원대상 인원: 230만명 ※ 2024년말 예상 가입자수: 160만명(2024년 10월말 기준 153만명) 2025년에 70만명 신규 가입 예상
1인당 월 기여금	2.7만원
2025년 예상 기여금 지급액 산출내역	· 230만명 × 가입유지율 × 2.55만원 × 1~12개월 + a(기여금 지원 적용 시기) = 4,763~5,584억원
2025년예산안 산출 내역	· 지급 필요액 4,763~5,584억원 - 잔여예산 2,843억원 + 지급준비금 = 3,628억원

(자료: 금융위원회 제출자료 재구성)

□ 다만, 지난 2년 간 예산안 편성 및 심사 과정에서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기여금 지급 예상액 대비 실제 지급한 기여금 규모가 크게 저조했던 추이를 감안할 때, 위와 같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규모도 과다 추계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 참고로, 2024년도에 연말까지 예상되는 연간 기여금 지급액은 약 3,000억원으로, 이 중 올해 종료된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일시 납입금으로 인한 일시적 효과(1,000억원)를 제외하면 2024년에 기존 가입자 및 신규 가입자에 대해 지급한 기여금은 약 2,000억원임.

242) 2025년도에 시장금리가 하락할 경우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에 따른 준비금을 의미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2025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기여금 지원 예산 3,628억 400만원은 지난 2년 간 예상 지출 규모 대비 집행 실적 추이를 감안할 때 그 규모가 과다한 측면이 있다고 보이므로, 적정수준으로 감액될 필요가 있을 것임.

○ 참고로, 기획재정부의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은 일반법령출연금[243]의 경우 출연금 관련 사업의 예산안은 사업출연금 집행 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미집행분과 목적외 사용분은 제외하고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민원상담 인력 감축을 통한 인프라 구축 예산 감액 필요

현재 민원상담 용역은 2024년 연말에 종료될 예정이므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적정 규모의 민원상담 인력에 대한 논의를 거쳐 감축될 인력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감액할 필요가 있음.

□ 인프라 구축 예산은 소득심사센터, 가입자 지원 및 상담센터 운영 등 가입심사 지원과 가입자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는 116억 9,2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이 중 청년도약계좌 가입 상담을 위한 민원상담 용역비로 59억 2,500만원, 관련 경상운영비로 콜센터 임차료를 포함하여 29억 500

243) 기여금 지원 예산의 비목은 사업출연금(350-02)으로, 일반법령출연금에 해당함.

만원이 편성되었음. 청년도약계좌 민원상담 용역은 연간 200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산정하여 편성하였으며, 서울 중구 소재 건물의 2개 층을 임대하여 콜센터를 운용하고 있음.

<청년도약계좌 민원상담 용역 및 콜센터 임차 관련 현황>

구분	민원상담 용역	콜센터 임차
계약 대상	㈜케이티씨에스 (민원상담 인력 200명)	서울 중구 T타워 7층, 22층
2024년 집행액 (계약기준)	56억 5,700만원	17억 7,800만원
2025년 예산안	59억 2,500만원	18억 1,300만원
계약기간	2024.12.31.까지	2028.7.10.까지 (단, 7층의 최소임차기간은 2027.1.10까지, 22층의 최소임차기간은 2025.7.11.까지)

(자료: 금융위원회)

□ 2023년 청년도약계좌 예산이 처음 편성되던 당시, 금융위원회는 민원상담 필요인력을 200명으로 추산하였는데, 이는 당시 300만명이 신청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루 1% 수준(3만명)으로 문의한다고 가정한 후 1인당 응대가능 콜수(150콜)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244]한 것이나, 실제 운영 현황을 감안할 때 현재 과도한 상담 인력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민원상담 인력 운용 현황을 보면, 실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인원은 2024년 8월말 기준 144만명에 불과하고, 민원상담 인력이 2023년과 2024년에 실제 전화민원 상담에 응답한 시간은 1인당 1~2시간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244) 3만명(건) = 150콜/인당(1인당 응대가능 콜수) × 200명

<청년도약계좌 민원상담 인력 1인당 평균 응답 시간>

(단위: 건, 분, 명, 일)

구분	응답건수 (A)	건당 평균 응답시간(B)	상담원수 (월평균)(C)	업무일수 (D)	1인당 평균 응답시간 [(A×B)/(C×D)]
2023년 (6월~12월)	377,336	4.4	182	142	**64.2분**
2024년 (1월~8월)	565,895	6.3	176	165	**122.8분**

(자료: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이에 대해 민원상담 인력들이 전화상담 이외에도 가입 요건 충족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점검, 채팅상담 등 민원상담 업무도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나, 실제 민원상담 인력의 채용공고를 살펴보면, 업무내용을 “청년도약계좌 상품 문의 단순 안내(업무난이도 낮음)”, “기타 부대업무”로 안내하고 있음.

○ 민원상담 인력들이 전화상담 외에 부수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더라도, 실제 전화민원 상담 응답 시간이 1인당 1~2시간 정도에 불과한 것은 업무 대비 인력 운용이 과도한 측면이 있음.

○ 참고로, 진흥원은 자체 예산을 통해 서민금융콜센터[245]를 별도 운영 중이며, 2023년도 서민금융콜센터의 총 응답건수는 176만 건[246]으로 월평균 응답건수 및 1인당 평균 응답시간은 청년도약계좌 대

245) [서민금융콜센터 주요 상담 분야]
○ 서민금융지원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 안내 / ○ 고객 맞춤형 서민금융상품 안내
○ 휴면예금 원권리자 보호 관련 일반상담 및 접수 / ○ 대위변제 관련 구상채권 상담 안내
○ 우리원 사업과 연계된 유관기관 문의 응대
○ 우리원 디지털채널(앱, 챗봇, 채팅상담 등) 이용자의 문의 및 문제해결 지원
○ 기타 각종 민원상담, 고객의 소리 접수 등

246) 2023년 서민금융콜센터 월평균 응답 건수: 약 13만건
2023년 청년도약계좌 콜센터 월평균 응답 건수: 약 7.1만건

비 약 2배이나, 상담인력 규모는 2023년 기준 73명[247]이었음.

<서민금융콜센타 민원상담 인력 1인당 평균 응답 시간>

(단위: 건, 분, 명, 일)

구분	응답건수 (A)	건당 평균 응답시간(B)	상담원수 (월평균)(C)	업무일수 (D)	1인당 평균 응답시간 [(A×B)/(C×D)]
2022년	1,144,398	3.2	60	247	**247.1분**
2023년	1,763,356	2.8	77	247	**259.6분**
2024년	1,570,560	2.5	84	183	**255.4분**

(자료: 금융위원회)

□ 현재 민원상담 용역은 2024년 연말에 종료될 예정이므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적정 규모의 민원상담 인력에 대한 논의를 거쳐 감축될 인력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감액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진흥원은 2025년부터 민원상담 인력을 100명으로 감축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이 경우 2025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59억 2,500만원 중 17억 9,000만원(30.2%)에 대해서는 감액이 가능하다는 입장임.

○ 한편, 진흥원은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을 위해 서울 중구 소재 건물 2개 층[248]을 임대하여 층별로 100명의 민원상담 인력을 운용하고 있으나, 민원상담 인력을 감축하는 경우 1개 층의 임차 기간을 단축[249]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음.

247) 서민금융콜센터 용역 위탁 계약 기준
248) 서울 중구 소재 T타워 7층, 22층(공용면적 포함 총 면적 3,250.68㎡)
249) 서민금융진흥원이 임대한 2개 층 중 22층의 경우 최소 임차기간이 2025년 7월 11일임.

(3) 출연금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에 대한 반납 규정 마련 필요

금융위원회는 출연금의 관리와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등에 대한 국고 반납 절차 근거를 금융위원회 지침 등으로 마련하고, 기여금 지급 예산의 경우 사업이 종료된 이후 잔여 출연액과 이자수입에 대해서, 인프라 구축 예산의 경우 매년 집행 잔액 및 이자수입에 대해서 국고로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 사업 중 기여금 지원 및 인프라 구축 예산의 비목은 사업출연금(350-02목, 법령에 의한 출연금 중 특정사업 추진을 위하여 소용되는 비용)으로, 출연금의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에 대한 별도의 처리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 기획재정부의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출연금의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은 관련 법령에 구체적인 처리규정이 있으면 이에 따라 처리하되, 관련 법령에 구체적인 처리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필요시 주무부처가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에 대한 별도의 처리지침을 마련하여 통보하는 등 출연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21년까지는 금융위원회가 진흥원에 출연하는 금액이 없었으나, 2022년 청년희망적금과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사업을 위한 출연금 955억 5000만원을 시작으로, 2023년에는 7,559억 6,900만원이 출연되었고, 2025년 예산안에는 3개 사업에 출연금 5,221억원이 편성되는 등 출

연이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위원회가 진흥원에 출연한 금액 중 잔액 등의 반환에 관한 법령을 마련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임.

<금융위원회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추이>

(단위: 백만원)

2022		2023		2024		2025안	
청년희망적금	47,550	청년희망적금	360,168	청년희망적금	165,738	청년희망적금	- (종료)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48,000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28,000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56,000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56,000
		청년도약계좌	367,801	청년도약계좌	368,211	청년도약계좌	375,000
				햇살론15	90,000	햇살론15	90,000
합계	95,550	합계	755,969	합계	679,949	합계	521,000

(자료: 금융위원회)

○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2024년을 마지막으로 사업이 종료되었으나 정산 결과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았고,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과 햇살론15의 경우 출연한 금액 전액을 대위변제금 지급과 대위변제 준비금으로 활용하고 있어 집행 잔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상황임.

○ 다만,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향후 사업 종료와 함께 기여금 지원을 위해 출연한 금액의 집행잔액과 이자수입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고, 인프라 구축의 경우 매년 임차료 및 경상경비 등에 대한 불용잔액이 발생한 바 있음.

□ 반납 규정 마련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진흥원은 2023년도에 인프라 구축 예산 중 사무실 임차료 등에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고로 반납하거나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반영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국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감액 된 바 있음.

○ 청년도약계좌 사업이 신설된 2023년의 경우 진흥원에 출연된 인프라 구축 예산 236억 1,000만원 중 210억 5,900만원이 집행되었고, 콜센터 용역비, 사무실임차료, 통신비 등에서 집행 잔액 25억 5,100만원이 발생하였음.

○ 2024년 예산안의 경우 인프라 구축 예산으로 당초 104억 4,7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이 중 사무실 임차료로 편성된 금액이 과다편성되었다고 지적[250]된 바 있으며, 최종적으로 17억 8,300만원이 감액된 86억 6,400만원으로 확정됨.

○ 국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이러한 감액에도 불구하고 사무실 임차료를 제외한 전산구축유지비, 콜센터 용역비, 통신비 등의 집행잔액은 여전히 진흥원에 유보되어 있음.

250) 2023년 사무실 임차료 집행 잔액은 12억 4,600만원으로 추산되고 2024년 실소요액은 17억 8,600만원이나, 2024년에 편성된 예산안에는 23억 2,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총 17억 8,300만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음.(2024 예산안 23억 2,300만원 + 2023 집행잔액 12억 4,600만원 - 2024 실소요액 17억 8,600만원 = 17억 8,300만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 예산안 검토보고 참조)

<인프라 구축 예산에 대한 서민금융진흥원 내부 배정 및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3년			2024년 9월말	
	배정액	집행액	잔액	배정액	집행액
소득심사 인건비	617	617	0	950	0
전산구축유지	15,029	14,742	287	571	381
콜센터 용역비	3,780	3,065	715	5,670	3,038
사무실임차료	2,799	1,538	1261	1,800 (당초 540 + 전년도 잔액 활용 1260)	1,331
홍보비	253	253	0	213	90
연구용역비	140	140	0	98	0
통신비 등	428	148	280	428	347
사무환경 등	514	506	8	183	21
복리후생비	4	4	0	5	0
응대교육	40	40	0	-	-
업추비 및 여비	6	6	0	6	5
합계	23,610	21,059	2,551	9,924주)	5,213

주) 당초 예산안에는 104억 4,7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국회 심사과정에서 17억 8,300만원이 감액되어 실제 교부액은 86억 6,400만원임.

(자료: 금융위원회)

□ 둘째, 진흥원은 2023년도 전산시스템 구축 당시 낙찰차액을 불용처리하였으나, 반납규정 미비로 이를 자체 운용하고 있음.

○ 진흥원은 2023년도에 청년도약계좌 운영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예산 150억 2,900만원을 출연받아 집행하였으며, 이 중 4억 4,500만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하였음.

○ 기획재정부의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정보화사업의 낙찰차액은 원칙적으로 불용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동 예산의 경우 출연금 비목(350-02)으로 이에 직접 적용되지 않으나, 진흥원 자체적인 예산집행지침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정보시스템 구축 시 낙찰차액은 원칙적으로 불용처리하도록 규정[251]하고 있음.

251) 정보시스템(SW) 구축 시 낙찰차액은 원칙적으로 불용처리한다. 다만, 정보시스템의 보안 강화, 감리비,

- 진흥원은 이에 따라 낙찰차액 4억 4,500만원 중 2억 8,7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다는 입장이나, 이를 반납하기 위한 규정이 미비하여 진흥원 내에서 자체 자금운용 중인 상황임.

□ 금융위원회는 출연사업의 관리를 위한 규정 등이 마련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진흥원 내부규정을 통해 출연금 관리에 관한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라는 입장임.

○ 다만, 기획재정부의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주무부처가 출연금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에 대한 처리지침을 마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 집행잔액 등에 대한 처리지침을 출연금을 교부받는 진흥원 내부규정으로 정하는 것은 체계상 적절하지 않다는 점[252], 향후 금융위원회가 다른 기관에 대한 출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도 통일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금융위원회가 이를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임.

○ 참고로, 「철도건설사업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 출연금에 관한 관리규정」[253](국토교통부 훈령)에서는 출연사업자의 출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조달수수료, 디지털서비스 등 공공요금의 부족분을 지원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252) 출연금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을 국고로 환수하려는 경우 주무부처에 대한 집행현황 보고, 관리현황 점검 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를 출연금을 교부받는 기관이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253) **제12조(출연사업 종료 후 관리)** ① 출연사업자는 종료된 출연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출연금의 집행잔액을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반납하여야 한다.
② 출연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반납기한을 정하되, 해당 출연사업이 종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이와 같이 금융위원회가 출연사업의 관리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지 않는 등 관리를 해태하여, 진흥원이 집행잔액을 반납하거나 이를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반영하지 않고 예산안을 편성하는 등 방만한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음.

○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출연금의 관리와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등에 대한 국고 반납 절차 근거를 금융위원회 지침 등으로 마련함으로써 향후 출연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집행잔액 등이 체계적으로 국고에 귀속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동 사업의 기여금 지급 예산의 경우 사업이 종료된 이후 잔여 출연액과 이자수입에 대해서, 인프라 구축 예산의 경우 매년 집행 잔액 및 이자수입에 대해서 국고로 환수하는 방안[254]을 마련해야 할 것임.

254) 서민금융진흥원은 기여금 지급 예산과 인프라 구축 예산을 별도 과목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음.

(4) 법령에 위반된 수의계약 체결 방지 등 내년도 사업 관리 철저 필요

금융위원회는 내년도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진흥원으로 출연되는 예산이 관련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지 않도록 지도·감독함으로써 적법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진흥원은 청년도약계좌 가입심사 등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2023년도 인프라 구축 예산에 150억 2,900만원을 편성하여 147억 4,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구축이 완료된 이후 전산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하여 2024년도 5억 7,100만원, 2025년도 예산안에는 18억 4,500만원을 편성함.

○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이 2025년도에 전년 대비 12억 7,400만원 증가한 사유는 2023년 구축한 장비들의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종료하였기 때문이라는 입장임.

□ 그런데, 진흥원은 2024년도에 배정한 5억 7,100만원에 대하여 전산 시스템을 구축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사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사목[255]이라고 밝힘.

255) 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 국가계약법은 일반경쟁을 계약 체결의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 등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사목은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수의계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수의계약 사유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와 같은 '용역'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없으나[256], 진흥원은 위 사유를 토대로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여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음.

□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내년도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진흥원으로 출연되는 예산이 관련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지 않도록 지도·감독함으로써 적법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56) 법제처가 경기도 용인시에 회신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요건"(안건번호 22-0885, 회신일자 2023.3.24.)에 따르면,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타목에서 '물품 등'에는 유지보수 등 '용역'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한 바 있음.

5. 서민금융진흥원 출연(햇살론15)[257]: 안정적 공급을 위한 다양한 재원 마련 필요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서민금융진흥원 출연(햇살론15)”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사람 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인 사람이 은행에서 연 15.9%의 대출금리로 최대 1,400만원[258]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을 제공하는 상품인 “햇살론15”를 운영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900억원이 편성됨.

<2025년도 서민금융진흥원 출연(햇살론15)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햇살론15)	-	90,000	90,000	-	-

(자료: 금융위원회)

□ 햇살론15는 저신용·저소득자들이 대부업·미등록대부업을 이용하면서 법정 최고이자율(연 24%) 수준의 고금리를 부담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들이 보증을 통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2019년 9월 햇살론17(연 17.9%)로 처음 출시되었으며, 2021년 1월 법정 최고이자율이 연 20%로 인하됨에 따라 햇살론15(연 15.9%)로 개편되었음.

257) 세부사업: 서민금융진흥원 출연(햇살론15)(1831-884)
258) 2024년말까지는 한시적으로 2,000만원까지 한도를 확대 중임.

□ 햇살론15의 대상 및 보증조건은 아래 표와 같음.

<햇살론15 대상>

자격요건		내용
신용등급 및 소득		○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이며 신용평점 하위 20%(6등급 이하) ○ 연소득 3천5백만원 이하인 저소득자 * 제외대상: 연체정보·금융질서문란정보·공공정보 등이 등록된 사람, 채무불이행자, 직업 및 소득이 없는 자, 기타 심사결과 부적격자 등
구 분	근로소득자	○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소득자 * 3개월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 및 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해 직접보증으로 지원
	사업소득자	○ 3개월 이상 사업영위 중인 사업소득자(프리랜서 포함) * 무등록·유점포 사업자는 센터에서 직접보증으로 지원
	연금소득자	○ 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 수급 중인 연금소득자
직접보증		○ 은행의 표준화된 심사로는 지원받기 어려운 자 - 건강보험미가입자, 무등록사업자 등 객관적 소득증빙 어려운 자 ○ 신용회복지원(신용회복·개인회생·새출발기금) 성실상환 중인(6개월 이상) 자 ○ 보훈연금을 수급 중인 자

(자료: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15 보증조건>

구 분	위탁보증	특례보증
취급처	13개 시중은행 지점 및 모바일 앱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서금원 모바일 앱
보증한도	최대 2,000만원 * '22.8.8. 부터 '24.12.31까지 한시적 한도확대 운영 중(1,400만원 → 2,000만원)	
상환방법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기간	3년 또는 5년 중 선택	
대출이율	연 15.9% 단일금리 (은행 이자율6.0% + 보증료율 9.9%)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금리 인센티브	① 성실상환자(1년 이상) 대상 연 1회 금리 인하 적용 (보증기간에 따라 3년 선택 시 연 3.0%p, 5년 선택 시 연 1.5%p) ② 추가 이용·완제 후 재이용자 DSR 개선 시 0.5%p, 신용부채관리컨설팅 또는 금융교육 이수 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1년 이내 취업한 경우 0.1% 금리 인하	
자금용도	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긴급자금·일반생계비 등 포괄적 지원	

(자료: 서민금융진흥원)

2) 검토의견

2025년도 햇살론15 예상보증공급 규모는 정부 재원에 한정할 경우 2024년 대비 62%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다양한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대위변제 급증 등으로 안정적인 공급이 저해되지 않도록 상품 관리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햇살론15는 2024년 6월 이전에는 국가재정이 아닌 국민행복기금의 재원을 활용하여 진행되던 사업이었으나, 최근 국민행복기금 재원이 고갈되어 햇살론15 보증공급이 어려워짐에 따라 정부는 2024년도 예산에 900억원의 출연금을 편성하여 이를 재원으로 햇살론15 보증을 공급하고 있음.

○ 국민행복기금은 서민금융진흥원이 68%, 은행 등 20개 금융회사가 32%를 보유한 주식회사로, 2008년 9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설립한 신용회복기금이 2013년 국민행복기금으로 개편되고, 2016년 9월 서민금융진흥원 출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보유 지분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이관되어 현재까지 운영되어 오고 있음.

□ 국민행복기금은 그 동안 햇살론,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등을 통해 대부업 등 고금리 대출 이용이 불가피한 최저신용자가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안상품을 공급하고, 금융회사 연체채권을 매입하여 원금을 감면함으로써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해왔음.

○ 이에 따라, 국민행복기금은 햇살론15 등 보증[259]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납부받는 보증수수료와 과거 매입한 개인연체채권의 추심이익 등을 수입으로 보증에 따른 대위변제 등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데, 보증공급 증가에 따른 대위변제 증가에 따라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여, 기금잔액 규모가 최초 출범 시 6,970억원에서 5,048억원(2020)→4,228억원(2021)→3,985억원(2022)→1,771억원(2023)→948억원(2024.9월)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 구체적으로 보면, 2019년 이후 국민행복기금의 재무제표 상 영업수익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대위변제 및 구상채권상각비 등 영업비용은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매년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음.

<국민행복기금 손익현황>

(단위: 억원)

구 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영업수익	655	1,391	1,956	2,092	2,721
영업비용	1,534	2,140	3,240	3,449	4,842
영업이익(손실)	△879	△748	△1,284	△1,356	△2,122
영업외 수익	36	1	4	403	703
영업외 비용	22	2	1	1	0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손실	△865	△749	△1,280	△954	△1,419

(자료: 금융위원회)

259) 현재는 햇살론15 상품만이 운영되고 있으나 과거 바꿔드림론(2008.12.~2019.9.), 안전망대출Ⅰ(2018.2.~2019.9.), 안전망대출Ⅱ(2021.7.~2022.12.) 등 유사한 상품이 여럿 운영되었음.

□ 그 결과 국민행복기금에서 햇살론15 공급을 위한 재원이 부족하게 되었고, 2024년도 예산에는 햇살론15 사업의 지속을 위해 90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2024년의 경우 6월까지는 국민행복기금 자체 재원으로 햇살론15를 공급하였으며, 7월부터는 정부 재원으로 공급하고 있음.

○ 2024년도 햇살론15 공급목표액은 총 1조 500억원으로, 이 중 4,000억원은 국민행복기금 재원으로, 6,500억원은 정부 재원으로 공급할 예정임.

<2024년 햇살론 15 공급목표 및 실적(9월말 기준)>

(단위: 억원)

구 분	공급목표액(A)	공급금액(B)	달성률(B/A)%
햇살론15	10,500	6,514	62.0%
국민행복기금	4,000	4,126	103.2%
서민금융진흥원	6,500	2,388	36.7%

(자료: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햇살론15 공급을 위해 2025년 예산안에 2024년과 동일한 90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상사업손실률(13.7%), 보증비율(100%)를 토대로 연간 보증공급금액을 6,500억원으로 계획[260]함.

<2025년도 햇살론15 연간 보증공급금액 산출내역>

연간 보증공급금액 6,500억원 × 0.137 (예상사업손실률 13.7%) × 1 (보증비율 100%) = 예산액 900억원

(자료: 금융위원회)

260) 2024년도 예산안 편성 시에도 동일한 예상사업손실률과 보증비율을 토대로 연간 보증공급금액을 6,500억원으로 계획한 바 있음.

○ 이러한 동 사업의 예산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우려됨. 첫째, 국민행복기금은 2021년 1조원 832억원, 2022년 1조 4,305억원, 2023년 1조 3,086억원 규모로 햇살론15를 공급하였으며 2024년의 경우 정부 재원을 포함하여 총 1조 500억원을 공급할 계획임. 그러나 2025년의 경우 국민행복기금이 고갈되어 정부 재원만을 활용하게 될 경우 2024년 대비 4,000억원 감소한 6,500억원 가량만 공급할 수 있음.

- 햇살론15는 대부업·불법사금융 등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저신용·저소득자들이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면 은행 대출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으로, 공급 규모가 전년도 대비 과도하게 감소할 경우 이들이 불법사금융 등을 이용할 유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 둘째, 금융위원회는 2025년 예산안에서 예상사업손실률을 13.7%로 산출하여 연간 보증공급금액을 6,500억원으로 계획했으나, 국민행복기금으로 공급했던 햇살론15의 대위변제율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2025년도 보증공급금액이 당초 계획에 비해 감소하거나, 향후 동일한 규모의 보증공급을 위한 정부 재원 투입이 증가할 수 있음[261].

- 국민행복기금 보증을 통해 공급했던 햇살론15의 누적대위변제율은 2024년 6월말 기준 24.6%이며, 이는 당초 예상사업손실률을 20%로 설정하였다가 2025년부터 33.3%로 설정하여 동일한 재원 대비 연

261) 예상사업손실률이 증가할 경우 동일한 재원(2025년 900억원)을 통한 연간 보증공급금액이 감소하게 됨.

간 보증공급금액 예상이 감소한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사업과 유사한 규모임.

<국민행복기금 재원 보증 햇살론15 지원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6월말
햇살론15 ('19.9. ~'24.6)	지원인원	142,550	145,423	138,621	44,059
	평균 보증금액	7.6	9.8	9.4	9.4
	대위변제율	14.0	15.5	21.3	24.6

(자료: 금융위원회)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대위변제율 현황>

(단위: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8월말
대위변제율	-	14.5	25.0

(자료: 금융위원회)

- 참고로, 금융위원회는 2025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정부 재원을 통한 햇살론15의 연간 보증공급금액은 과거 취급분에 대한 사업손실률이 존재하지 않아[262] 2024년도와 동일한 예상사업손실률을 반영하였다는 입장임.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2025년도 햇살론15 예상보증공급 규모는 정부 재원에 한정할 경우 2024년 대비 62%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안정적인 햇살론15 공급을 위한 다양한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62) 2024년 6월 이전에는 국민행복기금으로 햇살론15 보증을 수행했기 때문에 정부 재원을 통한 햇살론15의 경우 과거 취급분에 대한 사업손실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임.

○ 아울러, 대위변제 급증 등으로 안정적인 공급이 저해되지 않도록 상품 관리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임.

6.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263]: 사업 실적 제고 방안 마련 필요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등록·미등록대부업체로부터 법정 최고이자율 초과 이자징수 또는 불법추심 등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채무자에게 채무자대리인 선임 및 관련 부수사건 소송대리를 무료로 지원하고, 지원에 소요된 비용을 금융위원회가 공단에 보조금으로 교부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5,000만원 감소한 12억 500만원이 편성됨.

<2025년도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886	1,255	1,205	△50	△4.0

(자료: 금융위원회)

□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자가 변호사 등 대리인을 선임하면 채권추심자가 채무자가 아닌 대리인에게만 연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264] 채무자에 대한 불법추심 등을 방지함으로써 채무자의 평온한 생활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2014년 도입되었음.

263) 세부사업: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1833-301)

264)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 ① 다음 각 호를 제외한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을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채무자와 대리인이 동의한 경우 또는 채권추심자가 대리인에게 연락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또한, 채무자는 대리인 선임 시 대부계약·추심행위에 대한 불법성 검토를 포함하여 변호사 등 대리인이 제공하는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는 효과도 있음.

○ 그런데, 일반적으로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채무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대리인을 선임하기 쉽지 않으므로, 정부는 2020년부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무료로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를 채무자의 대리인으로 선임해주는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을 실시해오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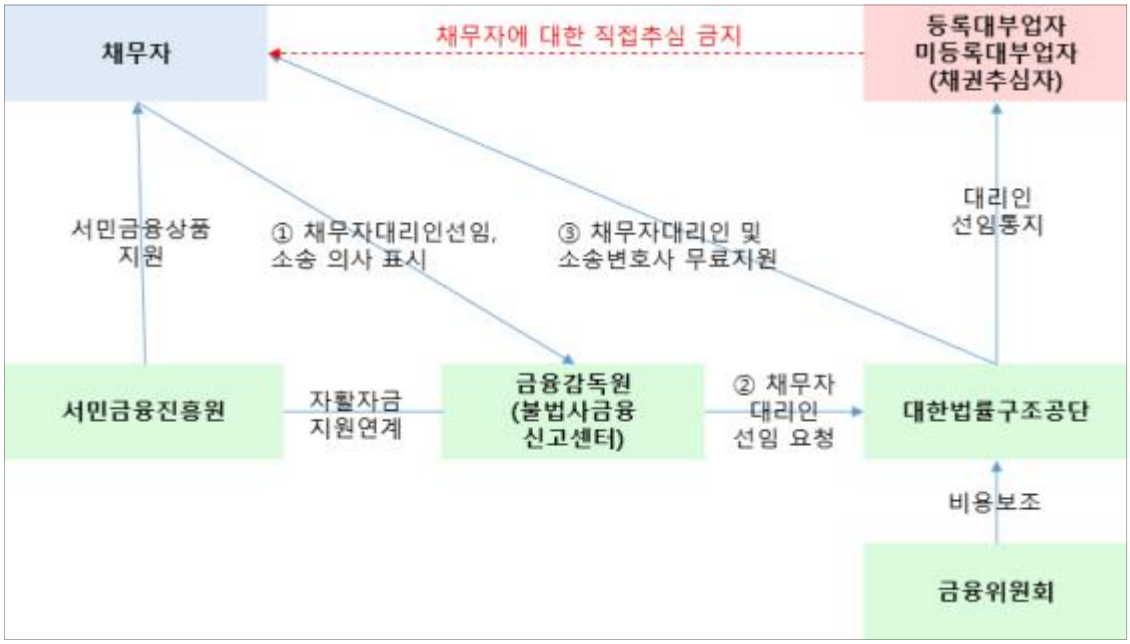
○ 추가적으로, 채무자가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불법추심을 당하는 등 피해를 입어 반환청구·손해배상청구·채무부존재확인소송 등을 제기하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무료로 소송을 대리하는 “부수사건 소송대리”도 사업에 포함하여 진행해오고 있음.

- 한편, 2024년 7월부터는 채무당사자 본인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가족·지인 등 불법추심 피해를 입은 관계인에 대해서도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음.

□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은 채무자가 금융감독원에 채무자대리인 선임 또는 소송 의사를 표시하면, 금융감독원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요청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대리 등 업무를 수행하면, 금융위원회가 공단에 소요된 비용을 보

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사업 진행절차〉



2) 검토의견

금융위원회는 2024년도에 편성된 예산 및 2025년도에 확정되는 예산이 적절히 활용되어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제도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은 사업 첫 해인 2020년에는 인지도 저조 등으로 인하여 예산 11억 5,000만원 중 1억 6,400만원(14.3%)만을 집행하는 등 사업 집행이 부진하였으나, 이후 지원실적이 증가하여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매년 예산을 전액 집행하고 있음.

○ 사업 첫 해인 2020년에는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지원결정 기준)과 부수사건 소송대리 지원(지원결정 기준) 각각 계획 대비 21.3%(893건/4,200건), 3.8%(22건/580건) 만을 지원하였음.

○ 그런데, 2021년에는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을 계획 대비 301.4%(4,747건/1,575건) 지원하는 등 실적이 증가함에 따라 7월에 홍보비를 제외한 예산을 모두 집행하였음.

○ 2022년 역시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은 계획 대비 89.0%(4,473건/5,025건), 부수사건 소송대리는 계획 대비 140.0%(28건/20건)를 지원함에 따라 9월에 예산을 모두 소진하였음.

○ 2023년도의 경우 당초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을 위해 7억 7,300만원, 홍보를 위해 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나,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예산이 모두 집행됨에 따라 당초 계획한 홍보비를 집행하지 않고 이를 활용하여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에 활용하는 등 예산액 8억 8,600만원을 모두 집행하였음.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사업 계획·실적 및 예결산〉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9월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지원결정)	4,200건	893건	1,575건	4,747건	5,025건	4,473건	3,715건	3,236건	5,965건	1,933건
	8.4억원	1.59억원	3.15억원	3.15억원	10.05억원	11.26억원	7.73억원	8.77억원	12.41억원	3.86억원
부수사건 소송대리 지원 (지원결정/ 소송종결)	580건	22건/8건	200건	30건/26건	20건	28건/23건	28건	12건/10건	28건	17건/17건
	2.2억원	0.05억원	0.76억원	0.76억원	0.08억원	0.17억원	0.13억원	0.09억원	0.14억원	0.03억원
송달료 등 실비	2,500건	66건	1,775건	45건	5,045건	72건	-	-	-	-
	0.9억원	20만원	0.63억원	0.63억원	1.31억원	0.01억원	-	-	-	-
홍보비	-	-	1.50억원	1.50억원	-	-	1억원*	-	-	-
예결산(합계)	11.5억원	1.64억원	6.04억원	6.04억원	11.44억원	11.44억원	8.86억원	8.86억원	12.55억원	3.89억원

주: 2023년에는 내역사업 변경을 통하여 홍보비 1억원을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에 사용함

(자료: 금융위원회)

□ 그러나 2024년의 경우 9월말 기준 당초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계획 건수 5,965건 대비 32.4%에 해당하는 1,933건에 대해서만 지원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예산 집행액도 12억 5,500만원 대비 31%에 해당하는 3억 8,900만원만 집행[265]된 상황임.

○ 이와 같이 선임 건수가 감소한 사유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① 경찰청,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수사·감독기관의 단속이 강화되었고, ② 채무자대리인 신청 이후로 자발적 또는 신청요건 불비 등의 사유로 취하되는 건수가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밝힘.

- 경찰청은 2022년 11월부터 불법채권추심 등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265) 2024년에 집행된 3억 8,900만원에는 2023년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을 하였으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당해에 지급하지 못하여 2024년에 지급한 5,200만원도 포함되어 있음.

진행[266]중이며, 국세청과 금융감독원 모두 불법사금융업에 대한 수사·단속·조사[267]를 적극 실시하고 있음.

- 금융위원회는 채무자대리인 신청시 상대 전화번호 등은 필수요건이나 SNS를 통한 불법추심은 전화번호 불명으로 신청단계에서 반려되어 신청요건 불비 등의 사유로 취하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입장임.

○ 금융위원회는 채무자대리인 지원 사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2024년 7월 5일부터 채무당사자 본인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가족·지인 등 불법추심 피해를 입은 관계인[268]으로 무로 법률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대[269]하였음.

- 다만, 확대 방안 발표 이후 2024년 10월 5일 기준 3개월 간 관계인 지원 신청 건수는 33건(17명), 실제 지원 실적은 6건(4명)으로 지원 금액은 42만원에 불과함.

---

266) (검거건수) ('22)1,179건 → ('23)1,404건 → ('24.7월)1,073건
(검거인원) ('22)2,073명 → ('23)2,195명 → ('24.7월)1,687명

267) 국세청: 2차례에 걸쳐 불사금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및 체납·자금출처 조사하여, 총 1,467억원 추징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 특별근절기간('23.5~10월) 운영하여 503건을 수사의뢰

268) 최근 금융사기 수법이 고도화되고 온라인 수단을 이용하여 가족 · 지인 등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협박하는 등의 악질적인 불법추심이 지속*되고 있어 관계인 보호 필요성이 커지고 있고, 관련 설문조사 결과 불법추심 유형으로는 '가족·지인 등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지인 추심)'가 72.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점을 반영하였음.

269)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불법추심피해를 입은 가족(동거인 포함)·지인(직장동료 등)도 무료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4.7.4.

□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은 사업 첫 해의 경우 당초 계획 대비 저조한 실적을 보이면서 예산이 불용되었으나, 이후 선임 지원 건수가 증가하면서 3분기 내에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는 일이 발생하였으며, 2024년의 경우 다시 계획 대비 실적이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금융위원회는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는 입장이나, 수사·감독기관의 단속 강화, 경제 및 금리 변화로 인한 연체 건수 감소 등 외부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향후 동 사업의 성과가 낮아질 우려가 있음.

○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2024년도에 편성된 예산 및 2025년도에 확정되는 예산이 적절히 활용되어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제도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7. 산업은행 출자사업 총괄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2025년 예산안의 산업은행출자사업은 정책모펀드 조성에 소요되는 중앙정부 부담분을 한국산업은행(이하 '산업은행')을 통해 경유 출자하기 위한 사업과 기업 저리대출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재원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구분되며, 2025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800억원(82.4%)이 증가한 6,200억원 규모임.

○ 2025년 예산안에는 원전산업성장펀드(400억원)와 반도체생태계펀드(300억원) 조성을 위한 출자사업과 반도체 설비투자 지원을 위한 사업(2,500억원)이 신규로 반영되었음.

<2025년도 산업은행출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정책 모펀드 조성	산업은행출자 (혁신성장펀드)	300,000	240,000	200,000	△40,000	△16.7
	산업은행출자 (지역활성화투자펀드)	-	100,000	100,000	-	-
	산업은행출자 (원전산업성장펀드)	-	-	40,000	40,000	순증
	산업은행출자 (반도체생태계펀드)	-	-	30,000	30,000	순증
산업은행출자 (반도체설비투자지원 특별프로그램)		-	-	250,000	250,000	순증
합 계		**300,000**	**340,000**	**620,000**	**280,000**	**82.4**

(자료: 금융위원회)

2) 검토의견: 한국산업은행 출자를 통한 재정모펀드 조성사업

금융위원회(정부)가 한국산업은행을 경유하여 모펀드에 출자한 뒤, 한국산업은행 유상 감자의 어려움을 이유로 출자금을 다시 재정에 회수하지 않고 부처 내 협의를 거쳐 다른 모펀드에 재투자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매년 회수재원 규모 및 회수재원 투자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등 추가적인 국회통제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금융위원회는 재정과 민간 자본을 결합하여 과소투자 영역에 마중물을 공급함으로써 민간 투자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18년도부터 산업은행을 경유출자[270]하는 방식으로 모펀드를 조성하고, 민간자본과 매칭하여 자펀드에 출자하는 재간접펀드[271]방식의 재정모펀드 조성사업을 추진해왔음.

○ 2024년까지 성장지원펀드, 소부장혁신펀드, 기업구조혁신펀드, 뉴딜펀드, 혁신성장펀드 조성을 위해 산업은행을 통해 경유출자된 재정 규모는 총 2조 6,525억원(예산액 기준)에 이르며, 2025년에도 재정모펀드 조성을 위해 3,700억원을 산업은행 경유출자 예산으로 편성하였음.

---

270) 이전까지 산업은행 경유출자는 타 기관(한국도로공사, 한국선박해양 등) 자본금 출자를 위한 것이었음.

271) 재간접펀드(Fund of Funds): 자산운용사가 직접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에 재투자하는 펀드(한경 경제용어사전)
재간접펀드 방식의 정책펀드는 예산편성 및 결산방식에서 벗어나 회수재원 재투자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고, 다양한 분야의 자펀드에 분산투자하여 투자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으나, 모펀드 존속기간이 끝날 때까지 국고 회수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음.

<한국산업은행 경유출자를 통한 재정모펀드 조성사업 현황>

(단위: 억원)

사업명	모펀드명	예산반영기간 (계획)	총 재정투입액 (~'24)	2025 예산안	모펀드 청산시기
산업은행출자 (혁신모험펀드, 일반회계)	성장지원펀드	2018-2020년	3,200	-	2033.6.
산업은행출자 (혁신모험펀드, 소부장특별회계)	소부장 혁신펀드	2020-2021년	4,400	-	2035.4.
산업은행출자 (기업구조혁신펀드)	기업구조 혁신펀드	2020-2021년	1,425	-	2036.6.
산업은행출자 (뉴딜펀드)	뉴딜펀드	2021-2022년	11,100	-	2047.7.
산업은행출자 (혁신성장펀드)	혁신성장펀드	2023-2027년	5,400	2,000	2047.7.
산업은행출자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2024-2028년	1,000	1,000	2049. 8.
산업은행출자 (반도체생태계펀드)	반도체생태계 펀드	2025-2027년	-	300	-
산업은행출자 (원전산업성장펀드)	원전산업 성장펀드	2025	-	400	-
합 계			**26,525**	**3,700**	

주: 각 년도 예산액 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 그런데 대표적인 재간접펀드인 중소기업모태펀드의 경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벤처투자가 결성하는 재정을 한국모태펀드(벤처투자모태조합)에 직접 출자하고 있는 것과 달리[272], 금융

27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① **한국벤처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상호출자**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 등에 대하여 출자하는 **벤처투자모태조합(이하 "모태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할 수 있다.**
1. 개인투자조합
2. 벤처투자조합
3.「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4.「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5.「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6.「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

위원회 소관기관인 한국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은 재정을 직접 출자할 수 있는 별도의 모펀드 결성할 수 없기 때문에 금융위원회가 한국산업은행 등에 재정을 출자하고, 한국산업은행 등이 이를 모펀드에 재출자하는 경유출자방식을 채택하고 있음.[273][274]

〈 출자방식에 따른 재간접펀드의 출자 구조 〉

중소기업모태펀드 출자구조	부처 → 한국모태펀드 (한국벤처투자) → 자펀드
금융위원회 펀드 (혁신성장펀드 등) 출자구조	부처 → 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 모펀드 → 자펀드

(자료: 금융위원회)

□ 그런데 2018년 이후 조성된 정책펀드의 자펀드 청산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경유출자 기관인 산업은행이 모펀드 청산 전 발생한 회수액

---

7.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같은 법 제67조에도 불구하고 **모태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③ 한국벤처투자는 벤처투자 활성화 등 정책 목적에 따라 모태조합의 자산을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④ 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하며, 그 밖에 모태조합의 관리·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모태조합이 출자한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에 대해서는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투자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①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2.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하는 자

273) 다만, 국회의 요구에 따라 재정이 한국산업은행의 여유자금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므로 한국산업은행은 경유 출자금을 한국산업은행의 계정과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음.

274) 한국산업은행 출자 펀드(혁신성장펀드 등),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 펀드(기업구조혁신펀드) 외에, 국토교통부의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출자 펀드(GIF펀드, PIS펀드)도 경유출자방식의 재간접펀드임..

(자펀드 청산분배금)을 누적회수재원으로 관리하고, 그 규모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국회에서 모펀드 청산 분배금의 국고 환수 절차를 마련하고, 증가하는 누적회수재원을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275]이 있었음.

〈 재정출자 정책모펀드 원금 회수흐름 추정 〉

(단위: 억원)

구분	~'22	'23	'24(E)	'25(E)	'26~'30(E)	'31(E)~	합계	만기
성장지원펀드	536	310	291	246	1,811	6	3,200	2033년
소부장혁신	172	197	585	472	2,951	23	4,400	2035년
기업구조혁신 펀드	10	23	134	-	1,045	213	1,425	2036년
뉴딜펀드	2	30	158	822	5,862	4,226	11,100	2047년
소 계	**720**	**560**	**1,168**	**1,540**	**11,669**	**4,468**	**20,125**	
누적 합계	**720**	**1,280**	**2,448**	**3,988**	**15,657**	**20,125**		

주: 시장환경 및 자펀드 회수 실적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자료: 금융위원회)

○ 이에 정부는 산업은행이 보유하는 재정모펀드 회수재원은 국고에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수재원의 효율적 활용과 건전재정 기조 등을 고려하여 국고 회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산업은행이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재정모펀드 회수재원을 금융

275) 산업은행 출자를 통한 재정모펀드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2020회계연도 결산 이후 지속적으로 모펀드 청산 및 재투자와 관련하여 국회의 지적이 있었음.

<각 년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 2020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금융위원회는 산업은행으로 배분되는 모펀드 청산 분배금을 국고로 환수하는 절차, 모펀드의 재투자내역에 대한 국회 보고 절차, 모펀드 운용사의 보수규정 등을 포함하는 펀드 출자관리규정을 마련할 것(제도개선)
-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① 금융위원회 및 한국산업은행은 회수재원 재출자와 관련하여 재출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국고 반환이 어려운 이유를 국회 및 기획재정부에 보고하며, 회수재원 규모와 활용방안, 재투자 분야, 재정모펀드의 성과평가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조치를 할 것(제도개선) ② 한국산업은행은 재정출자 펀드에 대한 회수액 관리 및 처리 방식을 규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제도개선)

위원회 소관 재정 출자사업의 재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276]을 마련하고,

- 2024년도 혁신성장펀드사업 필요예산액 3,000억원 중 600억원은 기존 성장지원펀드와 소부장혁신펀드 회수액을 활용하고, 2024년 예산안에는 2,400억원만 편성하였으며, 2025년에도 필요 예산액 3,000억원 중 1,000억원은 모펀드 회수예정액[277]을 활용하여 재투자하기로 하고, 2,000억원만을 예산안에 편성하였음.

<한국산업은행 출자를 통한 정책펀드 회수액[주1)]>

(단위: 억원)

구 분	성장지원펀드	소부장혁신펀드	뉴딜펀드	기업구조혁신펀드[주3)]	혁신성장펀드	합 계
총 재정투입액	3,200	4,400	11,100	1,425	6,000	26,125
회수액[주2)]	1,130	789	173	167	-	2,259
회수액 중 국고반납액	-	-	-	-	-	-
회수액 중 2024년 재투자액	450	150	-	-	-	600
회수액 중 2025년 재투자 예정액			1,000[주4)]	-	-	1,000

주1) 회수액은 '24.9월말 기준
주2) 정책펀드 회수액은 자펀드 청산 및 투자금 회수 등으로 인해 모펀드로 분배된 금액을 의미함
주3) 기업구조혁신펀드는 구조조정 목적의 펀드로 혁신성장펀드와 조성목적이 달라 회수재원을 혁신성장펀드에 재투자하지 않기로 함
주4) 재투자 예정액 1,000억원은 성장지원펀드, 소부장펀드, 뉴딜펀드의 누적회수재원 활용하여 충당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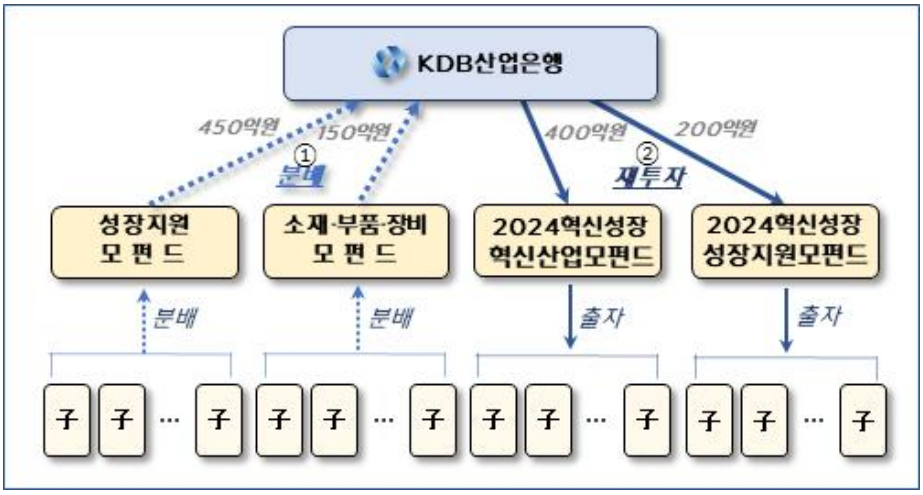
(자료: 금융위원회)

○ 이에 따른 현재 재투자 방식을 보면, 각 재정모펀드는 자펀드로부터 회수한 재원 중 재투자(예정)액을 모펀드 출자자인 산업은행에 분배

276) 「재정모펀드 운영 지침」(산업은행)
277) 펀드 투자재원의 회수는 대출원리금과 달리 정해진 회수스케쥴이 없으며, 투자대상으로부터의 배당, 투자대상의 M&A, 제3자 매각 등을 통해 실현 가능하므로 회수금액은 유동적임.

하고(①), 산업은행은 각 재정모펀드로부터 분배받은 재원을 회수 당일[278]에 차년도 재정 출자사업의 재정모펀드에 재투자하고 있음(②).

<'24년 재정모펀드 회수자금 재투자 흐름>



(자료: 금융위원회)

○ 산업은행을 경유하여 출자한 모펀드로부터 회수된 재원을 국고로 반환하기 위해서는 산업은행 자본금의 유상감자를 실시해야 하는데, 정부는 자본금 감자는 통상 결손보존을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투자자 및 시장에 부정적인 신호를 주게 되므로[279] 산업은행 감자를 통한 출자금 국고 회수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산업은행이 협의하여 회수재원을 금융위원회 소관 타 모펀드 조성사업 출자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임.

□ 그러나 정부가 한국산업은행을 경유하여 모펀드에 출자한 뒤, 한국산업은행 유상감자의 어려움을 이유로 출자금을 다시 재정에 회수하지

278) 재정모펀드 회수재원을 산업은행 고유계정과 구분하여 관리하기 위해 회수일 즉시 재투자하고 있음.
279) 또한, 금융위원회는 채권자(해외의 산은채권 투자자 등)가 감자에 대해 이의제기하는 경우 변제해야 하는 등 정책금융의 수행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함.

않고 부처 내 협의를 거쳐 다른 모펀드에 재투자하는 것은 각 모펀드 출자사업을 심사하는 국회의 예산심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으므로[280] 정부가 산업은행 경유 출자금을 자의적으로 운용할 수 없도록 매년 회수재원 규모 및 회수재원 투자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국회에 보고하는 등 추가적인 국회통제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80) 2024년까지 2조가 넘는 규모의 예산이 경유출자방식의 재정모펀드 조성사업에 투입되었고, 정책모펀드 조성사업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볼 때, 향후 그 규모는 점차 확대될 것임.

8. 산업은행 출자(지역활성화투자펀드)[281]: 집행실적을 고려한 적정 예산규모 논의 필요 등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산업은행 출자(지역활성화투자펀드)”는 중앙정부 · 지방자치단체[282] 및 한국산업은행이 출자하여 민간투자 마중물을 위한 모펀드를 조성하고, 모펀드가 민간, 개별 지방자치단체 등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자펀드를 결성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주도로 발굴한 개별 지역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사업으로, 모펀드 조성에 소요되는 2차년도 중앙정부 부담분을 한국산업은행에 출자하기 위하여, 2025년에는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1,000억원이 편성됨.

<2025년도 산업은행 출자(지역활성화투자펀드)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산업은행 출자 (지역활성화투자펀드)	-	100,000	100,000	0	0

(자료: 금융위원회)

□ 정부는 2023년 7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운용 방안’[283]을 마련하여 재정의존도가 높은 단발적 · 소규모 지역 투자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 민간 주도의 지속가능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지역활성화

281) 세부사업: 산업은행 출자(지역활성화투자펀드)(2414-320)
282) 지방자치단체 공동기금인 지역소멸대응기금을 의미함.
283)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주도하는-「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운영 방안, 관계부처 합동, 2023.7.12.

투자 펀드를 출범하였음.

○ 이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주도로 발굴한 지역개발 프로젝트를 중앙정부가 마중물 투자로 지원하기 위하여 5년간 (2024년~2028년) 총 1조 5,000억원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매년 중앙정부 재정, 지방소멸대응기금[284]과 한국산업은행에서 각각 1,000억원씩을 출자할 계획으로, 2024년부터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추진되고 있음.

□ 조성된 모펀드와 민간투자자가 출자하여 자펀드를 결성하되[285], 지방자치단체도 원하는 경우에는 자펀드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결성된 자펀드는 광역시 또는 도의 지역개발 프로젝트[286]에 총사업비의 20% 이내로 투자(출자 또는 대출)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이 때, 지역개발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joject Financing, 이하 'PF')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시행사, 건설사 등) 및 금융기관 등이 자본금을 출자하여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 이하 'SPC')을 설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 지역개발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추진 주체인 SPC의 출자금과 자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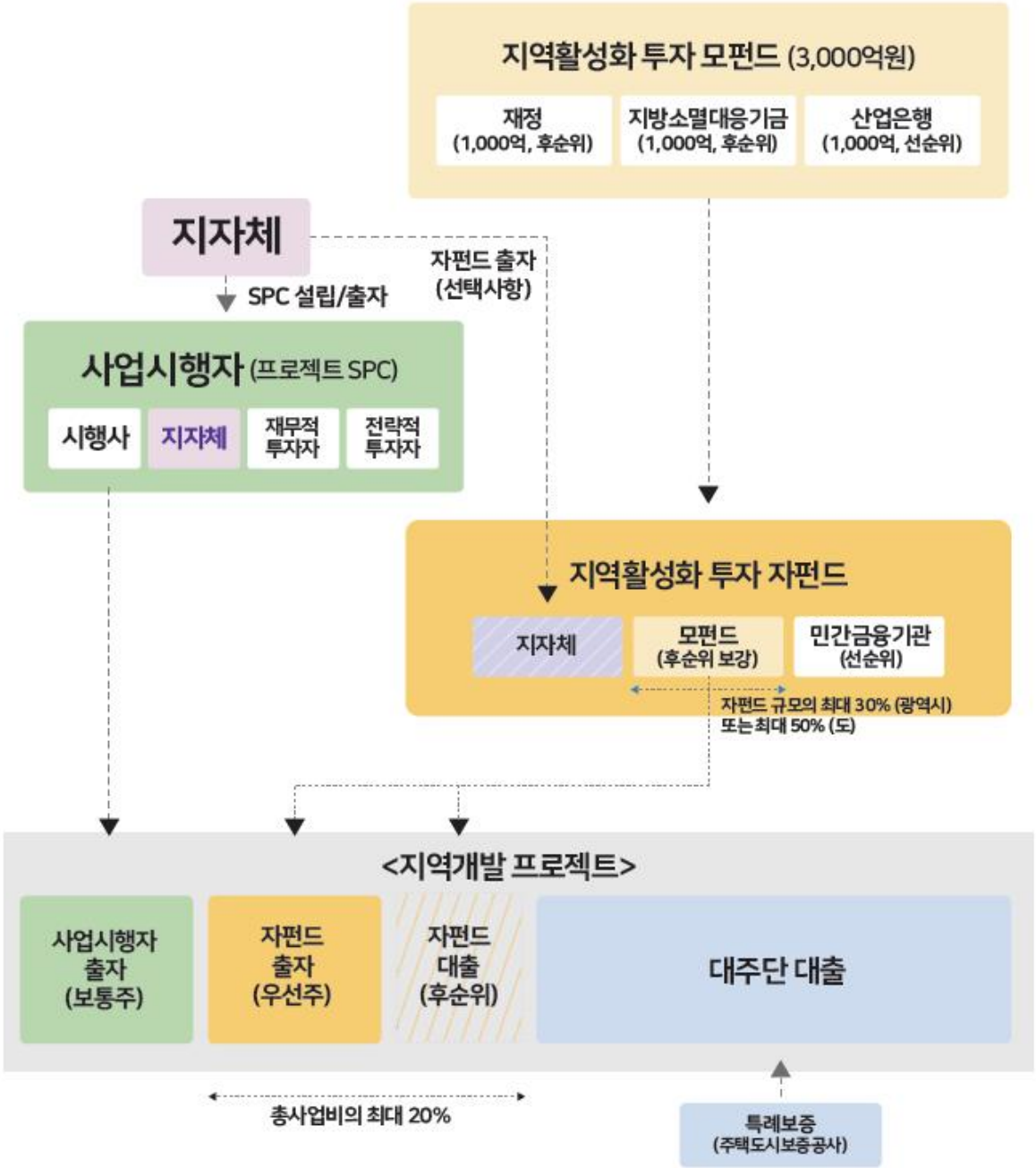
284)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지역, 낙후지역 등의 기반시설 조성 등을 지원하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2022년부터 신설된 기금임.

285) 모펀드는 광역시 프로젝트 자펀드에는 전체 결성 규모의 30%까지, 도 프로젝트 자펀드에는 50%까지 출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운영 방안 후속조치 주요내용」).

286) 펀드의 취지와 공익성 등을 저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광역지자체가 자유롭게 프로젝트 대상을 선정할 수 있으며, 수도권 소재, 향락시설, 단순 분양형 사업 등은 제외(「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운영 방안 후속조치 주요내용」)

드 투자금(출자, 대출), PF 대출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게 되며, PF 대출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특례 보증을 제공하여 보다 낮은 금리의 대규모 자금조달을 지원할 계획임.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구조도〉



(자료: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종합안내, 기획재정부)

2) 검토의견

(1) 집행실적을 고려한 2025년도 예산안 규모 심사 필요

2024년도 프로젝트 선정 및 자펀드 결성 실적, 연도 내 출자가능한 모펀드 투자액과 2025년에 집행가능한 모펀드 가용액을 고려하여 2차년도 사업 예산의 적정 규모를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동 사업은 2024년 신규사업으로, 9월말 현재 3건의 지역개발프로젝트가 선정되었으며, 각 프로젝트의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음.

< 2024년 선정 지역활성화 프로젝트 개요 >

프로젝트명	단양역 체류형 관광시설 개발	구미 국가산단 구조고도화	전남 여수 묘도 LNG 터미널
위치	단양군 단양읍	경북 구미시 공단동 일원	전남 여수 묘도
참여지자체	충청북도, 단양군	경상북도, 구미시	전라남도, 여수시
투자기간	'24년~'26년(준공)	'24년~'27년(준공)	'24년~'28년(준공)
프로젝트 내용	단양역 역세권 신성장 관광벨트 조성(호텔 및 어드벤처 시설 개발)	노후화된 구미 1국가산업단지에 입주기업 임직원 등을 위한 신규 주거시설 건립	연간 300만톤 규모의 LNG를 여수·광양 국가산단에 공급하기 위한 접안시설, LNG 저장탱크 및 기화설비 등 구축
총사업비	1,133억원	1,239억원	1조 4,362억원
선정	'24.2	'24.2	'24.8

(자료: 금융위원회 제출자료를 토대로 작성)

□ 그런데 3건의 지역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자펀드를 현재 결성하고 있으며, 결성이 완료된 자펀드는 없음.[287]

287) 지역활성화투자펀드는 개발사업의 인허가 등이 완료되었거나 완료예정인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하며, 자펀드는 지방의회의 예산편성 및 의결과 인·허가 등의 절차가 종료된 후 결성이 완료됨.(지역활성화투자

○ 정부는 3건의 프로젝트 자펀드가 연도 내에 결성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10월 말 현재까지 자펀드 결성이 완료되지 않았고, 자펀드 결성은 관련 인·허가 등과 민간 투자자금 조달 등을 거쳐야 완료가 가능하므로 연도 내 자펀드 결성 가능성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특히, 12월에 자펀드 결성 최종 기한[288]이 도래하는 1차 프로젝트 2건[289]은 연도 내에 결성이 완료되지 않으면, 해당 자펀드는 미결성된 것으로 하여 자펀드 선정이 취소될 수 있는 상황임.

□ 올해 선정된 3개 프로젝트의 자펀드가 연도 내에 결성된다 하더라도, 자펀드는 지역개발프로젝트 총사업비(총 1조 6,734억원)의 최대 20%(총 3,343억원)까지 투자할 수 있고, 모펀드는 자펀드 규모(총 3,343억원)의 최대 50%(도 프로젝트 기준)[290]까지 출자할 수 있으므로, 2024년도 모펀드 조성액 3,000억원 중 최대 약 1,674억원 만이 연도 내에 자펀드로 출자될 수 있음.[291]

펀드 종합안내, 기획재정부 지역활성화투자팀)

288) 펀드 결성시한은 최종 선정일로부터 최초 4개월 이내,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협의를 통해 3개월씩 2회, 최대 6개월 연장(총 10개월)이 가능함. 따라서 2024년 2월에 선정된 2개의 프로젝트는 2회 연장을 통해 12월까지 자펀드를 조성하여야 하며, 8월에 선정된 1개 프로젝트는 연장이 없으면 12월까지 자펀드를 조성하여야 하며, 연장 조치를 통해 최대 2025년 6월까지 자펀드 결성이 완료되어야 함.

289) 펀드 결성시한은 최종 선정일로부터 최초 4개월 이내,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협의를 통해 3개월씩 2회, 최대 6개월 연장(총 10개월)이 가능함. 따라서 2024년 2월에 선정된 2개의 프로젝트는 2회 연장을 통해 12월까지 자펀드를 조성하여야 하며, 8월에 선정된 1개 프로젝트는 연장이 없으면 12월까지 자펀드를 조성하여야 하며, 연장 조치를 통해 최대 2025년 6월까지 자펀드 결성이 완료되어야 함.

290) 광역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자펀드 규모의 최대 30%까지 출자 가능

291) 참고로, 9월말 현재, 정부→산은 출자는 1,000억원 전액 이루어졌으나, 모펀드 출자 수요를 고려해 산은→모펀드 출자금은 현재 3억 2,500만원에 불과함. 현재 모펀드 조성액은 9억 7,500만원임_모펀드 운용보수, 판매신탁사무관리 보수 등 모펀드 설정에 따른 부대비용 지급을 위한 것임.

〈 연도 내 최대 자펀드 출자가능액 〉

(단위: 억원)

사 업 명	총사업비	자펀드 →프로젝트주1)	모펀드 →자펀드주2)
단양역 체류형 관광시설 개발	1,133	222.6	**113.3**
구미 1국가산단 구조고도화	1,239	247.8	**123.9**
전남 여수 묘도 LNG 터미널	14,362	2,872.7	**1,436.4**
합 계	16,734	3,343.1	**1,673.6**

주1) 프로젝트 총사업비의 20% 이내 투자 가능
주2) 자펀드 결성액의 50% 이내 출자 가능(도 프로젝트 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 이와 같이 프로젝트 선정 및 자펀드 결성 부진으로 인해 2024년도 모펀드 조성액 3,000억원 중 1,326억의 가용자원이 있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는 2025년도에도 모펀드 3,000억원을 추가로 조성하기 위한 예산(1,000억원)을 편성하고 있는 바, 연내 추가 프로젝트 선정 추이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해 2차년도 사업 예산을 적정 규모로 편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2) 사업 성과평가 계획 마련 등

지역활성화투자펀드사업에 대한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유사사업의 사례를 참고하여 성과계획서상 성과목표인 자펀드 조성실적을 보다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은 사업 구조상 세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바, 정부는 지역활성화투자펀드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

한 계획을 마련·이행함으로써 그 결과를 환류하여 사업방식 개선 등에 활용하는 한편, 국회심사시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예산심사를 지원해야 할 것임.

○ 동 사업은 사업구조가 복잡하고, 참여자가 다양할 뿐 아니라, 새롭게 도입되는 방식이어서 사업에 대한 외부적 통제와 평가가 어려우며,

모펀드 출자자 중 하나인 정부는 자펀드 결성, 프로젝트 선정, SPC 구성 등에 대해 전혀 관여할 수 없으므로, 프로젝트 개요 외에 사업성, 수요 확약 내용, 자금 조달 현황, 각 SPC 설립 경과 및 구성 현황 등 펀드의 재무·경영 정보를 별도로 보유하지 않아 동 사업의 핵심적인 집행과정에 대한 주요 정보가 국회에 제공되지 않음.

○ 이에 따라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예산 투입의 정당성, 규모의 적정성, 사업방식의 적절성, 사업의 성과 등에 대한 논의를 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정부는 이를 보완할 성과평가 방법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한편, 동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와 관련하여, 성과계획서는 동 사업의 자펀드 조성규모를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각 년도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나, 사업의 일차적인 성과를 측정하기에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재정모펀드 조성사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각 연도 예산에 따라 조성해야 하는 자펀드 규모를 성과목표로 설정[292]하고 있는데, 지역

292) <정책모펀드 사업 성과지표 사례 >

활성화투자펀드는 2024년과 2025년 예산에 따라 조성해야 하는 자펀드의 최소 조성규모가 매년 6,000억원인데도[293] 매년 750억원의 자펀드를 조성하는 것을 성과목표로 설정하고 있음.

〈 지역활성화투자펀드사업 성과지표 및 성과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1	'22	'23	'24	'25	'25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펀드 조성실적 (단위: 억원)	목표				750	750	모펀드의 자펀드 앞 출자비율, 펀드 결성기간 등 감안	선정된 **자펀드 운용사 펀드 결성금액**	산업은행 제출자료
	실적				-	-			
	달성도				-	-			

(자료: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모펀드 투자기간 2년[294], 자펀드 최초 선정 가능 시점(매년 2월) 및 선정 후 펀드결성 평균 기간 7개월(최소 4개월, 최대 10개월)을 고려하여 매년 4분기부터 펀드 조성이 개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해당 연도에 조성된 모펀드로 연도 내에 각 750억원의

사업명	'25 예산안	자펀드 조성규모	성과지표	구분	'21	'22	'23	'24	'25	측정산식
혁신성장 펀드	2,000억원	3조원	펀드 조성실적 (백억원)	목표	400	400	300	300	300	선정된 위탁운용사 펀드 결성금액
				실적	644	539	394	-	-	
				달성도	161%	134%	131%	-	-	
반도체 생태계 펀드	300억원	1200억원	펀드 조성실적 (백억원)	목표	-	-	-	-	12	선정된 위탁운용사 펀드 결성금액
				실적	-	-	-	-	-	
				달성도	-	-	-	-	-	
원전산업 성장펀드	400억원	1000억원	펀드 조성실적 (백억원)	목표	-	-	-	-	10	선정된 위탁운용사 펀드 결성금액
				실적	-	-	-	-	-	
				달성도	-	-	-	-	-	

(자료: 금융위원회)

293) 모두 도(道) 프로젝트에 출자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산정한 것으로, 모두 광역시 프로젝트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자펀드 조성규모는 1조원까지 확대될 수 있음.

294) 당초 2024년도 예산안 심사시, 모펀드 투자기간(2년)에 대해서는 설명되지 않음. 타 재정모펀드 조성사업의 경우, 모펀드의 매입기간을 장기(혁신성장펀드: 6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연도내 자펀드 결성을 완료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모펀드 투자기간을 단년도로 하고 있음. 이와 달리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2024년 모펀드 위탁운용사 선정계획 공고'에서 매입기간을 펀드 설정일로부터 2년 이내(출자자간 협의로 연장 가능)로 하고 있으나, 연도내 자펀드 결성 등의 조건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있음.

자펀드를 조성하는 목표를 설정한 것임.[295]

○ 그러나 살펴본 바와 같이, 다른 재정모펀드 조성사업의 경우 당해 연도 예산 투입에 따른 자펀드 조성 예정액 전체를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현재의 성과목표로는 각 연도에 조성해야 하는 자펀드 실적을 알 수 없으므로, 2차연도인 2025년 성과목표에는 출자예산에 따라 조성해야 하는 자펀드 결성금액을 보다 현실적으로 산정하여 반영하여야 할 것임.

295)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금융위원회

【참고】 성과지표 설정 관련

▪ 母펀드 투자기간 2년, 子펀드 최초 선정 가능시점(매년 2월) 및 선정 후 펀드결성기간 평균 7개월(최소 4개월, 최대 10개월) 가정시 매년 4분기부터 펀드조성 개시 → 매분기 기준 각 750억원의 子펀드 조성 예상

- 매년 1.1~12.31을 측정대상기간으로 하는 성과지표의 특성상 '24년 및 '25년 성과지표 목표금액으로 750억원 설정*

* ('24년 예산分) '24년 750억원, '25년 누적 3,750억원, '26년 누적 6,000억원
('25년 예산分) '25년 750억원, '26년 누적 3,750억원, '27년 누적 6,000억원

9. 산업은행 출자(반도체생태계펀드)[296]: 혁신성장펀드와의 관계 고려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산업은행 출자(반도체생태계펀드)”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분야 및 팹리스[297] 분야의 집중 투자를 통한 글로벌 선도기업 육성과 생태계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 전용펀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재정을 출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 300억원이 신규로 반영됨.

<2025년도 산업은행 출자(반도체생태계펀드)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산업은행출자 (반도체생태계펀드)	-	-	30,000	30,000	순증

(자료: 금융위원회)

□ 반도체생태계펀드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업 및 스케일업·M&A를 목적으로 하는 팹리스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로, 정부는 향후 3년간(2025년~2027년) 재정(2,000억원) 및 산업은행 자금(2,000억원)을 마중물로 민간자금(4,000억원)을 매칭하여 총 8,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신규로 조성하여, 기 조성중인 3,000억원 규모의 반도체생태계펀드와 함께 총 1조 1,000억원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임.

296) 세부사업: 산업은행 출자(지역활성화투자펀드)(2414-320)
297) 시스템반도체의 설계와 개발만을 전문적으로 수행

<신규 반도체생태계펀드 조성계획(안)>

(단위: 억원)

구 분	2025년	2026년	2027년	합계
재 정	300	850	850	2,000
정책금융(산업은행)	300	850	850	2,000
민 간	600	1,700	1,700	4,000
합 계	1,200	3,400	3,400	8,000

○ 2023년부터 조성 중인 기존 반도체생태계펀드는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한국산업은행과 반도체 분야 대기업 및 민간 출자금만으로 2025년까지 총 3,000억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임.

<기존 반도체생태계펀드 조성계획(안)>

(단위: 억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합 계
정책금융(산은·기은 등)	140	305	305	750
반도체기업(삼성·SK)	60	345	345	750
민간	200	650	650	1,500
합 계	400	1,300	1,300	3,000

2) 검토의견

반도체생태계펀드 조성사업에 관하여는 혁신성장펀드의 반도체 분야 투자 실적, 반도체생태계펀드와 혁신성장펀드의 경쟁관계, 혁신성장펀드를 활용한 반도체 분야 투자 촉진 가능성 등의 사항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반도체생태계펀드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도의 반도체 분야 섹터펀드를 조성할 필요성과 투자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첫째,** 이미 금융위원회 소관의 '혁신성장펀드'를 통해 반도체 분야에 대한 투자가 상당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함.

○ 혁신성장펀드는 약정총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주목적 투자분야에 투자하도록 하고 있는데, 혁신성장펀드의 주목적 투자분야인 '혁신성장 공동기준'에 시스템반도체, AI칩 등을 포함하는 차세대반도체 분야가 포함되어 있어[298] 혁신성장펀드를 통해서 반도체 분야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음. 또한, 각 년도 혁신성장펀드 조성계획에서 반도체 분야에 대한 집중투자를 명시하고 있음.[299]

298) 혁신성장펀드는 신산업 및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혁신산업펀드와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성장지원펀드로 구성되며, 혁신산업펀드는 혁신성장 공동기준 품목 해당 기업이나 '新성장 4.0', '글로벌 초격차산업 및 미래유망산업' 분야에, 성장지원펀드는 일정 요건을 가진 중소·중견기업(에 각각 약정총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투자하도록 하고 있음. 이 중 혁신산업펀드의 주목적 투자분야에 시스템반도체를 포함하는 차세대반도체 분야가 포함되어 있는 것임.

299) 혁신성장펀드 조성계획 중 '반도체 분야' 관련 내용

<혁신성장 공동기준 품목 내역(일부 발췌)>

테마	분야	포함품목
전기·전자	차세대반도체	3D집적회로, 전력반도체소자, 시스템반도체, AI칩,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장비, 자외선발광다이오드(UVLED) 램프

(자료: '혁신성장 공동기준' 일부 발췌)

○ 이에 따른 2023년 '혁신성장펀드'의 반도체 관련 투자액은 710억원(혁신산업 320억원, 성장지원 390억원)으로, 전체 투자액 5,686억 중 12.5%가 반도체 분야에 투자된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범용펀드인 혁신성장펀드를 통해서도 반도체 분야에 대한 투자가 상당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2023년 자펀드 조성액 3조원을 기준으로, 약 10%가 반도체 분야에 투자된다고 가정할 때, 매년 혁신성장펀드를 통해 3,000억원의 자금이 반도체 분야에 투자될 수 있음.

<'23년도 혁신성장펀드 조성계획>
1 미전략산업 지원을 통한 우리경제의 성장동력 제고 지원
○ 新성장 4.0, 글로벌 초격차 산업*, 미래유망산업** 등 국가전략산업분야의 성장잠재력 높은 유망기업을 발굴하여 집중 투자
*우리기업이 세계 1위를 다투는 高부가 주력산업분야(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현재는 미약하나 향후 시장잠재력이 큰 전략산업분야(바이오헬스, 수소, 디지털 등)

<'24년도 혁신성장펀드 조성계획>
○ 미래 전략산업으로서의 환경 및 AI(AI 반도체 등) 분야의 투자촉진 유도
- 환경·AI(AI반도체 등)를 주목적 투자대상으로 추가 지정하는 운용사는 우선하여 운용사로 선정하여 자펀드 조성
*탄소중립·녹색경제 실현 관련 품목 또는 인공지능 관련 품목에 20% 이상 투자시 자펀드 운용사로 우선 선정(1,000억원 규모 펀드 1개씩 2개)

(자료: 각 년도 혁신성장펀드 조성계획 일부 발췌)

〈 2023년 혁신성장펀드 분야별 투자 현황 〉

(단위 : 억원, 개)

구 분[주1]	혁신산업펀드		성장지원펀드		합 계	
	투자액	기업수	투자액	기업수	투자액	기업수
첨단제조 자동화	381	6	50	1	431	7
화학 신소재	50	1	-	-	50	1
에너지	400	1	50	1	450	2
환경지속가능	20	1	-	-	20	1
건강·진단	555	7	674	12	1,229	19
정보통신	241	6	455	9	696	15
전기·전자[주2]	320	2	450	3	770	5
차세대반도체	**320**	2	**390**	2	**710**	4
센서측정	-	-	60	1	60	1
지식서비스	460	3	299	7	759	10
기 타[주3]	556	8	665	2	1,221	10
합 계	2,983	35	2,703	36	5,686	71

주1) 혁신성장공동기준 9대 테마 기준

주2) 전기·전자 테마에 차세대반도체, 감성형인터페이스, 웨어러블 디바이스, 능동형 조명, 차세대 컴퓨팅 분야가 포함되며, 대부분 차세대반도체 분야에 투자됨.

주3) 혁신성장공동기준 품목 외 투자

(자료: 금융위원회)

□ **둘째,** 반도체 분야 투자에 있어서 반도체생태계펀드와 혁신성장펀드가 경쟁관계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금융위원회는 반도체생태계펀드 투자 분야(반도체 소재·부품·장비, 펩리스)의 협소성과 리스크로 인해 범용펀드인 혁신성장펀드에 비해 민감자금 유치가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반도체생태계펀드의 정책출자비율(50%)을 혁신성장펀드의 정책출자비율(30%) 보다 높게 설정하였음.

○ 그런데 반도체생태계펀드의 주목적 투자비율을 혁신성장펀드와 동

일한 수준인 약정총액의 60%로 설정함에 따라, 반도체생태계펀드가 주목적 투자비율은 혁신성장펀드와 동일(60%)하면서 정책출자비율이 높다는 점(50%>30%)을 고려하여 혁신성장펀드를 통해 반도체에 투자하던 수요가 반도체생태계펀드로 이동할 수 있으며,

정책출자비율 30%로도 반도체 분야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는데 정책출자비율을 50%까지 상향한 별도의 반도체 분야 펀드를 조성하는 것은 재정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정책펀드 주목적 투자비율>

(단위: 억원)

정책펀드		정책		민간	출자비율		주목적 투자비율
		재정	산은·기은 공공기관		재정	정책	
섹터 펀드	원전성장펀드	400	300	300	40%	70%	50%
	반도체생태계펀드	300	300	1,200	**25%**	**50%**	**60%**
범용 펀드	혁신성장펀드	2,000	7,000[주1)]	21,000	**6.7%**	**30.0%**	**60%** (유형별 차이有)

주1) 산업은행 자체출자 6,000억원과 재투자액 1,000억원을 합산한 금액임.
주: 2025년도 예산안 기준

□ **셋째**, 범용펀드인 혁신성장펀드를 활용하여 반도체 분야 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섹터펀드를 신설하여 투자 분야를 한정하는 경우 분야별 투자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투자 분야의 시장상황에 따라 펀드의 성과가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별도의 모펀드운용

사 선정 등 관리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범용펀드인 혁신성장펀드를 활용하여 반도체 분야 투자를 촉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현재도 혁신성장펀드 운영시 일부 분야의 투자 촉진을 유도하기 위하여 특정 분야를 주목적 투자대상으로 추가 지정하는 운용사를 우선하여 선정[300]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제도를 활용하여 반도체 분야에 대한 투자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반도체 분야 투자 자체에 대해 반도체생태계펀드와 혁신성장펀드간 차별성은 존재하지 않으나, ① 혁신성장펀드는 다수의 분야에 투자할 수 있는 범용펀드로 반도체 분야에 투자를 한정할 수 없으나,[301] 반도체생태계펀드는 주목적 투자 대상을 반도체 분야로 한정하는 섹터 펀드이므로 반도체 생태계 조성이라는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섹터펀드인 반도체생태계펀드를 조성할 필요성이 있고, ②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팹리스 분야의 협소성·리스크 고려시 민간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마중물 자금으로서 정책출자비율이 50% 수준이 되어야 하므로 혁신성장펀드의 정책출자비율은 30%로 활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임.

---

300) <'24년도 혁신성장펀드 조성계획>
- 환경·AI(AI반도체 등)를 주목적 투자대상으로 추가 지정하는 운용사는 우선하여 운용사로 선정하여 자펀드 조성
*탄소중립·녹색경제 실현 관련 품목 또는 인공지능 관련 품목에 20% 이상 투자시 자펀드 운용사로 우선 선정(1,000억원 규모 펀드 1개씩 2개)

301) 산업은행은 유한책임사원(LP)이므로, 혁신성장펀드의 자펀드운용사에게 특정분야(예: 반도체 산업)의 투자를 강제할 수는 없음.

□ 따라서 동 사업에 대해서는 정혁신성장펀드의 반도체 분야 투자성과, 혁신성장펀드 운용사 선정 방식 개선을 통한 반도체 분야 투자 촉진가능성과 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속적이고 폭넓은 투자 필요성 등을 함께 고려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10. 산업은행 출자(반도체설비투자지원특별프로그램)[302]: 현금 출자 및 대출 규모의 적정성 검토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산업은행 출자(반도체설비투자특별지원프로그램)”은 반도체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국내외 기업에 대해 설비 투자 및 R&D 자금 등 시설자금을 저리로 대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현금을 출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 2,500억원이 신규로 편성됨.

<2025년도 산업은행 출자(반도체설비투자특별지원프로그램)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산업은행 출자 (반도체설비투자특별지원프로그램)	-	-	250,000	250,000	순증

(자료: 금융위원회)

□ 정부는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24.5.23) 및 추진방안('24.6.26)을 통해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대한 26조원 규모의 종합지원을 발표하고, 금융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원활한 투자자금 조달을 위한 17조원의 저리 대출프로그램(반도체 설비투자지원 특별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하였음.

○ 반도체 설비투자지원 특별프로그램은 3년간 최대 2조원(현금 1조원,

302) 세부사업: 산업은행 출자(지역활성화투자펀드)(2414-320)

현물 1조원) 규모의 정부출자를 통해 산업은행의 대출공급 여력을 확충하여 국내에 신규투자하는 반도체 국내외 기업에 17조원 규모의 시설자금을 최저 국고채 수준의 금리로 대출해주는 금융지원방안임.

〈 반도체 설비투자 특별지원 프로그램 개요 〉

(운용 목적) 반도체 산업의 제조역량 구축 지원 및 경쟁력 제고

(운용 기간) 2025년 ~ 2027년(3년)

＊2024.7월부터 저리대출 프로그램 가동 중

(지원 규모) **최대 2조원(현금 1조원+현물 1조원) 정부출자**를 통해 산업은행 대출 공급 여력을 확충하여 **17조원 규모의 저리대출 지원**

(단위: 억원)

구분	2025년	2026년～2027년	합계
운용규모	42,500	127,500	170,000
현금출자 요청액	2,500	7,500	10,000

＊1조원 규모의 현물출자 예정

(지원 대상) **국내에 신규투자**하려는 반도체 전분야(소부장·팹리스·제조시설 등)의 국내외 기업(중소·중견·대기업 포함)

(자금 용도) 설비, R&D 투자자금 등 시설자금(장기대출 위주) 지원, 기존 대출 대환이 아닌 신규투자에 대해 지원

(대출한도) 현행「한국산업은행법」상 동일계열 여신한도*까지 지원

＊BIS개별자기자본(기본자본+후순위채 등 보완자본)×25%

(금리 조건) 국고채+가산금리(이용기업의 신용등급 및 담보조건 등에 따라 산업은행 조달금리 이하인 국고채 금리 수준으로 지원 가능)

*일반 한국산업은행 대출 대비 대기업은 △0.8～△1.0%p, 중소·중견기업은 △1.2～△1.5%p 우대

□ 한편, 산업은행은 내년 정부출자 연계 상품 출시 전까지 반도체 기업의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 재원을 활용한 저리대출 프로그램 2조원을 2024년 7월부터 이미 운영 중임.

○ 2024년 9월말 기준, 23개사로부터 약 1조 1,000억원의 대출 신청을 접수하여 17개사에 대해 8,248억원의 대출 승인이 완료되었음.

〈 산업은행 자체 재원을 통한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 지원 현황 〉

(단위: 억원)

구 분	개사	금액	만기	금리수준
대기업	1개사	5,000	3년	기준금리 + 0.20~0.25%
중견기업	5개사	2,148	1~10년	기준금리 + 0.21~0.77%
중소기업	9개사	1,100	5~13년	기준금리 + 0.27~1.42%
합 계	**17개사**	**8,248**	-	-

주: 2024.9월말 기준

(자료: 한국산업은행)

2) 검토의견

- **산업은행 출자(반도체설비투자 특별지원프로그램)사업(2,500억원)은 기존 재정지원 정책자금으로부터 회수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정책자금 수요에 대응하고 현금배당 규모 축소 등 자체적인 자구노력을 통한 현금출자 규모 감축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 **반도체 분야 신규대출 수요와 기존의 대출 지원 규모를 고려하여 반도체 설비투자지원 특별프로그램 규모(17조원)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규모 금융지원의 일환인 동 사업에 대한 내용별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산업은행이 대출 등 기존 금융지원으로부터 회수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 국가산업정책에 따른 정책자금 수요에 대응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최근 10년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대출 등 산업은행 정책자금 공급을 위해 정부가 산업은행에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 규모는 약 7조 2,836억원(현금 2조 1,336억원, 현물 5조 2,500억원)[303]임.

이를 기반으로 시장 및 기업에 대해 지원된 대출, 투자, 보증 등이 회수되면, 회수된 재원은 산업은행의 일반대출 재원 등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반도체 등 정책자금 수요에 따라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재정의 출자규모 감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최근 10년 산업은행 정책자금공급을 위한 정부출자사업(경유출자제외)>

(단위: 억원)

연도	현금출자	현물출자	용 도
2015	400	20,000	-**설비투자펀드 지원 400**: 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이 설비투자펀드를 조성하여 중소·중견기업등의 설비투자자금을 저리로 지원(신용도에 따른 산출 대출금리에서 1%p 감면)함에 따른 예상손실분을 정부재정에서 자본금으로 출자 지원 -**(현물)기투촉 프로그램에 따른 자본보강 20,000**: 다양한 방식의 자금지원 활성화를 위해 운영 중인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의 운용규모 확대와 산업은행의 자산 건전성 확보를 위해 현물 출자
2016	2,877	-	-**설비투자펀드 지원 1,500** -**기투촉 프로그램에 따른 자본보강 1,377**
2017	800	(2,500)	-**4차산업혁명 파트너자금 지원 800**: 4차 산업혁명 및 신성장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산업은행 자체재원으로 2조원 규모의 자금을 조성하도록 하고, 자금 지원에 따른 산업은행의 BIS비율 하락 예상분 보전 -**(현물)한국선박해양 출자금 지원 2,500** *한국선박해양(주) 설립 초기 자본금 출자

303) 2023년말 산업은행이 산정한 BIS 비율 민감도를 기준으로 할 때, BIS 비율 변동 없이 약 46.5조원의 대출 실행이 가능한 규모

연도	현금출자	현물출자	용 도
2018	-	-	-
2019	4,550	-	-**기업경영정상화 지원 4,000**: 경영상황이 악화된 기업들의 재기 지원(2018년 한국GM에 대한 산업은행의 신규증자 8,090억원과 2018~2019년 STX조선해양에 대한 5,671억원의 선수금 환급보증 발급 승인에 따른 자본손실 및 BIS 비율 하락을 보전 -**산업구조고도화 지원 400:** 중소·중견기업의 스마트화, 신산업 등에 대비한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에 출자 -**환경안전투자 지원 150:** 중소·중견기업의 환경·안전분야 관련 시설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은행이 기업에 저리로 대출을 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의 일부 보전 *산업은행·기업은행을 통해 3년간(2019~2021년) 총 5조원(산업은행: 2.5조원, 기업은행: 2.5조원)의 저리 대출자자금 공급
2020	7,776	-	-**산업구조고도화지원 880** -**환경안전투자 지원 375** -**금융시장안정화 방안 6,521**: 증권시장·채권시장 안정펀드 출자 및 LCC 긴급지원대책, 2차·5차 비상경제회의 관련 정책프로그램 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BIS 비율 하락분 보전
2021	3,033	-	-**산업구조고도화 지원 512** -**환경안전투자 지원 225** -**금융시장안정화 방안 2,296**
2022	1,000	5,650	-**KDB 탄소 넷제로 1,000**: 국내 초기단계 탄소중립 핵심 기반분야(수소인프라 등)에 대출, 투자, 보증 지원 *기재부 소관, 산업은행출자(녹색금융) 사업 -**(현물)산업은행 BIS 비율 제고 5,650**
2023	400	4,350	-**KDB 탄소 넷제로 400** -**(현물)산업은행 BIS 비율 제고 4,350**
2024	500	20,000	-**KDB 탄소 넷제로 500** -**(현물)산업은행 BIS 비율 제고 20,000**
합 계	**21,336**	**52,500**	

(자료: 산업은행 제출자료 및 각 년도 예산 및 결산 설명자료를 토대로 작성)

□ **둘째**, 대규모 대출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1조원 규모의 현물출자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산업은행의 건전성 비율을 유지하면서 17조원의 신규 저리 대출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해 산업은행에 대한 현금 및 현물출자 규모를 산정하였음.

- 2023년말 산업은행이 산정한 BIS 비율 민감도를 기준으로 할 때, 17조원 규모의 대출을 실행할 경우 한국산업은행의 BIS비율은 약 68bp 하락[304]하며, 정부는 이 중 일부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현금출자 1조 7,000억원(BIS비율 약 56bp 상승)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현금출자 필요분 중 일부를 현물출자로 대체하여 현금 및 현물출자를 각 1조원(BIS비율 약 55bp 상승) 규모로 편성하였음.

〈 1조원 기준 주요 요인별 BIS비율 민감도 ('23년말 기준) **〉**

요 인	현금출자	현물출자	대출[주1)]
BIS비율 민감도	+33bp	+22bp	△4bp

주: BIS 비율 민감도는 한국산업은행의 BIS 비율 수준 및 대출기업의 신용도 등에 따라 변동
주1) 산은 거래처 평균 신용등급(BBB-) 1년 신용대출 위험가중치 80.7% 기준

(자료: 한국산업은행)

○ 다만, 현물출자[305]시 산업은행의 BIS비율 개선 등의 즉각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나, 현물자산의 변동성으로 인해 산업은행의 재무건전성에 예측하지 못한 위험을 초래하는[306] 등의 문제를 유발할

304) 1조원 대출시 4bp 하락하므로, 17조원 대출시 68bp(4bp×17) 하락
305) 2024년 7월 기준, 한국산업은행 자본금 약 26조 3천억원 중 약 15조 6천억원(59%)이 현물출자에 의한 것임.
306) 산업은행에 대한 현물출자는 현물자산의 변동성으로 인해 산업은행의 재무건전성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출자받은 기업에 손실이 나면 지분법 평가에 따라 그 손실이 지분률만큼 산업은행의 재무제표에 반영되므로, 출자 주식에 따라 산업은행의 BIS. 예를 들어, 산업은행은 한국전력의 최대 주주(32.9%)로, 한국전력이 1조원의 손실을 낼때마다 BIS비율 6bp가 낮아짐.)

수 있고, 현재 산업은행 법정자본금[307]에 여력이 없어[308] 출자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규모 대출 프로그램 실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자체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하여, 산업은행은 최근 4년 동안 약 2조원 규모의 현금배당[309]을 실시한 바 있어, 배당 규모 축소 등을 통해 정책금융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 한국산업은행의 연도별 정부 배당액 〉

(단위: 억원)

연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배당액	2,096	8,331	1,647	8,781	20,855

주: 전년도 실적에 따른 해당 연도 배당액

○ 한편, 현행법상 현물출자는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하여 국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310] 이루어질 수 있으나, 국회가 산업은행 운영 및 정책금융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가 산업은행에 대한 현물출자 실행시 현물출자 규모

307) 「한국산업은행법」
제5조(자본금) ①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은 30조원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정부가 100분의 51 이상을 출자(出資)한다.

308) 2024년 7월말 현재, 한국산업은행의 납입자본금은 약 26조 3천억원으로, 현행 법정자본금 30조원 대비 87.6% 수준이며, 법정자본금 한도까지는 약 3조 7천억원의 여유가 있음.
- 참고로, 2025년 모펀드 조성을 위한 산업은행출자 예산은 3,700억원(반도체설비투자지원 특별프로그램 제외)이며, 타 부처(과기부, 기재부) 산업은행출자 예산은 총 710억원임.

309) 산업은행의 배당률은 35.4%로, 금융지주 평균 27.12%, 기업은행 31.2% 등에 비해 높은 배당성향을 보임.

310) 「국가재정법」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②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轉貸)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및 대상, 사유, 출자로 인해 공급되는 정책자금 지원 내역 등을 지체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311]

□ **셋째**, 지원 규모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반도체 대출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와 반도체 기업에 대한 기존의 대출 지원 등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금융위원회는 신규 설비 투자 수요 및 반도체 대출 프로그램에 대한 금융 수요가 충분하여 향후 3년간 반도체 기업에 대한 저리대출 프로그램 공급 규모(17조원)를 모두 소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 ① 반도체 기업이 '47년까지 총 622조원 투자를 통해 팹 16기를 신설할 계획[312]이고, ② 향후 글로벌 반도체 시장 규모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해당기간('25~'28년) 중 연평균 약 47조원, 누적 약 190조원의 설비를 투자할 것으로 예상되어[313] 향후 설비투자 수요가 충분할 뿐 아니라,

- ③ 산업은행이 '24.7월부터 자체재원으로 운영 중인 반도체 설비투자 특별지원 프로그램 상품이 출시 3개월만에 약 8,000억원 규모(17개사)로 승인된 바 있으며, 해당 프로그램 이용기업 17개사의 '23년말

311) 동 사업과 관련하여 산업은행에 대한 현물출자는 규모(1조원) 외에 출자 대상 현물과 시기에 대한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312)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산업부, '24.1월)

313) 글로벌 반도체 시장(매출액 기준)은 '22년 6,003억불 규모에서 연평균 9.2% 성장하여 '28년에는 8,229억불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연간 설비투자 규모도 '22년 1,825억불에서 매년 3.1% 증가한 '28년 2,006억불 수준으로 예상되며, 우리나라는 해당기간('25~'28년) 중 연평균 366억불(약 47조원), 누적 1,466억불(약 190조원)의 설비투자를 예상

* 출처 : Gartner('24.7월)

차입금 규모가 28.9조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반도체 대출 프로그램에 대한 금융 수요는 충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임.[314]

○ 그러나 반도체 설비투자 특별지원 프로그램은 대환 대출이 아닌 신규투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반도체 분야 신규투자 수요가 중요한데, 반도체 신규투자 여부는 반도체 시장경기에 좌우된다는 점에서 향후 3년 내 17조원 규모 대출 프로그램의 소진 여부가 불확실하며,

이미 정책금융기관과 민간금융기관을 통해 반도체 기업에 대해 대규모로 대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즉, 산업은행이 이미 2023년 중소·중견기업 대출프로그램 등을 통해 반도체 분야에 2조 893억원의 대출과 33억원의 보증을 지원하였고, 2024년에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보다 확대[315]하여 2024년 8월까지 2조 385억원 규모의 대출을 실행하였으며,

- 앞서 제시된 바와 같이 한국산업은행이 자체재원으로 운영 중인 상품 이용기업 17개사의 '23년말 차입금 규모가 28.9조원에 달하여, 이미 많은 자금이 민간을 통해 반도체기업에 조달되고 있을 뿐 아니라, 반도체 설비투자 특별지원 프로그램은 대환 대출이 아닌 신규투자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반도체 기업의 기존 차입금 규모는 신규 대출 수요의 근거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314) 다만, 별도의 수요조사가 있었던 것은 아님.
315) 초격차프로그램 금리우대 확대(3월) 및 반도체 설비투자지원 특별프로그램 출시(7월)

○ 반도체설비투자 특별지원프로그램의 수요가 예산편성시 예측한 것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대출 미실행액에 따른 출자금(자본손실분 보전액)은 산업은행의 BIS 비율 제고에 활용되어 타 정책자금지원의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음.[316]

□ **넷째**, 산업은행의 최근 10년 금융지원 현황을 보면, 2014년 125조 8,726억원에서 2023년 268조 5,597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는데,

대규모 정책자금은 정부의 정책 목표에 따라 특정 산업이나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으나, 정책자금 공급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해당 부문으로의 원활한 민간자금유입과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저해하여 유휴 민간자금의 흐름을 왜곡하는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정 산업에 대한 불균형적인 보호는 시장원리에 따른 구조조정 및 민간의 혁신을 유인하지 못하여 장기적으로 시장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대규모 정책자금 공급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316) 2019년 STX조선해양에 대한 5억불 규모(5,671억원)의 선수금 환급보증에 따른 자본손실 및 BIS 비율 하락을 보전하기 위해 산업은행에 1,384억원을 현금출자하였으나, 보증 수요가 당초 계획의 절반에 이르지 못하여 약 754억원의 출자금이 계획된 용도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산업은행의 BIS비율을 높이는 데에 사용됨.

〈 한국산업은행 금융지원 현황(2014년 이후) 〉

(단위 : 억원, %)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대출	집행	462,886	576,064	554,925	586,239	597,151	657,110	796,999	771,342	743,129	803,923
	잔액	932,881	1,240,026	1,237,348	1,220,342	1,216,374	1,286,395	1,456,720	1,586,101	1,772,568	1,786,967
보증	집행	35,872	74,802	25,481	29,593	39,598	46,022	41,470	68,025	81,046	54,384
	잔액	88,974	128,990	109,727	83,921	86,400	88,389	82,809	114,396	142,413	158,018
투자	집행	61,900	99,627	61,685	58,198	75,863	72,131	113,573	60,981	73,107	61,039
	잔액	236,871	576,197	510,119	485,979	507,304	504,268	597,812	697,604	698,542	740,612
총계	집행	560,658	750,493	642,091	674,030	712,612	775,263	952,042	900,348	897,282	919,346
	잔액	**1,258,726**	**1,945,213**	**1,857,194**	**1,790,242**	**1,810,078**	**1,879,052**	**2,137,341**	**2,398,101**	**2,613,523**	**2,685,597**

(자료: 한국산업은행)

11. 산업은행 출자(원전산업성장펀드)[317]: 주목적 투자비율 상향 검토 필요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산업은행 출자(원전산업성장펀드)”는 원전생태계를 정상화하고 원전 사업의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의 원전산업성장펀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재정을 출자하는 단년도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 400억원이 신규로 반영됨.

<2025년도 산업은행 출자(원전산업성장펀드)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산업은행출자 (원전산업성장펀드)	-	-	40,000	40,000	순증

(자료: 금융위원회)

□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SMR 시장 진출 마중물 지원을 위해 SMR 등 원전산업 신기술 분야 정책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을 발표함.[318]

○ 이에 따라 2025년 신규로 추진될 예정인 원전산업성장펀드는 소형모듈원자로(Small Modular Reactor, 이하 “SMR”)[319] 등 원전 관련 분야를 영위 중인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로, 정부는 재정(400억원)과 한

317) 세부사업: 산업은행 출자(지역활성화투자펀드)(2414-320)
318) 관계부처 합동, 관광·원전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 2024.4.15.
319) 원자로 계통을 모듈화, 단순화한 전기출력 300MWe급 소형원자로로, 피동형 안전계통(전원차단시에도 원자로 냉각 유지가 가능한 자연순환 방식의 냉각방식) 채택이 가능하여 안전성이 높고, 산업적 활용도가 큰 특징이 있음.

국수력원자력 등 원자력 공공기관 자금(300억원)[320]을 마중물로 민간자금 300억원을 매칭하여 2025년 중 총 1,000억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임. 투자 분야(원자력 발전 분야)가 협소하여 민간자금 매칭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반영하여 민간매칭 비중을 30%로 설정하고 있음.

<원전산업성장펀드 조성계획(안)>

(단위: 억원)

구 분	재정	원자력 공공기관	민간	합계
출자규모	400	300	300	1,000

2) 검토의견

원전산업성장펀드는 재정 및 공공기관 출자 비율에 비해 주목적 투자비율이 낮은 바, 민간투자 마중물로서의 기능을 고려하여 주목적 투자비율의 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범용펀드에 비해 투자 분야가 비교적 한정되어 있는 섹터펀드를 조성하는 것은 특정 분야의 시장을 조성해야 하는 정책적 당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실패로 인해 해당 분야에 대한 민간자금 조달이 부족(Fungding Gap)한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임.[321]

320) 한수원은 300억원 규모로 펀드 출자를 위한 관련 절차(자체 예산반영, 출자 관련 관계부처 협의 및 이사회 의결 등)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펀드에 최종 출자할 계획임
* 한수원의 최종 출자금액은 관계부처 협의 및 이사회 결과 등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321) 섹터펀드는 정책 목표(특정 산업 육성)와의 연계성이 강하여 해당 산업의 성장가능성을 높이며, 특화된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운용팀이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원전 분야 섹터펀드는 i) 정부가 글로벌 SMR 시장의 성장 전망[322]에 대응하여 범용펀드인 혁신성장펀드를 통해서도 SMR 분야 투자가 가능하도록 혁신성장펀드의 투자 기준인 혁신성장공동기준에 SMR을 신규로 포함(2023년)하였으나, 아직 투자사례가 없고, ii) SMR 등 원전 분야의 협소성 및 높은 투자리스크로 인해 향후에도 범용펀드를 통한 원전 분야 투자자금 조달은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전 분야 투자자금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조성하려는 것으로 보임.

□ 섹터펀드는 민간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대체로 범용펀드에 비해 다소 높은 정책출자비율을 설정하되, 해당 분야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주목적 투자비율 등)를 마련하고 있으며,

○ 원전산업성장펀드도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주목적 투자비율을 설정하고 있는데, 원전 중소·중견기업에 약정총액의 50% 이상, 이 중 SMR 분야에는 50% 이상 투자하도록 하여 원전 분야, 특히 SMR 분야에 대해 투자자금이 공급되도록 하고 있음.

□ 원전산업성장펀드의 정책출자비율(70%)과 주목적 투자비율(50% 이상)을 2025년도 산업은행출자를 통해 조성하는 타 정책펀드와 비교해보면, 정책출자비중은 타 펀드에 비해 높으면서도, 주목적투자비율은 섹터펀드

322) 영국 국립원자력연구원은 최대 5천억달러(~'35), 캐나다 천연자원부는 3천억달러(~'40) 규모의 SMR 시장 전망을 발표한 바 있음. 이에 따라 미국·영국·프랑스 등 세계 17개국에서 80종 이상의 SMR을 개발 중이며, 대부분 '30년대 전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인 반도체생태계펀드 뿐 아니라 범용펀드인 혁신성장펀드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으로, 정책출자비율(7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정책펀드 정책출자비율 및 주목적 투자비율>

(단위: 억원)

정책펀드		정책		민간	출자비율		주목적 투자비율
		재정	산은·기은 공공기관		재정	정책	
섹터 펀드	**원전성장펀드**	400	300	300	**40%**	**70%**	**50%**
	반도체생태계펀드	300	300	1,200	**25%**	**60%**	**60%**
범용 펀드	혁신성장펀드	2,000	7,000[주1)]	21,000	**6.7%**	**30.0%**	**60%** (유형별 차이有)

주1) 산업은행 자체출자 6,000억원과 재투자액 1,000억원을 합산한 금액임.
주: 2025년도 예산안 기준

□ 원전산업성장펀드는 재정 400억원과 한국수력원자력 출자액 300억원, 민간출자액 300억원으로 조성하는데, 펀드조성액 1,000억원 중 원자력 발전 분야 투자 금액은 500억원 이상, 이 중 SMR 분야 투자금액은 250억원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어, 정책출자금(700억원)보다 더 적은 금액이 원전 분야에 투자되고, 민간 유입자금은 원전 분야에 투자되지 않을 수 있어 원전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 마중물로서의 기능이 약한 것으로 보임.

□ 이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는 현재 SMR 산업은 시장 초기 형성 단계로 투자대상이 타 산업 대비 다소 협소한 점을 감안하여, 민간자본 투자 유인을 위해 주목적 투자 비율(50%)을 다소 보수적으로 산정한 것으

로, 주목적 투자 비율을 과도하게 높게 산정할 경우, 운용사가 지원하지 않거나 민간출자자 모집이 저조하여 펀드 조성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을 우려하고 있음.

○ 한국수력원자력의 에너지혁신성장펀드('20.5월~)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펀드 규모(445억) 대비 민간 출자(125억) 비중은 28%에 불과하나 주목적 투자비율을 50%로 설정하였다는 것임.

〈 원전산업 성장펀드 및 에너지혁신성장펀드 비교 〉

구 분	원전산업 성장펀드	에너지 혁신성장펀드
조성목적	SMR 등 원전산업을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초격차 기술력 확보 등 경쟁력 강화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원전 산업계 이탈을 방지하고, 원전 생태계를 유지·보완하며, 원전 해체산업 육성
조성목표(규모)	1,000억원 (정부 400억원, 한수원 300억원, 기타 민간 출자 300억원)	445억원('20.11월) (한수원 300억원, 공기업 20억원, 기타 민간 출자 125억원)
주목적 투자 분야(비율)	원전 중소·중견기업에 **50% 이상 투자**(이중, SMR 분야에 50% 이상 투자)	원전 해체 및 유관 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에 50% 이상 투자
모펀드 운용사	산업은행이 공모로 선정 예정	포스코기술투자

(자료: 금융위원회)

□ 그러나 한국수력원자력이 조성한 에너지혁신성장펀드의 경우, 455억원 중 406억원을 투자하였는데, 이 중 258억원(투자액 대비 63.5%, 조성액 대비 56.7%)을 원전 분야 중소·중견기업에 투자한 바 있고,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SMR 투자 수요 조사 결과, SMR 등 원전 분야 투자계획(500억원 이상)의 3배 이상의 수요를 확인하였음[323]을 고려할 때,

원전성장지원펀드의 주목적투자비율을 정책출자비율보다 낮게 산정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323) 원산협회 수요조사('24.2월) 결과, SMR 분야에 총 1,581억원의 투자 수요 확인(중소·중견)

12. 소상공인 · 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324]: 정부 출자규모 조정 필요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사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채권매입 비용 일부를 출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700억원(51.5%) 증가한 5,000억원이 편성됨.

<2025년도 한국자산관리공사(소상공인 · 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280,000	330,000	500,000	170,000	51.5

(자료: 금융위원회)

□ 동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시기에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중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어 90일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하였거나 곧 발생할 위험이 큰 부실(우려)차주 관련 채권을 매입하여 원리금 감면 등 채무조정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 사업을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인 ‘새출발기금’을 신설하였음.

□ 채무조정의 방식은 두 가지인데, ① 부실차주의 신용·보증 채권은 ‘매

324) 세부사업: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2432-303)

입형’(한국자산관리공사) 방식으로, ② 부실차주의 담보채권 및 부실우려차주에 대하여는 ‘중개형’(신용회복위원회) 방식으로 지원함.

- 매입형은 새출발기금이 협약가입 금융회사[325]로부터 대출채권[326]을 매입하여 순부채를 감면하는 등 직접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며, 중개형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조정안을 바탕으로 협약가입 금융회사의 동의 하에 이자율 인하 등의 채무조정이 이루어지는 방식인데, 채권금융회사가 채무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새출발기금이 이를 매입하여 채권자로 참여하게 됨.

□ 2024년 9월 기준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매입형의 경우 원금은 약 70%, 이자는 100% 감면되며, 중개형의 경우에는 이자율이 약 5%p가 인하되는 것으로 나타남.

〈 매입형 및 중개형 지원 현황 〉

(2024년 9월 기준)

구 분		매입형			중개형			
		부실차주(신용·보증채권)			부실차주(담보채권)		부실우려차주	
		원금 감면율	이자 감면율	분할 년수	이자율 인하(%p)	분할 년수	이자율 인하(%p)	분할 년수
2022년 4/4분기		69.8%	100%	8.7	5.3%	15.3	5.2%	9.8
2023년	1/4분기	70.0%	100%	9.1	5.8%	13.8	4.3%	10.2
	2/4분기	69.9%	100%	9.4	6.2%	15.9	4.7%	10.2
	3/4분기	70.2%	100%	9.4	6.4%	15.8	4.5%	10.3
	4/4분기	71.3%	100%	9.5	5.6%	15.3	4.4%	10.3
2024년	1/4분기	70.4%	100%	9.5	5.2%	16.9	4.2%	10.2
	2/4분기	70.6%	100%	9.6	5.9%	15.4	5.0%	10.2
	3/4분기	70.8%	100%	9.3	6.6%	14.9	5.0%	10.3

(자료: 금융위원회)

325) 2024년 8월 기준 2,667개 기관

326) 채무조정 한도는 총 15억원으로 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이며, ① 주택구입 등 자산형성 목적의 대출과 ② 채무조정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신규대출은 채무조정 불가. 단, 신청일 6개월 이내 신규대출이 총채무 30% 이하인 경우는 가능

□ 또한, 새출발기금의 채권매입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 10월 사업 시작 이후 약 2년간의 총 부실채권매입액은 6조 911억원이며, 이 채권매입을 위해 실제 사용된 금액은 2조 6,798억원임.

〈 새출발기금 채권매입 실적 〉

(단위 : 억원, 2024년 9월 기준)

연 도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22	채권매입액	('22.10. 새출발기금 출범)									-	750	2,202
	매입가액										-	364	500
2023	채권매입액	1,693	2,222	1,777	2,114	2,130	1,859	576	2,784	2,819	2,868	2,695	2,608
	매입가액	406	611	826	947	976	796	311	1,432	1,410	1,320	1,119	1,155
2024	채권매입액	2,520	2,525	2,900	3,076	3,464	4,257	4,933	3,991	4,148			
	매입가액	1,209	1,158	1,350	1,306	1,596	1,861	2,313	1,830	2,004			
합 계		**총 채권매입가액 26,798억원 / 총 부실채권매입액 60,911억원 (채권매입가율 44.0%)**											

(자료: 금융위원회 제공자료 재구성)

* 2024년 2월 지원대상 확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사업주 → 코로나19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2020.4.~2023.11. 중 사업을 영위한 사업주

* 2024년 9월 지원대상 확대: 2020.4.~2023.11. 중 사업을 영위한 사업주 → 2020.4.~2024.6. 중 사업을 영위한 사업주

2) 검토의견: 정부 출자규모 조정 필요

새출발기금의 실제 부도율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상부도율을 상향조정해 정부 출자 총 규모를 증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사업비 분담 실적이 저조한 점, 새출발기금이 매입한 채권의 실제 손실 발생은 10년 이후에나 현실화되므로 사업 초기에 정부 출자 비율을 높일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정부 출자규모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 정부는 당초 2022년 10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3년간 채무조정 신청을 받아 총 30조원의 부실채권을 매입하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매입비용 18조원은 정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분담하기로 하였는데,

- 이중 14조 4,000억원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고, 예상 부도발생률 20%를 적용하여 손실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3조 6,000억원은 정부가 자본금 출자를 통해 보충한다는 계획이었음.

□ 이 계획에 따라 2022년부터 2024년 10월까지 정부는 총 1조 7,100억원을 출자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총 1조 4,800억원 규모의 공사채를 발행하였음.

〈새출발기금 관련 정부 출자 및 공사채 발행 규모〉

(단위: 억원, 2024년 9월 기준)

구 분	'22년	'23년	'24년	투입합계	'25년계획
정부 출자(예산)	11,000*	2,800	3,300	**17,100**	**5,000**
공사채발행	-	3,600	11,200	**14,800**	**미정**
합 계	11,000	6,400	14,500	**31,900**	-

주: 현물출자 5,000억원 포함 (자료: 금융위원회 제공자료 재구성)

□ 그런데,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327]의 일환으로 2024년 9월에 새출발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였음.

〈새출발기금 사업계획 변경 내역〉

구 분	종전	2024.9. 계획변경
지원대상 소상공인·자영업자	2020.4.-2023.11. 중 영업한 사업주	2020.4.-2024.6. 중 영업한 사업주 **(7개월 확대)**
새출발기금 신청기간	2025.10.까지	2026.12.까지 **(15개월 연장)**
부실차주 채무감면 범위	순부채의 60~80%, (취약계층은 90%까지)	순부채의 60~80%, 취업·재창업 교육이수 시 최대 10%p상향 (취약계층은 90%까지)
채무조정 제외 대상채무	영업과 무관한 개인 자산형성 목적 가계대출 등	
	신청일 6개월 이내의 신규대출 및 대환대출	신청일 6개월 이내의 신규대출 (대환대출은 채무조정 가능)
	단, 부실차주의 총채무 30%이하 신규대출은 채무조정 가능	단, 총채무 30%이하 신규대출은 채무조정 가능

(자료: 금융위원회 제공자료 재구성)

- 지원대상 사업영위 기간을 7개월 확대하고, 채무조정 신청기간도 15개월 연장하였으며, 취업·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부실차주에 대해서는 채무를 최대 10%p 추가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채무조정 신

327)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2024.7.3., 관계부처 합동

청일 기준 6개월 이내의 대환대출 뿐만 아니라 총 채무액 30% 이하의 신규대출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하였음.

□ 이와 같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부실채권 매입규모도 종전 '30조원'에서 '33.4조원'으로 확대되었는데, 채권매입 소요재원은 종전 18조원에서 13.6조원으로 오히려 감소하였음.

- 이는 소요재원 산정 시 적용되는 채권매입가율을 종전 60%에서 40.7%로 하향조정 하였기 때문으로, 새출발기금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실제 채권매입가율을 반영해 현실화한 것으로 보임.

<새출발기금 재원계획 변경 내역>

구 분	종전	2024.9. 계획변경
부실채권 매입 규모	30조원	33.4조원
채권매입 소요재원	18조원 = 30조원 × **60%(채권매입가율)**	13.6조원 = 33.4조원 × **40.7%(채권매입가율)**
정부 출자 규모	**3.6조원** = 18조원 × **20%(예상부도율)**	**4.01조원** = 13.6조원 × **29.5%(예상부도율)**
공사채 발행 규모	14.4조원 = 18조원 - 정부출자금	9.59조원 = 13.6조원 - 정부출자금

(자료: 금융위원회 제공자료 재구성)

□ 그런데, 채권매입 소요재원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출자 규모는 종전 3.6조원에서 4.01조원으로 오히려 증액되었음.

- 이는 당초 계획상 새출발기금의 손실 가능성을 고려해, 예상부도율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부 출자를 통해 보전하기로 하였는데, 이 예상부도율을 29.5%로 상향조정하였기 때문임.

-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 시 일반적으로 1년~3년의 거치기간을 설정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새출발기금의 정확한 부도율을 확인하는 것이 어려워, 유사 프로그램인 신용회복위원회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무조정에 따른 손실률을 참고하여 부도율을 산정하였다고 설명함.

- 그러나 최초 제도 설계 시에도 유사 채무조정프로그램의 부도율을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시에 이전과 달리 새출발기금의 실제 부도율도 아닌 유사 채무조정프로그램을 참조해 부도율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아니함.

□ 또한, 2025년도 예산안과 같이 새출발기금에 정부가 5,000억원을 추가 출자할 경우 목표 대비 정부 출자 실적은 55.1%에 이르는 반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사채 발행 규모는 목표 대비 2024년 9월 기준 15.43%에 머물러 있어, 정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 간의 사업비 분담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정부출자 및 공사채발행 규모 비교 〉

(단위 : 억원)

구 분	2024.9.변경 목표규모	2024.9.까지 투입 실적	목표 대비 실적	2025년 투입계획	총투입 (예상)	목표 대비 실적(예상)
정부 출자	40,100	17,100	42.6%	5,000	22,100	**55.1%**
공사채 발행	95,900	14,800	**15.43%**	미정	-	-

□ 한편, 새출발기금 운용계획 상 채무 상환과 관련하여 1년~3년의 거치기간을 부여하고, 10~20년의 장기 분할상환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 부실(우려)차주가 제때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업 시작 후 최소 10년 이후에나 매입채권에 대해 실제 손실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 초기에 정부 출자 비율을 높일 필요성이 크지 않아 보임.

□ 새출발기금의 실제 부도율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상부도율을 상향조정해 정부 출자 총 규모를 증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사업비 분담 실적이 저조한 점, 새출발기금이 매입한 채권의 실제 손실 발생은 10년 이후에나 현실화되므로 사업 초기에 정부 출자 비율을 높일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부 출자규모 감액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13.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인프라 구축[328]: 포렌식 장비 활용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인프라 구축” 사업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시행(24.7.)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장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4억 3,000만원이 신규 반영됨.

〈2025년도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인프라 구축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인프라 구축	-	-	-	430	430	순증
가상자산 디지털 포렌식 장비 도입	-	-	-	265	265	순증
온체인 거래 분석 서비스 이용료	-	-	-	165	165	순증

(자료: 금융위원회)

□ 2024년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불공정거래는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자기발행 자산 매매 등[329]이며,

328) 세부사업: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인프라 구축(7135-322)

329)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불공정거래행위 등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가상자산에 관한 미공개중요정보(이용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해당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각 호 생략)

② 누구든지 가상자산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및 제제절차는 “① 이상거래 상시 감시 및 모니터링 → ② 불공정거래 사건 조사 → ③ 조치안 마련 및 금융위원회 의결 → ④ 수사기관 통보·고발 및 과징금 부과 등 조치”로 이루어짐.

○ 가상자산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상거래 상시 감시를 수행하고, 발견된 이상거래에 대해 심리하여 금융당국에 통보하는 역할을 수행함.330)

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가 매도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타인이 가상자산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매를 하는 행위
2. 자기가 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타인이 가상자산을 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매를 하는 행위
3. 가상자산의 매매를 할 때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

③ 누구든지 가상자산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가상자산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2.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3.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

⑤ 가상자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자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발행된 가상자산으로서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약속한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반대급부로 가상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2. 가상자산의 특성으로 인하여 가상자산사업자가 불가피하게 가상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불공정거래행위의 방지 또는 이용자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따르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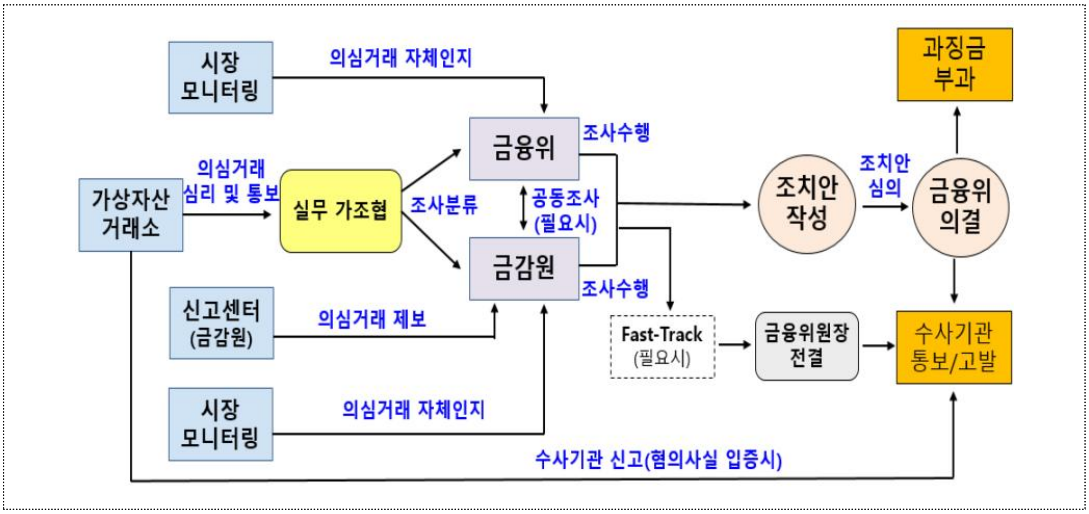
330)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이상거래에 대한 감시) ① 가상자산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상거래(이하 “이상거래”라 한다)를 상시 감시하고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상자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제10조를 위반한 사항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를 위반한 혐의가 충분히 증명된 경우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 사건처리 전반을 총괄·조정하고, 불공정거래행위 혐의에 대한 직접 조사 업무를 수행함.[331]

○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 업무를 위탁받아 불공정거래 사건 조사,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운영, 자체 모니터링을 통한 감시활동 등을 수행함.[332]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및 제재 절차>



(자료: 금융위원회)

33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항이 있거나 이용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반혐의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자에게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조사사항에 관한 사실과 상황에 대한 진술서의 제출
2. 조사사항에 관한 진술을 위한 출석
3. 조사에 필요한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 제10조를 위반한 사항의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2항제3호에 따라 제출된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영치
2. 관계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대한 출입을 통한 업무·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조사

33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권한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이 사업은 금융위원회가 수행하는 불공정거래 사건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가상자산 디지털 포렌식 장비 도입 사업과 온체인 거래 분석 서비스 이용료 사업 등 2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 “가상자산 디지털 포렌식 장비 도입” 사업은 불공정거래행위 혐의자의 휴대폰·컴퓨터 디스크를 분석함으로써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또는 시세조종 과정에서의 공모 혐의 등을 밝혀내기 위한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 2억 6,500만원의 자산취득비(430-01목)가 신규 반영됨.

○ “온체인 거래 분석 서비스 이용료” 사업은 가상자산의 가명성에 따른 자금 추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블록체인 내에 저장된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온체인[333] 데이터 분석 솔루션에 대한 이용료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 1억 6,500만원의 일반수용비(210-01목)가 신규 반영됨.

333) 오프체인이란 블록체인 이외의 외부 거래 내역을 기록하는 방식을 뜻함. 블록체인에서 거래를 기록하는 방식으로는 온체인(On-chain)과 오프체인(Off-chain)으로 나뉘는데, 온체인은 블록체인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 내역을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방식을 의미함(출처: [시사금융용어] 오프체인(Off-Chain), 연합인포맥스(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40358), 2022. 11. 27)

2) 검토의견 : 포렌식 장비의 활용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조사단에서 포렌식 시스템의 활용 실적이 저조했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사 인력의 역량 강화 및 전문성 함양 등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조사를 위한 포렌식 시스템의 활용을 위하여 2017년부터 모바일포렌식(2017년, 2020년), 디스크포렌식(2020년), 클라우드포렌식(2022년)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구축하였음.

<자본시장조사단 포렌식 시스템 도입 현황>

(단위: 개, 백만원)

구분	도입일자	개수	예산액	집행액	이용부서
모바일 포렌식	2017.4.	1	128	88	조사부서
	2020.8.	2	286	276	조사부서
	2023.12.	2	222	217	수사부서
디스크 포렌식	2020.8.	1	61	60	조사부서
	2023.12.	2	37	37	수사부서
클라우드 포렌식	2022.9.	2	41	40	조사부서

(자료: 금융위원회)

□ 그러나, 자본시장조사단의 포렌식 시스템 활용한 실적을 살펴보면, 2020년 도입한 디스크 포렌식 시스템은 2022년까지 활용되지 않았고, 2022년 9월 도입한 클라우드 포렌식은 2023년 상반기까지 활용실적이 없었으며, 이에 국회는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 “금융위원회는 포

렌식 장비 도입 시 운용인력 확보 여부 및 필요성을 검토하여 예산을 반영하고, 이미 도입한 포렌식 장비의 활용실적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시정요구하였음.

○ 당시 포렌식 시스템 활용실적 부진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 등 타 부처와 달리 포렌식 장비 관리·운용을 위한 전문인력 및 조직이 없는데, 디스크 포렌식의 경우 운용 난이도가 높아 전문교육(최소 3개월 소요)이 선행되어야 하나 인력 부족으로 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334]

<자본시장조사단 포렌식 시스템 활용 실적>

(단위: 건)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6.
모바일 포렌식	80	81	63	49	34	19	232	24
자체 포렌식	80	81	63	49	28	19	232	24
대검찰청 의뢰	-	-	-	-	6	-	-	-
디스크 포렌식	32	7	1	-	10	15	36	64
자체 포렌식	-	-	-	-	-	-	14	64
대검찰청 의뢰	32	7	1	-	10	15	22	-
클라우드 포렌식	-	-	-	-	-	-	2	1
자체 포렌식	-	-	-	-	-	-	2	1
대검찰청 의뢰	-	-	-	-	-	-	-	-
합 계	112	88	64	49	44	34	270	89

주: 2023년 모바일포렌식에 유심 포렌식 포함

(자료: 금융위원회)

33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부처별Ⅰ)」, 2023.8. pp. 339~340.

□ 한편, 금융위원회는 내년에 가상자산 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를 위해 모바일 및 디스크 등에서 증거 데이터 축출 및 삭제 파일을 복구할 수 있는 포렌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임.

<가상자산 포렌식 시스템 주요기능>

기능	내용
모바일 포렌식	○ 각종 스마트폰의 통합 증거 데이터 추출 및 추출된 스마트폰 증거 데이터 정밀 분석
디스크 포렌식	○ HDD, USB 등 각종 저장 디스크에서 증거 데이터 추출 및 추출된 증거 데이터 정밀 분석
파일 복구	○ 증거 데이터 및 파일을 복구하여 삭제된 주요 혐의 증거를 도출

(자료: 금융위원회)

□ 그런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를 수행하는 인력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수행 인력(26명)에 비해 크게 부족한 5명[335]에 불과하고, 조사 담당자 중 포렌식 시스템 사용경험이 있는 인력은 1명에 불과한 실정임.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포렌식 활용실적의 부진 원인이 전문인력의 부족에 기인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담당자 전문교육 등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포렌식 시스템의 활용실적이 저조했던 사례가 재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는 시스템의 구축비용 및 향후 소요될 유지보수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예산의 낭비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335) 가상자산 정책·제도 총괄,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직접 조사 및 사건처리 전반에 대한 총괄·조정 업무는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디지털금융정책관 가상자산과에서 수행하며, 정원은 총 9명임. 이 중, 조사인력은 가상자산과 소속 공무원 4인 및 파견 검찰수사관 1명 등 총 5명임.

〈자본시장과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인력 현황〉

(단위: 명)

구분			가상자산	자본시장	
			조사	조사	수사
금융위원회 (자체인력)	서기관		1	2	-
	사무관		1	6	2
	주무관		2	6	1
	소계		**4**	**14**	**3**
파견인력	법무부(검찰)	수사관	1	5	2
	금융감독원	수석/선임	-	3	4
	한국거래소	차장	-	2	-
	예금보험공사	차장/선임	-	-	1
	한국증권금융	과장	-	1	-
	한국예탁결제원	과장	-	1	-
	소계		**1**	**12**	**7**
총 원			**5**	**26**	**10**

(자료: 금융위원회)

□ 그러므로, 금융위원회는 포렌식 시스템이 원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조사인력의 역량 강화 및 전문성 함양 등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

Ⅰ. 일반회계

[세입]

1. 과태료: 수납 가능 범위 내 세입예산 편성 필요 등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과태료’는 부패신고자·공익신고자 및 청탁신고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호조치에 관한 이행강제금 등을 포함하는 세목으로,[336]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000만원 증가(12.5%)한 1억 8,000만원이 편성됨.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의6(이행강제금)[337],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의2(이행강제금)[338]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이행강제금)[339]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이나

---

336) 세부사업: 과태료(56-563)

33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의6(이행강제금)** ①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받은 후 그 정해진 기한까지 신분보장등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338)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의2(이행강제금)** ① 위원회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결정을 받은 후 그 정해진 기한까지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33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이행강제금)** ①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결정을 받은 후 그 정해진 기한까지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국가 또는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음.

○ 2025년 예산안에는 부패신고자 보호위반 이행강제금, 공익신고자 보호위반 이행강제금, 청탁신고자 보호위반 이행강제금으로 각각 6,000만원을 계상함.

< 2025년도 과태료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과태료	△62	160	180	20	12.5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나. 검토의견

권익위는 징수결정액을 근거로 과태료의 예산액을 매년 증액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평균 수납률은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2022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징수결정 29건 중 72.4%인 21건이 법원에서 취소결정을 받았는바, 실제 수납액을 기준으로 하여 수납이 가능한 범위 내의 세입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율을 낮추기 위해 직원 교육 등을 통해 법령 해석에 관한 주의·절차를 강화하여 처분에 관한 국민의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 권익위는 2020년도부터 과태료의 예산액을 매년 증액하고 있으나, 연도별 이행강제금 예산액,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을 보면 금액상 괴리가 상당한 정도로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됨.

○ 예산액은 2020년 3,000만원에서 2025년 1억 8,000만원으로 증가하였으나, 수납액은 2022년 1억 1,000만원이 최고액이며, 2023년엔 음(-)의 수납이 되는 등 매년 변동폭이 큰 상황임.

○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예산액 대비 수납률’보다 훨씬 저조한데, 이는 전년도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이 차년도 징수결정액에 포함되는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 권익위는 대부분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 소송에서 위원회가 패소하거나 소송 패소 취지에 따라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부과 처분을 취소한 것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연도별 이행강제금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 >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A)	이행강제금 징수결정액(B)	이행강제금 수납액(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2020	30	147	37	123.3	25.2	110
2021	60	200	40	66.7	20.0	160
2022	100	260	110	110.0	42.3	150
2023	110	128	△62	△56.4	△48.4	190
2024	160	93	43	26.9		50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2020년~2024년 8월말 기준 과태료 수납실적 >

(단위: 백만원, %)

연도	구분	예산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수납률 (B/A)	미수납액
2020년	부패신고자 보호위반 이행강제금	15	15	97	7	7.2	90
	공익신고자 보호위반 이행강제금	15	15	50	30	60	20
2021년	부패신고자 보호위반 이행강제금	30	30	180	20	11.1	160
	공익신고자 보호위반 이행강제금	30	30	20	20	100.0	-
2022년	부패신고자 보호위반 이행강제금	50	50	170	20	11.8	150
	공익신고자 보호위반 이행강제금	50	50	90	90	100.0	-
2023년	부패신고자 보호위반 이행강제금	40	40	150	-	-	150
	공익신고자 보호위반 이행강제금	40	40	△32	△62	△100.0	30
	청탁신고자 보호위반 이행강제금	30	30	-	-	-	-
	비위면직자 해임요구 거부 과태료	-	-	10	-	-	10

연도	구분	예산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수납률 (B/A)	미수납액
2024년	부패신고자 보호위반 이행강제금	50	50	53	13	24.5	40
	공익신고자 보호위반 이행강제금	60	60	30	30	100.0	-
	청탁신고자 보호위반 이행강제금	50	50	-	-	-	-
	비위면직자 해임요구 거부 과태료	-	-	10	-	-	10

※ 전년도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은 차년도 징수결정액에 포함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2023년의 경우 수납액이 전무한 상황에서 소송 패소로 과오납금반환금이 발생하여 △6,200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2023년 과태료 수납과 관련하여 아래 표의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3건에 관한 소송에서 패소하여 이미 수납된 6,200만원을 과오납처리하여 반환하게 되었기 때문임.

< 2023년 과태료 관련 소송 현황 >

(단위: 백만원)

이행강제금 부과 사유 (차수)	결정일 (반환일)	반환액	비고
공공기관의 직장내 성추행 신고자 신분보장등조치 결정 미이행 (1차)	2023-09-01 (2023-09-26)	△20	신고자 보호조치결정 취소(2023.9.1.)로 기수납된 이행강제금 반환
공공기관의 직장내 성추행 신고자 신분보장등조치 결정 미이행 (2차)	2023-09-01 (2023-09-26)	△20	신고자 보호조치결정 취소(2023.9.1.)로 기수납된 이행강제금 반환
정보통신망법 위반 신고자 보호조치 결정 미이행 (1차)	2023-12-18 (2023-12-22)	△22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결정 (2023.12.18.)
합계		△62	-

주) 같은 원인행위에 관한 이행강제금은 매년 2회차 이내, 회차당 최대 3,0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으며, 총 부과횟수에는 제한이 없음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2022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세입(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현황을 살펴보면, 총 29건 중 ① 수납 5건, ② 승소 3건(대법원 상고중), ③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가 21건(이행강제금을 취소하는 대신 과태료 부과 결정 3건 포함)으로, 징수결정 29건 중 72.4%가 취소되었음.

< 2022년~2024년 8월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현황 >

구분	부과일자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비고
1	2020-09-07	30백만원	-	30백만원	■ 서울고등법원 판결(2022.9.1. 선고) 취지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결정(2024제2분과46호) **2024.3.4.**
2	2020-12-08	-	-	-	■ 서울고등법원 판결(2022.9.1. 선고)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취소 **2022.9.23.**
3	2020-12-28	30백만원	-	30백만원	■ 대전고등법원 판결(2024.1.11. 선고) 취지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결정(2024제2분과47호) **2024.3.4.**
4	2021-02-09	-	-	-	■ 대법원 판결(2022.5.12. 선고) 취지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결정(2022제2분과170호) **2022.9.19.**
5	2021-07-20	-	-	-	■ 대법원 판결(2022.5.12. 선고) 취지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결정(2022제2분과170호) **2022.9.19.**
6	2021-10-12	30백만원	-	30백만원	■ 서울고등법원 판결(2022.9.1. 선고) 취지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결정(2024제2분과46호) **2024.3.4.**
7	2022-02-28	20백만원	20백만원	-	■ 보호조치결정 취소소송에서 패소(서울고등법원 판결, 2023.9.1. 선고) **2023.9.26. 반환**
8	2022-02-28	30백만원	-	30백만원	■ 대전고등법원 판결(2024.1.11. 선고) 취지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결정(2024제2분과47호) **2024.3.4.**
9	2022-11-29	20백만원	20백만원	-	■ 보호조치결정 취소소송에서 패소(서울고등법원 판결, 2023.9.1. 선고) **2023.9.26. 반환**
10	2022-11-29	-	-	-	■ 이행강제금 징수결정액 제외 - 서울고등법원 판결(2023.9.1. 선고)로 보호조치결정 취소
11	2020-09-07	30백만원	-	30백만원	■ 서울고등법원 판결(2022.9.1. 선고) 취지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결정(2024제2분과46호) **2024.3.4.**
12	2020-12-28	30백만원	-	30백만원	■ 대전고등법원 판결(2024.1.11. 선고) 취지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결정(2024제2분과47호) **2024.3.4.**

구분	부과일자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비고
13	2021-10-12	30백만원	-	30백만원	■ 서울고등법원 판결(2022.9.1. 선고) 취지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결정(2024제2분과46호) **2024.3.4.**
14	2022-02-28	30백만원	-	30백만원	■ 대전고등법원 판결(2024.1.11. 선고) 취지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결정(2024제2분과47호) **2024.3.4.**
15	2022-11-29	-	-	-	■ 이행강제금 징수결정액 제외 - 서울고등법원 판결(2023.9.1. 선고)로 보호조치결정 취소
16	2023-09-26 (반환일자)	-	△20백만원	-	■ 2022.2.28. 1차 부과하여 2022.6.30. 수납되었던 이행강제금 반환 - 보호조치결정 취소소송에서 패소(서울고등법원 판결, 2023.9.1. 선고)
17	2023-09-26 (반환일자)	-	△20백만원	-	■ 2022.11.29. 2차 부과하여 2023.1.13. 수납되었던 이행강제금 반환 - 보호조치결정 취소소송에서 패소(서울고등법원 판결, 2023.9.1. 선고)
18	2023-12-22 (반환일자)	-	△22백만원	-	■ 2019.7.17. 부과하여 2019.9.29. 수납되었던 이행강제금 반환 -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위원회 패소 취지 대법원 판결(2023.10.12.선고)
19	2024-03-04	10백만원	8백만원	-	■ 서울고등법원 판결(2022.9.1. 선고) 취지에 따라 이행강제금(2020년 1차, 2021년 2차) 부과 처분 취소 결정(2024제2분과46호) **2024.3.4.** ■ 위 이행강제금을 취소하는 대신 과태료 부과 결정(2024.3.4.) - 자진납부함에 따라 20% 감경 납부 **2024.3.22.**
20	2024-03-04	5백만원	5백만원	-	■ 대전고등법원 판결(2024.1.11. 선고) 취지에 따라 이행강제금(2020년 1차, 2022년 2차) 부과 처분 취소 결정(2024제2분과47호) **2024.3.4.** ■ 위 이행강제금을 취소하는 대신 과태료 부과 결정 **2024.3.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2 제1항 제3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따라 50% 감경 부과 결정 **2024.5.13.** - **2024.6.17.** 수납
21	2024-7-2	10백만원	-	10백만원	■ 서울고등법원 판결(2022.9.1. 선고)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취소 **2022.9.23.** ■ 위 이행강제금을 취소하는 대신 과태료 부과 결정 **2024.6.24.** - **부과대상자의 이의제기에 따라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 중 2024.8.22.**
22	2022-04-11	20백만원	20백만원	-	■ **2022.7.26.** 수납
23	2022-05-20	20백만원	20백만원	-	■ **2022.6.30.** 수납
24	2022-07-25	30백만원	30백만원	-	■ **2022.8.31.** 수납
25	2023-12-18	30백만원	-	30백만원	■ **2024.1.31.** 수납
26	2023-12-18	30백만원	30백만원	-	■ **2024.1.31.** 수납

구분	부과 일자	장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비고
27	2022-11-29	30백만원	-	30백만원	■ 2023.1.4.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 제기 - 2022.6.29. 본소제기 → 2023.2.17. 재판부 사건 병합 ■ 2023.9.8. 1심 위원회 승소, 원고 항소(2023.9.25.) ■ 2024.6.11. 2심 위원회 승소, 원고 상고(2024.7.8.)
28	2022-11-29	30백만원	-	30백만원	■ 2023.1.4.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 제기 - 2022.6.29. 본소제기 → 2023.2.17. 재판부 사건 병합 ■ 2023.9.8. 1심 위원회 승소, 원고 항소(2023.9.25.) ■ 2024.6.11. 2심 위원회 승소, 원고 상고(2024.7.8.)
29	2022-11-29	30백만원	-	30백만원	■ 2023.1.4.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 제기 - 2022.6.29. 본소제기 → 2023.2.17. 재판부 사건 병합 ■ 2023.9.8. 1심 위원회 승소, 원고 항소(2023.9.25.) ■ 2024.6.11. 2심 위원회 승소, 원고 상고(2024.7.8.)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율이 높은 상황에 대해, 권익위는 관계법령의 해석과정에서 판단이 어려운 쟁점이 발생할 수 있고, 패소결과만 부각될 경우 신고자 보호를 위한 위원회의 처분 자체가 위축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임.

□ 그러나, 소송이 제기된 24건 중 패소가 21건으로 패소 비율이 너무 높으며, 최근(2024.3.4.) 대법원 최종선고가 내려진 아래 2건의 결과를 보면, 구법에 규정된 원인행위에 대해 신법을 근거로 처분하였다가 패소하는 등 일반적인 수준의 주의만 기울였다면 충분히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는 처분이 존재함.

< 최근(2024.3.4.)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이 취소된 소송 2건의 요지 >

<사례 1: OO고등학교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 - 서울고등법원 판결(2022.9.1. 선고) 요지>

- 원고들이 구법 제62조제7항에 따른 이 사건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드는 신법 제62조의6의 규정을 원고들에게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아니함.

<사례 2: OO센터 신분보장조치 결정 처분 취소 소송 - 대전고등법원 판결(2024.1.11.) 요지>

- '신분보장등조치결정'에 구법 제62조제7항에 따른 '조치요구'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처분과 같이 신법 제62조의3에서 정한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이 아닌 구법 제62조제7항에 따른 '조치요구'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구법 제9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신법 제62조의6제1항 본문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주) 대법원 판결(2024.3.4.)이 위에 인용된 고등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내려졌음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제출자료 재구성

□ 이행강제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법규를 집행함에 있어서 신고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제도이긴 하나, 부과 대상자에게는 상당한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서 잘못된 법 집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권익위는 향후 이행강제금 부과 시 직원 교육 등을 통해 법령 해석에 관한 주의·절차를 강화하여 처분에 관한 국민의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과태료 예산은 징수결정액을 근거로 매년 증액되고 있으나, 징수결정액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원에서 취소결정이

내려지는 비율이 절반 이상이므로, 실제 수납액을 기준으로 하여 수납이 가능한 범위 내의 세입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 2025년은 2024년보다 2,000만원 증액된 1억 8,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최근 10년간 최고 수납액은 1억 1,000만원, 최근 5년간 평균 수납액이 3,400만원임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세입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세출]

1.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 : 사업비 성격 예산의 기본경비 편성 시정 및 비실명 대리신고 관련 예산 통합 편성 필요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는 국민권익위원회 기관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중 총액인건비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비로,[340] 2025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억 4,200만원(△3.0%) 감소한 45억 4,500만원이 편성됨.

< 2025년도 기관운영경비(비대상)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기관운영 기본경비(비대상)	3,944	4,687	4,545	△142	△3.0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나. 검토의견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에 편성된 부패신고 비실명 대리신고 수당 예산을 주요사업비로 편성·집행하고, 각 세부사업에 편성된 비실명 대리신고 관련 예산을 통합할 필요가 있음.

340) 세부사업: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1111-250)

□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는 본인 노출을 꺼리는 신고자가 공익신고 등을 할 수 있도록,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대리신고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341]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공익신고에 도입(2018.10.18.)된 이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신고[342](2022.6.8.), 부패신고 및 행동강령 위반 신고[343](2022.7.5.),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344](2024.9.27.)로 확대되어 왔음.

□ 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 시 변호사 선임 등의 어려움으로 인한 문제를 겪을 수 있음을 감안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의 비실명 대리신고를 도와주는 자문변호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훈령

---

341)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의2(비실명 대리신고) ①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는 자신의 인 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는 위원회에 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 또는 공익신고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그 취지를 밝히고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을 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이를 열람해서는 아니 된다.

34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비실명 대리신고) ①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조제3항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자가 서명한 문서는 변호사의 인적사항 및 변호사가 서명한 문서로 갈음한다.

34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8조의2(비실명 대리신고) ① 제58조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8조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기명의 문서는 변호사의 인적사항 및 변호사 이름의 문서로 갈음한다.

344)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준용규정) ①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정청구등에 대한 신고의 접수·처리, 신고자등의 보호, 포상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1조까지, 제61조의2, 제63조, 제6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70조, 제70조의2 및 제71조를 준용한다.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운영규정」)에 따라 이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 이와 같이 국민권익위원회는 비실명 대리신고를 이용하려는 부패행위 신고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에 '부패신고 비실명 대리신고 수당' 지급을 위한 일반수용비(210-01) 800만원을 편성하였음.

□ 그런데,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작성 세부지침」은 세출 예산을 그 성격에 따라 크게 인건비, 기본경비, 주요사업비로 구분[345]하고, 각각의 목적에 맞게 편성·집행하도록 하고 있음.

○ 그 중 기본경비는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 경비 및 지속적인 소규모 운영경비로서 기관 전체 및 각 부서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기본행정경비 소요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집행함.

< 예산안 편성지침의 기본경비 예시 >

구 분	내 용
① 기본행정경비	□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경상적 경비 ㅇ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단시간 근로자 포함) 인건비, 일용임금 ㅇ 사무용품 구입·복사·인쇄 책자발간, 간행물 구입 등 ㅇ 전화사용료, 유선방송 수신경비 등 공공요금

345)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작성 세부지침」은 인건비는 세부사업 코드 100~199, 기본경비는 세부사업 코드 200~299, 주요사업비는 세부사업 코드 300~799를 부여하여 구분함.

구 분	내 용
	ㅇ 특근근무자 매식비 ㅇ 일·숙직비, 강사수당, 위원회 참석수당 등 ㅇ 행사차량, 해외주재공무원 주택임차료 등 ㅇ 사무실 유지·보수공사비, 전기·통신시설 보수비 등 ㅇ 기관고유업무 수행을 위한 연구재료비 등(예 : 검사용 시약) ㅇ 업무출장, 직무교육 여비 등 ㅇ 실무공무원 해외연수, 해외파견 공무원 여비, 국제회의 참석여비 등 ㅇ 업무추진비(관서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동호회 지원 등 ㅇ 맞춤형 복지 경비 ㅇ 기본 연구용역비 ㅇ 업무유공 격려 및 신고자 포상, 피해보상금, 이달의 공무원 표창 등 ㅇ 업무용차량 구입(교체) 및 임차료, 차량유류비 및 수리비 등 ㅇ 자동차세, 보험료 등 ㅇ 사무용자산 구입(자산취득비) □ 기준성 경비 ㅇ 과운영비, 직책수행경비 ㅇ 공무원 대상 급식비 등 □ 교육훈련 경비 ㅇ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강사료 ㅇ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피복비, 특근매식비, 재료비 등 ㅇ 교육훈련여비 ㅇ 업무추진비(관서업무추진비) ㅇ 자산취득비 등
② 소규모 전산 운영 경비	□ 업무전산화 관련 기관운영 기본경비 ㅇ 전산용 소모품 구입비 ㅇ 주전산기 및 서버 임차료 ㅇ 전산시설 장비유지비 ㅇ PC 등 소규모 전산장비 구입비 ㅇ 전산운영요원 특근매식비 ㅇ 정보화사업 평가위원 수당 등 ㅇ 전산 전문교육 여비 및 지도점검 여비
③ 사회복무요원 운영비	□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등 ㅇ 사회복무요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피복비, 교통비 등

□ 부패신고 비실명 대리신고 수당 예산은 국민권익위원회 운영 전반에 관한 경상경비적 예산이 아니고, 부패신고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주요사업비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예산은 기본

경비가 아닌 주요사업비로 전환하여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공익신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신고, 부패신고 및 행동강령 위반 신고,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의 경우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료 예산이 각각 관련 주요사업비에 편성되어 있음.

<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료 예산 현황 >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 (1111-250)	8 (35만원×23회)	8 (35만원×23회)
신고자보호보상 및 공익신고제도운영 등 (1136 - 364)	**13 (35만원×36회)**	**14 (35만원×40회)**
공직자행동강령운영 (1136-361)	**4 (40만원×10회)**	**4 (40만원×10회)**
공공재정환수제도운영 (1136-366)	**7 (35만원×20회)**	**7 (35만원×20회)**
청탁금지제도운영 (1136-367)	**8 (40만원×20회)**	**8 (40만원×20회)**
합 계	32	33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 세출예산은 편성한 목적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원칙[346]이며 편성의 목적은 사업에 따라 구분하는 큰 틀 아래에서, 기본경비는 일상

346)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적·반복적 경상경비 소요에 대응하기 위해 특정 목적을 제한하지 않되 주요사업비와는 별도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는 취지를 감안할 때, 국민권익위원회가 주요사업비 성격의 예산을 기본경비로 편성·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한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료 관련 예산이 5개 세부사업에 나누어 편성되어 있는데, 이는 연도별 자문 소요의 편차에 따라 사업별로 예산 부족 또는 불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제도 확대 적용 및 활성화 노력을 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라 할 수 있음.

< 비실명 대리신고 예산 및 집행현황 >

(단위: 천 원)

구분	공익신고 (신고자보호보상및공익신고 제도운영)		부패신고 (기관운영기본 경비(비대상))		부정청탁 (청탁금지 제도운영)		행동강령위반 (공직자행동 강령운영)		공공재정 (공공재정환수 제도운영)	
	예산	집행 (%)	예산	집행 (%)	예산	집행 (%)	예산	집행 (%)	예산	집행 (%)
2019	-	1,950 (-)	-	-	-	-	-	-	-	-
2020	7,000	7,700 (110.0)	-	-	-	-	-	-	-	-
2021	8,200	15,450 (188.4)	-	-	-	-	-	-	-	-
2022	12,600	14,900 (118.3)	-	500 (-)	-	1,250 (-)	-	750 (-)	-	-
2023	12,600	12,050 (95.6)	8,050	3,550 (44.1)	8,000	3,400 (42.5)	4,000	3,100 (77.5)	7,000	1,000 (14.3)
2024.9	12,600	7,350 (58.3)	8,050	4,450 (55.3)	8,000	2,850 (35.6)	4,000	3,250 (81.3)	7,000	2,700 (38.5)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 각 세부사업에 나누어 편성하던 신고자 보·포상금을 2025년 예산안부터 ‘신고자보호보상 및 공익신고제도운영 등’ 세부사업에 통합 편성[347]한 취지를 감안할 때,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운용을 위한 예산도 일원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종합하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예산 운용의 적합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에 편성된 부패신고 비실명 대리신고 수당 예산을 주요사업비로 편성·집행하고, 각 세부사업에 편성된 비실명 대리신고 관련 예산을 통합하는 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347) 부패신고 보상금 예산 부족으로 매년 자체 전용이 발생함에 따라 부패신고자 보·포상금, 공익신고자 보·포상금, 공공재정 부정수급 신고자 보·포상금,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 보·포상금,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자 보·포상금을 일원화하여 편성하였음.

2. 행정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 구축 관련 철저한 사업 관리 필요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행정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사업은 대·내외 정보통신 환경 변화와 새로운 정보화 수요에 부응하는 행정정보시스템구축, 정보자원의 안정적인 운영·관리 및 사이버 보안강화로 국민권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348] 2025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46억 7,200만원(△65.6%)이 감액된 77억원이 편성됨.

○ 동 세부사업의 내내역사업인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 구축’사업은 정부의 모든 행정심판 서비스를 하나의 사이트에서 통합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48억 9,700만원(△84.0%) 감소한 19억 8,8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2025년도 행정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 감 (B-A)	(B-A)/A
행정정보시스템운영	5,376	22,372	7,700	△14,672	△65.6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 구축	370	16,885	1,988	△14,897	△84.0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348) 세부사업: 행정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1132 - 3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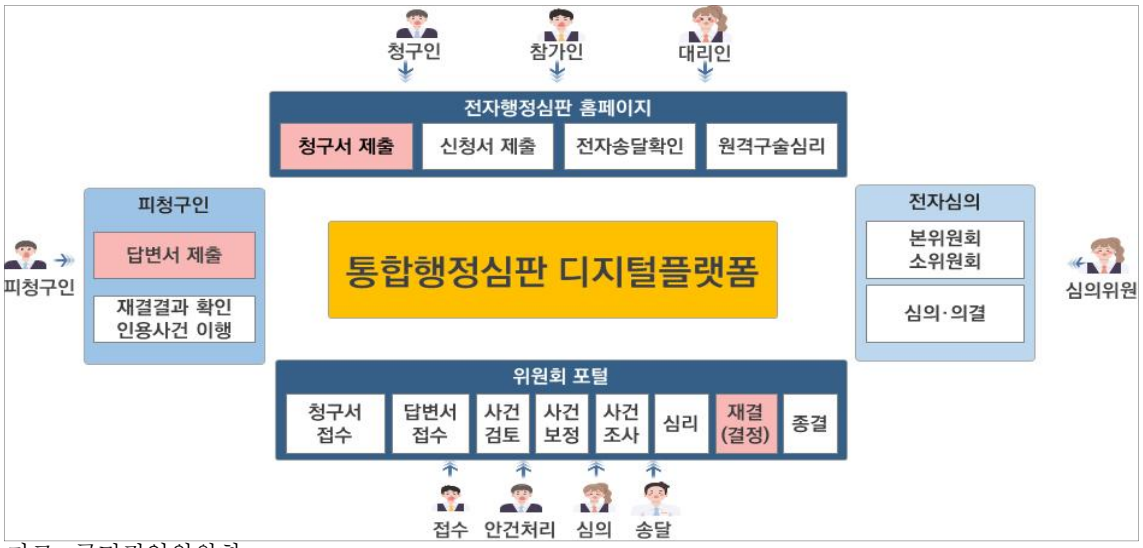
□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 구축’ 사업은 행정심판에 소요되는 모든 서류를 전자문서화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이용자가 심판 청구부터 재결까지 모든 절차를 하나의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수행할 수 있는 토털 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으로, 사전계획(2023년) 수립 후 3개년(2024~2026년)에 걸쳐 추진되고 있음.

< 추진 일정 >

단계	연도	주요 내용
1단계 기반구축	2024	● 원스톱 행정심판 대국민 홈페이지 구축 ● 데이터 기반 스마트 업무처리 통합 플랫폼 구축 ● 재결데이터 통합 공개관리시스템 구축 ● 사용자 간편·상세 매뉴얼 및 동영상 제작 ● 메타버스 행정심판 체험·홍보관 디자인 개선
2단계 고도화	2025	● 국민중심 디지털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 및 분석체계 마련 - 다국어 지원 홈페이지 및 비대면 구술심리시스템 구축 - 통합행정심판 정보분석 및 선순환 시스템 구축 ● 무중단 서비스 제공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 장애예방과 개인정보유출방지·보안사고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개발·(단위·통합)테스트·취약점점검·운영배포 등 응용SW 통합운영관리시스템 구축
3단계 자동화	2026~	● 원스톱 행정심판 자동화 시스템 구축 - AI 기반 24시간 365일 온라인상담 및 청구서·답변서 등 행정심판 문서 자동완성, 행정심판 재결결과 예측 등을 위한 sLLM 모델 개발 및 서비스 구축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 행정심판 디지털플랫폼 개념도 >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동 사업의 2024년 및 2025년 주요 산출내역은 아래와 같음.

(단위: 백만원)

세부내역	2024예산	2025예산안	증감
■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 구축	16,885	1,988	△14,897
- 응용SW 개발	13,867 1식 × 13,867백만	1,169 1식 × 1,169백만	△12,698
- 상용SW 개발	1,319 1식 × 1,319백만	718 1식(7종) × 718백만	△601
- 감리	1,699 1식 × 1,699백만	101 1식 × 101백만	△1,598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나. 검토의견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 구축’ 사업의 최초 취지는 분산된 서비스를 하나의 창구로 통일하고, 개별 시스템마다 별도의 유지·관리 인력과 예산 투입을 방지하려는 것이었으나, 총 123개 기관 중 93개 기관만이 통합에 동의한 상황으로 당초 취지 달성에 어려움이 있음.
당초 사업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25개 미동의 심판기관의 이용 동의를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이끌어내고, 통합제외 5개 기관과 연계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2023년 9월 2024년 예산안을 편성할 때 권익위는 총 123개 기관 중 4개 기관을 제외한 119개 행정심판기관을 통합가능대상 기관으로 선정하고 기관의 동의를 전제로 통합시스템 이용기관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하였으며,

2024년 9월에는 2023년에 밝힌 119개 기관보다 1개 줄어든 118개 행정심판기관의 동의를 전제로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힘. 이마저도 118개 기관 중 25개 기관은 아직 동의를 받지 못하여 2024년 9월 기준 93개 기관만을 대상으로 통합을 준비 중임.

<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 미통합 기관 현황 및 사유 >

연번	구분	기관명	사유
1	일반	감사원	헌법기관(독립적 운영 필요)
2		국가정보원	국가안보 관련 정보수집과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업무 특성상 국가정보원 조직·인원 등 관련된 사항의 외부 노출 제한
3		대통령비서실	시스템 개통 시 검토
4		국가안보실	
5		대통령경호처	
6		국회사무처	공문 미회신
7		법원행정처	공문 미회신
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문 미회신
9	보상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원처분시스템(근로복지공단)과 연계 어려움 등의 사유로 통합시스템 사용보다는 현행 자체 전산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
10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미회신
11		어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미회신
12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고용보험시스템을 통해 신청(원처분 내역 연계 제공)하는 경우 대비 청구인의 편의성 감소, 추후 통합시스템 기능이 보다 명확해 진 후 재검토 하겠음
13	소청	중앙 소청심사위원회	공문 미회신
14		국회 소청심사위원회	공문 미회신
15		법원 소청심사위원회	공문 미회신
16		헌재 소청심사위원회	헌법기관(독립적 운영 필요)
17		선관위 소청심사위원회	공문 미회신
18		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군에서 운용하는 소청심사위원회는 전국 각지에 있고, 무기·방호장비·군사보안 등으로 통합시스템 이용 부적절
19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	
20		육군본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21		공군본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22		해군본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23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사건의 특수성과 전문성 사유로 조직통합 및 시스템통합 반대
24	토지등	중앙토지수용위원회(부담금)	공문 미회신
25		광업조정위원회	공문 미회신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당초 동 사업의 취지는 ① 분산된 서비스를 하나의 창구로 통일하고, ② 개별 시스템마다 별도의 유지·관리 인력과 예산 투입을 방지하는 것이었음.

□ ① ‘분산된 서비스를 하나의 창구로 통일’하는 것과 관련하여 권익위는 미동의 기관과 특수성이 인정되는 ‘특허심판원, 중앙해양안전심판원, 공정거래위, 중앙노동위, 난민위 등 5개 기관’은 링크를 통해 해당 시스템과 연계하겠다는 입장임.

< 2024.10월 기준 통합 방식 계획 >

유형	대상	통합 방식
통합형	123개 행정심판 중 118개	• 통합 시스템에서 모든 서비스를 통합 제공
연계형 (링크)	특허심판원 등 통합제외 5개	• 통합 시스템에서는 각 사이트의 개요만 제공하고, 추가 절차는 링크를 통해 개별사이트로 이동하여 진행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 또한, ② ‘개별 시스템마다 별도의 유지·관리 인력과 예산 투입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는 현재 동의 기관이 93개이고, 5개 기관은 별도로 운영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는 당초 사업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

해 25개 미동의 심판기관의 이용 동의를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이끌어내고, 통합제외 5개 기관과 연계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3. 반부패기술지원(ODA): 수원국 다양화를 위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반부패기술지원(ODA)’은 우리나라의 주요 반부패 정책 및 제도 전수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인적·제도적 반부패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349] 2025년 예산안은 전년과 같은 2억 9,800만원이 편성됨.

< 2025년도 ‘반부패기술지원(ODA)’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반부패기술지원 (ODA)	151	298	298	-	-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나. 검토의견

다국가 대상 반부패 역량강화 연수를 축소하고 카자흐스탄 부패방지 제도 개선 연수를 별도로 반영하였는데, 특정 국가에 대한 연수 프로그램을 큰 비중으로 편성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 검토하는 한편,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수원국의 다양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49) 세부사업: 반부패기술지원(ODA)(1133-331)

□ 이 사업은 개발도상국 반부패 교육 수요 증가 및 UN반부패협약[350] 이행 의무에 따라 2013년부터 '다국가 반부패 역량강화과정'을 개설하며 시작된 사업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예산 중 유일한 ODA 사업임.

□ 최근연도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2020년에 기존의 영어과정 외에 러시아어 과정을 신설하여 러시아어권 국가로 사업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2024년에는 스페인어 과정을 신설하여 중남미 국가에 대한 지원 사업을 실시하였음.

< 최근연도 '반부패 기술지원(ODA)' 사업 추진 현황 >

연도	추진 현황
2020	○ 제8차 다국가 반부패 역량강화 연수 실시(11월, 비대면) ○ 제1차 중앙아·동유럽 국가 반부패 역량강화 연수 실시(11월, 비대면) ○ 우즈베키스탄 대상 반부패 정책 연수 실시(12월, 비대면)
2021	○ 제2차 중앙아·동유럽 국가 반부패 역량강화 연수 실시(5월, 비대면) ○ 제9차 다국가 반부패 역량강화 연수 실시(10월, 비대면)
2022	○ 카자흐스탄 대상 반부패 정책 연수 실시(6월, 비대면) ○ 제3차 중앙아·동유럽 국가 반부패 역량강화 연수 실시(7월, 비대면) ○ 코스타리카·파라과이 대상 반부패 정책 연수 실시(10월, 세종/청주) ○ 제10차 다국가 반부패 역량강화 연수 실시(11월, 서울/세종/청주)

350) UN반부패협약은 타방 당사국의 반부패 정책 수립 및 이행 지원을 명시하고 있으며, 한국은 2008년 2월에 동 협약을 비준하면서 부패방지 전담기구로 국민권익위원회를 지정함.

연도	추진 현황
2023	○ 제1차 아프리카 국가 반부패 역량강화 연수 실시(3월, 비대면) ○ 스리랑카 대상 반부패 정책 연수 실시(5월, 청주) ○ 키르기스스탄 대상 반부패 정책 연수 실시(6월, 청주) ○ 제11차 다국가 반부패 역량강화 연수 실시(9월, 서울/세종/청주)
2024	○ 제12차 다국가 반부패 역량강화 연수 실시(4월, 청주/세종/서울) ○ 제4차 중앙아·동유럽 국가 반부패 역량강화 연수 실시(6월, 청주/세종/서울) ○ 제4차 중남미 국가 반부패 역량강화 연수 실시(9월, 청주/세종/서울)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 그런데, 이 사업의 2025년 예산안 세부 편성내역에 따르면, 전체 편성규모는 2024년 예산과 동일하나 2025년에는 다국가 반부패 역량강화 연수를 전년도 3회에서 2회로 축소하고 카자흐스탄 부패방지 제도개선 연수를 별도로 반영함.

○ ‘카자흐스탄 부패방지 제도개선 연수’는 고위급, 실무급 초청연수로 나누어 실시하고 현지 세미나까지 계획함에 따라, 단일국가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의 41.9%에 달하는 1억 2,5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됨.

< ‘반부패기술지원(ODA)’ 예산안 세부 편성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
다국가 반부패 역량강화 연수	1차	84	84
	2차	89	89
	3차	125	-
	소계	298	173
카자흐스탄 부패방지 제도개선연수	**고위급 초청연수**	-	**48**
	실무급 초청연수	-	**56**
	현지 세미나	-	**21**
	소계		**125**
합 계		298	298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는 카자흐스탄 부패방지 제도개선 연수를 추진한 사유에 대하여 카자흐스탄은 한국의 반부패 제도 전수에 대한 수원국의 의지와 수요가 높고, 우리나라의 중앙아 최대 교역국·투자대상국으로서 부패수준 개선 필요성이 높아 ’22년 비대면 연수에 대한 후속 조치 차원에서 카자흐스탄 대상 사업을 재추진하게 되었다고 설명함.

□ 그러나, 다수의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 프로그램을 축소하고, 특정 국가만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를 큰 비중으로 신설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첫째, ‘카자흐스탄 부패방지 제도개선 연수’ 신설로 인해 다국가 반부패 역량강화 연수 예산을 전년에 비해 1억 2,500만원 축소함에 따라, 러시아어 과정과 2024년에 신설된 스페인어 과정 초청연수가 미실시되고 2개 언어 과정[351] 연수만 실시될 예정인데, 이는 다양한 언어권 국가로 사업을 확대하고자 하는 기존 정책 추진 방향성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2024년 ‘반부패기술지원(ODA)’ 사업 진행내역 >

과정명	대상국	직급 및 인원	시기	주요 프로그램	집행액 (백만원)
다국가 반부패 역량강화 연수 (영어과정, 초청연수)	라오스, 말레이시아, 태국, 에티오피아, 이집트 등 아태・아프리카 5개국	실무급 14명	4.15 ~ 4.24	반부패 전략수립, 청렴도평가, 부패 사건 수사기법 등	76
다국가 반부패 역량강화 연수 (러시아어과정, 초청연수)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등 중앙아・동유럽 3개국	실무급 및 고위급 15명	6.10 ~ 6.19	부패영향평가, 부패사건 수사, 디지털 부패방지 시스템 등	76
다국가 반부패 역량강화 연수 (스페인어과정, 초청연수)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 파라과이 등 중남미 4개국	실무급 및 고위급 15명	9.3 ~ 9.11	부패신고 처리, 신고자 보호・보상, 공공계약 부패방지 등	131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351) 2025년 다국가 반부패 역량강화 연수는 영어과정(84백만원), 아랍어과정(89백만원) 2개 언어 과정 예산이 편성됨, 2025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p.94.)

○ 국민권익위원회는 본 세부사업에 대한 ODA 사업보고서[352]에서 영어 및 러시아어 과정 외에 불어, 스페인어 등 다양한 언어권의 연수과정을 개설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한 바 있음.

□ 둘째, 국민권익위원회가 수립한 사업 추진 체계[353]에 따르면 이 사업은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1～'25)의 ODA 중점협력국(27개국) 및 반부패 MOU체결국(9개국)을 우선 지원해 왔는데, 2025년 예산안의 42%를 책정한 카자흐스탄은 이러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 ODA 중점협력국(27개국) >

지 역	국 가 명
아시아(12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몽골, 라오스, 네팔, 스리랑카, 파키스탄, 미얀마, 인도
아프리카(7개국)	가나, 에티오피아, 르완다, 우간다, 탄자니아, 세네갈, 이집트
중동・CIS(4개국)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우크라이나, 타지키스탄
중남미(4개국)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 파라과이

* 공공행정 중점협력국(11개국) : 베트남,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몽골, 미얀마, 이집트,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우크라이나, 페루, 파라과이

352) 다국가 반부패 역량강화 연수 (비대면교육) 종료평가 보고서(2023.1.) 20p
353) 다국가 반부패 역량강화 연수 (비대면교육) 종료평가 보고서(2023.1.) p.6.

< 반부패 MOU 체결국(9개국) >

인도네시아(2006), 몽골(2010), 베트남(2010), 튀니지(2018), 이라크(2018), 미얀마(2018), 카타르(2018), 쿠웨이트(2019), 우즈베키스탄(2019)

□ 셋째, 국회는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동 사업에 대해 “초청 국가가 단기간 내에 중복되는 것은 사업의 효과가 일부 국가에 한정될 우려가 있으므로 수원국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354]을 지적했었는데, 카자흐스탄에 대해서는 2022년에도 이미 실무급 및 고위급 44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방식의 정책연수를 실시한 바 있음.

< 2022년 ‘반부패기술지원(ODA)’ 사업 진행내역 >

과정명	대상국	직급 및 인원	시기	주요 프로그램	집행액 (백만원)
카자흐스탄 반부패 정책연수 (온라인)	카자흐스탄	실무급 및 고위급 44명	6.7 ~ 6.9	청렴도평가, 부패영향평가, 민간부문 부패방지 등	16
다국가 반부패 역량강화 연수 (러시아어과정, 온라인)	몽골, 몰도바,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등 중앙아・동유럽 4개국	실무급 36명	7.12 ~ 7.14	한국의 반부패 법령과 제도, 청렴도평가, 부패 수사 등	14
코스타리카・파라과이 반부패 정책연수	코스타리카, 파라과이	실무급 및 고위급 10명	10.17 ~ 10.21	신고자보호, 청렴포털 시스템, 청렴교육 프로그램 등	62

354) 2021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서

과정명	대상국	직급 및 인원	시기	주요 프로그램	집행액 (백만원)
(초청연수)					
다국가 반부패 역량강화 연수 (영어과정, 초청연수)	네팔, 라오스, 르완다, 베트남, 스리랑카, 에티오피아, 인도네시아 등 아태・아프리카 7개국	실무급 13명	11.14 ∽ 11.23	반부패 전략수립, 청렴도평가, 부패영향평가, 뇌물방지 국제동향 등	69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 따라서, ‘반부패기술지원(ODA)’ 사업에 대해서는 특정 국가에 대한 연수프로그램을 큰 비중으로 편성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 검토하는 한편,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수원국의 다양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음.

4. 고충민원조사활동: ‘특별민원 상담요원 운영’ 사업의 사업계획 및 운영방안 재검토 필요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고충민원조사활동’의 내역사업인 ‘특별민원 중점관리’ 사업은 특별(악성)민원 대응을 위한 상담요원 운영 및 일선 민원처리 공무원 대상 워크숍·교육 실시 등을 하기 위하여 2025년도에 신규 추진되는 사업으로,[355] 2025년 예산안은 1억 4,500만원이 편성됨.

< 2025년도 고충민원조사활동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고충민원조사활동	1,315	1,324	1,680	356	26.9
특별민원 중점관리	-	-	145	145	-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나. 검토의견

‘특별민원 상담요원 운영’ 사업은 2025년도에 신규 추진되는 사업이므로, 운영 방안 등 사업 계획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음.

355) 세부사업: 고충민원조사활동(1135-350)

□ ‘특별민원 중점관리’ 내역사업은 특별(악성)민원[356]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및 적극적 대응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고충민원 총괄기관으로서 특별민원의 중점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25년도에 신규 추진되는 사업임.

< ‘24년 권익위 특별민원 실태조사 결과 >

구분		중앙행정기관	광역 지방자치단체	기초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악성민원인 수		1,124명	192명	1,372명	96명
유형별 비중	상습 반복	76%	63%	56%	47%
	폭언・폭행	17%	21%	30%	32%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동 내역사업은 ‘특별민원 상담요원 운영’ 사업, ‘특별민원 대응을 위한 워크숍・역량강화 교육・컨설팅’ 사업, ‘특별민원 피해현황 실태조사・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25년도 특별민원 중점관리 사업 예산안 >

구분	금액	비고
특별민원 중점관리	1억 4,500만원	
특별민원 상담요원 운영	5,000만원	상담요원 10명×20건
특별민원 대응을 위한 워크숍・역량강화 교육・컨설팅	4,500만원	임차료, 일반수용비(물품, 책자)
특별민원 피해현황 실태조사・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5,000만원	정책연구용역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356) 국민권익위원회는 특별민원을 폭언, 촉행, 등 민원인의 위법행위와 공무방해행위로 규정하고, 각 유형을 세분화하여 분류하고 있음.

*(예시) 위법행위는 폭언, 명예훼손, 성희롱, 폭행, 기물파손, 협박 등으로, 공무방해행위는 반복형 시간 구속형, 부당한 요구 등으로 분류함.

□ 이 중 ‘특별민원 상담요원 운영’ 내내역사업은 타 기관에서 특별민원 상담을 국민권익위원회로 요청하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담요원을 배치하고, 상담요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상담·설득·대안 제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임.

○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특별상담요원의 역할은 설득·관련 법령 설명 등 민원인 상담이고, 각 상담요원은 변호사, 심리상담사 등 분야 전문가와 민원처리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퇴직자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할 예정이라고 함.

< 특별민원 상담요원 운영방안 >

◯ (개요) 특별민원 상담요원은 특별민원 특성을 고려한 지속적인 상담·관리를 통해 설득·대안 제시등을 수행
◯ 특별민원 상담요원 운영(안) - (요청) 타 기관에서 특별민원 상담을 위원회로 요청하고, 심의를 거쳐 결과 통보 및 상담요원 배치 - (상담) 고충처리국 민원과장 또는 팀장의 지휘를 받아, 상담요원이 특별민원인을 상담하고 설득·대안 제시 등 수행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특별민원 상담요원 운영 절차 >

타 기관	▶	타 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
특별민원 발생		특별민원 상담 요청		특별민원 조정위원회 심의		심의결과 통보 및 상담요원 배치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그런데, ‘특별민원 상담요원 운영’ 사업의 사업계획 및 운영방안 등을 살펴보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집행 전 단계에서 면밀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첫째, 사업계획상 상담요원의 업무는 특별민원인에 대한 민원 상담 등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등은 행정사의 업무에 속하는 것으로, 「행정사법」은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행정사의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357] 이를 고려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상담요원을 선정할 필요가 있음.

○ 둘째, 특별민원 상담요원 운영방안을 살펴보면, 상담요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고충처리국 민원과장 또는 팀장)의 지휘를 받아 특별민원인을 상담하도록 계획되어 있는데,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상담요원을 지휘·관리하게 된다면, 상담요원과 국

357) **「행정사법」 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5.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행정사가 아닌 사람에 대한 금지 사항) ①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업(業)으로 하지 못한다.
제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업으로 한 자

민권익위원회가 고용관계에 있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고,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상담요원의 사용자로서 상담요원의 민원 상담 및 처리 업무에 관한 최종 책임의 귀속주체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민권익위원회와 상담요원과의 업무 관계를 보다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음.

-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상담요원에 대한 수당을 일반수용비(210-01목)로 편성하고 있는데, 상담요원을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지휘·관리한다면 업무 위탁 또는 대행보다는 민원행정 보조의 성격에 가깝다고 볼 수 있으므로, 비목에 부합하는 운영방안의 재설계 또는 일용임금(110-04목)으로 해당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할 것임.

< 편성지침상 일반수용비, 일용임금 구분 >

구분	210-01목(일반수용비)	기타비목에 계상	일반수용비 편성사례
소규모 업무대행에 대한 대가	· 속기·원고측량 등의 각종 소규모 업무대행의 대가, 수수료, 사용료 및 전문가 자문료 · 국선변호사 및 수임·고문변호사에 대한 변호료·수임료	· 계약 또는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는 110-04목(일용임금)에 계상	· 국가소송, 행정쟁송 및 법률자문 대비 변호사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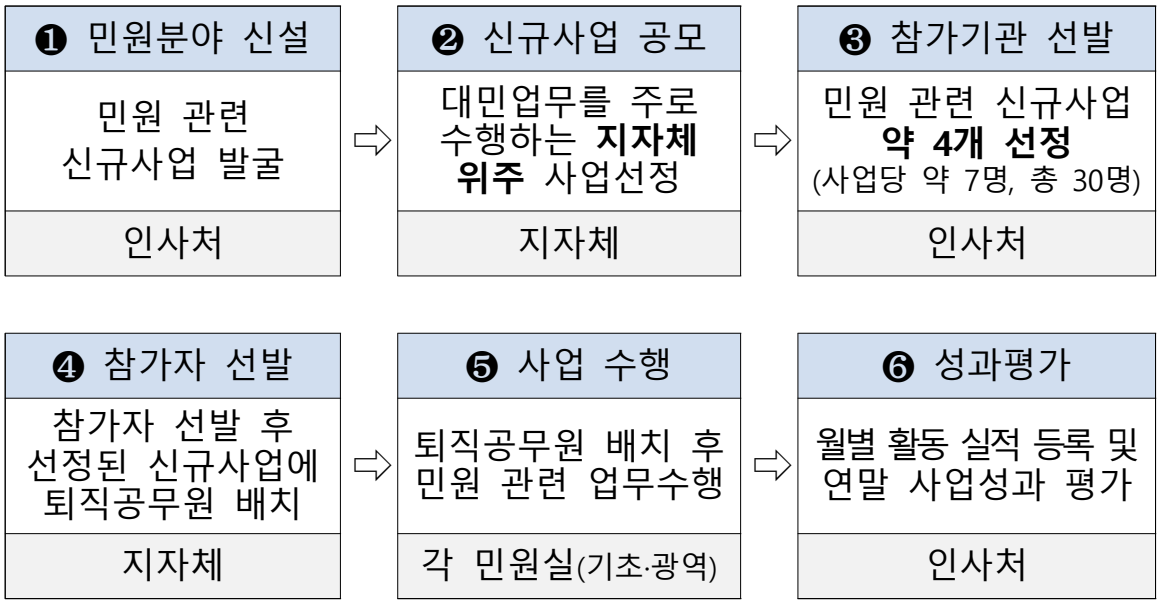
자료: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220

○ 셋째, 인사혁신처도 퇴직공무원을 활용한 특별민원 대응과 관련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바, 사업 시행 전 각 기관이

계획하는 사업의 범위 등을 충분히 협의함으로써, 유사한 사업이 중복되어 추진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인사혁신처는 퇴직공무원의 전문성과 경륜을 활용하여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과 행정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퇴직공무원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운영'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2025년도에는 악성민원 대응을 위하여 광역 및 기초지자체 위주로 4개의 세부사업을 신규 선정하여 30명의 퇴직공무원을 배치하여 민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할 계획임.

< 인사혁신처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민원분야 확대 계획 >



자료: 인사혁신처

□ '특별민원 상담요원 운영' 사업은 2025년도에 신규 추진되는 사

업이라는 점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운영방안 등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5. 청렴도측정및부패영향평가: 외부기관 국외여비 지원의 타당성 재검토 필요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청렴도측정및부패영향평가’는 공공기관의 청렴수준과 부패유발 요인 진단, 반부패·청렴시책의 적정성 및 효과성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부패취약 분야에 대한 각급기관의 자율적 개선노력을 유도하는 사업으로,[358] 2025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6,700만원(△2.2%) 감소한 29억 9,900만원이 편성됨.

< 2025년도 ‘청렴도측정및부패영향평가’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청렴도측정 및 부패영향평가	2,543	3,066	2,999	△67	△2.2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나. 검토의견

종합청렴도 평가 우수기관 담당자의 국외교육 참여 지원을 위해 국외여비를 편성하였는데, 청렴 업무 담당자에 대한 국외여비 지원이 평가대상 기관의 청렴도 제고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므로, 편성 필요성 및 타당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358) 세부사업: 청렴도측정및부패영향평가(1136-360)

□ 이 사업의 세부 편성내역에 따르면, ‘기관협의 및 운영 등을 위한 경비’ 내역사업의 예산안은 전년 대비 2,100만원 증가한 1억 5,900만원으로, 이 중 국외업무여비는 전년 대비 2,400만원(200%) 증가한 3,600만원임.

< ‘청렴도측정및부패영향평가’ 계획안 세부내역 >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	증감액
공공기관 등의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2,828	2,735	△93
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58	45	△13
청렴컨설팅 운영	42	60	18
기관협의 및 운영 등을 위한 경비	138	159	21
(국외업무여비)	(12)	(36)	(24)
합계	4,952	4,865	△67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 동 내역사업의 국외업무여비는 종합청렴도 우수기관 대상 국외 반부패 교육훈련을 인솔하는 국민권익위원회 직원의 여비 목적으로 편성되어 왔는데, 2025년 예산안은 우수기관 측 참가인력 일부에 대한 여비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증액되었음.

○ 그동안 교육기관 위탁훈련 경비[359]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부담하

고 참가자 여비는 참여기관이 자체 부담하였는데, 2025년 예산안은 참여기관 중 일부(약 20개 기관 중 5개 기관)에 대해 항공료, 체재비 등 국외여비까지 지원할 목적으로 증액 편성함.

< 종합청렴도 우수기관 대상 국외 반부패 교육훈련 예산 편성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집행대상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
반부패 교육훈련 교육비 (일반수용비)	우수기관 직원	20 (80만원×25명)	20 (80만원×25명)
반부패 교육훈련 여비 (국외업무여비)	권익위 인솔직원	12 (400만원×3명)	13.5 (450만원×3명)
	우수기관 직원	-	**22.5 (450만원×5명)**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청렴 역량 견인을 위해 종합청렴도 평가 우수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국외 반부패 교육훈련을 실시 중인데, 대상기관의 예산 미확보로 불참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 점을 감안하여 우수기관에 대한 보다 강력한 유인 제공을 위해 국외 교육훈련 지원방식을 개선하였다고 밝힘.[360]

□ 그런데, 이와 같이 청렴도 평가 우수기관 담당자 대상 국외 교육훈련 참가가 부진하다고 하여 대상 인원의 항공료, 체재비까지

359)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되는 국제 반부패 아카데미 참석을 목적으로, 교육기관 위탁훈련 경비를 1인당 80만원씩 25명에 대해 2,000만원을 편성함(일반수용비)

360) 2025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p.190.)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권익위는 예산 편성의 목적을 ‘우수기관에 대한 보다 강력한 유인 제공’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청렴도 평가 상위 기관의 청렴 업무 담당 직원에 대한 국외 단기교육 여비 지원이 평가대상 기관의 청렴도 제고 유인으로 작용한다고 보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음.

□ 그리고 2025년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르면, 국외업무여비(220-02)는 가급적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제한적으로 편성·지출할 것을 방침으로 삼고 있는데, 종합 청렴도 평가 우수기관 담당자에 대한 포상 성격의 국외여비 지원이 불가피한 지출소요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2025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작성 세부지침(p.238～239)>

- 국외여비 총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4년 예산 범위내에서 최대한 아껴서 제대로 쓸 수 있는 만큼을 요구
- 과거 집행실적을 분석하여 불요불급한 국외여비는 삭감하고 현안타결을 위한 해외출장 위주로 편성

□ 한편, 2024년 실시한 국외 반부패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사기범죄 예방 도구 및 개념’, ‘유엔마약범죄사무소 견학’, ‘경제범죄경찰청 견학’ 등과 같은 프로그램이 우리나라 각 기관의 청렴업무 실무자에게 유용할 것인지, 청렴업무 담당자의 역량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해당 프로그램 구성의 적합성 및 실효성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2024년 국외 반부패 교육훈련 프로그램 >

연번	프로그램명(주요내용)	이수시간
1	International Efforts to Curb Corruption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 (반부패 관련 국제 협약, 국가별 부패방지 제도 소개)	4:30
2	Anti-Corruption Compliance 부패방지 규정 (부패 예방을 위해 국가, 기업 등에서 도입하고 있는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소개)	
3	Corruption Risk Analysis 부패위험 분석 (부패 관련 위험성 분석의 방법론 제시)	3:30
4	Corruption Risk Analysis Case Studies 부패위험 분석 사례연구 (주요 국가의 부패 예방을 위한 관리 도구 사례 연구)	
5	Organizational Integrity (I) 기관 청렴도 (I) (기관 청렴도 관리의 개념 소개)	3:30
6	Organizational Integrity (Ⅱ) 기관 청렴도 (Ⅱ) (청렴도 관리를 위한 규제적, 행동적 접근방법 탐구)	
7	Study Visit to UNODC/Vienna International Center(VIC) 유엔마약범죄사무소/비엔나 국제센터 견학	3:30

연번	프로그램명(주요내용)	이수 시간
8	Corruption and Electronic Evidence : A Primer for Non-technicians (I) 부패 및 전자적 증거 : 비전문가 대상 기초 (I) (포렌식 등 디지털 기술을 통한 전자적 증거 수집 방법 소개)	3:30
9	Corruption and Electronic Evidence : A Primer for Non-technicians (Ⅱ) 부패 및 전자적 증거 : 비전문가 대상 기초 (Ⅱ) (부패사건의 전자적 증거 수집 관련 이슈, 시사점)	
10	Study Visit WKStA - Prosecutor's Office for White Collar Crime 경제범죄경찰청(주요 경제 및 부패범죄 수사 전문조직) 견학	3:30
11	Fraud Prevention Tools and Concepts (I) 사기범죄 예방 도구 및 개념 (I) (사기의 개념 및 구성요소 소개)	4:00
12	Fraud Prevention Tools and Concepts (Ⅱ) 사기범죄 예방 도구 및 개념 (Ⅱ) (조직에서 발생한 사기 사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 등)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청렴도측정및부패영향평가' 사업 예산안 중 청렴도 평가 우수기관 직원 국외교육 참여 지원을 위해 증액한 국외여비에 대해서는 편성 필요성 및 타당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6. 청렴교육및의식확산: 일반용역비 예산 증액의 적정성 재검토 필요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청렴교육및의식확산’은 청렴교육과정 및 교육시설을 운영하고, 반부패 청렴사례 공모전 및 국민 청렴의식 확산 프로그램 등을 기획·시행하는 사업으로,[361] 2025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억 8,900만원(8.4%) 증가한 24억 2,800만원이 편성됨.

< 2025년도 ‘청렴교육및의식확산’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청렴교육및의식확산	2,064	2,239	2,428	189	8.4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나. 검토의견

2030세대의 수요에 맞는 특화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심화된 교육과정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일반용역비를 증액하였는데, ‘초등학생 청렴캠프 운영’은 일반용역비 증액 사유에 부합하지 않으며 예산 배분의 효율성 및 사업 효과성에 의문이 제기되므로, 편성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361) 세부사업: 청렴교육및의식확산(1136-361)

□ 이 사업의 내역사업인 ‘국민 청렴의식 확산 프로그램 개발·운영’은 청렴 문화 확산 및 의식 고취를 위해 일반 국민, 미래세대 대상의 청렴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사업으로, 2025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00만원(0.3%) 증가한 3억 8,500만원이 반영되었음.

○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미래세대 대상 청렴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위한 일반용역비(210-14목)가 전년도 5,000만원의 2배 이상인 1억 1,000만원 편성됨.

< 2025년도 ‘국민 청렴의식 확산 프로그램 개발·운영’ 내역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	증감	비고
국민 청렴의식 확산 프로그램 개발·운영	384	385	1	
· 교육보조원 운영	39	40	1	
· 청렴교육운영비	67	67	-	
· 교육기관 업무협의	5	5	-	
· 교육콘텐츠 개발	120	60	△60	
· 초·중·고 학생 대상 찾아가는 청렴교육 위탁 운영	103	103	-	120만원×85개교
· 미래세대 대상 청렴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50**	**110**	**60**	**미래세대 대상 교육운영 확대 (1식→2식)**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 이와 같이 ‘미래세대 대상 청렴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목적의 일반용역비를 대폭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에는 2030세대의 수요에 맞는 특화과정으로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토론경연대회 등 심화된 교육과정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일반용역비를 증액하였다고 밝힘.

□ 그런데, 2025년 예산의 구체적 산출근거와 최근의 집행현황 등을 살펴보면 일반용역비 증액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합리성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첫째, 국민권익위원회는 ‘미래세대 대상 청렴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일반용역비 1억 1,000만원의 산출근거로 기존 사업인 ‘2030 청렴인재 아카데미 위탁운영’(6,000만원)과 신규 사업인 ‘초등학생 청렴캠프 운영’(5,000만원)에 대한 2건의 산출내역서를 제시하였는데, 이 중 ‘초등학생 청렴캠프 운영’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증액 사유인 ‘2030세대의 수요에 맞는 특화과정’, ‘토론경연대회 등 심화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보기 어려움.

□ 둘째, 신규로 추진하는 ‘초등학생 청렴캠프 운영’에 대한 필요성 및 구체적 사업계획이 명확하지 않으며, 산출내역서 상의 사업운영 구상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도 미흡한 측면이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따르면 초등학생 60명이 2박 3일간(2회) 청렴과 관련된 역사문화유적지를 탐방할 예정인데, 어떤 내용의 일정인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부재할 뿐만 아니라 60명 정도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이와 같은 캠프를 진행하는 사업의 효과성이 충분히 있을 것인지 의문이 제기됨.

○ 특히 국민권익위원회는 본 내역사업의 다른 세부 편성내역인 '초·중·고 학생 대상 찾아가는 청렴교육 위탁 운영(1억 300만원)'을 통해 매년 약 85개교, 10,200명[362]을 대상으로 체험형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와 별도로 소수 초등학생 대상의 캠프 운영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또한, 10,200명 대상 사업에 1억 300만원의 예산을 편성('초·중·고 학생 대상 찾아가는 청렴교육 위탁 운영')하면서 60명 대상사업에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초등학생 청렴캠프 운영')하는 것을 효율적인 예산 배분이라 볼 수 있는지, '초등학생 청렴캠프 운영' 사업이 이를 정당화할 만한 사업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362) 2024년 '학생 대상 청렴교육 위탁 운영' 제안요청서 기준

< ‘초등학생 청렴캠프 운영’ 예산안 산출내역서 >

항목		구분	세부업무	인원/개수	일수/수량	단가(원)	금액(원)
인건비	기획	PM	사업 총괄	1	22	3,622,585	3,622,585
		파트장	현장학습 설계 및 기획 총괄	1	22	2,777,750	2,777,750
		책임	자료조사, 현지답사, 장소섭외 등	1	22	1,392,671	1,392,671
		책임	인력섭외 및 스케쥴관리	1	22	1,392,671	1,392,671
	운영	파트장	운영 총괄	1	22	2,777,750	2,777,750
		책임	현장 운영인력	1	22	1,392,671	1,392,671
		책임	현장 안전인력	1	22	1,392,671	1,392,671
	인건비 소계						14,748,769
경비	**대여료**	**숙박**	**호텔 등**	**15실**	**60실(4박)**	**100,000**	**6,000,000**
		교통	**대형버스 등**	**2대**	**12대(6일)**	**800,000**	**9,600,000**
	운영비	**식대**	**식사**	**30명**	**540식 (18끼)**	**15,000**	**8,100,000**
		간식비	**간식, 음료 등**	**30명**	**180식(6일)**	**5,000**	**900,000**
		예비비	**입장료, 체험실습비 등**	**30명**	**60회(2회)**	**10,000**	**600,000**
	경비 소계						25,200,000
합계							39,948,769

일반관리비	(인건비+경비)*5%	1,997,438
이 윤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8%	3,355,697
부가가치세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10%	4,530,190
조 정 금 액		-167,906
총 계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부가가치세-조정금액)	50,000,000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셋째,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연도 ‘미래세대 대상 청렴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일반용역비 예산을 편성 금액과 달리 임의로 확대 집행하고 있어, 이러한 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 허용은 바람직하지 않은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미래세대 대상 청렴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일반용역비는 2024년 예산에 5,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2024년 ‘2030 청렴인재 아카데미’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사업예산을 6,500만원으로 임의 확대하여 발주하였고 경쟁입찰 결과 5,850만원에 계약을 체결함.

○ 동 일반용역비의 2023년 예산 역시 5,000만원이었는데, 국민권익위원회는 2023년 ‘2030 청렴인재 아카데미’ 용역을 5,000만원에 발주하여 4,642만원에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업 정산내역서에 따르면 정산금액은 5,493만원이었음.

< 최근연도 ‘미래세대 대상 청렴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집행 현황 >

(단위: 천원)

연도	예산액	사업 발주 시 제시한 사업예산	계약금액	정산금액
2023	50,000	50,000	46,420	54,934
2024	50,000	65,000	58,500	-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 따라서, ‘청렴교육및의식확산’ 세부사업 예산안에 대해서는 ‘미래세대 대상 청렴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일반용역비 증액(5,000만원→1억 1,000만원)이 적절한지에 대해 면밀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7. 행정심판운영: 행정심판통합시스템 관련 홍보비 청렴 권익정책알리기 사업으로 통합하여 수행할 필요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행정심판운영’의 내역사업인 ‘행정심판통합추진’ 사업은 일반행정심판과 특별행정심판 통합 등을 통하여 국민편의 중심의 행정심판 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으로,[363] 2025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억 4,000만원이 증가(194.4%)한 2억 1,200만원이 편성됨.

< 2025년도 행정심판운영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행정심판운영	1,094	1,177	1,543	366	31.1
행정심판통합추진	-	72	212	140	194.4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나. 검토의견

행정심판통합에 관한 대국민 홍보비는 집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홍보 사업인 ‘청렴권익정책알리기’ 사업으로 이관하여 통합 운영할 필요가 있음.

363) 세부사업: 행정심판운영(1137-370)

□ ‘행정심판통합추진’의 내내역사업인 ‘대국민 홍보비’ 사업은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 등을 홍보하기 위한 예산으로, 광고(뉴미디어, 옥외) 1억 1,400만원, 홍보물 제작 2,000만원 등으로 구성됨.

< 2025년도 대국민 홍보비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분	금액	비고
대국민 홍보비	140	
SNS이벤트	6	3매체, 4회
홍보물 제작	20	2종 제작
뉴미디어 광고	58	크리에이터 협력, SNS 게시물 홍보
옥외 광고	56	4매체, 1회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공익신고, 고충민원 등 위원회의 주요 기능과 정책에 대하여 TV, 라디오, 옥외 광고, 뉴미디어 등을 통하여 대국민 홍보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렴권익정책 알리기’ 사업[364] 예산을 별도 편성하고 있음.

○ 동 세부사업 내에도 행정심판 제도에 대한 홍보 예산을 포함하고 있으며, 2022년 2건, 2023년 2건, 2024년 1건의 행정심판 제도에 관한 홍보사업을 수행한 바 있음.

364) 세부사업: 청렴권익정책알리기(1131-300)

< 2025년도 청렴권익정책알리기 사업 내 행정심판 홍보 예산안 >

구분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	증감	비고
권익증진 정책홍보	619	439	△180	
행정심판 제도 홍보	20	19	△1	
홍보물 제작	141	113	△28	
디지털소통팀 운영	952	756	△196	
행정심판 제도 홍보	34	32	△2	
온라인 소통창구 강화	39	39	-	
SNS 이벤트	15	15	-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최근 청렴권익정책알리기 사업 내 행정심판 홍보 집행 내용 >

연도	광고내용	광고매체
2022년	행정심판제도 소개・홍보	유튜브, 옥외광고(지하철)
	행정심판법·제도 포털 홍보	네이버
2023년	행정심판제도 소개・홍보	인스타그램, 옥외광고(KTX)
	행정심판 온라인 캠페인	네이버
2024년	행정심판제도 인지도 제고 광고(11월 예정)	유튜브, 인스타그램, 옥외광고(KTX)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이상을 살펴보면, ‘행정심판운영’ 사업 내 홍보사업인 ‘대국민 홍보비’는 ‘청렴권익정책알리기’ 사업 내 행정심판 제도 홍보사업과

홍보의 대상, 광고매체, 홍보 방식 등에서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대국민 홍보비’를 개별 사업에 별도로 편성함으로써, 홍보사업을 분리·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음.

○ 또한, 개별 사업부서에서 홍보 예산을 집행하게 된다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높고, 홍보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운영하고, SNS 이벤트, 뉴미디어 매체 등을 통해 홍보를 수행해 온 경험을 가진 대변인실의 역량을 활용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참고로 과거 국회 결산심사[365]에서도 개별사업 예산을 홍보비로 집행하는 것은 홍보사업 전담부서인 대변인실과의 협의를 사전에 거치지 않게 되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 이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청렴권익정책알리기’ 사업 내 행정심판 제도 홍보 예산은 행정심판 제도 소개 및 절차·해결사례 등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고, 행정심판통합 추진 관련 홍보 예산은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의 개통 안내 및 행정심판 통합 추진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므로, 양자는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에 차이가 있다는 입장임.

○ 그러나, 과거 ‘청렴권익정책알리기’ 사업으로 수행된 행정심판 제

365) 2018회계연도 예산결산위원회 결산심사, 2019년 정무위원회 결산심사

도 홍보에도 행정심판 포털에 대한 홍보 내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청렴권익정책알리기’ 사업 내 홍보 방식으로도 행정심판 통합 추진의 필요성에 관한 홍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입장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초 예산(안) 확정 이후 각 사업부서의 홍보계획 등 의견을 취합하여 위원회 전체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므로, 홍보 내용적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라면, 위 절차에서 개별 사업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행정심판 운영’(1137-370) 사업 내 일반수용비로 편성된 ‘대국민 홍보비’ 예산안 1억 4,000만원은 국민권익위원회 홍보 사업인 ‘청렴권익정책알리기’(1131-300) 사업으로 이관하여, 홍보 사업을 통합 운영하게 할 필요가 있음.

8. 행정심판운영: 국선대리인 제도 활성화 위한 심사강도 완화 및 홍보 강화 필요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행정심판운영’의 내역사업인 ‘행정심판운영지원’ 사업은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을 위한 비상임위원 활동 수당, 국선대리인 사례비, 자문료 등을 지급하기 위한 사업으로,[366] 2025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억 1,400만원이 증가(30.2%)한 9억 2,200만원이 편성됨.

< 2025년도 행정심판운영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행정심판운영	1,094	1,177	1,543	366	31.1
행정심판운영지원	703	708	922	214	30.2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나. 검토의견

국선대리인 제도는 신청 요건 확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바,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처분 당사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국선대리인 신청에 대한 심사 강도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66) 세부사업: 행정심판운영(1137-370)

□ 국선대리인 제도는 2018년 11월 도입된 것으로,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청구인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약자의 실질적 권익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 '국선대리인 사례비' 사업은 선임된 국선대리인에게 사례비를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6조의5는 국선대리인의 보수를 사건 1건당 50만원 이하로 정하고 있으며, 실제 국민권익위원회는 사건 1건당 평균 30만원을 지급되고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년 국선대리인 선정 요건을 완화하였으며,[367] 이에 따라 국선대리인 선정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여 동 사업의 2024년 예산을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2025년도 예산안도 전년과 동일한 8,7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동 사업의 집행실적은 오히려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연도별 국선대리인 사례비 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건, %)

구분	예산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계획건수	선정건수
2020년	34	32.8	96.5	85	136
2021년	61	43.4	71.1	152	165
2022년	61	54.4	89.2	152	149
2023년	61	33.3	54.6	152	102
2024년(9월 기준)	87	11.7	13.4	217	71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367) '21년 1월 소득기준 완화 (270만원 이하 → 300만원 이하), '21년 5월 법인 지원대상 제외 → 연매출 4억원 이하의 소상공·영세법인까지 지원

□ 이는,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요건 완화에도 불구하고 신청 건수는 증가하지 않은 반면, 국선대리인 선정률은 오히려 감소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연도별 국선대리인 신청 및 선정 현황 >

(단위: 건, %)

구분	행정심판 접수건수 (A)	국선대리인 신청건수 (B)	국선대리인 신청률 (B/A)	국선대리인 선정건수 (C)	국선대리인 선정률 (C/B)
2020년	22,367	371	1.7	136	36.7
2021년	19,229	410	2.1	165	40.2
2022년	21,450	404	1.9	149	36.9
2023년	30,881	416	1.3	102	24.5
2024년 (9월 기준)	15,315	286	1.9	71	24.8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한편, 2024년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된 사건을 그 사유별로 살펴보면, 경제적 능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68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없는 경우 또는 권리의 남용으로 인정된 경우 148건으로, 국선대리인 신청 당해사건을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없다고 판단하여, 국선 대리인 선정을 기각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2024년 국선대리인 신청 기각 사유별 사건 현황 >

('24년 9월 기준)

사유[368]	미선정 건수	비고
법령상 선임 신청 요건을 결한 경우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	68건	31.2%
심리기일 경과 후 신청한 경우 (시행령 제16조의2제2항)	-	-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 또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8조의2제2항)	148건	68.8%
합계	216건	100%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자에 대한 권익구제를 강화하려는 제도의 취지와 행정사건의 복잡화에 따른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증가 및 국선대리인 선임 사건의 인용률이 전체 인용률보다 높다는 점 등을

368) **「행정심판법」 제18조의2(국선대리인)**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에 따른 국선대리인 선정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 또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6조의2(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요건 및 절차)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청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3.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4.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6. 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 (개인) 소득기준 300만원 이하 (법인)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영세법인

② 제1항에 따라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는 청구인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심리기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고려할 때, 국민권익위원회는 동 사업의 집행실적을 개선하고, 국선대리인 제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행정심판 사건 인용률 >

구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9월기준)
전체 사건 인용률(A)	8.6%	7.2%	5.8%
국선대리인 선정 사건 인용률(B)	22.7%	19.3%	14.5%
인용률 차이(B-A)	14.1%p	12.1%p	8.7%p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 따라서 향후 국선대리인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점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첫째, 신청 요건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선대리인 신청률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음.

- 관련하여 '청렴권익알리기'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인 행정심판제도 홍보에 국선대리인 제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등 해당 사업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국선대리인 신청은 행정심판 청구와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사자에게 행정처분을 통지하면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과 함께 국선대리인 제도도 고지할 필요가 있음.[369)]

○ 둘째, 선정률 감소와 관련하여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에 대하여 사건의 규모, 사안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선임 여부를 결정하되, ‘명백히 이유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상을 종합하면,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행정심판을 통하여 신속하게 권익을 구제받을 수 있도록, 위와 같은 사항들을 참고하여 국선대리인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369) *현행법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청구기간 등만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음.
「행정절차법」 제26조(고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행정심판법」 제58조(행정심판의 고지)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의 상대방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해당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2.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의 심판청구 절차 및 심판청구 기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

1.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370]: 전문가 활용 비용 지원 존속 여부 재검토 필요 등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은 안전한 가명·익명정보 활용을 위한 제도 마련 지원, 기술적·관리적 안전성 검증 및 데이터 활용 기관 관리·감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억 3,600만원 증가한 35억 6,400만원이 편성됨.

<2025년도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	4,992	3,328	3,564	236	7.1
- 가명정보제도운영	391	391	391	-	-
- 가명처리기술지원	1,657	2,537	2,137	△400	△15.8
- 가명정보 시스템 구축운영	2,944	400	1,036	636	159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은 ① ‘가명정보 제도 운영’, ② ‘가명처리 기술지원’, ③ ‘가명정보 시스템 구축운영’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전액 출연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370) 세부사업: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1032-302)

2) 검토의견

(1) 대기업 · 공공기관 대상 전문가 활용비 지원 예산 존속 여부 재검토 필요

동 사업은 당초 영세·중소기업의 가명정보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가 활용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와 다르게 비용 지원 필요성이 없거나 낮은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 대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동 지원 예산을 존속시킬지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음.

□ “가명정보제도운영” 내역사업에서는 가명정보 전문가 풀을 구성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2025년도 예산안에 7,7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이 중 가명처리 적정성 검토 및 반출심사[371] 소요비용 지원은 영세·중소기업의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가명처리 적정성 검토 및 반출심사 시 가명정보 전문가 활용비를 지원해주려는 것으로, 3,600만원이 편성됨.

371) 가명처리 적정성 검토는 개인정보가 적절히 가명처리 되었는지 확인하고 가명처리된 결과가 목적달성에 적절한지 등을 검토하는 것이며, 반출심사는 가명정보를 전문기관 외부로 반출하기 위한 전문기관의 장 승인 전 심사를 의미함.

<2025년도 가명정보 전문가 풀 구성 및 운영 예산안 산출내역>

(단위: 천원)

2024년도 예산		2025년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77,000	○ 전문가 풀 구성 및 운영: 24,500 ○ 전문가 풀 역량 강화: 16,500 **○ 적정성 검토 및 반출심사 소요비용 지원:** **400천원×3인×30회 = 36,000**	77,000	○ 전문가 풀 구성 및 운영: 24,500 ○ 전문가 풀 역량 강화: 16,500 **○ 적정성 검토 및 반출심사 소요비용 지원:** **400천원×3인×30회 = 36,000**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지원 방식은 영세·중소기업 등 수요자가 전문가 추천을 요청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기존에 구성한 전문가 풀 내에서 전문가를 추천하고, 수요자가 추천된 전문가 중에서 선정하여 심사를 진행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해당 전문가에게 심사비를 지급하는 방식임.

<적정성 검토 및 반출심사 소요비용 지원 절차>

활용 수요자	▶	KISA	▶	활용 수요자	▶	KISA
플랫폼 內 접수를 통해 전문가 추천 요청 (수요기관명, 장소, 일정, 처리목적, 필요 인원수, 활용 형태, 자격요건 등)		신청 내역 검토 및 전문가 추천(배수) * 추천기준 : 해당 분야 경험자 2인+ 미경험자 1인 포함		추천된 전문가 확인 및 선정 후 심사 진행 * 결과보고서, 지급동의서 등에 대해 제출		지급동의서 확인 후 심사비 지급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2023년의 경우 34건에 대해 총 102명의 전문가 심사비를 지원하였으며, 2024년 9월말 기준 28건에 대해 총 66명의 전문가 심사비를 지원하였음.

〈적정성 검토 및 반출심사 소요비용 지원 현황〉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9월말	합계
총 지원건수	11건	34건	28건	73건
전문가 지원 수	31명	102명	66명	199명
총 지급액	1,180만원	4,080만원	2,050만원	7,310만원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그런데, 동 사업을 통해 지원한 수요자 현황을 보면, 당초 영세·중소기업에 대해 지원하려는 사업 목적과 달리 주로 공공기관 및 대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이 이루어졌음.

○ 2022년부터 심사비를 지원한 대상 기관 건수는 총 73건으로 그 중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9건(12.3%)에 불과하며, 87.7%에 해당하는 64건이 공공기관 또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지원되었음.

〈적정성 검토 및 반출심사 소요비용 지원 수요자 현황〉

(단위: 건)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9월말	합계
공공기관	6	19	21	46(63.0%)
대기업	3	10	5	18(24.7%)
영세·중소기업	2	5	2	9(12.3%)
총 지원건수	11	34	28	73(100%)

주: 괄호 안은 총 지원건수(73건) 대비 비중을 의미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이와 같이 공공기관 또는 대기업 위주로 지원이 이루어진 것은 적정성 검토 및 반출심사 비용 지원을 신청한 수요 기관이 영세·중소기업인지와 무관하게 신청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원하였기 때문으로 보임.

○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운영하고 있는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에 따르면, 동 지원 사업에 대해 "순차적으로 접수된 가명정보 전문가 지원 신청서 기반으로 가명정보 처리 목적, 데이터 내역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고 안내하고 있음.

□ 동 사업은 당초 영세·중소기업의 가명정보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가 활용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와 다르게 비용 지원 필요성이 없거나 낮은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 대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동 지원 예산을 존속시킬지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임.

(2) 가명처리 지원센터 성과 · 실적에 따른 예산규모 조정 필요

서울 가명처리 지원센터의 시설 이용 성과·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다른 지역의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와 유사하게 성과 및 실적에 따라 예산규모를 조정하는 등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가명처리 기술지원” 내역사업에는 가명처리 지원센터(서울) 운영을 위하여 2025년도 예산안에 4억 2,700만원이 편성되었고, 지역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6억원[372]이 편성되었음.

<가명처리 지원센터(서울) 운영 예산안 산출 내역>

(단위: 백만원)

2024년도 예산		2025년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57	○ 가명처리 지원센터 운영 : 202 = 22(임대비 : 1,830천원 × 12개월) + 100(운영비 : 4,170천원 × 12개월) + 80(장비 및 솔루션 유지보수비) ○ 기능개선 : 255 = 100(기능개선사업비) + 110(솔루션 2종 도입) + 45(자문비 : 300천원×5인×30회)	427	○ 가명처리 지원센터 운영 : 232 = 22(임대비 : 1,830천원 × 12개월) + 120(운영비 : 10,000천원 × 12개월) + 90(장비 및 솔루션 유지보수비) ○ 기능개선 : 195 = 100(사례발굴, 교육, 컨설팅 등) + 50(솔루션 1종 도입) + 45(자문비 : 300천원×5인×30회)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는 가명처리를 위한 설비·공간 및 솔루션 등 인프라를 지원하고 가명·익명정보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수행하며, 가명정보 활용 및 처리 관련 법·기술 컨설팅을 지원하고 가명정보 관련 대학 및 대학원생(서울), 실무인력(지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가명처리 지원센터는 서울 지역의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역할과 함께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는 강원, 부산, 인천, 대전, 대구 등 5개 지역

372) 3개 지역 센터에 평균 2억원 씩 지원하기 위한 예산임.

에 구축되어 있음.

- 이 중 강원, 부산, 대전 지역센터에 대해서는 구축 시 국비가 지원되었고 매년 운영비를 국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인천과 대구 지역센터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만 투입되고 있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역센터 운영을 위한 교육·컨설팅·전문가 등 실무 지원만을 하고 있음.

<지역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지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신규 구축연도	구축 시 국비 집행현황	2024년 운영비 지원 현황	
			국비	지방비
강원	2021	2.8	2.2	2.2
부산	2022	3.0	1.8	1.8
인천	2023	-	-	-
대전	2023	3.0	2	2
대구	2024	-	-	-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서울 가명처리 지원센터 및 지역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의 운영실적을 보면, 가명처리 인프라 이용 실적은 2022년 8회, 2023년 16회, 2024년 15회, 컨설팅 실적은 같은 기간 각각 12회, 13회, 23회, 적정성 검토 실적은 같은 기간 각각 2회, 3회, 8회 등으로 교육 및 실습 실적에 비해 낮게 나타남.

〈서울 가명처리 지원센터 이용 실적〉

(단위: 건)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9월말)	
	이용실적	월평균	이용실적	월평균	이용실적	월평균
가명처리	8	0.7	16	1.3	15	1.7
적정성 검토	2	0.2	3	0.3	8	0.9
컨설팅	12	1	13	1.1	23	2.6
교육 및 실습	165	13.8	261	21.8	133	14.8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월별 이용실적으로 살펴볼 경우 2024년에 가명처리 또는 적정성 검토 이용 실적이 전혀 없는 월도 나타나는 등 서울 가명처리 지원센터의 업무지원 기능(가명처리, 적정성검토, 컨설팅) 수행 실적이 낮은 것으로 보임.

〈2024년 서울 가명처리 지원센터 월별 이용 실적〉

(단위: 건)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합계
가명처리	3	1	1	4	0	2	1	2	1	15
적정성 검토	0	0	2	0	0	1	4	1	0	8
컨설팅	3	2	2	2	5	1	1	5	2	23
교육 및 실습	0	8	2	7	11	1	5	60	39	133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강원, 부산, 대전센터의 경우에도 교육 및 실습에 비해 업무지원 기능 수행 실적이 낮게 나타나는 등 유사한 경향을 보임.

〈지역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이용 실적〉

(단위: 건)

구분	강원			부산			대전
	2022	2023	2024	2022	2023	2024	2024
가명처리	10	6	2	2	8	8	1
적정성 검토	11	15	14	1	3	1	3
컨설팅	17	35	18	8	17	28	10
교육 및 실습	9	31	9	8	21	6	5

주: 대전센터의 경우 2023년말 개소하여 2024년 이용실적만 제시 / 2024년의 경우 9월말 기준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동 사업은 가명처리 기술과 전문인력이 부족한 사업자 등을 지원하고, 데이터의 합법적 활용과 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가명정보 활용 지원시설을 운영하려는 것이나, 가명처리 인프라나 적정성 검토 등 업무지원 기능의 이용실적이 저조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지역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의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이 3개 지역센터의 연도별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연간 운영비를 차등지급하는 인센티브 체계를 2024년부터 도입하였음.

- 2024년의 경우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가 우수한 강원센터의 경우 10%를 추가 지급하였고, 성과가 낮은 부산센터에 대해서는 10%를 감액하여 지급함[373].

- 다만 서울센터는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허브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373) 3개 지역센터에 대한 지원 예산은 6억원으로, 2023년까지는 센터별 2억원씩 균등지급하였음.

는 이유로 평가에서 제외함.

○ 서울 가명처리 지원센터의 경우에도 성과·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다른 지역의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와 유사하게 성과 및 실적에 따라 예산규모를 조정하는 등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2.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374]: 중계전문기관 운영 지원 계획 철저 수립 필요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은「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375] 이른바 “마이데이터” 행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전송체계 표준화 등 연계 체계 구축, 마이데이터 관련 정책

374) 세부사업: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1032-303)

375) **제35조의2(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처리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정보를 자신에게로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정보주체가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가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일 것
가. 제15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아 처리되는 개인정보
나.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
다.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 제23조제1항제2호 또는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처리되는 개인정보 중 정보주체의 이익이나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심의·의결하여 전송 요구의 대상으로 지정한 개인정보
2.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가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기초로 분석·가공하여 별도로 생성한 정보가 아닐 것
3.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되는 개인정보일 것
② 정보주체는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개인정보 처리 능력,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전송 요구 대상인 개인정보를 기술적으로 허용되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2.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술 기준을 충족하는 자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시간, 비용, 기술적으로 허용되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 가능한 형태로 전송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전송하여야 한다.
1.「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2.「지방세기본법」 제86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규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규정
⑤ 정보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를 철회할 수 있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중단할 수 있다.
⑦ 정보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로 인하여 타인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송 요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 전송 요구의 방법, 전송의 기한 및 방법, 전송 요구 철회의 방법, 전송 요구의 거절 및 전송 중단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구 및 제도 운영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6억원 감소한 60억 5,000만원이 편성됨.

<2025년도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	3,197	7,650	6,050	△1,600	△20.9
- 마이데이터 산업간 연계체계 구축	2,410	5,970	4,670	△1,300	△21.8
- 마이데이터 기반 조성	-	1,680	1,380	△300	△17.9
- 개인정보 전송지원 플랫폼	787	-	-	-	-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 사업은 ① ‘마이데이터 산업간 연계체계 구축’, ② ‘마이데이터 기반조성’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전액 출연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2) 검토의견

중계전문기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향후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마이데이터 산업간 연계체계 구축” 내역사업에서는 마이데이터 중계 인프라 실증 및 지원을 위하여 2025년도 예산안에 24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이 중 마이데이터 실증 서비스 지원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자·수신자, 중계 전문기관 등 참여자 간 데이터 전송 절차와 보안·인증 등 전송규격을 반영한 중계시스템 모델을 구현하고 이에 대한 실증을 수행할 수 있는 컨소시엄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임.

- 2024년에는 통신, 유통 2개 분야에 대해 실증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에너지 분야 중 전기, 가스 등 2개 분야에 대한 실증 사업이 이루어질 예정임. 2025년도 예산안에는 전년과 동일한 14억 7,000만원이 편성됨.

○ 중계기관 운영지원은 이러한 실증 지원 사업을 통해 중계시스템을 구축한 중계기관에 대해 운영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참여자(정보 전송자, 수신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 2025년도 예산안에는 10억원이 신규로 편성됨.

<마이데이터 중계 인프라 실증 및 지원 예산안 산출 내역>

(단위: 백만원)

2024년도 예산		2025년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470	○ 마이데이터 실증 서비스 지원: 1,470 - 분야: 통신, 유통	2,470	○ 마이데이터 실증 서비스 지원: 1,470 - 분야: 에너지(전기, 가스) ○ 중계전문기관 운영 지원: 1,000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2024년도 마이데이터 실증 사업은 통신과 유통 분야를 선정하여 관련 컨소시엄에 대한 실증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실증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2025년 3월 마이데이터 서비스 전면 시행 이전 별도의 지정절차를 통해 중계전문기관을 지정하여 2025년도에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임.

○ 2024년에 선정된 컨소시엄은 주관기관, 참여기관, 수요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관기관은 중계시스템 모델을 개발·구축하고 실증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참여기관은 주관기관의 업무를 협력하여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각각 참여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개발된 중계시스템을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실증하는 방식임.

<마이데이터 중계 인프라 실증 사업 선정 컨소시엄 구성 현황>

컨소시엄 명	코스콤 컨소시엄		
구성 현황	주관기관	참여기관	수요기관
기관 명	㈜코스콤 중견기업	(사)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비영리기관	NICE평가정보(주) 중견기업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그러나 2024년 마이데이터 실증 사업의 대상 분야인 통신과 유통 중 유통 부문은 규제개혁위원회가 유통 분야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여부를 유예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2025년도 중계기관 운영지원은 통신 분야에 대해서만 이루어질 예정임.

□ 2025년도 예산안에 신규 편성된 중계기관 운영지원 예산(10억원)은 이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사업 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5년도에 중계전문기관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려는 취지가 마이데이터 제도 시행 초기에 예상되는 참여자(정보 전송자, 수신자)의 어려움을 고려하고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참여자의 비용부담 완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입장임.

-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전면 시행[376]되면,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정보 수신자가 중계전문기관을 통해 정

376) 2025.3.14. 예정

보 제공자에게 마이데이터를 요청하고, 정보 제공자는 중계전문기관을 통해 요청받은 정보를 정보 수신자에게 전달하는 구조로 정보 전송이 이루어지게 됨.

- 이 과정에서 정보 수신자는 정보 제공자에게 데이터 전송 대가를 지불하고, 정보 제공자는 중계전문기관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과금체계가 형성될 예정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러한 과금체계가 제도 시행(2025년 3월) 초기에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한시적으로 중계기관 운영비 지원을 통해 정보제공자 등의 비용 부담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중계전문기관의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여 전송자가 중계전문기관에게 납부하는 수수료(데이터 전송 대가) 부담을 낮춰서 최종적으로 정보 수신자의 부담을 낮추겠다는 입장임.

○ 다만, 이러한 과금체계가 조기에 형성되어 마이데이터 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중계전문기관에게 지원하는 운영비가 실제 정보 제공자 및 정보 수신자의 부담 완화로 이어질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중계전문기관 지정 과정에서 중계전문기관이 정보 전송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운영비 지원액에 맞춰 낮추는 조건

을 함께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아울러, 향후 분야별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이러한 운영비 지원이 점차 감소할 수 있고, 공공기관이 중계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해당 공공기관을 적극 활용하는 등 중계전문기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 기준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3. 개인정보 사고조사 지원(신규)[377]: 사업수행방식 변경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개인정보 사고조사 지원”은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사업자 행정조사에 디지털포렌식 기술을 도입·적용하여 조사결과의 법적 증거능력을 확보하고 명확한 사고원인을 도출하기 위한 디지털포렌식 기반의 조사 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 16억 2,8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전액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출연함.

〈2025년도 개인정보 사고조사 지원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개인정보 사고조사 지원	-	-	1,628	1,628	순증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 검토의견

(1) 사업수행방식 변경 필요

개인정보 사고조사 지원사업은 사업 전부에 대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출연하고 있으나, 세부사업 내용별 검토를 통해 직접 수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정보 사고조사는 보호위원회의 본질적인 업무라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 자체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377) 세부사업: 개인정보 사고조사 지원(2034-302)

□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이 발생하여도 디지털포렌식이 불가하여 사업자 제출자료를 기반으로 현장방문 또는 서면조사 형식으로 개인정보 사고조사를 실시[378]하고 있으나, 시스템 해킹 원인 등을 분석하는 데에는 한계[379]가 있어, 디지털포렌식 도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380]

□ 이에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사고조사에 대한 기술지원을 담당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디지털포렌식 기반을 구축하여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의 정확한 원인을 도출하고 조사결과의 법적 증거능력을 확보하는 데에 활용하기 위해 신규로 개인정보 사고조사 지원사업을 편성한 것임.

○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출연금으로 디지털포렌식 장비를 도입하고 포렌식 룸을 구성하며, 포렌식 활용을 위한 조사관 기술교육을 실시할 예정임.

〈 2025년도 개인정보 사고조사 지원사업 예산안 산출 근거〉

378) 개인정보 유출신고는 163건('21년)→167건('22년)→318건('23년)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전체 유출의 97%가 전자 시스템에서 발생하고 있고, 보호위원회는 그 중 포렌식 분석이 필요한 해킹으로 인한 유출사고는 48% 수준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379) 시스템 해킹 원인 등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대용량 로그 분석이 필요하나, 포렌식 장비가 없는 경우 수십만건에 달하는 로그기록을 엑셀파일 등으로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고, 시간 경과로 로그기록이 삭제되는 사례가 있음.

380) 유사한 이유로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각 정부 부처에는 포렌식장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사업출연금(350-02) : 1,628,000천원**
가. 디지털포렌식 조사·분석 환경 구축 (1,198,000천원)
• 디지털 증거수집 및 분석 환경 구축 : 898,,000천원×1식=898,000천원
• 대용량 로그분석 환경 구축 : 300,,000천원×1식=300,000천원
나. 디지털포렌식 룸 구성비 (3,50,000천원)
• 디지털포렌식 룸 구성 공사비 : 200,,000천원×1식=200,000천원
• 디지털포렌식 룸 구성 기본 기자재 : 150,,000천원×1식=150,000천원
다. 조사관 기술교육비 (80,000천원)
• 디지털포렌식 초급 : 4,000천원×10명=40,000천원
• 디지털포렌식 고급 : 8,000천원×5명=40,000천원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다만, 개인정보 사고조사에 대해 기술지원을 하고 있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디지털포렌식 조사 환경을 구축[381]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장비 구축 및 보호위원회조사관 교육훈련 등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출연사업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보호위원회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방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현재 여건상 개인정보 사고조사에 대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기술지원을 일부 받고 있으나, 개인정보 사고조사는 보호위원회의 본질적인 업무이므로 중장기적으로는 보호위원회가 디지털포렌식 등을 자체적으로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포렌식 장비 구축 비용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출연하여 관련 장비 등을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자산으로 하는 구축하기보다는 자산취득비(430-01) 등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381)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개인정보침해방지사업' 중 '개인정보 침해방지 및 실태점검'사업을 통해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유출사고에 대한 기술적 사항 자문 및 기술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신설되는 "개인정보 사고조사 지원" 사업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 내에 디지털포렌식 장비를 도입하고 운영 환경을 구축하면 '개인정보 침해방지 및 실태점검' 예산을 이용한 유출사고 기술지원 과정에서 디지털 증거수집·분석을 수행하려는 것임.

○ 또한, 디지털포렌식 활용도 제고에 필수적인 기술교육은 보호위원회 조사관과 한국인터넷진흥원 기술지원인력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보호위원회 조사관 교육훈련 비용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출연이 아닌 보호위원회 자체 교육훈련 비용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참고로, 타 부처[382]의 경우, 포렌식 장비 구축 및 운영을 부처 자체 정보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2) 성과지표 개선

개인정보 사고조사지원의 성과지표는 동 사업의 성과를 나타내기에 적절하지 않으므로, 동 사업의 목적을 고려하여 '디지털증거분석 사례 비율' 등 적절한 성과지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동 사업의 성과지표는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 유통 게시물 탐지 삭제율'인데, 이는 동 사업의 단위사업인 개인정보이슈대응(2034)의 타 사업인 '개인정보침해방지'(2034-301)에 적용되는 성과지표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동 사업의 성과를 나타내기에 적절하지 않음.

< 개인정보 사고조사 지원사업의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

382)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성과지표	구분	'21	'22	'23	'24	'25	'25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 게시물 탐지 삭제율 (단위 : %)	목표	93.7	94.7	95.0	95.8	95.9	○최근 3년간* 실적 평균치인 94.8%에서 '22년-'23년간 실적 상승률(0.9%p) 및 웹사이트 운영 중자폐업, 운영자 소재불명 등 도전적 지표 설정의 외부적 제약을 감안하여 '23년 실적대비 0.2%p 추가 상향한 95.9%로 설정 * '21년(94.1%), '22년(94.8%), '23년(95.7%)	○ 탐지된 홈페이지 중 개인정보 삭제페이지수/ 모든 홈페이지 탐지 페이지수 x100%	○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 게시물 탐지 시스템
	실적	94.1	94.8	95.7	-	-			
	달성도	100.4	100.1	100.7	-	-			

□ 동 사업의 목표가 디지털포렌식 기법을 활용한 개인정보 유출사고 조사인 점을 고려할 때, 유사사업의 사례[383]를 고려하여 '디지털증거분석 사례 비율'(사고 수 대비 디지털포렌식 조사로 입수한 디지털증거 자료를 분석한 결과보고서 작성 건수의 비율)을 성과지표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383) '디지털포렌식센터 운영'(공정거래위원회)

4. 위원회법무지원[384]: 집행실적에 따른 감액 조정 필요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위원회법무지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대 소송의 수행,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 및 법률정보서비스 이용을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5억 1,500만원이 편성됨.

〈2025년도 위원회법무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위원회법무지원	248	515	515	0	0
- 국가송무수행지원	195	420	420	0	0
- 법률서비스이용지원	54	95	95	0	0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 검토의견

고문변호사 법률자문료는 매년 과다편성되어 집행실적이 매우 부진하므로,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일부 예산을 감액할 필요가 있음.

□ 이 사업의 내역사업인 ‘법률서비스이용지원’사업은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료와 민간 법률정보시스템 이용료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그 세부 산출내역은 아래와 같음.

384) 세부사업: 위원회법무지원(7041-301)

〈 법률서비스이용지원 사업 2025년도 예산안 산출내역 〉

'24년 예산	'25년 예산
□ 고문변호사 법률자문료: ('24) 80백만원 ○ 세부산출: 1건×400천원×3인×66회=80,000천원 □ 법률정보서비스 시스템 이용: ('24) 15백만원 ○ 세부산출: 12개월×1,250천원=15,000천원	□ 고문변호사 법률자문료: ('25) 80백만원 (전년동) ○ 세부산출: 1건×400천원×3인×66회=80,000천원 □ 법률정보서비스 시스템 이용: ('25) 15백만원(전년동) ○ 세부산출: 12개월×1,250천원=15,000천원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최근 동 내역사업의 집행실적을 보면, 법률정보시스템은 매년 거의 전액이 집행되고 있으나, 고문변호사 법률자문료는 집행실적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2023년에는 집행률이 39.0%에 불과하였고, 2024년에도 9월 현재 20.0% 수준임.

〈 '법률서비스이용지원' 사업 집행실적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2023년			2024.9월말		
		예산	집행	집행률	예산	집행	집행률	예산	집행	집행률
법률서비스 이용지원	고문변호사 법률자문료	103	52	50.5	100	39	39.0	80	16	20.0
	법률정보서비스 시스템 이용료	15	14	93.3	15	15	100.0	15	15	100.0
합 계		118	66	55.9	115	54	47.0	95	31	32.6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이와 같이 집행실적이 부진한 것은 그 동안의 법률자문료 지급 실적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였기 때문으로 보임.

○ 최근 3년 보호위원회의 법률 자문료 지급 현황을 보면, 보호위원회

는 자문 건당 평균 약 30만원[385] 내외의 자문료를 지급하고 있고, 자문 건수[386]도 예산 편성시의 예상치(66회)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남.

<법률자문료 지급 현황 >

(단위: 회, 명, 만원)

사업명	2022년	2023년	2024.9월말
자문 횟수	48	34	20
평균 자문 인원	2.9	3.1	2.6
평균 자문료	29.8	31.5	30.6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따라서 최근 법률자문료 지급 현황과 매년 부진한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예산을 일부 감액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385) 2022년부터 2024년 9월말 까지 지급된 자문료 평균 금액은 30.5만원임.
386) 2022년 48건, 2023년 34건, 2024년 9월말 기준 20건